

법제교류 자료 10-15- [9]

ODA

2010. 9. 16.

일 정

1. 일 시 : 2010년 9월 16일 (목) 10:30~13:00
2.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3. 주 제 : 주요국의 ODA법제
4. 세부일정 :
 - ◇ 사 회: 박광동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 제 1 주 제: 벨기에 공적개발원조(ODA)
 - 발 제: 박기갑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 제 2 주 제: 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ODA)
 - 발 제: 정경수 교수(숙명여대 법과대학)
 - ◇ 제 3 주 제: 미국 공적개발원조(ODA)
 - 발 제: 박병도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 제 4 주 제: 일본 공적개발원조(ODA)
 - 발 제: 이 정 교수(한국외대 법과대학)
 - ◇ 종합 토론
 - 유용조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경희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전문연구원)

목 차

제 1 주 제 벨기에 공적개발원조(ODA)	11
제 1 장 서 론	13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13
제 2 절 연구의 범위	15
제 3 절 연구의 방법	17
제 2 장 벨기에 공적개발원조 현황	18
제 1 절 행위자	18
제 2 절 정 책	23
제 3 절 성 과	25
제 3 장 벨기에 공적개발원조 법제	27
제 1 절 기본구조	27
제 2 절 벨기에 국제협력법의 주요 내용	30
제 3 절 벨기에 법제의 특징	36
제 4 장 벨기에 공적개발원조 정책	38
제1절 수행방식	38
제2절 수행국가 및 지역	45
제3절 수행주체	46
제4절 주요 사례: 아동 권리	50
제 5 장 벨기에 공적개발원조 평가	63
제 1 절 개 관	63
제 2 절 벨기에개발협력총국 내부 평가체계	64
제 3 절 최근 평가 보고서	66

제 4 절 특별 평가단(special evaluation unit)	71
제 5 절 원조효과성	71
제 6 장 한국에 대한 시사점	75
제 1 절 한국 공적개발원조 법제	75
제 2 절 법제적 차원의 시사점	83
제 3 절 한국 공적개발원조 정책	83
제 4 절 정책적 차원의 시사점	93
제 7 장 결론 및 제언	93
부 록	94
벨기에 국제협력법 (영한대역)	96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11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115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122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122
대한민국 한국국제협력단법	127
한국국제협력단법	127
제 2 주 제 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ODA)	139
제 1 장 서 론	14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141
제 2 절 연구의 범위	143
제 3 절 연구의 방법	145
제 2 장 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 현황	146
제 1 절 행위자	146
제 2 절 정책	152

제 3 절 성 과	153
제 3 장 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 법제	156
제 1 절 기본구조	156
제 2 절 연방개발협력법의 주요 내용	161
제 3 절 오스트리아 법제의 특징	174
제 4 장 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 정책	177
제 1 절 수행방식	177
제 2 절 국가 및 지역	189
제 3 절 수행주체	194
제 4 절 주요 사례 : 개발과 인권	213
제 5 장 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 평가	213
제 1 절 의 의	213
제 2 절 원칙과 체계	216
제 3 절 평가항목 및 지표	221
제 6 장 한국에 대한 시사점	226
제 1 절 한국 공적개발원조 법제	226
제 2 절 법제적 차원의 시사점	233
제 3 절 한국 공적개발원조 정책	233
제 4 절 정책적 차원의 시사점	243
제 7 장 결론 및 제언	243
부 록	244
오스트리아 연방개발협력법 (영한대역)	246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30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302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310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310
대한민국 한국국제협력단법	315
한국국제협력단법	315
제 3 주 제 미국 공적개발원조(ODA)	327
제 1 장 서 론	329
제 1 절 연구의 목적	329
제 2 절 연구 방법 및 범위	331
제 2 장 미국의 ODA 역사와 현황	332
제 1 절 미국의 ODA 역사	332
제 2 절 미국의 ODA 현황	337
제 3 장 미국의 ODA 관련 법제	343
제 1 절 대외원조	343
제 2 절 미국의 ODA 시행 조직	364
제 4 장 미국의 ODA 정책과 시행사례	377
제 1 절 미국의 ODA 정책에 관한 일반적 고찰	377
제 2 절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의 목표	384
제 3 절 미국의 ODA 시행 사례(1)	387
제 4 절 미국의 ODA 시행 사례(2)	406
제 5 절 미국의 ODA 정책 및 시행상에 나타난 문제점	413
제 5 장 미국의 ODA 평가	425
제 1 절 미국의 개발협력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 OECD/DAC의 동료평가(2006)	425
제 2 절 미국의 ODA 평가체계	437

제 6 장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456
제 1 절 한국 공적개발원조 법제	456
제 2 절 법제적 차원의 시사점	464
제 3 절 한국 공적개발원조 정책	464
제 4 절 정책적 차원의 시사점	474
제 5 절 평가체계의 시사점	474
제 7 장 결론 및 제언	474
제 4 주 제 일본 공적개발원조(ODA)	475
요 약(Summary)	477
(1) ODA와 JICA의 역할	479
(2) 세 가지 원조방법을 일체적으로 담당하는 신 JICA 탄생의 배경	480
제 1 장 일본의 공적개발원조의 제도적인 구조	482
제 2 장 일본의 공적개발원조의 특징	483
제 1 절 지역적 특징	483
제 2 절 분야적 특징	484
제 3 절 원조 조건의 특징	485
제 4 절 원조 형태의 특징	486
제 3 장 일본의 공적개발원조의 역사적인 전개	487
제 1 절 제1기 : 제2차 대전 후 배상기(1954-1963년)	
- 일본의 ODA 맹아기 -	488
제 2 절 제2기 : 경제협력신장기(1964-1976년)	
- 일본 ODA의 본격적 시동기 -	489

제 3 절 제3기 : 계획적 확대기(1977-1988년)	
- 일본 ODA의 주체적 확대기 -	490
제 4 절 제4기 : 원조내용 충실기(1988-2000년)	
- 일본 ODA의 충실기 -	492
제 5 절 제5기 : 원조정책의 재검토기 (2000-현재)	495
제 4 장 일본의 법정비지원제도	498
제 1 절 일본 법정비지원제도의 현황	498
제 2 절 JICA가 실시하는 기술협력으로서의 법정비지원	500
제 3 절 법무성에 의한 법정비지원	508
제 4 절 각국에 대한 법정비지원의 현황	519
제 5 절 법정비지원을 둘러싼 상황과 과제	527
제 5 장 결 론 -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529
참고문헌	531
「부록1」 일본 ODA 법 연구 부록과일 목록	537
「부록2」 법제도정비지원에 관한 기본방침	538
(별표 1) 2009년도 법제도정비지원 실시계획	546
(별표 2) 2009년도 법제도정비지원 실시계획(복수국가에 걸친 계획)	557
(참고자료 1) 2008년도 법제도 정비지원 실적	564
(참고자료 2) 2008년도 법제도정비지원 실적(복수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	577
「부록3」 정부개발원조대강	585
「부록4」 정부개발원조에 관한 중기정책	598
「부록5」	
독립행정법인국제협력기구법	527
독립행정법인국제협력기구법 시행령	664

1

벨기에 공적개발원조(ODA)

박 기 갑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벨기에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에 관한 선진적 제도와 경험을 갖고 있는 국가이다. 벨기에는 1961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 (OECD DAC)에 참여한 이후 국제적 수준의 ODA의 법제와 실행의 경험을 갖고 있다. 벨기에의 공적개발원조의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공적개발원조의 규모는 국민총소득 대비 0.50% (2006년), 0.43% (2007년), 0.48% (2008년) 수준이었으며, 2010년까지 0.7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벨기에의 ODA 공여대상국은 콩고민주공화국을 비롯하여 다수의 국가들이 있고, 특히 지역적으로는 중앙아프리카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대륙의 최빈국들에 집중하고 있는 바, 국제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벨기에의 공적개발원조의 현 수준을 살펴보면, 효과적인 공적개발원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1999년에 국내법제를 정비하였고, 원조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파리선언에 부합하는 정책조율 및 조치를 취하는 등의 성과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벨기에가 법제 정비의 일환으로 1999년 제정한 「벨기에 국제협력법」이며, 그를 통해 벨기에의 현재적 차원의 공적개발원조의 확고한 법적 인프라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법제 정비의 주요 골자를 보면, 개발협력의 목적과 원칙을 확립하였고, 특히 공적개발원조의 중점분야, 교차분야적 중점주제들

을 설정하였다. 벨기에 원조체계는 연방외무부를 중심으로, 외무부 산하의 개발협력총국을 비롯하여 연방 및 지역 차원의 여러 주체들로 구성되어있으며, 특히 원조체계를 분권화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벨기에의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법제와 정책의 의미가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벨기에의 법제와 정책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우리나라의 기존 연구는 우리나라가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할 것을 검토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크게 나뉜다. 그 이전에는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일반론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된 바, 개별 국가의 공적개발원조 관련 법제와 실행에 관한 연구가 극히 미진하다. 이에 비해 가입 검토 시점을 전후로 하여서는 공적개발원조 전반에 걸친 전문서적이 출간되는 한편 다수의 정책검토 보고서가 작성되고 공개되었다. 이러한 연구 성과 중에는 개별 국가의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법제와 정책을 일부 소개하는 연구 성과도 나왔으나, 그 대상은 일본 등 특정 국가에 국한되고, 연구범위도 협소한 실정이다. 특히, 벨기에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가 나오지 않은 바, 국내에서는 벨기에의 공적개발원조에 대해서는 지식과 정보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존 국내 연구 성과의 한계를 고려할 때, 벨기에 법제와 정책에 대한 연구는 입법과 정책에서 초보적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의 신규 회원국이 된 우리 정부는 개발원조위원회의 개발협력 관련 규범과 기준에 맞는 법제의 마련과 정책의 수립을 요구받고 있다. 이와 관련된 우리의 개발협력에 관한 법제의 이력은 매우 일천하다. 개발원조위원회 신규 가입 시기를 전후하여 관련 입법의 필요에 따라 2008년 7월 송민순 의원 법안을 포함하여 총 4개의 법안(진영 의원안, 배영식 의원안, 김부겸 의원안)이 발의되었고, 이와 별도로 정부 차원의 법제 마련이 진행되어 2010년 1월 25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10년 7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한편 기본원칙과 권한행사 및 배분에 관한 규정을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개발협력정책 시행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은 2010년 7월 21일에 제정되었으며 2010년 7월 27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이 개발원조위원회 규범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태이다. 예컨대 평가 및 감시 체계의 확립과 절차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시행을 위한 추가 세부입법을 위해서는 평가 및 감시체계가 공적개발원조가 법률목적에 부합하는지,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이 확보되는지,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의 규범과 기준 및 제 절차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법제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세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우리 법제의 현 상태를 고려할 때, 우리 법제의 개선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벨기에 법제와 정책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연구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임에 분명하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이 연구가 다루는 벨기에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연구의 내용은 크게 1) 벨기에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개관, 2) 벨기에 공적개발원조 관련 법제, 3) 벨기에 공적개발원조 관련 정책, 4)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관련 법제와 정책에 대한 시사점으로 구성된다.

우선 벨기에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개관은 벨기에 공적개발원조체계의 법적구조의 분석을 통해 공적개발원조의 목적과 원칙을 살펴보는 한편,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 및 집중성 제고를 위한 우선순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공적개발원조의 일반 동향과 개발협력 세부계획을 살펴볼 것이다.

제2장에서는 벨기에 공적개발원조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벨기에 공적개발원조에 참여하는 행위자로서 벨기에기술협력, 벨기에투자기구, 공인된 비정부기구, 다자간 동반자, 대학, APEFE 및 VVOB, 그리고 과학 기관에 대하여 살펴본다. 또한 이들을 통하여 수행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의 성과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벨기에의 공적개발원조 관련 법제를 다룬다. 이에 해당하는 법제 인프라로서 「벨기에 국제협력법」(Law on Belgian International Cooperation)의 구조를 일목요연하게 소개한 후, 각 구성요소들을 축조해설한다. 특히 벨기에 공적개발원조에 관해 벨기에 국제협력법이 갖는 특징을 분석·정리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벨기에 공적개발원조 정책을 다루며, 그 기본구조와 특징을 살펴보는 한편, 세부적으로 벨기에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자세한 동향, 이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그리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벨기에 공적개발원조체계의 구조적 개혁에 관해 다루게 된다. 특히 원조의 규모·경로·배정, 조직 및 관리, 정책의 시행, 인도적 활동의 분야별로 나누어 이를 살펴볼 것이다.

제5장에서는 벨기에의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평가체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벨기에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실시하고 있는 평가의 원칙과 체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평가가 시행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지표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제6장에서는 벨기에 공적개발원조 관련 법제가 우리 법제에 대해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에 관련된 법제를 소개·분석하는데서 출발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과 동 법 시행령, 국제협력단법과 동 법 시행령, 대외경제협력기금법과 동 법 시행령을 다룰 것이다. 이어 벨기에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법제와 정책이 우리 법제와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각각 별도의 단위에서 분석·도출하게 된다.

제7장에서는 제3장, 제4장, 제5장에서 다룬 분석·도출 내용을 체계화하여 입법적 과제 및 내용을 정리할 것이다. 그 내용은 첫째 법제적 차원에서 우리 법제와 함께 우리 정부가 발표한 ‘대외원조 개선 종합대책’에 입각하여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의 정책방향을 뒷받침하는 법제를 벨기에 법제에서 제시할 것이다. 둘째 정책적 차원에서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효율성 제고, 인프라 구축, 국민참여 확대 등을 담을 수 있는 정책프로그램을 벨기에 프로그램에서 제시할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방법

이 연구의 주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연구의 범위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단계는 해당 법률의 완역이다. 이 단계에서는 관련 용어와 문장의 통일성과 엄밀성 확보를 위하여 번역대비표를 이용한다. 그리고 관련 용어 번역의 한국적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적원조개발기본법안’ 및 외교통상부 인도지원과의 용어사용례를 일일이 확인하고, 이 성과를 전체와 공유함으로써 전체 성과의 통일성 담보에 유념할 것이다.

2단계는 벨기에의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의 동료평가절차에서 제출한 보고서와 이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검토이다.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관련 법제 정비의 필요성 중 하나는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이후 이 위원회가 요구하는 기준을 국내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그 효과적 운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중 전자 차원에서 행한 벨기에의 실행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 위원회가 다룬 동료평가절차상 보고서를 정밀 분석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의 지침의 준수를 보장하는 벨기에의 실행을 도출하도록 한다.

제3단계는 우리나라 대외원조에 대한 검토·분석이다. 1차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현황 및 정책 방향을 검토분석한 후 정부당국의

정책적 구상을 반영할 수 있는 법안체계에 관한 아이디어를 확보하도록 한다. 2차적으로 1차 성과를 바탕으로 다시 벨기에 관련 법률의 축조해설 및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2

제 1 절 행위자

벨기에의 국제협력은 벨기에 연방 외무부 산하의 국제협력각료가 이끄는 개발협력총국(DGD)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업무는 벨기에기술협력(BTC)에서 위임 받아 수행하고 있다.

동반자(partner)라고 언급 되는 관련행위자는 벨기에기술협력, 벨기에 투자기구, 공인된 비정부기구, 다자간 동반자, 대학, APEFE 및 VVOB, 그리고 과학 기관으로 나눌 수 있으며, 벨기에의 정책상 수혜국으로 보기보다는 최대한의 권한부여를 통한 동반자로 보는 동반자 국가도 포함되어야 한다. 결국 이는 크게 정부협력 관계에 있는 동반자 국가, 비정부기구·대학·공동체기반기구로 이루어진 벨기에 및 기타 국가의 비정부 행위자, 그리고 다자협력 관계에 있는 다자기구의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다.

I. 벨기에 정부 유관기관

벨기에 정부기관인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총국이 국제협력의 한 분야인 공적개발원조를 담당하고 있으나 개발협력총국은 벨기에기술협력에 공적개발원조에 대하여 위임하고 있다.

1. 개발협력총국

벨기에개발협력총국의 다자개발협력은 천년개발목표에 도달하는 데 각각 중요한 기여를 하는 3개의 기관과 함께한다. 이 3개의 기관은 1)

국제연합 및 유관기관, 2) 유럽연합 그리고 3) 국제금융기관, 특히 세계은행이다.

벨기에는 기구의 일반 자원에의 기여, 즉 소위 핵심금융의 최대한의 적용을 채택하고 있으며 동시에 벨기에가 기구의 특정 프로젝트에 배정하는 특정목적 액수는 줄이려는 것이 목표이다. 이에 더하여, 다자기구는 이제 벨기에의 원조를 더 예견가능하게 하는 다년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재정이 지원되며, 이는 다자개발기구의 운영에 있어 더 높은 효율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킨다.

매년 개발협력총국은 재정지원 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하는 황서(Yellow Book)를 발행한다. 개발협력총국은 또한 벨기에의 국제기구에 대한 모든 재정 기여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는 녹색서(Green Book)를 발행한다(최신판은 2002년에서 2005년까지의 기간을 다룬다). 최종적으로, 다자간 협력의 환류에 대한 정보보고서가 2006년 1월에 완성되었다. 이 문건은 다자기구에의 기여 및 벨기에 경제에의 환류의 개관을 제공한다.

2. 벨기에기술협력

정부협력의 이행은 벨기에기술협력에서 담당한다. 벨기에기술협력에서 개발협력총국을 대행하여 수행하는 정부협력작업에는 연구 자금공여 및 훈련 자금공여를 다루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기타 국가적 또는 국제기구의 과제를 수행하기도 한다.

벨기에기술협력은 벨기에 국제협력법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이다. 벨기에만이 벨기에기술협력의 주주이며 일반총회에 개발협력각료가 참석하여 벨기에를 대표한다. 벨기에와 벨기에기술협력의 관계는 관리계약으로 유지된다.

II. 동반자 국가

정부협력은 벨기에와 동반자 국가의 협정으로 성립한다. 개발협력총국은 정책 입안, 정부협력 프로그램의 계획 및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벨기에의 개발협력 부서인 벨기에기술협력(BTC)은 그러한 프로그램의 동반자 국가와의 이행을 담당한다.

정부협력의 기본 목표는 동반자 국가가 빈곤 퇴치 전략을 창안하고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즉, 동반자 국가가 자국의 전략을 스스로 창안한다. 이 목표는 파리 선언에서 설정되었듯 어떻게 하면 개발 원조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하여 최근 수십 년간 발전되어 온 총의에 기초한다.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소위 기부국)는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에는 꾸준히 덜 관여하고 있으며, 해당 인구에 대한 자국의 서비스를 조직하는 대신 동반자 국가의 정책을 지원하는 것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동반자 기관의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의 명확한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일반적 목적 또는 특정분야 목적의 예산 지원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원조, 즉 동반자 국가가 스스로의 정책 계획을 이행하는, 동반자 국가의 예산에의 직접적인 재정 기여를 유도한다. 해당 예산 지원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동반자 국가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실제로 원조의 수여는 각 정책의 질을 다루는 명확한 요건들 및 동반자 국가의 재정 및 기타 관리에 달려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개발협력총국(DGD)은 예산 지원 핸드북을 활용한다. 이후, 요건 및 모니터링 체계는 동반자 국가 및 기타 기부국과의 정책대화에서 토의된다. 정책대화는 또한 각 동반자 국가의 다년 주기의 지시협력프로그램(ICPs)을 만드는 기초가 된다.

국가협력의 동반자 국가는 벨기에 국제협력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

회·경제개발, 인간개발지표 및 인간빈곤지표의 수준에 비견하여 측정된 빈곤의 수준, 협력국의 맥락에서의 벨기에 국제협력의 현재적 경험, 협력국 스스로의 자국 사회·경제개발에의 공헌, 협력국에 의한 선치 원칙의 준수, 벨기에 국제협력이 국제적 차원에서 개입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고 새로운 폭력행위들을 방지할 수 있는 협력국 내에서의 위급상황의 발생, 지역협력의 맥락에서 협력국 내의 지역통합의 수준, 협력국 내의 당국에 의해 추구되는 차별을 철폐하고 동등한 기회의 보장을 설립하려는 정책들과 같은 7가지 기준으로 수혜국을 최대 25개 국가까지 선정할 수 있다.

현재 18개국(알제리, 베냉, 볼리비아, 부룬디, 콩고민주공화국, 에콰도르, 말리, 모로코,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팔레스타인 자치령, 페루, 르완다, 세네갈,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 우간다 및 베트남)으로 이루어져 있다.

III. 비정부행위자

비정부행위자로는 공인된 비정부기구, 다자간 동반자, 대학, APEFE 및 VVOB, 그리고 과학 기관이 있다.

1. 비정부기구

벨기에 개발협력이 동반자가 되려는 비정부기구는 공인을 받아야 한다. 공인의 목표는 필요한 보장을 제공하는 모든 벨기에의 보조금을 건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것이 확실한 기구를 선택하는 것이다. 벨기에 국제협력법 제10조 및 2005년 12월 14일 칙령 제2조는 다음과 같은 공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비영리기구에 대한 법에 의해 설립된 기구 또는 기업에 대한 법에 의한 비영리기업
- 개발협력을 주목적으로 하며 벨기에 협력목표에 따라 활동을 수행할 것

- 현재의 개발협력에 관련된 3년간의 경험을 증거로 제출할 것
- 재정계획을 포함하는 다년 프로그램에 기초한 계획적인 접근을 가질 것
- 독립적일 것
- 스스로의 운영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 관리기구 회원의 대다수가 벨기에 국적을 가질 것
- 벨기에 국제협력법 제3조에 규정된 벨기에 국제협력목표, 즉 동반자의식과 개발 관련성 기준을 준수하면서 빈곤과의 투쟁을 통한 지속가능한 인간개발 우선목표에 따라 활동을 수행할 것
- 명확한 회계관행을 적용할 것

2. 대 학

간접적 대학 협력은 벨기에와 불어공동체 대학간 이사회(CIUF)로 대표되는 불어계 대학 간 및 벨기에 및 플랑드르 대학간 이사회(VLIR)로 대표되는 플랑드르 지역 대학 간의 6개 협정(1개 일반협정 및 5개 특수협정)으로 관리된다. 두 일반협정에는 대학협력의 목표와 자원이 명확히 결정되어 있는 5개년 계획이 수반된다.

3. APEFE 및 VVOB

해외유학 및 훈련 장려협회(APEFE) 및 개발협력 및 기술원조를 위한 플랑드르협회(VVOB)는 협력협정의 서명에 의해 개발도상국의 정부 및 초정부 기관의 제도적 통합을 지원하는 비영리기구이다.

개발협력총국은 벨기에와 이 두 비영리기구 간의 일반협정에 기초하여 3개년 활동 계획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프로그램의 주목적은 개발도상국에 위치하며 개발도상국에 효과적인 원조를 하려는 목적을 가진 정부, 초정부, 또는 다자간 기관의 제도적, 기술적, 행정적 그리고 관리적 통합을 통해 빈곤을 퇴치하는 것이다.

4. 과학기관

개발협력총국은 개발협력에 대한 연구를 위해, 열대의약품연구소(ITM), 왕립중앙아프리카박물관(RMCA) 및 왕립벨기에자연과학연구소 3개의 벨기에의 과학기관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제 2 절 정 책

벨기에는 파리선언과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아크라행동계획(Accra Agenda for Action, AAA)의 이행을 가능케 하기 위해 개발협력력을 현대화하고 있다. 특히 벨기에의 2007년 조화와 일치 계획(Harmonisation and Alignment Plan)은 벨기에가 원조효과성을 위한 행동계획을 개발해야 한다는 2005년 개발원조위원회의 권고에 부합한다. 벨기에는 파리선언과 아크라행동계획에 맞춰진 4개년 유도적 협력 계획을 시행함으로써 최근의 정책 및 전략적 결정을 현실화하고 있는데, 개발협력총국은 특정한 아크라행동계획을 개발하기보다 조화와 일치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직원 대상 실천지침을 준비하였다. 이러한 실용적 접근법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모든 벨기에 개발 주체들의 활동에 대해 파리선언의 의제를 반영하고자 하는 벨기에의 노력은 개발원조위원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개발 주재관(development attachés)은 벨기에 개발협력 주체들 간 상승효과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벨기에 정부의 비정부기구와의 2009년 협정은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위한 혁신적인 접근으로서, 비정부기구가 파리선언의 원칙들을 준수할 것과 개발협력총국이 그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위탁하고 있다.

한편 국가별 초점 분야의 숫자를 줄이기로 하고, 그 지원을 협력국의 우선순위에 일치시키려는 벨기에의 결정은 2008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유도적 계획 하의 다양한 원조유형을 통해 시행된다. 이러한 벨

기에의 접근은 협력국 스스로의 개발과정을 인정하면서 협력국의 분야별 전략의 시행을 지원하라는 2005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의 권고에 부합한다.

하지만 정책 시행 상 원조효과성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벨기에는 여러 가지 과제에 직면해있다. 첫째는 주인의식, 역량 및 체계의 수준이 떨어지는 취약국가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데, 부패가 만연한 취약국가에서 파리선언과 아크라행동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맞게 구체적인 행동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벨기에는 새로운 유도적 계획 하에 추가적인 예산 분할발행분(additional budget tranche)을 중앙아프리카지역 3개 협력국 중 2개 국가에 배정하였으며, 이는 해당 국가들이 합의한 선치의 기준을 만족시킬 때에만 제공된다. 이러한 벨기에의 조치는, 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협력국에게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는 벨기에의 중앙집권적 의사결정 체계에서 비롯된다. 유도적 협력 계획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은 점차적으로 분권화되고 협의적인 절차가 되어가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도 계획 형성에 있어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벨기에 원조를 보다 분권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재정의 분권화는 원조의 적시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킬 것이다. 셋째는 벨기에기술협력(Belgian Technical Cooperation, BTC)이 새로운 원조 유형에 보다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벨기에는 많은 수의 유사한 정책 시행 단위를 갖고 있으나, 이들에게 수혜국체계의 사용은 제한되어있다. 개발협력총국과 벨기에기술협력은 특히 취약국가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내부적 제한을 평가하고 수혜국체계를 사용하기 위한 직원 지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넷째는 개발협력총국과 벨기에기술협력이 원조의 결과를 관리할 효과적인 체계를 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그들은 기존의 체제를 결과중심관리체제로 개선하고 이러

한 체제를 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원조에 있어서의 경험을 새로운 정책의 개발 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벨기에는 모든 새로운 유도적 계획에 대해 결과모형(results matrix)을 포함시켜야한다.

제 3 절 성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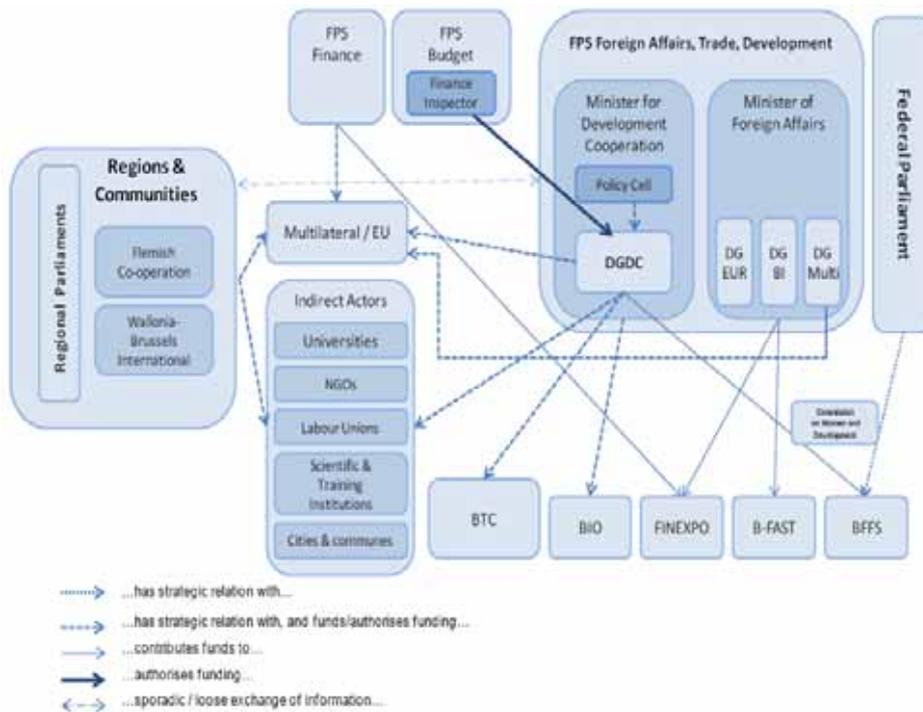
벨기에는 공적개발원조 예산을 상당 부분 증가시켰다. 2002년 몬테레이에서의, 2010년까지 EU 목표인 0.51%를 넘기는 0.7% ODA/GNI 비율에 도달이라는 서약을 확고히 약속했다. 벨기에는 현재 경제개발 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회원국 중 원조에 있어 GNI 비율로는 6위, 규모로서는 14위이다. 벨기에의 공적개발원조는 2004년에 비해 44%가 증가한 2009년 26억 달러에 이른다. ODA/GNI 비율은 같은 기간 0.41%에서 0.55%로 증가하였다. 몬테레이 목표가 벨기에의 법체계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사실은 벨기에가 그 기준을 충족시키 나가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추세대로라면 ODA/GNI는 2010년에는 0.7%로 상향될 것이다. 벨기에는 6번째로 0.7% 기준을 충족시킨 국가가 될 것이다.

근래 수년 간 부채탕감이 벨기에의 공적개발원조의 성장에 기여하지 못했음에도, 벨기에는 예외적인 부채탕감에 부분적으로 힘입어 0.7% ODA/GNI 목표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조의 이 부분은 2011년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벨기에가 2010년 이후에도 비율을 유지하려면 공적개발원조의 다른 부분을 성장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협력을 확대하고 13개 협력 프로그램의 예산 배정액을 2008년까지 2배로 인상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러한 인상을 보장하려면 개발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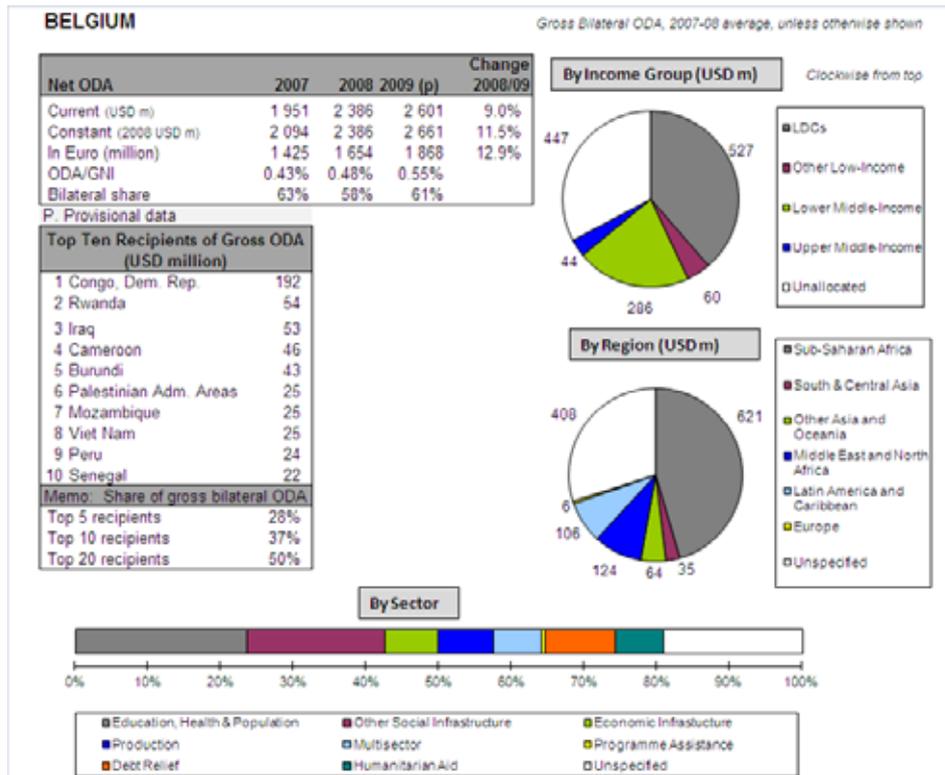
벨기에는 18개 동반자 국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공적개발원조의 그러한 지리적 배정은 벨기에의 정책과 전략적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중앙아프리카에 대한 약속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3개의 중점국가인 부룬디, 콩고민주공화국 및 르완다가 모두 벨기에 원조 수혜국 중 5위 안에 들어가 있으며 총 양자간 공적개발원조의 21%를 받고 있다. 벨기에는 또한 빈곤의 정도가 중점국가를 선택하는 첫번째 기준이라는 벨기에 국제협력법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벨기에는 양자간 공적개발원조에 있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2008년 기준 58%) 및 최빈개도국(55%)에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평균보다 많이 책정하고 있다. 또한 벨기에는 적은 수의 국가들에 더 많은 원조를 집중한다는 결정을 유지하고 있다. 벨기에는 최소 10개국의 최빈중점국가에서 10위 이상의 기부국이 된다는 목표를 세워왔다. 이러한 전략적인 최빈국에의 자원 배정은 주목할 만하다.

벨기에의 공적개발원조 현황



제 1 주제 벨기에 공적개발원조(ODA)



3

제 1 절 기본구조

I. 기본정보

- 입법경위
 - 1999년 제정
 - 2005년 개정
- 법률 구조
 - 3부
 - 11개 조항

○ 의의

- 벨기에 ODA 정책수립, 시행 및 평가를 위한 기본법

Ⅱ. 벨기에 국제협력법의 내용

1. [제 1 부] 일반규정

○ 제 1조

- 벨기에 국제협력법의 적용 대상

○ 제 2조

- 벨기에 국제협력의 정의와 범위
- 각료(minister)의 정의
- 협력국(partner country)의 정의
-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sations)의 정의와 범위
- 직접적 양자협력(direct bilateral cooperation)의 정의
- 간접적 양자협력(indirect bilateral cooperation)의 정의
- 다자협력(multilateral cooperation)의 정의
- 계획(programme)의 정의 및 범위
- 사업(project)의 정의 및 범위
- 지속적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의 정의
- 공동경영(partnership)의 정의
-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ies)의 정의
- 개발단체(developing organization)의 정의
- 선치(good governance)의 정의
- 벨기에 개발 원조(Belgian development Assistance)의 정의 및 범위

2. [제 2 부] 목 적

< 목적의 정의 >

○ 제 3조

- 벨기에 국제협력의 목적과 원칙

3. [제 3 부] 전 략

< 제1장 > 타당성과 평가

< 타당성 판단기준 >

○ 제 4조

- 타당성의 판단기준

< 외부평가 >

○ 제 5조

- 외부로부터의 평가에 관한 절차

< 제2장 > 기본원칙

< 제1절 > 직접적 양자협력

I. 지리적 초점

○ 제 6조

- 직접적 양자협력의 대상인 협력국 수의 제한 및 선정기준
- 각 협력국에 대한 개발 전략의 수립 의무 및 절차

II. 중점 분야

○ 제 7조

- 직접적 양자협력에 포함되어야 할 분야
- 각 분야별 개발 전략의 수립 의무 및 절차

III. 중점 주제

○ 제 8조

- 제 6조의 각 분야 고려 시 함께 검토해야 할 주제
- 각 주제별 개발 전략의 수립 의무 및 절차

< 제2절 > 다자협력

○ 제 9조

- 다자협력의 대상인 협력국제기구의 선정절차, 협력국제기구의 수 및 선정기준

< 제3절 > 간접적 양자협력

< 비정부기구 >

○ 제10조

- 간접적 양자협력의 대상인 비정부기구의 선정절차, 선정최소기준

< 기타 협력자 >

○ 제11조

- 제10조 외의 협력자의 선정절차, 선정최소기준

제 2 절 벨기에 국제협력법의 주요 내용

벨기에 국제협력법은 벨기에 국제협력의 기본법으로서 벨기에 공적 개발원조의 근간이 되는 법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1부는 관련용어의 정의 등 일반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고, 제2부는 벨기에 국제협력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제3부는 벨기에 국제협력의 타당성 판단의 기준과 외부평가절차를 언급하면서 또한 벨기에 국제협력의 기본원칙을 직접적 양자협력, 다자협력, 간접적 양자협력의 세 유형별로 다루고 있다. 이하에서는 각 조항별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I. [제1부] 일반규정

제1부에서는 본 법의 적용 대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1. 제 1 조

제1조는 벨기에 국제협력법의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벨기에 국제협력법은 벨기에 헌법 제78조에 규정된 문제를 규율한다.

2. 제 2 조

제2조는 벨기에 국제협력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벨기에 국제협력(Belgian International Cooperation), 각료(minister), 협력국(partner country),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직접적 양자협력(direct bilateral cooperation), 간접적 양자협력(indirect bilateral cooperation), 다자협력(multilateral cooperation), 계획(programme), 사업(project), 지속적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공동경영(partnership),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ies), 개발단체(developing organization), 선치(good governance), 벨기에 개발 원조(Belgian development Assistance)를 정의하고 있다.

II. [제 2 부] 목 적

제2부는 벨기에 국제협력의 최우선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1. < 목적의 정의 >

1) 제 3 조

제3조는 벨기에 국제협력의 목적과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벨기에 국제협력의 최우선적인 목적은 빈곤과의 투쟁을 통한 지속적 인간개발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선치 원칙을 포함한 개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국가 공고화의 일반적 목적의 달성에, 그리고 모든 형태의 차별과의 투쟁에 초점을 둔 인간 존엄과 인권, 근본적 자유의 존중의 목적에 기여한다.

또한 원조의 장기적이며 광범위한 효과를 위해 다양한 지역과의 협력을 통하여 상승효과를 꾀하며, 협력국의 사회적 기반 강화에 초점을 둔다. 동시에 벨기에 공공여론의 인식을 증진시킨다.

Ⅲ. [제 3 부] 전 략

제3부는 제1장에서 개발의 타당성 판단기준 및 목적과 타당성에 대한 외부평가절차를, 제2장에서는 공적개발원조 유형별 협력주체 선정기준 및 중점분야를 규정하고 있다.

1. < 제 1 장 > 타당성과 평가

1) < 타당성 판단기준 >

제4조는 타당성의 판단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벨기에 국제협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의한 기준에 따라 개발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특히 당해 행위가 제도·관리적 측면에서 장래성을 강화하는가, 사회·경제적 영향은 어떠한가, 기술·재정적으로 실행 가능한가, 계획된 이행 절차가 유효한가, 남성과 여성 간 평등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환경 보호를 고려하고 있는가의 근본적 원칙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2) < 외부평가 >

제5조는 벨기에 국제협력에 대한 외부평가를 규율한다. 벨기에 국제협력의 외부평가를 위해 국왕은 제3조에 규정된 벨기에 국제협력의 목적과 제4조에 규정된 타당성 기준, 그리고 벨기에 국제협력 외에 벨기에에 의해 추가적으로 제공되며 동일하게 제4조에 규정된 타당성 기준에 의해 평가되는 벨기에 개발원조에 입각한 벨기에 국제협력의 외부평가 제공을 위해 필요한 수단을 결정한다. 각료는 매년

4월 30일까지 이에 따른 정기적 외부평가보고서와 관련 논평을 하원과 상원에 제출한다.

2. < 제 2 장 > 기본원칙

1) < 제 1 절 > 직접적 양자협력

(1) 지리적 초점

① 제 6 조

제6조는 직접적 양자협력의 대상인 협력국가 혹은 협력지역기구 수의 제한 및 선정기준과, 각 협력국에 대한 개발전략의 수립 의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1항은 협력국 선정이 사회·경제개발, 인간개발지표 및 인간빈곤지표의 수준에 비견하여 측정된 빈곤의 수준, 벨기에 국제협력의 관련경험, 협력국 스스로의 사회·경제개발에의 공헌, 협력국의 선치 원칙의 준수, 벨기에 국제협력이 개입하여 해결할 수 있는 협력국 내에서의 위급상황의 발생, 협력국의 지역통합의 수준, 그리고 협력국의 차별철폐 및 기회균등보장 확립을 위한 정책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을 언급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2항은 직접적 양자협력에 포함된 협력국을 위한 개발전략 설정의무와 그 절차 및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2) 중점 분야

① 제 7 조

제7조는 벨기에 국제협력의 중점분야를 다루고 있다. 제1항에 따르면 벨기에 국제협력은 직접적 양자협력에 있어서 기본적인 보건의료, 교육, 농업과 식량안전, 기본적 사회기반시설, 그리고 분쟁방지와 사회통합의 분야에 착수해야 하는데, 제2항은 이에 관한 각 분야별 개발전략 설정의무와 그 절차 및 방식을 규율하고 있다.

(3) 중점 주제

② 제 8 조

제8조는 제6조에 규정된 분야에 착수할 시 고려해야하는 교차분야적 주제들 및 이에 대한 개발전략 수립의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 따르면 본 법 제6조1)에 규정된 분야들에 착수하는 벨기에 국제협력은 남녀 간 권리와 기회의 균형회복, 자연 존중, 사회적 경제, 그리고 아동 권리의 존중2)의 네 가지 교차분야적 주제들을 항상 고려해야한다. 제2항은 교차분야적 주제별 개발전략 설정의무 및 그 절차와 방식을 규율하고 있다.

2) < 제2절 > 다자협력

(1) 제 9 조

제9조는 다자협력의 대상인 협력국제기구의 선정절차, 선정기준을 다루고 있다. 국왕에 의해 결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벨기에 국제협력은 20개의 국제기구들과 다자협력을 실시하는데, 협력국제기구가 되려면 다음의 네 가지 최소기준을 만족하여 ‘국제다자협력에 있어서의 협력국제기구’로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첫째는 국제기구의 일반 목적이 제3조상 벨기에 국제협력의 목적들과 양립할 것. 둘째는 국제기구의 활동 분야가 제6조에서 제7조3)에 규정된 직접적 양자협력의 중점 분야 및 주제들 중 하나 혹은 그 이상과 긴밀히 들어맞을 것. 셋째는 국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자협력에 대한 출자의 사용을 평가하는 개발계획에 근거한 계획적 접근을 채택할 것. 넷째는 다자협력에의 출자가 다른 개발협력 수행자들의 국제기구에 대한 잠재적 출자와 일관성을 갖출 것이다.

1) ‘제7조’의 오기로 추론되나 원문을 그대로 반영하여 수정치 아니함.

2) 2005년 7월 19일 제정, 2006년 1월 1일 발효된 개정법에 따라 추가됨.

3) ‘제7조에서 제8조’의 오기로 추론되나, 원문을 그대로 반영하여 수정치 아니함.

3) < 제3절 > 간접적 양자협력

(1) < 비정부기구 >

① 제10조

제10조는 간접적 양자협력의 대상인 비정부기구의 선정절차, 선정기준을 다루고 있다. 국왕에 의해 결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벨기에 국제협력은 비정부기구와의 간접적 양자협력에 착수하며, 대상 비정부기구는 다음의 아홉 가지 최소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는 비수익단체 혹은 공익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1996년 4월 13일 제정된 법에 따라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는 기업일 것. 둘째는 개발협력을 그 회사의 최우선적 목표로 삼을 것. 셋째는 국왕에 의해 명기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활동분야와 관련된 현재적 경험을 가지고, 또 국왕에 의해 명기된 절차에 따라 그 이행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을 것, 넷째는 국왕에 의해 명기된 방법에 따라 입안된 재정계획을 포함하는 다년계획에 근거한 계획적 접근을 채택할 것. 다섯째는 국왕에 의해 명기된 방법에 따라 독립적일 것. 여섯째는 국왕에 의해 명기된 조건에 따라 계속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을 것. 일곱째는 관리기구의 구성원 중 과반수가 벨기에 국민일 것. 여덟 번째는 제3조에 규정된 벨기에 국제협력의 목적에 따르며 제4조에 규정된 타당성 기준을 고려하는 활동을 추구할 것. 아홉 번째는 투명한 계좌를 유지할 것이다.

(2) < 기타 협력자 >

① 제11조

제11조는 제10조 이외의 기타 협력자의 선정절차와 선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벨기에 국제협력은 특히 공동체, 지역, 주, 지방자치단

체, 제10조에 규정된 기구들 이외의 사법적 시설들을 매개로 공공법률회사, 단체, 협회, 기관과의 간접적 양자협력에 착수하는데, 대상은 국왕에 의해 명기된 방법에 따라 ‘간접적 양자협력의 협력자’로 선정된, 다음 두 가지의 최소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기구를 의미한다. 첫째는 국왕에 의해 명기된 방법에 따라 간접적 양자협력에의 출자에 대한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그 절차와 계획방법이 국왕에 의해 명기된 계획에 근거한 계획적 접근을 채택할 것. 둘째는 제3조 상의 벨기에 국제협력의 목적에 따르며 제4조 상의 개발 타당성 기준을 고려하는 활동을 추구할 것이다.

제 3 절 벨기에 법제의 특징

벨기에 국제협력법은 벨기에 공적개발원조의 기본법으로서 벨기에 국제협력의 목적과 평가절차를 비롯하여 그 유형별 협력주체를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벨기에 국제협력법의 법제상 주요 특징 중 먼저 전체적인 구조상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항목별 특징을 검토하고자 한다.

I. 구조상 특징

벨기에 국제협력법은 공적개발원조의 목적과 원칙, 협력할 주체의 선정기준 등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사업시행 상의 세부사항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있다. 이는 벨기에 국제협력법이 공적개발원조의 기본법으로서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을 나타내준다. 한편 본 법은 벨기에 국제협력을 총괄하는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국제협력의 운용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을 국왕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는 규정은 많은 반면, 총괄적인 국제협력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수행을 통

제 및 조정하며 감독하는 주체에 대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법적구조는 현재 벨기에의 공적개발원조체제가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 정책 통일성의 부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II. 제1부

제1부는 일반규정으로서 벨기에 국제협력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명확한 용어사용의 통일은 벨기에 공적개발원조의 체계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III. 제2부

제2부는 벨기에 국제협력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서술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IV. 제3부

제3부는 제1장에서 개발의 타당성 및 목적 부합성의 평가 원칙 및 절차를, 제2장에서는 공적개발원조의 유형별 협력주체 선정기준 및 중점분야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1장과 관련해서는 평가의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 내용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제2장의 경우는 공적개발원조를 유형별로 나누어 그 협력주체의 선정과 중점분야를 규정하고 있는데, 협력국과 협력국제기구의 수를 각각 25개, 20개로 제한하여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꾀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벨기에의 선택과 집중 전략은 개발원조위원회로부터도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다.

4

제 1 절 수행방식

벨기에 개발 협력은 다양한 협력관계에 의하여 목표들을 달성하는데, 이러한 협력 관계자들로는 개발 국가들의 정부들, 파트너 국가들에 현존하는 후원자들, 벨기에 비정부 주체들과 이러한 비국가 주체들과 협력 관계에 있는 국가들, 다자기구들을 들 수 있다. 벨기에 개발 협력은 또한 긴급구호, 식량 지원 및 식량안보에 관한 벨기에 기금과 같은 특별 사업을 후원한다.

이와 더불어 일반 대중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할 것인데 이러한 모든 통로들과 사업 및 계획들이 일관성 있게 수행되는 것이 관건이다.

I. 정부의 협력

정부의 협력은 벨기에와 파트너 국가 간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다. 벨기에개발협력총국(DGD)은 정부 협력 사업에 관한 정책 초안 작업 및 계획과 감독(monitoring)에 대한 책임이 있다. 벨기에기술협력(BTC)은 벨기에 개발 협력의 기관으로서 파트너 국가들과 이러한 사업들을 시행하는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

정부 협력의 주요 목표는 빈곤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고안 및 시행하기 위한 파트너 국가들의 시도를 지원하는 데에 있다. 즉, 파트너 국가들이 직접 전략을 고안하는 것이다. 이는 파리 선언(Paris Declaration)에서 명시한 개발 원조의 효과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난 몇 십년간 의견 일치점을 이룬 것이다.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들(소위 후원자들)은 실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점점 더 덜 개입하면서 대신 파트너 국가의 정책을 지원하는 데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

다. 이는 또한 파트너 기관들을 역량을 키우는 사업과 계획 중심으로 관점이 이동한 것과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새로운 형식의 원조를 촉진하는데, 그 예로 예산 지원이 있다. 파트너 국가의 예산에 직접 금전적 기여를 하는 방안을 통해 일반적인 사용 또는 특별한 부문에서의 사용에 쓰이도록 하며 파트너 국가는 자국 정책 계획을 시행하게 된다. 한편, 이러한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서 파트너 국가들은 일정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이다. 실제 상황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파트너 국가의 개별 정책과 이의 관리의 질적 수준을 감독하는 명백한 조건들을 따를 때이다. 요건들과 감독 시스템이 파트너 국가와 다른 후원자들 간 정책 대화에 있어서 토의되며, 이러한 대화는 각 파트너 국가에서의 지시협력프로그램(ICPs)의 기초가 된다.

벨기에의 18개 파트너 국가들로는 알제리아, 베닌, 볼리비아, 콩고 민주공화국, 에콰도르, 말리, 모로코, 모잠비크, 니제르, 팔레스타인, 페루, 르완다, 세네갈, 남아프리카, 탄자니아, 우간다, 베트남 등이 있다.

벨기에기술협력(BTC)은 정부 협력을 시행하는 책임이 있으며, 벨기에 개발협력총국을 대표하여 벨기에기술협력이 수행하는 정부 협력 사업은 연구, 훈련을 다루는데 이 외에도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하여 다른 국가 또는 국제 기구를 위한 과제를 수행할 수도 있다. 벨기에 기술협력은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30개 국에서 300개 이상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회적 목적을 위해 공법 기업으로서 설립되었다. 벨기에와 벨기에기술협력 간 관계는 관리 계약에 의해 명시되어 있다.

II. 다자간 협력(multilateral cooperation)

벨기에 개발협력총국(DGD)의 다자간 협력은 세 가지 기초(pillars)에 근거하는데 이는 모두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달성하는 데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이 세 가지 기초
란 1) 유엔과 관련 기관들, 2) 유럽연합, 3) 국제 금융기관들 특히 세
계은행이다.

벨기에는 소위 핵심 자금조달(core-financing)을 최대한 적용하기로
선택하는데 이는 기관의 일반 자원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벨기에에 의
해 특정 분야사업으로 배정된 자금(earmarked amounts)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자적 기구에 대한 자금은 다년 계획에 근거하
여 이루어지므로 벨기에의 원조가 보다 더 예측 가능해졌다. 이는 보
다 효율성이 요구되는 새로운 정책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벨기에개발총국은 다자 협력에 관한 정책문서를 2009년 편찬하였다.
매년 벨기에개발총국은 황서(Yellow Book)를 출판하는데 이는 개발총
국이 예산 지원하는 활동들에 대한 종합적인 개관을 하고 있다. 녹색
(Green Book)은 국제기구들에 대한 벨기에의 예산 기여에 대한 개관
을 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 것은 2002년부터 2005년을 다루고 있다.
2006년 1월에는 다자적 기관들에 대한 벨기에의 기여와 벨기에 경제
에 대한 환류에 대해 개관하는 문서가 작성되었다.

지난 몇 년간 다자적 기관들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 새천년개발목표
는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 이는 유엔 기관들뿐만 아니라 세계은행과
유럽 연합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다음은 벨기에 다자 간 협력에 관한
협력 기관들의 예이다.

- 국제농업연구에 관한 협의기구(CGIAR)
- 식량 및 농업 기구(FAO)
- AIDS, 결핵과 말리리아에 대한 국제 기금(GFATM)
- 국제적십자사(ICRC)
- 국제노동기구(ILO)
- 국제이주기구(IOM)

- 인도적 지원 조정국(OCHA)
-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 이 외 UNCDF, UNICEF, UNIFEM, UNDP, UNESCO, UNEP, UNHCR, HUAIDS, UNFPA, UNRWA, 세계은행(WB),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있다.

최근에 유럽연합의 개발 협력은 상당한 기여를 하였는데 이는 개발 협력에 관한 유럽 컨센서스(European Consensus on Development Cooperation)와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시행을 위한 계획과 같은 전략 문서들의 채택에서도 나타난다. 평화유지 작전들과의 긴밀한 협력과 같은 개발 협력의 새로운 측면들과 파트너 국가들의 경제적 개발과 같은 분야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개발협력총국은 유럽연합 장관급 평의회(Council of Ministers of the European Union)에 의한 정책 결정을 준비하는 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이 단계에서 채택된 것은 벨기에 개발협력의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되고 있다. 개발협력총국은 유럽개발기금(EDF)에 기여하는데 이 기금은 Cotonou협약에 서명한 ACP(아프리카, 카라비안과 태평양)국가들을 지원하고 있다. 벨기에 는 이 기금의 총액 3.92%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기금은 교육, 보건, 지역개발, 인프라구조 형성과 사적 영역의 개발에 쓰이고 있다.

III. 비정부기구의 협력(Non-governmental cooperation)

벨기에 비정부기구에 의한 개발 계획의 예산 지원과 감독은 벨기에 개발협력총국의 소관에 속한다. 1997년 이래로 비정부기구의 협력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근거하여 왔다.

- 개발의 중 단기 계획에 근거한 사업 접근 방식
- 원조를 받는 파트너 국가들과 적용될 전략에 대한 폭넓은 선택권
- 목표의 달성과 제공된 예산 자원에 대한 모든 책임 담당

벨기에는 비정부기구 주체들과 기본 체계 협의를 하고 이는 계획의 목표와 적용 방식에 대한 협의 사항을 담고 있다.

1. 승인된 비정부기구(Recognised NGOs)

비정부기구(NGO)의 승인은 견고하고 효과적으로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기구를 선택하기 위함이다. 벨기에 국제협력에 관한 1999년 5월 25일 법령 제10조와 2005년 12월 14일 벨기에 법령(Royal Decree) 제2조에 보면 이러한 승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다음과 같다.

- 비영리기구에 관한 1921년 6월 27일 법령(2002년 새로운 법에 의해 보충됨)에 따라 설립되거나 1995년 4월 13일 법령과 부합하는 비영리회사일 것이다.
- 기구의 주요 목적이 개발 협력일 것이며 1999년 5월 25일 법령 제3조에 따른 벨기에 협력의 목표들과 일치하는 활동들을 수행할 것이다.
- 개발 협력과 관련하여 적절하고도 일치하는 3년간 경험의 증거를 제공할 것
- 예산 계획을 포함하는 다년간 계획에 근거하여 접근할 것
- 독립된 기구일 것
- 독립적으로 경영을 지속할 수 있는 지위를 보장하고 있을 것
- 벨기에 국적의 사람들이 관리 기구의 회원의 다수를 차지할 것
- 벨기에 내부 협력 목표들과 일치하는 활동들을 수행하고, 빈곤과의 싸움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인간 개발을 달성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개발에 관한 적절한 기준을 준수할 것
- 투명한 재정관리

2. 계획의 승인(Programme recognition NGOs)

계획 중심 접근으로 통합하면서, 벨기에 법령(Royal Decree)은 벨기

에개발협력총국의 예산 지원과 비정부기구 보조금 배당 절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 예산지원 개혁을 추진했다. 법령 제5조에 의하면 개발 협력 장관에 의해 ‘계획’의 승인이 되는데 이는 독립적인 평가 보고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2007년 4월 14일 장관칙령 (Ministerial Decree)에 따라서 개발 협력 장관은 58개 비정부기구의 계획을 승인하였다.

3. 대학과의 협력

간접적인 대학의 협력은 벨기에와 붙어권 대학 간의, 그리고 플라밍어권 대학 간의 여섯 개의 협의(일반 협의 하나와 다섯 개의 특별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특별한 협의(Specific agreements)는 벨기에에 소재한 대학에서 개발 국가들 출신 학생들을 교육시키는데 드는 비용에 관한 협의, 정책 마련 연구와 교육 계획 등 각종 활동에 할당된 계획을 매년 제출하는 것에 대한 협의(Specific agreement regarding North actions), 전략적 연구 사업을 중점으로 하는 협의, 장학금 제도에 관한 협의 등이 있다.

4. 무역 연합 계획(Trade union programmes)

벨기에 연합은 2002년 이래로 국제노동자 교육기관(IWE), 국제 무역연합 훈련기관(IFSI), 국제 연대운동(ISM)에 의한 무역 연합 협력 계획을 지원하고 있다. 이 협력의 범위는 세 개의 벨기에 무역연합 기구들과 2007년 6월 6일에 서명한 협의에 나타난다.

- 독립적이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무역 연합 기구들을 보장한다.
- 제도적, 구조적, 기능적 관점에서 파트너 국가들에 존재하는 무역 연합을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 강화한다.
- 파트너 국가들에 존재하는 지역 무역 연합 기구들을 지원한다.
- 지역 무역 연합과 회사 관리자들과 정부 인사들 간 대화를 장려한다.

- 빈곤층의 노동 계급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장려한다.
- 민주 사회화의 요소로서 사회적 정의 실현을 장려한다.
- 파트너쉽 관계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파트너 국가들이 계획에 개입하며 주도하도록 보장한다.
- 벨기에의 노동자들과 기구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가적 차원의 활동 계획 측면에서 무역 연합의 훈련계획들을 지원하며, 무역 연합들에 의한 다자적 활동들을 통합하고, 경험을 나누며, 기술적 지원을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IV. 인도적 계획과 식량 안보

인도적 지원은 재난 방지, 재난 발생 시 긴급 구호와 분쟁 또는 인도적 재난 이후의 단기간 재활 원조를 제공한다. 인도적 지원은 또한 재난 후 전환 계획의 일부를 구성할 수도 있는데 이는 주로 신체적, 사회적 재건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 인도적 지원은 또한 긴급 식량 지원의 형식 또는 재난 이후 농업 생산성 재고를 지원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식량안보에 관한 벨기에 기금(BFFS)은 만기 식량부족에 직면하는 국가들의 가장 취약한 인구 계층의 식량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오직 사하라 아프리카 지역에 적용된다. 식량안보에 관한 벨기에 기금은 2009년에 벨기에 생존기금(BSF)의 후계로 생성된 것이며, 계획에 식량 안보에 관한 모든 측면을 보장하고 있다.

제 2 절 수행국가 및 지역



빈곤의 정도, 선치의 측면 및 유의미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벨기에의 능력에 기초하여 18개의 정부협력 동반자 국가가 선택되었다. 선택의 정확한 기준은 국제협력법에 설정되어 있으며, 수혜국은 최대 25개국으로 제한된다. 목표한정적인 이 정책의 관점에서, 개발협력총국은 일부 국가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하였다.

목표는 장기적으로 해당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지속하는 것이다. 협력관계는 해당 국가와 교섭하여 얻어진 지시협력프로그램(ICPs)들에 의해 관리된다. 2005년 효율성 강화에 대한 파리 선언과 조화되도록,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반자 국가 내에서 활동중인 각각의 기부국간에 어떻게 작업분배가 되어야 하는지도 결정되었다. 그것을 기초로 하여, 벨기에는 정부협력에 있어 최대 두 개의 분야에 초점을 맞추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벨기에가 더 포괄적인 원조를 제공한

중양아프리카 국가들을 제외하고 2008년 이후 모든 새로운 지시협력 프로그램(ICPs)에 적용되었다.

해당 정부의 프로그램은 관련 벨기에 대사관의 개발협력 주재관에 의해 모니터링 되고 벨기에기술협력(BTC)에 의해 이행된다. 벨기에기술협력은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이행의 감독을 담당하는 ‘상주 대표’로서 동반자 국가에 대표된다. 프로젝트 전문가 및 참여자들은 대표들에 의해 벨기에기술협력에 채용된다.

동반자 국가는 현재 모두 18개국 즉, 알제리, 베냉, 볼리비아, 부룬디, 콩고민주공화국, 에콰도르, 말리, 모로코,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팔레스타인 자치령, 페루, 르완다, 세네갈,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 우간다 및 베트남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 3 절 수행주제

벨기에 국제협력의 기본적인 중점분야는 벨기에 국제협력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생식건강을 포함한 기본적 보건의료, 교육, 농업과 식량안전, 기본적 사회기반시설, 분쟁방지과 사회통합의 다섯 가지이다. 하지만 벨기에에는 이를 발전시켜서 현재 12가지의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벨기에 국제협력의 12가지 주제는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농업과 식량안보, 환경과 기후변화, 이주와 개발, 교육과 훈련, 기본적 보건의료, 기본적 사회기반시설, 사회통합, 성, 통상원조, 아동권리, 민간부문개발이다. 이하에서는 각 항목별 세부내용을 살펴보겠다.

I. 유엔 새천년개발목표

2015년까지 유엔 189개 회원국은 극심한 빈곤과 가난의 퇴치,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성평등과 여성지위강화, 유아사망률 감소, 모성보

건의 개선, HIV/AIDS와 말라리아 기타 질병과의 전쟁, 환경친화적 지속가능성의 보장,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동반자의식의 강화로 구성되는 8개 항목의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기로 서약하였다. 하지만 벨기에 정부는 이의 달성을 위한 현재의 과정이 너무 느리고 부분적이라고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벨기에 개발협력 정책의 중심에 놓기로 결정하였다. 인간개발과 빈곤 퇴치가 새천년개발목표의 핵심이라는 판단 하에 현재 벨기에는 국제적 차원의 새천년개발목표를 국내적 차원의 공적개발원조 이행에 접목시키고 있다.

II. 농업 및 식량안보

농업 및 식량안보에 대한 벨기에의 접근 방법은 인도적 행위, 구조적 개입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 인도적 행위 유형의 경우 벨기에는 유엔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등 유엔관련기관을 통해서 식량을 지원하고 있고, 둘째 구조적 개입 유형의 경우 벨기에 개발협력총국이 직접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식량생산을 촉진시키는 데 개입하고 있다. 이는 협력국 정부와의 직접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을 위한 벨기에 투자회사(BIO)는 농업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민간회사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III. 환경과 기후변화

벨기에 개발협력총국은 현재 기후변화 문제를 다양한 유형의 개발협력사업에 접목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또한 개발협력 협정의 정책형성 단계, 문안작성, 평가 단계 등 다양한 단계에 이를 적용하려하고 있다. 광범위한 범위의 과학기구에 소속된 연구자들이 이에 관한 기본적 전략연구를 수행할 것이며, 이는 기후변화, 기후이주, 기후 적응에 관한 벨기에 개발협력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IV. 이주와 개발

벨기에는 2007년 이주와 개발에 관한 범지구적 회의(Global Forum on Migration and Development)를 개최했는데, 이는 국제 이주와 개발이 접목된 현안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장이 되었다. 또한 벨기에는 아프리카 내 개발을 위한 이주 계획(Migration for Development in Africa) 중 아프리카 빅토리아호수연안 지역에 대한 특별 계획에 자금지원을 함으로써 동 계획의 비중 있는 동반자로서 역할하고 있다.

V. 교육과 훈련

벨기에 개발협력법 제7조에 규정된 5대 중점분야 중 한 분야로서 2002년에 동 분야에 대한 전략 문서가 고안되었으며, 지난 10년 간 교육 분야에 대한 지출은 개발협력총국 전체 지출의 10-12%를 차지하였다. 또한 2006년 교육 분야에 대한 벨기에의 노력이 전면적으로 재평가됨으로써 현재 전략 문서는 수정 중에 있다.

VI. 기본적 보건의료

2002년 기본적 보건의료에 관한 전략문서의 채택 이후 6년 동안 새로운 구조와 사고체계가 구체화되었다. 이는 보건 분야에 대한 주제별 평가와 관련 토론이 이뤄지도록 촉진하였으며, 개발협력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걸쳐 보건의료 분야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VII. 기본적 사회기반시설

벨기에 개발협력의 5대 중점분야 중 하나로서 현재는 우물 등 소규모 개발, 지방지역에의 접근을 위한 도로개발 및 지역적 에너지 공급

등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다. 벨기에는 또한 다자기구와의 보다 광범위한 협력 하에 핵심적이며 규모가 큰 기반시설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VIII. 사회통합 및 분쟁방지

개발협력의 문맥에서의 진정한 개발 또는 발전은, 정치적 안정의 기초가 마련되지 않거나 충돌이 미연에 방지되지 않으면 성립하기 어렵다. 즉 지속되는 평화가 개발의 선행조건인 것이다. 벨기에의 개발협력은 그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 취약한 사회의 건설과 분쟁방지를 지원하고 있다. 여성단체, 농산업자협회 및 노동조합에의 지원은 수혜국 국민들이 더 튼튼한 시민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IX. 성

성 평등과 여성의 권한부여는 성장, 빈곤 감소, 지속적인 개발 및 천년개발목표의 달성에 필수적이다. 벨기에의 개발협력은 성평등을 횡적 주제(transversal topic)으로 보고, 협력국의 국제적 약속 및 개발전략과 정책에 맞추어 협력국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한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이 주제에 있어서의 발전을 촉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벨기에 개발협력은 성 평등을 점진적, 장기적 접근으로서의 정책, 전략 및 행동으로 채택하였으며, 여성에 대한 차별을 퇴치하도록 계획된 특정 행동의 자금을 지원하고 여성들에게 개발의 기회에의 접근을 보장한다.

X. 통상원조

아프리카 내 농부는 농산품을 유럽시장에 팔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많은 경우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방법을 몰라서, 혹은 유럽의 기준

이 너무 높아 수출에 실패한다. 벨기에의 통상원조전략은 그들에게 개방된 시장을 통해 농부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동시에 통상원조조치는 무역자유화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 또한 경감시킬 것을 반드시 고려한다.

XI. 아동권리

아동들은 그들의 특성 때문에 자주 위험에 노출되기 쉬우며 특별한 보호가 요청된다. 벨기에는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촉진함에 있어서 아동을 독립된 행위자로서 보는 접근방법을 취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벨기에를 포함한 EU의 구성국들은 유엔의 아동관련 협약 및 결의를 이행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실행해왔다.

XII. 민간부문개발

개발도상국 및 공여국과 다자기관들 모두는 민간부문의 개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벨기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부문개발을 지원하고 있는데, 벨기에투자회사(BIO)를 통한 기금 제공의 증대, 개발도상국 내 회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의 편성, 2009년 개발을 위한 무역센터의 설립, 개발협력총국 기금을 통한 개발도상국 내 민간부문개발 지원 등이 그것이다.

제 4 절 주요 사례: 아동 권리

아동의 취약한 지위로 인한 특성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또한 모든 아동은 출생 등록에 관한 기본권과 교육을 받을 권리와 같은 몇 가지 인권을 향유하는데,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아동의 권리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특정 기제들이 발전되어 왔다. 벨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아동의 권리와 보호의 증진을 지지하며, 아동을 독립적인 주체(independent actors)로서 보는 접근을 강조하는 바이다.

I. 국제적, 지역적 기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기본이 되는 협약으로서 다양한 아동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에서 아동이란 18세가 안된 모든 주체로 규정되고 있다. 협약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본 원칙을 규정한다.

- 비차별(non-discrimination)
- 아동의 권익(the interests of the child)
- 생명권과 개발권(the right to life and development)
- 참여권(the right to participation)

이 협약은 인권에 관하여는 가장 많이 비준된 협약이다. 미국과 소말리아를 제외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비준하였다. 물론 아동의 권리가 실제로 보장되는지 여부는 별론이다. 본 협약은 두 개의 선택 의정서를 갖는다.

-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 의정서
- 아동 매매, 아동매춘,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 의정서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에도 아동의 지위와 직접적으로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내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관하여 다양한 범위의 기제가 발달하였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아동의 입양에 관한 유럽 협약(European Convention on the adoption of children)
- 아동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에 관한 협약

■ 아동에 관한 개인적 관계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personal relationships in respect of children)

벨기에는 아동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에 관한 협약과 아동에 관한 개인적 관계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였다. 아동의 입양에 관한 유럽협약에 관한 벨기에의 비준 절차는 진행 중에 있으며 2008년 12월 1일에 서명한 바 있다.

II. 벨기에와 유럽 연합의 활동

아동의 권리의 보호와 향상은 벨기에와 유럽 연합의 우선순위 사항이었으며, 이에 관한 활동들을 추진해 왔다. 매년, 유엔인권평의회(UN Human Rights Council)은 결의를 채택하는데 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특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효과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벨기에는 이 결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하여 제3국가들과 정기적으로 양자 간 토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사안은 벨기에 개발 협력 전체를 이루는 주요 쟁점이다.

III. 유럽연합의 지침들

유럽연합에 의해 채택된 지침들은 유럽연합 비회원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인권을 적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규정하고 있다. 2007년에 유럽연합은 아동의 권리와 보호의 증진에 관한 지침들을 채택하였다. 이 지침들은 보다 구체적인 무력분쟁과 아동에 관한 지침을 보충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지침들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비회원 국가들에게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것과 같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법적 책무를 상기시킨다.
-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 원칙과 적절한 기준들을 더 잘 전파한다.

- 회원 국가들의 활동들의 일관성을 높이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유럽연합의 외부정책을 개선한다.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정치적 담론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주기적 행동이 취해지고 있다. 또한 UNICEF와 같은 다른 국제 주체 간의 견고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1. 아동 권리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EU Guidelines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아동 권리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은 세계인권선언, 아동권리선언, 아동권리협약 및 두 선택 의정서들,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등 기타 아동의 권리에 대한 기준들을 강조하며 아동 권리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유럽연합의 책무를 강조한다.

2. 아동 권리에 관한 유엔 이사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존중을 규제하는 것은 그 시행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다. 아동 권리에 관한 이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18명의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제네바에서 매년 세 번의 회기를 갖는다.

매 5년 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한 국가들은 그들의 관할권 내 아동의 권리의 존중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사회는 정부인사, NGO와 대화를 주최하며 이를 기초로 최종 관찰(Concluding Observations)을 작성한다. 이 문서는 긍정적 요소뿐만 아니라 개선 사항들도 포함하는데 아동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정부인사들에게 구체적인 권고들을 제공한다.

이사회는 또한 일반 관찰(General Observations)을 출판하는데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특별한 측면을 구체적으로 관찰한다. 이는 국가들이 어떠한 의무들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역할을 한다.

IV. 벨기에 개발 협력(Belgian development cooperation)과 아동의 권리

1. 개발 협력과 아동의 권리

아동의 권리는 네 번째 교차 쟁점(cross-cutting theme)으로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존중은 벨기에 개발 협력에 관한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999년 5월 25일 국제 협력에 관한 벨기에 법령은 벨기에 개발 협력이 다음과 같은 5가지 주요 부문을 담당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기본적인 건강 복지, 출산 건강
- 농업과 식량 안보
- 교육과 기술 훈련
- 기본적인 인프라 구조
- 인권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설계

동 법령은 또한 네 가지의 교차 쟁점들을 규정하면서 벨기에 개발 협력에 관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교차 쟁점들은 다음과 같다.

- 남성과 여성 간 평등한 기회와 권리
- 환경의 존중
- 사회 경제의 장려
- 아동의 권리(2005년 이래)

1999년 법령에 아동의 권리를 통합시키는 것은 2004년 벨기에 ECPAT와 Plan Belgium과 UNICEF가 공동으로 조직한 “아동의 권리와 국제 협력”에 관한 국제 회의에서의 주요 권고들 중 하나였다.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벨기에 개발 협력의 활동과 정책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존중이 고려되고 있다.

벨기에 개발 협력의 목표들은 벨기에와 파트너 국가들 양자 간 정부 협력에 의해 추진될 뿐만 아니라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들 간 다자적 협력을 통해서도 증진되며 NGO와 연구 단체와 같은 비정부 기구 간 협력에 의해서도 추진된다.

모든 교차 쟁점들에 관하여 벨기에 정책에 적용되는 지침들에 관한 전략 문서가 작성된다. 아동의 권리의 존중에 관한 전략 문서(strategy paper)는 벨기에개발협력총국에 의해 초안되는데 이는 개발 협력 장관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전략 문서는 벨기에기술협력(BTC)와 학계, NGO 간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문서는 벨기에 정책을 시행하는데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매우 실용적인 도구가 되는데 국제적 무대이건 현장이건 아동의 권리를 시행하는 모든 주체들에게 도움이 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토론 및 벨기에와 파트너 국가 간 정치적 대화>

“아동의 권리의 존중(Respecting the Rights of the Child)”이란 전략 문서는 벨기에 개발 협력의 모든 부문에서 적용되고 증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권리 중점적 접근(rights based approach)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구조의 강화(reinforcement of structures)와 기제를 전제하고 있으며, 사회 전체의 경각심을 키우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는 정책 의사 결정자들, 아동에 관한 전문가들, 언론, 사적 부문, NGO들과 일반 대중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벨기에 정부는 다양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예를 들어 국제적 토론의 장 또는 파트너 국가들과의 대화를 추진한다.

<국제적 토론(International Fora)>

벨기에는 무력분쟁에 있어서 아동에 관한 유럽연합의 지침들에 관한 초안 작업에 참여하였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추후 유럽연합 지침

에 관심을 갖고 있다. 벨기에는 또한 열악한 형태의 아동 노동의 철폐에 힘쓰고 있는데 특히 무기 거래에 관한 조약을 초안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아동 병사들을 여전히 고용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무기를 수출하고 이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과적인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금지는 이미 벨기에에서 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

<파트너 국가들과의 정치적 대화>

벨기에와 파트너 국가들 간 지속적인 정치적 대화 절차는 아동의 권리를 고려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부여한다. 따라서 벨기에는 파트너 국가들이 유보 없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기제들을 국내 절차에 적용하도록 장려하는 바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이사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파트너 국가들에 관한 최종 관찰(“Concluding Observations”)은 구체적인 도구로서 역할을 한다. 일반 관찰들(“General Observations”) 또한 매우 실용적인 지침들을 제공하고 있다. 벨기에는 따라서 파트너 국가들에게 사업 단계에서 그 평가 단계에 이르기까지 아동의 권리를 정책과 시행계획에 포함시키도록 원조를 하고 있다. 무력 분쟁에 개입된 아동들 또는 난민 아동들, 거리 아동들과 기관에 수용 중인 아동들, 장애 아동들과 같이 취약한 상황에 놓인 아동들과 위험한 상황에 있는 어린 여자 아이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쏟는다.

<현장에서의 아동의 권리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세 가지 측면을 공동으로 고려해야 함을 촉진하고 있는데 이는 1) 아동의 보호(Protection), 2) 다양한 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아동의 접근의 보장(Provision), 3) 아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의 부여(Participation)이다.

벨기에의 개발 협력에서 이 세 분야를 촉진하고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몇 가지 예시들이 제시되고 있다. 아동의 보호에 관하여는 교육에서의 폭력의 방지, 농업에서의 아동 노동 착취 대응, 아동과 여자 아이들의 불법거래 대응 등이 있다. 다음으로 시설 및 서비스의 접근과 관련해서는 교육에서 질적 수준을 높이고 특히 여자 어린이들과 소수 집단 아동들의 취학을 증진하는 것, 예방 접종의 원조, 분쟁에 있어서 아동들에게 식량 우선권 부여, 안전한 식수를 보장하고 학교에서 식수 공급을 보장하는 것과 아동 병사들의 정신 치료를 제공하는 것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참여와 관련해서 학생 평의회 창설의 지원, 아동들에게 새로운 농업 기술을 교육하고, 지역 사회에서 참여를 지원하는 것 등이 있다.

<벨기에 비정부 기구 협조에서 아동의 권리>

벨기에에는 NGO, 대학, 비영리 단체, 무역단체, 지역 평의회 등의 사업과 계획의 발전을 지원한다. 이러한 사업 예산의 최대 85%까지가 정부 지원에 의할 수 있다. 비정부 기구가 현장에서 갖는 영향력이 상당하므로 아동의 권리를 이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 요건들을 충족하여 NGO로 인정을 받으면 벨기에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1999년 국제협력에 관한 벨기에 법령과 추가적인 행정 결정들이 이에 대한 주요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공적 개발 원조뿐만 아니라 비정부 기구도 아동의 권리를 포함한 네 가지의 교차 쟁점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The Platform “Rights of the Child in Development Cooperation”>

이 조직은 2007년 벨기에 ECPAT, Plan Belgium과 벨기에 UNICEF에 의해서 형성된 것으로 개발 협력과 아동의 권리에 관해 존재하는 전문적 지식들을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벨기에 내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창설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들을 조직하고 국제 협력에서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벨기에 개발 협력에 관한 1999년 법률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분야에서 바르게 적용되는지를 감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정부 인사들에게 조언을 제공하며 기술 훈련을 제공하기도 한다. Vlaams Internationaal Centrum(VIC)와 벨기에적십자사도 이 조직에서 활동하며 연구센터와 아동의 권리와 개발 협력에 관한 현장 경험이 있는 독립적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2. 아동 권리에 관한 전략 문서(Strategy Paper)

1) 아동권리협약과 벨기에 협력정책

벨기에에는 아동권리협약을 2005년 6월 7일 비준하였고 이에 벨기에 의회는 이에 따른 벨기에의 국제적 책무를 수용하였다. 이는 벨기에가 벨기에 개발 협력에 관한 다섯 가지 우선순위 부문에 있어서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네 가지 원칙들을 존중한다는 것을 뜻한다. 아동권리협약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파트너 국가들은 존중되어야 하는데, 이로 인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원칙들과 조항들을 외면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벨기에 협력의 다섯 가지 우선순위 부문에서 아동 권리”에 대한 권고들

아동의 권리 중심의 접근은 세 가지 다른 단계에서의 동시적 활동을 전제하고 있다.

-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한 구조와 기제들을 강화한다.
- 아동의 권리들을 존중하기 위한 특별하고도 실제적인 조치를 취한다.
- 정책 설계자들과 전문가들, 언론, 사적 부문, 시민 사회와 일반 대중에게 아동의 권리에 대한 경각심을 키운다.

(1) 정책에 관한 권고들

벨기에 협력에서 다섯 가지 우선순위 부문들(five priority sectors), 즉 교육, 건강, 농업과 식량안보, 기본 인프라구조와 지역사회 형성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가 신장되도록 하는 것이 빈곤과의 싸움에서 필수적인데 이는 정책적 측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파트너 국가들과 후원자들과 함께 벨기에 정부는

(2) 아동권리협약의 적용에 관하여

- 아동권리협약을 번역하고 아동권리협약 선택 의정서들을 비준하고 번역하는데 힘쓰며 그 외 적절한 국제 인권기제들을 국내 법령에 적용하기에 힘쓴다.
- 아동권리협약의 비준에 있어서 유보나 실제적 제약 사항들을 철폐하기에 힘쓴다.
- 아동 권리 이사회에 의해 출판되는 “최종 관찰들”과 “일반 논평 (General Comments)”을 지키도록 파트너 국가들이 힘쓰도록 하며, 국내 전략을 세울 때 이를 고려할 것이다.

(3) 벨기에 정책의 일관성과 관련하여 국제 개발 협력의 목표들을 고려할 때에

- 내부적으로는 개발에 있어서 일관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벨기에 정책의 모든 측면에서 아동의 권리를 통합할 것이다. 아동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 설계자들, 언론, 전문가 집단, 시민 사회와 벨기에 대중들이 절차 과정에서 대화에 참여할 것이다.
- 외부적으로는 다른 후원자들, 특히 유럽의 협력과 정책을 조화시킬 것이나 국제적 담론에서도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다.

(4) 파트너 국가들의 역량성을 키우는 것과 관련해서

- 파트너 국가들과 사회, 정책적 대화에 있어서 아동 권리의 존중을 포함시키고
- 파트너 국가들이 그들의 정책 형성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를 포함시키도록 장려하며 이에 따른 활동 계획과 적용, 후속조치와 감시 및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장려한다. 특히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들의 필요와 권리를 주목하며 성 평등에 관한 원칙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기술적 권고사항들

기술적 권고사항들은 각 부문에 관하여 아동보호(Protection), 시설 및 서비스 접근권(Provision), 아동 참여(Participation)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 교육 분야

- 아동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파트너 국가들이 아동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사들을 훈련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아동들이 특히 전쟁과 재난 상황에서 교육 시설들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장려한다. 교육은 아동 노동과 아동 불법매매, 아동 매춘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며, 특히 생존 기술 중심의 교육은 각종 착취와 학대와 차별로부터 아동을 보호한다.
- 아동에게 서비스와 시설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파트너 국가들이 국내적 차원에서 역량성을 강화하고, 교육시설을 지역 사회 전체 개발을 위한 거점으로 삼도록 장려한다. 이는 빈곤 감소, 위생, 건강과 HIV/AIDS 대응과도 관련되며 여성 차별을 포함하여 각종 착취, 학대와 차별에 대응하는 방법이다. 교육의 질

적 수준을 높이도록 파트너 국가들을 장려하며, 아동권리협약 제 28, 제29조에 따라 교육 기관을 조직할 것이 장려된다.

- 아동의 참여와 관련해서는 파트너 국가들이 아동의 표현의 자유, 생각의 자유를 존중하도록 장려하며, 민주적 방법으로 교육 기관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표출 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2) 건강 분야

- 아동의 보호와 관련해서 파트너 국가들이 여성성기절제(FGM)와 같은 관습에 대한 zero tolerance 정책을 펼치고 경각심을 갖도록 장려한다. 또한 HIV/AIDS의 감염으로부터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과 아동들을 보호할 것을 장려하고, 마약과 음주로부터 아동을 보호한다. 벨기에는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 아동과 모성 보호에 있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 아동에 대한 서비스와 시설 측면에서는 파트너 국가들이 질적 수준을 갖춘 보건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건강복지 시스템과 지역 사회 시설들을 갖출 것을 장려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 구호나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학대, 전쟁, 아동 매매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 아동들을 보호할 것이다.
- 아동의 참여와 관련해서는 특히 어린 엄마들 또는 미래 엄마가 될 소녀들에게 아동의 교육과 건강복지 서비스에 관하여 발언권을 갖도록 한다.

(3) 농업과 식량 안보 부문

- 아동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파트너 국가들이 생산을 다양화하고 가축 수입을 증가시키며 모든 아동들이 식량 안보에 관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장려할 것이다. 특히 지방 및 도시 슬럼에서 여성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가질 것이며 다섯 살이 안 된 아동들과 같이 취약한 집단에서의 만성 영양실조에 대응할 것이다. 또한

아동의 식수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것인데 식수에 대한 민영화는 이러한 권리를 위협한다.

- 아동에 대한 서비스와 시설 보장과 관련해서는 가장 취약한 집단, 특히 기근과 분쟁에서 아동들에게 식량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고, 가족 수입을 책임지는 아동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도록 파트너 국가들을 장려하고 농업 생산을 가능케 하는 자원이 지속 가능하도록 관리할 것을 장려한다.
- 아동의 참여와 관련해서는 파트너 국가들이 아동이 개선된 농업 및 식량 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이는 교육과 연계해서 가능할 것이다.

(4) 기본 인프라구조

- 아동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파트너 국가들이 얻을 수 있는 벽이 있는 우물, 위생 시설, 전기 시설 등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 구조를 개선하도록 장려한다. 아동에게 보다 나은 생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 환경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전기 시설을 갖추고 자전거를 보급하여 아동들을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1인실 건축물은 아동 성적 학대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건축 시에 아동 보호를 고려할 것이다.
- 서비스, 시설의 보장과 관련해서는 특히 식수 공급과 관련해서 식수에의 접근성과 아동의 안전, 물의 질적 수준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건강 센터에의 접근성 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 아동의 생활 환경에 대한 참여 통로로 아동들에 의한 라디오 프로그램은 사회 토론에 아동을 참여시키는 훌륭한 수단이 된다.

(5) 지역 사회 건설 부문

- 아동 보호와 관련하여 파트너 국가들이 안전한 환경을 형성하고 아동들이 사회 환경 속에서 자기 존중을 개발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장려한다. 특히 출생 등록(Birth registration)에 관하여 파트너 국가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필요하다면 법령을 개정해서 출생 등록을 장려하도록 한다. 또한 가정 내 폭력(Violence)에 대한 법적 면제에 대응하며 아동 학대를 철폐하기 위한 경험 사례를 전파한다. 또한 파트너 국가들이 아동인권협약의 조항들과 원칙들을 국내적으로 지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역량성을 키우도록 장려할 것이다. 또한 입양(Adoption)에 관하여 아동에게 가장 이익이 되도록 하며 국제 입양에 관한 헤이그 협약을 비준하고 따르도록 장려한다. 아동 노동(Child labour)에 있어서 특히 ILO 제182조에 규정된 매춘, 노예노동, 매매 및 위험한 노동에 관한 아동 매매에 대응하도록 파트너 국가들을 장려한다. 무력분쟁에서 아동들에 있어서 특히 여자 아이들을 보호하고 무장 세력들에 의한 아동들의 모집을 방지하며 이들에 대한 형사 법안을 제안한다.

- 서비스와 시설 보장과 관련해서는 파트너 국가들이 단체들을 장려하고 훈련 기관들을 조직하고 사업 및 계획을 추진하도록 한다.
- 아동의 참여와 관련해서는 특히 무력분쟁에서 예전 아동 병사들이 사업에 증인 또는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5 가

제 1 절 개 관

개발 협력(development cooperation)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 감시 및 평가가 이루어진다. 벨기에의 감시 및 평가부서(Monitoring and Evaluation Department)는 벨기에개발협력총국(DGD)에게 직접 보고하는 내부 부서이다. 감시 및 평가부서는 특별 평가단(Special Evaluation Unit)과 긴밀하게 협력하는데, 특별 평가단이란 1999년에 벨기에 법령(Royal Decree)에 의해 창설된 외부 기관으로 공적개발원조(ODA)의

범위 안에서 수행되는 모든 종류의 사업 및 계획에 관한 전략과 정책들을 평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벨기에의 공적개발원조평가는 이와 같은 내부기관 및 외부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절을 바꾸어 차례대로 이를 검토할 것이다.

제 2 절 벨기에개발협력총국 내부 평가체계

벨기에개발협력총국 내부적 감시 및 평가는 모두 개발 협력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감시와 평가 모두 벨기에의 개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들을 가능한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다. 과거 경험을 검토함으로써 장래 활동에 대한 의사 결정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감시와 평가는 벨기에개발협력총국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며 이해당자들(예를 들어 장관들, 의회 및 일반 시민)에 대해 활동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게 한다.

I. 감시(monitoring)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는 감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체계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는 지속적 기능으로서
- 진행 중인 개발에 관하여
- 그리고 특정 지표에 근거하여
- 관리자 및 주요 이해당사자들에게 기금의 사용의 진행 정도와 목표 달성 정도에 관한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벨기에개발협력총국이 예산을 원조하거나 공동으로 원조하는 개입에 대해 직접 시행을 담당하지는 않지만, 후원 기관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갖는다. 따라서 벨기에개발협력총국은 사업들과 그 결과에 대해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감시는 벨기에개발협력총국(DGD)의 파트너들이 직접 시행하는 개입들을 관리하는 일환이기 때문이다.

II. 평가(evaluation)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에 의한 평가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 체계적이고, 최대한 객관적인 평가(assessment)로서
- 진행 중이거나 완성된 사업, 계획 또는 정책에 관하여
- 그리고 이의 설계, 시행 그리고 결과들에 대하여
- 적절성, 목표의 달성여부, 개발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평가는 신뢰할 수 있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수혜자와 후원자 모두가 의사 결정에 있어서 이로 인한 교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II. 감시 및 평가 부서(M&E Department)

벨기에의 ‘감시 및 평가 부서’는 2003년과 2006년에 각각 구조 조정된 바 있으며, 벨기에개발협력총국의 Director-General 에게 직접 보고하는 내부 부서이다. 주요 기능은 벨기에개발협력총국이 과거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도록 돕는 것이며, 벨기에개발협력총국의 감시 및 평가 능력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한다. 앞에서 검토했듯이 ‘감시 및 평가 부서’는 외부기관인 특별 평가 단과 긴밀하게 협력한다.

평가 보고서는 이해 당사자들에게 보고되며, 이에 대한 피드백이 제공된다. ‘감시 및 평가 부서’는 또한 평가 보고서에 제시된 결론들과 권고들에 대하여 관리 차원에서 대응을 개시한다.

‘감시 및 평가 부서’가 감시와 평가에 있어서 사용하는 도구 및 방법론은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와 Europeaid 구성원에 의해 초안된 지침에 근거한 것이다. 벨기에

개발원조를 평가할 필요가 있지만 장래에는 국제 공동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파트너 국가들의 요구와 절차에 적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에 의해 마련된 권고들과 벨기에도 참여한 파리 선언의 조화(harmonization) 및 정치적 지지(alignment)에 따르는 것이기도 하다.

제 3 절 최근 평가 보고서

벨기에의 개발 협력에 관한 최근의 평가 보고서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지방분권과 지역 정부에 대한 벨기에의 원조에 대한 평가(2005)
 - 보건 분야에 관한 벨기에의 개발원조에 대한 평가(2005)
 - 지역 NGO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예산 후원하는 벨기에 시스템에 관한 평가(2006)
 - 장기간 예산 원조 계획에 관한 벨기에의 기여에 관한 평가(2007)
 - 교육 분야에 있어서 벨기에 개발 협력에 관한 쟁점적 평가(2007)
 - 벨기에 생존 기금에 관한 중간 평가(2008)
 - 벨기에기술협력(BTC)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관한 평가(2008)
 - 벨기에 협력의 “농업과 식량 안보” 전략 문서에 관한 평가(2009)
- 이 중에서 가장 최근의 “농업과 식량 안보” 전략 문서에 관한 평가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 평가 보고서는 벨기에 벨기에개발협력총국의 요청에 의하여 ADE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I. 평가의 대상과 목적

평가의 대상인 “농업과 식량 안보”에 관한 전략 문서(Strategy Paper)는 벨기에 협력(Belgian cooperation)이 협력의 주요 다섯 가지 분야에 관한 각각의 전략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며, 이것은 4년 마다 평가되고 갱신되어야 한다. 본 평가 보고서는

2003-2007 기간 동안 이것이 모든 파트너 국가들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평가의 절차와 양식은 2000년 9월 17일 벨기에의 국제 협력에 관한 법령(Royal Decree)의 효력 규정 제6조 제2항과 1999년 5월 25일 법령 제7조와 8조에 의해서 구체화되어 있다. 평가는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 위원회(OECD DAC)가 정의하는 다섯 가지 평가 항목, 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 가능성, 그리고 영향력이다.

이 주제에 관한 평가의 목적은 관찰, 교훈, 결론 그리고 권고라는 형식으로서 농업과 식량 안보에 관한 벨기에 협력의 새로운 전략 개념에 관한 필요한 요소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이 새로운 전략에 따라 양자적, 간접적, 다자적인 여러 협력의 경로를 통해 벨기에가 취할 태도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한편, 벨기에 생존 기금(BSF)에 의해 후원되는 개입들은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는 이미 작성된 벨기에개발협력총국의 중간 평가의 결론과 권고들을 참조한다. 본 평가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들도 고려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성 평등, 환경에 관한 주제, 사회 경제적 주제를 고려하며 파트너 국가들의 정치적 목표와 자국 우선 사항들과의 관계에서 벨기에 협력에 의해 후원되는 개입들의 영향력과 적절성에 관한 사항(alignment)이 고려된다. 또한 정책들과 활동들의 일관성, 상호 보완성 그리고 조화 여부, 농업 부문과 식량 안보 부문 간의 관계에서 일관성도 고려된다.

II. 평가 방법론

본 평가는 세 가지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우선 1) 서류 단계는 2008년 9월부터 2009년 1월 까지 진행되었고, 2) 현장 단계는 2009년 2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었으며 국가 보고서들의 발표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3) 종합 단계는 2009년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었다.

우선 서류 단계에서는 평가 질문들을 만들고, 벨기에개발협력총국 본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 질문에 대한 예상 답안들을 만들었다. 이 단계에서 평가 팀은 벨기에개발협력총국이 2003년부터 2007년 까지 후원한 개입들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서류 분석 작업을 하였다.

현장 단계에서는 니제르, 콩고민주공화국, 세네갈, 우간다, 페루, 베트남에서 이루어지는 33개의 개입들에 관한 현장 방문이 이루어졌다. 이 단계에서는 보완적 정보의 수집, 평가 질문에 대한 예상 답안들에 대한 토론과 분석의 실현에 집중하였다.

종합 단계에서는 평가 보고서의 작성이 이루어지는 단계였으며, 고위급 전문가들이 참여한 워크숍에서 평가팀의 의견이 토의되었다. 주요 보고서들과 예비 결론들에 관하여 벨기에개발협력총국에서의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간의 대담과 벨기에기술협력, NGO 그리고 대학 차원에서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벨기에 협력이 FAO, IFAD 그리고 WFP의 세 기관을 통해 수행된 사례에 대한 현장 미션이 로마에서 있었는데, 이 방문을 통해 다차적 차원에서 벨기에가 어떠한 협력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토의하였다.

평가는 다음과 같은 12 가지 평가 질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평가 질문들은 개입 논리의 분석(intervention logic)에 의해 준비되고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에 의해 정의된 다섯 가지 평가 항목에 근거한 것이며 이에 평등한 기회와 자원의 관리와 지구 온난화에 관한 질문이 추가되었다.

평가자는 벨기에 협력의 농업 및 식량 안보전략에 관한 개입 논리를 형성하는데, 이는 2가지 국제 사회의 목표, 4가지 전략적 목표,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의 관례에 근거한 5 가지 가능한 개입들, 2 종류의 목표 지역과 3개의 가능한 수혜 집단에 의해 이루어진

다. 추가적으로 “농업 및 식량 안보”에 관한 전략 문서는 세 가지 전략 측면에 의해 구성되고 네 가지 지도 원칙에 따라 수행된다.

- 전략 측면(strategic axes); 1) 원조를 정책과 국가 계획의 중심으로 놓고 이를 강화하는 데에 기여한다. 2) 농업 개발의 새로운 행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한다. 3) 소규모 농부들과 농부 집단에게 생산 요소, 서비스와 시장에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한다.
- 지도 원칙; 1) 참여적 접근, 2) 지속 가능한 자원의 관리, 3) 지속 가능한 시행 절차, 4) 평등한 기회부여.
- 목표; 목표 지역으로는 1) 국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경제 수준인 지역, 2) 도시 및 도시 근교 지역이 있고, 목표 집단으로는 1) 소규모의 빈곤한 농부, 2) 취약하고 소외된 계층, 3) 그 외 농부들이 있다.
-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에 근거한 개입의 양상; 1) 농업 개발과 가축, 2)어업과 수산업, 3) 임업, 4) 다양한 부문에서의 지역 개발, 5) 식량 원조의 부문.
- 구체적인 목표들; 1) 소규모 농부들과 빈곤 계층의 수입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2) 지속 가능한 생산 체계를 증진시킨다, 3) 빈곤 계층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보장한다, 4) 지역 경제와 지역 안정성의 개발에 기여한다.
- 국제 사회의 목표들; 1) 식량 안보를 개선한다, 2) 빈곤에 대처한다.

평가 질문들은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의 다섯 가지 평가 항목들을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략 문서의 개입 논리의 요소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제시되었다.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질문1. 전략의 적절성	본 전략 문서는 소규모 농부들의 필요와 빈곤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기반을 어느 정도 마련했는가?
질문2. 전략 시행의 일관성	농업 개발과 식량 안보의 측면과 국가전략과 개입 측면에서 전략 문서가 어느 정도 벨기에 협력에 적용되었는가?
질문3. 벨기에 협력 전체와 다양한 개입 통로에서 전략의 일관성	“농업 및 식량 안보” 전략 문서가 Belgian Development Cooperation의 국제적 전략과 개입 통로와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갖는가?
질문4. 농업 수입을 증가를 위한 개입 효과성	개입을 통한 농업 수입의 지속적 증가가 어느 정도 가능하였는가?
질문5. 식량 안보 개선을 위한 개입 효과성	개입을 통해 지역 인구를 위한 식량 안보의 개선을 어느 정도 이루었는가?
질문6. 지역 경제에 관한 개입 효과성	개입을 통해 지역 인구를 위한 사회-경제적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
질문7. 제도적 역량의 강화	개입을 통해 파트너들의 역량의 강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
질문8. 지속 가능성	달성된 결과들과 효과들이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한가?
질문9. 전략과 개입의 효율성	전략 문서와 개입 시행 양식과 후속 조치들이 기대 결과의 달성을 어느 정도 조력/저해하였는가?
질문10. 조정과 상호보완성	벨기에 협력의 개입에 의해 국가 및 지역 정책과 다른 개발 협력 파트너들과의 조정과 상호 보완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가?
질문11. 평등한 기회	개입에 있어 어느 정도 평등한 기회에 관한 문제가 고려되었는가?

질문12. 자원 관리와 기후 변화	농업 및 식량 안보의 개입에서 자원 관리와 기후 변화의 문제가 어느 정도 고려되었는가?
--------------------	--

제 4 절 특별 평가단(special evaluation unit)

특별 평가단은 공적개발원조(ODA)에 관한 연방 국가의 모든 활동들에 대해 평가하는 과제를 담당한다. 평가단은 매년 모든 관련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우선순위로 계획을 짜고 평가를 통해 얻은 결과들과 교훈에 대해 연간보고서를 작성하여 개발 협력 장관에게 제출한다. 장관은 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2003년 이후 완성된 주요 보고서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중앙 아프리카에서 국경 없는 법률가 사업에 관한 평가 2001-2003
- 벨기에와 볼리비아 간 협력에 관한 명암 1992-2004
- 벨기에의 NGO 연합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
- 벨기에 노동조합 협력 사업에 관한 평가 2003-2005
- 양자 간 개발 협력에 관한 평가 1999-2005
- 벨기에 인도적 지원에 관한 평가 2002-2006
- 개발 국가들에 대한 벨기에 투자 회사(BIO)에 관한 평가
- 르완다에서 벨기에 개발 협력에 관한 평가

제 5 절 원조효과성

벨기에의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의 peer review 제5장에서는 원조효과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벨기에 는 개발 협력 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원조 효과성 안건을 적용한다. 원조 효과성 안건이란 벨기에개발협력총국이 파리 선언과 아크라

행동계획(Accra Agenda for Action, AAA)을 적용하기 위한 실제적 접근이다. 2007년에 벨기에개발협력총국은 조화와 정치적지지 계획(Harmonisation and Alignment Plan)에 따라 작업그룹을 결성하였는데 처음에는 2008년 Accra에서 개최된 원조 효과성에 관한 제3차 고위급 회의(Third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를 준비하는 데에 힘썼다. 회의 이후에는 아크라행동계획(AAA)을 적용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유용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실제적 접근이 이루어졌다.

원조효과성을 위해 벨기에 행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있어 강한 정치적 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벨기에의 활동은 유럽개발합의(European Consensus on Development, 2006)와 상호보완성과 개발 정책에서 노동 부문에 관한 행동규칙(Code of Conduct on Complementarity and the Division of Labour in Development, 2007)에 의해 뒷받침되어있다. 지난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 peer review 이후로, 특히 지난 2년간 벨기에의 원조효과성에 관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파리 선언 지표에 근거하여 채택된 정부 협조를 위한 조화와 정치적지지 계획이 포함된다. 벨기에에는 또한 순환 적용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확장하였고 몇몇 파트너 국가들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 게다가, 벨기에에는 18개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지리적 중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의 국가들에서 우선순위 부문의 수를 감소시켰다. 2005년 이래로 모든 정부 정책은 개발 협력에 있어 원조 효과성을 언급하며 2008년 11월 정책은 아크라행동계획(AAA)을 적용하기 위한 긴급행동 요소를 밝혔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유럽연합의 행동 규칙을 지리적 요소, 제한된 부문에 집중하여 시행할 것, 2) 파트너 국가들의 개발에 있어서 제도적 역량성을 지원하는 것, 3) 지시협력프로그램(Indicative cooperation programmes, ICPs)가 개정된 방법에 적합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2010년 후반기에 유럽연합의 회장직을 이용하여 원조효과성의 적용을 강화시키려는 벨기에의 의도이다.

II. 원조효과성 원칙의 적용에서 벨기에의 진전

파리 선언 감시 설문조사에 의하면 2008년 이래로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벨기에개발협력총국이 비교적 최근 원조효과성에 관한 정책과 전략적 결정을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파리와 아크라행동 계획 책무에 따른 지시협력프로그램(ICPs)을 2008-2010에 시작하는 것을 계획했다.

벨기에 정부는 2009년 NGO와 2010년에는 대학들과 협의하여 원조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혁신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 협의를 통해 벨기에 NGO들은 파트너 국가들을 50국으로 한정하고, 서비스 전달보다는 역량성 개발을 원조하는 것과 파트너 국가의 상황에 맞추고 결과 보고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벨기에 내부적으로 많은 행위자들 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자들로는 노동조합, 연합들이 있다.

벨기에에는 파트너 국가들의 개발에 있어서 주인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파트너 국가들의 우선순위와 체제에 맞추어 개입을 하고자 한다. 이는 파트너 국가의 개발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지시협력프로그램(ICPs)를 준비하기 위한 절차는 2008년에 개정되었고 더 분권적이고 협의적인 성격이다. 지시협력프로그램(ICPs)의 “새로운 세대”에서 벨기에에는 파트너 국가들의 전략과 맞는 부문 계획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2005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peer review에서의 권고에 부응하는 것이다. 벨기에에는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 보완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데, 대표 협의, 사업 중심 원조, 예산 원조 등이 있다. 파트너의 부문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장려되는 바이다. 벨기에에는 정부 협조를 사업 형식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벨기에 기술협력 사업의 경우 2009년에 5백만 유로 이상으로 규모가 성장하였

다. 이는 노력이 분산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장려되는 바이다. 브룬디의 경우에 있어서 벨기에는 파트너들과 대화하는 데에 의욕과 열린 자세를 갖고 임하였고, 사업을 시행할 때에 벨기에기술협력은 사업을 직접 관리하거나 파트너 국가와 공동 관리하는 선택권이 주어졌다. 이러한 공동 관리를 통해 벨기에는 파트너의 역량과 주인의식을 강화하는 것을 원조할 수 있다. 또한 벨기에개발협력총국과 벨기에기술협력이 계속해서 사업에 기반한 원조를 통해 원조효과성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다.

벨기에는 유럽 행동규칙(European Code of Conduct, 2007)에 따라 각 파트너 국가에 있어 오직 두 가지 우선순위에 원조를 집중한다. 브룬디, 르완다 그리고 콩고 민주공화국이 벨기에의 사업이 특히 중요한 곳인데 여기서는 세 가지 부문에 집중하기로 했다. 벨기에가 같은 부문에 관해 지시협력프로그램(ICPs)을 세 번 연속(12년) 참여한다는 것은 장기 계획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우선순위 부문들은 대사관에 의해 제안되는 것이 적절할 것인데 이는 효과적인 국가 내부 조화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벨기에는 교차 이슈(cross-cutting issues)에 대해서도 신중한 고려를 할 것인데 예를 들어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여성권리와 환경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브룬디에 있어서는 이러한 주제들이 기회보다는 제약으로 여겨진 것이 사실이다.

벨기에개발협력총국과 벨기에기술협력은 결과에 기반한 관리(results-based management)에 보다 주목하고 있으나 기능적 체계가 부족하다. 결과에 기반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벨기에 체계로는 2008년 벨기에개발협력총국 네트워크 형성을 들 수 있다. 벨기에개발협력총국 내부 관리 계획(2008-2013)은 명백한 결과 지표를 밝히고 있다. 결과를 모든 새로운 지시협력프로그램(ICPs)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벨기에개발협력총국은 결과 기반 관리가 개발 노력에 지침이 될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할 것이며 단지 추가적인 관료적 단계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Ⅲ. 장래 고려 사항들

벨기에는 새로운 지시협력프로그램(ICPs)의 형성 절차가 자문을 제공하고 분권적이 되도록 계획을 시행하도록 장려되며, 우선순위 부문들에 대한 선택권도 이에 포함된다.

벨기에는 신뢰할 만한 국내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절차를 적용할 것이다. 민감한 사안에 관해서는 유동적인 접근이 고려되며 제도적 역량에 따라 국내 시스템을 이용한다.

벨기에개발협력총국과 벨기에기술협력은 새로운 개발 개입을 설계할 때에 결과에 기반한 관리와 교훈의 활용도를 높일 것이며, 12년간 능동적으로 한 부문에 참여하는 것의 장점을 활용할 것이다.

벨기에 시민 사회와 대화를 장려하며 정부와 NGO 간 2009년 합의에 따른 책무를 시행하는 것이 장려된다. 이러한 책무들을 사업 계획과 예산 실행에 있어 반영해야 할 것이다.

6

제 1 절 한국 공적개발원조 법제

I. 개 요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에 관한 법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법률 제9938호, 2010. 1.25, 제정)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296호, 2010. 7.21, 제정)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9993호, 2010. 2. 4, 일부개정)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144호, 2010. 5. 4, 일부개정)
- 한국국제협력단법(법률 제10095호, 2010. 3.17, 일부개정)

-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276호, 2007.9.17, 일부개정)
- 대외경제협력기금법(법률 제10303호, 2010.5.17, 일부개정)
-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일부개정)

II.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

한국의 ODA 운영체제는 크게 양자간 협력과 다자간 협력으로 나뉘며 양자간 협력은 기본적인 실시체계가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이원화 되어 있다. 양자 간 공적개발원조 업무는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및 KOICA와 수출입은행 등 수탁기관 별로 분산 운영되어 왔다. 무상원조에 해당하는 무상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은 외교통상부의 감독 하에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해외연수생 초청, 전문인력 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등 무상원조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관지원 등의 유상원조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따라 유상원조는 재정경제부 감독 하에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에서 집행하고 있다.

이러한 분리된 공적원조의 이행으로 그리하여 무상·유상 원조 간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아울러 통일된 원조이념과 목표가 결여되어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고 원조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유·무상원조를 포괄하는 원조이념 및 목적, 관련기구 설치 등을 규정하는 ‘대외원조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 2005년 11월에는 “대외원조개선종합대책”을 통해 대외원조법 제정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17대 국회에서는 ODA 기본법 관련 4개 의원발의 법안이 제출되었으며 김부겸 의원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17대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18대 국회에서는 2008년 7월 송민순 의원의 ‘공적개발원조기본법’ 및 진영 의원의 ‘대외원조기본법’, 2008년 10월

배영식 의원의 ‘대외개발협력법’, 2008년 11월 김부겸 의원의 ‘국제개발협력법’이 각각 발의되었었다. 이와 별도로 정부 차원의 법제 마련이 진행되어 2010년 1월 25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10년 7월 26일 시행되었다. 동 법의 시행을 위하여 2010년 7월 21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되었으며,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목적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제1조). 이에 따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를 두어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제7조). 한국 ODA에 관한 기본계획(5년간)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이 주관기관(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 무상협력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수립지침을 정하고 주관기관은 시행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분야별 기본계획안을 제출하여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도록 한다(제8조). 한국 ODA에 관한 시행계획은 각 시행기관이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며, 주관기관은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한다(제11조). 주관기관인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는 5년간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제 한국의 ODA를 주관하며 i) 분야별 기본계획안 및 연간종합시행계획안의 작성, ii) 분야별 연간종합시행계획의 이행 점검, iii)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홍보, iv)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여하는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제10조). 주관기관은 중점협력대상국 선정기준 및 대상국가 안을 국제개발협력위원회로 제출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요청 혹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국가를 변경할 수 있다(제12조).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시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한다(제13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러한 사항으로 시행령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까지),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 정보 공개의 대상(시행령 제13조)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한국의 ODA에 관한 분야별 기본계획안의 수립, 이 분야별 기본계획안과 연간 기본계획안을 확정한다. 또한 주관기관의 ODA 대상국가 선정 행위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ODA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주관기관인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는 5년간의 기본계획에 따라 자신의 분야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연간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며 이행을 점검한다. 시행기관은 연간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주관기관은 이에 대하여 협의 조정한다.

Ⅲ.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지구촌의 기상이변, 대형사고 등으로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는 일이 많아졌다. 이에 대규모 재난 시에 인명구조 및 재난구호에 기여하여 인도주의와 인류애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피해국에 긴급구호물품의 수송, 긴급구호대의 파견, 임시 재해복구 등 긴급구호활동을 신속하고도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외긴급구호란 i)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 ii) 구호물품의 지원, iii) 현금지원, iv) 보건의료활동, v) 수송지원, vi) 임시 재해복구, vii) 재해 또는 사고 원인의 조사 분석·해외재난과 관련된 유가족에 대한 현지 상담 등 해외긴급구호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제5조, 시행령 제2조)를 말한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외교통상부장관은 평상시 해외재난에 대비하여 그 종류·규모·특성에 따라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구호물품·장비의 비축·보관·정비, 구호인력·물품의 신속한 소집·수송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 해외긴급구호대책을 수립한다(제6조 제1항). 또한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해외긴급구조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등으로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하고, 해외긴급구호대 또는 해외긴급구조대를 파견할 수 있다(제11조 및 제12조). 또한 필요한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에게 인력·장비·물품 및 수송장비 등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제13조).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구성(시행령 제5조),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업무 분장(시행령 제6조), 해외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시행령 제7조)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구촌의 기상이변, 대형사고 등으로 인한 대규모 해외 재난 발생시를 대비하

여 해외긴급구호대책을 수립한다.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해외긴급구호협의회는 정부에 의하여 설치되며 i) 해외긴급구호의 제공 여부에 관한 사항, ii) 해외긴급구호의 내용 및 규모에 관한 사항, iii)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방안에 관한 사항, iv) 정부와 민간 간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이러한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IV. 한국 국제협력단법 및 시행령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개발도상지역으로부터의 점증하는 협력요청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에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를 총괄적으로 전담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 형태의 한국국제협력단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법」과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은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제7조). i) 개발도상국가를 위한 사업으로서 연수생의 초청, 전문인력의 파견, 해외봉사단의 파견, 개발조사, 재난구호, 물자·자금 및 시설의 지원, ii) 국제협력을 위한 민간단체의 국제협력활동에 대한 지원, 외국의 원조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국제협력에 관한 이념 및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조사·연구, 그 밖에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iii)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iv) 위의 사업에 따른 교육훈련·홍보와 그 밖의 부대사업을 수행한다. 또한 이 법에 따라서 외교통상부장관은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 퇴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에 대하여 1천원의 국제빈곤퇴치

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제18조의 2). 이러한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 퇴치를 위한 용도로 국제협력단에 의하여 사용된다(제15조).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은 한국국제협력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구성(시행령 제2조에서 제4조), 한국국제협력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에 관한 세부사항(시행령 제6조에서 제10조),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징수업무의 대행, 관리·운영(시행령 제10조의 2에서 제10조의 7)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법」과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은 국제협력단의 설립과 운영 그 출자금의 형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V.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및 시행령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및 「대외경제협력기금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정부는 대외경제협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그 기금은 i) 정부출연금, ii) 정부투자기관 또는 경제단체의 출연금, iii)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iv)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차입금, v)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vi) 기금의 운용수입금으로 조성된다(제3조, 제4조).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금융기관등이나 외국정부, 외국금융기관, 국제금융기구 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도 있다(제5조).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i) 개도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데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협력사업’이라 함)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대출 또는 출자, ii) 협력사업의 준비를 위한 조사 또는 협력
사업의 시험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용자, iii) 개도국의 경제
안정을 위하여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물자를 당해 국가가 대한민
국으로부터 수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용자, iv) 기타 개도국의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의 용자, v)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vi)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제6조). 이 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맡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제9조). 기획재정부 산하 기금운용위원회기금은 운용·
관리에 관한 i)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ii) 기금운용계
획, iii) 결산보고사항의 사항을 심의한다(제10조).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행령은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에 관한 사항(시행령 제2조), 기금운용위
원회의 구성 및 운영(시행령 제5조에서 제7조), 개도국 정부로부터의
요청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절차(시행령 제11조), 기획재
정부 장관의 기금운영계획수립(시행령 제12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및 「대외경제협력기금 시행령」은 다음과 같
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의 산업발전 및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
하여 한국 정부는 경제협력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이렇게 조성된 경
제협력기금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운영·관리하며, 기획재정부 산하

기금운용위원회기금은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계획, 결산보고사항을 심의한다.

제 2 절 법제적 차원의 시사점

제 3 절 한국 공적개발원조 정책

I. 수행방식

한국의 ODA 운영체계는 크게 양자간 협력과 다자간 협력으로 나뉘며 양자간 협력은 기본적인 실시체계가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이원화 되어 있다. 무상원조에 해당하는 무상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은 외교통상부 감독 하에 원조집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이 집행하고, 유상원조는 재정경제부 감독 하에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편 무상원조 중 무상자금협력사업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전담하고 있지만, 기술협력사업은 그 외 다른 정부부처 및 기관에서도 일부 분담, 실시하고 있다.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무상협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각각 주관한다. 다자간 개발협력 중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밖의 기구와의 협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주관한다.

II. 수행지역

1. 아시아

한국은 아시아 지역내 경제성장 및 균형발전 지원, 정부 행정역량 및 투명성 강화, 사회개발과 빈곤퇴치 지원,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

한 개발을 개발협력사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 원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주요 수원국으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방글라데시가 있다. 아시아 지역은 무상원조사업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2006년 한국국제협력단 협력사업 예산의 36%이상이 지원되고 있다.

2. 아프리카

최빈국이 다수 위치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보건, 교육, 농촌개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고 안정적인 북아프리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 행정제도, 산업에너지 분야를 지원 하는 등 차별화된 지원전략을 갖고 있다. 이외에도 AU, NEPAD 등의 지역협력체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아프리카의 자체적인 개발노력과 빈곤퇴치 및 유엔 새천년개발계획(MDGs) 달성을 지원하고 있다.

3. 중 동

지원협력 대상지역으로서의 중요성이 크고 플랜트 건설 등 인프라 시장도 매우 활발하여 경제개발경험 전수 위주의 지원이 필요하다. 중 동 지역의 평화정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정부 행정역량강화 및 제도개선, 취약률 제고 및 실업률 감소를 위한 기초교육 및 직업 훈련 등 교육분야 기반 구축,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식수개발 및 기초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지식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 기술분야를 중점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별사업으로 이라크 재건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차 이라크 재건지원사업으로 2003~ 2007년간 총 2.6억불 무상원조를 지원 중에 있으며, 한·미 연합 재건지원팀인 ‘아르빌 지방재건팀(Regional Reconstruction Team)을 출범시켜 활동하고 있다.

4. CIS 지역

공산체제에서 전화한 국가들이 대부분인 이 지역은 부존자원의 양과 개발 정도에 따라 국가별 발전 수준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시장경제체제로의 원만하고 안정적인 이행달성을 위한 행정제도 및 인적자원개발 등을 중심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 중남미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현황을 고려하여 절대 빈곤 및 사회불평등 감소를 통한 중남미 경제사회발전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정부 공공행정역량 및 투명성 강조, 경제성장 촉진을 통한 빈곤완화를 위한 자생력 향상,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원조를 실시하고 있다. 저개발국가 위주로 교육 보건 및 행정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있다.

Ⅲ. 수행주체 및 수행사업

1.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정부는 2005년 11월 15일(화) 국무회의를 열어, 향후 10년간의 우리나라 대외원조(ODA)의 추진방향과 시스템 등을 포함한 ‘대외원조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하였다. 개선대책은 ‘한국형 원조 모델 정립’, ‘추진시스템 개선’, ‘원조의 효율성 제고’, ‘인프라구축’, ‘국민참여 확대’ 등 크게 5개 부문을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2005년 이 전에는 재경부-외교부간 국장급 ODA 실무협의회가 있어 왔으나 대외원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부재했고 더욱이 최근 정부의 거의 모든 부처가 대외원조사업에 뛰어듦에 따라 그 협의 조정 기능의 필요성이 더해져 2005년 이후 대통령령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규정을 공포 시행하였다.

그 이후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이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가 되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 국

무총리실장을 간사위원으로 하고, 기획재정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된다.

2. 한국국제협력단와 그 수행사업

1) 한국국제협력단

무상원조에 해당하는 무상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은 외교통상부 감독하에 원조집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이 집행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빈곤퇴치를 중심으로 개도국의 개발목표 달성과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 지원,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등 국제사회의 개발목표 달성 및 범지구적 과제해결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개도국 우호협력관계 및 국익증진 도모, 국별 전략분야에 대한 효과적 지원으로 대 개도국 우호협력관계 증진, 대외무상원조를 통한 수원국 거버넌스 향상 및 민주주의 확산으로 우리의 국제적 위상제고 및 기여 촉진,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원조 정착, ODA에 대한 국민의 지지 확보 및 참여 확대에 관한 임무를 띄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이 취하는 전략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i) 전략적 협력대상국 선정 및 효율적 배분, ii) 국가별 원조전략 중심의 사업 발굴, iii) 우리 개발경험을 고려한 전략적 중점분야 지원, iv) 프로그램형 사업 수행체제 발전, v) 민간과의 파트너십 강화, vi) 한국적 개발 프로그램 발전, vii) 평가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이다.

2) 수행사업

<교육사업>

개발도상국의 기초교육에 대한 낮은 접근성과 취약한 기능인력 양성시스템은 사회의 발전동력 형성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산업

발전에 저해를 가져오고 있다. 이에 교육사업은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제도정책, 인력양성, 시설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삼고 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저개발 국가에서는 기초교육기회 확대사업, 남미 중동지역에서는 직업훈련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원을 건립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병원건립, 모자보건형성, HIV/AIDS 및 여타전염병 퇴치, 안전한 시수 공급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사업>

보건의료사업은 개발의 잠재력인 인적자원 확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망률 및 질병률 감소를 가져와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각 국가별 지역별 보건의료실태를 고려하여 인적자원개발 및 물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질병예방 중심의 일차보건의료사업 확대를 꾀하고 있다.

<행정제도>

개발도상국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근간이 되는 국가의 제도적 역량 부재한 경우가 많다. 개발도상국의 이러한 제도적 역량 부재를 해소해 주기 위하여 우리 개발경험을 전수사업의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각 국가별 중점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정부혁신, 행정역량 강화, 중소기업육성을, 아프리카에서는 인적자원개발,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을, 중남미에서는 중소기업 육성 및 수출진흥,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촌개발>

농촌개발사업이란 개발도상국 농촌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 기반시설구축,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기발 조성과 영

농기술지원, 농산물 활용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시설지원 사업을 의미한다. 국가별 발전단계 및 자연환경을 고려 최빈국, 저소득국, 내륙국, 해양에 대한 지원을 구별하여 시행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미곡처리기술 지원 등 농수산물 시장접근성 개선 사업을, 동남아시아 최빈국과 아프리카 국가에 대해서는 농어촌의 생활여건의 향상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정보통신>

2000년 이후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은 빈부격차에 따라 수혜 혜택 여부와 그 정도가 달라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 주요 인자로 주목되고 있다. 이에 개발도상국과의 정보화격차가 계속하여 심화되는 경향을 향상시키고자 정보통신에 관한 인프라 지원, 인적자원배출,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하여 대학의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IT훈련 센터의 건설, 전자정부의 지원 등을 행하고 있다.

<산업에너지>

산업에너지는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교통, 에너지, 수자원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개도국은 그 산업발전을 위한 에너지 인프라마저도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에 국가교통 인프라 개선, 국토관리 기반조성 및 종합개발, 에너지 및 사업 인프라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

개도국의 산업환경은 그 다지 발달해 있지 않은 반면, 산업으로 인한 오염에 쉽게 노출되어 있으며, 환경관리 역량마저도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환경파괴로 인한 기후변화로 개발도상국의 빈곤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오염관리능력의 강화, 지

구환경 보전역량의 강화를 위한 건조지역 산림녹화, 열대림 보호, 황사공동관측망 구축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기후변화대응>

개발도상국은 기후변화를 야기시키는 화학물질 배출에 있어서 기여한 바는 적지만 이로 인한 기후변화에 매우 민감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인구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며, 또 농업 종사자 대부분이 최저소득층인 인구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급격한 농산물 생산성의 변화가 개발도상국의 식량안보와 생계를 위협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및 국제사회 노력 선도하고 국별 수요와 발전단계 고려한 지원 사업을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3. 한국수출입은행과 그 수행사업

유상원조는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정부 기관에서 개도국이나 국제기구로 전달되는 자금인 ODA의 한 종류로서 무상원조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ODA는 크게 개도국에게 원리금의 상환의무가 있는가에 따라 유상원조(loan)와 무상원조(grant)로 구분되는데, 장기간에 걸쳐 개도국에 지원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은 한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상원조이다.

1) 한국수출입은행

정부는 한국의 유상원조를 위하여 대외협력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대외협력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1차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맡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게 위탁하며 한국수출입은행은 실질적으로 대외협력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 지원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외경력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증진을 목적으로 ODA 중 유상원조를 전담하고 있다.

2) 수행사업

한국은 원조공여를 위한 재원이 빈약한 점을 고려하여 소액으로 많은 국가를 지원하기 보다는 우리나라와 경제교류가 많거나 경험잠재력이 높은 국가를 선별하여 중점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원대상부문도 다양한 원조분야를 골고루 지원하기 보다는 우리나라가 보다 경쟁력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 국가는 1인당 국민총소득이 연간 약 6500달러이하인 국가 중에서 GDP, 인구규모가 적어 경험 잠재력이 미미한 국가 및 원리금 상환능력이 매우 취약한 국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이다. 또한 이들 국가들을 경험잠재력을 기준으로 중점국가와 일반국가로 분류하여 중점국가 중심으로 지원한다. 지원분야는 개도국의 경제개발에 기여도가 높은 경제·사회 인프라부문과 또한 인간의 기초적 삶의 조건과 관련 있는 보건, 교육, 환경 등의 분야를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분야 중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출효과가 크고 시장 파급효과가 높은 분야를 중점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는 최우선적으로 현지 필요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최우선 지원분야 사업: 기후변화, 식량위기 등 글로벌 이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중점국가 추진 사업: 중점지원국가에서 추진되는 경제 개발 계획상 우선 순위의 사업
- 협조융자사업: 기금의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시아 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 협조융자하는 사업

- 혼합신용 공여사업: 수출입은행의 수출자금과 혼합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기금의 가용성을 증대하는 사업
- 중소기업 추진사업: 중소기업이 전문분야에서 원조관련 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등

3) 지원업무의 종류

<지원자금종류>

대외경제협력기금이 제공하는 자금의 종류는 차주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개도국 정부 또는 법인에 대한 차관이다. 개도국의 경제협력사업을 직접 지원하는 ODA로서 차관의 형태는 개발사업차관,4) 기자재차관,5) 민자사업차관,6) 기금전대차관,7) 물자차관,8) 사업준비차관9)으로 나누어진다. 둘째,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대출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대외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개도국에 해외출자 또는 용자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셋째, 대한민국 법인에 대한 출자이다. 이는 대외협력사업이 추진을 위하여 신설되는 대한민국 법인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
- 4) 댐, 상하수도설비, 도로, 병원, 환경설비, 공장설비 등 개도국의 경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차관
 - 5) 개도국의 특정산업부문, 특정개발계획 또는 특정사업에 필요한 기자재 및 관련 서비스의 조달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차관
 - 6) 민자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개도국 정부 또는 별도로 설립된 법인(민자사업법인)에게 지원하는 차관
 - 7) 개도국의 금융기관을 통하여 특정분야, 특정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육성 또는 자작농 지원과 같이 다수의 최종수익자를 대상으로 하는 차관
 - 8) 개도국의 긴급한 국제수지 지원 및 국내경제 안정을 위하여 물자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차관
 - 9) 경제개발사업의 준비를 위한 조사 또는 경제개발사업의 시험적 실시에 필요한 자금을 용자하는 차관

<혼합신용>

혼합신용이란 원조자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과 수출입은행의 수출신용자금을 혼합하여 금융조건을 양호하게 지원하는 금융방식을 말한다. 혼합신용은 원조수혜국 입장에서는 수출신용에 비하여 보다 유리한 금융조건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외경제협력기금만으로 추진이 곤란하였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협조융자>

협조융자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특정 프로젝트 실시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참여기관의 자금부담과 자금참여에 따르는 위험을 분산하고자 하는 금융기법이다.

<차관지원비제도>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차관은 상황을 전제로 하는 유상원조이나, 차관지원비 지원제도는 차관에 관련된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차관의 부대적 지원제도로 대외경제협력기금 자체 예산으로 행하여지는 무상원조 방식이다. 차관지원비제도에는 지원유망사업에 대한 사업준비와 관련된 사업개발지원비, 기금사업의 실시과정에서 공정의 장기간 지연의 장애요인 발생 등으로 사업의 정상적 진행이 어려울 때 모색되는 사업실시지원비, 지원사업의 완공 이후 유지보수, 관리 등 운영과정에서 관리 인력의 노하우 부족, 부품 및 소모품 부족 등으로 사업이 원활히 가동되지 않는 경우 지원하는 사후관리지원비가 있다.

<소액차관>

소액차관제도는 소규모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의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고 한국 중소기업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사업의 참여를 확대하

기 위하여 도입된 것 차관이다. 차관규모가 2백만 SDR 미만인 소액차관사업은 사업 참여자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사업신청, 심사, 구매 등 제반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시행될 수 있다.

제 4 절 정책적 차원의 시사점

7

부 록

영 어	한 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D ACTIVITY ● AMORTISATION ● ASSOCIATED FINANCING ● BILATERAL ● CLAIM ● COMMITMENT ● CONCESSIONALITY LEVEL ● CONSTANT DOLLARS ● COUNTRY PROGRAMMABLE AID (CPA) ● CREDITOR REPORTING SYSTEM (CRS) ● CREDITS ●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 DAC LIST OF ODA RECIPIENTS ● DEBT REORGANISATION ● DEFLATORS ● DISBURSEMENT ● EVALUATION ● EXPORT CREDITS ● GRACE PERIOD ● GRANT ● GRANT ELEMENT ● GRANT LIKE FLOW ● IMPUTED MULTILATERAL FLOW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조활동 ● 원금상환 / 소각 ● 제휴금융 ● 양자적 ● 청구(권) ● 공약(公約) ● 양허수준 ● 불변가격 ● 국별계획원조 ● 신용보고체계 ● 신용 / 여신 / 채권 ● 개발원조위원회 ● 개발원조위원회 공적개발원조 수혜국 명단 ● 채무조정 / 부채조정 ● 수치조정지수 ● 상환 ● 평가 ● 수출신용 / 수출차관 / 수출융자 ● 유예기간 ● 공여 ● 공여조건 ● 대위성 공여 ● 매개된 다자적 공여

영 어	한 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ANS (ALSO CREDITS) • LONG TERM • MATURITY • MULTILATERAL AGENCIES • MULTILATERAL OUTFLOWS • NET FLOW • NET TRANSFER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 OFFICIAL DEVELOPMENT FINANCE (ODF) • OFFSHORE BANKING CENTRES • OTHER OFFICIAL FLOWS (OOF) • PARTIALLY UNTIED AID • PRIVATE FLOWS • PURPOSE OF AID • PURPOSE CODE • SECTOR ALLOCABLE AID • SECTOR CLASSIFICATION • SHORT TERM • TECHNICAL CO-OPERATION • TERMS OF REPAYMENT • TIED AID • TOTAL RECEIPTS • UNDISBURSED • UNTIED AID • VOLUME (REAL TER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 / 융자 / 차관 • 장기 • 만기 • 다자적 기관 • 다자적 공여 • 순(純)공여(량) • 순(純)이전(량) • 공적개발원조 • 공적개발금융 • 역외금융센터 • 기타 공적공여 • 부분적 비구속성 원조 • 민간공여 • 원조목적 • 원조목적분류번호 • 부문별 할당가능 원조 • 부문 분류 • 단기 • 기술협력 • 상환조건 • 구속성 원조 • 수혜총량 • 미지급(공여) • 비구속성 원조 • 공여규모(실질기준)

벨기에 국제협력법 (영한대역)

Law on Belgian International Cooperation (1999)

벨기에 국제협력법 (1999)

SECTION I

제 1 부

General provisions

일반규정

Article 1

The present law governs a matter raised in Article 78 of the Constitution.

제 1 조

본 법은 헌법 제78조에 규정된 문제를 규율한다.

Article 2

In the present law the following terms are defined:

제 2 조

본 법에서 아래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Belgian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actions and contributions by the State of Belgium in the

(1) “벨기에 국제협력”:

벨기에가 직접적 양자협력, 다자협력, 간접적 양자협력의 맥락에서 행하는 행위나 출자

context of direct bilateral cooperation, multilateral cooperation and indirect bilateral cooperation;

2. “Minister”:

The member of the government with Belgian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in his/her remit;

3. “country”:

Country considered as a developing country by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of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4.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Organisations which may be approved by the Minister and which may receive subsidies from the State of Belgium for their activities in the context of development cooperation;

5. “direct bilateral cooperation”:

Programmes or projects in a partner country, funded by the State of Belgium, based on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6. “indirect bilateral cooperation”:

Programmes or projects in a partner country, funded or co-funded by the State of Belgium based on an agreement with a third

(2) “각료”:

그 권한 내에서 벨기에 국제협력과 관련된 정부 구성원

(3) “협력국”: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의해 개발도상국으로 인정받는 국가

(4) “비정부기구”:

각료에 의해 승인되는 기구 및 개발협력의 맥락에서 행하는 행위에 대해 벨기에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구

(5) “직접적 양자협력”:

협력국과의 양자협정에 근거하여 벨기에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협력국 내에서의 계획 혹은 사업

(6) “간접적 양자협력”:

당해 사업 혹은 계획의 이행에 책임이 있는 제3자와의 협정에 근거하여 벨기에로부터 단독 혹은 공동으로 자금지원을 받는, 협력국 내에서의 계획 혹은 사업

(7) “다자협력”:

벨기에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고,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들의 개발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한 벨기에의 출자에 의해 이행되는 협력국 내에서의 계획 혹은 사업

(8) “계획”:

party, which is responsible for implementing the project or programme;

7. “multilateral cooperation”:

Programmes or projects funded by the State of Belgium and implemented by an international organisation and Belgian contributions to international organisations for their development programmes or projects;

8. “programme”:

Coherent set of short-term and medium-term objectives, focusing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on structural and sustainable enhancement of the position of individuals and groups of individuals in poor social categories in partner countries;

9. “project”:

Initiative which may, in particular, take the form of action, gifts, financial assistance or bursaries;

10. “sustainable development”:

Development centred on meeting current requirements, without compromising the requirements of future generations and in respect of which achievement thereof requires a process of change to adapt the use of resources, allocation of investment, targeting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institutional structures to meet

협력국들 내의 빈곤계층에 속하는 개인들 혹은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의 구조적이며 지속적인 지위 향상에 직·간접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일련의 단기적, 중기적 목적

(9) “사업”:

특히 행위, 기증품, 재정적 원조 혹은 장학금의 형태를 취하는 구상

(10) “지속 가능한 개발”:

미래 세대의 요구와, 그 성취가 현재, 미래 양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원의 이용, 투자의 할당, 기술개발의 목표 및 제도적 구조를 적응시키는 변화의 과정을 필요로 하는 요구들을 타협하지 않으며 현재의 요구들을 충족시키는데 중점을 둔 개발

(11) “공동경영”:

특히 협력국 내의 개발 과정과 관련된 공공기관들, 시민사회 및 사경제부문을 포함시킴으로써, 개발도상에 있는 지역적 잠재성에 특별한 초점을 두며, 관련 목표 집단의 수준으로 행위를 분산시키고 협력국이 개발에 책임을 지게 하는, 개발협력의 맥락에서의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협력의 형태

(12) “선치”:

민주주의, 법치주의 및 근본적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면서 제도적 잠재성의 관리,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과정, 공공기금의

both current and future requirements;

11. “partnership”:

Active and participatory form of cooperation, in the context of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special focus on developing local capabilities, decentralising action at the level of the relevant target groups and making the partner country responsible for development, specifically by involving the public authorities, civil society and the private economic sector in the partner country concerned in the development process;

12. “good governance”:

Method seeking to optimise management of institutional capabilities, the public authorities' decision-making process and management of public funds while respecting democracy, the rule-of-law state and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freedoms;

13. “Belgian development assistance”:

All contributions made by various Belgian authorities, both federal and local, in the context of development aid which are recognised by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of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in accordance with its rules, as constitut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관리의 최적화를 추구하는 체계

(13) “벨기에 개발 원조”:

OECD DAC의 규칙에 따라 DAC에 의해 공적개발원조(ODA)로서 인정되는 개발원조의 맥락에서, 다양한 벨기에 당국에 의해 연방, 지역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모든 출자

SECTION II

Objectives

Definition of objectives

Article 3

The primary objective of Belgian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to be achieved by combating poverty, based on the concept of partnership and compliance with relevant development criteria.

In this context, Belgian International Cooperation contributes towards attaining the general objective of developing and consolidating democracy and the rule-of-law state, including the principle of good governance, and towards the objective of respecting human dignity,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ith specific focus on combating all forms of discrimination on the

제 2 부

목적

목적의 정의

제 3 조

벨기에 국제협력의 최우선적인 목적은 빈곤과의 투쟁을 통해 성취될 수 있는, 공동경영개념과 관련 개발 기준의 준수에 근거한 지속적 인간개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벨기에 개발협력은 선치의 원칙을 포함하여 개발, 그리고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국가 공고화의 일반적 목적의 달성과, 특히 사회적 지위, 민족적 출신, 종교, 철학적 신념 및 성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의 투쟁에 초점을 둔 인간 존엄, 인권, 근본적 자유 존중의 목적에 기여한다. 연방차원에서의 협력은 장기적으로 원조를 받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보다 광범위한 효과를 위해 도시, 주, 지역, 공동체 중심 및 유럽차원에서의 협력과의 상승효과를

grounds of social status, ethnic origin, religion, philosophical beliefs or gender. Federal cooperation promotes synergy with municipal, provincial, regional, Community-based and European cooperation in order to benefit from the wider effects which, in the long term, favour those populations receiving assistance. To achieve this objective of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Belgian International Cooperation supports socio-economic and socio-cultural development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foundations of society in the partner countries whilst at the same time raising awareness amongst Belgian public opinion.

촉진시킨다.

이러한 지속 가능한 인간개발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벨기에 개발협력은 협력국의 사회·경제적, 사회·문화적 개발과 사회의 기반 강화를 지원하며, 동시에 벨기에 공공 여론의 인식을 증진시킨다.

SECTION III

Strategies

CHAPTER I -- Relevance and assessment

제 3 부

전략

제 1 장 타당성과 평가

Relevance criteria

Article 4

To enable it to contribute effectively to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Belgi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ssesses the relevance of development, as measured using the criteria defined by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f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which help to ascertain whether the actions in question take sufficient account of the following underlying principles:

1. Strengthening institutional and management capabilities;
2. social and economic impact;
3. technical and financial viability;
4. effectiveness of the planned implementation procedure;
5. focus on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타당성 판단기준

제 4 조

효과적으로 지속 가능한 인간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벨기에 국제협력은 OECD DAC가 정의한 기준에 따라 개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이는 문제의 행위가 다음의 근본적인 원칙들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규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1. 제도 · 관리적 측면에서의 장래성 강화
2. 사회 · 경제적 영향
3. 기술 · 재정적 실행가능성
4. 계획된 이행 절차의 유효성
5. 남성과 여성 간 평등에의 초점
6. 환경 보호의 고려

6. respect for protection and safeguarding of the environment.

External assessment

Article 5

The King shall determine the instruments required to provide external assessment of Belgian 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regard to the objectives of the latter cited in Article 3 and to the relevance criteria cited in Article 4 and to Belgian development assistance provided by the State of Belgium in addition to that provided by Belgian International Cooperation, which shall also be assessed with regard to the relevance criteria cited in Article 4.

The Minister shall submit an annual external assessment report to the Chamber of Representatives and to the

외부평가

제 5 조

국왕은 제3조에 규정된 벨기에 국제협력의 목적과 제 4조에 규정된 타당성 기준, 그리고 벨기에 국제협력 외에 벨기에에 의해 추가적으로 제공되며 동일하게 제4조에 규정된 타당성 기준에 의해 평가되는 벨기에 개발원조에 입각한 벨기에 국제협력의 외부평가 제공을 위해 필요한 수단을 결정한다.

각료는 매년 4월 30일까지 정기적 외부평가보고서와 관련 논평을 하원과 상원에 제출한다.

Senate by no later than 30 April of the following year and accompany it with any relevant comments.

CHAPTER II -- Underlying principles

Section I -- Direct bilateral cooperation

Sub-section I -- Geographical focus

Article 6

1) Belgian International Cooperation shall undertake direct bilateral cooperation in a maximum of 25 (twenty five) countries or regional organisations of countries, provided that the programmes are aimed at all member countries of such organisations, selected, by Royal Decree debated within the Council of Ministers, as “partner countries in direct bilateral cooperation” on the basis of the following criteria:

1. The level of poverty in the partner country as

제 2 장 기본원칙

제 1 절 직접적 양자협력

I. 지리적 초점

제 6 조

1) 벨기에 국제협력은 최대 25개의 국가 혹은 국가 간 지역기구들 내에서 직접적 양자협력을 수행하는데, 단 지역기구의 경우 그 계획들은 그러한 지역기구들의 모든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국가 및 기구들은 각료이사회에서 심의된 국왕 포고령에 의해 다음의 기준에 근거하여 “직접적 양자협력의 협력국”으로 선정된 국가들을 의미한다.

1. 사회·경제개발, 인간개발지표 및 인간빈곤지표의 수준에 비견하여 측정된 빈곤의 수준

- measured against the level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the human development indicator and the human poverty indicator;
2. The relevant current experience of Belgia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context of the partner country;
 3. The contribution made by the partner country to its own socio-economic development;
 4. Compliance by the partner country with the principle of good governance;
 5. The occurrence of a crisis in the partner country in respect of which Belgian International Cooperation may intervene at international level to resolve the conflict and prevent fresh acts of violence;
 6. The level of regional integration in the partner country in the context of regional cooperation;
 7. Policies seeking to eliminate discrimination and to
2. 협력국의 맥락에서, 벨기에 국제협력의 현재적 경험
 3. 협력국 스스로의 자국 사회·경제개발에의 공헌
 4. 협력국에 의한 선치 원칙의 준수
 5. 벨기에 국제협력이 국제적 차원에서 개입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고 새로운 폭력행위들을 방지할 수 있는, 협력국 내에서의 위급상황의 발생
 6. 지역협력의 맥락에서 협력국 내의 지역통합의 수준
 7. 협력국 내의 당국에 의해 추구되는, 차별을 철폐하고 동등한 기회의 보장을 확립하려는 정책들

establish equal opportunities pursued by the authorities in the partner country.

2) For each partner country involved in direct bilateral cooperation, a strategy paper should set out the relevant development strategy. The procedure to be followed and the methods to be used in drafting said strategy paper shall be stipulated by the King.

The aforementioned strategy papers shall be forwarded, along with the opinion of the Federal Development Cooperation Council, to the Chamber of Representatives and to the Senate, as per the methods stipulated by the King.

They shall be evaluated and amended at least every four years in light of the changing contex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per the methods stipulated by the King.

2) 직접적 양자협력에 포함된 각 협력국을 위해 전략 문서는 관련된 개발전략을 설정한다. 전략문서의 작성절차와 방법은 국왕에 의해 명기된다.

언급된 전략문서들은 국왕에 의해 명기된 방법에 따라 연방개발협력이사회의 의견과 함께 하원과 상원에 제출된다.

그러한 문서들은 국왕에 의해 명기된 방법에 따라 변화하는 국제협력의 맥락에 비추어 최소한 매 4년마다 평가되고 수정된다.

Sub-section II -- Sectoral focus

Article 7

1) Belgian International Cooperation shall engage in direct bilateral cooperation in the following five sectors:

1. Basic healthcare, including reproductive health;
2. Education and training;
3. Agriculture and food safety;
4. Basic infrastructure;
5. Conflict prevention and social consolidation, including support for respect for human dignity,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2) For each sector, a strategy paper should set out the relevant development strategy. The procedure to be followed and the methods to be used in drafting said strategy paper shall be stipulated by the King.

The aforementioned strategy papers shall be forwarded, along with the opinion of the Federal Development

II. 중점분야

제 7 조

1) 벨기에 국제협력은 직접적 양자협력에 있어서 다음의 5가지 분야에 착수한다.

1. 생식건강을 포함한 기본적 보건의료
2. 교육
3. 농업과 식량안전
4. 기본적 사회기반시설
5. 인간의 존엄성, 인권 및 근본적 자유에 대한 준중의 지원을 포함한 분쟁방지와 사회통합

2) 각 분야에 대해 전략문서는 관련된 개발전략을 설정한다. 전략문서의 작성절차와 방법은 국왕에 의해 명기된다.

언급된 전략문서들은 국왕에 의해 명기된 방법에 따라 연방개발협력이사회의 의견과 함께 하원과 상원에 제출된다.

Cooperation Council, to the Chamber of Representatives and to the Senate, as per the methods stipulated by the King.

They shall be evaluated and amended at least every four years in light of the changing contex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per the methods stipulated by the King.

Sub-section III -- Thematic focus

Article 8

1) Belgia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sectors cited in Article 6 of the present law shall always take account of the following three cross-sectoral themes:

1. Re-establishing a balance between rights and opportunities for women and men;
2. respect for the environment;
3. social economy.

그러한 문서들은 국왕에 의해 명기된 방법에 따라 변화하는 국제협력의 맥락에 비추어 최소한 매 4년마다 평가되고 수정된다.

III. 중점주제

제 8 조

1) 본 법 제6조¹⁰⁾에 규정된 분야들에 착수하는 벨기에 국제협력은 항상 다음의 3가지 교차분야적 주제들을 고려해야한다.

1. 여성과 남성에 대한 권리와 기회 간의 균형의 회복
2. 자연에 대한 존중
3. 사회적 경제

10) ‘제7조’의 오기로 추론되나 원문을 반영하여 수정치 아니함.

2) For each of these cross-sectoral themes, a strategy paper should set out the relevant development strategy. The procedure to be followed and the methods to be used in drafting said strategy paper shall be stipulated by the King. The aforementioned strategy papers shall be forwarded, along with the opinion of the Federal Development Cooperation Council, to the Chamber of Representatives and to the Senate, as per the methods stipulated by the King. They shall be evaluated and amended at least every four years in light of the changing contex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per the methods stipulated by the King.

Section II - - Multilateral cooperation

Article 9

In line with the procedure and as per the methods determined by the King, Belgian International Cooperation

2) 각 교차분야적 주제들에 대해 전략문서는 관련된 개발전략을 설정한다. 전략문서의 작성절차와 방법은 국왕에 의해 명기된다. 언급된 전략문서들은 국왕에 의해 명기된 방법에 따라 연방개발협력이사회의 의견과 함께 하원과 상원에 제출된다. 그러한 문서들은 국왕에 의해 명기된 방법에 따라 변화하는 국제협력의 맥락에 비추어 최소한 매 4년마다 평가되고 수정된다.

제 2 절 다자협력

제 9 조

국왕에 의해 결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벨기에 국제 협력은 20개의 국제기구들과의 다자협력에 착수하는

shall engage in multilateral cooperation in 20 (twenty) selected international organisations recognised as “partner organisations in international multilateral cooperation” which meet the following minimum criteria:

1. The general objectives of the international organisation should be compatible with those of Belgi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cited in Article 3;
2. The areas in which the international organisation is active should dovetail with one or more of the priority sectors or themes of direct bilateral cooperation as identified in Articles 6 and 7;
3. The international organisation should adopt a planned approach based on development programmes which assess the use of contributions to multilateral cooperation, as per the methods stipulated by the King;
4. Contributions to multilateral cooperation should be

데, 대상 협력국제기구들은 다음의 최소기준을 만족하여 ‘국제다자협력에 있어서의 협력국제기구’로서 인정된 국제기구들을 의미한다.

1. 국제기구의 일반 목적들은 제3조에 규정된 벨기에 국제협력의 목적들과 양립하여야 한다.
2. 국제기구가 활발히 활동 중인 분야들은 제6조 및 제7조에서¹¹⁾ 분류된 직접적 양자협력의 중점 분야 및 주제들 중 하나 혹은 그 이상과 긴밀히 들어맞아야한다.
3. 국제기구는 개발계획에 근거한 계획적 접근을 채택하여야하며, 개발계획은 국왕에 의해 명기된 방법에 따라 다자협력에 대한 출자의 사용을 평가하는 것이어야 한다.
4. 다자협력에의 출자는, 국제협력에 대한 모든 출자들을 조화시키고 제4조에 규정된 타당성 기준에 따라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른 개발협력 수행자들의 국제기구에 대한 잠재적 출자와

11) ‘제7조 및 제8조에서’의 오기로 추론되나 원문을 반영하여 수정치 아니함.

coherent in relation to the potential contribution to the international organisation by other development cooperation players in a bid to harmonise all contribution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o maximise their impact in line with the development relevance criteria cited in Article 4.

Section III - - Indirect bilateral cooperation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rticle 10

Belgian International Cooperation shall engage in indirect bilateral cooperation with selected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in line with a procedure and as per the methods to be determined by the King, which meet the following minimum criteria:

1. The organisation must have been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27 June 1921 granting le-

일관성을 갖추어야 한다.

제 3 절 간접적 양자협력

비정부기구

제 10 조

벨기에 국제협력은 국왕에 의해 결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비정부기구와의 간접적 양자협력에 착수하는데, 대상 비정부기구는 다음의 최소기준을 만족하는 비정부기구를 의미한다.

1. 기구는 비수익단체 혹은 공익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1921년 6월 27일에 제정된 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1935년 11월 30일에 초안이 작성된 영리

- gal personality to non-profit associations or public interest bodies, or shall be a company serving a social purpose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13 April 1996 amending the laws on commercial companies, drafted on 30 November 1935;
2. The organisation shall have development cooperation as its primary company object;
 3. The organisation shall have relevant and current experience in one or more area (s) of activity stipulated by the King and shall be able to provide evidence of such by submitting activity reports covering the past three years, and shall be prepared to undergo an operational evalu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stipulated by the King;
 4. The organisation shall adopt a planned approach based on a multi-annual programme, including a financial plan drawn up as per the methods stipulated by the King;
 5. The organisation shall be independent, as stipulated

회사들에 관한 법들을 개정하는 1996년 4월 13일 제정법에 따라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는 기업이어야한다.

2. 기구는 개발협력을 그 회사의 최우선적 목표로 삼아야한다.
3. 기구는 국왕에 의해 명기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활동분야와 관련된 현재적 경험을 가져야하며, 과거 3년간의 활동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경험에 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어야하고, 국왕에 의해 명기된 절차에 따라 그 이행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한다.
4. 기구는 다년계획에 근거한 계획적 접근을 채택하여야하며, 다년계획은 국왕에 의해 명기된 방법에 따라 입안된 재정계획을 포함하여야한다.
5. 기구는 국왕에 의해 명기된 방법에 따라 독립적이어야한다.
6. 기구는 국왕에 의해 명기된 조건에 따라 계속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어야한다.
7. 기구의 관리기구의 구성원 중 과반수는 벨기에

by the King;

6. The organisation shall be capable of ensuring that it can continue to function as per the conditions stipulated by the King;
7. The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organisation's management bodies shall be Belgian nationals;
8. The organisation shall pursue activities in line with the objectives of Belgian International Cooperation cited in Article 3 and which take account of the relevance criteria cited in Article 4;
9. The organisation shall keep transparent accounts.

Other partners

Article 11

Belgian International Cooperation seeks to engage in indirect bilateral cooperation with public-law companies, groups,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n particular via communities, regions, provinces and municipalities, and

국민이어야한다.

8. 기구는, 제3조에 규정된 벨기에 국제협력의 목적에 따르며 제4조에 규정된 타당성 기준을 고려하는 활동을 추구하여야한다.
9. 기구는 투명한 계좌를 유지하여야한다.

기타 협력자

제 11 조

벨기에 국제협력은 특히 공동체, 지역, 주, 지방자치단체, 제10조에 규정된 기구들 이외의 사법적 시설들을 매개로하여 공공법률회사, 단체, 협회, 기관과의 간접적 양자협력에 착수하는데, 대상은 국왕에 의해

private-law establishments other than the organisations cited in Article 10, selected, as per the methods stipulated by the King, as “partners in indirect bilateral cooperation”, and which meet the following minimum requirements:

1. The organisations must adopt a planned approach based on a programme in respect of which the procedure and planning methods are stipulated by the King, enabling evaluation of contributions of indirect bilateral cooperation, as per the methods stipulated by the King;
2. The organisations must perform activities which are compatible with the objectives of Belgian International Cooperation cited in Article 3 and which take account of the development relevance criteria cited in Article 4.

We promulgate this Act and order that it be sealed with the State seal and published in the Belgian Official Gazette (Moniteur belge/Staatsblad).

명기된 방법에 따라 ‘간접적 양자협력의 협력자’로 선정된, 다음의 최소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기구를 의미한다.

1. 기구는 국왕에 의해 명기된 방법에 따라 간접적 양자협력에의 출자에 대한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그 절차와 계획방법이 국왕에 의해 명기된 계획에 근거한 계획적 접근을 채택하여야한다.
2. 기구는 제3조에 규정된 벨기에 국제협력의 목적에 따르며 제4조에 규정된 개발 타당성 기준을 고려하는 활동을 추구하여야한다.

우리는 이 법을 공포하며, 국가표장으로 날인하고 벨기에 공식관보에 게재할 것을 명한다.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 2010. 7.26] [법률 제9938호, 2010. 1.25, 제정]

제 1 조 (목적) 이 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이하 “양자간 개발협력”이라 한다)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
2. “개발도상국”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공적개발원조 대상국(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협력대상국”이란 개발도상국 가운데 1인당 국민소득수준, 경제·사회발전단계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국제개발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선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4. “국제기구”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개발관련 국제기구(비정부간기구를 포함한다) 가운데 우리나라가 재정적 기여를 하거나 공동사업추진 등을 통하여 협력하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5. 양자간 개발협력 중 “무상협력”이란 협력대상국에 대하여 현금·현물·인력·기술협력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긴급재난구호를 포함하며 상환의무가 없는 것을 말한다.

6.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이란 이자율·상환기간 및 거치기간 등에 있어서 협력대상국이 국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상업적 조건으로 차입할 수 있는 것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협력대상국에 제공하는 현금 또는 현물 등으로서 상환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
7. “다자간 개발협력”이란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출자 및 양허성 차관 등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에게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국제개발협력을 말한다.
8. “시행기관”이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 3 조 (기본정신 및 목표) 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② 국제개발협력은 제1항의 기본정신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2.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조건의 개선
3.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4.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5. 그 밖에 제1항의 기본정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4 조 (기본원칙)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시행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국제연합헌장의 제반 원칙 존중
2. 협력대상국의 자조노력 및 능력 지원
3. 협력대상국의 개발 필요 존중

4.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

5.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 및 협력 증진

② 국가등은 양자간 개발협력과 다자간 개발협력 간의 연계성과 무상협력과 유상협력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제개발협력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5 조 (국가등의 책무) ① 국가등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③ 국가등은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제 6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정신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 7 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간사위원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무총리실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④ 간사위원은 국무총리실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8조의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제10조제1항제1호의 분야별 연간종합시행계획
2. 제13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 중 정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⑥ 위원회의 부의대상 안건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조정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8 조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제9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5년마다 각각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안(이하 “분야별 기본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실무위원회를 거친 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분야별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1. 국제개발협력정책의 기본방향
2. 국제개발협력의 규모 및 운용계획
3. 제12조에 따른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중기지원전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안 중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확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라도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주관기관에 시달하고 주관기관은 이 중 각각의 시행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해당 시행기관 및 재외공관(「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대한민국재외공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달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9 조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 ①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무상협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각각 주관한다.

② 다자간 개발협력 중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밖의 기구와의 협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주관한다.

제10조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분야별 기본계획안 및 연간종합시행계획안의 작성
 2. 분야별 연간종합시행계획의 이행 점검
 3.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홍보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여하는 역할 및 기능
- ② 주관기관은 개별 시행기관이 소관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국제개발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의 수립) ① 각 시행기관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각 시행기관이 제출한 연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은 시행기관 간 사업 중복 등으로 시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협력대상국 중에서 국제연합이 선정한 최빈국을 포함하여 중점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을 행하여야 할 협력대상국(이하 “중점협력대상국”이라 한다)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중점협력대상국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이 시행되고 이를 통하여 협력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정을 한다.

제13조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국제개발협력 사업 시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방법, 국회에의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또는 그 단체의 연합체에 대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등은 제1항의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 (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①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②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주요 실적 및 평가결과를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의 대상·범위 및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집행을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관한 종합정보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제16조 (전문 인력의 양성)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의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7조 (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 국가등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연구, 행사 등의 개최 등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18조(국제개발협력 통계자료) ① 시행기관은 매년 전년도에 국제개발협력의 통계자료를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사업 통계자료를 작성·분석·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시행기관의 국제개발협력사업 통계자료를 종합하여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연간 통계자료를 작성하고 위원회 및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국회의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재외공관의 역할) ① 재외공관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 등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시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 과정에서 외교통상부를 통하여 재외공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이 법에 따른 주관기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른 시행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5. 5] [법률 제9993호, 2010. 2. 4, 일부개정]

제 1 조 (목적) 이 법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국에 대한 긴급구호대의 파견, 긴급구호물품의 지원, 임시 재해복구의 지원 등 해외 긴급구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재난 지역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재난구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천재지변·대형사고 그 밖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를 말한다.
2. “해외긴급구호”란 해외재난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의 감소 또는 복구 등 정부 차원에서 피해국을 긴급히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 3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4 조 (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 정부는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하에 적절한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5 조 (해외긴급구호의 종류) 해외긴급구호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괄한다.

1.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
2. 구호물품의 지원
3. 현금지원
4. 보건의료활동
5. 수송지원
6. 임시 재해복구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 6 조 (해외긴급구호대책의 수립)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평상시 해외 재난에 대비하여 그 종류·규모·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외긴급구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2. 해외긴급구호인력의 발굴·육성·교육훈련
3. 구호물품·장비의 비축·보관·정비 등
4. 구호인력·물품의 신속한 소집·수송 체계의 구축
5.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6. 해외긴급구호 관련 국제협력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조체계구축 등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해외긴급구호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제 7 조 (해외긴급구호의 개시) 외교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해외재난이 발생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구호를 요청받거나 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민·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0.2.4>

제 8 조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해외재난과 관련하여 해외긴급구호의 종류·규모·방

식, 관계 중앙행정기관·법인·단체와의 협조방안 등 해외긴급구호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협의·결정하기 위하여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외교통상부 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관련 법인·단체의 장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2.4>

③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 ① 외교통상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의회 결정에 따른 세부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 외교통상부 장관은 협의회 결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국방부장관에 대한 신속한 긴급구조·구호인력 또는 물품의 수송지원을 위한 군용 수송기 또는 수송함 파견 요구
2. 소방방재청장에 대한 해외재난으로 인한 인명구조를 위한 해외 긴급구조대 구성·파견 요구

③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법인·단체의 장이 관장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해외긴급구호본부) ① 외교통상부 장관은 협의회 결정의 신속한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해외긴급구호가 종료될 때까지 해외긴급구호본부(이하 “구호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호본부의 장은 외교통상부 장관이 된다.

③ 구호본부의 장은 피해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에 의거하고 해외재난의 성격 및 피해규모와 정도를 감안하여 제5조에 열거된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한다.

④ 구호본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사람들로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해외긴급구조대
2. 「소방기본법」에 따른 국제구조대
3.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4.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소속 직원 또는 같은 법에 따라 활동하는 해외봉사단원 등 종사요원
5.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협력요원
6. 해외긴급구호에 자원하는 사람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 전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해외긴급구조대를 파견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파견 및 활동과 경비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해외긴급구호대장)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대장을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대의 구조 분야 담당자를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해외긴급구호대장은 관할 재외공관의 장과 긴밀히 협의하여 피해국에서의 구호활동을 총괄하며, 해외긴급구호활동을 함에 있어서 현지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13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외교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에게 인력·장비·물품 및 수송장비 등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지원) 외교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외긴급구호에 참여하는 법인·단체 또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장비·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 (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보상 등)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해외긴급구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거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망(상해·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상해를 당한 경우
3. 질병에 걸린 경우
4.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제16조 (권한의 위임·위탁) 외교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외교통상부장관이 제1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9993호,2010. 2.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한민국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 2007.3.29 법률 제8316호]

제 1 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이들 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 각종 협력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1, 2001.5.24>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개발도상국가”라 함은 국민소득수준, 산업구조, 경제발전단계 등을 고려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개정 1999.1.21>

제 3 조 (법인격)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1.5.24>

제 4 조 (설립) ① 협력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5 조 (사무소의 설치) 협력단은 필요한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9.1.21>

제 6 조 (정관) ① 협력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분사무소 및 산하기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 협력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1.21>

제 7 조 (사업) 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개발도상국가를 위한 다음의 사업
 - 가. 연수생의 초청
 - 나. 전문인력의 파견
 - 다. 해외봉사단의 파견
 - 라. 개발조사
 - 마. 재난구호
 - 바. 물자·자금 및 시설의 지원
2. 국제협력을 위한 다음의 사업
 - 가. 민간단체의 국제협력활동에 대한 지원

나. 외국의 원조관련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다. 국제협력에 관한 이념 및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조사·연구

라. 그 밖에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따른 교육훈련·홍보 및 그 밖의 부대 사업

[전문개정 2001.5.24]

제 8 조 (임원) ① 협력단에 총재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개정 1999.1.21>

② 총재 및 정관이 정하는 상근이사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1999.1.21>

③ 협력단의 총재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99.1.21>

④ 이사는 대통령이 정하는 당연직이사를 제외하고는 총재의 추천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1999.1.21, 2001.5.24>

⑤ 감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99.1.21>

⑥ 총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1999.1.21>

제 9 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협력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0조 (임원의 직무) ① 총재는 협력단을 대표하고 협력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삭제<1999.1.21>

③ 상근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력단의 사무를 분장하며, 총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9.1.21>

④ 감사는 협력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1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협력단의 임원(비상근이사 및 감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직원은 총재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개정 1999.1.21>

제12조 (이사회) ① 협력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총재 및 이사로 구성한다.<개정 1999.1.21>

③ 총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 (직원의 임면) 협력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재가 임면한다.

제14조 (공무원의 파견) ① 협력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에 대하여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9.1.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을 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재원) 협력단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국제빈곤퇴치기여금 기타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퇴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

[유효기간 2012.9.30]

제16조 (출연금) ① 정부는 협력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협력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협력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협력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자금의 차입) ①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1.21>

제18조의2 (국제빈곤퇴치기여금)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퇴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 대하여 1천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다만, 승무원, 환승객, 영유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기여금의 부과·징수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협력단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기여금을 관리·운용한다. 이 경우 기여금에 대하여는 이를 다른 운영재원과 구분하여 계리(계리)하여야 한다.

④ 기여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소속하에 국제빈곤퇴치기여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된다.

⑥ 위원회 구성·운영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3.29]

[유효기간 2012.9.30]

제19조 (사업연도) 협력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0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협력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21>

제21조 (결산서의 제출) 협력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제22조 (수수료 등의 징수)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수료 기타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 (업무의 지도·감독 등)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협력단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1999.1.21, 2001.5.24>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7조의 사업수행에 대한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협력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협력단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1.2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4조 (권한의 위탁) 외교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9.1.21>

제25조 (산하기관)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단산하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제26조 (비밀엄수 의무) 협력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협력단이 아닌 자는 한국 국제협력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8조 (민법의 준용) 협력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협력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0조 (벌칙)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1.21>

[전문개정 1995.12.6]

제31조 (과태료) ①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1.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9.1.2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9.1.21>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

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9.1.21>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95.12.6]

제32조 삭제 <2001.5.24>

부 칙 <제4313호,1991.1.14>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설립준비) ① 외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협력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협력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외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협력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협력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없이 협력단의 총재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설립비용) 협력단의 설립비용은 한국해외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부담한다.

제 4 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해외개발공사법은 협력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날 이를 폐지한다.

제 5 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공사는 한국해외개발공사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해산되며, 공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협력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 공사 해산 당시의 정부출자금은 공사 해산일에 협력단에 출연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공사의 명의를 협력단의 설립과 동시에 협력단의 명의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협력단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협력단설립전에 공사가 행한 행위 또는 공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협력단이 행한 행위 또는 협력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 6 조 (관련업무의 승계 등) ① 협력단은 설립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승계한다. 다만, 무상건설기술용역업무의 승계시기에 관하여는 외무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1. 외무부·건설부·노동부·과학기술처의 특정협력대상지역에 대한 연수생 초청 및 전문가 파견
2. 건설부의 무상건설기술용역
3. 경제기획원·과학기술처의 개발조사사업
4. 노동부의 직업훈련 지원
5. 외무부의 무상원조 집행사업, 의료단 및 태권도사범 파견
6. 문교부의 한국청년해외봉사단 파견

② 협력단설립전에 제1항 각호의 중앙행정기관이 행한 행위 또는 제1항 각호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협력단이 행한 행위 또는 협력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 7 조 (예산의 이체) 제7조 및 부칙 제6조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관련예산은 협력단의 설립과 동시에 외무부소관예산으로 이체한다.

제 8 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협력단설립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해외개발공사법또는 한국해외개발공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한국국제협력단법 또는 한국국제협력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4985호,1995.12.6>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5638호,1999.1.21>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다른 법률의 개정)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3호, 제9조제3호 및 제11조제1항 본문·제3호중 “특정협력대상지역”을 각각 “개발도상국가”로 한다.

제2조제2호중 ““특정협력대상지역”이라 함은”을 ““개발도상국가”라 함은”으로, “국가와 지역”을 “국가”로 한다.

부 칙 <제6475호,2001.5.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내지 제4조 생략

제 5 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27>생략

<128>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9>내지 <145>생략

제 6 조 생략

부 칙 <제8316호,2007.3.29>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제15조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2

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ODA)

정 경 수 교수
(숙명여대 법과대학)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오스트리아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에 관한 선진적 제도와 경험을 갖고 있는 국가이다. 오스트리아는 1965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 (OECD DAC)에 참여한 이후 국제적 수준의 ODA의 법제와 실행의 경험을 갖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공적개발원조의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공적개발원조의 규모는 국민총소득 대비 0.47% (2006년), 0.50% (2007년), 0.42% (2008년)의 수준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중 평균을 상회하는 실적을 확보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여대상국은 이라크를 비롯하여 다수의 국가들이 있고, 지역적으로도 전 대륙에 걸쳐 있는 바, 국제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최근 전 세계 빈민을 위한 개발원조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이에 집중하고 있는 바,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스트리아의 공적개발원조의 현 수준을 살펴보면, 효과적인 공적개발원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2002년과 2003년에 걸쳐 국내법제를 정비하였고, 원조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파리선언에 부합하는 정책조율 및 조치를 취하는 등의 성과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오스트리아가 법제정비의 일환으로 2002년 제정하고 2003년 개정된 「연방개발협력법」이며, 그를 통해 오스트리아의 현재적 차

원의 공적개발원조의 확고한 법적 인프라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법제 정비의 주요 골자를 보면, 개발협력의 집행에 관한 업무를 외무부로 집중시키고 그 시행을 위한 기관으로 정부가 소유하는 유한회사인 오스트리아 개발청을 창설하였다. 오스트리아 원조체계는 수많은 기관이 참여하고 정부부처 중에서도 8개 부처에 집중되지만, 효과적 운영을 위해 외무부, 재무부, 개발청이 주도하도록 짜여 있다. 또한 오스트리아는 개발원조의 효과성과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정책에 관한 3개년 계획을 만들어 법률의 미비와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외무부와 재무부가 협력하여 준비하는 개발정책에 관한 3개년 계획에는 우선순위 원조대상과 분야 및 통로를 확정하며, 그 준비 및 승인과정에서 공공여론을 수렴하도록 짜여 있다.

오스트리아의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법제와 정책의 의미가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의 법제와 정책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우리나라의 기존 연구는 우리나라가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할 것을 검토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크게 나뉜다. 그 이전에는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일반론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된 바, 개별 국가의 공적개발원조 관련 법제와 실행에 관한 연구가 극히 미진하다. 이에 비해 가입 검토 시점을 전후로 하여서는 공적개발원조 전반에 걸친 전문서적이 출간되는 한편 다수의 정책검토 보고서가 작성되고 공개되었다. 이러한 연구 성과 중에는 개별 국가의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법제와 정책을 일부 소개하는 연구 성과도 나왔으나, 그 대상은 일본 등 특정 국가에 국한되고, 연구범위도 협소한 실정이다. 특히, 오스트리아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가 나오지 않은 바, 국내에서는 오스트리아의 공적개발원조에 대해서는 지식과 정보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존 국내 연구 성과의 한계를 고려할 때, 오스트리아 법제와 정책에 대한 연구는 입법과 정책에서 초보적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라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 신규 회원국이 된 우리 정부는 개발원조위원회의 개발협력 관련 규범과 기준에 맞는 법제의 마련과 정책의 수립을 요구받고 있다. 이와 관련된 우리의 개발협력에 관한 법제의 이력은 매우 일천하다. 개발원조위원회 신규 가입 시기를 전후하여 관련 입법의 필요에 따라 2008년 7월 송민순 의원 법안을 포함하여 총 4개의 법안(진영 의원안, 배영식 의원안, 김부겸 의원안)이 발의되었고, 이와 별도로 정부 차원의 법제 마련이 진행되어 2010년 1월 25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10년 7월 27일 시행되었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이 2010년 7월 21일 제정되었다. 법은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한편 기본 원칙과 권한행사 및 배분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개발협력정책 시행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법이 개발원조위원회의 규범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태이다. 예컨대 평가 및 감시 체계의 확립과 절차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시행을 위한 추가 세부입법을 위해서는 평가 및 감시체계가 공적개발원조가 법률목적에 부합하는지,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이 확보되는지,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의 규범과 기준 및 제 절차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법제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세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우리 법제의 현 상태를 고려할 때, 우리 법제의 개선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오스트리아 법제와 정책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연구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임에 분명하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이 연구가 다루는 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연구의 내용은 크게 1) 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현황, 2) 오스트리아 공적개

발원조 관련 법제, 3) 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 관련 정책, 4) 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 평가, 5)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관련 법제와 정책에 대한 시사점으로 구성된다.

우선 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개관은 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의 목적과 원칙을 살펴보는 한편,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 및 집중성 제고를 위한 국가별 및 주제별 우선순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공적개발원조의 두 가지 주된 방식, 즉 다자간 개발협력과 양자간 개발협력의 체계와 구성 내용을 고찰할 것이다.

제2장에서는 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 관련 법제를 다룬다. 이에 해당하는 법제 인프라는 2개의 법률, 즉 「연방정부조직법」(Federal Ministries Act)와 「연방개발협력법」(Federal Act on Development Co-operation)을 소개한다. 전자와 관련하여서는 연방정부 내에서 공적개발원조 관련 업무관장사항이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지를 분석·제시하고,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연방개발협력법의 구조를 일목요연하게 소개한 후, 각 구성요소들을 축조해설한다. 또한 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연방개발협력법이 갖는 특징을 분석·정리할 것이다. 특히 2003년 개정을 통해 오스트리아 개발협력계획과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로서 오스트리아개발청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나라의 유사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법제 개선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 정책을 다루며, 특히 오스트리아 개발정책에 관한 3개년 계획을 주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오스트리아 3개년 개발정책 프로그램인 ‘오스트리아개발협력’의 기본구조와 특징을 살펴보는 한편, 세부적으로 ‘오스트리아개발협력’의 정책의 맥락, 지역 차원의 양자협력, 주제별 우선순위,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의 골격, 다자적 개발협력 등을 다루게 된다. 또한 일관성과 효과성 확보에서는 이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그리고 시간적으로 개선 또는 퇴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체계를 정리함으로써 평가체계를 제시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 평가를 다룬다.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실시하고 있는 평가의 원칙과 체계를 개괄적으로 살펴는 한편, 평가가 시행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지표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제5장에서는 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 관련 법제가 우리 법제에 대해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에 관련된 법제를 소개·분석하는데서 출발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과 동 법 시행령, 국제협력단법과 동 법 시행령, 대외경제협력기금법과 동 법 시행령을 다룰 것이다. 이어 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법제와 정책이 우리 법제와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각각 별도의 단위에서 분석·도출하게 된다.

제6장에서는 제3장, 제4장, 제5장에서 다룬 분석·도출 내용을 체계화하여 입법적 과제 및 내용을 정리할 것이다. 그 내용은 첫째 법제적 차원에서 우리 법제와 함께 우리 정부가 발표한 ‘대외원조 개선 종합대책’에 입각하여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의 정책방향을 뒷받침하는 법제를 오스트리아 법제에서 제시할 것이다. 둘째 정책적 차원에서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효율성 제고, 인프라 구축, 국민참여 확대 등을 담을 수 있는 정책프로그램을 오스트리아 프로그램에서 제시할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방법

이 연구의 주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단계는 해당 법률의 완역이다. 이 단계에서는 관련 용어와 문장의 통일성과 엄밀성 확보를 위하여 번역대비표를 이용한다. 그리고 관련 용어 번역의 한국적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적개발원조기본법안’

및 외교통상부 인도지원과의 용어사용례를 일일이 확인하고, 이 성과를 전체와 공유함으로써 전체 성과의 통일성 담보에 유념할 것이다.

2단계는 오스트리아의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의 동료평가절차에서 제출한 보고서와 이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검토이다.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관련 법제 정비의 필요성 중 하나는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이후 이 위원회가 요구하는 기준을 국내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그 효과적 운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중 전자 차원에서 행한 오스트리아의 실행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 위원회가 다룬 동료평가절차상 보고서를 정밀 분석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의 지침의 준수를 보장하는 오스트리아의 실행을 도출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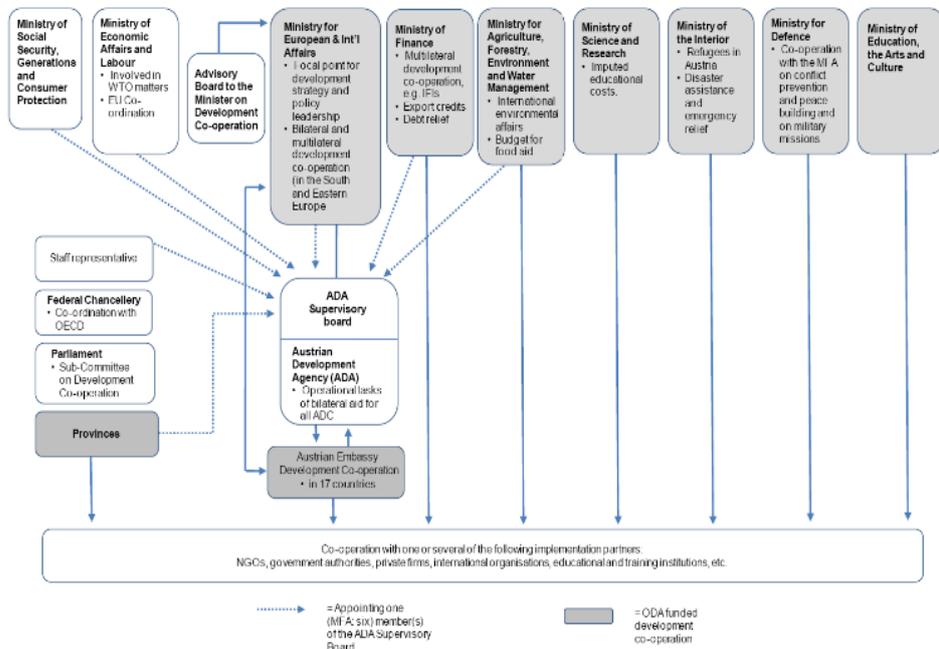
제3단계는 우리나라 대외원조에 대한 검토·분석이다. 1차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현황 및 정책 방향을 검토분석한 후 정부당국의 정책적 구상을 반영할 수 있는 법안체계에 관한 아이디어를 확보하도록 한다. 2차적으로 1차 성과를 바탕으로 다시 오스트리아 관련 법률의 축조해설 및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2

제 1 절 행위자

오스트리아의 공적개발원조에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관련되어 있다. 연방 유럽외무부는 오스트리아의 개발정책을 조율하고 개발협력을 계획한다. 오스트리아 개발국은 여타 정부부처, 연방주,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계획 및 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오스트리아 개발은행도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원조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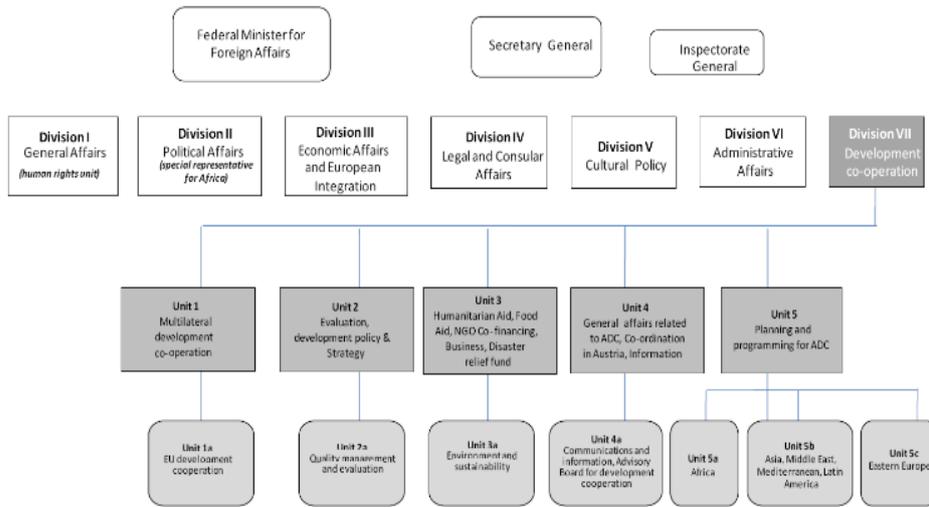
I. 연방 유럽외무부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은 오스트리아 외교정책의 일부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를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연방유럽외무부의 권한에 속한다.

외무부는 수혜국 및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운영기구인 오스트리아 개발청과 협력하여 계획을 설계하고, 3개년 계획을 통해 오스트리아 개발정책의 입장을 천명한다. 이것이 국제적 공약 및 연방개발협력법에 근거하는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정책의 요체이다. 또한, 외무부는 개발청과 협력하여 개발협력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보고서 및 분야별, 국가별 전략을 입안한다. 외무부는 개발협력 수혜국과의 대화를 지휘하고, 조화롭고 통일된 양자 및 다자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공여국

간의 국제적 협조와 관련된 모든 기구(유럽연합, 국제연합, 경제개발 협력기구)에 참여한다. 나아가 개발정책 외에도, 외무부 내에서 개발 협력을 담당하는 제 7실은 개발원조 조치의 이행에 관여한다. 국제연합, 국제연합 개발그룹의 기구들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이루어지는 다자 개발협력은 제7국 제1과에서 주관한다.

<오스트리아 외무부 조직체계도>



연방 유럽외무부의 7개 국 중 1개 국이 오스트리아 개발협력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즉, 개발협력국인 제 7국이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에 관한 개발정책 입장 및 전략적 체계를 입안한다. 제 7국은 5개의 과로 구성된다. 제1과는 다자 개발협력을 담당하며, 국제연합 기구들, 유럽연합 그리고 기타 국제 개발기구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수행한다. 제2과는 오스트리아 개발정책에 대한 전략적 계획을 맡으며, 이에 대한 평가도 실시한다. 인도적 구호, 식량원조, 재난구호 그리고 개발정책의 환경 및 지속가능성 관련 측면은 제3과의 업무에 속한다. 제4과는 오스트리아 국민에게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활동을 홍보하고, 국내의 개발활동을 조정하며, 개발정책 내에서 치안, 개발

및 거버넌스 관련 부분을 관장한다. 마지막으로 제5과는 오스트리아 개발청과 협력하여 수혜국 및 수혜지역 과의 협력을 위한 전략적 방침을 편성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II. 오스트리아 개발청

오스트리아 개발청은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실무기구이다. 개발청은 오스트리아 개발협력 수혜국들 내의 모든 양자 계획 및 사업을 실행하고, 이를 위해 배정된 예산을 관리한다. 이에 더하여 개발청은 개발협력의 문제를 더 많은 대중에게 호소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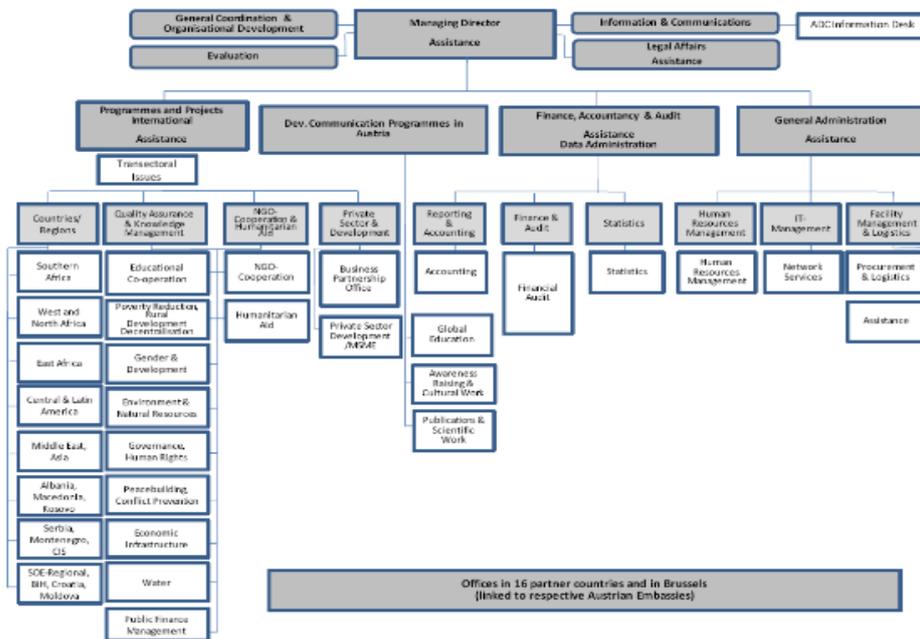
개발청은 연방 유럽외무부가 입안하고,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개발정책 주요입장 및 전략체계를 정의하는 오스트리아 개발정책 3개년 계획에 그 업무의 근거를 둔다. 외무부와 개발청 간의 업무분담을 통해 정부 개발정책의 일관성과 연방 개발협력법 명문 규정의 효율적 이행이 확보된다. 현재 개발청은 비정부기구 및 기업체들과 공동으로 7개의 주요 지역에서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계획 및 사업을 이행한다. 개발청은 언제나 유럽연합 및 기타 공여국들과 자신의 사업에 대해 상의하고, 수혜국의 정부 및 비정부기구와도 긴밀하게 협조한다. 12개의 해외사무소를 두어 지역동반자와 직접, 계속적으로 대화하고 자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한다.

오스트리아 개발청의 핵심부서는 국제계획및사업과이다. 이 과의 국가별, 지역별 담당직원들은 해외사무소들을 통해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이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수혜국과 직접적인 협력을 유지한다. 또한 비정부기구와 협조하며 나아가 민간 부문과의 협력도 추진한다. 다른 주요 관심사로는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주제별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원조의 질 검증 및 지식관리와 인도적 구호를 들 수 있다. 재정 및 회계과, 일반행정과, 국내 개발홍보 및 계획과의 3개 과가 위의 실무부서를 지원한다.

800여 개에 달하는 계획과 사업을 실제 실행하는 외에도 개발청은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목표와 성과를 홍보하며 대중과 소통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삼고 있다. 이는 공보실 뿐만 아니라 개발홍보 및 교육과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며, 개발청은 오스트리아가 추진하는 개발 정책이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발청장은 비엔나 본부 및 해외 12개 오스트리아 개발협력 사무소에 걸쳐 근무하는 직원 약 140여 명을 통솔한다. 2004년에 설립된 개발청은 유한책임회사이다. 오스트리아 연방정부가 유일한 설립자이며 소유자이다. 2003년에 개정된 연방 개발협력법에 명시된 대로 연방 유럽외무부가 개발청과의 교섭에서 소유자를 대리한다. 개발청의 감독위원회는 4년 임기의 위원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경영에 관해 조언하고 사업을 전략과 운영의 측면에서 감독한다.

<오스트리아 개발청 조직도>



Ⅲ. 기타 공적 행위자

오스트리아 개발협력 이외에도, 오스트리아 개발은행, 연방 정부부처,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적 자금으로 국가차원의 개발원조 예산에 기여하고 있다.

연방 재정부는 연방 유럽외무부와 협의를 거쳐 오스트리아의 개발정책 3개년 계획을 입안한다. 또한 오스트리아 재정부는 다자 개발은행들과의 관계에서 개발 및 대외통상정책에 관한 오스트리아의 이익을 대변하며, 오스트리아 개발은행의 운영을 담당한다. 국제 금융기관의 자금에 대한 자본지출 및 기여금은 재정부 예산에서 지급된다. 유럽개발자금을 통해 이루어지는 유럽연합의 개발협력에 대한 기여도 같은 예산에서 이루어진다. 공적 개발원조, 소프트 론, 파리클럽에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수출보장 형식의 채무경감 등으로 분류된 사항도 이 부서의 관할에 속한다.

오스트리아 개발은행은 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활동한다. 은행은 장기 용자를 필요로 하고, 자체적인 수입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발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간 부문의 사업을 실현하는 데에 특화되어 있다. 은행은 오스트리아 수출신용기관의 완전한 자회사로 공적 목적을 가지는 사적 금융기관이며, 동시에 수출신용기관 그룹의 네트워크와 국제적 노하우로부터 도움을 얻는다. 하지만 장기 맞춤형 용자 솔루션 발견하기 위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서비스와 용자상품이 대개 존재하지 않는 개발도상국의 매우 어려운 시장환경과 마주하게 된다. 상업은행과 비교하여, 오스트리아 개발은행은 특별한 설립목적 때문에 각각의 거래에 있어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예: 대출규모, 변제기간, 고위험 국가 등) 따라서 이 은행은 오스트리아 개발협력 및 개발청의 서비스와 상업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솔루션 간의 간극을 메워줄 수 있

다. 또한,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매진하며, 관련 사업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다.

제 2 절 정 책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은 국제적인 틀 내에서 전세계적 빈곤을 감소시키고 평화와 인간안보를 실현하며, 환경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정책 및 계획에는 유럽연합 및 국제위원회(유럽연합, 국제연합, 경제개발협력기구, 국제금융기관)에서 합의된 기준을 적용한다. 그 중앙대 축이 천년개발목표와 파리선언이다.

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의 기원은 1960년대의 사적계약 및 개발원조활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프리카, 아시아, 중앙아시아에서의 사업에 더하여,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은 1990년대부터 동남부 유럽의 국가들이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과정을 지원했다. 전세계적으로 약 600여만명의 사람들이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으로부터 혜택을 받는다.

오늘날,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은 7개의 우선지역의 수혜국들과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사회, 경제, 민주주의 발전을 증진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주로 수질관리 및 위생, 에너지, 농촌개발, 교육, 민간부문 발전, 거버넌스와 관련된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에 더하여, 오스트리아는 동남부 유럽의 수혜국들이 유럽연합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연방 유럽외무부는 개발협력 전략과 계획을 발전시키고, 개발청은 이를 비정부기구, 사업체 그리고 최근에는 특히 수혜국 정부와의 협력 하에 실행에 옮긴다. 12개의 해외사무소는 이러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자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감독한다. 또한, 오스트리아는 유럽연합의 공동개발협력을 구체화하는 데에 중대한 기여를 하며, 국제연합, 국제금융기구, 개발정책포럼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법적인 틀을 이루는 것은 2002년 제정되고 2003년 개정된 연방 개발협력법이다. 이 법은 모든 연방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개발정책의 기준에 해당하는 목표들의 구체적인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전세계적 빈곤의 감소, 평화와 인간안보의 보장, 환경보전이 그 핵심을 이루며, 또한 스스로 발전의 방향을 선택할 수혜국의 권리, 문화다양성에 대한 존중, 젠더평등, 아동 및 장애우의 요구에 대한 고려 등 계획과 사업에 적용될 기본원칙들도 제시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개발협력과 관련하여, 핵심 개발정책 입장과 전략적 틀은 오스트리아 개발정책 3개년 계획에 정의되어있다. 이 계획은 연방 유럽외무부가 매년 최신화하며, 개발청의 업무계획으로 활용된다.

오스트리아의 기타 정부부처,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도 공적자금을 출연하여 개발원조예산에 기여하며,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러한 기여를 공적개발원조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보고한다. 이중 어떠한 기여가 공적개발원조에 해당하는 지는 1961년 회원인 원조공여국들 간의 협의체로 창설된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제 3 절 성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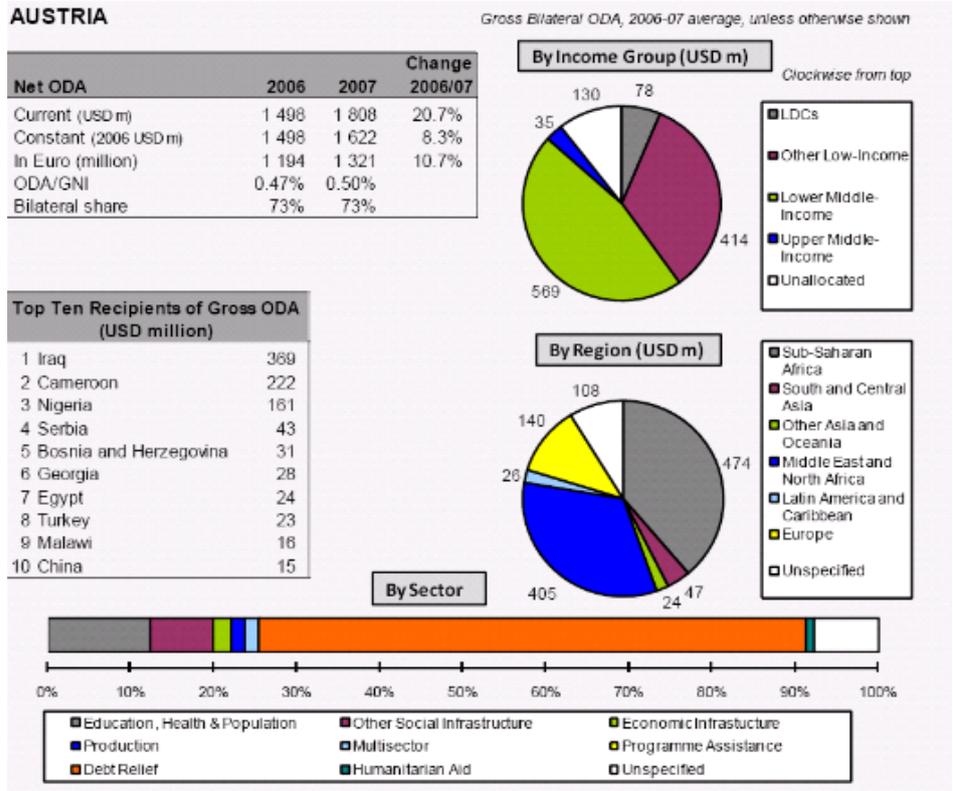
2007년 오스트리아의 순 공적개발원조는 미화 18억\$로 국민총소득의 0.5%에 해당했다.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의 오스트리아 원조사업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미화 9억\$로 전체 공적개발원조의 52%를 차지한 채무면제가 급증한 것으로,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 당사국들 간에서도 전례가 없는 수준이다. 하지만 채무면제를 제외하면 오스트리아의 국민총소득 대 공적개발원조 비율은 0.24%가 되어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 평균인 0.26%를 밑돌게 된다. 향후 전망으로 볼 때 추가적인 채무면제가 제한되므로, 오스트리아가

유럽연합의 최소목표인 2010년까지 0.51%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조액을 크게 증가시켜야 한다.

다자적 원조를 위한 예산은 4억84만\$로 채무면제를 제외한 양자적 원조 예산(4억5백만\$)을 상회한다. 하지만 오스트리아의 국제연합 기관에 대한 지원은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 평균인 총 원조액의 5%에 비교해 보았을 때 3%로 저조하다. 한편, 오스트리아의 핵심 원조 계획은 무엇보다도 2003년 강화된 양자 계획을 집행하기 위해 설립된 개발청이 관장한다. 하지만 개발청의 예산은 2004년 할당된 이후로 오직 1100만 유로 밖에 증액되지 않았고, 2009년 잠정예산에 따르면 개발청의 총 운영예산으로 1억2백만 유로가 배정되었다.

오스트리아는 14개의 우선순위 국가와 팔레스타인 지역에 원조를 집중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만, 채무면제의 왜곡효과와 기타 비핵심 공적개발원조로 인해 대다수의 우선순위국가들은 오스트리아의 양자 원조 최대수혜국에 해당하지 않았다. 2006-07년의 최대수혜국들은 채무면제를 받은 국가들(이라크, 카메룬, 나이지리아)와 난민의 원천 혹은 유학비용이 귀속되는 국가들(터키, 이집트, 중국)이었다. 분야별로 보면, 오스트리아의 개발협력법은 빈곤퇴치, 환경, 평화 및 안보에 우선순위를 부여했고, 3개년 계획은 6개의 우선순위 주제를 지정하였는데 이는 2004년 이후 변경되지 않았다. 2005년에서 2007년에 걸쳐 오스트리아는 사회 기반시설 및 서비스 분야를 주로 지원했고(2억2800만\$), 세부적으로는 교육부문에 집중했다(1억1600만\$). 교육부문에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진 것은 오스트리아의 개발협력 우선순위와 느슨하게 관련되어 있는 장학금 지급에 대한 지원이 반영된 결과이다.

제 2 주제 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ODA)



3

제 1 절 기본구조

I. 기본정보

- 입법경위
 - 2002년 제정
 - 2003년 개정
- 법률 구조
 - 6부
 - 28개 조항
- 의의
 - 오스트리아 ODA 정책수립, 시행 및 평가를 위한 기본법
 -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청의 설립근거법

II. 오스트리아 연방개발협력법의 내용

1. [제 1 부] 정의 및 원칙

- 제 1 조
 -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기본방향
 - 오스트리아 개발정책의 정의
 - 오스트리아 개발정책의 목적
 - 오스트리아 개발정책의 원칙
 - 오스트리아 개발정책에 관한 연방정부의 의무
- 제 2 조
 - 개발협력의 정의와 범위
 - 조치(measures)의 정의와 범위
 - 사업(projects)의 정의와 범위

○ 제 3 조

-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ies)의 정의
- 개발단체(developing organization)의 정의

2. [제 2 부]

< 제 1 장 > 일반규정

○ 제 4 조

- 개발협력의 수행
- 개발협력의 집행
- 개발협력의 기여에 부가되는 조건

○ 제 5 조

- 개발협력사업의 시행방식
- 개발협력사업의 준비·시행·평가
- 단체선도형 방식
- 단체참여권유형 방식

< 제 2 장 > 오스트리아개발청유한회사

○ 제 6 조 개발청의 설립

- 명칭
- 본부소재지 및 회계년도
- 설립시기 및 등기
- 설립 및 소유의 주체
- 설립정관
- 순자본 및 추가자본
- 문서 등의 정본확인 불요

○ 제 7 조 자산의 이전과 평가

- 유동성 자산의 포괄적 이전 및 비금전적 자본의 공여
- 이전자산의 평가

- 대차대조표의 공개
- 제 8 조 개발청의 직무
 - 개발협력조치의 준비 및 시행
 - 3개년 계획을 포함하는 연례활동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 9 조 관리지침
 - 비영리회사로서 지위
 - 필요한 모든 거래 및 조치수행의 권리
 - 경쟁조건부 용역제공의 권리
 - 관리인의 경영계획 수립
 - 관리인의 기획 및 보고체계 수립
 - 타법률의 적용 배제
 - 반대급부 제공 조건부 연방법무실 이용에 대한 권리
 - 반대급부 제공 조건부 연방전산센터 이용
 - 해산시 자산처리의 원칙과 한계
- 제10조 개발청의 재정운영
 - 비용부담
- 제11조 관리인
 - 개발청 관리인의 선임
- 제12조 감독위원회
 - 감독위원회의 설립 및 구성
 - 해임 및 교체
 - 정보제공의무
 - 의사결정방식
 - 책임
- 제13조 조정사무소
 - 조정사무소의 설치 및 폐쇄
 - 조정사무소장의 선임

- 제14조 개발청의 피고용인
 - 피고용인에 대한 연방외무장관의 권리
 - 개발청 관리인과 조정사무소장 임명의 철회
 - 비밀엄수의무
 - 노동현장법의 적용
- 제15조 일반공무원의 전직
 - 일반공무원의 개발청으로의 배치
 - 개발청 법적 승계자로서의 지위 허용
 - 관리인의 관리감독 및 지시
 - 퇴직시 피고용권
 - 개발청의 연방정부에 대한 고용관련 지출의 보상
 - 고용보호법의 적용
- 제16조 계약직선임공무원의 전직
 - 계약직공무원의 개발청으로의 배치
 - 계약직선임공무원법의 적용
 - 퇴직급여의 이전
 - 퇴직급여 및 상여금에 대한 권리의 인수
- 제17조 회사의 피고용인이 된 공무원에 대한 적용규정
 - 보수청구에 대한 연방정부의 불확정책임
 - 청구의 이전
 - 피고용인의 주거
- 제18조 평등대우
 - 연방평등대우법의 적용
- 제19조 휴가
 - 관리인 및 조정사무소장의 무급휴가
 - 무급휴가의 기간

< 제 3 장 > 기 금

○ 제20조

- 기금신청 절차 및 방식
- 기금지원 협정의 내용
- 기금지원 중단 및 기금의 반납
- 기금지원 처분의 금지
- 동 조 적용의 예외

3. [제 3 부] 자문 및 조정

○ 제21조

- 개발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 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의 활동

○ 제22조

- 공적개발원조의 조정

4. [제 4 부] 기획 및 재정

○ 제23조

- 3개년 계획 수립 절차 및 내용

5. [제 5 부] 최종규정

○ 제24조

- 개인정보의 연방재무부예의 통지
- 개인정보의 감사법원에의 통지
- 개인정보의 공동재정지원협력자에의 통지
- 개인정보의 관련기구에의 통지
- 기타 목적상 개인정보의 통지
- 개발청의 정보사용

- 제25조
 - 예산집행법의 적용
- 제26조
 - 개인에 관한 용어의 남녀평등한 적용
- 제27조
 - 1974년 개발원조법의 무효화
- 제28조
 - 본 법의 집행책임주체 및 타 기관과의 관계

제 2 절 연방개발협력법의 주요 내용

오스트리아의 모든 공적개발원조는 연방개발협력법에서 규정하는 목적과 원칙 기타 제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동 법에서 언급되는 개발협력은 곧 오스트리아에 의해 수행되는 공적개발원조를 의미하며,(연방협력개발법 제2조)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1부는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용어 정의 및 목적, 원칙과 그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제2부는 개발협력의 수행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 특히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중심기관인 오스트리아개발청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내용과 기금제공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3부는 개발협력에 관하여 연방외무장관의 자문을 담당하는 개발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가 동 법에 의해 채택되는 장기계획에 부합하도록 조정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부는 오스트리아 개발정책에 관한 3개년 계획수립의 절차 및 내용을, 제5부는 동 법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협력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통지 기타 타 법령 및 기관과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각 조항별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I. [제 1 부] 정의 및 원칙

1. 제 1 조

제1조는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정의 및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제1, 2항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개발정책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로 구성되며, 특히 개발협력을 포함한다. 즉 오스트리아의 개발협력은 보다 넓은 차원의 개발정책 하에서 수행되게 되는 것이다. 제3항은 오스트리아의 개발정책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하는 개발도상국 내 빈곤에 대한 투쟁, 민주주의 등에 기초한 평화와 인간안보의 보장, 지속가능한 개발의 기초로서 환경의 보전의 세 가지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4항은 오스트리아의 개발정책이 개발의 수혜국에 대한 배려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개발과정에 관련국 정부 및 주민의 이해관계가 반영되고 개발협력의 조치들이 해당 사회의 사회적 환경에 통합하도록 하며, 또한 약자에 대한 배려의 관점에서 남녀평등과 아동 및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고려할 것을 그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3항과 4항의 개발정책의 목적과 원칙은 개발도상국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책분야에서 고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제 2 조

제 2조는 개발협력의 구체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1항에 따르면 개발협력은 공적개발원조를 맡는 정부가 취하고 경제개발협력기구에 보고되는 여하한 조치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그 수행이 오스트리아개발청(제6조에 규정)에게 위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첫째 연방정부가 시행하는 사업과 둘째 제1조 제3, 4항에 규정된 개발정책의 목적과 원칙을 준수하며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비정부 개발 단체가 시행하는 관련 사업의 증진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을 살펴보면 2항에서 언급된 사업은 크게 양자 간 사업과 다자 간 사업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양자 간 사업은 개발협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개발도상국 내 사업의 기획과 시행을, 후자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 및 지원, 문화 및 기술 이전, 개발근로자 및 전문가의 훈련 및 고용, 기획 및 연구 입안의 자문, 민간기업과의 협력증진 조치, 개발정책에 관한 홍보, 개발도상국 내 개발의 후원을 포함한다. 다자 간 사업은 다자 간 개발협력사업에의 참여로 구성된다.

2. 제 3 조

제3조는 개발협력의 대상이 되는 개발도상국과 개발협력 수행주체로서의 개발단체를 정의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개발협력의 대상이 되는 국가 및 지역을 오스트리아 개발정책에 관한 3개년 계획(제9조)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또 그 선정에 있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집계한 수혜국 명단에 근거하도록 하고 있다. 개발협력 대상국 및 지역 선정에 있어서 최소 3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접근하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돋보이고, 또한 대상국 및 지역 선정에 있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 국제개발협력의 통합성에 기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개발협력 수행주체인 개발단체를 정관에 단체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 운영이 개발협력을 포함하는 비영리법인격체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 외에 법적으로 승인받은 교회 및 종교단체, 지방정부와 기타 공법상 기업 및 회사가 제2조 제3항이 정하는 바와 같이 개발협력을 수행할 경우 개발단체에 준하여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II. [제 2 부]

1. < 제1장 > 일반규정

1) 제 4 조

제4조는 개발협력의 수행 시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제1항은 연방정부가 직접 개발협력을 수행하는 것 뿐 아니라 다른 국제법 주체와 협력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개발협력을 집행할 때 연방정부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부분을 명시하고 있는데, 연방정부는 개발협력을 집행할 때 개발도상국의 행정 및 사업 시행역량을 우선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사회적 구조를 강화해야 하며, 또한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단체에게도 개발협력의 집행 시 제공하는 기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오스트리아의 개발협력은 그 집행에 있어서 수혜국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항에서는 제1항에 언급된 개발협력에 대한 기여의 조건이 기관 간 협정 혹은 사법에 의거한 협정의 형식으로 개별 사안별로 규정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2) 제 5 조

제5조는 개발협력사업의 시행 및 기금제공과 관련하여 연방정부 및 오스트리아개발청의 개발협력사업 시행에 기금신청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크게 단체선도형 방식과 단체참여권유형의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고 있다. 제1항은 개발협력사업의 시행 시 기금신청자의 주도 혹은 기금제공 신청서 제출을 권유한 결과에 의거하여 사업을 외주하거나 기금을 공여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제2항은 연방정부가 3개년 계획의 정책현안관련 또는 우선순위의 맥락에서 개발협력사업의 준비, 시행 또는 평가를 외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3항 제2항의 단체가 주도하는 기금제공은 제1조 제3, 4항의 개발협력 목적과 원칙에 부합할 것을 강조하면서 기금제공 신청의 자격을 제3항 제2항 상의 단체로 제한하고 있다.

제4항은 오스트리아개발청이 제3조 제2항 상의 단체에게 정책현안관련 또는 지리적 우선순위의 맥락에서 사업의 시행을 위한 제안을 제출하도록 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적절한 방식으로 공지하도록 하고 있다.

2. < 제 2 장 > 오스트리아개발청유한회사

1) 제 6 조 개발청의 설립

제6조는 오스트리아개발청유한회사의 설립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오스트리아 개발청의 법정 명칭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개발청의 본부소재지가 비엔나임과 아울러, 회계연도는 서기력을 적용하고 개발청이 연방국장을 사용할 권리를 가짐을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오스트리아개발청이 2004년 1월 1일 설립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본 법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제2조 제1항을 제외한 유한회사법의 제 규정이 개발청에 적용됨을 언급하고 있고, 관리인의 신속한 상업등기부 등재 신청의무와 이에 따른 관할법원의 상업등기부 등재의무를 비롯하여 유한회사법 제5조 제2항의 적용 배제, 연방개발협력법 규정이 유한회사법 제4조가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그 정보를 설립정관에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4항은 연방정부가 개발청의 유일한 설립자이자 소유자임을 규정하고, 연방외무장관이 주주권의 행사와 주식이익의 관리를 포함

하여 이 장의 목정상 연방정부를 대표함을 규정하고 있다. 주식의 매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5항은 연방외무장관이 설립정관을 제정 및 수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은 개발청의 주식납입금이 70,000 유로를 상업등기부 등재 신청 후 전액 납입할 것과 연방정부가 개발청 자본금으로서 910,000 유로를 현금으로 기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7항은 개발청 설립 정관 기타 개발청의 모든 성명은 사무실 직인이 날인된 경우 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음을 언급하고 있다.

2) 제 7 조 자산의 이전과 평가

제7조는 개발청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산의 연방정부에서 개발청으로의 이전 및 동 자산의 평가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동산의 경우 부속된 권리, 법률관계, 의무, 입금계좌 및 부채를 모두 포함하여 2004년 1월 1일자로 개발청 소유로 이전됨을, 비금전적 자본 기여는 순자본의 증가 없이 그 가액이 조건 없는 자본준비금으로 이전됨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제2항은 이전된 자산의 평가가 공개된 대차대조표에 기재될 것과 그 표가 본 법이 발효된 이후 6개월 내에 준비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개된 대차대조표상 평가는 취득비용 및 생산비용이 연계되지 않아도 됨과 아울러 기술장비 및 자산의 평가는 시가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제3항은 대차대조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전된 자산과 부채의 개요를 담고 있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를 식별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개발청으로부터 이전되었으나 대차대조표에서 확인 불가능한 모든 자산 기타 법률관계 및 부채의 내용을 담고 있는 부속서가 대차대조표에 포함되어야 한다. 자산의 이전은 원칙적으로 유한회사법 제6a조 제4항에 따른 회사법 규정에 의하며,

공개된 대차대조표는 법원이 지정하는 감사가 감사 및 확인한다. 또한 관리인은 상법 제10조에 따라 대차대조표와 연례재정보고서를 비너 자이퉁지에 공고한다.

3) 제 8 조 개발청의 직무

제8조는 개발청의 직무로서 개발협력조치의 준비 및 시행, 3개년 계획을 포함하는 연례활동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전자를 다루고 있으며, 개발협력조치의 준비 및 시행 시 개발도상국 내 효과성에 특히 주목할 것과 직무 수행 시 개발활동을 하는 타 기관과 그 직무를 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발청 구체적인 임무로서 동 항은 계획 및 사업의 준비와 개발협력조치에 관한 협정의 체결, 개발도상국 내 지속가능한 개발의 지원, 다자적 개발협력사업, 국제기구 내 자국 전문가 배치의 지원, 그리고 개발협력과 관련된 연방외무장관에 대한 자문을 언급하고 있다.

제2항은 개발청의 연간활동계획입안의무와 그 절차 및 내용, 그리고 그에 따른 활동계획 시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4) 제 9 조 관리지침

제9조는 개발청의 관리 및 경영상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개발청의 비영리회사로서 지위와 경영상 원칙으로서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임무수행 시 필요한 거래 및 조치 수행의 권리를 언급하고 있다. 제3항에 따르면 개발청은 제2조에 의한 경쟁조건에 따라 역무를 수행할 권리를 가지나, 이는 제8조 제1항에 의거 개발청에 이전되는 직무의 수행을 위한 경쟁조건에 따라서만 수행되어야 하며, 수취 또한 비용준비금의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목표로 삼아야 한다.

제4항은 법 효력 발생 후 개발청 설립 전까지 임명 될 첫 관리인이

제1조 제3, 4항을 고려하여 경영계획을 세우고 감동위원회에 승인을 받을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관리인이 기획 및 보고체계 수립하는데 유의할 것과, 이러한 체계는 차후 개발청이 취한 조치의 평가가 가능하도록 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제6항은 무역규제법의 개발청에의 적용 배제를, 제7항은 개발청이 비용을 지급하고 연방법무실의 자문역무와 대리를 이용할 권리를 가짐을, 제8항은 개발청이 연방전산센터에 유료로 임무수행을 요청할 수 있음을, 그리고 제9항은 개발청의 해체, 청산, 최초 목적 상실시 자산의 사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10) 제10조 개발청의 재정운영

제10조는 개발청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개발청의 활동계획 수행 시 소요되는 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2004년 1월 1일부터 연간기본배정의 형태로 지급하는 비용, 연방정부가 활동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한 시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제공한 기여에서 나오는 비용, 연방정부 또는 제3자를 위한 역무수행에 대한 지급에서 나오는 비용, 기타 비용이 포함된다.

11) 제11조 관리인

제11조는 연방외무장관이 개발청의 일반관리인을 직원법에 따라 4년임기로 임명함을 규정하고 있다.

12) 제 12조 감독위원회

제12조는 개발청의 감독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 따르면 감독위원회는 늦어도 2004년 1월 31일까지 최대 임기가 4년인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설립되는데, 위원 6인은 연방외무장관이 임명, 이 중 1인을 연방외무장관이 의장으로 임명하

고, 관련 연방장관 4명이 각각 1인의 위원을 임명, 이 중 1인을 연방 외무장관이 부의장으로 임명한다. 나머지 2인 중 1인은 지방주지사들이 지방주연락사무소를 통해, 1인은 노동현장에 따라 설치된, 직원을 대표하는 기관이 지명한다.

제2항 상 연방외무장관과 관련 연방장관들이 임명한 위원들은 그들을 임명한 연방장관에 의해 언제든지 해임 및 교체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라 감독위원회는 자기를 임명하는 연방장관에게 정보제공의 의무를 진다. 감독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단순다수결로 의사를 결정하고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지며, 제5항에 따라 계획 및 사업 기타 사안에 대한 승인, 전년도 연간예산 및 예측치를 포함한 연간활동 계획과 제8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기 전 활동계획의 실질적 개정에 대한 감사, 자회사 설립과 이익 취득의 승인, 조정사무소 설치와 폐쇄의 승인, 제9조 제4항에 의거한 경영계획의 승인을 할 책임을 진다.

13) 제13조 조정사무소

제13조는 제1항에서 개발청은 타국에 조정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조정사무소의 설치 및 폐쇄는 연방외무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타국에 소재한 조정사무소는 소재한 국가의 정치 및 경제적 발전에 관해 연방외무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는 연방외무장관이 조정사무소장을 최대임기 4년으로 임명함을 규정하고 있다.

14) 제14조 개발청의 피고용인

제14조는 개발청 피고용인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연방외무장관의 관리인 및 조정사무소장에 대한 일반 또는 개별 지시권을, 제2항은 이들에 대한 제11조 및 제13조 제2항에 의거한 임명의 철회권을, 제3항은 개발청 피고용인의 비밀엄수의무를, 제4항은 피고용인에 대한 노동현장법의 적용을 언급하고 있다.

15) 제15조 일반공무원의 전직

제15조는 일반공무원의 개발청으로의 전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 따르면 2003년 12월 31일까지 개발청으로 이전된 직무를 최소한 주되게 수행한 일반공무원은 원칙적으로 2004년 1월 1일부터 개발청에 배치된다. 제2항은 이들 일반공무원이 개발청의 법적 승계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관리인의 일반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시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4항은 제1항에 의거한 일반공무원이 본 법 발효 후 5년의 기간 내에 연방일반공직의 퇴직을 선언할 경우 개발청 또는 개발청이 최소한 과반수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에 고용될 권리를 가짐을, 제5항은 개발청이 제항에 의거한 일반공무원에 대한 모든 고용관련 지출을 연방정부에게 보상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제6항은 개발청에 배치된 일반공무원에게 고용보호법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16) 제16조 계약직선임공무원의 전직

제16조는 일반공무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직선임공무원의 개발청으로의 전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최소한 주되게 개발청에 이관되는 임무를 수행한 연방정부의 계약직선임공무원을 2004년 3월 31일까지 이루어져야 할 고용인의 선언에 따라 상시복무를 위해 개발청에 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발청은 연방정부가 이들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는다. 제2항은 고용 및 보수법, 특히 계약직선임공무원법이 이들에게 계속해서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고, 계약직선임공무원법 제32조 제4항에 열거된 사유 중 하나에 의거한 여하한 고용종료는 개발청 설립 후 2년 내에는 허용되지 않음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제3항은 이들 피고용인이 새로 고용된 사람에게 유효한 법률규정에 따라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받을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관한 권리는 개인보장보험으로 이전됨을 규정하고 있다.

17) 제17조 회사의 피고용인이 된 공무원에 대한 적용규정

제17조는 제15조 제4항과 제1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개발청 또는 개발청이 최소한 과반수의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의 피고용인이 된 선임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제1항은 연방정부가 이들 선임공무원의 보수청구와 관련된 불확정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연방정부가 제15조 제4항 및 제1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선임공무원에게 이미 행한 청구는 고용이 개시될 때 회사에 이전됨을, 제3항은 고용인이 피고용인에게 제공하는 주거의 의무적 또는 자발적 사용과 이들에게 일반공무원법 제80조와 급여법 제24a조 내지 24c조의 규정이 준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공무원법 제80조에서 정한 고용인의 권리는 연방외무장관이 행사한다. 한편 제4항은 연방정부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개발청의 피고용인은 그들에 대한 개발청에 의한 이전의 고용이 연방정부에 의한 일반공무원 고용인 것과 같이 취급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18) 제18조 평등대우

제18조는 연방평등대우법의 규정이 몇몇 규정을 제외하고 개발청의 피고용인, 제14조 제1항에 의거 개발청에 배치된 일반공무원, 개발청에 의 고용에 지원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회사가 연방평등대우법 제2조 제1, 2항에 의거한 사무소 또는 본사무소로 보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을 언급하고 있다.

19) 제19조 휴가

제19조는 관리인과 조정사무소장의 직위로서 기간제 고용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의 무급휴가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총 1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3. < 제 3 장 > 기금제공

1) 제20조

제20조는 기금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다루고 있다. 제1항은 기금지원 신청 절차와 방식을 다루고 있는데, 기금지원 신청은 개발청에 제출되어야 하고 신청자는 기금제공을 받을 권리를 갖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발청은 3개년계획(제23조)에 따라 신청을 심사, 기금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대상자와 기금협정을 체결한다. 기금지원협정의 내용은 제2항에 따라 본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조건, 의무 및 제한을 포함하여야 하는데, 특히 신청자가 기금을 경제성 및 효과성 원칙에 부합하게 협정에 따라 사용하며, 기금 사용이 감사에 의해 검증될 수 있도록 증거물을 보존할 것과, 사업시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상황을 즉각적으로 보고할 것, 사업 시행 일정표를 작성할 것, 사업이 장기간인 경우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것, 취한 조치의 내용과 결과 및 사용내역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할 것, 사업시행의 조사를 위한 문서 등 감찰을 허용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해야한다.

제3항은 기금지원 협정이 기금지원의 중단 및 기금의 반납의무를 명시하는 규정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과실이 있는 일정한 경우 기본이율보다 3% 높은 이자까지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4항은 기금지원이 양도, 이전, 서약의 방법에 의하여 시행될 것을 금지하고 있고, 제5항은 일정한 경우 동 조의 규정과 다른 방식으로 기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Ⅲ. [제 3 부] 자문 및 조정

1. 제21조

제21조는 연방외무장관에게 개발정책 분야에서 그의 권한에 관한 조언을 행할 개발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활동을 규율하는

조항이다. 제1항은 연방조직법에 의거, 연방외무부 소속으로 개발정책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자문위원회는 연방외무장관의 지명에 의해 구성된다. 그리고 제3항은 자문위원회의 절차규칙 채택과 소집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제22조

제22조는 연방정부에 의한 공적개발원조가 제1조 제3, 4항 상의 개발정책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야 하고 3개년 계획에 일치하여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으며, 연방외무장관은 오스트리아 내에서, 그리고 유럽공동체조약 제180조와 관련하여 국제개발정책의 조정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IV. [제 4 부] 기획 및 재정

1. 제23조

제23조는 장기계획으로서의 3개년 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 및 내용을 다루고 있다. 연방외무장관은 연방재무장관의 동의하에 오스트리아 개발정책의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발청과 자문위원회의 의견 청취 후 이 계획을 연방정부에 매년 제출하고 오스트리아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동 계획은 연방정부(제2조 제1항)가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기여, 개발협력의 우선순위와 각 사안에서 필요한 기금지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V. [제 5 부] 최종규정

1. 제24조

제24조는 개발협력사업에 있어서 관련 기관 혹은 당사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통지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개별 사업 시행의 목적상 필요한 개인정보는 관련 기관 혹은 당사자에게 통지될 수 있다. 제1항은 개인정보의 연방재무부에서의 통지, 제2항은 개인정보의 감사법원에의 통지, 제3항은 개인정보의 공동재정지원협력자에의 통지, 제4항은 개인정보의 관련기구에의 통지, 제5항은 기타 목적상 개인정보의 통지, 제6항은 개발청의 정보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2. 제25조

제25조는 본 법에 2001년 예산집행법이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3. 제26조

제26조는 본 법에서 개인에 관한 용어는 남녀평등하게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4. 제27조

제27조는 1974년 개발원조법이 효력이 없어짐을 규정하고 있다.

5. 제28조

제28조는 본 법의 집행책임이 연방외무장관에게 있으며, 제7조 제1항의 집행책임은 연방외무장관에게, 제1조, 제12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제22조의 집행책임은 관계연방장관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연방외무장관의 조정 권한을 제외하고서는 개발정책과 관련된 기타 연방장관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언급하고 있다.

제 3 절 오스트리아 법제의 특징

오스트리아 연방개발협력법은 오스트리아 개발협력 정책의 수립, 시행 및 평가를 위한 기본법으로서 개발협력의 목적과 원칙을 비롯하여

오스트리아 개발협력 시행의 주요 주체인 오스트리아개발청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그 법제상 주요 특징을 검토하는데, 먼저 전체적인 구조상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항목별 특징을 분석할 것이다.

I. 구조상 특징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구조를 살펴보면 오스트리아의 개발협력은 크게 연방외무장관과 오스트리아 개발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방외무장관은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기본정책이 되는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제23조) 개발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 통제 및 조정을 담당하며,(제8조 제2항, 제12조 등) 오스트리아 개발청은 연방정부로부터 구체적인 개발협력조치의 준비 및 시행에 있어서 많은 권한을 위임받아 실제적인 개발협력의 수행을 담당한다.(제2조 제1항, 제8조 제1항) 특히 본 법은 오스트리아개발청의 설립과 운용에 관한 규정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제6조에서 제19조)

II. 제 1 부

제1부는 개발협력을 포함하는 오스트리아 개발정책의 정의 및 목적과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본 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정의하는 일반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본 법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한편 오스트리아 연방개발협력법의 원칙은 수혜국 및 취약계층 중심의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제1조 제4항) 이는 제2부에 포함된 제4조 제2항에서도 강조되고 있는데, 개발원조에 있어서 수혜국의 역량 자체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혜 대상국을 선정함에 있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의 수혜국 명단

에 근거하도록 하는 등 국제적인 정책기조에 부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제3조 제1항)

또한 오스트리아 연방정부는 개발협력의 구체적인 수행을 오스트리아 개발청에 위임함으로써 개발협력수행의 통일성을 꾀하고 있다. 제2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개발청의 권한이 매우 포괄적임을 알 수 있다. 협력국과의 장기적인 관계(3개년 계획 부속서 -> 선택과 집중인지 확인),

Ⅲ. 제 2 부

제2부는 개발협력의 실제 수행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총 14개 조항을 오스트리아개발청의 설립과 운용에 관한 규정에 할애함으로써 이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오스트리아개발청의 설립은 연방외무부 내 개발협력 담당부서가 연방외무부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유한회사를 구성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외무장관이 오스트리아개발청 감독위원회의 위원 중 반수 및 그 중 1인을 의장으로 임명할 수 있고 또 개발청의 계획수립에 대한 승인 권한을 보유하는 등 연방외무부의 통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다. 개발청이 연방외무부의 통제를 받으면서도 연방외무부로부터 독립해 있는 구조는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통일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오스트리아개발청 설립 전 연방외무부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은 개발청에 배치되게 되는데, 본 법은 이러한 공무원의 전직과 관련하여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참고할만하다.(제14조에서 제18조)

제3장은 기금지원의 제공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지원협정 체결상의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제20조는 기금신청자에 의한 기금 사용내역 및 그 결과의 보고서 제출 등 각종 보고절차를 비롯하여 지원된 기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감독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IV. 제 3 부

제3부는 연방외무장관의 개발정책에 관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연방외무장관의 개발정책 조정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연방개발협력법은 연방외무장관이 각종 개발정책을 충돌이 없도록 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개발협력에 관한 본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관계 기관들과 마찰이 최소화되도록 제5부에 속하는 제28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V. 제 4 부

제4부에서는 연방외무장관의 3개년 계획 수립 및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본 법은 연방외무장관이 3개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매년 연방정부에 제출, 의회에는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4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주요 목적은, 첫째 평화와 인간안보의 보장, 둘째 전지구적 빈곤 감소, 셋째 환경의 보전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개발 계획과 사업은, 첫째 주인의식/동반자의식, 둘째 사회-문화적 맥락의 통합, 셋째 아동 및 장애인의 필요에 대한 고려, 넷째 젠더평등, 다섯째 주인의식, 조화 및 제후을 원칙으로 견지해야 한다. 이와 같은 목적과 원칙은 2002년 의회를 통과한 새로운 개발협력법에 명시되어 있다.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목적과 원칙을 구현하는 구체적 수행방식, 수행대상국가 및 지역과 수행주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1 절 수행방식

오스트리아는 수혜국과 함께 양자적 개발협력을 진행하며, 국제기구와 함께 다자적 원조를 제공한다.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은 수혜국 내

에서는 계획과 사업을 실행하고 국내에서는 개발관련 교육에 기여하는 비정부기구들과 협조관계를 갖는다. 업무에 있어 민간부문과 기업 또한 동반자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I. 양자적 개발협력

계획과 사업들을 통합하여 선별된 수혜국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가용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의 양자적 개발협력은 아프리카, 아시아, 중앙아메리카, 동남부 유럽의 7개 우선지역에 집중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충분한 전문적 노하우와 장기간의 경험을 보유한 영역에서 동반자들을 지원하고 함께 협력한다. 국가별 전략, 분야별 및 지역별 계획, 통합 운영지침 등은 수혜국과의 협의를 통해 발전된다. 일관되고 효율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비정부기구, 관련 전문가, 여타 공여국 등도 이러한 협의절차에 참여한다.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중점주제는 물과 위생, 농촌개발, 에너지, 투자 및 고용, 중소기업 진흥, 교육, 거버넌스, 평화와 안전의 보장이다.

오스트리아의 계획과 사업은 언제나 젠더평등에 관심을 기울이며, 아동과 장애우의 요구를 고려한다. 이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빈곤을 완화시키고, 환경을 보전하고, 평화 및 인간안보를 보장할 수 있도록 수혜국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두 국가 간의 직접적인 협력을 의미하는 양자적 개발원조는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실무기구인 오스트리아 개발청을 통해 주로 실행된다. 다자적 개발협력은 외무부의 제7국 제1과가 직접 관장한다. 다자적 및 양자적 계획은 모두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상호 연결되어 있다.

가용한 예산이 제한된 현 상황에서, 현대의 개발협력은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사용, 다른 공여국과의 원활한 협조, 수혜국의 주인의식 강

화, 가능한 광범위한 금융수단의 활용 등을 요구한다. 오스트리아 또한 이러한 원칙들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2005년 파리선언과 2008년 아크라 행동과제에 명시된 새로운 원조 체계는 더 높은 수준의 원조 효과와 효율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빈곤을 감소시키고 그로 인해 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으로 여겨지는 예산지원과 같은 새로운 원조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오스트리아는 2005년 몇몇 우선 국가에 있어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예산지원을 제공했다.

이외에도 주요한 개선의 일환으로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조치들을 수혜국의 전략에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또한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른 공여국들과 함께 공동의 자금을 운영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나아가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 이제 현대의 개발원조는 수혜국에게 자금지원을 제공하는 최선의 방법과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II. 다자적 개발협력

경제의 세계화와 안보위협은 전세계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제 개발정책에 있어서도 변화가 촉구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더욱 더 세계경제로 편입되어 가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구와 기관들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정책의 협조가 수행하는 역할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다자적 개발협력은 오스트리아 개발정책의 전반적인 접근방식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오스트리아는 직접적 기여와 특정 계획을 통해 그리고 공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자기구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국제연합의 다른 회원국들과 함께 능력배양, 원조 효율성, 젠더평등 등의 목표를 담은 2008-2011 전략계획을 채택했고, 오스트리아에 의해 추진된 유엔아동기금의 사업들은 소아마비 퇴치, 부르키나 파소 여성

들의 성기훼손 금지, 시리아의 이라크 아동난민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국제연합 여성발전기금을 통해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결의 1325(2000)의 지속적인 이행을 위한 연구를 후원했다.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은 국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제연합, 세계은행, 경제개발협력기구, 관련 문제를 다루는 유럽연합의 개발협력 위원회 내에서도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인도적 구호 계획을 조율하는 것도 다자적 개발협력 하에서 진행된다. 또한 오스트리아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국제 적십자, 국제연합 중동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사업 기구, 국제연합 세계식량계획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유지한다.

오스트리아가 국제연합 체계 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기구들은 다음과 같다.

- 국제연합개발계획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 국제연합산업개발기구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
- 국제연합국제아동구호기금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UNICEF)
-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 국제연합인구활동기금 (United Nations Fund for Population Activities, UNFPA)
- 국제연합인간주거계획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HABITAT)

Ⅲ. 비정기구기구와의 협력

정부 및 기업계에 더하여, 시민사회는 사회를 구성하는 주된 3가지 요소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활력있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그리고

효과적인 사법체계와 함께, 시민사회는 인구들 중 가장 빈곤한 계층의 요구를 표출하고, 그들을 대변하여 개발협력의 목표인 인간안보, 빈곤 퇴치, 환경보전 등에 기여한다.

시민사회의 일부로서 비정부기구는 북반구와 남반구의 나라들에서 개발협력에 관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 기구는 소외된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고, 힘 없는 이들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 홍보 및 교육활동, 정치적 압력행사 등에 관여한다.

남반구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북반구에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데에 전문적인 노하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에서 비정부기구는 개발 분야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잡았다.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은 이 기구들의 전문성을 높게 평가하며, 다양한 수준에서 비정부기구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비정부기구는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국가별 계획 하의 구체적 주제에 관한 토의에 참여하고, 비정부기구와의 협력에 기반을 둔 사업과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 이러한 사업과 계획의 목표는 언제나 개발도상국에서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빈곤을 퇴치하는 데에 있으며,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의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핵심적인 측면으로 한다.

IV. 민간부문과의 협력

민간부문과 개발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에 있다. 지속가능한 빈곤퇴치는 경제성장을 이끄는 효율적이고 활력 넘치는 민간부문을 필요로 한다. 민간투자는 고용을 창출하고, 노하우를 축적시키며, 수입을 얻을 기회를 제공한다. 제 기능을 발휘하는 민간부문은 세수의 원천이 되고, 따라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체계를 운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이런 이유에서,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은 민간부문과 개발협력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노력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접근방식을 취한다.

첫째는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수혜국에서 민간부문과의 협력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개입단계에서 관심사는 민간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환경을 설계하는 데에 놓여야 한다. 이 시기의 주된 조치로 법의 지배 확립, 경쟁 및 무역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정한 규칙, 기반시설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둘째는 수혜국에서 직접적으로 민간부문을 장려하는 것이다. 즉, 수혜국의 사업체들의 다양한 수단의 도움을 받아 사장에서의 지위를 강화하고, 정보기반을 확대하며, 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목표를 삼아야 한다. 셋째는 오스트리아 및 유럽의 산업과 교역이 관련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성공적인 경제관계는 장기적으로 지역 인구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은 민간부문 협력수단을 통해 이러한 지원을 제공하고, 오스트리아의 기업들이 유럽연합의 공동개발정책 계획들에 더욱 동화되도록 한다.

민간부문과의 협력은 인구 중 소외된 계층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고, 수혜국의 경쟁과 무역을 강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원함으로써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목표를 증진한다.

제 2 절 수행국가 및 지역

각각으로 분리된 원조에서 지역범위의 계획으로 나아가는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어,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은 아프리카, 아시아, 중앙 아메리카, 남동부 유럽의 7개 주요지역에 집중하고 있다. 12개 조정사무소를 설립하여 협력적인 동반자관계에 기반한 운영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발협력이 지역여건에 맞게 지향되고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직된다.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은 주요지역과 우선순위 국가를 두어 활동한다. 남반구에서는 중앙아메리카(니카라과), 서아프리카/사헬(부르키나 파소), 동아프리카(에티오피아, 우간다), 남아프리카(모잠비크), 히말라야/

힌두쿠쉬(부탄), 기타(팔레스타인)이 해당하며, 동유럽에서는 남동부유럽/서부발칸(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몰도바, 세르비아, 코소보), 남부코카서스가 해당한다.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우선순위 지역과 동반자 국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중앙아메리카 : 니카라과,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 서아프리카/사헬지역 : 카보베르데,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 동아프리카/빅토리아호수지역 : 에디오피아, 우간다, 케냐, 부룬디, 탄자니아, 르완다
- 남아프리카 : 모잠비크, 짐바브웨,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 히말리아/힌두쿠쉬지역 : 부탄, 네팔, 파키스탄
- 동남부유럽/서부발칸지역 :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몰도바, 몬테니그로, 세르비아, 코소보
- 남부코카서스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 기타 우선순위 국가 : 팔레스타인 자치령
- 특별 계획 : 아프카니스탄, 이라크, 서사하라

I. 중앙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연안

오스트리아와 중앙아메리카, 특히 니카라과와의 협력관계는 흥미로우면서도 많은 난관을 지니고 있다. 역내 국가들은 다양한 무역협정(중앙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 SICA)을 통해 상호 국제관계를 강화하여 세계경제에서 효과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이 지역에서 무역관계의 개방정책이 이행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 계획의 일부로서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생산부문에 관한 조치들은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수혜국과 우선순위 국가에서 소규모 기업들과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진다. 동시에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은 새로운 기회가 사회적, 경제적으

로 소외된 계층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오스트리아는 능력배양과 같은 구체적인 계획 및 사업에 지원을 제공하며, 선주민과 여성의 역할을 증진시키는 데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인다.

중앙아메리카와의 관계에서 오스트리아는 지역 행위자와 그들의 자체 사업과의 협력에 집중한다. 1986년부터 마나구아에 조정사무소를 개설하여 지역활동을 감독해왔고, 중앙아메리카는 1992년부터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우선순위 지역이었다. 지역 수준에서, 오스트리아는 주로 농촌개발, 중소기업 진흥, 재생 에너지, 능력배양 등에 관련해 왔다. 2007년부터는 카리브해 지역의 재난관리, 재생에너지, 에너지안보 구상도 지원해 오고 있다.

II. 서아프리카/사헬

서 아프리카에의 사헬 서 아프리카 클럽(SWAC) 등과 같은 비정부 기구들은 모든 수준에서 관련된 모든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오스트리아 또한 이 지역의 초국가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시민사회 수준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수행해 나간다.

비록 서아프리카가 훌륭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풍성한 문화적 다양성을 자랑하지만, 많은 부채, 해외무역 부진, 석유의존성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와 같은 지역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원국 간의 경제통합을 진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초국가적인 안보정책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은 이 지역에서 대체 에너지의 사용을 지원하며,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지역본부 설립을 후원하고 있다. 또한, 평화를 유지하고 분쟁을 방지하려는 이곳 지역기구들의 노력을 장려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1960년대부터 서 아프리카의 부르키나 파소와 케이프 베르데 같은 우선순위 국가들과 협력해 왔다. 이러한 국가들과의 협력 하에 지속가능한 농업, 에너지 공급, 통합 자원관리, 성공적인 교육시스템 등과 관련한 계획을 진행하며 혁신적인 개발방식을 상호교환할 수 있었다. 특히, 오스트리아 개발협력과 케이프 베르데의 수자원 분야와의 사업은 농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연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수자원 관리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주었다.

Ⅲ. 동아프리카

오스트리아는 동 아프리카에서 상수도 공급 및 위생에 관한 전문성으로 알려져 있다.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은 이 지역에서 수 년에 걸쳐 세계은행의 수자원 및 위생 계획을 지원해 왔다. 우간다에서는 상수도 공급 및 위생 사업을 실행하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했고, 공여국 조정 위원회의 수자원 분야에서 1년 간(2006/2007) 의장국을 맡기도 했다. 또한, 르완다에서도 수자원 분야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소외된 농촌 지역을 위해 유럽연합과 함께 자금을 지원하는 5개년 원조계획을 통하여, 2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결한 식수와 위생시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생활여건의 상당한 향상을 가져올 수 있었다.

이 밖에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우선순위는 화해, 평화와 인간안보 보장,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계획 및 사업이다. 다른 공여국들과 함께 오스트리아는 시민사회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들을 지원한다. 기본권과 여성의 권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통해 정책결정 과정에 대중의 참여가 확대되는 것을 돕는다. 북부 우간다와 같은 분쟁지역에서는 난민과 소년병들이 그들의 마을로 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 아프리카에서는 탈집중화와 지역화를 돕는 데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기초 자치단체가 행정과 발전을 위한 전문적 역량을 배양

하도록 조언하고 격려함으로써 기초 자치단체 수준에서 장기적인 자치를 위한 운영기관이 자리를 잡도록 한다. 대표적인 예로, 오스트리아는 에티오피아에서 보건 및 식량 분야에 관한 지방단체의 능력배양을 크게 장려했다. 이러한 방침은 지방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중장기에 걸친 계획 및 사업을 운영할 역량을 갖추어 주므로, 지속가능한 개발 협력을 향한 중요한 일보전진에 해당한다.

IV. 남아프리카

빈곤은 남아프리카에서 복합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오스트리아 개발계획은 가용한 자원과 빈곤의 영향 하에 놓인 사람들의 실제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빈곤퇴치를 위한 광범위한 접근방식을 취한다. 민주화와 사회적 평등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개발을 위하여 필수적이기 때문에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SADC) 지역에서 오스트리아는 법의 지배, 공정한 거버넌스 등을 지원하는 계획과 사업을 장려해 왔고, 모든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 회원국들도 이러한 견해를 지지한다.

법의 지배와 인권존중의 강화는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성취하는 데 있어 주된 선결조건에 해당한다. 이는 한편으로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하는 신뢰성 있는 공공영역을, 다른 한편으로는 소외계층의 요구를 표출하고 이러한 요구가 충족되기를 주장하는 양식 있는 시민사회를 필요로 한다.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은 시민사회에 의한 공동의 빈곤분석과 이에 따른 적절한 빈곤퇴치 전략을 목적으로 하는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 비정부기구위원회의 제도적 계획을 지원한다. 특히, 의회는 빈곤퇴치와 민주주의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예산절차에 있어 의회의 적극적인 참여는 국가개발계획의 입안과 국가빈곤퇴치전략에 기반한 국가자원의 배분에 대해 많은 영향을 끼친다. 때문에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은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의 강화에 역점을 둔다.

V. 히말라야/힌두쿠쉬

히말라야/힌두쿠쉬 지역은 아시아에서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우선 순위에 놓인다. 이 지역의 지형으로 인해 외딴 산악지역에는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따라서 수입을 얻을 기회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곳의 주민들은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구가 증가하고 붕괴와 침식의 위험이 있는 불안정한 산악토양에 부담이 가중되면서 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효과를 얻기 위하여 이 지역에서 개발을 위해 사용가능한 자원들은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다. 1993년부터 오스트리아는 지역 기구인 통합산악개발 국제본부와 협력하여 응용연구를 진행했다. 예를 들어, 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 지역의 벌 품종을 보존하는 데에 원조를 제공했고, 양봉은 지역주민에게 추가적인 수입원이 되었다. 또한, 히말라야/힌두쿠쉬 지역의 60%는 목초지에 해당한다.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유목민이며, 이들은 국가 정책결정에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이에 착안하여,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은 지역 목초지 계획을 통해 유목민의 경제적 생존을 보장하고, 지역공동체가 그들의 핵심적 자원을 사용하고 보존하기 위한 권한을 부여받도록 지원했다. 최근에, 오스트리아는 지역주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형태의 에너지를 탐사하기 위한 계획도 지원하기 시작했다.

VI. 남동부 유럽/서부 발칸

남동부 유럽은 발전 도상에 올라있으며, 민주화 및 경제변동의 과정 속에서 상당한 성공을 기록하며 지역적 수준에서도 많은 진보를 이루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곳에서 정치적 안정이 확립되어 있지는 못하고, 많은 곳에서는 여전히 실업과 빈곤의 문제가 만연해 있다.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은 이 지역에서 고용과 수입의 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민간부문의 발전을 통해 남동부 유럽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 지역에서의 활동으로, 오스트리아는 자국 민간부문과 기업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다른 지역 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지역협력을 위한 접근방식들은 남동부 유럽에 있어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다. 지역 사업들을 조정하는 주된 국제체계로 남동부 유럽 안정화 협약의 후신으로 사라예보에 사무국을 두는 지역협력이사회가 있다.

VII. 남부코카서스

남부코카서스에서 유럽연합과의 더욱 긴밀한 협력에의 전망은 개혁추진을 위한 동력으로 간주된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는 유럽연합과의 결합이 전반적인 안정화를 돕고 구체적인 사회, 경제적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후, 이 동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민주주의, 시장경제, 전반적인 안전보장을 향한 힘든 전환기를 거치고 있다.

남부코카서스는 인종구성과 언어 측면에서 볼 때 유럽에서 가장 다양한 지역에 해당한다. 개별 국가들은 독립 이후 해결되지 못한 영토 분쟁에 여전히 휘말려 있다. 때문에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은 국내적, 국제적 차원의 대화를 통해 개발과 번영의 주된 장애물인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남부 코카서스 내의 신뢰구축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를 보완하여, 오스트리아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그에 따라 운영되는 행정 및 사법체계를 강화하는 데에 조력한다. 나아가 다원화된 민주사회의 발전을 돕기 위해 특히 청소년, 여성, 언론인의 활동을 장려한다.

VIII. 팔레스타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주된 관심사는 중동 평화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이다. 국제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오스트리아

는 2국가 해결책의 목표를 지지한다. 로드맵과 유럽연합 행동전략과 동일하게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미래의 응집력 있고, 주권을 가지며, 민주적인 국가를 위해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선출되고 운영되는 기관을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팔레스타인 지역 내에서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은 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국제기구, 팔레스타인 비정부기구와 함께 업무를 추진한다. 무엇보다도 팔레스타인 주민, 응급구호, 난민보호를 위해 특히 중요한 보건 및 상수도 공급을 위한 사업들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점령지역 내에서 인적자원을 계발하는 동시에 제도적 측면을 강화하는 데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제 3 절 수행주제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주제별 우선순위의 목록은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집중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목록은 식수 및 위생, 개발 관련 교육, 훈련, 과학 및 연구, 농촌 개발, 에너지, 투자 및 고용, 중소기업의 증진, 분쟁방지 및 해결, 선한 거버넌스 및 법의 지배, 민주적 분권의 발전, 탈중앙집권, 인권 및 인간안보의 강화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은 빈부격차를 줄이고, 평화를 유지하며,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데에 기여한다. 진보는 많은 부분에서 수자원과 에너지의 충분한 공급에 의해 좌우되며, 교육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민주주의 제도의 건설은 안정을 가져다준다. 모든 오스트리아 개발협력 계획과 사업은 젠더 평등, 아동 및 장애우의 요구를 진지하게 고려한다.

첫째, 전세계적 빈곤은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3가지 주요한 주제 중의 하나이다. 오스트리아의 많은 사업과 기여가 빈곤퇴치를 돕거나 가능한 한 이 목표에 가깝게 지향되어 있다. 빈곤은 토지, 수입 등의 생활자원의 극도로 불균등한 분배로부터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오

히려 사회, 인종, 종교적 차별 및 정치적 무관심에서 생겨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빈곤 및 소외계층을 선제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시키고 사회, 경제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빈곤퇴치를 위한 조치는 언제나 자연자원의 보존 및 형평한 사용, 민주화와 일반대중의 참여, 국가 및 지방수준에서의 공정한 거버넌스, 인권존중과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평화와 인간안보의 보장 또한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중요한 주제에 해당한다. 평화와 안보는 빈곤퇴치, 무력충돌의 발발방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선결조건을 이룬다. 특히, 무력충돌과 취약국가의 문제는 대부분 극빈국에 속하는 전세계 인구의 20%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제연합 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진전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꼽힌다. 이에 오스트리아는 단지 직접적이고 구조적인 폭력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근원적인 이유에 대한 해결까지 추구하는 적극적 평화의 비전에 매진하고 있다. 따라서 오스트리아는 긴장의 조기발견, 분쟁상황에서 자기역할의 정확한 판단, 분쟁의 변환과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시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분쟁예방의 문화를 장려한다.

셋째, 환경보호와 필수적인 자연자원의 보존은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이다. 비옥한 토양, 깨끗한 물과 공기, 풍부한 동식물, 광물 등을 포함하는 완전한 환경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자연적 기반이지만, 지난 수십 년 간 이에 대한 지속적인 파괴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세계의 극빈국 국민들이 이러한 환경파괴와 자연자원 고갈에 의해 가장 악영향을 입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더 개발협력에서 필수적인 자연자원을 약탈하지 않는 균형잡힌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스트리아는 자금을 지원하는 모든 활동과 사업에서 자연자원의 책임있는 사용을 그 근본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양자 계획 및 사업을 위한 예산의 1/3정도가 환경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배정되어 있다.

넷째, 공정한 거버넌스와 인권존중도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주요 목표 중 하나에 속한다. 공정한 거버넌스는 인간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투명성, 참여 등의 원칙을 준수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등 올바르게 기능하는 공공부문은 그 국가의 인간안보에 기여한다. 또한 그 사회의 가장 빈곤한 계층의 요구를 표명하고, 그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활기찬 시민사회와 법적 확실성을 보장하는 법의 체계가 갖추어지면 평화를 보장하고, 빈곤을 퇴치하며,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오스트리아의 개발 사업과 계획의 1/3 이상이 적극적으로 민주주의 제도와 절차를 장려하고 정책결정에 대상 인구가 참여하도록 촉구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의 투명성, 법적 확실성의 증진, 법의 지배도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우선순위에 놓여있다. 이하에서는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이 다루는 여러 주제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I. 빈곤 감소

여러 해에 걸쳐 빈곤과의 전쟁은 오스트리아 개발협력 계획에서 핵심적 현안이자 오스트리아 공약의 중심 목적이다. 이 원조 계획과 사업의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은 다음에 집중하고 있다.

- 우선순위 및 동반자 국가로서 최빈국의 선정
- 해당 국가 내에게 특별하게 필요가 큰 지역, 지방, 구역의 선정
- 동반자 국가 내에서 분산적 접근과정에 대한 지원
- 빈민들이 직접 수혜를 받는 조치에 대한 정책적 접근의 지향
- 특히 취약집단에 대한 선정 (특히 여성과 아동)

II. 교육

오스트리아 교육협력의 핵심전략은 현장주의와 제도적 및 인적 자원 역량의 개발을 보장하고 국제적 및 지역적 네트워크의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Ⅲ. 에너지

수년 동안 오스트리아의 에너지 부문 활동은 그 시행에서 막대한 자본이 요구되는 소수의 사업에 집중하여 왔다. 특히 합리적인 비용으로 충분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없는 개발도상국 내 빈민과 농촌주민에 대해 집중하여 왔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대략 20억명은 현대적 형태의 에너지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이다.

Ⅳ. 젠더

오스트리아의 젠더에 대한 개발협력 차원의 접근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여성, 젠더 그리고 무력충돌이고, 두 번째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의 이행과 관련된 여성, 평화 그리고 안보이고, 세 번째는 젠더폭력방지활동이다.

Ⅴ. 거버넌스, 인권 그리고 평화구축

폭력은 빈곤 다음으로 개발협력의 주 관심사다. 평화 없는 개발이 없듯이 개발 없는 평화도 없다. 그러나 개발협력을 실제상 및 시행상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분석적으로 인권, 젠더현안, 분쟁방지, 테러에 대한 전쟁 뿐 아니라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에 연계시켜서 해야 할 일이 많다. 개발협력은 빈곤 감소,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적 구조의 증진, 천연자원의 보존 및 적절한 교육을 통해 위기를 방지하는데 기여한다. 개발협력의 자원이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이 일관된 국내적 및 국제적 정책, 즉 정치적 및 시행의 차원에서 국제개발, 무역, 방위 및 대외정책의 맥락에서 지속적인 과정을 달성할 것을 목적으로 투여되고 있다.

VI. 농촌 개발

이 분야 활동의 출발점은 일반적으로 변방의 저개발 지역의 소규모 농업이다. 그 활동은 생산성 증가, 산물의 다양화, 자원(토지, 자본, 기술 등)에 대한 접근의 보장, 시장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기반구조의 창설 및 개선과 대표조직의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VII. 환경

오스트리아는 1992년 리오선언과 기후, 오존층, 생물다양성, 사막화에 관한 전지구적 4대 협약을 승인하였고, 그에 입각하여 장래 자연환경의 유지와 지원에 직접 나서고 있다. 1996년 이후 모든 사업과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방식에 의해 오스트리아의 개발협력은 의도하지 않는 여하한 부정적인 사회적 또는 생태적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시도를 수행하고 있다.

VIII. 물 공급 및 위생

오스트리아의 개발협력 정책은 항상적으로 세 가지의 주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사업은 첫째 주민들의 구체적인 혜택을 창출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지속가능하여야 하고, 셋째 담수지역의 천연자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다름 아닌 물과 위생이다. 오스트리아는 물 관리 및 그 기술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과 기법을 갖추고 전 세계 도처에서 물상황 개선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IX. 민간부문 개발

경제 성장은 개발을 위한 선결조건이다. 기업은 수입과 일자리를 만든다. 오스트리아의 개발협력은 동반자국가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민간부문을 강화시키는 것을 강구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우선적 계획인 민간부문과 개발은 기업과 지역주민 모두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 공적개발협력간 잠재적 상승효과를 활용하고 있다.

제 4 절 주요 사례 : 개발과 인권

오스트리아는 공적개발에 대한 인권적 접근을 통해 공적개발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공적개발에 대한 인권적 접근은 1990년대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 즉 인간의 필요(need)와 권리(rights)에 적합하도록 고안한 개발철학을 도입하면서 국제적으로 부상하였다. 기존에는 공적개발의 최대 현안인 빈곤을 수입(income)이라는 단순한 경제적 범주에 한정하였으나, 인권적 접근은 식량, 물, 교육, 건강, 노동, 사법, 정치적 참여 및 적당한 생활수준에 대한 기본적 인권에 대한 평등한 접근의 결여, 즉 인권에 관한 복잡하고 다층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고 다루는 새로운 경향이 다. 또한 1986년 국제연합 총회가 채택한 「개발에 대한 권리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to Development)은 개발을 양도할 수 없는 인권, 즉 모든 개인과 인민들이 부여받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의 실현을 포괄하는 인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부터 빈곤감축은 개발협력의 최우선적 목표로 자리를 잡고 있고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는 2015년까지 빈곤과 기아를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빈곤감축과 같은 개발협력의 수행을 인권에 기반하여 접근하는 사업방식을 도입하여 확산시키고 있다. 인권중심적 접근(human rights based approach, HRBA)으로 명명되는 방법은 국제법에 명시된

인권에 기초하고 그러한 인권의 관점에서 특정한 문제 또는 상황에 대해 새롭게 접근하는 방식을 뜻한다. 그리하여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구속력 있는 권리와 의무에 연계되어 있고, 권리부여(empowerment), 집행가능한 권리, 법적 책임귀속(legal accountability), 의무부담자에 대한 감독, 빈곤층에 대한 비차별과 빈곤층의 적극적 참여라는 지주에 기반함으로써 사람들이 빈곤의 압박으로부터 스스로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을 보장한다.

오스트리아의 개발협력에 대한 인권중심적 접근은 ‘인권정책문서’(Human Rights Policy Document)를 통해 정의, 기본사항 및 중기목표를 정하고 있고, ‘인권매뉴얼’(Human Rights Manuel: Guidelines for Implementing a Human Rights Based Approach in ADC)을 통해 오스트리아개발청(ADC)이 그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지에 관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인권매뉴얼은 인권정책문서가 정의하고 있는 3단계, 즉 원칙으로서 인권적 접근의 주류화(mainstreaming a human rights approach as a principle), 개입부문으로서 인권(human rights as an intervention sector) 그리고 정책대화로서 인권(human rights in policy dialogue)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I. 규범적 원칙으로서 인권

오스트리아 인권정책문서는 오스트리아개발청의 모든 활동이 국제연합 인권조약에 기반하고 그 실제 이행에 기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편으로는 오스트리아의 개발협력 사업 및 계획에서 인권을 증진시킬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활동 영역과 부문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규범적 원칙, 즉 비차별과 평등한 기회, 참여와 권한부여, 책임귀속에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 비차별과 평등한 기회

1945년 국제연합 헌장과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1조 및 제2조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각각은 차별 없이 이 권리를 행사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수의 인권조약과 기타 국제문서에 비차별과 평등권이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비차별과 평등한 기회에 대한 공약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향유하는데 장애가 있는 차별받고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과 집단들을 특별히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예를 들어 어떠한 집단이 빈곤으로부터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관한 상황분석과 수요조사(needs study)에 주목하고 평등한 권리 행사를 가로막는 모든 법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및 문화적 장애를 식별하고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별받고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특히 선주민(indigenous populations), 인종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민족, 아동 및 청소년 또는 장애인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주변부에 있는 집단과 이들 집단 내의 여성이 있다.

오스트리아의 개발협력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남녀평등, 아동과 장애인의 필요(needs)에 대한 특별한 고려이다. ‘젠더평등과 여성에 대한 권한 부여’에 관한 오스트리아개발청의 정책문서, 장애인에 관한 중점문서, 동반자로서 아동에 관한 중점문서, 여성, 젠더 및 무력충돌에 관한 중점문서,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중점문서 등을 통해 전략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2. 참여와 권한부여

참여(participation)와 권한부여(empowerment) 원칙은 국제인권법이 개인에게 권리보유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핵심적 시금석이다. 이 원칙은 공적 및 사적 관계를 조직화하는 데서

시민의 참여를 요구하며, 수많은 다른 인권의 이행과 불가피하게 연계되어 있다. 탄압을 두려워하지 않는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참여의 개발에 필수적이다. 인권규범과 가치에 기반하는 발전협력의 일부로서 참여와 권한부여 원칙은 빈곤층을 피해자가 아니라 행위자로 대우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빈곤에 대한 투쟁에 참여하고 자신의 필요(needs)을 말하고 조치의 이행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그러한 참여를 촉진시킬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발전협력의 의무이다. 그리고 한편으로 권한부여는 능력배양과정(process of enablement)이고, 그 과정에서 각각의 정부의 국제인권공약과 국내법상 권리에 관한 정보 및 실제 부정의한 것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같이 지식 또는 특별한 기술을 알려주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궁극적으로 의존관계의 극복으로 유도하는 인권중심적 접근의 관점에 따른 변화는 권한부여를 실효적으로 만든다.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정책문서 ‘빈곤감축’은 정치적 참여와 권한부여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다. “빈곤은 일반적으로 무력함과 무방위에 결부되어 있고 공적 관계 및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공간적 거리라는 요소에 의해 강화된다. 특정한 사회적 및 인종적 집단의 배제와 고립은 결과적으로 그들의 이해관계가 정치적 의제가 거의 될 수 없음을 뜻한다. 오스트리아의 개발협력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차별받는 주민집단이 현존하는 사회경제적 체계와 진행 중인 정치과정에 통합되는 것을 증진한다. 권한부여는 이러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하여 관련 주민들이 사회적 합의와 문제해결적 접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참여와 권한부여 원칙은 ‘선한 거버넌스’에 관한 오스트리아 개발협력 정책문서, ‘물공급, 위생 및 수자원’에 관한 오스트리아 개발협력 정책문서에도 적시되어 있다.

3. 책임귀속

인권을 개발협력 활동에 통합시키는 것은 책임귀속(accountability)의 원칙을 강조한다. 이 원칙은 차별받는 집단의 권리를 의무부담자, 종종 정부 및 그 대리인 뿐 아니라 기업과의 관계에서 생겨난다. 모든 권리 보유자들, 특히 심각한 차별과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과 집단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고지를 받아야 하며, 관련된 의무부담자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창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의무부담자들은 각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신의 역량을 평가하고 그 의무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을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권리는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하며, 국가와 국가기관들은 자신의 국제법적 및 국내법적 의무에 부합할 의무가 있고 자신의 관할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 예컨대 입법, 정책 및 계획을 통해서 취하여야 한다. 책임귀속이 없다면 권리는 빈껍데기가 될 수밖에 없다.

책임귀속은 법적 구체뿐 아니라 기타 진정제도를 수반해야 한다. 그 제도는 법적 구체조치뿐 아니라 국가인권기구, 옴부즈만, 의회, 시민단체, 언론매체와 기타 관련기구 등과 같은 제도와 전략을 의미한다. 그리고 참여적 예산배정과 예산집행과 같은 수많은 수단들이 책임귀속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한다. 책임귀속의 필수적 조건은 모든 정부업무의 투명성이다. 즉 이해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제한 없고 자유로운 접근과 효율적인 책임귀속제도가 요구된다. 또한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독립적 기구 또는 강령의 역량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책대화 및 예산지원의 조건 설계에서 인권책임평가는 각 정부기관의 인권의무와 폭넓게 가능한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 및 국가기관의 역량을 구성한다.

II. 계획수립상 인권

오스트리아의 개발협력은 해당 지역의 각 동반자 또는 우선순위국가(priority country)의 인권상황에 대한 주제별 평가(thematic assessment)를 실시하고 그러한 우선사항들을 개입부문(intervention sector)에 포함시켜, 인권을 계획 수립의 한 구성요소로서 고려한다. 예를 들어 한 국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소수민족에 대한 보호에 심각한 결함이 드러나는 경우, 그 국가에 대한 계획은 장래의 모든 계획에서 이를 교차부문 주제(cross-sectoral theme)로서 다루거나 부문별 우선순위로 설정한다.

1. 개 관

계획수립시 인권적 접근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절차가 있다.

- 이원적 전략이 자주 채택되며 계획을 위한 두 개의 향후 대상집단, 즉 권리보유자로서 사람(즉, 식량권에 대한 접근의 증진)과 그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는 의무부담자로서 사람(예를 들면, 지방행정에서 특정한 정부책임이 있는 자들)이 선정된다.
- 이는 환경, 관련 행위자 및 그들의 영향범위에 대한 폭넓은 분석으로 시작한다. 이에 덧붙여 인권체계(인권조약의 비준 상황, 기본적인 국내적, 법적 및 정치적 체계 등)에 대한 분석이 있을 수 있다.
- 위의 규범체계와 특정한 맥락상 특별한 책임의 비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특별한 책임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어떤 임무를 맡겨야 하는가, 예를 들면 로마 아동의 학교체제에의 통합은 누구의 책임인가, 관광사업이 지역주민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는가 등을 말한다.
- 위의 절차에 기초하여, 위임사항(mandate)와 실행(execution) 간의 간극을 연결하는 접근방법이 개발된다. 예를 들면, 영향을 받는 사람

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의무부담자들이 자신의 임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위자간의 협력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인권의 이행 범위(예를 들면 여성의 실제 참여율)는 계획이나 사업의 성공에 대한 지표가 되기도 한다. 또한 한 국가의 인권상황은 국내 개발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적절한 또는 유의미한 지표의 선택은 특히 인권에 적용될 때 난항을 겪기도 한다. 그러나 국제연합 차원에서 국제연합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유엔개발계획(UNDP)의 작업이나 비정부기구인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의 국가별 순위와 같은 분야에서 유용한 새로운 발전이 계속되고 있다.

개발협력 계획 및 사업에서 인권중심적 접근의 주류화는 해당 맥락에서 그 개입이 가급적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도록 만드는 것, 즉 대상집단에 접근하여 변화를 일으키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거에 적용했던 필요중심적 개입방법(Needs-based intervention)과 인권중심적 개입방법(Rights-based intervention)에 대한 비교는 다음과 같다.

필요중심적 개입방법	권리중심적 개입방법
서비스에 초점	권리에 초점
지원을 받을 만하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	원조에 대한 권리를 갖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
수동적 원조 수혜자	능동적 참여자
개입 이후에도 기존 수혜자 대부분이 불우한 상태로 남음	모두를 위한 원조, 구체적 식별과 열세의 제거
단기적 그리고 최근 현안과 사건에 대응하는 경향. 개인적 관심사, 자선적 접근	장기적 기획, 행위자 및 기관의 책임을 다룸
지역적 필요	보편적 권리, 맥락에서서 고안한 이행

필요중심적 개입방법	권리중심적 개입방법
필요의 위계, 예컨대 기본적 공급 서비스를 우선	권리의 불가분성 및 상호의존성, 즉 건강 및 참여 보장
증상을 다룸. 사회구조를 문제 삼지 않음. 지배적 권력관계와 실용적으로 작업	원인 조사 및 학제간 접근, 사회구조 분석, 권력관계 변화
외부 지원에 크게 의존	권한부여 및 역량개발에 집중
책임은 자주 계획 이행에 국한됨	주제별로 모든 관련 행위자의 책임, 모니터링은 필수적
목표의 분산	총체적 및 다차원적 목표
결과에 초점	결과 및 과정에 초점

2. 국가별 계획수립의 일부로서 인권평가

오스트리아의 개발협력이 국가별 계획수립의 일부로서 인권평가를 위해 활용하는 정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별 정보에 관한 최초 준거는 당해 국가의 인권보고서들이다. 이 보고서들은 각 정부들이 해당 기간 내에서 권리, 예컨대 건강, 젠더 평등 또는 아동에 대한 폭력 금지 등의 보장을 위하여 각 정부가 취한 조치에 관한 국제연합 전문가기구와 인권이사회(보편적 정례검토)에 각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들이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들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각 조약기구(treaty bodies)가 그 보고서들을 평가한 후에 제시하는 결론 및 권고들이다. 이외에도 국제연합 인권이사회와 지역기구 및 비정부기구들이 다루는 주제별 및 국가별 절차에 따른 보고서들은 그 관련도가 위와 동일하다.

<법적 및 정치적 맥락>

- 각 국가들은 어떤 국제적 및/또는 지역적 인권문서에 서명하고 비준하였는가?
- 관련 국가들은 위 의무에 대한 유보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
- 국내적 차원에서 개인청원절차를 다루는 기관이 있고, 실제 이용되고 있는가?
- 법체계(헌법, 법률 기타)는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가? 또한 실제로 적용되고 이행되는가?
- 사법체계가 기능을 하고 있고 또한 독립적이고 공정한가?
- 경제적 및 사회적 권리에 국가예산배정이 기타 지출, 예컨대 안보사항과 비교하여 적절한가?
- 인권이행전략, 예컨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개발되어 있는가?
- 충분히 분류된 정보, 예컨대 젠더, 연령, 도시 및 교외의 분포별 현재의 국가통계가 어느 정보로 이용될 수 있는가?

<개별 인권 (선택사항)>

- 국가가 모든 사람의 **노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신의 처분하여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가?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이 금지되어 있는가? 추가적인 직업훈련에 접근가능한가? 근로보호규정이 존재하고 또한 이행되는가?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가 존재하는가?
- 잠정 출처 : 국제노동기구 보고서, 노동조합 및 비정부단체 보고서
- 국가는 하나의 제도로서 가족을 보호하고 **가정을 이루고 유지할** 권리 (혼인법을 통해 예를 들면 임신부, 피임, 아동노동금지의 지원)를 지원하는가?
- 잠정 출처 : 국제연합에 제출된 국가보고서
- 국가가 **적당한 음식** 및 물에의 접근에 대한 모든 사람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가?
- 잠정 출처 : 식량, 식수 및 건강권에 대한 국제연합 특별절차, 세계식량기구 보고서, 비정부단체 (예컨대, 들면 식량우선 정보 및 행동 네트워크 (FIAN)) 보고서

- 국가가 **적당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가?
 - 잠정 출처 : 주거 및 필요 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국가예산 배정액, 비정부단체(예컨대, 주거권센터) 보고서, 적당한 주거권에 관한 국제연합 특별보고관
- 국가가 **교육**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가?
 - 잠정 출처 : 유네스코의 모두를 위한 교육 세계모니터링 보고서 (매년 발행), 유니세프 보고서, 소수민족 차별에 관한 보고서, 교육에 대한 권리에 관한 국제연합 특별보고관
- 국가가 **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지적재산권, **과학적 진보**, 예술적 표현을 보호하는가?
 - 잠정 출처 : 독립적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국, 극장 및 공연장의 수에 대한 보고서, 문화 및 과학을 위한 국가예산 배정액, 국제연합 지적재산권기구에 제출된 국가보고서,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연합 특별보고관
- **생명권**(정당방위에 대한 명시적 규칙 포함)의 자의적인 제한에 대한 효과적인 법적 보호가 존재하는가?
 - 잠정 출처 : 비정부단체(예컨대, 국제사면위원회) 보고서, 초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관한 국제연합 특별보고관
- 국가는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는가? 사형이 선고되고 있는가? 그 적용이 적법절차에 따른 것인가?
 - 잠정 출처 : 비정부단체(예컨대, 국제사면위원회) 보고서, 사형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 고문에 관한 국제연합 특별보고관
- 국가 **자의적 체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는가? 피구금자가 법적 대리인 및 보건의료에 접근할 수 있는가? 그들이 외부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가? **강제실종**의 사례가 있는가? 전쟁범죄재판이 관련 국가의 구성원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가?
 - 잠정 출처 : 비정부단체(예컨대,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 자의적 구금 및 강제실종에 관한 국제연합 실무분과
- **의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는가? 국가가 평화적 집회를 허용하는가? 국가가 결사의 권리를 보장하는가?

- 잠정 출처 : 보도기사, 시민단체(예컨대, 프리덤 하우스, 국경 없는 기자들) 보고서, 독립된 신문, 라디오 방송국, 텔레비전 채널,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수에 관한 보고서, 반체제집단 또는 소수민족 보고서,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연합 특별보고관
- 서비스(예컨대, 건강, 교육)에 대한 접근을 박탈당한 주변부 아동과 청소년 집단이 존재하는가? 한 국가 내에서 출생이 적절하게 등록되고 있는가? 가정을 위한 국가지원계획(예컨대, 이전지출, 부모교육시설)이 존재하는가? 아동 및 청소년의 체험을 위한 계획이 개발되어 있는가?
- 잠정 출처 : 유니세프 세계아동상황(www.childinfo.org),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국제연합 합동계획(UNAIDS) 보고서, 국내 가정 및 복지 보고서, 아동권리단체(Save the Children, End Child Prostitution Child Pornography, Trafficking of Children for Sexual Purposes - ECPAT International) 보고서,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에 대한 국제연합 특별보고관
- 국가가 정치참여에 여성이 포함될 것을 장려하고 있는가? 여성이 공직, 관리직과 고등교육 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는 장애가 있는가? 특히 여성의 자활을 강화하는 계획(예컨대, 소액융자)이 존재하는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실행되는가? 국가가 여성의 토지, 근로, 금융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장려하는가?
- 잠정 출처 : 국제연합 여성발전기금 보고서,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국제연합 특별보고관
- 각 소수민족들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문화적 전통과 종교를 행하고 자신들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가?
- 잠정 출처 : 보도기사 (예컨대, 종교단체의 설립), 비정부단체 보고서(예컨대, 휴먼라이츠 워치 또는 지역 비정부단체), 유럽안보협력기구의 민주적 기구와 인권 사무소, 로마 및 신타 연락사무소, 유럽안보협력기구 소수민족 최고대표, 국내 교육보고서(예컨대, 소수민족 언어로 된 교과서의 이용가능성)

3. 사업주기 관리상 인권 점검 목록

오스트리아의 개발협력에서 지속가능한 인권주류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기(project cycle)에 중심적 인권과 관련 평등기회, 책임 귀속와 참여/권한부여 원칙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하여 많은 개발기관들은 인권이 모든 전략 및 계획 단계에서 고려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활동조치를 사업주기 관리에 맞추도록 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경우, 사업의 식별 및 고안과정에서 사업입안자들이 고안하는 사업 및 계획이 인권의 이행을 증진하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 식별>

- 문제 분석이 특정한 인권 문제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다양한 인권들간에 구별할 수 있도록 사업의 식별을 위하여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왔는가? (예 / 아니오)
- 사업의 식별을 위하여 인권에 관한 정성적 정보를 활용하여 왔는가? (예 / 아니오)
- 이해관계자 분석이 취약집단 및 저혜택집단을 식별하였는가? (예 / 아니오)
- 사업식별에 대한 추가적인 심층 분석이 필요한가? (예 / 아니오)

<사업 설계>

위 단계의 분석에서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고 식별된 모든 인권문제는 사업 설계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사업 제안은 담당 오스트리아개발청 직원에 의해 다음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 사업 설계에 앞서 인권 평가가 이루어졌는가?
- 이 평가의 결과물이 논리체계에 적합하게 조정되어 왔는가?

- 사업의 전략 및 설계가 참여, 비차별, 책임귀속 및 권한부여와 같은 인권원칙을 반영하고 있는가?
- 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가 고려되었는가?

<이행>

이행 단계는 지역 비정부단체와 행위자와 협의하여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인권 모니터링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이전에 합의된 목표/지표 및 (있을 수도 있는) 수정사항의 준수를 위해 사업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평가>

계획 또는 사업의 최종 평가는 사업 설계 단계에서 정한 지표와 비교하는 것이고 대상집단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최소기준으로서 국제적 개발기구들은 계획 또는 사업이 인권에 부정적인 효과가 없도록 요구한다.

III. 개입부문으로서 인권

앞서 다룬 규범적 원칙으로서 인권은 인권을 지속적 원칙으로 다루는 것이고, 계획수립상 인권은 그 원칙들을 오스트리아개발협력에 통합시키는 방법을 적시하였다. 이에 비해 개입부문으로서 인권은 몇 가지의 특정 인권들을 다루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에서 중요성을 갖는 인권들을 식별하고 적용하는 과정은 각 인권별로 다음과 같은 절차도에 따르고 있다.

- 1단계 : 맥락
- 2단계 : 주요 내용 및 기준
- 3단계 : 관련 특정 대상 집단 (권리보유자 측면과 의무부담자 측면)
- 4단계 : 사례

개입부문으로서 인권은 모든 대상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차원에서의 개별인권과 인권 향유에서 취약하고 혜택을 미약하게 받고 있는 특정 집단의 인권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사례를 살펴본다.

1. 일반적 차원의 개별 인권들

이 장에서 일반적 차원에서 다루게 되는 인권목론은 망라적이지 않고 선별적이다. 선별된 권리목록으로는 적당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 건강에 대한 권리,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대한 권리, 평등한 사법접근 및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가 있다. 각각의 권리와 관련된 사업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적당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 빈곤 감소

<마케도니아의 사회통합 및 인권>

이 사업의 목적은 공동체 차원에서 시작되는 국가개발계획의 초안을 작성하기 인권중심적 접근방법을 이행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서 우선 순위는 개발 및 의사결정절차에서 빈곤층 및 저혜택층을 직접 참가시키는 것이다.

사업과정에서 평등 및 비차별 원칙과 참여 및 권한부여와 인권의 점진적 이행의 존중을 위한 지표가 정해지며, 통합모니터링에 적용된다. 전반적 목표는 현존하는 모든 수준(국가, 지역 및 지방)의 정부기관의 책임의 한도를 정하고 그 집행을 지원하는 한편, 시민사회를 강화하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개발협력 계약번호 8148-00/2006)

2) 교육에 대한 권리

<EFORD - 자생적 발전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부르키나파소 내 이 사업은 교육부와 협력하는 국가교육체계를 위한 지역적 및 보완적 조치이다. 이 사업은 훈련센터들을 설립하여 교육요원에게 기초교육, 직업훈련 및 평생교육을 제공한다. 지역 주민의

필요에 맞도록 개발한 훈련방법으로는 혼농임업(agroforestry), 축산, 전통 약용식물의 경작과 가공, 관광, 기계학 그리고 지역적 건축 자재의 사용 등이 있다. 장기적으로 이 계획 전체는 개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동반자국가에게 이양될 것이다. 교육은 개인의 정체성, 문화 및 해당 지역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6개 지방언어로 시행된다. (오스트리아 개발협력 계약번호 2465-00/2009)

3) 건강에 대한 권리

<팔레스타인 내 전염병 예방 및 관리>

전염병은 건강 측면 외에도 팔레스타인 사회에 경제적 및 사회적 부담을 주고 있다. 이 사업은 대응조치를 취하고 건강관리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건부는 팔레스타인 전체 주민을 보살필 능력을 결여하고 있고, 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주된 목표는 전염병 관리를 위한 지식의 전수와 보건의료시설 내 그리고 의료인력을 위한 진단 및 치료능력의 배양이다. 이 조치에 추가하여 병원의 기술 및 보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지원이 제공된다. 사회적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보건요원들이 채용된다. 전염병 대비 절차는 보건부와의 긴밀한 협조에 힘입어 간소화되고, 전염병 퇴치에 관한 지침과 연계되어 제도화되었다. (오스트리아 개발협력 계약번호 1686-00/2008)

4)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대한 권리

<아프리카 의회 빈곤감소 네트워크 지원 구상>

이 네트워크는 15개 회원국 출신 의원들을 위한 빈곤감소 및 전략 개발에 관한 토론의 장을 제공한다. 네트워크의 주된 기능은 의회들의 빈곤예산을 비롯한 예산절차를 위한 정보교환 및 능력개발이다.

차후 훈련정책을 통하여 의원들은 빈곤감소전략의 구상에 대한 공동 결정, 공공지출 배정액의 인상, 빈곤층의 이익의 보호를 더 잘 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관심사는 의회 및 시민사회간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목표는 투명하고 효과적인 거버넌스이다. 의회간 활동이 이 절차를 지원한다. (오스트리아 개발협력 계약번호 8148-00/2006)

5) 평등한 사법접근 및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

<사법, 법과 질서에 대한 기여 부문 투자계획>

이 계획은 우선순위로써 토지법, 가족법과 같은 우간다 내 민감한 법률부문을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주변부 계층의 사법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 조치의 목적은 시민사회 및 지방당국과 연계하여 기관들이 책임에 대한 상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기관의 직원은 자신을 권리자에 대한 서비스제공자로 보아야 한다. (오스트리아 개발협력 계약번호 1831-01/2007)

2. 특정 집단의 인권

취약하고 저혜택상태에 있는 집단의 인권은 자주 무시되거나 충분한 향유가 여러 요인에 의해 저해된다. 이에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은 아동, 여성, 장애인, 소수민족과 선주민의 인권을 특별히 고려하고 있다.

1) 아동인권

<아동매매를 반대하는 초국경적 행동>

유럽 동남부에서는 매년 수천 명의 아동들이 아동매매의 피해자가 된다. 이 사업은 여러 단계로 진행되고 국경을 넘어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예방, 피해자의 보호, 자발적 반환, 재통합 및 협조를 장기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지방당국 및 피해자보호기구 뿐 아니라 기타 국제적 동반자들과 함께 지속적이며 광범위한 아동보호 계획의 수립을 추구한다. (오스트리아 개발협력 계약번호 8102-05/2006)

2) 여성인권

<유럽 동남부에서의 의원들의 안정성 약속 젠더 T/F 지원>

유럽 동남부 국가들 내의 이 지역 사업이 정한 대상집단은 의원들이다. 이 사업은 의사결정절차와 함께 인식 제고, 기법 이전 그리고 젠더 주류화 접근을 위한 방법론의 개발에서 의원들의 권한부여를 장려한다. 이 지역의 모든 행위자와 연결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참여적 접근의 강화를 모색한다. 종합적인 목표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비준과 이행이다. (오스트리아 개발협력 계약번호 8251-0072008)

3) 장애인 인권

<시각 및 청각 장애아동의 교육에 대한 접근>

케냐의 시각 및 청각 장애아동은 교육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왔다. 이유 중 하나는 양질의 교사 부족이다. 이 사업은 적절한 교수법을 전수하고 시각 및 청각 장애아동에게 교육에 대한 접근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시에 이 사업은 혁신적인 교수법을 통해 e-러닝(e-learning)의 수용을 높일 것을 목표로 한다. 장기적 영향으로는 시각 및 청각 장애아동이 사회에 통합되고 더 나은 취업의 기회가 증진될 것이다. (오스트리아 개발협력 계약번호 2333-02/2006)

4) 소수자와 선주민의 권리

<선주민 권리의 증진>

이 조치는 과테말라 내 마야인들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권리 주장을 위한 민주화에 특정화된 통합적 기여가 예상된다. 2개 국어 교육 계획은 교육부와 협조하여 개발되며, 지역 차원에서 수립된다. 마야의 문화, 언어 및 전통법은 마야인단체들이 국가기관과 협력하고 그 결과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화된 개발 조치를

통해 증진된다. 세 번째 구성요소로서 추가적 훈련조치를 통해 여성의 직업적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인식제고 활동은 선주민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창하는 것을 증진한다. (오스트리아 개발협력 계약번호 8148-00/2006)

IV. 정책대화로서 인권

정책으로서 인권대화는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이 정책문서에 따라 인권을 다루는 세 번째 개입단계이다. 이 대화는 상황 및 활동분야에 따라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맥락의 다른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1. 정책대화의 일반적 고려

정책대화에서 일반적으로 크게 4가지 점이 고려된다. 첫째, 기여자와 각 동반자국가의 정책대화는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공동회담에서는 협력에 기초하고 이를 전제로 한 합의를 추구한다. 인권대화는 특히 계획과 동반자국가 내에서 필요한 정책의 개혁 뿐 아니라 이를 추진할 준비와 정치적 의지를 다룬다. 둘째, 정책대화를 위하여 이용가능한 강령을 사용한다. 대부분의 동반자 국가와 핵심지역에서 많은 강령이 이미 인권 현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의 장점은 내부적으로 민감한 현안의 부적절한 노출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동반자 국가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용이하도록 동반자 국가가 이미 비준한 인권조약의 이행을 최우선적 관심사로 삼을 수 있다. 셋째, 정책대화는 소위 동지적 기여자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몇몇 기여자들이 인권의 존중을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용이하며, 유럽연합의 후원하에 선도되는 공식화된 대화의 유효성이 커지고 있다. 넷째, 인권에 대한 주목을 유지하는 것이다. 기여자 또는 제3세계 국가들은 존재 자체와 협력을 통해 인권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가능한데, 외부자로서 기여자들은 지역 비정부단체가 옹호집단보다 보다 쉽게 또는 보다 안전하기 때문이다.

2. 정책 일관성과 기여자의 통일성

일관성 있는 적용 및 이행과 통일된 노력은 정책대화와 인권존중에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오스트리아 개발협력과 같이 소규모의 기여자에게는 단독보다는 다른 동지적 국가와 함께 행동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와 같은 공동접근은 무엇보다도 일반적 또는 부문별 예산 지원과 대규모 계획의 공동이행의 형태에서 큰 역할을 한다. 공동접근은 보다 고위급과 정책대화를 진행할 수 있게 하고, 그리하여 고위급 의사결정자들의 영향력 크기만큼 기여의 영향도 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대화는 비차별, 참여 또는 저혜택층 권리의 지원과 같은 인권원칙의 이행을 위하여 지방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3. 정책대화의 수준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정책대화는 세 가지 차원, 즉 양자적 차원, 복수의 양자적 차원, 다자적 차원이다. 우선 양자적 차원에서는 한편으로는 양자간 협력 협정과 국가별 계획의 일부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적 또는 부문별 예산 지원의 준비, 참여 및 평가의 측면에서, 오스트리아 개발협력, 조정사무소의 장과 대사관이 참여한다. 다음으로 복수의 양자적 차원에서는 관련 방식으로 세계은행(World Bank)의 협의 집단, 예컨대 원탁회의 또는 상호 또는 동반자국가와의 지방 협력제도가 있다. 어느 경우에서든 인권은 민감한 문제이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은 다른 기여자 및 다자적 단체와 협력하여 이 과정을 진행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자적 차원으로는 유럽이사회의 제3세계국가들과의 인권대화에 관한 지침이 중요하다. 이처럼 공식화된 부문의 대화는 실제 다른 회원국과 통일적으로 항상 수행된다. 이외에도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은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다자적 접근 외에도 국제연합 차원의 접근이 있고, 또한 경제개발협력 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차원의 접근도 있다.

5

가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목적은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지원이다.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에 따른 계획(programmes)과 사업(projects)은 정규 평가(regular evaluation)을 받는다. 이 평가는 오스트리아 개발활동이 가급적 최고의 질과 영향을 확보하는데 기여를 한다. 평가는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학습과정을 촉진하고,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동반자 기구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의도하고 있다. 또한 평가를 통해 산출된 결과물은 오스트리아에 의한 기여의 질을 확인하고, 어떻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조치를 취하는데 적용된다.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은 현재 개발을 고려하여 평가에서 새로운 방법과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평가는 보다 많은 다른 기여자들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대화와 개발협력의 실행의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서 평가결과물의 보급과 제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제 1 절 의 의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은 사업을 기획, 의뢰 및 관리를 하고 계획을 평가하는 일련의 절차 속에서 개발협력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이러한 평가를 제도적 틀 내에서 수행하기 위하여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은 ‘사업 및 계획 평가를 위한 지침’(Guidelines for Project and Programme Evaluations)을 통해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수행할 기반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 지침은 기본 개념 정의, 목적, 기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이 적용하는 평가의 개념과 목적을 살펴보기로 한다.

I. 개념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평가 개념은 국제적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평가(evaluation)는 평가와 연계되어 있으면서도 서로 분리된 다른 두 가지 개념, 즉 모니터링(monitoring) 및 검토(review)와 구분된다.

개발원조위원회의 용어정의상 ‘평가’는 “진행 중인 또는 종료된 사업 또는 계획의 설계, 적용 그리고 결과에 대해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뜻한다. 이러한 평가의 목적은 목표 관련도 및 충족도, 개발 효율성, 효과성, 영향과 지속가능성이다. 평가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모니터링’은 “특정한 지표들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계속적 기능”을 말하며, 관리자나 진행 중인 개발에 개입하고 있는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목표치에 대한 진전 및 성취의 정도와 배정된 예산의 사용의 진전 정도를 보여주는 것들을 제공한다. 또 다른 구별개념으로서 ‘검토’는 개입의 성과에 대한 평가로서 주기적으로 실시되거나 수시로 시행된다. 이러한 검토는 포괄 범위와 분석 깊이에서 평가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검토는 상대적으로 기능적이며, 평가와 비교하여 평가항목과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고 복잡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다.

II. 목적

사업주기 관리에서 포괄적 방식으로 사업 및 계획을 평가하는 기본 방침 하에서 평가가 취해야 할 목적을 네 가지, 즉 경험을 통한 학습, 투명성, 이해의 심화, 소통의 개선으로 상정하고 있다. 각 평가목적이 취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험을 통한 학습>

사업과 계획의 성공과 실패는 평가의 도움을 받아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사업과 계획이 개선될 수 있다.

<투명성>

평가는 책임감 있는 자원의 활용을 제시하며, 계약자, 동반자, 수혜국 내 대상집단과 납세자에 대하여 결과와 그 효과를 정당화한다.

<이해의 심화>

평가는 개발협력의 전제, 선택사항 및 한계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심화시키는 도구이다. 평가는 개발협력에 관한 포괄적 논의와 반영에 기여할 의도를 갖고 있다.

<소통의 개선>

평가는 개발 사례에서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다른 참여자에 의해 관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집단들간의 소통과 이해를 촉진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III. 수행의 주체와 내용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에 따른 계획과 사업의 평가는 연방유럽외무부(Federal Ministry for European and International Affairs)와 오스트리아개발청(Austrian Development Agency)의 공동책임이다. 연방유럽외무부는 다른 기여자와 함께 평가사업을 조정하고 평가전략의 틀을 짜는 한편, 개발청은 동반자기구와 직접 손을 잡고 평가를 관리하고 실시한다. 이러한 평가는 독립된 통섭적 전문가팀(team of independent, interdisciplinary experts)이 지방전문가의 참여 하에 수행한다.

평가는 일반적으로 독립된 외부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되며, 복잡한 주제들을 분석하고 의도되거나 의도되지 않은 효과들을 찾아낸다. 평가란 사업 또는 계획의 특정 부분이 예정대로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은 이유들에 대해 조사하는 작업이다. 이는 사업 중에 수행되기도 하며, 사업 또는 계획이 종료한 후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평가 자체는 사업 또는 계획의 지속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며, 오직 권고와 관찰만을 할 수 있다. 평가는 또한 사업 및 계획이 실제보다 더 과대평가 되거나 즉시 종료를 결정하는데 정당화 기제로서 사용될 수 없으며, 위기관리를 위한 도구로도 사용될 수 없다.

위와 같은 평가는 사업주기 중에 실시되는 중간평가, 형성적 평가와 사업종료 후에 적용되는 사후평가, 최종평가, 영향평가, 약식평가, 누적 평가가 있으며, 이러한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고려되는 주요 관심사는 다음과 같다.

- 오스트리아 개발정책의 기본관심사의 준수
- 해당 국가 주민의 지방적 및 국가적 필요성과 연계
- 사업동반자의 참여 및 책임
- 목적과 사용된 자원을 기준으로 한 개별 사업 및 계획의 효과성
- 활동의 지속가능성과 영구성

제 2 절 원칙과 체계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은 양자협력이든 다자협력이든 동반자국가를 포함하여 다수 관계자의 참여를 전제로 한다. 특히 국제연합 차원에서 전개되는 공적개발원조는 효과적인 개발원조를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협력을 진행한다. 21세기 국제적 개발원조의 중요한 준거가 되고 있는 새천년개발목표가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오스트리아는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의 회원국이자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서 원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의 기준 마련에 참여하고 그 기준에 대한 개발원조를 실행하고 있다. 따라서 오스트리아가 시행하고 있는 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역시 그 평가의 원칙과 기준은 국제적 준거와 지침을 고려하여 작성되고 적용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오스트리

아 개발협력이 견지하고 있는 국제적 평가 원칙과 기준을 살펴보고, 이를 집행하는 평가체계를 검토하기로 한다.

I. 국제적 평가 원칙과 질적 기준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평가에 적용되는 국제적 평가 원칙과 기준은 크게 객관성, 평가자의 독립성, 관련 당사자의 전 과정 참여, 투명성 및 집중성, 신뢰성, 보고서의 완결성 및 명확성, 공정성 및 관련 당사자 이익의 보호, 유용성이다.

<객관성>

모든 평가는 그 개념과 이행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의 적시는 방법론적으로 평가와는 명백히 구별되어야 한다. 또한 다른 관점 뿐 아니라 강점과 약점 역시 고려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결과물, 결론 및 권고들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평가자의 독립성>

평가자는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평가자에 대한 신뢰도는 평가자들이 활동에 있어서 모든 관련 직원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음을 포함한다.

<관련 당사자의 전 과정 참여>

평가는 가급적 참여적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사업 동반자와 함께 공동으로 준거기준을 개발하는 것이 한 예가 될 수 있고,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결과물 또는 평가보고서에 대하여 논평할 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 다른 한 예이다.

<투명성 및 집중성>

평가임무는 명확하게 정해지고 초점이 있어야 한다. 1차적 상황 기술(사업 및 계획의 상세사항), 평가의 목표, 중심문제, 방법론, 평가팀의 자격과 보고서 요건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평가는 우선순위에 대한 엄밀한 정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경제개발 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의 모든 기준을 동일하게 충족시킬 수 없다.

<신뢰성>

평가 및 결론이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본 정보의 유용성과 준비가 필수적이다. 또한 평가보고서에 기술된 평가 결과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보고서의 완결성 및 명확성>

평가보고서는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의 기준과 평가 질문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평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정성 및 관련 당사자 이익의 보호>

평가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안전과 존엄 및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

<유용성>

평가권고는 사업 및 계획을 개선하는데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정치적 및 행정적 의사결정자들에 대한 피드백은 평가결과의 이행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통해 보장된다. 또한 평가의 유용성은 사업 또는 계획의 주기 내에서 가장 적절한 이행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평가로부터 얻는 이점과 사업 또는 계획의 규모와 합리적으로 비례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사업 또는 계획의 약 3~5%이다.

사업 및 계획 평가의 조정 절차에 있어서 국제적인 평가 기준과 질적 기준을 충족해야만 하는데, 이를 위해 다음 과제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사업 동반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위임 권한을 준비하고, 예산 계획을 준비하며, 평가 팀을 선발 및 원조하며, 워크숍을 구성하고 평가 보고서 최종 초안에 대한 발표와 이에 대한 질적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관리자 차원에서는 평가 권고들을 적용할 계획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II. 평가 체계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평가는 연방유럽외무부와 오스트리아의 공동책임이고, 각 기관은 평가에 관한 역할은 연방유럽외무부가 평가사업의 조정과 평가전략의 틀 마련에 주 책임이 있고, 개발청은 직접 평가를 관리하고 실시하는 방식으로 분담하고 있다. 여기서는 오스트리아개발청이 직접 또는 간접저공로 주도하는 개발협력의 평가체계를 고찰하기로 한다.

1. 평가유형

오스트리아개발청에 의해 집행되는 평가유형은 크게 내부평가와 외부평가이지만, 외부평가는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바, 세 가지로 분류된다. '외부평가'(external evaluation)는 오스트리아개발청에 의해 수행되는 것을 말하는데, 해당 사업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 개발청이 담당한다는 점에 의거하여 외부적으로 분류된다. '외부평가 유형 1'(external evaluation type I)은 오스트리아개발청 평가단위가 위임하고 관리하는 계획, 교차적 현안, 수단 및 사업의 평가를 말한다. '외부평가 유형 2'(external evaluation type II)는 오스트리아개발청 조정사무소 또는 오스트리아개발청 단위 본부가 위임하고 관리하는 계획, 사업 및 주제의 평가를 말한다. 이에 비해 '내부평가'(internal evaluation)는 오스트리아 개발협력 사업의 동반자들 스스로 직접 위임하고 관리하고 시행하는 평가를 사업 동반자들이 직접 관리하고 적용한다는 점에 의거하여 내부적으로 분류된다. 모든 사업 또는 계획은 적어도 한번 내부적 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에 추가적으로 내부평가 대상이 외부평가를 거칠 수도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외부평가가 계획 중일 때에는 내부평가가 제외될 수도 있다.

2. 내부평가

사업 동반가에 의한 사업 및 평가에 대한 관리에서 오스트리아개발청은 사업 또는 계획의 재정규모에 따라 다른 범위로 사업 동반자가 관리하는 사업 또는 계획에 대한 평가(내부평가)에 참여한다. 오스트리아개발청 국가및지역국(ADA Unit of Countries and Regions)의 행정 지원 하에 있는 사업 또는 계획을 살펴보면, 재정규모가 50만 유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들로 나뉜다.

사업 및 계획 규모가 50만 유로 미만인 경우에는, 최종보고서와 관리자 의견이 정보 제공 차원에서 조정사무소와 오스트리아개발청 본부에 송부된다. 그리고 평가보고서의 질적 통제와 승인은 사업 동반자가 한다. 규모가 50만 유로 이상이고 100만 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최종 평가 보고서 초안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연락사무소 및/또는 오스트리아 개발청 본부에 송부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최종 평가보고서뿐 아니라 평가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 역시 정보 제공의 차원에서 연락사무소 및/또는 오스트리아개발청 본부에 송부된다. 그리고 평가보고서의 질적 통제와 승인은 사업 동반자가 한다.

사업 동반가가 수행하는 평가에 적용되는 준거기준(terms of reference)은 오스트리아개발청의 승인이 요구된다. 그에 대한 오스트리아개발청의 승인이 없을 경우에는 그 평가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 준거기준은 일반적으로 조정사무소, 관할 단위 및 평가단위가 검토한다. 이와 같은 준거기준에 대한 평가는 질적 보장을 위한 중요한 조치가 간주된다. 오스트리아개발청은 내부평가의 추진과정에서 직접 개입하지는 않지만, 대신 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는다. 만일 그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정하지 않는다.

2. 외부평가

사업 또는 계획에 대한 외부평가는 관련 조정사무소 또는 오스트리아개발청 본부의 부서 또는 단위가 조정을 맡는다. 사업 또는 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지 여부는 오스트리아개발청이 사업 동반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재정규모가 1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계획 또는 사업은 외부평가를 받고 오스트리아개발청이 조정을 맡는다. 다만, 그와 같은 평가를 구체적으로 누가할지, 즉 조정사무소, 국, 단위 또는 평가단 중 누가 맡을지는 사안별로 판단된다. 재정 규모가 100만 유로 이하인 계획 또는 사업은 필요할 경우 내부평가에 추가하여 외부평가가 실시될 수 있다. 동일 주제 또는 지리적 초점을 갖는 사업 및 계획에 관하여는 단일한 평가에 의해서만 분석될 것이며 이러한 평가는 협의에 의해 오스트리아개발청에 의해 관리된다. 보다 포괄적인 사업, 계획 또는 개입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후에 공동평가(joint evaluations), 영향평가(impact evaluations) 그리고 예산지원평가(budget support evaluations)를 수행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제 3 절 평가항목 및 지표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는 공적개발원조 사업 및 계획의 평가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항목, 즉 관련성, 효과성, 효율성, 영향력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들고 있다. 이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차례대로 검토할 것이다. 평가의 특징으로서 이 다섯 가지 평가 항목 외에 교차적 현안들 또한 고려되는데, 여기에는 빈곤, 젠더 및 환경이 있다.

관련성	우리가 적절한 것을 하고 있는가? 지방 및 국가적 요청과 우선순위와 관련된 개입의 관련성과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가?
효과성	개발을 위한 개입의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가? 계획한 목표들과 비교했을 때 효과성과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비교 : 결과 - 계획)
효율성	목표가 개발을 위한 개입에 의해 경제적으로 달성되고 있는가? 투입된 자원의 효율성과 유용성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비교 : 투입 자원 - 결과)
영향력	개발을 위한 간섭이 보다 고차원의 개발 목표들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는가? 대상집단 또는 영향권 하에 있는 사람들의 전반적 상황에 비교했을 때 간섭에 의한 영향력 또는 효과가 무엇인가?
지속가능성	긍정적인 효과들 또는 영향력이 지속가능한가? 지속가능성 또는 영구성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I. 관련성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에 의하면, ‘관련성’(relevance)이란 개발을 위한 간섭의 목표가 수혜자의 요구, 국가의 필요, 전세계적 우선순위와 동반자 및 기여자들의 정책들과 일관성이 있는 정도를 뜻한다. 적절성에 관한 질문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오스트리아 개발협력 동반자 국가들을 위해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이 선정한 사업/계획과 수단의 관련성은 무엇인가? (오스트리아 개발협력 교육 평가, 2005)
-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이 지원하는 개발과 비즈니스 동반자는 어떤 개발과 기타 효력이 있는가? (오스트리아 개발협력, 동반자 수단과 비즈니스 동반자의 평가, 2008)

- 네덜란드의 인도적 정책과 절차 뿐 아니라 영향권 하에 있는 주민의 필요, 우선순위 및 권리와 조화시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였는가? (네덜란드 인도적 지원 평가 2000-2004, 2005)

II. 효과성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에 의하면, ‘효과성’(effectiveness)이란 개발을 위한 간섭의 목표가 그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에 달성된 또는 달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를 뜻한다. 또한 활동의 가치 또는 장점을 측정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된다.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오스트리아 교육협력이 동반자 국가 내에서 지속가능한 역량 구축과 지식 전수 뿐 아니라 과학기술의 잠재력 향상에 기여하였는가? (오스트리아 교육협력 교육 평가, 2005)
- 비즈니스 동반자의 개시에 있어서 지원(오스트리아개발청가 관련 회사에 제공한 조언과 정보, 여행수당, 실현가능성 연구)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오스트리아 개발협력, 동반자 수단과 비즈니스 동반자의 평가, 2008)
- 제공된 인도적 지원이 그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네덜란드 인도적 지원 평가 2000-2004, 2005)

III. 효율성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에 의하면, ‘효율성’(efficiency)이란 자원과 투입되는 기금, 전문지식, 시간 등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결과로 변환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재정자원과 기타 투입물이 결과를 달성하는데 효율적이었는가?
- 원조 관리

- 이행 동반자 선정에 사용된 기준
- 계획수립, 학습 및 책임귀속을 위한 진전과 성취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네덜란드 인도적 지원 평가 2000-2004, 2005)

IV. 영향력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에 의하면, ‘영향력’(impact)이란 개발을 위한 개입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리고 의도한 것이든 의도하지 않은 것이든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 그리고 제1차적 또는 제2차적 장기 효과를 낳았는가를 뜻한다. 이에 해당하는 질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계획 또는 사업의 결과 무엇이 일어났는가?
- 활동이 수혜자들에게 실제 어떤 변화를 주었는가?
-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는가?

V. 지속가능성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에 의하면,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란 주요 개발 원조가 완성된 이후에 개발을 위한 간접으로 얻는 이익이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사업/계획이 지방 주인의식(ownership)과 지도력(leadership)을 어느 정도 강화하였는가? (오스트리아 교육협력 교육 평가, 2005)

VI. 교차적 현안 (빈곤, 젠더, 환경)

교차 쟁점들에 관한 질문들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평가 항목에 따른 질문들에 이미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관련 쟁점들에 관

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하여 평가 보고서에 별도로 표기되어야 할 것이다. 빈곤, 젠더 그리고 환경의 교차적 현안에 관한 지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빈곤감소와 새천년개발목표에 관한 사업 평가>

- 사업의 개념이 대상집단에 대해 차별적인가 그리고 빈곤분석이 이용되었는가?
- 사업이 빈곤에 대응하는 여건(국가빈곤감소전략 또는 빈곤감소 전략백서)에 반영되었는가?
- 사업이 경제적 및 정치적 과정에 빈곤층집단의 참여를 포함하고 있는가?
- 사업이 빈곤감소 효과를 달성하는 가? 사업이 대상집단의 생활 수준(교육, 건강, 영양분, 물, 환경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키는가?

<젠더 평등의 증진에 관한 사업 평가>

- 사업의 개념이 젠더차별인가 그리고 젠더분석이 수행되었는가?
- 여성과 남성이 사업의 기획에 대해 동일하게 기여하는가?
- 여성과 남성이 사업으로부터 동일한 혜택을 받는가?

<환경보호에 관한 사업 평가>

-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예상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은 무엇인가?
- 어떠한 보호 및 감시 조치가 적용되고,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 사업의 종료 후에 수반될 수 있는 위험에는 무엇이 있는가?

6

제 1 절 한국 공적개발원조 법제

I. 개 요

한국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법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법률 제9938호, 2010. 1.25, 제정)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296호, 2010. 7.21, 제정)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9993호, 2010. 2. 4, 일부개정)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144호, 2010. 5. 4, 일부개정)
- 한국국제협력단법(법률 제10095호, 2010. 3.17, 일부개정)
-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276호, 2007.9.17, 일부개정)
- 대외경제협력기금법(법률 제10303호, 2010.5.17, 일부개정)
-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일부개정)

II.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

한국의 ODA 운영체계는 크게 양자간 협력과 다자간 협력으로 나뉘며 양자 간 협력은 기본적인 실시체계가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이원화 되어 있다. 양자 간 공적개발원조 업무는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및 KOICA와 수출입은행 등 수탁기관 별로 분산 운영되어 왔다. 무상원조에 해당하는 무상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은 외교통상부의 감독 하에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해외연수생 초청, 전문인력 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등 무상원조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관지원 등의 유상원조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따

라 유상원조는 재정경제부 감독 하에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에서 집행하고 있다.

이러한 분리된 공적원조의 이행으로 그리하여 무상·유상 원조 간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아울러 통일된 원조 이념과 목표가 결여되어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고 원조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유·무상원조를 포괄하는 원조이념 및 목적, 관련기구 설치 등을 규정하는 ‘대외원조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 2005년 11월에는 “대외원조개선종합대책”을 통해 대외원조법 제정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17대 국회에서는 ODA 기본법 관련 4개 의원발의 법안이 제출되었으며 김부겸 의원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17대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18대 국회에서는 2008년 7월 송민순 의원의 ‘공적개발원조기본법’ 및 진영 의원의 ‘대외원조기본법’, 2008년 10월 배영식 의원의 ‘대외개발협력법’, 2008년 11월 김부겸 의원의 ‘국제개발협력법’이 각각 발의되었었다. 이와 별도로 정부 차원의 법제 마련이 진행되어 2010년 1월 25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10년 7월 26일 시행되었다. 동 법의 시행을 위하여 2010년 7월 21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되었으며,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목적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제1조). 이에 따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를 두어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제7조). 한국 ODA에 관한 기본계획(5년간)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이 주관기관(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 무상협력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수립지침을 정하고 주관기관은 시행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분야별 기본계획안을 제출하여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도록 한다(제8조). 한국 ODA에 관한 시행계획은 각 시행기관이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며, 주관기관은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한다(제11조). 주관기관인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는 5년간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제 한국의 ODA를 주관하며 i) 분야별 기본계획안 및 연간종합시행계획안의 작성, ii) 분야별 연간종합시행계획의 이행 점검, iii)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홍보, iv)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여하는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제10조). 주관기관은 중점협력대상국 선정기준 및 대상국가안을 국제개발협력위원회로 제출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요청 혹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국가를 변경할 수 있다(제12조).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시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한다(제13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러한 사항으로 시행령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까지),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 정보 공개의 대상(시행령 제13조)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한국의 ODA에 관한 분야별 기본계획안의 수립, 이 분야별 기본계획안과 연간 기본계

획안을 확정한다. 또한 주관기관의 ODA 대상국가 선정 행위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ODA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주관기관인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는 5년간의 기본계획에 따라 자신의 분야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연간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며 이행을 점검한다. 시행기관은 연간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주관기관은 이에 대하여 협의 조정한다.

III.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지구촌의 기상이변, 대형사고 등으로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는 일이 많아졌다. 이에 대규모 재난 시에 인명구조 및 재난구호에 기여하여 인도주의와 인류애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피해국에 긴급구호물품의 수송, 긴급구호대의 파견, 임시 재해복구 등 긴급구호활동을 신속하고도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외긴급구호란 i)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 ii) 구호물품의 지원, iii) 현금지원, iv) 보건의료활동, v) 수송지원, vi) 임시 재해복구, vii) 재해 또는 사고 원인의 조사 분석·해외재난과 관련된 유가족에 대한 현지 상담 등 해외긴급구호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제5조, 시행령 제2조)를 말한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외교통상부장관은 평상시 해외재난에 대비하여 그 종류·규모·특성에 따라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구호물품·장비의 비축·보관·정비, 구호인력·물품의 신속한 소집·수송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 해외긴급구호대책을 수립한다(제6조제1항). 또한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해외긴급

구조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등으로 해외긴급구조대를 편성하고, 해외긴급구조대 또는 해외긴급구조대를 파견할 수 있다(제11조 및 제12조). 또한 필요한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에게 인력·장비·물품 및 수송장비 등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제13조).

「해외긴급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해외긴급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민·관합동 해외긴급구조협의회의 구성(시행령 제5조),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업무 분장(시행령 제6조), 해외긴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시행령 제7조)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해외긴급구조에 관한 법률」과 「해외긴급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구촌의 기상이변, 대형사고 등으로 인한 대규모 해외 재난 발생시를 대비하여 해외긴급구조대책을 수립한다. 긴급구조를 필요로 하는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민·관합동 해외긴급구조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해외긴급구조협의회는 정부에 의하여 설치되며 i) 해외긴급구조의 제공 여부에 관한 사항, ii) 해외긴급구조의 내용 및 규모에 관한 사항, iii)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방안에 관한 사항, iv) 정부와 민간 간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이러한 해외긴급구조협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IV. 한국 국제협력단법 및 시행령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개발도상지역으로부터의 점증하는 협력요청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에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를 총괄적으로 전담 수행하는 정

부출연기관 형태의 한국국제협력단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법」과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은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제7조). i) 개발도상국가를 위한 사업으로서 연수생의 초청, 전문인력의 파견, 해외봉사단의 파견, 개발조사, 재난구호, 물자·자금 및 시설의 지원, ii) 국제협력을 위한 민간단체의 국제협력활동에 대한 지원, 외국의 원조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국제협력에 관한 이념 및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조사·연구, 그 밖에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iii)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iv) 위의 사업에 따른 교육훈련·홍보와 그 밖의 부대사업을 수행한다. 또한 이 법에 따라서 외교통상부장관은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 퇴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에 대하여 1천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제18조의 2). 이러한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 퇴치를 위한 용도로 국제협력단에 의하여 사용된다(제15조).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은 한국국제협력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구성(시행령 제2조에서 제4조), 한국국제협력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에 관한 세부사항(시행령 제6조에서 제10조),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징수업무의 대행, 관리·운영(시행령 제10조의 2에서 제10조의 7)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법」과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은 국제협력단의 설립과 운영 그 출자금의 형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협력단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V.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및 시행령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시행령」이 제정되었다. 정부는 대외경제협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그 기금은 i) 정부출연금, ii) 정부투자기관 또는 경제단체의 출연금, iii)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iv)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차입금, v)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vi) 기금의 운용수입금으로 조성된다(제3조, 제4조).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금융기관등이나 외국정부, 외국금융기관, 국제금융기구 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 할 수 도 있다(제5조).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i) 개도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데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협력사업’이라 함)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대출 또는 출자, ii) 협력사업의 준비를 위한 조사 또는 협력사업의 시험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용자, iii) 개도국의 경제안정을 위하여 특히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자를 당해 국가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용자, iv) 기타 개도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v)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vi)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제6조). 이 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맡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제9조). 기획재정부 산하 기금운용위원회기금은 운용·관리에 관한 i)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ii) 기금운용계획, iii) 결산보고사항의 사항을 심의한다(제10조).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에 관한 사항(시행령 제2조),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시행령 제5조에서 제7조), 개도국 정부로부터의 요청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절차(시행령 제11조), 기획재정부 장관의 기금운영계획수립(시행령 제12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및 「대외경제협력기금 시행령」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는 경제협력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이렇게 조성된 경제협력기금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운영·관리하며, 기획재정부 산하 기금운용위원회기금은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계획, 결산보고사항을 심의한다.

제 2 절 법제적 차원의 시사점

제 3 절 한국 공적개발원조 정책

I. 수행방식

한국의 ODA 운영체계는 크게 양자간 협력과 다자간 협력으로 나뉘며 양자간 협력은 기본적인 실시체계가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이원화 되어 있다. 무상원조에 해당하는 무상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은 외교통상부 감독 하에 원조집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이 집행하고, 유상원조는 재정경제부 감독 하에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편 무상원조 중 무상자금협력 사업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전담하고 있지만, 기술협력사업은 그 외 다른 정부부처 및 기관에서도 일부 분담, 실시하고 있다.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무상협력은 외교통상부 장관이 각각 주관한다. 다자간 개발협력 중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 밖의 기구와의 협력은 외교통상부 장관이 주관한다.

II. 수행지역

1. 아시아

한국은 아시아 지역내 경제성장 및 균형발전 지원, 정부 행정역량 및 투명성 강화, 사회개발과 빈곤퇴치 지원,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개발협력사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 원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주요 수원국으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방글라데시가 있다. 아시아 지역은 무상원조 사업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2006년 KOICA 협력사업 예산의 36%이상이 지원되고 있다.

2. 아프리카

최빈국이 다수 위치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보건, 교육, 농촌개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고 안정적인 북아프리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 행정제도, 산업에너지 분야를 지원 하는 등 차별화된 지원전략을 갖고 있다. 이외에도 AU, NEPAD 등의 지역협력체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아프리카의 자체적인 개발노력과 빈곤퇴치 및 MDGs 달성을 지원하고 있다.

3. 중 동

지원협력 대상지역으로서의 중요성이 크고 플랜트 건설 등 인프라 시장도 매우 활발하여 경제개발경험 전수 위주의 지원이 필요하다. 중동 지역의 평화정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정부 행정역량강화 및 제도개선, 취약률 제고 및 실업률 감소를 위한 기초교육 및 직업 훈련 등 교육분야 기반 구축,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식수개발 및 기초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지식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 기술분야를 중점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별사업으로 이라크 재건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차 이라크 재건지원사업으로 2003~ 2007년간 총 2.6 억불 무상원조를 지원 중에 있으며, 한·미 연합 재건지원팀인 ‘아르빌 지방재건팀(Regional Reconstruction Team)’을 출범시켜 활동하고 있다.

4. CIS 지역

공산체제에서 전화한 국가들이 대부분인 이 지역은 부존자원의 양과 개발 정도에 따라 국가별 발전 수준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시장경제체제로의 원만하고 안정적인 이행달성을 위한 행정제도 및 인적자원개발 등을 중심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 중남미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현황을 고려하여 절대 빈곤 및 사회불평등 감소를 통한 중남미 경제사회발전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정부 공공행정역량 및 투명성 강조, 경제성장 촉진을 통한 빈곤완화를 위한 자생력 향상,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원조를 실시하고 있다. 저개발국가 위주로 교육 보건 및 행정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있다.

Ⅲ. 수행주체 및 수행사업

1.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정부는 2005년 11월 15일(화) 국무회의를 열어, 향후 10년간의 우리나라 대외원조(ODA)의 추진방향과 시스템 등을 포함한 ‘대외원조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하였다. 개선대책은 ‘한국형 원조 모델 정립’, ‘추진시스템 개선’, ‘원조의 효율성 제고’, ‘인프라구축’, ‘국민참여 확대’ 등 크게 5개 부문을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2005년 이 전에는 재경부-외교부간 국장급 ODA 실무협의회가 있어 왔으나 대외원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부재했고 더욱이 최근 정부의 거의 모든 부처가 대외원조사업에 뛰어들어 따라 그 협의 조정 기능의 필요성이 더해져 2005년 이후 대통령령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규정을 공포 시행하였다.

그 이후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이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가 되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 국무총리실장을 간사위원으로 하고, 기획재정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된다.

2. 한국국제협력단와 그 수행사업

1) 한국국제협력단

무상원조에 해당하는 무상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은 외교통상부 감독하에 원조집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이 집행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빈곤퇴치를 중심으로 개도국의 개발목표 달성과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 지원,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등 국제사회의 개발목표 달성 및 범지구적 과제해결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개도국 우호협력관계 및 국익증진 도모, 국별 전략분야에 대한 효과적 지

원으로 대 개도국 우호협력관계 증진, 대외무상원조를 통한 수원국 거버넌스 향상 및 민주주의 확산으로 우리의 국제적 위상제고 및 기여 촉진,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원조 정착, ODA에 대한 국민의 지지 확보 및 참여 확대에 관한 임무를 띠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이 취하는 전략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i) 전략적 협력대상국 선정 및 효율적 배분, 국가별 원조전략 중심의 사업 발굴, 우리 개발경험을 고려한 전략적 중점분야 지원, 프로그램형 사업 수행체제 발전, 민간과의 파트너십 강화, 한국적 개발 프로그램 발전, 평가 및 사후관리 강화,

2) 수행사업

<교육사업>

개발도상국의 기초교육에 대한 낮은 접근성과 취약한 기능인력 양성시스템은 사회의 발전동력 형성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산업 발전에 저해를 가져오고 있다. 이에 교육사업은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제도정책, 인력양성, 시설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삼고 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저개발 국가에서는 기초교육기회 확대사업, 남미 중동지역에서는 직업훈련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원을 건립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병원건립, 모자보건형성, HIV/AIDS 및 여타전염병 퇴치, 안전한 시수 공급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사업>

보건의료사업은 개발의 잠재력인 인적자원 확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망률 및 질병률 감소를 가져와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각 국가별 지역별 보건의료실태를 고려하여 인적자원개발 및 물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질병예방 중심의 일차보건의료사업 확대를 꾀하고 있다.

<행정제도>

개발도상국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근간이 되는 국가의 제도적 역량 부재한 경우가 많다. 개발도상국의 이러한 제도적 역량 부재를 해소해 주기 위하여 우리 개발경험을 전수사업의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각 국가별 중점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정부혁신, 행정역량 강화, 중소기업육성을, 아프리카에서는 인적자원개발,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을, 중남미에서는 중소기업 육성 및 수출진흥,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촌개발>

농촌개발사업이란 개발도상국 농촌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 기반시설구축,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기발 조성과 영농기술지원, 농산물 활용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시설지원 사업을 의미한다. 국가별 발전단계 및 자연환경을 고려 최빈국, 저소득국, 내륙국, 해양에 대한 지원을 구별하여 시행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미곡처리기술 지원 등 농수산물 시장접근성 개선 사업을, 동남아시아 최빈국과 아프리카 국가에 대해서는 농어촌의 생활여건의 향상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정보통신>

2000년 이후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은 빈부격차에 따라 수혜 혜택 여부와 그 정도가 달라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 주요 인자로 주목되고 있다. 이에 개발도상국과의 정보화격차가 계속하여 심화되는 경향을 향상시키고자 정보통신에 관한 인프라 지원, 인적자원배출,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하여 대학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IT훈련 센터의 건설, 전자정부의 지원 등을 행하고 있다.

<산업에너지>

산업에너지는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교통, 에너지, 수자원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개도국은 그 산업발전을 위한 에너지 인프라마저도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에 국가교통 인프라 개선, 국토관리 기반조성 및 종합개발, 에너지 및 사업 인프라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

개도국의 산업환경은 그 다지 발달해 있지 않은 반면, 산업으로 인한 오염에 쉽게 노출되어 있으며, 환경관리 역량마저도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환경파괴로 인한 기후변화로 개발도상국의 빈곤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오염관리능력의 강화, 지구환경 보전역량의 강화를 위한 건조지역 산림녹화, 열대림 보호, 황사공동관측망 구축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기후변화대응>

개발도상국은 기후변화를 야기시키는 화학물질 배출에 있어서 기여한 바는 적지만 이로 인한 기후변화에 매우 민감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인구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며, 또 농업 종사자 대부분이 최저소득층인 인구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급격한 농산물 생산성의 변화가 개발도상국의 식량안보와 생계를 위협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및 국제사회 노력 선도하고 국별 수요와 발전단계 고려한 지원 사업을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3. 한국수출입은행과 그 수행사업

유상원조는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정부 기관에서 개도국이나 국제기구로 전달되는 자금인 ODA의 한 종류로

서 무상원조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ODA는 크게 개도국에게 원리금의 상환의무가 있는가에 따라 유상원조(loan)와 무상원조(grant)로 구분되는데, 장기간에 걸쳐 개도국에 지원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은 한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상원조이다.

1) 한국수출입은행

정부는 한국의 유상원조를 위하여 대외협력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대외협력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1차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맡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게 위탁하며 한국수출입은행은 실질적으로 대외협력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 지원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외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증진을 목적으로 ODA 중 유상원조를 전담하고 있다.

2) 수행사업

한국은 원조공여를 위한 재원이 빈약한 점을 고려하여 소액으로 많은 국가를 지원하기 보다는 우리나라와 경제교류가 많거나 경험잠재력이 높은 국가를 선별하여 중점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원대상부문도 다양한 원조분야를 골고루 지원 하기 보다는 우리나라가 보다 경쟁력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 국가는 1인당 국민총소득이 연간 약 6500달러이하인 국가 중에서 GDP, 인구규모가 적어 경험 잠재력이 미미한 국가 및 원리금 상환능력이 매우 취약한 국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이다. 또한 이들 국가들을 경험잠재력을 기준으로 중점국가와 일반국가로 분류하여 중점국가 중심으로 지원한다. 지원분야는 개도국의 경제개발에 기여도가 높은 경제·사회 인프라부문과 또한 인간의 기초적 삶의 조건과

관련 있는 보건, 교육, 환경 등의 분야를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분야 중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출효과가 크고 시장 파급효과가 높은 분야를 중점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는 최우선적으로 현지 필요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최우선 지원분야 사업

기후변화, 식량위기 등 글로벌 이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중점국가 추진 사업

중점지원국가에서 추진되는 경제 개발 계획상 우선 순위의 사업

협조융자사업

기금의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시아 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 협조융자하는 사업

혼합신용 공여사업

수출입은행의 수출자금과 혼합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기금의 가용성을 증대하는 사업

중소기업 추진사업

중소기업이 전문분야에서 원조관련 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등

3) 지원업무의 종류

<지원자금종류>

대외경제협력기금이 제공하는 자금의 종류는 차주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개도국 정부 또는 법인에 대한 차관이다. 개도국의 경제협력사업을 직접 지원하는 ODA로서 차관의 형태는 개발사업차관,¹²⁾ 기

12) 댐, 상하수도설비, 도로, 병원, 환경설비, 공장설비 등 개도국의 경제개발사업에

자재차관,¹³⁾ 민자사업차관,¹⁴⁾ 기금전대차관,¹⁵⁾ 물자차관,¹⁶⁾ 사업준비차관¹⁷⁾으로 나누어진다. 둘째,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대출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대외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개도국에 해외출자 또는 용자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셋째, 대한민국 법인에 대한 출자이다. 이는 대외협력사업이 추진을 위하여 신설되는 대한민국 법인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혼합신용>

혼합신용이란 원조자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과 수출입은행의 수출신용자금을 혼합하여 금융조건을 양호하게 지원하는 금융방식을 말한다. 혼합신용은 원조수혜국 입장에서는 수출신용에 비하여 보다 유리한 금융조건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외경제협력기금만으로 추진이 곤란하였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협조용자>

협조용자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특정 프로젝트 실시예 필요한 자금을 용자함으로써 참여기관의 자금부담과 자금참여에 따르는 위험을 분산하고자 하는 금융기법이다.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차관

- 13) 개도국의 특정산업부문, 특정개발계획 또는 특정사업에 필요한 기자재 및 관련 서비스의 조달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차관
- 14) 민자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개도국 정부 또는 별도로 설립된 법인(민자사업법인)에게 지원하는 차관
- 15) 개도국의 금융기관을 통하여 특정분야, 특정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육성 또는 자작농 지원과 같이 다수의 최종수익자를 대상으로 하는 차관
- 16) 개도국의 긴급한 국제수지 지원 및 국내경제 안정을 위하여 물자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차관
- 17) 경제개발사업의 준비를 위한 조사 또는 경제개발사업의 시험적 실시예 필요한 자금을 용자하는 차관

<차관지원비제도>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차관은 상황을 전제로 하는 유상원조이나, 차관 지원비 지원제도는 차관에 관련된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차관의 부대적 지원제도로 대외경제협력기금 자체 예산으로 행하여지는 무상원조 방식이다. 차관지원비제도에는 지원유망사업에 대한 사업준비와 관련된 사업개발지원비, 기금사업의 실시과정에서 공정의 장기간 지연의 장애요인 발생 등으로 사업의 정상적 진행이 어려울 때 모색되는 사업실시지원비, 지원사업의 완공 이후 유지보수, 관리 등 운영과정에서 관리 인력의 노하우 부족, 부품 및 소모품 부족 등으로 사업이 원활히 가동되지 않는 경우 지원하는 사후 관리지원비가 있다.

<소액차관>

소액차관제도는 소규모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의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고 한국 중소기업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사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 차관이다. 차관규모가 2백만 SDR 미만인 소액차관 사업은 사업 참여자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사업신청, 심사, 구매 등 제반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시행될 수 있다.

제 4 절 정책적 차원의 시사점

부 록

영 어	한 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D ACTIVITY ● AMORTISATION ● ASSOCIATED FINANCING ● BILATERAL ● CLAIM ● COMMITMENT ● CONCESSIONALITY LEVEL ● CONSTANT DOLLARS ● COUNTRY PROGRAMMABLE AID (CPA) ● CREDITOR REPORTING SYSTEM (CRS) ● CREDITS ●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 DAC LIST OF ODA RECIPIENTS ● DEBT REORGANISATION ● DEFLATORS ● DISBURSEMENT ● EVALUATION ● EXPORT CREDITS ● GRACE PERIOD ● GRANT ● GRANT ELEMENT ● GRANT LIKE FLOW ● IMPUTED MULTILATER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조활동 ● 원금상환 / 소각 ● 제휴금융 ● 양자적 ● 청구(권) ● 공약(公約) ● 양허수준 ● 불변가격 ● 국별계획원조 ● 신용보고체계 ● 신용 / 여신 / 채권 ● 개발원조위원회 ● 개발원조위원회 공적개발원조 수혜국 명단 ● 채무조정 / 부채조정 ● 수치조정지수 ● 상환 ● 평가 ● 수출신용 / 수출차관 / 수출용자 ● 유예기간 ● 공여 ● 공여조건 ● 대위성 공여 ● 매개된 다자적 공여

영 어	한 글
<p>FLAW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ANS (ALSO CREDITS) ● LONG TERM ● MATURITY ● MULTILATERAL AGENCIES ● MULTILATERAL OUTFLOWS ● NET FLOW ● NET TRANSFER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 OFFICIAL DEVELOPMENT FINANCE (ODF) ● OFFSHORE BANKING CENTRES ● OTHER OFFICIAL FLOWS (OOF) ● PARTIALLY UNTIED AID ● PRIVATE FLOWS ● PURPOSE OF AID ● PURPOSE CODE ● SECTOR ALLOCABLE AID ● SECTOR CLASSIFICATION ● SHORT TERM ● TECHNICAL CO-OPERATION ● TERMS OF REPAYMENT ● TIED AID ● TOTAL RECEIPTS ● UNDISBURSED ● UNTIED AID ● VOLUME (REAL TER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 / 융자 / 차관 ● 장기 ● 만기 ● 다자적 기관 ● 다자적 공여 ● 순(純)공여(량) ● 순(純)이전(량) ● 공적개발원조 ● 공적개발금융 ● 역외금융센터 ● 기타 공적공여 ● 부분적 비구속성 원조 ● 민간공여 ● 원조목적 ● 원조목적분류번호 ● 부문별 할당가능 원조 ● 부문 분류 ● 단기 ● 기술협력 ● 상환조건 ● 구속성 원조 ● 수혜총량 ● 미지급(공여) ● 비구속성 원조 ● 공여규모(실질기준)

오스트리아 연방개발협력법 (영한대역)

Federal Act on Development Cooperation (2002),
including its Amendment (2003)

연방개발협력법 (2002),
개정 (2003) 포함

Part 1

Definitions and principles

Section 1.

- (1) The Federal Government, in the context of its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y, shall perform development cooperation.
- (2) Development policy shall comprise any measure by the Federal Government that aims at promoting sustainabl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develop-

제 I 부

정의 및 원칙

제 1 조

- (1) 연방정부는 국제개발정책의 맥락에서 개발협력을 수행한다.
- (2) 개발정책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증진시키거나 또는 그 개발에 대한 여하한 손상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방정

ing countries or preventing any impairment to such a development. In particular, it comprises development cooperation.

(3) Austria's development policy shall primarily pursue the following objectives:

1. combating poverty in the developing countries by promoting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that is aimed at a process of sustainable economic activity and economic growth combined with structural, institutional and social change;
2. ensuring peace and human security, especially by promoting democracy, rule of law, human rights and good governance; as well as
3. preserving the environment and protecting natural resources that form the basi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4) Austria's development policy is primarily based on the following principles. Any measure adopted shall

부의 여하한 조치로 구성된다. 특히 개발정책은 개발 협력을 포함한다.

(3) 오스트리아의 개발정책은 다음의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1. 구조적, 제도적 및 사회적 변화와 결합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과 경제성장의 과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및 사회적 개발의 증진에 의한 개발도상국 내 빈곤 퇴치
 2. 특히 민주주의, 법의 지배, 인권 및 선치의 증진에 의한 평화와 인간안보의 보장
 3. 지속가능한 개발의 기초를 형성하는 환경의 보전과 천연자원의 보호
- (4) 오스트리아 개발정책은 우선적으로 다음의 원칙들에 기반하며, 채택되는 여하한 조치는 다음을 고려한다.

take into consideration

1. the aims of the respective governments and populations in the developing countries, with regard to the speed and kind of development process in question and their right to choose their own way of development;
 2. the integration of measures into the social environment, with specific regard being paid to cultural aspects and use of appropriate technology,
 3.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as well as,
 4. in a suitable manner, the needs of children and of people with disabilities.
- (5) The Federal Government, in the fields of policy it pursues that may have effects on developing countries, shall take into consideration the objectives and principles of development policy.

Section 2.

(1) Development cooperation as defined by this Federal

1. 해당 개발과정의 속도와 종류 및 자신의 개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된 관련국 정부와 주민의 목적
 2. 특히 문화적 측면과 적절한 기술의 사용에 대한 고려에 따른, 조치들의 사회적 환경에의 통합
 3. 남녀평등
 4. 적절한 방법으로, 아동 및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필요
- (5) 연방정부는 개발도상국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분야에서 개발정책의 목적과 원칙을 고려한다.

제 2 조

(1) 이 법이 정하는 개발협력은 공적개발원조를 받는

Act comprises any measure taken by the Federal Government that is part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nd reported to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of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These measures may be carried out by the ADA (Section 6) in its own name and for its own account.

(2) Measures according to Subsection 1 in particular include

- a. projects implemented by the Federal Government;
- b. promotion, by means of grants in the form of contributions in kind and financial contributions or concessional loans, of projects implemented by organisations as defined by Section 3, Subsection 2 that comply with the objectives and principles of Section 1, Subsections 3 and 4.

(3) Projects according to Subsection 2 in particular include

정부가 취하고 경제개발협력기구에 보고되는 여하한 조치로 구성된다. 이 조치는 오스트리아개발청(제6조)이 자신의 이름으로 그리고 자신의 책임으로 수행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조치는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a. 연방정부가 시행하는 사업
- b. 제1조 제3항 및 제4항의 목적 및 원칙을 준수하는 제3조 제2항이 정한 단체가 다양한 형식의 공여 및 재정기여 또는 양여대부의 수단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의 증진

(3) 제2항에 따른 사업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주요국의 ODA법제

- a)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projects of defined kinds and dimensions in developing countries;
- b) education and training of, as well as assistance to, persons from developing countries;
- c) cultural and scientific cooperation, exchange of information and transfer of technology;
- d) training and employment of development workers and experts;
- e) consultancy, including drawing up of plans and studies necessary for this purpose;
- f) measures to promote cooperation with private enterprises;
- g) information, education, cultural and public relations activities on development policy in Austria,
- h) support of a sustainable economic, social and ecological development in the developing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the objectives of the Austrian develop-

- a) 개발도상국 내 정해진 종류와 범위의 사업 기획과 이행
- b) 개발도상국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 및 지원
- c) 문화 및 과학 협력, 정보교환과 기술이전
- d) 개발근로자 및 전문가의 훈련 및 고용
- e) 이 목적에 필요한 기획 및 연구의 입안을 포함하는 자문
- f)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증진하는 조치
- g) 오스트리아 개발정책에 관한 정보, 교육, 문화 및 공공관계
- h) 무역단체와 산업단체 및 개발단체와의 협동에 의거하여 제1조 제3항이 규정한 오스트리아 개발정책의 목적에 따라 개발도상국 내 지속가능한 경제적,

ment policy as laid down in Section 1 Subsection 3, by using synergies with trade and industry as well as development organisations,

i) participation in multilater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Section 3.

(1) Developing countries as defined by this Federal Act shall be those countries and regions that are listed in the Appendixes to the Three-Year Programmes on Austria's Development Policy (Section 9). Selection of those countries and regions shall be based on the list of recipients of development assistance compiled by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of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 Development organisations as defined by this Federal Act shall be non-profit making legal entities

사회적 및 생태적 개발의 후원

i) 다자간 개발협력사업에의 참여

제 3 조

(1) 이 법이 정한 바와 같은 개발도상국은 오스트리아 개발정책에 관한 3개년 계획(제9조)의 부속서에 기재된 국가와 지역으로 한다. 해당 국가와 지역의 선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집계한 개발원조의 수혜국 명단에 근거한다.

(2) 이 법이 정한 바와 같은 개발단체는 그 단체의 정관에 단체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 운영이

under private law if their objectives laid down in their statutes and their actual operations include development cooperation. Other institutions, in particular of the legally recognised churches and religious communities, the Provincial and Local Governments and other corporations under public law as well as enterprises, if they perform development cooperation as defined by Section 2, Subsection 3, shall be treated as equivalent to development organisations.

Part II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Section 4.

(1) The Federal Government, in consideration of the

개발협력을 포함할 경우에 사법상 비영리법인격체이다. 다른 기관, 특히 법적으로 승인받은 교회 및 종교단체, 지방정부와 기타 공법상 기업 및 회사가 제2조 제3항이 정하는 바와 같이 개발협력을 수행할 경우에는 개발단체에 준하여 취급한다.

제 II 부

제 1 장

일반 규정

제 4 조

(1) 연방정부는 연방정부가 가용하는 기여가 이 법이

Three-Year Programme (Section 9) may perform development cooperation as defined by Section 2, Subsection 2 either directly, on its own, or in concert with other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provided that it is ensured that the contributions made available by the Federal Government are used as defined by this Federal Act.

(2) When executing development cooperation, the Federal shall primarily use the administration and project implementation capacities of the developing countries and thus strengthen the structures of civil society and public structures in these countries. In addition, in providing its contributions the Federal Government shall endeavour to call upon organisations as defined by Section 3, Subsection 2 for the purpose of implementation provided that, depending on the kinds and dimensions of the contributions made and in consideration of the capacities of the developing countries and

정하는 바와 같이 이용될 수 있을 경우 3개년 계획(제9조)을 고려하여 제2조 제2항이 정하는 바와 같은 개발협력을 직접 또는 다른 국제법 주체와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다.

(2) 연방정부는 개발협력을 집행하는 때에 개발도상국의 행정 및 사업 시행역량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그 결과 해당 국가 내 시민사회의 구조와 공공의 구조를 강화한다. 또한 연방정부는 기여를 제공함에 있어서 발도상국과 제3조 제2항이 정한 바와 같은 단체의 역량을 고려하고 제공하는 기여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그 기여가 적절하고 위에 적시된 기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유도하는 것일 것을 시행의 목적상 제3조 제2항이 정한 바와 같은 단체에게 요청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organisations as defined by Section 3, Subsection 2, this is appropriate and conducive to meeting the objectives of said contributions.

(3) The conditions under which contributions to development cooperation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1 are made shall be laid down in each individual case in the form of either interdepartmental agreements or agreements under private law.

Section 5.

(1) The Federal Government,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may contract out projects and grant funds - either on initiative by applicants for funds or as a result of invitations to submit applications for funding.

(2) The Federal Government, in the context of the policy-issue-related or geographical priorities of the Three-Year Programme, may resort to contracting out

(3) 제1항에 따른 개발협력에 대한 기여의 조건은 기관간협정 또는 사법에 의거한 협정의 형식으로 각 개별 사안별로 규정한다.

제 5 조

(1) 연방정부는 개발협력사업 시행의 목적상 기금 신청자의 주도에 의거하거나 또는 기금제공 신청서 제출을 권유한 결과에 의거하여 사업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금을 공여할 수 있다.

(2) 연방정부는 3개년 계획의 정책현안관련 또는 지리적 우선순위의 맥락에서, 개발협력사업의 준비, 시행 또는 평가를 목적으로 계약에 명시할 수 있다.

for the purpose of preparing, implementing or evaluating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3) Funding based on initiative by organisations as defined by Section 3, Subsection 2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objectives and principles of Section 1, Subsections 3 and 4. The applicants for funds shall also provide contributions. Only organisations as defined by Section 3, Subsection 2 shall be eligible for application for funding.

(4) The ADA (Section 6) may invite organisations as defined by Section 3, Subsection 2 to submit proposals for the implementation of projects in the context of the policy-issue-related and geographical priorities of the Three-Year Programme. Invitations to submit such applications for funding shall be made known in an appropriate way.

(3) 제3조 제2항이 정한 바와 같은 단체의 주도에 근거한 기금제공은 제1조 제3항 및 제4항의 목적 및 원칙과 일치하도록 한다. 제3조 제2항이 정한 바와 같은 단체만이 기금제공 신청 자격을 가진다.

(4) 오스트리아개발청(제6조)은 제3조 제1항이 정한 바와 같은 단체에게 정책현안관련 또는 지리적 우선 순위의 맥락에서 사업의 시행을 위한 제안을 제출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그러한 기금제공 신청서 제출의 권유는 적절한 방식으로 공지한다.

Chapter 2

Austrian Development Agency Limited Company

(Austrian Development Agency, ADA)

Formation of the ADA

Section 6.

- (1) The Austrian Development Agency Limited Company shall be formed under the legal name Austrian Development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ADA.
- (2) The headquarters of the ADA shall be in Vienna; the financial year shall be the calendar year. The ADA shall have the right to use the federal coat of arms.
- (3) The ADA shall be formed as at 1 January 2004, to the exclusion of Section 2 Subsection 1 of the Act on Limited Companies of 6 March 1906 (Limited

제 2 장

오스트리아개발청유한회사

(오스트리아개발청, 개발청)

개발청의 설립

제 6 조

- (1) 오스트리아개발청유한회사는 오스트리아개발청이라는 법정 명칭으로 설립되며, 이하에서는 개발청이라고 한다.
- (2) 개발청의 본부는 비엔나에 두며, 회계연도는 서기력을 적용한다. 개발청은 연방국장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 (3) 개발청은 1906년 3월 6일 유한회사법, 즉 제국법률집 RGBI 58/1906의 수정법(유한회사법) 제2조 제1

Companies Act), Collection of Imperial Acts RGBI. No. 58/1906 as amended. The provisions of the Limited Companies Act shall apply to the ADA as far as this Federal Act does not provide otherwise. The Management of the ADA, without undue delay, shall apply for entry in the commercial register and the competent court shall enter the company in the commercial register. Section 5 Subsection 2 of the Limited Companies Act shall not apply. As far as this Act does not contain the information required in Section 4 of the Limited Companies Act, it shall be included in the memorandum of formation.

(4) The Federal Government shall be the sole founder and owner of the ADA and,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including exercising the rights of shareholders and management of share interests, it shall be represented by the Federal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A

항을 배제하고 2004년 1월 1일에 설립한다. 이 법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유한회사법의 규정은 개발청에 적용된다. 개발청의 관리인은 부당한 지연 없이 상업등기부 등재를 신청하고 관할 법원은 상업등기부에 이 회사를 등재한다. 유한회사법 제5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이 유한회사법 제4조가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한 그 정보는 설립정관에 포함되도록 한다.

(4) 연방정부는 개발청의 유일한 설립자이자 소유자이고, 주주권의 행사와 주식이익의 관리를 포함하여 이 장의 목적상 연방외무장관이 연방정부를 대표한다. 주식의 매매는 허용되지않는다.

sale of shares shall not be admissible.

(5) The memorandum of formation shall be issued by the Federal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and presented when applying for entry in the commercial register of the company. Any necessary modifications of the memorandum shall be made accordingly.

(6) The share capital of the ADA shall be EUR 70 000 and shall be paid up fully after application for entry in the commercial register of the company. In addition the Federal Government shall contribute to the capital of the ADA the amount of EUR 910 000 in cash.

(7) Any statements, including the memorandum of formation of the ADA, decisions and official confirmations with regard to the ADA shall not require authentication if the seal of office has been affixed.

(5) 설립정관은 연방외무장관이 제정하고 이 회사의 상업등기부 등재 신청시 제출한다. 모든 정관 수정은 이를 따른다.

(6) 개발청의 주식납입금은 70,000 유로이고 이 회사의 상업등기부 등재 신청 후 전액 납입되도록 한다. 또한 연방정부는 개발청 자본금으로 910,000 유로를 현금으로 기여한다.

(7) 개발청 설립정관, 개발청 관련 결정 및 공식 확인 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성명은 사무실 직인이 날인된 경우에는 인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Transfer of assets and valuation

Section 7.

(1) Those movable assets that have so far been owned by the Federal Government and managed and used principally by the Federal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and which are necessary for fulfilling the functions of the ADA, including any pertinent rights, legal relationships, obligations, accounts receivable and debts, as at 1 January 2004 shall pass into the ownership of the ADA, by universal succession. The universal succession shall be entered in the commercial register. The non-cash capital contribution shall be effected without any increase of the share capital, and the equivalent shall be transferred to an untied capital reserve.

(2) Valuations of the assets transferred shall be entered in the opening balance sheet, which shall be prepared

자산의 이전과 평가

제 7 조

(1) 연방정부가 이전까지 소유하고 원칙적으로 연방 외무장관이 관리, 사용한 동산 중 개발청 직무 수행에 필요한 동산은 모든 부속된 권리, 법률관계, 의무, 입금계좌 및 부채를 포함하여 2004년 1월 1일자로 일반승계에 의하여 개발청 소유로 이전된다. 일반승계는 상업등기부에 등재한다. 비금전적 자본 기여는 순자본의 증가 없이 효력을 갖고 그 가액은 조건 없는 자본준비금으로 이전된다.

(2) 이전된 자산의 평가는 공개된 대차대조표에 기재되어야 하며, 그 표는 이 법이 발효된 시점으로부터

within six months after the point of time when this Federal Act has entered into force. The valuations in the opening balance sheet do not have to be linked to acquisition cost and cost of production. The valuations of technical equipment and assets shall be effected according to possibilities of utilis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current of the art.

(3) The opening balance sheet shall include an appendix which gives a summary of those assets and liabilities that have been transferred from the Federal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to the ADA that may be allocated to it in a transparent way and that are regarded as necessary for operation, and which makes it possible to identify the positions of creditors and debtors that are transferred. In addition said appendix shall include all and any assets, legal relationships and debits that are transferred from the Federal Ministry for

6개월 내에 준비한다. 공개된 대차대조표상 평가는 취득비용 및 생산비용이 연계되지 않아도 된다. 기술 장비 및 자산의 평가는 그 물품의 시가를 고려하여 효용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3) 공개된 대차대조표는 연방외무부로부터 개발청으로 이전된 자산과 부채의 개요를 담은 부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 자산 및 부채는 투명한 방식으로 개발청에 배정하고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또한 부속서는 이전되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를 식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위의 부속서는 연방외무부로부터 개발청으로 이전되고 대차대조표에서 확인될 수 없는 모든 자산, 법률관계 및 부채를 포함한다. 자산의 이전은 1965년 회사법, 즉 연방법률집 BGBI 98/1965 수정본

Foreign Affairs to the ADA and cannot be seen from the balance sheet. The transfer of assets shall be subject to those provisions of company law that concern the formation of companies with non-cash capital contribution pursuant to Section 6a Subsection 4 of the Limited Companies Act, with the exception of the audit reports of the management and the supervisory board pursuant to Section 25 Subsection 1 of the Company Act of 1965, Collection of Federal Acts BGBl. No. 98/1965 as amended. The opening balance sheet shall be audited and confirmed by a court-appointed auditor; the audit report shall be regarded as the formation report pursuant to Section 25 Subsection 2(4) of the Company Act of 1965. The Management shall have published in Wiener Zeitung the opening balance sheet pursuant to Section 10 of the Commercial Code, Collection of German Acts dRGBL. 1897 p. 219 as

제25조 제1항에 따른 관리인과 운영위원회의 감사보고서를 예외로 하고 유한회사법 제6a조 제4항 따른 비금전적 기여에 입각한 회사의 설립에 관한 회사법 규정에 따른다. 공개된 대차대조표는 법원이 지정하는 감사가 감사를 하고 확인하여야 하며, 감사보고서는 1965년 회사법 제2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설립 보고서로 본다. 관리인은 상법, 즉 독일법률집 dRGBL 1897 219쪽의 수정본 제10조에 따라 공개된 대차대조표와 연례재정보고서를 비너 자이퉁지에 공개하고, 그 공개가 상법 제277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상업등기법원에서 확인한다.

amended, as well as the annual financial statement, and shall establish confirmation at the commercial register court that publication has been arranged pursuant to Section 277 Subsection 2 of the Commercial Code.

The functions of the ADA

Section 8.

(1) The function of the ADA shall be to prepare and implement measures of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particular attention being paid to their effectiveness in developing countries. The ADA shall fulfil its functions in coordination with other institutions that also undertake development activities. In this context, the ADA shall in particular take over the following tasks:

1. preparation of programmes and projects and conclusion of agreements on measures of development co-

개발청의 직무

제 8 조

(1) 개발청의 직무는 개발협력 조치를 준비하고 시행하는 것이며, 개발도상국 내 그 효과성에 특히 주목하여야 한다. 개발청은 개발활동을 하는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발청은 특히 다음의 임무를 부여받는다.

1. 3개년 계획(제23조)과 위에 적시된 계획, 사업 및 조치의 시행 맥락에서 계획 및 사업의 준비와 개발

operation in the context of the Three-Year Programme (Section 23) as well as implementation of said programmes, projects and measures;

2. support of sustainable economic, social and ecological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utilising Austrian potential;
3. participation in multilater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in the context of the European Community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sations, in particular by means of acquisition of international means and cofinancing as well as arranging the participation in development projects of enterprises and development organisations;
4. support of assignments of Austrian development workers and experts, in particular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organisations and institutions;
5. consultancy to the Federal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with regard to all principal issues and concerns

협력조치에 관한 협정의 체결

2. 오스트리아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내 지속가능한 경제적, 사회적 및 생태적 개발의 지원
3. 유럽공동체 및 기타 국제기구의 차원에서, 특히 국제적 수단을 취득하고 기업과 개발단체의 개발사업의 참여를 배치하고 공동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다자적 개발협력사업의 참여
4. 특히 국제기구 및 조직의 차원에서 오스트리아 개발근로자와 전문가 배치의 지원
5. 개발정책 및 협력에 관한 모든 주요 현안 및 관심사, 특히 3개년 계획의 준비에 관련된 연방외무장관

of development policy and cooperation, and in particular the preparation of the Three-Year Programme.

(2) The ADA shall draw up an annual work programme, including an annual budget for the following year and forecasts, which has to be approved by the Federal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The work programme shall implement the current Three-Year Programme within the scope of activities of the ADA and in particular it shall include the focus of activities and objectives of the work of the ADA as well as information on the operational and administrative resources necessary for this purpose. The ADA shall implement the work programme according to the means provided under the current Federal Finance Act.

Substantial modifications of the work programme shall require previous approval by the Federal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who shall also be entitled to ask for

에 대한 자문

(2) 개발청은 차기년도 연간예산과 예측치를 포함하여 연간활동계획을 입안하여야 하고 연방외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활동계획은 개발청의 활동 범위 내에서 현행 3개년 계획을 시행하는 것이어야 하고, 특히 개발청의 활동과 목적의 초점과 이 목적에 필요한 운영상 및 행정상 자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발청은 현행 연방재정법에 의거하여 제공되는 수단에 따른 활동계획을 시행한다. 활동계획의 실질적인 수정은 연방외무장관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고, 또한 연방외무장관은 새로운 활동계획의 제시를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다.

presentation of a new work programme at any time.

Guidelines for management

Section 9.

- (1) The ADA is a nonprofit company as defined by Section 34 of the Federal Fiscal Code, Collection of Federal Acts BGBI. No. 194/1961 as amended. It is not profit-oriented and shall be managed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s of economy,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 (2) The ADA shall have the right to carry out any transactions and measures that are deemed to be necessary or useful for fulfilling its tasks. This also applies to the foundation of subsidiaries and acquisition of interests.
- (3) The ADA shall have the right to render services

관리지침

제 9 조

- (1) 개발청은 연방재정법, 즉 연방법률집 BGBI 194/1961 수정본 제34조가 정하는 바와 같은 비영리 회사이다. 개발청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으며 경제성, 효율성과 효과성 원칙에 기초하여 경영한다.
- (2) 개발청은 자신의 임무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하거나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여하한 거래 및 조치를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자회사의 설립과 이익의 취득에도 적용된다.
- (3) 개발청은 제2조에 의한 경쟁조건에 따라 역무를

under conditions of competition pursuant to Section 2. Services shall only be rendered under conditions of competition in order to fulfil the functions transferred to the ADA pursuant to Section 8 Subsection 1. Receipts shall only be aimed at as far as they are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cost coverage. In the accounting system of the ADA, services rendered under conditions of competition and other services shall be represented in separate accounting areas.

(4) The first Management that may be appointed after this Act has entered into force but before the ADA has been established, shall draw up a business plan within six months after appointment and submit it to the Supervisory Board for approval. The business plan shall include in particular the business goals aimed at by the ADA, its strategies and organisation as well as plans for the employment of staff and use of physical re-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역무는 제8조 제1항에 의거하여 개발청에 이전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쟁조건에 따라서만 수행해야 한다. 수취는 비용준비금의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목표로 삼아야 한다. 경쟁조건에 따라 수행되는 역무와 기타 역무는 개발청의 회계체계 내에서 별도 회계부문에 표시한다.

(4) 이 법의 효력이 발생한 후 개발청이 설립되기 전까지 임명될 첫 관리인은 임명 이후 6개월 내에 경영계획을 세우고 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경영계획은 오스트리아 개발정책(제1조 제3항 및 제4항)을 고려하여, 특히 개발청이 목적으로 삼는 경영목표, 그 전략과 조직뿐 아니라 직원채용계획과 물리적 자원의 활용, 투자계획과 재정운영을 포함한다.

sources, investments planned and financing, in consideration of the objectives and principles of the Austrian development policy (Section 1 Subsections 3 and 4).

(5) The Management shall take care that a planning and reporting system be established, which ensures that the Management's legal reporting obligations be fulfilled and which makes it possible to evaluate the measures taken by the ADA with regard to achievement of goals and effectiveness.

(6) The provisions of the Trade Regulation Act of 1994 (TRA of 1994), Collection of Federal Acts BGBl. No. 194 as amended, shall not apply to the ADA.

(7) The ADA has the right to make use, against payment, of the consultancy services and representation by the Federal Law Office.

(8) The Federal Computing Centre, upon request and against payment, shall perform tasks on behalf of the

(5) 관리인은 기획 및 보고체계를 수립하는데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인의 보고의무가 이행되고 그 목표와 효과성의 달성에 관하여 개발청이 취한 조치의 평가가 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6) 1994년 무역규제법, 즉 연방법률집 BGBl. 194 개정본 규정은 개발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7) 개발청은 비용을 지급하고 연방법무실의 자문역무와 대리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8) 연방전산센터는 요청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고 개발청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연방전산센

ADA. With regard to payment for the services rendered by the Federal Computing Centre, the ADA shall be regarded as a federal office.

(9) In the case of dissolution or termination of the ADA, or lapse of original purpose, the assets of the ADA, as far as they exceed the contribution to the capital effected by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noncash capital contribution of the Federal Government, shall be used exclusively for non-profit purposes or charitable purposes in the field of development cooperation.

Financing of the ADA

Section 10.

The ADA shall defray its expenses

1. out of contributions provided by the Federal

터가 수행하는 역무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 개발청은 연방기관으로 간주한다.

(9) 개발청의 해체, 청산 또는 최초 목적 상실시 개발청의 자산은, 연방정부에 의한 유효한 자본 기여와 연방정부의 비금전적 기여의 공정한 시장가치를 초과하는 한, 개발협력 분야 내의 비영리적 목적 또는 자선적 목적에만 전적으로 사용한다.

개발청의 재정운영

제 10 조

개발청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한다.

1. 개발청의 활동계획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관리비

Government as from 1 January 2004 in the form of an annual basic payment to be used for covering the administrative expenses incurred for fulfilling its work programme. In addition to this basic payment, the Federal Government, according to the funds earmarked for this purpose in the annual Federal Finance Act, may compensate higher expenses, provided that this is necessary although the ADA has observed the principles of economical, efficient and effective business practices;

2. out of contributions provided by the Federal Government for carrying out operational measures taken in order to fulfil the work programme, according to the funds earmarked for this purpose in the annual Federal Finance Act;

3. out of payments for rendering services for the Federal Government or third parties;

4. out of other public or private contributions;

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방정부가 2004년 1월 1일부터 연간기본배정의 형태로 지급하는 기여로부터 나오는 비용. 이 기본지급에 추가하여 연방정부는 연간 연방재정법에서 이 목적을 위해 배정한 기금에 따라 개발청이 경제적, 효율적 및 효과적 경영실천의 원칙을 준수할지라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조건으로 더 높은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2. 연방정부가 연간 연방재정법에서 이 목적으로 배정한 기금에 따라 활동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한 시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제공한 기여에서 나오는 비용

3. 연방정부 또는 제3자를 위한 역무수행에 대한 지급에서 나오는 비용

4. 기타 공적 또는 사적 기여에서 나오는 비용

5. out of other receipts.

Management

Section 11.

The ADA shall have a general manager. The Management shall be appointed after a public notification of vacancies, by the Federal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for a maximum period of four year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Staffing Act, Collection of Federal Acts BGBI. No. 26/1998 as amended.

Supervisory Board

Section 12

(1) After entry into force of this Act, and if possible already before the formation of the ADA, but by 31

5. 기타 수취에서 나오는 비용

관리인

제 11 조

개발청은 1인의 일반관리인을 둔다. 관리인은 공석이 공식적으로 통지된 후에 연방외무장관이 직원법, 연방법률집 BGBI. 26/1998 개정본 규정에 따라 최대 4년 임기로 임명한다.

감독위원회

제 12 조

(1) 이 법이 발효된 후 가급적 개발청의 설립되기 전까지 다만 늦어도 2004년 1월 31일까지 최대 임기가

January 2004 at the latest, a supervisory board shall be established, which shall consist of 12 members whose maximum period of office shall be four years.

1. Six members of the Supervisory Board shall be appointed by the Federal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who shall appoint one of these members as Chairperson.

2. The Federal Minister of Finance, the Federal Minister of Agriculture, Forestry, Environment and Water Management, the Federal Minister for Social Security, Generations and Consumer Protection and the Federal Minister for Economic Affairs and Labour shall each appoint one member of the Supervisory Board. The Federal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shall appoint one of these members as Vice Chairperson.

3. One member of the Supervisory Board shall be appointed by the Provincial Governors, through the

4년인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감독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한다.

1. 감독위원회 위원 6인은 연방외무장관이 임명하며, 이 중 1인이 의장으로 임명된다.

2. 연방재무장관, 연방농림수자원장관, 연방사회복지세대·소비자보호장관, 연방경제노동장관은 각기 1인의 감독위원회 위원을 임명한다. 연방외무장관은 이들 중 1인을 부의장으로 임명한다.

3. 연방위원회 위원 1인은 지방주지사들이 지방주연락사무소를 통해 임명한다.

Liaison Office of the Provinces.

4. One member shall be nominated by the bodies representing the staff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works constitution.

(2) The members of the Supervisory Board appointed pursuant to Subsections 1(1) and 1(2) may be dismissed and replaced by other members at any time, by the Federal Minister who has appointed them.

(3) The members of the Supervisory Board shall be obliged to furnish comprehensive information to the Federal Minister who has appointed them.

(4) The Supervisory Board shall take decisions by simple majority. In the event of an equality of votes the Chairperson shall have the casting vote.

(5) The Supervisory Board shall in particular be responsible for

1. approval of programmes and projects as far as a de-

4. 위원 1인은 노동현장에 따라 설치된, 직원을 대표하는 기관이 지명한다.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임명된 감독위원회 위원들은 그들을 임명한 연방외무장관에 의하여 언제든지 해임되고 다른 위원으로 교체될 수 있다.

(3) 감독위원회는 자기를 임명하는 연방외무장관에게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4) 감독위원회는 단순다수결로 결정한다.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5) 감독위원회는 특히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여받는다.

1. 활동 및 사업과 관리인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

cision in this matter does not come within the competence of the Management;

2. audit of the annual work programme including the annual budget for the previous year and forecasts as well as any substantial modifications of the work programme before approval pursuant to Section 8

Subsection 2;

3. approval of the foundation of subsidiaries and acquisition of interests;

4. approval of the establishment and closure of coordination offices;

5. approval of the business plan pursuant to Section 9 Subsection 4.

안의 결정에 대한 승인

2. 전년도 연간예산 및 예측치를 포함한 연간 활동계획과 제8조 제2항에 의거한 승인을 받기 전의 활동계획의 여하한 실질적 개정에 대한 감사

3. 자회사 설립과 이익 취득의 승인

4. 조정사무소 설치와 폐쇄의 승인

5. 제9조 제4항에 의거한 경영계획의 승인

Coordination offices

Section 13.

(1) In order to perform its functions, the ADA may establish coordination offices in other countries. The establishment and closure of a coordination office shall require previous approval by the Federal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The coordination offices shall report to the Federal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on the general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country where they are situated.

(2) The heads of the coordination offices shall be appointed by the Federal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after the corresponding vacancies have been publicly notified by the ADA, for a maximum period of four years. Only persons having several years of qualified professional experience in the field of development cooper-

조정사무소

제 13 조

(1) 개발청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에 조정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조정사무소의 설치와 폐쇄는 연방외무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정사무소는 자기가 소재한 국가의 일반적인 정치적 및 경제적 발전에 관하여 연방외무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정사무소의 장은 개발청이 공식적으로 공석 사실을 통지한 후에 연방외무장관이 최대 임기 4년으로 임명한다. 개발협력 분야에서 수년간 양질의 전문적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임명되어야 한다. 공식적 공석 통지 없이 최대 4년 임기의 비반복적 재임명은 허용된다. 관련 고용계약과 위의 계약 연장은 관리인

ation shall be appointed. A non-recurrent reappointment for a maximum period of four years shall be admissible without giving public notification of vacancies. The pertinent contracts of employment and extension of said contracts shall be concluded by the Management. 이 체결한다.

Employees of the ADA

Section 14.

(1) The Federal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shall have the right to issue general instructions or individual instructions to the Management and, through the Management, also to the heads of the coordination offices.

(2) The Federal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shall have the right, for important reasons, to revoke appointments pursuant to Section 11 and Section 13 Subsection 2, in

개발청의 피고용인

제 14 조

(1) 연방외무장관은 관리인에게 그리고 관리인을 통하여 조정사무소의 장에게 일반 지시 또는 개별 지시를 내릴 권리를 가진다.

(2) 연방외무장관은 중요한 사유에 의하여, 특히 제1항에 의거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제11조 및 제1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임명을 철회할 권리를 가진다.

particular in cases where an instruction pursuant to Subsection 1 has not been followed.

(3) In performing their tasks, the employees of the ADA shall be obliged to observe secrecy about any facts which have come to their knowledge only through their work. The provisions of Section 46 Subsections 1 to 4 of the Act on Employment of Civil Servants of 1979 (ECS of 1979), Collection of Federal Acts BGBl. No. 333 as amended,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4) The Works Constitution Act, Collection of Federal Acts BGBl. No. 22/1974 as amended, shall apply to all employees of the ADA. The ADA shall be regarded as an enterprise according to Section 34 of the Works Constitution Act.

(3) 개발청의 피고용인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오로지 근무를 통해서 알게 된 여하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1979년 일반공무원고용법, 즉 연방법률집 BGBl. 333 개정본의 제46조 제1항 내지 4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4) 노동헌장법, 즉 연방법률집 BGBl. 22/1974 개정본은 모든 개발청 피고용인에게 적용된다. 개발청은 노동헌장법 제34조에 따라 기업으로 간주한다.

Transfer of civil servants

Section 15.

(1) Civil servants (Section 1 Subsection 1 of the ECS of 1979) who by 31 December 2003 have, at least primarily, performed tasks that are transferred to the ADA, as from 1 January 2004 shall be assigned to the ADA for permanent service, for the duration of their period of active service, as long as they are not assigned for permanent service to another office of the Federal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or another company in which the ADA has at least a majority interest (Subsection 2).

(2) It shall be admissible to assign civil servants transferred to the ADA pursuant to Subsection 1 to a legal successor of the ADA or a company in which it holds at least a majority interest.

일반공무원의 전직

제 15 조

(1) 2003년 12월 31일까지 개발청으로 이전된 직무를 최소한 주되게 수행한 일반공무원 (1979년 일반공무원고용법 제1조 제1항)은 그들이 상시복무를 위해 다른 연방외무부 사무소 또는 개발청이 최소한 과반수 지분을 갖고 있는 다른 회사 (제2항)에 배치되지 않는 한 복무시의 기간 동안 상시복무를 위해 2004년 1월 1일부터 개발청에 배치된다.

(2) 제1항에 의거하여 개발청으로 전직한 일반공무원을 개발청 또는 개발청이 최소한 과반수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법적 승계자로 지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3) The Management shall be responsible for administrative supervision as well as for exercising the pertinent right to issue instructions to civil servants assigned to the ADA. When performing this function, the Management shall be bound by instructions by the Federal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4) Civil servants pursuant to Section 1, if they declare their withdrawal from federal civil service within a period of five years after this Federal Act has entered into force, shall have the right to be employed by the ADA or a company in which the ADA has at least a majority interest. Said employment shall be effective as from the fir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withdrawal from civil service and under the conditions for newly employed persons effective at that point in time. The time of service as a federal civil servant shall be credited by the ADA, or the company employing the

(3) 관리인은 관리감독과 개발청에 배치된 일반공무원에게 지시를 할 수 있는 부속된 권리를 행사하는 책임이 있다. 관리인은 이 직무의 수행시에 연방외무장관의 지시에 기속된다.

(4) 제1항에 의거한 일반공무원은 이 법이 발효된 후 5년의 기간 내에 연방일반공직의 퇴직을 선언하는 경우에 개발청 또는 개발청이 최소한 과반수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에 고용될 권리를 가진다. 위의 고용은 일반공직을 퇴직하는 달의 익월 1일부터 그 시점에서 신규 고용된 자에 대하여 유효한 조건 하에 효력을 가진다. 연방일반공무원으로서 복무시점은, 고용기간 관련 모든 또한 여하한 청구와 관련하여, 개발청 또는 일반공무원을 고용한 회사가 인증한다. 개발청 또는 개발청이 최소한 과반수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에 고용되는 일반공무원의 경우, 제16조 제

civil servant, with regard to all and any claims related to duration of employment. In the case of civil servants employed by the ADA or a company in which the ADA at least has a majority interest, the provisions of Section 16 Subsection 3, second and third clause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in such a way as if the persons in question were civil servants withdrawing from a contractual relationship with the Federal Government.

(5) The ADA shall compensate the Federal Government for the complete employment-related expenditure for civil servants pursuant to Subsection 1, including attendant expenses as well as a contribution for covering pension cost (covering contribution). This contribution shall amount to 31.8 percent of the expenses for employment earnings. Employment earnings shall be all and any money payments that are subject to pension contributions. With the exception of special pension

3항 제2호 및 제3호는 당해 사람이 연방정부와 계약 관계를 포기하는 일반공무원에게 해당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준용한다.

(5) 개발청은 부수비용과 연금비용을 포괄하는 기여(포괄기여)를 포함하여 제1항에 의거한 일반공무원에 대한 모든 고용관련 지출을 연방정부에게 보상한다. 이 기여는 고용수입을 위한 비용의 31.8%에 달해야 한다. 고용수입은 연금기여의 대상이 되는 모든 그리고 여하한 금전지출이다. 특별연금기여를 제외하고 일반공무원의 수입에서 직접 공제되는 연금기여는 대변에 계상한다. 1956년 급여법, 즉 연방법률집 BGBI. 54 개정본 제22조에 의거한 일반공무원의 연

contributions, pension contributions that are directly deducted from the earnings of civil servants shall be credited. In the event of future changes of the level of the pension contributions of civil servants pursuant to Section 22 of the Salaries Act of 1956, Collection of Federal Acts BGBl. No. 54 as amended, the percentage of the covering contribution shall be changed to the same extent. Any special pension contributions paid to the companies as well as any payments effected after this Act has entered into force shall be transferred to the Federal Government immediately and to the full amount. Any other payments to the Federal Government shall be due on the tenth day of the month in question.

(6) The Employment Protection Act, Collection of Federal Acts BGBl. No. 450/1994 as amended, shall apply to civil servants assigned to the ADA for perma-

금기여 수준의 변경시 포괄기여의 백분율은 동일한 범위에서 변경된다. 이 법이 발효된 후 유효한 기업에게 지급되는 여하한 특별 연금 기여와 여하한 지출은 즉시 그리고 전액으로 연방정부에게 이전되어야 한다. 연방정부에 대한 여하한 기타 지출은 해당 월의 10일에 지급되어야 한다.

(6) 고용보호법, 즉 연방법률집 BGBl. 450/1994 개정본은 상시복무를 위해 개발청에 배치된 일반공무원에게 적용한다.

ment service.

Transfer of contractual public servants

Section 16.

(1) Contractual public servants of the Federal Government who by 31 December 2003 have, at least primarily, performed tasks that are transferred to the ADA shall be allocated to the ADA for permanent service by means of an employer's declaration by the Federal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that shall be made by 31 March 2004 at the latest. As from the point in time when the employer's declaration comes into effect, they shall be employees of the ADA. The ADA shall take over the rights and obligations the Federal Government has had to observe with regard to these contractual public servants.

계약직선임공무원의 전직

제 16 조

(1) 2003년 12월 31일까지 최소 주되게 개발청에 이관되는 임무를 수행한 연방정부의 계약직선임공무원은 늦어도 연방외무장관에 의해 2004년 3월 31일까지 이루어져야 할 고용인의 선언에 따라 상시복무를 위하여 개발청에 배정된다. 고용인의 선언이 효력을 갖게 될 시점부터 그들은 개발청의 피고용인이 된다. 개발청은 연방정부가 계약직선임공무원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는다.

(2) The provisions of the employment and remuneration law, in particular the Act on Contractual Public Servants of 1948, Collection of Federal Acts BGBl. No. 86 as amended, shall continue to apply to employees pursuant to Subsection 1. It shall no longer be admissible to conclude specific contracts pursuant to Section 36 of the Act on Contractual Public Servants. Employees pursuant to Subsection 1, if they state that they are willing to withdraw from transferred employment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that continue to apply in their case immediately after coming into effect of an individual contract differing from the transferred employment, shall have the right to enter simultaneously into an employment contract according to the legal provisions applying to newly employed persons. Within two years as from the formation of the ADA, any termination of employment for one of the reasons given

(2) 고용 및 보수법, 특히 1948년 계약직선임공무원법, 즉 연방법률집 BGBl. 86 개정본의 규정은 제1항에 의거한 피고용인에게 계속해서 적용한다. 계약직선임공무원법 제36조에 의거한 특별계약의 체결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제1항에 의거한 피고용인은, 고용이전과 별개인 개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즉시 그들에게 계속해서 적용되는 규율에 따라 고용이전을 포기하는 경우에, 새로 고용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률규정에 따라 동시에 고용계약에 들어갈 권리를 가진다. 계약직선임공무원법 제32조 제4항에 열거된 사유 중 하나에 의거한 여하한 고용종료는 개발청 설립 후 2년 내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in Section 32 Subsection 4 of the Act on Contractual Public Servants shall not be admissible.

(3) If employees pursuant to Subsection 1 enter into an employment contract with the company according to the legal provisions effective for newly employed persons, they shall not be entitled to severance payments resulting from their withdrawal. Any rights to future severance payments acquired in the time of employment with the Federal Government shall be transferred to the personnel providence insurance fund for the employees in question and take effect as from the time of entry into an employment contract with the ADA according to the legal provisions applicable to newly employed persons. In the case of such transfers, the provisions of Section 47 Subsection 3 of the Federal Act on Personnel Providence Insurance (PPI), Collection of Federal Acts BGBl. No. 100/2002, shall apply provided

(3) 제1항에 의거한 피고용인이 새로 고용된 사람에게 유효한 법률규정에 따라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퇴직으로부터 발생하는 퇴직급여를 받을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 한다. 연방정부에 고용될 시점에 부여받은 추후 퇴직급여에 대한 권리는 해당 피고용인을 위한 개인보장보험으로 이전되고 새로 고용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률규정에 따라 개발청과의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와 같은 이전의 경우 연방개인보장보험법, 즉 연방법률집 BGBl. 100/2002 제47조 제3항의 규정이 다음을 조건으로 적용되는데, 제1항에 따른 개별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어야 하고, 또한 제2항에 의거하여 연방정부에 의해 효력을 갖는 급여가 계약직일반공무원법, 즉 연방법률집 BGBl. 86 개정본 제35조 제5항에 의거하여 산정되는 퇴직급여의 50%에 상응하는 금액으

that no individual contracts according to Subsection 1 have been concluded and that the payment to be effected by the Federal Government pursuant to Subsection 2 shall be transferred to the competent personnel providence insurance fund by the Federal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in the amount that corresponds to 50 percent of the severance payment calculated pursuant to Section 35 Subsection 4 of the Act on Contractual Civil Servants of 1948, Collection of Federal Acts BGBl. No. 86 as amended, and to receipt of which the contractual public servant withdrawing from employment is not entitled as a result of a transfer to employment with the ADA. The time of employment in a previous service relationship with the Federal Government shall be credited by the ADA with regard to all and any claims related to duration of employment.

로 그리고 개발청의 고용으로 이전되는 결과로서 고용을 종료하는 계약직선임공무원이 받을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수령액에 따라 연방외무부에 의하여 적절한 개인보장보험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연방정부와의 이전 역무관계에서의 고용기간은 고용지속과 관련된 모든 그리고 여하한 청구와 관련하여 개발청이 인증한다.

(4) Any rights to future severance payments and anniversary bonuses for employees pursuant to Subsection 1 shall be taken over by the company.

Provisions applicable to public servants who become employees of the company

Section 17.

(1) The Federal Government shall assume contingent liability (Section 1356 of the General Civil Code) with regard to meeting remuneration claims of public servants who become employees of the company pursuant to Section 15 Subsection 4 or Section 16 Subsection 1. This liability shall be limited to the amount which, on the day before the public servant in question has withdrawn from federal civil service, results from the posi-

(4) 제1항에 의거한 피고용인을 위한 향후 퇴직급여 및 연례 상여금에 대한 권리는 회사가 인수한다.

**회사의 피고용인이 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

제 17 조

(1) 연방정부는 제15조 제4항 또는 제16조 제1항에 의거하여 회사의 피고용인이 된 선임공무원의 보수 청구에 응하는 것과 관련된 부수적 책임 (일반민법 제1356조)을 진다. 이 책임은 해당 선임공무원이 연방일반공무원으로부터 퇴직하기 전날 당시 시점에 수행 하던 직무와 역무기간 그리고 제공된 정기급여 증가분을 고려하여 보수에 관한 공무원 관련 직위로부터 나오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tion relevant for this public servant in terms of remuner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function performed at that point in time, as well as the years in service and the regular salary increases as provided for.

(2) Claims the Federal Government has made against public servants pursuant to Section 15 Subsection 4 and Section 16 Subsection 1 shall be transferred to the company upon commencement of the employment, and, upon settlement of the claim, the Federal Government shall be reimbursed by the company without undue delay.

(3) With regard to obligatory or voluntary use of flats provided by the employer, employees pursuant to Section 15 Subsection 4 and Section 16 Subsection 1 shall be treated as if they were federal civil servants. Such use of a flat shall not establish an accommodation right with regard to the flat in question, and

(2) 연방정부가 제15조 제4항과 제16조 제1항에 의거한, 선임공무원에 대한 청구는 고용이 개시될 때에 회사에 이전되고, 청구가 해결되는 때에 연방정부는 부당한 지연이 없이 회사에 의해 상환되어야 한다.

(3) 고용인이 제공하는 주거의 의무적 또는 자발적 사용에 관하여는 피고용인들을 연방일반공무원으로 간주하고 대우한다. 그와 같은 주거의 사용은 해당 주거에 관한 숙박의 권리를 확립시키지 않으며, 1979년 일반공무원고용법 제80조와 1956년 급여법 제24a조 내지 24c조의 규정이 계속 준용된다. 1979년 일반

the provisions of Section 80 of the ECS of 1979 and Sections 24a to 24c of the Salaries Act of 1956 shall continue to apply mutatis mutandis. The rights of the employer as defined in Section 80 of the ECS of 1979 shall be exercised by the Federal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4) Employees of the ADA who enter into an employment contract with the Federal Government shall be treated as if their previous employment with the ADA had been a civil service employment with the Federal Government.

Equal treatment

Section 18.

The Federal Act on Equal Treatment (AET), Collection of Federal Acts BGBl. No. 100/1993 as amended, with the exception of Chapters 4 and 5 of Part III, Part V

공무원고용법 제80조에서 정한 고용인의 권리는 연방외무장관이 행사한다.

(4) 연방정부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개발청의 피고용인은 그들에 대한 개발청에 의한 이전 고용이 연방정부에 의한 일반공무원 고용인 것과 같이 취급한다.

평등대우

제 18 조

연방평등대우법, 즉 연방법률집 BGBl. 100/1993 개정본은, 제3부의 제4장과 제5장, 제5부 및 제50조를 제외하고, 개발청의 피고용인, 제14조 제1항에 의거한

and Section 50, shall apply to employees with the ADA, civil servants assigned to the ADA for permanent service pursuant to Section 15 Subsection 1 as well as persons applying for employment with the ADA, provided that the company is regarded as an office and central office pursuant to Section 2 Subsections 1 and 2 of the AET.

Leave of absence

Section 19.

(1) Federal civil servants who enter into fixed-term employment with the ADA in a management position or position as head of a coordination office shall be granted unpaid leave of absence for the term of this employment.

(2) Any leave of absence pursuant to Subsection 1

상시복무를 위해 개발청에 배치된 일반공무원 및 개발청에의 고용에 지원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회사가 연방평등대우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한 사무소 또는 본사무소로 보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휴가

Section 19.

(1) 관리인 직책 또는 조정사무소의 장의 직책에서 개발청과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을 체결한 연방일반공무원은 이 고용기간 동안 무급휴가를 보장받는다.

(2) 제1항에 의거한 여하한 무급휴가는 총 12년을 초

shall not exceed a total period of 12 years.

과하지 못한다.

Chapter 3

Funding

Section 20.

(1) Applications for funding shall be submitted to the ADA (Section 6) and shall include any documents necessary. Applicants shall not have a right to funding. The ADA shall examine applications for funding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provisions of this Act and the Three-Year Programme (Section 23). If funding is granted by the ADA, the latter shall conclude a funding agreement with the applicant for funds.

(2) The funding agreement shall include the conditions, obligations and restrictions which in particular serve the

제 3 장

기금제공

제 20 조

(1) 기금지원 신청은 개발청 (제6조)에 제출되어야 하고 여하한 필요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청자는 기금지원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아니 한다. 개발청은 적용할 수 있는 이 법의 규정과 3개년계획 (제23조)에 따라 기금지원 신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발청이 기금지원을 제공할 경우에 기금신청자와 기금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2) 기금지원 협정은 특히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도움이 되는 조건, 의무 및 제한을 포함하고

purpose of meeting the objectives of this Federal Act and shall oblige the applicant funds

1. to use the fund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economy, and effectiveness and in line with the agreement;
2. to keep the necessary records and preserve vouchers so that use of the funds in line with the agreement may be verified by means of auditing;
3. to report immediately any occurrence that might delay or make impossible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receiving funds;
4. to draw up a schedule for project implementation;
5. to submit interim reports if the project covers a longer period of time;
6. to submit a report immediately after conclusion of the project, including in particular an overview of measures taken and results achieved as well as figures

또한 신청자가 기금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제성 및 효과성 원칙에 부합하고 협정에 따른 기금 사용
2. 협정에 따른 기금 사용이 감사에 의해 검증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록물의 보관과 증거물의 보존
3. 기금을 받는 사업의 시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여하한 상황에 대한 즉각적 보고
4. 사업 시행 일정표의 작성
5. 사업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중간보고서의 제출
6. 사업협정의 체결 직후 특히 취한 조치와 달성한 결과의 개관 및 취득한 기금의 사용을 보여주는 수치와 위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 및 비용을 포함하는

accounting for the use of the funds obtained and also earnings and expenses in connection with said project;
7. to permit inspection of those books, vouchers and other documents that serve the purpose of exami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o permit inspections in situ and to provide any necessary information in connection with the project.

(3) The funding agreement shall also include provisions stipulating an immediate cessation of funding and an obligation on the part of the recipient of funds to pay back the contribution granted or its equivalent - plus, in the case of fault, an interest of three percentage points above the base interest rate as from the day of disbursement, in particular

1. if the recipient of funds has incorrectly informed bodies or representatives of the ADA or the European Community on conditions relevant for granting funds;

보고서의 제출

7. 사업 시행을 조사하기 위하여 보존하는 서적, 증거물 및 기타 문서 감찰의 허용, 현장 감찰의 허용 및 사업과 연관된 여하한 필요 정보의 제공

(3) 기금지원 협정은 또한 즉각적인 기금지원 중단 및 공여된 기여 혹은 그 상당분에 대한 기금수령자의 반납의무를 명시하는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에 추가하여 과실이 있는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상환일부터 기본이율의 3% 이자가 포함된다.

1. 기금의 수령인이 개발청 또는 유럽공동체의 기관 또는 대표에게 기금 공여 관련 조건을 잘못 고지한 경우

2. in the case of a serious violation of the funding agreement;
3. if the project cannot be implemented. However, if the project has become inexecutable without fault on the part of the recipient of funds after implementation has been started, only those funds that have not yet been spent shall be paid back, or, on approval of the ADA, earmarked for other projects;
4. if bodies of the European Community demand a return of funds because said funding violates Community regulations;
 - (4) Funding that has been promised shall not be disposed of in a legally effective way by means of assignment, transfer or pledge or in any other way.
 - (5) When funds are handled by organisations or bodies of international law or applicants for funds from a developing country, the regulations of this Section shall

2. 기금지원 협정의 중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3. 사업이 시행될 수 없는 경우. 그러나 시행이 시작된 후 수령인 측의 과실이 없이 사업이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때까지 지출되지 아니 한 기금에 한해 반납되거나 또는 개발청의 승인 하에 다른 사업에 배정되어야 한다.
4. 유럽공동체 기관이 위의 기금지원이 공동체 규정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4) 약속한 기금지원은 배정, 이전 또는 서약의 방법에 의하여 법적으로 유효한 방식으로 또는 여하한 기타 방식으로 처분되지 아니 한다.
 - (5) 국제법에 의한 기구 또는 기관이나 개발도상국의 기금신청자가 기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generally apply. Notwithstanding, in individual cases it may be agreed that internal regulations of the organisations and bodies of international law shall apply. Also, in well-founded individual cases, deviations from individual regulations of this Section shall be admissible if the applicant for funds is a resident of a developing country.

Part III

Consultancy and coordination

Section 21.

(1) In order to advise the Federal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with regard to any of his competencies in the field of development policy, a commission shall be established at the Federal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in accordance with Section 8 of the Federal Ministries Act of 1986 published in the Collection of Federal Acts

사안에서 국제법에 의한 기구와 기관의 내부규정을 적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또한 잘 확립된 개별 사안에서는 기금 신청자가 개발도상국의 거주자인 경우 이 조의 개별적 규율로부터 이탈이 허용된다.

제 III 부

자문 및 협력

제 21 조

(1) 연방외무장관에게 개발정책 분야에서 그의 권한에 관한 조언을 하기 위하여 연방법률집 BGBI. 76 수정본에 공포된 1986년 연방조직법 제8조에 따라 개발정책자문위원회 (이하 자문위원회)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연방외무부에 위원회를 설치한다.

BGBI. No. 76 as amended, to act as an Advisory Board on Development Poli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dvisory Board).

(2) The Advisory Board shall be composed of experts in the fields of development policy or development co-operation, respectively, who shall be nominated by the Federal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3) The Advisory Board shall adopt rules of procedure and shall convene at least twice a year. The Federal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shall act as a chairperson and nominate a senior official of the Federal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to act as an executive deputy who shall head and coordinate the activities of the Advisory Board.

Section 22.

Any contribution that is provided by the Federal Government and reported to the Development

(2) 자문위원회는 연방외무장관이 각각 지명하는 개발정책 또는 개발협력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3) 자문위원회는 절차규칙을 채택하고 1년에 최소 2회 소집한다. 연방외무장관은 의장으로 활동하며 연방외무부의 고위공무원을 지명하여 자문위원회의 활동을 이끌고 조정하도록 한다.

제 22 조

연방정부가 제공하고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에 보고하는 공적개발원조에 해당하는 여하한

Assistance Committee (DAC) of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that is part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shall be in line with the objectives and principles of development policy (Section 1, Subsections 3 and 4) and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of the Three-Year Programme on Austria's Development Policy. The Federal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shall ensure the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y both in Austria and with regard to Art. 180 EC Treaty.

Part IV

Planning and financing

Section 23.

For longer-term planning the Federal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acting in consent with the Federal

기여는 개발정책 (제1조 제3항 및 제4항)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야 하고 오스트리아의 개발정책에 관한 3개년 계획에 일치하여야 한다. 연방외무장관은 오스트리아 내에서 그리고 유럽공동체조약 제180조와 관련하여 국제개발정책의 협력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IV 부

기획 및 재정

제 23 조

연방외무장관은 장기 기획을 위하여 연방재무장관의 동의 하에 오스트리아 개발정책에 관한 3개년 계획

Minister of Finance, shall draw up a three-year programme on Austria's development policy, and after the ADA (Section 6) and the Advisory Board (Section 21) have been heard, annually submit this programme to the Federal Government and communicate it to the Nationalrat of the Austrian Parliament for the purpose of information. The programme shall include any contribution to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erformed by the Federal Government (Section 2, Subsection 1), the priorities of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e funding necessary in each case. In addition it shall lay down the guidelines for the participation of the Federal Government in the development cooperation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sations and financial institutions.

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발청 (제6조)과 자문위원회 (제21조)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이 계획을 연방정부에 매년 제출하고 정보 제공의 목적상 오스트리아 의회인 나치오날라트(국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계획은 연방정부 (제2조 제1항)가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여하한 기여, 개발협력의 우선순위와 각 사안에 서 필요한 기금지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에 추가하 여 연방정부는 연방정부가 유럽연합의 개발협력과 관련 국제기구 및 재무기구에 참여하기 위한 지침을 규정하여야 한다.

Part V

Concluding provisions

Section 24.

(1)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an individual project, in those cases where consent of the Ministry of Finance shall be obtained according to the Budget Act of 1986 published in the Collection of Federal Acts BGBl. No. 213 as amended, the necessary personal data may be communicated to the Federal Ministry of Finance.

(2) For the purpose of auditing of the accounting and settlement practices with regard to expenditure and revenues of the Federal Government according to this Federal Act,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Court of Audit Act of 1948 published in the Collection of Federal Acts BGBl. No 144 as amended, personal data

제 V 부

최종규정

제 24 조

(1) 연방법률집 BGBl. 213 개정본에서 공포된 1986년 예산법에 따라 연방재무부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개별 사업 시행의 목적상 필요한 개인정보가 연방재무부에 통지될 수 있다.

(2) 연방법률집 BGBl. 144 개정본에서 공포된 1948년 감사법원법의 규정 하에서, 이 법에 따른 연방정부의 지출과 세입에 관한 회계 및 분쟁해결실행의 감사의 목적상 개인적 정보는 관련 감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 감사법원에 통지될 수 있다.

may be communicated to the Court of Audit as far as this is necessary for pursuing the relevant auditing activities.

(3) In cases of joint funding (co-financing) personal data may also be communicated to the co-financing partner as far as this is an essential prerequisite for executing the auditing rights of the co-financing partner included in the agreements on which co-financing is based.

(4) In the same way personal data concerning funding or contracting relations, to the extent necessary, may be communicated to institutions that shall take part in the preparation, implementation or evaluation of the project in question.

(5) Admissibility with regard to communication of personal data for other purposes, in particular in the context of public relations or information activities, is sub-

(3) 또한 합동기금지원(공동재정지원)의 경우 공동재정지원이 근거하는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공동재무지원협력자의 감사권을 행사하는데 근본적으로 필수적인 한도 내에서 개인적 정보가 공동재정지원 협력자에게 통지될 수 있다.

(4) 동일한 방식으로 기금지원 또는 계약관계에 관한 개인적 정보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의 준비, 시행 또는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는 기구에 통지될 수 있다.

(5) 기타 목적상, 특히 공적 관계 또는 정보활동의 차원에서 개인적 정보의 통지에 관한 허용 여부는 연방법률집 BGBI. 165 개정본에 공포된 2000년 정보보

ject to the regulations of the Data Protection Act of 2000 published in the Collection of Federal Acts BGBl. No. 165 as amended.

(6) The activities of the ADA pursuant to Part II Chapter 2 shall be regarded as public services as defined by Section 5 Subsections 1 and 2 of the Data Protection Act of 2000. Use of data by the ADA as a service provider shall be bound by instructions issued by the Federal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Section 25.

Article 34 of the Act Accompanying the Budget of 2001, Collection of Federal Acts BGBl. No. 142/2000, shall apply.

Section 26.

In this Federal Act any terms relating to persons equally refer both to women and men, provided that this is

호법의 규율을 받는다.

(6) 제II부 제2장에 의거한 개발청의 활동은 2000년 정보보호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이 정하는 바와 같이 공적 역무로 간주된다. 역무 제공자로서 개발청의 정보 사용은 연방외무장관이 발하는 지시에 기속된다.

제 25 조

2001년 예산집행법, 즉 연방법률집 BGBl. 142/2000 제34조가 적용된다.

제 26 조

이 법에서 개인에 관한 여하한 용어는 해당 주제의 차원에서 관련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여성과 남성 모

relevant in the context of the subject matter in question.

Section 27.

The Development Aid Act of 1974 published in the Collection of Federal Acts BGBI. No. 474 and as amended in BGBI. No. 579/1989 shall be invalidated.

Section 28.

Responsibility for enforcing this Federal Act shall rest with the Federal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who shall act in consent with the Federal Minister of Finance as far as Section 23 is concerned. Responsibility for enforcing Section 7 Subsection 1 shall rest with the Federal Minister of Finance. Responsibility for enforcing Section 1, Section 12 Subsections 1 to 3 and Section 22 shall rest with the competent Federal Ministers. In other respects, this Act shall not affect any com-

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

제 27 조

연방법률집 BGBI. 474 및 BGBI. 579/1989 개정본에 공포된 1974년 개발원조법은 효력이 없다.

제 28 조

이 법을 집행할 책임은 연방외무장관에게 있으며, 제 23조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연방재무장관의 동의 하에 행동해야 한다. 제7조 제1항을 집행하는 책임은 연방재무장관에게 있다. 제1조, 제12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제22조를 집행할 책임은 관계연방장관에게 있다. 다른 차원에서 이 법은 연방외무장관의 개발협력과 국제적 개발정책의 조정 권한을 제외하고, 마찬가지로 개발정책에 해당할 수 있는 문제에 있어서 기타 연방장관의 여하한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petences of other Federal Ministers in matters that may also constitute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the exception of the competence for development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y of the Federal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 2010. 7.26] [법률 제9938호, 2010. 1.25, 제정]

제 1 조 (목적) 이 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이하 “양자간 개발협력”이라 한다)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
2. “개발도상국”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공적개발원조 대상국(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협력대상국”이란 개발도상국 가운데 1인당 국민소득수준, 경제·사회발전단계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국제개발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선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4. “국제기구”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개발관련 국제기구(비정부간기구를 포함한다) 가운데 우리나라가 재정적 기여를 하거나 공동사업추진 등을 통하여 협력하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5. 양자간 개발협력 중 “무상협력”이란 협력대상국에 대하여 현금·현물·인력·기술협력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긴급재난구호를 포함하며 상환의무가 없는 것을 말한다.
6.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이란 이자율·상환기간 및 거치기간 등에 있어서 협력대상국이 국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상업적 조건으로 차입할 수 있는 것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협력대상국에 제공하는 현금 또는 현물 등으로서 상환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
7. “다자간 개발협력”이란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출자 및 양허성 차관 등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에게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국제개발 협력을 말한다.
8. “시행기관”이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 3 조 (기본정신 및 목표) 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② 국제개발협력은 제1항의 기본정신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2.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조건의 개선
3.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4.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5. 그 밖에 제1항의 기본정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4 조 (기본원칙)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시행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국제연합헌장의 제반 원칙 존중
2. 협력대상국의 자조노력 및 능력 지원
3. 협력대상국의 개발 필요 존중
4.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
5.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 및 협력 증진

② 국가등은 양자간 개발협력과 다자간 개발협력 간의 연계성과 무상협력과 유상협력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제개발협력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5 조 (국가등의 책무) ① 국가등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③ 국가등은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제 6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정신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 7 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간사위원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무총리실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④ 간사위원은 국무총리실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8조의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제10조제1항제1호의 분야별 연간종합시행계획
2. 제13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 중 정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⑥ 위원회의 부의대상 안건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조정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8 조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제9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5년마다 각각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안(이하 “분야별 기본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실무위원회를 거친 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분야별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1. 국제개발협력정책의 기본방향
2. 국제개발협력의 규모 및 운용계획
3. 제12조에 따른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중기지원전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안 중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확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라도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주관기관에 시달하고 주관기관은 이 중 각각의 시행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해당 시행기관 및 재외공관(「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대한민국재외공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달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 ①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무상협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각각 주관한다.

② 다자간 개발협력 중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밖의 기구와의 협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주관한다.

제10조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분야별 기본계획안 및 연간종합시행계획안의 작성
2. 분야별 연간종합시행계획의 이행 점검
3.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홍보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여하는 역할 및 기능

② 주관기관은 개별 시행기관이 소관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국제개발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의 수립) ① 각 시행기관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각 시행기관이 제출한 연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은 시행기관 간 사업 중복 등으로 시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협력대상국 중에서 국제연합이 선정한 최빈국을 포함하여 중점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을 행하여야 할 협력대상국(이하 “중점협력대상국”이라 한다)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중점협력대상국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이 시행되고 이를 통하여 협력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정을 한다.

제13조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국제개발협력 사업 시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방법, 국회에의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또는 그 단체의 연합체에 대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등은 제1항의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 (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①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②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주요 실적 및 평가결과를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의 대상·범위 및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집행을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관한 종합정보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제16조 (전문 인력의 양성)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의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7조 (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 국가등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연구,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18조 (국제개발협력 통계자료) ① 시행기관은 매년 전년도에 국제개발협력의 통계자료를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사업 통계자료를 작성·분석·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시행기관의 국제개발협력사업 통계자료를 종합하여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연간 통계자료를 작성하고 위원회 및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국회의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재외공관의 역할) ① 재외공관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 등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시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 과정에서 외교통상부를 통하여 재외공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이 법에 따른 주관기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른 시행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5. 5] [법률 제9993호, 2010. 2. 4, 일부개정]

제 1 조 (목적) 이 법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국에 대한 긴급구호대의 파견, 긴급구호물품의 지원, 임시 재해복구의 지원 등 해외 긴급구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재난 지역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재난구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천재지변·대형사고 그 밖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를 말한다.
2. “해외긴급구호”란 해외재난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의 감소 또는 복구 등 정부 차원에서 피해국을 긴급히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 3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4 조 (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 정부는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하에 적절한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5 조 (해외긴급구호의 종류) 해외긴급구호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괄한다.

1.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
2. 구호물품의 지원
3. 현금지원
4. 보건의료활동
5. 수송지원
6. 임시 재해복구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 6 조 (해외긴급구호대책의 수립)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평상시 해외 재난에 대비하여 그 종류·규모·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외긴급구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2. 해외긴급구호인력의 발굴·육성·교육훈련
3. 구호물품·장비의 비축·보관·정비 등
4. 구호인력·물품의 신속한 소집·수송 체계의 구축
5.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6. 해외긴급구호 관련 국제협력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조체계구축 등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해외긴급구호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제 7 조 (해외긴급구호의 개시) 외교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해외재난이 발생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구호를 요청받거나 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민·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0.2.4>

제 8 조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해외재난과 관련하여 해외긴급구호의 종류·규모·방식,

관계 중앙행정기관·법인·단체와의 협조방안 등 해외긴급구호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협의·결정하기 위하여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외교통상부 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관련 법인·단체의 장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2.4>

③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9 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 ① 외교통상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의회 결정에 따른 세부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 외교통상부 장관은 협의회 결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국방부장관에 대한 신속한 긴급구조·구호인력 또는 물품의 수송지원을 위한 군용 수송기 또는 수송함 파견 요구
2. 소방방재청장에 대한 해외재난으로 인한 인명구조를 위한 해외 긴급구조대 구성·파견 요구

③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법인·단체의 장이 관장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해외긴급구호본부) ① 외교통상부 장관은 협의회 결정의 신속한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해외긴급구호가 종료될 때까지 해외긴급구호본부(이하 “구호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호본부의 장은 외교통상부 장관이 된다.

③ 구호본부의 장은 피해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에 의거하고 해외재난의 성격 및 피해규모와 정도를 감안하여 제5조에 열거된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한다.

④ 구호본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사람들로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해외긴급구조대
2. 「소방기본법」에 따른 국제구조대
3.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4.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소속 직원 또는 같은 법에 따라 활동하는 해외봉사단원 등 종사요원
5.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협력요원
6. 해외긴급구호에 자원하는 사람
7.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 전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해외긴급구조대를 파견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파견 및 활동과 경비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해외긴급구호대장)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대장을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대의 구조 분야 담당자를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해외긴급구호대장은 관할 재외공관의 장과 긴밀히 협의하여 피해국에서의 구호활동을 총괄하며, 해외긴급구호활동을 함에 있어서 현지에서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13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외교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에게 인력·장비·물품 및 수송장비 등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지원) 외교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외긴급구호에 참여하는 법인·단체 또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장비·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 (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보상 등)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 긴급구호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해외긴급구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거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망(상해·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상해를 당한 경우
3. 질병에 걸린 경우
4.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제16조 (권한의 위임·위탁) 외교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외교통상부장관이 제1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9993호,2010. 2.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한민국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 2007.3.29 법률 제8316호]

제 1 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이들 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 각종 협력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1, 2001.5.24>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개발도상국가”라 함은 국민소득수준, 산업구조, 경제발전단계 등을 고려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개정 1999.1.21>

제 3 조 (법인격)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1.5.24>

제 4 조 (설립) ① 협력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5 조 (사무소의 설치) 협력단은 필요한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9.1.21>

제 6 조 (정관) ① 협력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분사무소 및 산하기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 협력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1.21>

제 7 조 (사업) 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개발도상국가를 위한 다음의 사업
 - 가. 연수생의 초청
 - 나. 전문인력의 파견
 - 다. 해외봉사단의 파견
 - 라. 개발조사
 - 마. 재난구호
 - 바. 물자·자금 및 시설의 지원
2. 국제협력을 위한 다음의 사업
 - 가. 민간단체의 국제협력활동에 대한 지원

나. 외국의 원조관련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다. 국제협력에 관한 이념 및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조사·연구

라. 그 밖에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따른 교육훈련·홍보 및 그 밖의 부대 사업

[전문개정 2001.5.24]

제 8 조 (임원) ① 협력단에 총재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개정 1999.1.21>

② 총재 및 정관이 정하는 상근이사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1999.1.21>

③ 협력단의 총재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99.1.21>

④ 이사는 대통령이 정하는 당연직이사를 제외하고는 총재의 추천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1999.1.21, 2001.5.24>

⑤ 감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99.1.21>

⑥ 총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1999.1.21>

제 9 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협력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0조 (임원의 직무) ① 총재는 협력단을 대표하고 협력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삭제<1999.1.21>

③ 상근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력단의 사무를 분장하며, 총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9.1.21>

④ 감사는 협력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1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협력단의 임원(비상근이사 및 감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직원은 총재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개정 1999.1.21>

제12조 (이사회) ① 협력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총재 및 이사로 구성한다.<개정 1999.1.21>

③ 총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 (직원의 임면) 협력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재가 임면한다.

제14조 (공무원의 파견) ① 협력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에 대하여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9.1.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을 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재원) 협력단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국제빈곤퇴치기여금 기타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퇴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

[유효기간 2012.9.30]

제16조 (출연금) ① 정부는 협력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협력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협력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협력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자금의 차입) ①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1.21>

제18조의2 (국제빈곤퇴치기여금)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퇴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 대하여 1천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다만, 승무원, 환승객, 영유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기여금의 부과·징수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협력단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기여금을 관리·운용한다. 이 경우 기여금에 대하여는 이를 다른 운영재원과 구분하여 계리(계리)하여야 한다.

④ 기여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소속하에 국제빈곤퇴치기여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된다.

⑥ 위원회 구성·운영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3.29]

[유효기간 2012.9.30]

제19조 (사업연도) 협력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0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협력단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1.21>

제21조 (결산서의 제출) 협력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제22조 (수수료 등의 징수)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수료 기타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 (업무의 지도·감독 등)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협력단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1999.1.21, 2001.5.24>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7조의 사업수행에 대한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협력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협력단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1.2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4조 (권한의 위탁) 외교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9.1.21>

제25조 (산하기관)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단산하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제26조 (비밀엄수 의무) 협력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협력단이 아닌 자는 한국 국제협력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8조 (민법의 준용) 협력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협력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0조 (벌칙)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1.21>

[전문개정 1995.12.6]

제31조 (과태료) ①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1.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9.1.2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9.1.21>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

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9.1.21>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95.12.6]

제32조 삭제 <2001.5.24>

부 칙 <제4313호,1991.1.14>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설립준비) ① 외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협력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협력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외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협력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협력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없이 협력단의 총재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설립비용) 협력단의 설립비용은 한국해외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부담한다.

제 4 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해외개발공사법은 협력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날 이를 폐지한다.

제 5 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공사는 한국해외개발공사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해산되며, 공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협력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 공사 해산 당시의 정부출자금은 공사 해산일에 협력단에 출연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공사의 명의를 협력단의 설립과 동시에 협력단의 명의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협력단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협력단설립전에 공사가 행한 행위 또는 공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협력단이 행한 행위 또는 협력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 6 조 (관련업무의 승계 등) ① 협력단은 설립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승계한다. 다만, 무상건설기술용역업무의 승계시기에 관하여는 외무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1. 외무부·건설부·노동부·과학기술처의 특정협력대상지역에 대한 연수생 초청 및 전문가 파견
2. 건설부의 무상건설기술용역
3. 경제기획원·과학기술처의 개발조사사업
4. 노동부의 직업훈련 지원
5. 외무부의 무상원조 집행사업, 의료단 및 태권도사범 파견
6. 문교부의 한국청년해외봉사단 파견

② 협력단설립전에 제1항 각호의 중앙행정기관이 행한 행위 또는 제1항 각호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협력단이 행한 행위 또는 협력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 7 조 (예산의 이체) 제7조 및 부칙 제6조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관련예산은 협력단의 설립과 동시에 외무부소관예산으로 이체한다.

제 8 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협력단설립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해외개발공사법또는 한국해외개발공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한국국제협력단법 또는 한국국제협력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4985호,1995.12.6>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5638호,1999.1.21>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다른 법률의 개정)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3호, 제9조제3호 및 제11조제1항 본문·제3호중 “특정협력대상지역”을 각각 “개발도상국가”로 한다.

제2조제2호중 ““특정협력대상지역”이라 함은”을 ““개발도상국가”라 함은“으로, “국가와 지역“을 “국가”로 한다.

부 칙 <제6475호,2001.5.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내지 제4조 생략

제 5 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27>생략

<128>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9>내지 <145>생략

제 6 조 생략

부 칙 <제8316호,2007.3.29>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유효기간) 제15조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3

미국 공적개발원조(ODA)

박 병 도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20세기 이후 현재까지 통용되고 있는 개념으로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역사는 주로 2차 대전 후의 냉전 체제라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형성되었다. 그 중심에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자리 잡고 있다. 1947년 트루먼 정부 당시 그리스와 터키에 대한 군사 및 경제 지원이 대외원조의 효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 2차 대전 직후 유럽 재건이라는 경제적 이익과 미국의 대서방 세계에 대한 지도자적 위치 획득이라는 정치적 이익이 맞물려 도출된 결과라 할 수 있는 마셜 플랜(Marshall Plan, 1947-1951)이 개발원조라는 개념을 실질적으로 현실화한 직접적인 시초라고 평가된다.

미국의 상당한 경제 규모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 국제 원조국으로서의 역할로 인해 미국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가장 큰 원조국이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OECD/DAC의 가장 큰 규모의 공여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지도자 국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1961년 대외

원조법을 제정하고 개발원조 업무를 담당할 정부기관으로 국제개발청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을 설립하였다. 또한 미국은 OECD 및 DAC를 설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다자간(multilateral) 개발기구(예, IBRD, IDA, UNIDO, UNDP 등)를 설립하는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지금도 많은 곳에 큰 규모로 금전적인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은 대외원조를 법제화하고 담당 기구를 설립함으로써 냉전시대부터 체계적으로 ODA를 실시해오고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피원조국의 필요(needs)’와 자신의 ‘외교정책의 목표’에 의하여 자국의 개발원조정책을 정당화해왔다. 최근에 눈여겨 볼만한 점은 2001년 9·11 사태와 그로 인한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미국정부는 의회와 국민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시키기 위해 국가안보의 논리를 더 강하게 사용하였다. 즉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다양한 개발원조정책들이 수립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개발협력정책을 시행하여 오고 있다. 미국정부의 개발협력 프로그램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민주적인 제도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민간 부문(private sector) 위주의 경제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이다. 그리고 미국은 민주주의 제도, 활성화된 시장, 인간에 투자하는 일을 포함한 선치(善治, good governance)가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

각국의 대외원조정책은 해당 국가가 처한 여러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만 선진 공여국들의 공통적 관행 중 상당 부분은 DAC의 권고사항에 부합하고 있다. 미국의 공적개발

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도 OECD의 기준과 지침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에서 도입할 부분은 도입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ODA 모델'을 만들어 국민적 지지를 토대로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토대적 연구로서 미국의 ODA 정책, 법제도 및 평가체계에 대한 분석은 매우 가치가 있다. 특히 2009년 11월 OECD DAC의 24번째 회원국이 된 한국 정부는 DAC 규범과 기준에 맞는 법제의 마련과 정책의 수립이 필요한데, 미국의 ODA 관련 법제와 정책의 실행 경험에 대한 연구는 향후 한국의 ODA 정책방향과 시행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제 2 절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OECD에서 발행한 자료 및 데이터와 미국의 USAID를 비롯한 ODA 관련 기관의 보고서와 간행물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자료들도 활용하여 실증적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1961년 집행기구였던 유럽경제협력기구(OEEC)가 OECD로 개편되고, 개발원조그룹(DAG)이 OECD 산하의 DAC로 전환됨에 따라 선진국의 개발원조 노력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지금까지도 OECD/DAC는 개발원조 분야에 관한 전 세계적인 논의와 활동의 핵심 역할이라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이 기관은 DAC 회원국들로부터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현황을 보고 받고 이에 대한 평가, 즉 동료평가(Peer Review)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 기관의 각종 문서에 기초하여 작성될 것이다. 특히 DAC 회원국들간 상호 검토를 통해 서로의 정책 및 제도 개선을 도모하는 동료검토에서 나타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할 것이다. 본 연구보고서에서 다룰 미국의 ODA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도 미국의 2006년 동료평가 내용을 반영하여 서술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미국의 ODA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제2장에서는 미국 ODA를 이해하기 위하여 미국의 ODA 역사와 현황을 소개하고, 제3장에서는 ODA 관련 법과 조직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ODA 정책체계와 그 동안의 시행사례 그리고 이에 대한 검토내용을 다루고, 제5장에서는 OECD의 DAC에서 이루어진 가장 최근의 동료평가(2006 Peer Review)의 결과와 권고 사항, 그리고 미국의 ODA 평가체계를 다루고자 한다. 제6장에서는 미국 ODA의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ODA

제 1 절 미국의 ODA 역사

I. USAID 설립 이전의 대외 원조 略史

USAID(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는 1961년 J. F. 케네디 대통령의 세계개발정책에 따라 처음으로 설립되었지만 이러한 개발협력사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1949년 트루먼 대통령이 취임식 연설에서 개발도상국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내용으로 하는 미국의 대외정책지침을 발표하고나서 부터이다. 그러나 실제로 개발사업의 효시는 1940년대 말과 1950년대 초에 세계대전으로 황폐된 유럽지역의 회생을 위한 “마셜 플랜”(Marshall Plan)이다. 그러나 마셜 플랜은 그렇게 성공적이지도 지지를 받지 못했다. 즉 마셜 플랜 시기부터 전개된 대외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이 배경이 되어 1961년 미국은 대외원조프로그램을 재조직하였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을 제정하여 USAID를 창설한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의 종전 즈음, 유럽은 물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 유럽의 원조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국제사회는 1945년 12월 27일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the World Bank)을 설립하였고, 미국은 1948년 4월 2일 경제협력법(Economic Cooperation Act)의 제정을 통해 마셜 플랜이라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이 상설적인 기관으로 설립됐던 것에 반해, 마셜 플랜은 특정한 몇 가지 목적을 위해 수립되었다. 즉 마셜 플랜은 바로 유럽의 회생 지원을 위한 상설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원조를 위한 비상시 도구로써 유럽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1951년 6월 30일 마셜 플랜이 종료되었을 때, 의회는 기술적 원조와 군사 및 경제원조 프로그램을 통합하고자 하는 새로운 대외원조정책을 수립하고 있었다. 1951년 10월 31일, 이 새로운 정책은 의회가 첫 번째 상호안전보장법(Mutual Security Act)을 통과시키고 상호안전보장청(Mutual Security Agency)을 신설하면서 구체화되었다.

1953년에 전세계적 범위의 경제적 및 기술적 원조를 통합하여 공고히 하기 위해 국무부와 독립된 대외활동본부(Foreign Operations Administration)라는 정부 기관이 설립되었다. 이것의 기능은 1년 후 국제협력본부(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ICA)로 통합되었다. ICA는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발전에 목적을 둔 원조정책을 관리하였다. 비록 ICA의 기능이 USAID와 달리 방대하고 광범위했지만, ICA는 많은 한계를 안고 있었다. ICA는 국무부의 구성 기관으로써 지금의 USAID가 가지는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지 못했다. 그 당시 미국의 정부기관들과 UN과 관계를 맺고 있는 다자적 공여기관들이 대외원조에 더욱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1954년 개정된 상호안전보장법은 개발원조, 안전보장원조, 자유재량적 긴급자금(discretionary contingency fund), 개인투자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평화를 위한 식량’(Food for Peace) 프로그램 역시 식량원조의 일환으로 그 해부터 시행되었다. 미국 의회는 1957년 개정된 상호안전보장법을 승인하여 ICA의 대출 창구로 활동한 개발차관기금(Development Loan Fund, DLF)의 설립하였다. DLF의 주된 기능은 수출입은행과 다른 공여자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는 자금, 그리고 지역통화 중 상환이 가능하여 대출이용에 동의된 자금들을 끌어 모으는 것이었다. DLF는 기술적 원조를 제외한 모든 것에 자금을 조달했고, 이는 가장 주목할 만한 자금 운영 기획이었다. 그런데 ICA와 DLF 모두 장기적인 대외원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러한 점이 USAID의 설립을 견인한 배경이 되었다.

II. 1960년대의 대외 원조 활동

1960년 즈음, 대외원조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공공기관과 의회의 지원은 줄어들었다. 그런데 ‘추악한 미국인’ <The Ugly American>이라는 책에서 강조된 대외원조에 대한 실망감은, 의회와 Eisenhower 정부로 하여금 개발도상국 원조에 관심을 갖게 했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도상국 지원문제는 196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새롭게 출범한 Kennedy 정부는 대외원조문제를 최우선과제로 재편하고 또한 재확인하였다. 이의 목적은 당시 이미 널리 알려진 원조구조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할 새로운 권한을 얻기 위한 더 높은 단계로의 대외원조정책을 재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한마디로 모든 원조정책은 “새로워야”만 했다.

Kennedy 대통령은 1961년 미국의 새로운 대외원조정책을 소개하면서 세 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원조원칙을 내세웠다. 첫째는, “세계적 도

전에 대한 미국의 전례 없는 대응”이라던 그 당시의 대외원조정책은 매우 불만족스러웠다. 즉 개발도상국 및 미국의 요구에 적합하지 않았다. 둘째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몰락은 “자신들의 국가안보에 재앙을 줄 뿐 아니라, 미국의 상대적 번영에 해로울 것이고, 양심에 가책을 느낄 만한 행동이다.” 셋째는, 1960년대가 산업화된 국가들은 그렇지 않은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주었다는 것이다. 대외경제원조 프로그램의 검토 및 평가를 받고 있는 오늘 날에도 Kennedy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은 되새겨 볼 만한 가치가 있다.

계속하여 당시 Kennedy 대통령의 언급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다. “현재의 프로그램으로는 어떤 대외원조정책도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다. 특히 가지각색의 프로그램들에서 말이다. 관료적으로 분산되었고(fragmented), 서투르고 불편하며(awkward) 느리다(slow). 무계획적이고 비논리적인 이 집행부는 최소한 4개의 부서와 몇몇 다른 기관들을 아우르고 있다. 현 정책은 다른 시기에 다른 목적을 위하여 고안된 일련의 입법적 조치들 그리고 행정적 절차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정책들 중 태반은 쓸모가 없고, 일관성이 없으며, 지나치게 엄격하고 그래서 현재 우리의 필요와 목적에 적합하지 못하다. 이러한 맹점은 국내외에서 우리의 노력에 대한 자신감을 약화시키기 시작하였다.”

“비록 우리의 원조프로그램이 경제적 공황과 붕괴를 피하는데 일조하였고, 많은 국가가 그들의 독립과 자유를 유지하는 것에 도움을 주었지만, 우리가 원조했던 많은 국가들이 이전에 비해 경제적 성장에 가까이 다가서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위기 상황을 극복해내기 위해, 또는 단기간의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의 보전과 독립을 유지하는 것을 돕는데 쓰인 자금이 피원조국이 경제적 안정에 도달하게 할 정도로 전달되지 못했다.”

Kennedy 대통령은 위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이 대외경제원조 프로그램을 계속하여 시행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의 의무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우리의 의무라 함은 자유국가들의 상호의존적인 공동체에서 현명한 지도자로서, 그리고 좋은 이웃으로써의 우리의 **도덕적 의무**. 우리의 경제적 성장을 도왔던 해외의 자본에 더 이상 의존적하지 않아도 되는 국가로서, 세계의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경제적 의무**. 자유의 적에 대응하는 유일하며 가장 거대한 대항자로서 우리의 **정치적 의무**를 말한다.”

“이러한 의무들을 수행해내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는 재앙과 다름없다.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켜볼 때 더 큰 손해이다. 널리 퍼져 있는 가난과 혼란은 모든 취약하고 불안정한 지역에 불가피하게 전체주의(totalitarianism)가 찾아오는 현상처럼 현재의 정치적 사회적 구조를 붕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안보 역시 위협에 처할 수 있고 번영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정치적 자유가 그것을 원하기에, 후진국에의 원조 정책은 계속되어야만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되었던 새로운 정책방향은 국가에 의한 국가 원조계획을 바탕으로 장기적 활동을 요구하는 발전에 대한 헌신이자, 다년간의 계획에 기반한 자원에 관한 책무이었다. 이 정책에서 개발의 새로운 초점은 발전하는 세계에서 공산주의와 같은 이념적 위협의 확산과 가난에서 기인한 불안정성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경제성장과 민주적 그리고 정치적인 안정을 달성하는 것에 맞춰졌다. “경제 발전단계”를 가장 명백한 “성장으로의 도약” 단계라 명명한 W.W.Rostow의 경제발전이론은 신설된 USAID의 개발계획 수립에 많은 전제를 제시해 주었다.

제 2 절 미국의 ODA 현황

1956년도만 해도 미국의 대외원조가 세계 ODA의 약 63%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다른 국가들의 ODA에 참가가 증가함으로 인해 미국의 원조규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져서 근년에는 대략 25%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2008년 23%). 최근에 국제사회의 ODA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09년 ODA 회원국의 총 ODA에 규모는 약 1200억 달러이고(<표 5> 참조), 국민순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 대비 ODA 비중은 평균 약 0.3%을 기록하고 있다(<표 2> 참조). 미국은 규모로 볼 때 최대의 ODA 공여국이다. 2009년 미국의 ODA 지원규모는 약 287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이전의 최대 규모는 2005년에 279.3억 달러 순지출, 2008년에는 260억 달러 순지출)하였다. 북유럽 3국(약 114억 달러)의 2.5배 이상이지만 GNI와 대비하면 0.20%로 OECD DAC 회원국 중에서 낮은 수준인 19위(총 평가대상국가 23개국)이었다(<표 3>, <표 4> 참조). 'ODA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3국은 GNI 대비 ODA 비중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다(2009년 약 1.03%)(<표 4> 참조). 미국은 역사적으로 GNI 대비 최고는 1963년 0.6%이었고 최소는 1997년에 0.09%이었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지원국이며 무상원조(grants) 비율도 높아 세계 제1위의 경제대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안보,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이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지원 대상국 중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이 2009년에 지원한 국가 중 아프리카의 7개국이 6개국을 차지하고 있다(<표 1> 참조).

2008년에 미국이 제공한 ODA 규모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에 가장 큰 규모인 57억 2천 4백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남부 및 중앙아시아에 35억 7천 8백만 달러를, 기타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에 9억 9천만 5백만 달러를,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 50억 8천 7백만 달러를, 유럽에 4억 2천 7백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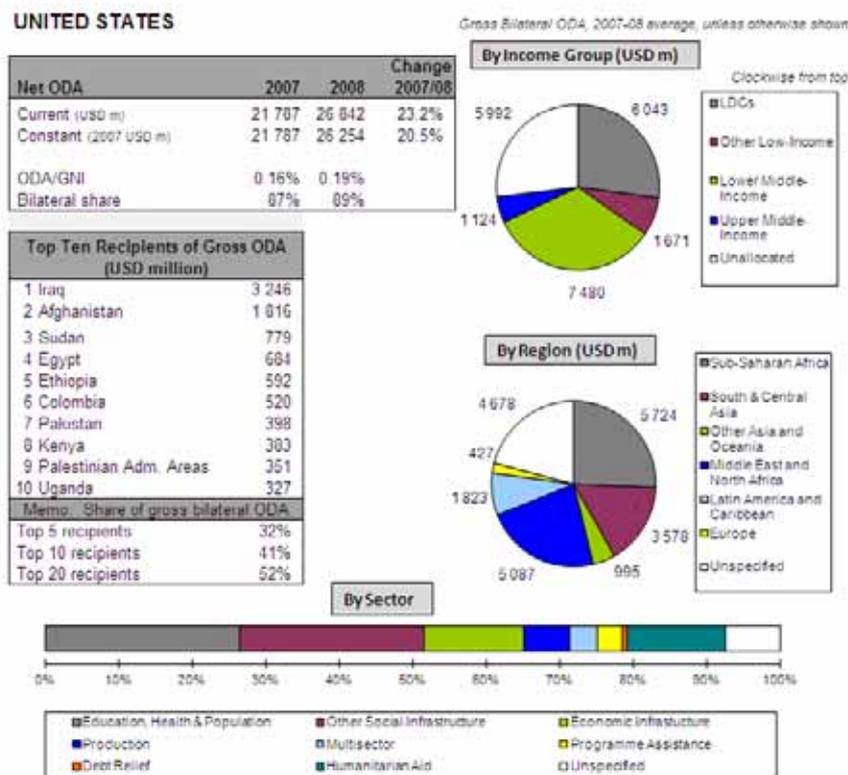
그리고 지원분야별로 보면, 교육, 보건 및 인구 분야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 사회 인프라 분야에 지원을 하였다. 이 두 분야 이외에도 경제 인프라 분야, 채무 경감, 인도적 지원 분야 등에도 지원을 하였다(<표 1> 하단 참조)

2008년에 lower-middle income countries에 대한 미국의 양자간 ODA는 74억 8천만 달러, low-income countries에 대한 양자간 ODA는 16억 7천 1백만 달러, 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해서는 60억 4천 3백만 달러이었다. upper-middle income countries에 대한 양자간 ODA 규모는 11억 2천 4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북유럽 3국은 경제규모 대비 세계 최고의 ODA 공여국 위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OECD DAC 통계에 따르면 2008년 북유럽 3국의 전체 ODA 규모는 약 114억 달러(GNI 대비 0.9%)로 유엔 권고 기준인 0.7%를 넘어선다. 북유럽 3국의 ODA는 국제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모델의 전파라는 명확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시작됐다. 이는 후진국의 빈곤 퇴치는 선진국의 의무이며, 결국 선진국의 장기적인 이해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2007년 기준으로 전체 지역 중 북유럽 3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비율이 38%에 달하는 등 지정학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빈곤지역에 대한 원조 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은 양자간(bilateral) 원조의 18%를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실행하고 자국 내 여러 단체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 NGO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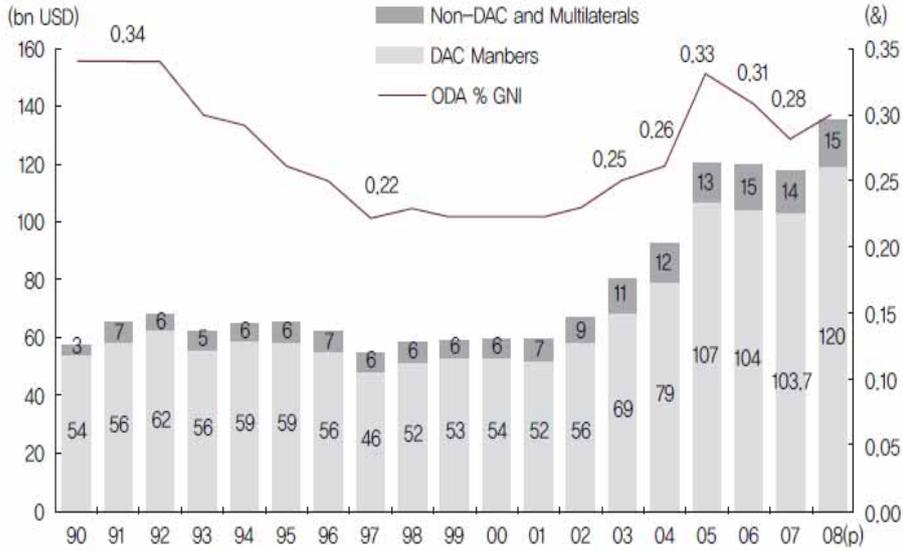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경제성장에 비하여 매우 낮다. 2009년에 지출한 ODA 규모는 8억 1천만 6백 달러이고 2008년 한국의 GNI 대비 ODA 규모는 0.10%로 원조 선진국인 북유럽 국가들의 9분의1 수준이며, DAC 회원국의 평균(0.3%)에도 한참 못 미치고 있는데, 총 평가대상국가 23개국 중 가장 낮은 23위에 해당한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16달러를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 지원한 셈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2009년 11월 DAC 가입시 2015년까지 ODA 규모를 국민소득대비 0.25%로 올린다는 목표치를 제시하였다.

<표 1> 미국 ODA의 전체적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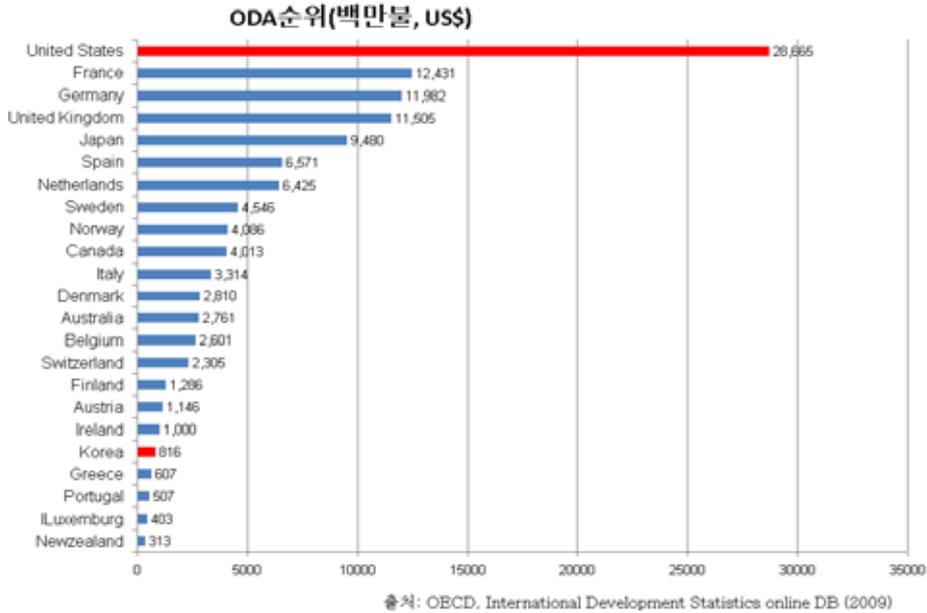


Source: OECD - DAC, www.oecd.org/dac/sta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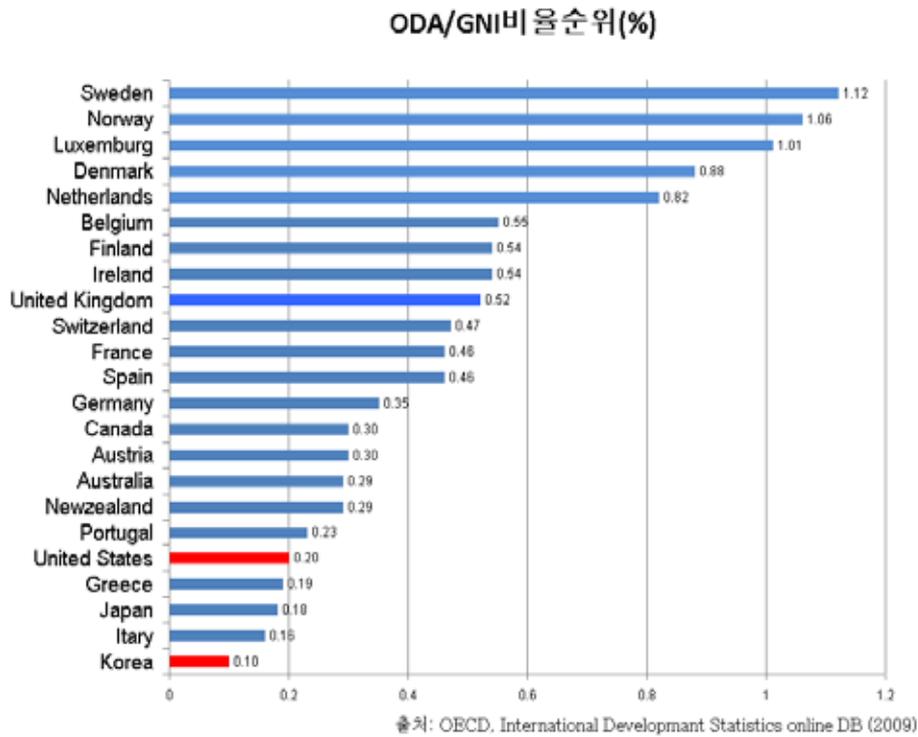
<표 2> 국제사회의 ODA 동향



<표 3> ODA 순위



<표 4> ODA/GNI 비율과 순위



<표 5> DAC 회원국의 ODA 현황

(단위: 백만불, %)

국가	2009			2008			2007			2006		
	ODA	ODA / GNI	1인당 ODA (단위:불)	ODA	ODA / GNI	1인당 ODA (단위:불)	ODA	ODA / GNI	1인당 ODA (단위:불)	ODA	ODA / GNI	1인당 ODA (단위:불)
호주	2,761	0.29	126	3,166	0.34	148	2,669	0.32	127	2,123	0.30	104
오스트리아	1,146	0.30	137	1,681	0.42	202	1,808	0.50	218	1,498	0.47	181

주요국의 ODA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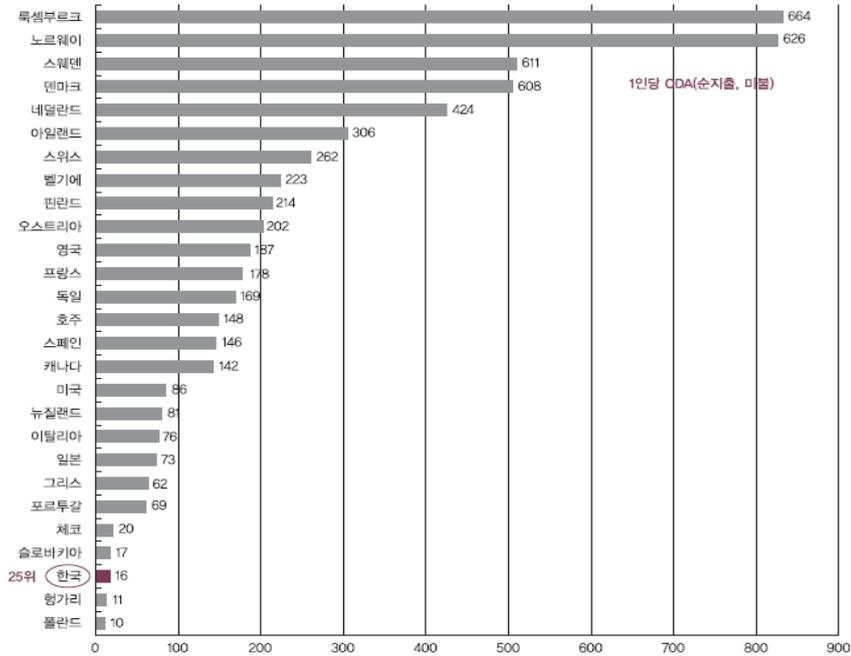
국가	2009			2008			2007			2006		
	ODA	ODA / GNI	1인당 ODA (단위불)	ODA	ODA / GNI	1인당 ODA (단위불)	ODA	ODA / GNI	1인당 ODA (단위불)	ODA	ODA / GNI	1인당 ODA (단위불)
벨기에	2,601	0.55	245	2,381	0.47	223	1,953	0.43	185	1,978	0.50	188
캐나다	4,013	0.30	119	4,725	0.32	142	4,080	0.29	123	3,684	0.29	113
덴마크	2,810	0.88	515	2,800	0.82	508	2,562	0.81	468	2,236	0.80	410
핀란드	1,286	0.54	241	1,139	0.43	214	981	0.39	185	834	0.40	159
프랑스	12,431	0.46		10,957	0.39	178	9,884	0.38	160	10,601	0.47	167
독일	11,982	0.35	162	13,910	0.38	169	12,291	0.37	149	10,435	0.36	127
그리스	607	0.19	54	693	0.20	62	501	0.16	45	424	0.17	38
아일랜드	1,000	0.54	224	1,325	0.58	305	1,192	0.55	275	1,022	0.54	241
이탈리아	3,314	0.16		4,444	0.20	75	3,971	0.19	67	3,641	0.20	62
일본	9,480	0.18	129	9,362	0.18	73	7,679	0.17	60	11,187	0.25	88
룩셈부르크	403	1.01	822	409	0.92	834	376	0.91	816	291	0.89	632
네덜란드	6,425	0.82	397	6,993	0.80	424	6,224	0.81	380	5,452	0.81	333
뉴질랜드	313	0.29	72	346	0.30	81	320	0.27	76	259	0.27	62
노르웨이	4,086	1.06	841	3,967	0.88	826	3,728	0.95	787	2,954	0.89	631
포르투갈	507	0.23	53	614	0.27	59	471	0.22	46	396	0.21	38
스페인	6,571	0.46	149	6,686	0.43	145	5,140	0.37	114	3,814	0.32	85
스웨덴	4,546	1.12	486	4,730	0.98	511	4,339	0.93	473	3,955	1.02	434
스위스	2,305	0.47	298	2,016	0.41	262	1,689	0.37	223	1,646	0.39	220
영국	11,505	0.52	192	11,409	0.43	187	9,849	0.36	163	12,459	0.51	207
미국	28,665	0.20	96	26,008	0.18	86	21,787	0.16	72	23,532	0.18	79
합계	119,573	0.31	160	119,759	0.30	134	103,491	0.28	116	104,421	0.31	118
한국	816	0.10	17	797	0.09	16	699	0.07	14	455	0.05	9

(자료: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

*2009년 1인당 ODA금액의 합계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제외한 금액임.

<표 5> 1인당 ODA 순위

• 1인당 ODA순위 (US달러)



1) DAC 회원 22개국 및 Non-DAC 7개국(한국,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체코, 터키, 폴란드, 헝가리) 총 29개국의 ODA순위
 - OECD 회원국 중 멕시코는 공여국이 아닌 수원대상국임.
 2) ODA 총액과 인구자료를 바탕으로 외교부 자체 계상
 3) 헝가리, 터키는 World Bank 인구 자료 활용하여 1인당 ODA 계상
 (자료: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 World Bank)

3 ODA

제 1 절 대외원조

I. 서 언

미국에는 현재 ODA만을 규율하는 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1961년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 of 1961, FAA)이 미국

의 대외원조 시행관련 제반 법적 요건(statutory requirement)을 포괄하고 있다. 대외원조법은 1961년 9월 4일 미국의회가 군사적 원조와 비군사적 원조를 구분하여 미국의 대외원조 프로그램을 재조직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이다. 따라서 대외원조법은 미국의 개발원조의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미국의 ODA의 법적 기반은 대외원조법이다. 이와 같이 미국은 대외원조 프로그램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광범위하고 상세한 법률을 두고 있다. 이 법은 거의 매년 수정되고 있다.

II. 대외원조법의 입법배경

2차 세계 대전의 종전 즈음, 유럽은 물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 유럽의 원조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국제사회는 1945년 12월 27일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the World Bank)을 설립하였고, 미국은 1948년 4월 2일 경제협력법(Economic Cooperation Act)의 제정을 통해 마셜 플랜(Marshall Plan)이라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이 상설적인 기관으로 설립됐던 것에 반해, 마셜 플랜은 특정한 몇 가지 목적을 위해 수립되었다. 즉 마셜 플랜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파괴된 유럽의 재건지원을 위한 비상 도구로써 유럽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졌다. 그러나 황폐된 유럽지역의 회생을 목표로 했던 마셜 플랜은 그렇게 성공적이지도 않았고 지지를 받지 못했다. 즉 마셜 플랜 시기부터 전개된 대외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이 배경이 되어 1961년 미국은 대외원조프로그램을 재조직하였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대외원조법을 제정하였다.

새롭게 출범한 Kennedy 정부는 대외원조문제를 최우선과제로 재편하고 당시 지적되었던 원조구조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외원조

법을 제정한 것이다. 당시 미국의 대외원조 프로그램이 경제공황과 경제붕괴를 이겨내는데 도움을 주고, 많은 국가들이 독립하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이들 국가들이 이전에 비해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장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위기상황을 극복해내기 위해 또는 단기적인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된 자금이 피원조국의 경제적 안정을 이끌지도 못했다는 반성에서 제정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종합해보면, 1961년 대외원조법은 기존의 대외원조정책이 가지고 있던 구조적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가에 의한 대외원조계획의 수립을 가능하게 하고 장기적 개발 계획 메카니즘을 발전시켜나가고자 제정한 법이라고 볼 수 있다.

1961년 법제화된 대외원조법은 어떻게 원조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하여 제약이 거의 없고, 단지 원조 제공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예를 들면, 피원조국이 효과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조치의 정도 등)에 관한 일반적 규정들만을 포함하고 있었다.

1961년에 제정된 대외원조법은 Kennedy 대통령의 전송 메시지(transmittal message)에 표현된 경제적·정치적 원칙들을 담은 비교적 간단한 문서이다. 이에 따르면, 개발원조는 다음의 주요한 두 가지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경제적 자원을 개발하고 생산역량을 증대하기”(즉, 많은 양의 주요 기반시설) 위한 계획과 정책을 고조시키는 것이 목적인 개발차관기금(DLF)이고, 둘째는 후진국들에 대한 “기술적 협력과 개발 등과 같은 수단을 통해 인적자원 개발을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춘 개발증여기금(Development Grant Fund)이다.

또한 대외원조법에는 세 가지 다른 중요한 경제원조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었다. 첫째는, 미국이 해외사업을 하면서 마주할 특정 위험들로부터의 사업의 보호권을 제공하는 보증정책(지금의 해외민간투자공사(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OPIC))이다. 둘째는, 경제

적 또는 정치적 안정을 촉진하거나 도움을 주는 “지원 원조” 정책(지급의 경제지원기금(Economic Support Fund) 정책)이다. 셋째는, 적절한 긴급자금(contingency fund)이다.

Ⅲ. 1960년대 이후의 대외원조법의 개선 노력

1970년대 초반 대외원조는 1971년에 상원이 회계연도 1972년과 1973년도 자금을 승인하는 대외원조에 관한 의안을 반대하면서 입법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1971년에 상원에 의한 의안의 파기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마샬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명맥을 이어온 대외원조에 의회가 처음으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의미했다. 몇 가지 문제들이 합쳐져 의안 파기의 원인이 되었는데, 첫째는 베트남전에 대한 반대. 둘째는, 원조가 너무 단기적인 군사적 고려에 국한되어 있다는 우려. 셋째는, 원조 특히 개발원조가 미국의 대외정책에서의 이렇다 할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우려 등이었다.

대외원조정책, 특히 경제원조정책의 개선을 위한 시도는 외교위원회(Hous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가 주도하였다. 개발도상국들의 가장 빈곤한 부문(“인간의 기본적 요구”)에 대한 원조가 정책개선 주요한 현안이 되었다. 원조가 피원조국 주민들에게까지 직접적으로 미치게 하기 위해서 의회는 기술원조 공여와 개발차관과 같은 기존의 항목들을 농업, 가족계획, 교육과 같은 특정한 문제에 목적을 둔 새로운 항목들로 대체했다. 양자간(bilateral) 개발원조의 목적은 개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의 자금 및 우수한 재화의 이전 또는 기반시설에 대한 자금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미국의 기술적인 전문지식과 상품을 나누는 데 집중하는 것이었다. 대외원조법의 구조는 아직도 대체로 이러한 1973년 개정안의 기초를 따라가고 있다.

1961년 대외원조법 제정 당시 Kennedy 대통령에 의해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대외원조의 관리구조를 재조직하기 위해 1978년 Hubert Humphrey 상원 의원의 요구에 기초한 입법안이 소개되었다. Humphrey의 법안에 의하면, USAID에 의해 운영되는 양자간 프로그램, 당시 재무부에 의해 권한 내에서 운영되던 국제대출제도의 다자간 프로그램, 당시 국무부에 의해 운영되던 UN 기관들에 대한 자발적 기여, USAID에 의해 운영되던 식량 프로그램, 그리고 해외 민간투자공사(OPIC)의 활동 등과 같은 대외원조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청(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IDCA)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또한 IDCA 조직 내에, 사적이며 자발적인 조직들과 평화봉사단(Peace Corps)에 존재하는 기관을 관리하기 위해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Institute)를 조직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Humphrey의 법안은 법제화되지는 못했다. 행정부서와 의회의 관료적 분위기가 대외원조법에 포함된 정치적 요소들을 변화시키고 전반적인 행정적 변화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의 법적 영향을 제한하는 장애로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1979년 9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의하여 IDCA는 설립되었다. 그 당시 대외원조법상의 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은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무장관에게 있었다. IDCA의 설립은 이러한 구조를 바꿔놓았다. IDCA의 설립과 함께, 대외원조법상의 권한은 경제적 원조 제공을 담당하는 IDCA 청장에게 위임되었고, 또 그 권한의 대부분은 USAID 청장에게 재위임되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안보원조에 관한 권한은 국무장관에게 위임되었다. 경제지원기금(Economic Support Fund, ESF)이 개발정책과 안보정책이 만나는 접점이었고, 이는 국무장관에게 ESF의 원조를 받는 국가와 그 원조규모를 알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USAID청장에게 ESF 정책을 수행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일부 효과를 더하기 위해 대통령은 IDCA 청장에게 특정 경제원조기능을 위임하는 내용의 ‘재조직 계획’(Reorganization Plan No.2)을 제출한 바가 있다.

IDCA는 관대하고 자선적인 활동을 위하여 Humphrey 상원 위원과 Carter 대통령이 그렸던 조직 체계를 따르지 않았다. 오직 75명 이하의 구성원을 가진 USAID만이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실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75명 이하의 직원으로 양자간 그리고 다자간 원조 정책에서 실효적 영향을 나타내기 역부족이었다. 더욱이 Reagan 행정부에서 IDCA에 인원을 배치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IDCA는 빠르게 쇠락해갔다. 대외원조의 집행에서 권한의 한계를 정의하는 과정에서도 IDCA를 설립하게 했던 행정명령은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했다. IDCA가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일부 다른 조정 기능들이 (하지만 행정명령에는 포함되지 않은) USAID에 의해서 처음으로 수행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기능들도 역시 작동하지 않았다.

IDCA가 설립되던 당시에 Carter대통령은 또한 개발조정위원회(Development Coordination Committee, DCC)를 설립하였다. 소집단들(예를 들면, 다자적 원조, 식량원조 등)로 구성된 DCC는 모든 대외원조활동들을 컨센서스에 바탕을 두고 기관들 사이의 조정 역할에 그 목표를 두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 역시 실패하였다. DCC는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DCC 내부의 오직 두 개의 소위원회만이 기능하는데 그쳤다. 오늘날 이는 대외원조법상 시행되지 않는 하나의 조항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1988년 말 외교위원회(Hous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HFAC)는 일상적인 대외원조정책뿐만 아니라 특별히 대외원조법의 지속적인 적

합성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수많은 의회 외부의 이익단체들이 비슷한 검토를 시작했다. 외교위원회의 검토 결과는 특정한 조사결과와 권고사항을 포함한 하나의 보고서(이른바 “Hamilton-Gilman 보고서”)로 발표되었다. 그 보고서에는 약 30년 전에 있었던 Kennedy 대통령의 제1차 대외원조법에 대한 전송 메시지(transmittal message)와 상당히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그 주요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대외원조는 미국의 안보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유용한 정책 도구이다.
- 국가들의 상호관계와 상호의존성은 미국이 좋은 나쁜 세계 다른 국가들의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인 영향을 받고 그리고 국제적인 의제를 좌지우지하는 경제적 사건들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하지만 대외원조정책들이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는 미국의 대중적 지지는 아직 강하게 남아있지만, 대중들은 현재의 정책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그리고 대중들은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대외정책 수단으로써의 원조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 대외원조에 관한 입법과 행정부가 정책의 효율성을 저해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의 가치에 대하여 대중들의 이해를 도와야 한다. 대외원조법에는 너무나도 많은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방향으로의 원조가 불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기도 힘들다.”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너무 많은 분야에 자금 책정, 보고 요구 및 “어떻게 원조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 보다는 그저 어떻게 원조가 사용될 것인가에 대한”예측에 더 초점을 두는 행정부서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원조정책이 너무 많은 국가에 너무 많은 계획으로 제공되고 있다. 미국의

경제정책, 안보정책, 개발정책이 거의 조정되고 있지 않다. DCC는 양질의 기능을 수행해내지 못하고 주로 의례적인 목적을 위해 존재하고 있었고, IDCA는 “유명무실”하였다. NGOs는 그 동안 대외원조 과정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었고, 그들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하였다.

Hamilton-Gilman보고서의 주요한 권고사항은 대외원조법을 폐지하고, 이 보다 대외원조에 더 초점을 맞춘 법으로 새롭게 출발하자는 것이었다. 보고서의 내용대로 수정하기 위해 위원회가 작성한 초안은 미국의 대외원조 정책의 경제원조의 목적에 초점을 두고, 경제 성장, 빈곤 완화, 환경적 지속가능성 및 정치적 다원성의 증진 등과 같은 주요 경제원조 관련 주제를 담고 있었다. 이 법안은 또한 의회 보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책 평가에서 더욱 능동적인 역할을 하도록 장려함으로써 더욱 성과 지향적 접근방법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양한 해외 사업을 하는 미국의 많은 기관들 사이에 대외원조활동의 더 나은 조정을 도모하고 정책집행의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권한(당시의 법률의 개선이었지만 당연히 1961년의 대외원조법 보다는 유연성이 떨어지는)이 법안 초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 입법 초안은 행정부서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면밀히 검토되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Fascell 의장과 Hamilton 의원은 이 법안을 위원회의 의원들에게 납득시키지 못했다. 이와 같이 이 법안의 수정 노력은 불발에 그쳤지만 그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고 있다.

대외원조법을 개정하기 위한 그 다음해의 시도도 실패한 반면에 1991년에는 더욱 신중하게 개정 시도가 시작되었다. 1991년 4월 Bush 행정부는 대외원조법의 광범위한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대외원조정책의 입법적 기본 틀을 1961년 대외원조법의 출범 당시와 비슷할 정도로 되돌려 놓으려 했다. 하지만 의회의 일부 위원회

는 행정부에게 너무 많은 자유재량을 부여한다고 하여 이를 비판했고, 결국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외교위원회는 이전의 노력들과 원래의 법안이 가지던 유연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행정부의 생각을 양보하는 행정부의 법안에서 제안되었던 계획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대외원조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행정부에 적극적으로 원래의 법안이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의 “유연성 증대 항목”(예를 들면, 자금 운용과 법조항의 면제를 가능케 하는 더 큰 권한, 원조조항을 제한하는 많은 규정들의 축소 등)을 포함하는 법안을 상원 외교관계위원회(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와 다른 관련된 현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대외원조법의 전체적인 재구성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서 이유(예를 들면, 낙태 관련 조항, 해상 무역 보조금 확대 등)로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한 번 통과되었다가 다시 거부당한 이 법안은 조항에 대한 반대 없이 재통과되어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릴 수 있는 상태가 되길 기대하였다. 그러나 회의보고서는 비록 상원에서 통과되었지만 하원에서 무산되었다. 그 이유는 아주 많았지만 그 중에 직접적인 원인은 당시 미국의 하원의 투표시에 경제적 상황이 좋은 점이다.

그 후에 이어서 Clinton 정부가 대외원조법을 개정하는 쪽의 손을 들어주었다. 1994년 기존의 대외원조법을 폐지하고 대외원조정책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대체한 ‘자유와 번영 그리고 민주주의 법’(Peace, Prosperity, and Democracy Act, PPDA)이 제출되었다. 정책의 목적에 기초해서 그 권한 부여는 이전의 분리되어 있던 정책들을 하나의 동일한 계정(same account)으로 통합하였다. 이에 따라 개발원조와 개발에 초점을 맞춘 국제조직들은 동일한 계정(same account)에서 지원을

받게 되었다. 원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입법적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상당한 유연성이 제공되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상원에서 전혀 제출되지도 않았고, 의회에서 위원회 밖으로 보고되지도 않았다. 이후 추가적인 대외원조법의 개정 노력은 시도되지 않았다.

미국 개발협력사업의 진전을 위한 유일한 입법은 1961년 대외원조법이다. 물론 그 이후로 정기적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후에 원조에 대한 정치 이론적 근거의 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개발에 관한 새로운 입법을 위한 지난 45년간의 노력은 결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IV. 대외원조법의 주요내용

대외원조법은 대외원조에 관하여 방대하고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공법(Public Law 87-195)은 대외원조법에 해당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대외 관계에 관한 입법

(Legislation on Foreign Relations)

A. FOREIGN ASSISTANCE

1. Foreign Assistance and Arms Export Acts

a. The Foreign Assistance Act of 1961, as Amended (Public Law 87 - 195)

Part I

Chapter 1—Policy; Development Assistance Authorizations

Section 101—General Policy

Section 102—Development Assistance Policy

- Section 103—Agriculture, Rural Development, and Nutrition .
- Section 103A—Agricultural Research
- Section 104—Population and Health
- Section 104A—Assistance to Combat HIV/AIDS
- Section 104B—Assistance to Combat Tuberculosis
- Section 104C—Assistance to Combat Malaria
- Section 105—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Section 106—Energy, Private Voluntary Organizations, and Selected
Development Activities
- Section 107—Appropriate Technology
- Section 108—Micro-enterprise Development Credits
- Section 109—Transfer of Funds
- Section 110—Cost-Sharing and Funding Limits
- Section 111—Development and Use of Cooperatives
- Section 113—Integrating Women Into National Economies
- Section 116—Human Rights
- Section 117—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 Section 118—Tropical Forests
- Section 119—Endangered Species
- Section 120—Sahel Development Program—Planning
- Section 122—General Authorities
- Section 123—Private and Voluntary Organizations and Cooperatives
in Overseas Development
- Section 124—Relatively Least Developed Countries
- Section 125—Project and Program Evaluation
- Section 126—Development and Illicit Narcotics Production
- Section 127—Accelerated Loan Repayments
- Section 128—Targeted Assistance

Section 129—Program to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to Foreign Governments and Foreign Central Banks of Developing or Transitional Countries

Section 130—Assistance for Victims of Torture

Section 131—Microenterprise Development Grant Assistance

Section 132—United States Microfinance Loan Facility

Section 133—Programs to Encourage Good Governance

Section 134—Assistance to Foreign Countries to Meet Minimum Standards for the Elimination of Trafficking

Chapter 2—Other Programs.

Title I —Multilateral and Regional Development Programs

Section 206—Regional Development in Africa

Section 209—Multilateral and Regional Programs

Title II —American Schools and Hospitals Abroad; Prototype Desalting Plant

Section 214—American Schools and Hospitals Abroad

Section 219—Prototype Desalting Plant

Title III —Housing and Other Credit Guaranty Programs

Section 221—Housing Guaranties

Section 222—Authorization

Section 222A—Agricultural and Productive Credit and Self-Help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s

Section 223—General Provisions

Section 224—Trade Credit Insurance Program for Central America

Section 225—Trade Credit Insurance Program for Poland

Section 226—Loan Guarantees to Israel Program

Title IV —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Section 231—Creation, Purpose and Policy

Section 231A—Additional Requirements .

- Section 232—Capital of the Corporation .
- Section 233—Organization and Management
- Section 234—Investment Insurance and Other Programs
- Section 234A—Enhancing Private Political Risk Insurance Industry
- Section 235—Issuing Authority, Direct Investment Authority and Reserves
- Section 236—Income and Revenues
- Section 237—General Provisions Relating to Insurance Guaranty,
and Financing Program
- Section 238—Definitions
- Section 239—General Provisions and Powers
- Section 240—Small Business Development
- Section 240A—Reports to the Congress
- Section 240B—Prohibition on Noncompetitive Awarding of Insurance Contracts
on OPIC Supported Exports

Title V—Disadvantaged Children in Asia

- Section 241—Assistance to Certain Disadvantaged Children in Asia

Title IX—Utilization of Democratic Institutions in Development

- Section 281—Utilization of Democratic Institutions in Development

Title XII—Famine Prevention and Freedom From Hunger

- Section 296—General Provisions
- Section 297—General Authority
- Section 298—Board for International Food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 Section 299—Authorization
- Section 300—Annual Report

Chapter 3 —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Programs

- Section 301—General Authority
- Section 302—Authorization
- Section 303—Indus Basin Development
- Section 305—Integration of Women

Section 306—Reports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ection 307—Withholding of United States Proportionate Share for Certain
Program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hapter 5 — Contingencies

Section 451—Contingencies

Chapter 6—Central America Democracy, Peace, and Development Initiative

Section 461—Statement of Policy

Section 462—Conditions on Furnishing Assistance

Section 463—Peace Process in Central America

Section 464—Economic Assistance Coordination

Section 465—Authorization for Fiscal Years 1988 and 1989

Section 466—Definitions

Chapter 7 — Debt-For-Nature Exchanges

Section 461—Definition

Section 462—Assistance for Commercial Debt Exchanges

Section 463—Eligible Projects

Section 464—Eligible Countries

Section 465—Terms and Conditions

Section 466—Pilot Program for Sub-Saharan Africa

Chapter 8 —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Section 481—Policy, General Authorities, Coordination, Foreign Police
Actions, Definitions, and Other Provisions

Section 482—Authorization

Section 483—Prohibition on Use of Foreign Assistance for Reimbursements
for Drug Crop Eradications

Section 484—Requirements Relating to Aircraft and Other Equipment

Section 485—Records of Aircraft Use

Section 486—Reallocation of Funds Withheld from Countries Which Fail to
Take Adequate Steps to Halt Illicit Drug Production or
Trafficking

Section 487—Prohibition on Assistance to Drug Traffickers

Section 488—Limitations on Acquisition of Real Property and
Construction of Facilities

Section 489—Reporting Requirements

Section 490—Annual Certification Procedures

Chapter 9 — International Disaster Assistance

Section 491—Policy and General Authority

Section 492—Authorization

Section 493—Disaster Assistance—Coordination

Section 494—Disaster Relief Assistance

Section 495—Cyprus Relief and Rehabilitation

Section 495B—Italy Relief and Rehabilitation

Section 495C—Lebanon Relief and Rehabilitation

Section 495D—Romanian Relief and Rehabilitation

Section 495E—Turkey Relief, Rehabilitation, and Reconstruction

Section 495F—African Rehabilitation and Resettlement

Section 495G—Special Caribbean Hurricane Relief Assistance

Section 495H—Cambodian Disaster Relief Assistance

Section 495I—Assistance for Displaced Persons in Central America

Section 495J—Lebanon Emergency Relief, Rehabilitation,
and Reconstruction Assistance

Section 495K—African Famine Assistance

Chapter 10 — Development Fund for Africa

Section 496—Long-Term Development Assistance for Sub-Saharan Africa

Section 497—Authorizations of Appropriations for the Development Fund for
Africa

Chapter 11 —Support for the Economic and Democratic Development of the
Independent States of the Former Soviet Union

Section 498—Assistance for the Independent States

Section 498A—Criteria for Assistance to Governments of the Independent States

Section 498B—Authorities Relating to Assistance and Other Provisions

Section 498C—Authorization of Appropriations

Chapter 12—Support for the Economic and Political Independence of the Countries
of the South Caucasus and Central Asia

Section 499—United States Assistance to Promote Reconciliation and
Recovery
from Regional Conflicts

Section 499A—Economic Assistance

Section 499B—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Section 499C—Border Control Assistance

Section 499D—Strengthening Democracy, Tolerance, and the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Section 499E—Administrative Authorities

Section 499F—Definitions

Part II

Chapter 1—Policy

Section 501—Statement of Policy

Section 502—Utilization of Defense Articles and Services

Section 502B—Human Rights

Chapter 2—Military Assistance

Section 503—General Authority

Section 504—Authorization

Section 505—Conditions of Eligibility

Section 506—Special Authority

Section 511—Considerations in Furnishing Military Assistance

Section 514—Stockpiling of Defense Articles for Foreign Countries

Section 515—Overseas Management of Assistance and Sales Programs

Section 516—Authority to Transfer Excess Defense Articles

Section 517—Designation of Major Non-NATO Allies

Chapter 3—Foreign Military Sales

Section 524—Reimbursements

Chapter 4—Economic Support Fund

Section 531—Authority

Section 532—Authorizations of Appropriations

Section 533—Emergency Assistance

Section 534—Administration of Justice

Chapter 5—International Military Education and Training

Section 541—General Authority

Section 542—Authorization

Section 543—Purposes

Section 544—Exchange Training

Section 545—Training in Maritime Skills

Section 546—Prohibition on Grant Assistance for Certain High Income
Foreign Countries.

Section 547—Consultation Requirement

Section 548—Records Regarding Foreign Participants

Section 549—Human Rights Report

Chapter 6—Peacekeeping Operations

Section 551—General Authority

Section 552—Authorization of Appropriations

Section 553—Administrative Authorities

Section 554—Data on Costs Incurred in Support of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Chapter 7—Air Base Construction in Israel

Section 561—General Authority .

Section 562—Authorization and Utilization of Funds

Section 563—Waiver Authorities

Chapter 8—Antiterrorism Assistance

Section 571—General Authority

Section 572—Purposes

Section 573—Limitations

Section 574—Authorizations of Appropriations

Section 575—Administrative Authorities .

Chapter 9—Nonproliferation and Export Control Assistance

Section 581—Purposes

Section 582—Authorization of Assistance

Section 583—Transit Interdiction

Section 584—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Export Control Training

Section 585—Limitations

Section 586—Authorization of Appropriations

Part III

Chapter 1—General Provisions

Section 601—Encouragement of Free Enterprise and Private Participation

Section 602—Small Business 2

- Section 603—Shipping on United States Vessels
 - Section 604—Procurement
 - Section 605—Retention and Use of Certain Items and Funds
 - Section 606—Patents and Technical Information
 - Section 607—Furnishing of Services and Commodities
 - Section 608—Advance Acquisition of Property
 - Section 610—Transfer Between Accounts
 - Section 611—Completion of Plans and Cost Estimates
 - Section 612—Use of Foreign Currencies
 - Section 613—Accounting, Valuation, Reporting, and Administration of
Foreign Currencies
 - Section 614—Special Authorities
 - Section 615—Contract Authority
 - Section 616—Availability of Funds
 - Section 617—Termination of Assistance
 - Section 620—Prohibitions Against Furnishing Assistance
 - Section 620A—Prohibition on Assistance to Governments Supporting
International Terrorism
 - Section 620C—United States Policy Regarding the Eastern Mediterranean
 - Section 620D—Prohibition on Assistance to Afghanistan
 - Section 620E—Assistance to Pakistan
 - Section 620F—Nuclear Non-Proliferation Policy in South Asia
 - Section 620G—Prohibition on Assistance to Countries That Aid Terrorist States
 - Section 620G—Depleted Uranium Ammunition
 - Section 620H—Prohibition on Assistance to Countries That Provide Military
Equipment to Terrorist States
 - Section 620I—Prohibition on Assistance to Countries That Restrict United
States Humanitarian Assistance
- Chapter 2—Administrative Provisions
- Section 621—Exercise of Functions

- Section 621A—Strengthened Management Practices
- Section 622—Coordination With Foreign Policy
- Section 623—The Secretary of Defense
- Section 624—Statutory Officers
- Section 625—Employment of Personnel
- Section 626—Experts, Consultants, and Retired Officers
- Section 627—Detail of Personnel to Foreign Governments
- Section 628—Detail of Personnel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Section 629—Status of Personnel Detailed
- Section 630—Terms of Detail or Assignment
- Section 631—Missions and Staffs Abroad
- Section 632—Allocation and Reimbursement Among Agencies
- Section 633—Waivers of Certain Laws
- Section 633A—Furnishing Information
- Section 634—Annual Report
- Section 634A—Notification of Program Changes
- Section 634B—Classification of Reports
- Section 635—General Authorities
- Section 636—Provisions on Uses of Funds
- Section 637—Administrative Expenses
- Section 638—Exclusions
- Section 640A—False Claims and Ineligible Commodities
- Section 640B—Coordination
- Section 640C—Shipping Differential

Chapter 3—Miscellaneous Provisions

- Section 641—Effective Date and Identification of Programs
- Section 642—Statutes Repealed
- Section 643—Saving Provisions
- Section 644—Definitions

- Section 645—Unexpended Balances
- Section 646—Construction
- Section 647—Dependable Fuel Supply
- Section 648—Special Authorization for Use of Foreign Currencies
- Section 650—Use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 Section 652—Limitation Upon Exercise of Special Authorities
- Section 653—Change in Allocation of Foreign Assistance
- Section 654—Presidential Findings and Determinations
- Section 655—Annual Military Assistance Report
- Section 656—Annual Foreign Military Training Report
- Section 660—Prohibiting Police Training
- Section 661—Trade and Development Agency
- Section 663—Exchanges of Certain Materials
- Section 666—Discrimination Against United States Personnel
- Section 667—Operating Expenses

Part IV Enterprise for the Americas Initiative

- Section 701—Purpose
- Section 702—Definitions
- Section 703—Eligibility for Benefits
- Section 704—Reduction of Certain Debt
- Section 705—Repayment of Principal
- Section 706—Interest on New Obligations
- Section 707—Enterprise for the Americas Funds
- Section 708—Americas Framework Agreements
- Section 709—Enterprise for the Americas Board
- Section 710—Annual Reports to the Congress

Part V Debt Reduction for Developing Countries with Tropical Forests

- Section 801—Short Title

- Section 802—Findings and Purposes
- Section 803—Definitions
- Section 804—Establishment of the Facility .
- Section 805—Eligibility for Benefits
- Section 806—Reduction of Debt Owed to the United States As a Result of
Concessional Loans Under the Foreign Assistance Act of 1961
- Section 807—Reduction of Debt Owed to the United States As a Result of
Credit Extended Under Title I of the Agricultural Trade
Development and Assistance Act of 1954
- Section 808—Authority to Engage in Debt-for-Nature Swaps and Debt Buy
backs
- Section 809—Tropical Forest Agreement
- Section 810—Tropical Forest Fund
- Section 811—Board
- Section 812—Consultations with the Congress
- Section 813—Annual Reports to the Congress

b. Arms Export Control Act (Public Law 90 - 629)

제 2 절 미국의 ODA 시행 조직

I. 서 언

DAC회원국들의 ODA 실시기관은 각 나라마다 조직 및 운영 면에서 상이하다. 원조이념 및 철학, 역사, 조직 및 정책적 특성상 다양한 운영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DAC 회원국은 독립적인 원조전담기관을 두고 종합적인 對개발도상국 원조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ODA 지원형태와 방식이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어 선진 각국들은 對개발도상국 원조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용을 위해 정부 산

하에 원조 전담기관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제반 대외원조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형태별로 전문인력과 기관을 두고 원조정책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반면에 자금협력별로 실시기관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도 존재한다.

원조전담기관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우선 미국을 들 수 있다. 미국은 국무부 산하에 국제개발청(USAID)을 두고 제반 원조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캐나다도 외무부 산하에 각기 국제개발청(CIDA)을 두고 제반 원조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독일의 경우 대외경제협력을 전담하는 경제협력개발부(BMZ)를 설치하여 원조정책의 기획, 입안, 결정을 총괄하는 전담부처형 운용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영국은 1997년 5월 노동당 정권이 출범하여 기존의 외무부 산하 해외개발청(ODA)을 국제개발부(DID)로 승격하여 원조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외교관계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무부 산하에 원조전담기관을 두고 있는 국가와는 달리 일본과 한국은 정책결정단계에서 관계부처간 협의에 의해 조정되는 분권형 원조실시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노르웨이 개발협력청, 덴마크 국제개발청,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등 1960년대부터 이미 외교부 또는 부서 내 별도 조직이 ODA 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등 정부가 원조정책의 시행을 주도함으로써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평가다.

<표 6> 주요 DAC 회원국 개발원조 담당 기관

국가	ODA 주무부처 (전담 또는 총괄)	주된 시행기관
호주	외교부	AusAID
오스트리아	외교부	ADA(외교부 유관)

주요국의 ODA법제

국가	ODA 주무부처 (전담 또는 총괄)	주된 시행기관
벨기에	외교통상개발협력부 (개발협력장관)	BTC(외교부 유관)
캐나다	국제협력부	CIDA
덴마크	외교부	외교부내 South Group
핀란드	외교부(개발협력장관)	외교부
프랑스	외교부, 경제부	AFD
독일	경제협력개발부	경제협력개발부(BMZ)
그리스	외교부	외교부내 Hellenic Aid
아일랜드	외교부(개발협력장관)	외교부내 개발협력국
이태리	외교부	외교부내 개발협력국
일본	외무성	JICA(외교부 유관)
룩셈부르크	외교부(개발협력장관)	LUX-Development (외교부 유관)
네덜란드	외교부(개발협력장관)	외교부내 국제협력실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NZAID(외교부 산하)
노르웨이	외교부(국제개발협력장관)	외교부(NORAD)
포르투갈	외무부	IPAD
스페인	외교부	AEIC(외교부 산하)
스웨덴	외교부(국제개발협력장관)	SIDA
스위스	외교부	SDC(외교부 산하)
영국	국제개발부	국제개발부
미국	국무부	USAID
한국	외교부(무상),	KOICA, 수출입은행 등

국가	ODA 주무부처 (전담 또는 총괄)	주된 시행기관
	재경부*(유상)	

<자료: Managing Aid, 2005, OECD>

* 재경부는 2008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지식경제부로 명칭이 변경됨

II. 미국의 ODA 기관

미국은 1961년 대외원조법을 제정하고 개발원조업무를 담당할 조직을 설립함으로써 일찍부터 체계적으로 ODA를 실시해 오고 있다. 미국의 ODA 주무부처는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이지만 ODA 시행기관은 국제개발청(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이다. 그러나 현재 이들 두 기관만 ODA에 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양자간 그리고/또는 다자간의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는 정부 기관은 26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정부 기관들은 ODA와 관련하여 서로 느슨하게 관계를 맺고 있으며, 때론 활동이 서로 중복되기도 하고, 가끔은 다른 위임사항을 가질 때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ODA 사업의 통합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개발협력 사업에서 통합된 체계가 부재하다는 것은 기관들끼리 연결이 잘 되어있지 않거나와 정기적인 의사소통조차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기관의 다양성을 통해 각각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체계의 특성을 근거로 각 기관의 상대적인 장점을 들어 계속 이런 분열 상태가 정당화 되어왔다. 개발협력 사업의 정치적 우선순위가 더 높아진 이후로 미국 내에서는 최근 논란이 더 많아졌는데 이런 분열상태의 단점은 비효율적인 체계라는 점과 성과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들 26개 정부 기관 중에서 개발협력 사업은 주로 6개 기관, 즉

USAID,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농림부, 새천년도전협회(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MCC)등이 관여하고 있다. 2005년에는 미국의 ODA의 90% 이상을 이 기관들이 관리하였고 조직 활동의 중점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 USAID, 국무부, MCC를 제외하면 국방부, 재무부, 농림부 등이 2005년에 가장 두드러졌다. 이들 기관 이외에 다른 부서는 미국 개발협력사업의 추가적인 관여 양상을 보이었고, 보통은 이 사업만을 위한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직원이 별도로 많지 않다. 특이할 만한 점은 2005년에 국방부에서 큰 규모의 정부개발원조 관리 역할을 맡은 것인데 이것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대규모 재건 사업에 미국이 개입되어 있었고 인도양 쓰나미 이후 큰 규모의 인도주의적 구제가 실행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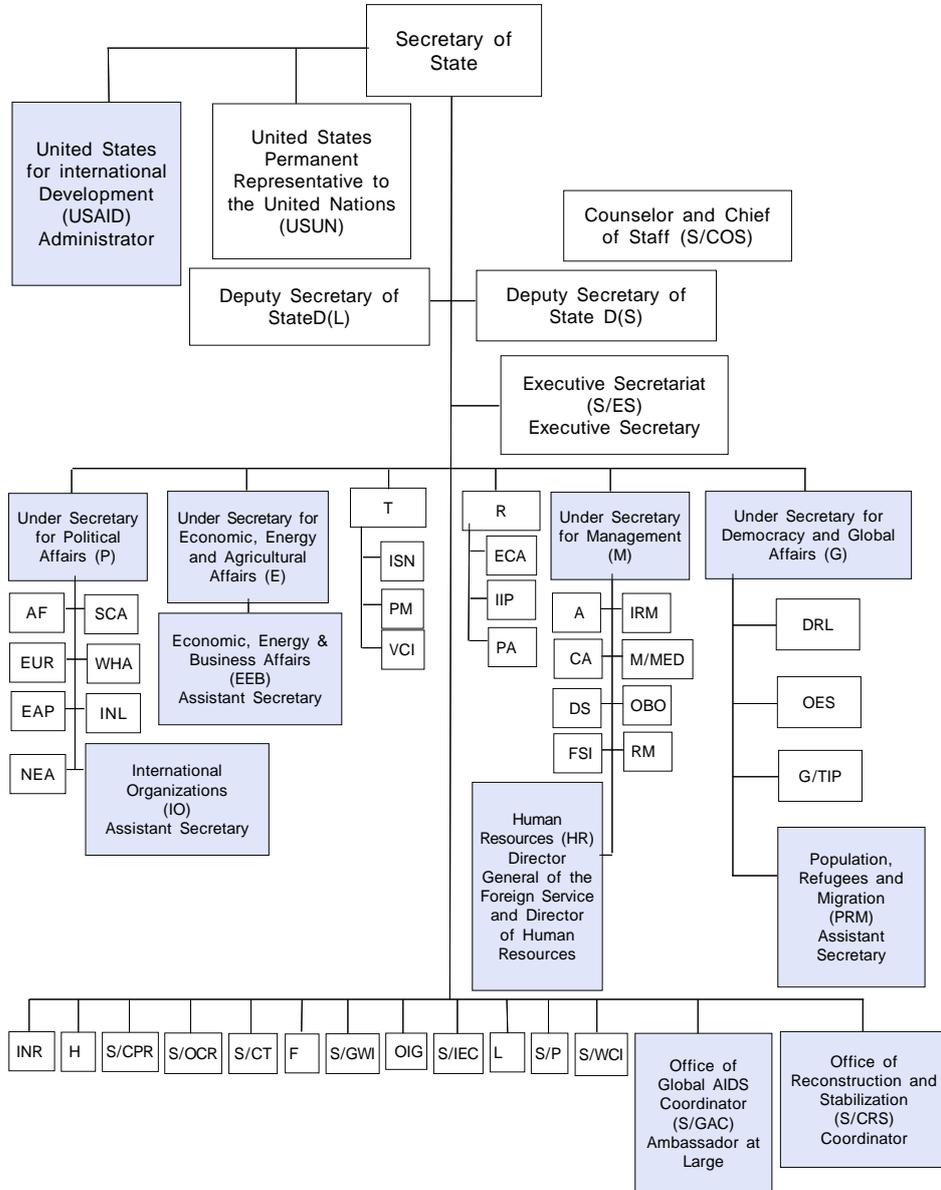
그리고 미국은 비정부 조직, 개인 민간단체를 포함한 민간 사회단체의 개발협력 활동도 중요하다. 비정부 단체는 1961년에 창립된 이후로 USAID 원조에 참여했으며 현재는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의 중요한 협동자이다. 이런 비정부단체는 규모가 크고 기금이 잘 모아지며 가끔은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비정부단체 관련기관의 다양한 종류는 회원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를 대표하고 있으며 정부 원조 체계 혹은 국제 발전과 인도주의적인 큰 규모의 통솔 기관 중에 하나인 의회 상호 기관과 관련되어 있다.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165개 국가는 민간 기부자에게서만 매년 30억 달러의 기부금을 전체적으로 제공 받고 있다. 또한 개인적인 기부 재단이 늘어나고 있는데 보건, 교육, 환경에 관련된 중요한 개발 작업을 관리하고 있다. 가장 잘 알려진 재단은 Bill & Melinda Gates 재단이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민간 사회 단체들은 정부와 미국 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 전역의 개발협동 작업에 있어 주요 기부자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개발 작업에 있어서 대중적인 개발을 도모하며 빈곤층을 줄이려는 노력에 관한 중

요한 대안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2002년 동료평가에서도 이미 지적되었듯이, 현재 미국의 개발원조를 시행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공식적으로 하나의 통합된 체제를 이루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다만 개발원조를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들은 2002년에 공표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의 일반적인 외교정책지침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관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그들의 활동이 체계적으로 협력적이지도 않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26개의 부서와 기관들이 ODA를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5개의 대규모 기관이 전체의 90% 이상의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2002년 동료검토 이후 MCC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중요한 조직 혁신은 역설적으로 체계를 더 파편화(분산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미국 국무부(Department of State)는 외교문제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국무장관이 대통령에게 외교정책에 대해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한다. 외교, 군사, 경제 등의 폭 넓은 문제에 관한 외교 정책 목표를 실행하고 있다. 정부 개발 원조의 1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대외 원조 사무국을 통하여 중요한 정책과 예산을 획득하였다. 전통적으로는 개발의 중요한 역할은 유엔 체계와 다른 국제기구의 기금을 관리하여 피난민 이동과 마약 관련 개발 작업에 관련이 있었다.

<표 7> 미국 국무부 조직도(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출처: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http://www.state.gov/>

*음영 처리 된 부서는 개발원조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다.

Ⅲ. USAID

1. 설립배경 및 역사

미국 연방의회는 1961년 9월 4일 미국의 군사적 그리고 비군사적 원조를 구분지어 미국의 대외원조 프로그램을 재조직한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경제원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의 설립권한을 부여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법에 근거하여 1961년 11월 3일, John F.Kennedy 대통령은 미국 국제개발청(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을 설립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의 개발원조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과 조직을 갖추게 되었고, 지금까지 미국의 대외경제원조 및 여러 종류의 원조계획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원조계획은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미국의 대외 경제 및 정치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USAID는 폭넓은 경제적·사회적 개발원조에 주안점을 둔 미국의 최초의 대외원조기관이다. USAID는 국제협력청(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의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인 원조 활동과 개발대출기금(Development Loan Fund)의 대출 활동, 수출입은행(the Export-Import Bank)의 화폐통화기능, 그리고 농림부(Department of Agriculture)의 평화를 위한 식량(Food for Peace) 프로그램이라 일컬어진 농업이익분배 활동과 같은 기존에 존재하던 미국의 원조 활동을 통합하였다.

결론적으로 종합해보면, USAID 설립의 가장 큰 성과는 기존의 대외원조정책이 가지고 있던 구조적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을 통해 국가에 의한 대외원조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장기적 개발계획 메카니즘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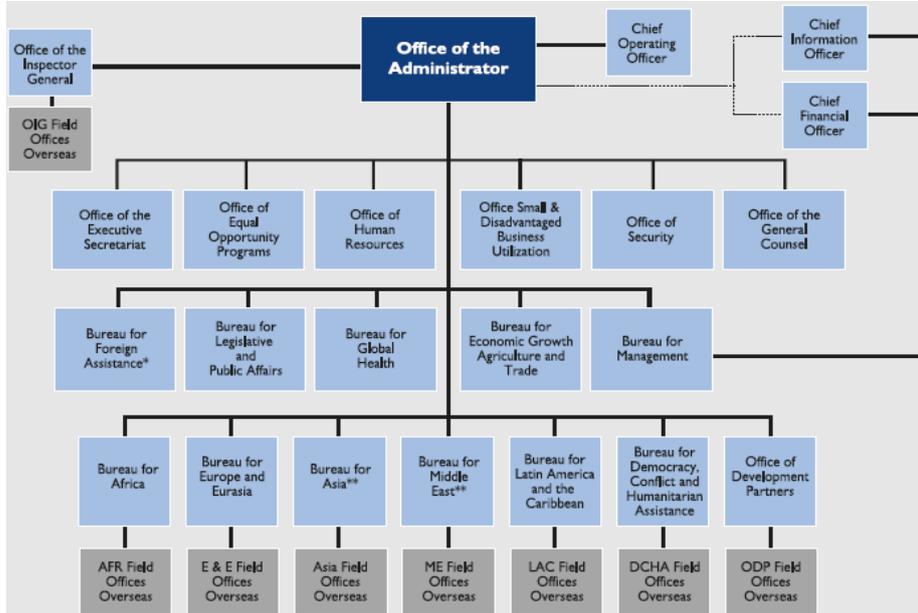
2. USAID의 구성

USAID는 국무장관으로부터 대외정책지침을 받는 독립적인 연방정부기관이다. 본부는 Washington, D.C 에 있으며, 세계 70 여개 국가에 현장사무소가 있으며, 이들이 USIAD의 강점이다. USAID의 청장 (Administrator)과 부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상원에서 승인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USAID의 주요 조직 단위는 ‘국(局)’(Bureau)이고, 각 국의 직원들은 USAID 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USAID의 국(局)은 지리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을 반영하여 조직되어 있다. 지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①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국, ② 아시아국, ③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국, ④ 유럽 및 유라시아국, ⑤ 중동국이 조직되어 있다. 그리고 USAID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① 세계보건국, ② 경제성장, 농업 및 무역국, ③ 민주주의, 분쟁 및 인도적 원조국이 있다. 더불어 본부의 주요한 특정 역할을 담당하는 ① 관리국, ② 입법 및 정책국이 있다. 이러한 국 단위 부서 이외에 독립적인 7개의 ‘실(室)’(Office)을 두고 있다.

USAID 본부의 최근 조직도는 <표 -8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표 8> USAID 조직도



3. USAID 임무

USAID는 1961년 설립 당시 재난으로부터 회복하려는 국가들, 빈곤으로부터 탈피하고자 노력하는 국가들, 그리고 민주적 개혁을 약속하는 국가들에게 원조를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러한 기조는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현재 USAID의 임무는 장기적이고 공정한 경제 성장을 지원하면서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미국의 대외원조정책 목표를 진전시켜나가는 것이다.

- 경제성장, 농업 및 무역
- 전세계의 보건
- 민주주의, 분쟁예방 그리고 인도적 지원

그리고 USAID는 5개 지역에 대해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 아시아
-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 유럽 및 유라시아
- 중동

4. USAID의 활동

USAID의 초대 청장(Administrator)으로 임명된 Fowler Hamilton는 자신의 1차적 목표를 시간의 흐름을 견뎌낼 수 있는 우수하고 강력한 조직 원칙을 바탕으로 한 기구를 설립하는데 두었다.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USAID의 첫 정책은 '진보를 위한 동맹'(Alliance for Progress)이었다. 1960년 가을, 보고타 법률(Act of Bogota)에 의해 개념적으로 설정되었고 1961년초 폰타델에스테 헌장(Charter of Punta del Este)에 의해 확인된 '진보를 위한 동맹'은 반구를 범위로 한 자금지원의 약속이었고 아메리카의 국가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이었다. 1960년대를 통하여 '진보를 위한 동맹'은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USAID의 정책의 바탕이 되었다. Kennedy 대통령은 1961년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로의 여행에서 '진보를 위한 동맹'을 장려한 바가 있었다.

아시아에서 USAID의 1차적 활동 목표는 공산주의의 확산, 특히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의 영향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1975년 미 병력의 철수 시기까지 지속된 베트남에서 반란의 진압과 민주적 그리고 경제적 발전에 기초한 원조정책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아프리카에서, USAID는 새롭게 독립한 국가들에 대한 리더십 교육과 다른 경제적 사회적 의무들을 수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USAID는 1961년 창립된 이후로 개발원조 체계 조직의 중심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미국의 개발원조의 전문가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2005년에는 공적개발원조의 38.8%를 차지하며 사상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정부기관의 폭 넓은 네트워크를 통해 개발에 대한 개념에 대해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있다.

전통적으로 USAID의 활동은 크게 권한을 위임하는 등의 77개 현장 임무로 분산되어 있는 체계이다. 현장 임무는 국가적이고 지역적인 사업이 모두 포함되어있다. 지역적 임무는 “업무의 중심”으로 알려져 있어 다양한 국가적 임무를 제공하고 독자적인 지역적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¹⁾

USAID는 민간자원봉사단체들, 원주민단체들, 대학들, 미국기업들, 국제기관들, 기타 다른 국가 정부들 그리고 기타 미국의 정부기관들과 함께 밀접한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특히 USAID는 3500개 이상의 미국 기업들과 300개가 넘는 미국에 근거를 두고 있는 민간자원봉사단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활동하고 있다.

IV. 새천년도전협회(MCC)

MCC는 2002년 3월에 미국 대통령이 설립 의사를 밝힌 후 2004년 1월에 조직된 단체로 “정의롭게 통치하고, 인간에게 투자하며, 경제적 자유를 독려하는” 국가에게 원조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새로운 개발 메카니즘이다. MCC는 2004년에 의회 양당의 지지로 만들어졌으며, MCC 행정 하부 조직은 30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해외 활동을 하고 있다. 설립 이후 미국의 개발협력사업에 있어서 혁신적이고 새로운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MCC 조직도는 <표 - 9>와 같다.

1) 현재 청장은 Rajiv Shah이다.

MCC는 개발협력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강력한 위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위임은 개발협력사업에 대해 다른 정부 기관들에게 부과되었던 많은 제약들을 완화시켰다. 이러한 제약들에는 유상원조(구속성 원조), 기금조성의 책정, 국가의 주인의식과 현장 위주의 효과적인 원조 방식을 손상시키는 워싱턴 본부 중심의 사고방식 등을 포함하는데 MCC가 설립되어 활동하면서 이와 같은 제약이 많이 완화된 것이다. MCC는 현재 해외에서 개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MCC는 제약 없는 무상 원조, 지역 주인의식 프로그램, 사업 위주의 접근 등과 같은 작업을 하고 있다. MCC는 국가개발협력체계가 2005년 “원조효과성에 관한 파리 선언”에서 언급되었던 원조 효율성과 어떻게 하면 더 조화롭게 실행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표 9> 새천년도전협회(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MCC) 조직도



출처: MCC 홈페이지 <http://www.mcc.gov/>

V. 원조의 공적 통로

미국의회는 모든 기관에게 개발협력 예산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금은 여러 다른 계정(accounts)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에는 그들만의 특별한 관리방식과 보고사항이 필요하다. 이러한 계정은 주로 USAID가 관리하고 더 작은 범위에서는 국무부(이

민 및 난민원조, 국제마약통제 및 범집행, 유엔), 재무부(부채탕감과 다자간개발은행)와 MCC가 관리를 하고 있다. USAID의 계정은 의회에 의한 기금 책정에 대응하고 대통령의 발의(Presidential Initiatives)에 의해 좌우된다. 의회의 계정은 기능적이고 지역적인 분야로 편성되어 있다. 2002년 동료검토 이후 미국 USAID가 책임을 지고 있는 원조분담 규모가 점점 더 감소하고 있다. 이 감소의 주된 원인은 국방부가 관리하는 ODA 금액이 급속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이라크 채무면제와 재건기금, 아프카니스탄 재건비용, 인도양 쓰나미와 같은 다른 인도주의적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4 ODA

제 1 절 미국의 ODA 정책에 관한 일반적 고찰

I. 서 언

일반적으로 주요 국가의 ODA 정책의 유형은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로 대별할 수 있다. 현실주의란 국가안보 또는 경제적 실익 등 국익을 중시하는 정책을 말하고, 이상주의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격차해소 등과 같은 인도주의를 중시하는 정책을 말한다. 미국의 전체적인 ODA 정책은 그 규모와 기여도는 크지만 외교 및 안보를 중시하는 현실주의적 성향이 강한 유형이라 볼 수 있다. 물론 미국은 안보 차원의 국익실현 이외에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ODA를 활용하기도 한다. 실제 2007년 미국의 ODA 지원 대상국 중 미군 주둔지역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지원액이 각각 37억5천만 달러와 15억1천만 달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점유했다. 이는 과거 냉전 시절 미·소 대결 구도라는 세계질서 속에서 원조 정책을 자국의 세력 확보와 소련의 팽창 저지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사용한 역사적 배경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미국 ODA의 특징은 인도적 목적 이외에도 안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패권국으로 지역분쟁이나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미국은 ODA를 안보 차원의 국익실현을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 의회 산하 해외원조특별위원회(HELP)의 자체 평가에서 미국의 해외 원조는 지나치게 정치·안보적 목적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물론 미국은 저개발국가의 민주화를 지원하기 위해 ‘밀레니엄챌린지펀드’라는 독자적 정치발전 원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대외적 명분과는 달리 미국의 세계 전략에 활용되고 있어 국제적으로 냉랭한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평화봉사단(Peace Corps)을 통한 교육과 보건 등에 대한 투자 지원은 수원국의 자생력을 증진시키고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ennedy정부 이후 대외원조에 관여하고 있는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에서의 첫 주요 대통령 연설에서, George W. Bush 대통령은 ‘개발을 위한 새로운 약속’(New Compact for Development)을 발표한 바가 있다. 연설 중에, Bush 대통령은 가난과 싸우는 것은 도덕적 의무이고 따라서 그것을 미국의 대외정책의 우선 사항으로 정했다고 강조하였다. Bush 대통령은 이런 책임을 온전히 수행해내기 위해서 선진국은 더욱 큰 기여를 해야 하고, 개발도상국은 더욱 막중한 책무를 지는 등, 부국과 빈국 모두 비슷하게 증가한 책임감을 갖자는 제의를 하였다. 대통령은 미국의 핵심 개발 원조를 향후 3년간 50퍼센트 증가시킬 것이며, 현 수준보다 연간 50억 달러의 자금을 더 투자할 것이라 밝혔다. 이 추가적인 자금들은 새천년도전기금(Millennium Challenge Account, MCA)으로 들어갈 것이며, 이 기금의 창설은 개발도상국들이 그들의 경제와 삶의 기준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미국 정부의 개발협력 프로그램에서 두드러진 점은 민주적인 제도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민간 부문(private sector) 위주의 경제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주제는 개발협력 사업에 정부가 개입하도록 크게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새천년 선언(Millennium Declaration)의 서명국이며, 민주주의 제도, 활성화된 시장, 인간에 투자하는 일을 포함한 善治(good governance)가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

II. 국익을 위한 실용적인 정책

역사적으로 미국은 수혜국(recipient country)의 요구 및 자신의 외교 정책 목표의 관점에서 개발원조정책을 정당화하였다. 양측의 입장을 반영한 win-win 접근방식은, 예를 들어 Marshall Plan(공산주의를 격퇴하고 무역을 개선하는 것과 유럽을 재건하는 것)의 경우와 1961년 대외원조법(미국의 국가안보와 번영을 지원하는 것과 개발도상국을 돕는 것)에서 적용되었다. 20세기 후반에 원조에 관련된 정치적 이유는 대부분 냉전과 관련되었다. 1990년대 초, 공산주의의 붕괴로 인해 미국은 개발 원조의 논리를 심도 있게 재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전체를 지배하는 강력한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 이익, 국제 협정 및 개도국의 요구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원조 정책이 실용적으로 구체화 되어 가던 1990년대에는 새로운 비전을 끊임없이 탐구하였다. 의회는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연간 대외원조 예산을 책정하는 관행을 통하여 주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맡아왔다. 이 기간 동안에 USAID는 의회로부터 자주 비판을 받았고, 정기적으로 예산 삭감과 감원을 강요받았다.

2001년 9/11 사태와 그 이후 “테러와의 전쟁”(war on terror)이 미국의 관심을 개발 협력 사업에 집중시켰다. 그 이후 정부는 의회와 국

민들에게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시키기 위해 국가안보 논리를 효과적으로 이용했다. USAID와 국무부의 정책 문서들의 승계는 이러한 국가안보의 전망과 관련하여 개발 협력사업의 역할을 정의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 중에서도 획기적인 정책은 2002년과 2006년에 세워진 국가안보전략 (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인데, 이것은 미국의 개발협력에 있어서 1961년 이후로 가장 광범위한 개혁의 발판을 만들어 주었다.

미국의 NAA는 개발(development)을 외교(diplomacy) 및 국방(defence)(the 3Ds)과 함께 국가 외교 정책의 세 가지 핵심 중 하나로 인식한다. 국무부는 이러한 전략적 관점에 기반을 두면서, “전세계의 많은 협력국들과 함께 그들 국가의 국민의 필요에 부응하고 국제 사회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정부를 설립하고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환외교(Transformational Diplomacy) 정책을 만들었다. 이 정책이 외교 및 국방과 같은 수준으로 장기적인 개발을 위한 명확한 목표가 될 수 있는지, 또는 개발이 다른 우선 순위 정치 목표를 지원하는 도구 역할만 할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변환외교는 활동 기반(operational matrix), 즉 대외원조기본체계(Foreign Assistance Framework)를 구체화했다. 이 체계는 아직 세계적인 빈곤을 감소하기 위한 국제적인 목표를 온전히 지원하지는 않지만, 이를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지구상에 널리 퍼져 있는 빈곤문제는 세계적인 불안감을 야기하는 주요한 요인이며, 빈곤을 감소시키는 것은 미국 국민의 기대에 부합한다. 또 다른 도전은 국방부를 포함한 모든 미국 정부의 개발 관계 기관들에게 대외원조기본체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이 기본체계는 주로 국무부와 USAID의 활동을 지도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취약 국가에서 모범적인 국제개입을 위한 DAC원칙초안’(Draft DAC Principles for Good International Engagement

in Fragile States)과 일치하게, 정부는 취약 국가의 개발, 국방, 외교 및 인도적 공동체를 가장 잘 결합시킬 수 있는 접근방법을 추구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다양한 공동체 사이의 대립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해야 한다. 또한 공동체 사이에는 상보성(相補性)이 존재하며, 이 민감한 균형은 예를 들어, 인도적인 분야에서의 원조활동이 불필요하게 군사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을 요구한다.

대외원조기본체계가 더 자세히 구체화되고 이용됨에 따라, 새천년도 전협회(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MCC)와 같은 다양한 미국의 원조제도 및 국제 원조국으로서의 경험에서 배운 운영 경험을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국제 원조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춘 ‘원조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원조 효과성 문제를 검토하는 것을 포함한다. 대외원조기본체계는 원조시스템 간소화, 다른 원조국과의 협력 확대, 국가 주도 개발에 대한 집중 확대, 능력 개발 및 지방적 절차와 같은 이슈들을 연결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Ⅲ. 원조체계의 새로운 동향 및 구상

1. 2002년 동료검토의 개선사항

미국은 2002년 동료검토(2002 Peer Review)에서 DAC가 제안하였던 주요한 몇 가지 권고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진보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 공통의 비전 및 협력적인 활동을 위한 기본 체계와 관련한 미국 정부 기관들의 공동 협력 활동
- MCC의 설립과 USAID-국무부 공동관리계획 입안과 같은 체계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 활동

- 성과 위주의 관리(result-based management)에 대한 관심의 확대
- 인간자원에 대한 관심의 증대

그리고 국제적인 동반자관계의 모색 및 강화, 개발 정책의 일관성을 위한 계획 수립, 대중의 인식(public awareness)을 높이기 위한 정부와 민간 사회단체의 공동 노력의 도모, 무상 원조 증가, 현장 임무수행자에 대한 권한 부여 등도 발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2. 새로운 국가안보 정책체계를 주도하는 개발

2002년 동료평가 당시에 미국 대통령은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개발협력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전략은 개발 목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명확하게 언급하였다. 10년 안에 빈곤 국가들의 경제 규모를 두 배로 늘이는 것, MCC를 이용하여 원조 규모를 50%로 늘이는 것, 원조가 이루어진 곳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 빈곤을 이기기 위해서 국제금융기구들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 빈곤국가에 대출 대신 무상원조(grant)하는 것, 빈곤국가의 무역과 투자를 돕는 것, 보건·교육·농업 분야 위주로 원조하는 것 등이다. 그리고 에이즈예방 및 퇴치, 말라리아 퇴치, 교육 접근권 보장, 모자 사망률 감소, 여성인권 보장 등과 같은 분야에 주요한 자금지원을 제공하는 대통령의 특별 발의(Initiatives)가 뒤따랐다.

2006년에 NSS는 정치적 중요성이 강조된 내용으로 더 다듬어졌다. 개발협력의 본질적인 측면이 재확인 되었고 2002년도 당시의 전망이 더 확대된 형태였다.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장려하고, 더 안전하고 번창한 세계를 위한 초석을 놓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안전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 것”에 더 중점을 두었다. 또한 “자유의 영역”(frontiers of freedom)을 확대시키기 위해 법의 지배를 지지하고, 민주적 제도와 책임 있는 정부를 강화하며, 경제적·정치적 자유를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장려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아마 개발협력을 위한 NSS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혁신적인 내용은 개발협력이 외교, 국방과 함께 국내외 정책에서 3개의 큰 대들보 중에 하나로 발전한 점이다. 새로운 3Ds(외교 diplomacy, 국방 defence, 발전 development) 정책은 국가안보에서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빈곤국가에서 정치적인 개방과 경제적인 성장이 없다면 국제적인 테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점을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빈곤층 감소와 같은 개발에 대한 수준 높은 인식을 어떻게 실행으로 옮기느냐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빈곤과 관련된 불안정은 갈등을 야기한다. 국가외교정책의 맥락에서 볼 때 장기간에 걸친 빈곤 감소 목표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과정이 존재한다. 효과적인 개발 활동이 단기적인 정치적 우선 사항에 의해 압도당하지 않으려면 정부 최고위층에서 발언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변환외교의 기능적인 의미

미국 국무장관은 2006년에 변환외교(transformational diplomacy)의 새로운 외교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의 목표는 “전 세계의 많은 우방과 함께 그들 각국의 국민들의 필요에 부응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정부를 설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미국은 안보, 개발 및 민주주의라는 세 가지 목표 사이에 뚜렷하게 경계를 짓는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세 분야가 함께 작동되어야 하며 동시에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대외원조는 변환외교의 본질적인 필수요소이다. 미국의 안보는 정의롭고 실효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외국 정부의 역량에 영향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의 대외원조는 지금까지 그런 국가들이 개발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돕는데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여전히 발전하고 있는 미국의 변환외교의 현재까지의 성과는 우선순위 목표를 구체화하고 또한 USAID와 국무부로부터 대외원

조를 받는 수혜국의 유형을 구체화한 것이다. 즉 목표를 ① 평화와 안보, ② 정당하고 민주적으로 통치하는 것, ③ 인간에 대한 투자, ④ 경제 성장, ⑤ 인도주의적 원조 등으로 구체화하였고, 수혜국의 유형을 ① 재건하는 국가, ② 개발도상국, ③ 변화하는 국가(transforming countries), ④ 협력유지 국가(sustaining partnership countries), ⑤ 제한적인 국가(restrictive countries), ⑥ 세계적/지역적인 활동 등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정책 분류는 미국 정부가 국무부와 USAID를 위한 우선순위 전략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간략하고 실제적인 대외원조기본체계(foreign assistance framework)를 수립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 체계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5가지의 우선순위 목표와 6가지 수혜국의 범주를 연결하는 기반이다. 이 체계는 워싱턴 본부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정부의 모든 개발협력 기구(현재는 대부분 국무부와 USAID에 집중되어 있다)에 걸쳐서 더욱 더 협조적이고 상부의 의사 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제 2 절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의 목표

I. 주요 정책 목표

USAID는 미국 워싱턴에 본부가 소재하고 있으며 해외 현지임무수행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USAID의 임직원은 전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교육자, 농업인, 중소기업사업가, 간호원 등 해당국가의 여러 계층 직업인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USAID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미국의 대외원조정책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1)경제성장 촉진, 2)지속적인 민주화 추진, 3)기근, 자연재해, 인재로부터 인류의 보호, 4)지속적인 인류건강보호 및 인구증가억제, 5)환경보호가 바로 그것이다. USAID의 5대 대외원조 목표달성을 위하

여 다시 19개의 세부목표를 설정, 대외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각 목표별 세부지원책은 다음과 같다.

1) 광범위한 경제성장 촉진

① 시장경제기능강화, ② 빈곤국에 대한 경제지원 확대, ③ 인력개발을 위한 기본교육확대 및 개선지원

2) 지속적인 민주화추진

① 법 집행강화 및 인권 존중, ② 깨끗하고 경쟁력 있는 정치풍토 조성, ③ 민간단체의 적극적 정치활동 지원, ④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 증진

3) 기근, 자연재해, 인재로부터 인류의 보호

① 각종재난 예방, ② 긴급구호 요구에 대한 효과적 대처, ③ 상습적 위기국가에 대한 지원

4) 지속적인 인류건강보호 및 인구증가 억제

① 불필요한 임신억제 및 낙태방지, ② 영아사망률 감소, ③ 산모사망률 감소, ④ 성병 및 HIV 감염예방

5) 환경보호

① 생물다양성 보전, ② 건전한 도시개발 촉진 및 공해경감, ③ 지구기후변화형상 억제, ④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⑤ 지속적인 부존자원 관리

이와 같은 목표달성을 위하여 USAID는 다른 미국연방 기관은 물론 사업단체, 개인 자원봉사단체, 대학 등과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USAID는 3,500개 회사, 그리고 미국 내의 300여 개의 개인 자원봉사단체와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중이다. USAID의

특정과제사업 및 일반 계약사업 중 약80%가 미국내회사와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가 맡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II. ODA정책의 중요성

경제원조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원조는 미국의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투자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대외원조 비용만을 따지기보다는 원조 후에 얻을 수 있는 결과를 더욱 중시해야 한다. 이러 측면에서 미국의 대외원조사업은 개도국과의 무역과 투자환경을 개선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면, 1990년-1995년 사이에 개발도상국 및 이에 준하는 국가에 대한 수출액이 98억 7천만 달러로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수출성장에 힘입어 미국 내에 약190만개의 고용창출이 되었다. 그 동안 미국의 대부분의 원조는 구속성 원조(tied aid)이었기 때문에 미국산 제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데, 미국의 재화나 용역을 직접 구매하는데서 얻는 이익 말고도 미국 원조혜택을 입은 나라로부터의 수출 주문으로부터 얻어지는 이익도 크다. 미국의 원조계획결과 미국재화 및 용역에 대한 수요가 창출되고 미국 상품과 용역을 구매하려는 국가가 점점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개척이 필요한데 이러한 시장은 서부유럽 지역에서가 아니고 바로 개발도상국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마치 중요한 미래시장을 포기하는 것과도 같다. 예를 들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환경관련 장비 및 용역에 대한 세계시장규모가 엄청나게 커질 전망이다. 미국의 대 개발도상국 수출은 미국무역액 총액의 매년 약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 수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바 있다.

빈곤한 나라는 가난한 고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국제무역사회에서 자명한 진리이다. 따라서 개발이라는 사다리를 향해 올라가는 그러한 나라들이 바로 미국입장에서 보면 훌륭한 고객이다. 국제식량

정책연구소(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IFPRI)의 분석 결과 개도국에 대한 농업연구에 1달러가 투자되었을 때 개발도상국에서는 4달러의 미국재화 및 용역을 구입하게 된다는 사실을 밝힌 바가 있다. 즉 대외원조는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의 수출이 확장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 미국으로서는 농산물 수출이 가장 중요한 외화획득원이 되고 있는데 개발도상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미국 내에 새로운 일자리 약 400만개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렇듯 미국의 대 개발도상국 대외원조는 미국의 재화 및 용역수출 시장 창출이라는 견지에서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고 있는데 바로 좋은 예가 한국의 경우로 현재 미국이 한해에 한국에 수출하는 액수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사이에 미국이 한국에 원조해준 액수를 훨씬 능가한다는 사실이다. 이하에서는 미국의 무역원조(aid for trade)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제 3 절 미국의 ODA 시행 사례(1)

I. 서 언

역사적으로 미국은 피원조국의 필요와 미국의 외교정책의 목표를 근거로 자신의 개발원조정책을 정당화해왔다. 2001년 9월 11일 사건과 그로 인한 “테러와의 전쟁”은 개발협력에 대한 미국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시발점이 되었다. 그때 이후로 정부는 의회와 국민의 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을 다시 고취시키기 위해 국가안보의 논리를 이용하였다. 다양한 정책들은 이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개발의 역할을 정의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 중 두드러진 정책은 2002년과 2006년의 국가안보전략(NSS)으로 2002년 DAC 동료 검토 이후 상당히 새로운 방향으로 미국을 변화시켰다.

미국의 ODA가 지나치게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루어진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부시정부 초기의 안보중심의 원조정책은 말기부터 방향이 재검토되기 시작하였다. 클린턴 정부에 접어들어서는 탈냉전이라는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원조정책의 새로운 방향정립과 원조목표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즉 미·소 대결구도 하에서 유럽과 제3세계에 초점을 둔 외교정책의 의미가 퇴색됨에 따라 원조목적과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원조정책의 주요 우선 과제로는 동유럽, 구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 및 기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증진, 강력한 자유시장 경제의 구축, 최빈곤 제3세계 국가들의 장기개발과 빈곤퇴치, 미국의 상업적 국가이익과 원조 프로그램의 연계를 통한 미국 기업의 무역환경 개선 등이 강조되었다.

최근의 세계적 개발원조 추세가 원조의 효율성 제고와 환경, 인구문제 등 범세계적 문제의 해결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미국의 원조 배분 전략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즉 지금까지 원조 배분의 주요 기준이었던 국가별 방식에서 벗어나 환경, 인구, 경제발전, 민주주의, 인도주의 등의 원조 배분을 위한 기능적 분야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원조규모를 할당하는 방식의 배분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다. 또한 실질적 배분에 있어서는 안보적 목적에 의한 원조규모를 줄이는 대신 경제적, 인도적 고려에 의한 원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ODA 사례들을 보면

- 농업지원(agriculture)
- 민주주의와 국정관리지원(democracy & governance)
- 경제성장과 무역 원조(economic growth & trade)
- 환경지원(environment)

- 교육지원(education & Training)
- 의료지원(health)
-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 인도주의적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

이들 분야별 사례 중 본 연구에서는 가장 전형적이며 여전히 ODA사업의 중심에 있는 무역원조를 중심으로 그 정책 및 사례를 분석하고, 최근 오바마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인도적 지원 사례를 고찰할 것이다.

II. 미국의 무역원조정책

1. 미국의 무역원조정책의 핵심 요소

미국의 무역원조정책은 미국의 전체적인 개발원조의 틀 속에 통합되어 있다. 미국은 무역과 개발, 그리고 이 둘의 상호관련성을 지지하며 옹호한다. 2002년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에서 개발이 외교나 국방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확인한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2006년 1월 ‘대외원조를 위한 새로운 전략적 기본체계’(New Strategic Framework for Foreign Assistance)²⁾를 공표하였다. 경제성장은 이 체계의 5개 기둥 중의 하나이고, 무역을 위한 지원 또는 무역능력개발(Trade Capacity Building, TCB)은 경제성장의 기둥의 가운데 가장 주요한 항목 중 하나이다.

미국은 여러 차원에서-국제기구, 중앙정부, 지방 정부 및 민간부문과 공동으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TCB원조를 제공하는 특별한

2) 위의 전략적 기본체계는 미국의 TCB 전략 또는 무역원조전략의 요소들을 담고 있는 2가지 문서, 즉 “참여, 권한 부여, 협력관계: 미국의 TCB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과를 찾아서”(2005)와 “무역과 원조를 통한 삶의 질 향상”(2003)에 기초하고 있다.

위치에 있다. TCB활동을 포함한 미국의 개발원조는 개발에 있어서 각각의 국가 자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더욱 강조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기본적인 진실은 대외원조가 국가의 발전을 돕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언제나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TCB원조가 모든 수혜국에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의 무역원조 프로그램은 다음 같은 세 가지 원칙에 근거한다.

- 정책성과의 장기적인 지속성
- 현장의 지역적 주인의식과 공약준수(local ownership and commitment)
- 공여국간의 협력

이 원칙들은 미국이 유연하고 효율적인 원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공여국으로서 미국은 자국의 협력 파트너인 개발도상국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TCB 프로그램으로 그들의 자신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국은 다음과 같이 미국의 원조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 세계무역기구(WTO)의 세계신탁기금(Global Trust Fund)과 국제무역센터(International Trade Centre) 후원 정책을 통한 WTO와 관련된 기술적 원조 활동에 대한 후원
- ‘개발도상국을 위한 통합기본체제’(Integrated Framework for Least Developed Countries, IF)를 향상시키고, 미국의 양자간 프로그램과 신탁기금을 통한 재정적 후원을 통해 능동적 역할 수행
- 미국의 동맹국인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중요한 요소로서의 TCB 원조
- 미국의 동맹국들이 2015년까지 연장된 ‘아프리카 성장과기회법’(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AGOA)을 통하여 미국과 또 다른 동맹국들과 아프리카 사이의 무역을 확대하고,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킬 2억달러 자본의 5년간의 프로그램인 ‘아프리카의 세계

경쟁력구상'(African Global Competitiveness Initiative, AGCI) 프로그램들을 통해 그들의 일방적인 무역 특혜를 취할 수 있도록 후원

TCB 원조에 있어 미국 정부기관들의 역할은 미국의 원조수준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계속 진화하고 있다. TCB를 이끌어가는 두 시행기관은 USAID와 2004년 발족하여 TCB 활동에 점점 중요한 역할을 맡아가고 있는 MCC이다. 이들의 광범위한 업무는 특정된 영역의 원조를 제공하는 20개가 넘는 미국의 정부기관들에 의해 보완되고 있다.

1) USAID

USAID는 현재 70개가 넘는 국가들에서 활동하면서 미국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고 무역자유화의 기회를 잡으려는 개발도상국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USAID의 양자간 또는 지역적인 프로그램은 무역원조를 제공하는 실용적이며 효율적인 방법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접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USAID의 활동을 통해 미국정부가 개발도상국들과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였다. USAID의 현장 프로그램은 다른 많은 미국 정부기관들이 제공한 TCB 원조에 의해 더욱 보완되고 있다.

2) MCC

MCC는 2004년에 설립된 미국 정부의 개발기관이며, 미국의 TCB 원조활동에서 점점 주요한 원조기관이 되고 있다. MCC는 좋은 정책을 강화할 때 원조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MCC는 거버넌스(governance), 사람에 대한 투자, 그리고 경제 자유의 증진과 같은 면에서 비교적 좋은 역할을 해내고 있으며 경제 성장을 이루게 함으로써 가난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은 무역이 성장에 긴요한 기여를 하며 MCA 국가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세계무역시스템의 참여자가 되는 열쇠라고 인식하고 있다. MCC는 도하(Doha)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미국이 경청했던 필요와 우선순위 과제에 대한 미국의 혁신적인 대응이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정부 차원의 원조는 개발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ODA의 효과를 배가시킨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미국은 개발 협력자로서 민간부분을 끌어들이고자 한다. 민간부분은 정보기술의 발전에서부터 소규모 농부들을 돕는 것까지 넓은 범위의 원조를 제공한다. 이 협력관계에는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

- ‘CISCO 네트워킹 학술동맹’(CISCO Networking Academy Alliance)은 몇몇 기술단체와 전 세계적으로 협력해 학생들에게 컴퓨터 네트워킹을 가르치고, 세계시장의 경쟁 속에서 효율적으로 맞붙을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한다.
- 스타벅스와 그린 마운틴 커피는 ‘지속가능한 무역을 위한 재정동맹’(Finance Alliance for Sustainable Trade)을 통해 소규모 농부들이 지속 가능한 재배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된 유기농 커피로 막대한 시장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동맹은 중앙아메리카와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를 포함한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에 원조를 제공한다.

지역 사업체들과 농부들은 새 기술을 개발하고 그들을 새 시장에 뛰어들게 하여 전체적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회사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을 통해 이익을 얻는다.

미국과 그의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들은 무역 주도과 TCB를 동시에 선도했다. 체계적이고 목적이 뚜렷한 원조에 대한 접근은 WTO

을 비롯한 기타 무역포럼들의 급변하는 교섭능력을 후원하기 위해, 그리고 무역거래의 기회를 잡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의 개발도상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들은 협상단체들과 유사한 TCB 실무그룹(Working Group)의 출현을 가져왔다. 이러한 관행은 안데스산맥 국가들, 남아프리카 연합, 태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 미국간의 FTA 협상에 이용되었다. 협상이 이루어지는 동안, TCB 실무그룹은 양자간 및 다자간 공여국들에게 미래의 FTA 파트너들의 필요와 우선순위 문제에 대해서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한번 FTA가 체결되면, 상설적인 TCB위원회는 무역원조를 보다 책임 있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지하듯이 미국은 세계은행(World Bank)과 같이 개발도상국들에 TCB 원조를 제공하는 국제금융기구들에 기여하는 세계 최대의 기여국이다. 회계연도 2006년에 UN과 세계은행을 포함한 모든 다국적 기구들에게 제공한 미국의 기부액은 24억달러에 육박했다. 총액 중 12억 5천만 달러는 국제금융기구들에 쓰였다. 국제금융기구들에 대한 미국의 재정적 지원은 민간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공여국들로부터 자원을 레버리지해준다.

2. 지역적 무역원조

미국 정부는 지역에 특정된 필요와 이슈들에 발맞추기 위해 가장 적절한 제도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험에 따르면, 양자간 그리고 지역적 원조의 결합으로 상당한 성과를 얻는 것이 가능하였다. 지역적 공약과 파트너 개발도상국들과의 열정적인 협력은 성공 여부를 크게 좌우한다. 일례로써, 미국 정부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TCB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적인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허브'(Hebs for Global Competitiveness)를 창설하였다. USAID는 보츠와

나의 가보로네, 가나의 아크라, 케냐의 나이로비, 세네갈의 다카르까지 4곳의 허브를 지원하고 있다. 이 허브들에 의해 제공되는 원조에 추가로 USAID의 양자간 사업과 다른 미국 정부기관들을 통해 USAID 본부로부터의 원조가 더해진다. 각 허브들은 지역에 특정된 필요에 대응하고, 무역역량강화 훈련 기회를 포함해 지역 내의 무역, 투자, 그리고 비즈니스 활동에 관한 정보와 기술적 지원을 하는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농산물의 수출 증대, 직물과 의류의 수출을 위한 비즈니스 기회의 향상 부여, 그리고 무역을 제한하는 정책과 기반 시설의 제거와 같은 공통 범위의 업무가 각 허브에서 진행 중이다. 각 허브들은 AGOA(아프리카성장과기회법)에 관한 정보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며 미국 사업체들과의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AGOA자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모두 4개의 허브는 다양한 무역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농림부 소속 고문들(advisors)은 성가시고 위험한 평가업무를 도와주고 있으며, 농산물의 수출을 촉진하는 활동을 한다.

미국의 무역원조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뿐만 아니라, 지역 내 개발도상국들 상호간의 무역확대를 지원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남아시아 지역계획(South Asia Regional Initiative)은 남아시아 국가들 간에 상호이익이 되는 에너지 연대를 촉진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지역적 에너지 무역의 이점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고 에너지 무역 기회를 위한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미국의 무역개발청(U.S. Trade and Development Agency, USTDA)은 미국과 중앙아메리카 지역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시행하기 위해 중앙아

메리카계획(Central America Initiative)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3가지 주요 부문, 즉 에너지, 운송, 그리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경제 발전과 지역통합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의해 미국은 온두라스와 니카라과의 운송부문 기반시설을 지원한 바가 있다.

3. 무역 원조의 규모

1) 무역원조의 범위-무역에 관한 미국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종류

미국 정부는 정책분야에서의 TCB 활동을 무역 혹은 해당 국가의 국제무역시스템 안에서의 무역 경영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인적자원, 교육기반시설, 물리적 기반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개발역량과 국제무역에 개입하는 과도기적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협정과 프로그램들을 포함한다. 미국은 모든 활동 등급에 따른 TCB 활동을 포착해내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내고, 2001년부터 모든 참여 기구들에 대해 연간 조사를 시행해 왔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이 무역 관련 요소의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에서 상황별 기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 경우에 무역 관련 요소는 무역 원조 공약으로 평가되고 계산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각각의 요소로 분석하는 능력의 유무는 미국의 무역원조 정의와 OECD/CRS의 무역원조 정의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이다. 예를 들면, 각각의 기반시설 프로젝트가 무역 관련 요소가 있는지 판단되면, 그 중 어느 정도가 TCB에 기여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다. 미국의 기반시설 프로젝트 자금 중 오직 일부만이 무역원조 정의에 포함되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많은 정부기관들과 교육기관들이 개발도상국에게 기술적 지원을 하고 WTO에 가입된 국가들의 경제체건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때 국제무역체제의 규칙을 따르기도 하지

만, WTO 회원국 또는 협약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기술적 지원 활동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 활동들을 시행하고 있다.

- 지역적 무역 협정의 협상
- 무역 분야의 보조금 또는 가격 통제의 철폐 제거
- 무역 통계의 개선
- 수출입 기업들을 위한 사업 지원 서비스의 장려
- 수출입 시장을 위한 사업 정보의 개발
- 무역 경쟁력의 강화
- 상업 거래 및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위한 법적 능력의 강화
- 반독과점 정책의 시행
- 소비자 보호 정책의 강구
- 정부 조달의 개선
- 무역 상품들의 위생적 기준 강화
- 무역 장려를 위한 기술이전의 촉진
- 무역의 기술적 장벽의 제거
- 원산지 규칙의 적용
- 경쟁력 있는 노동력의 창출
- 인적 자원 및 노동법의 인식과 시행, 어린이 노동의 최악의 형태 제거를 포함한 노동기준의 개선
- 무역 재정의 장려
- 재정 부문의 발전
- 바람직한 재정, 통화, 환율 정책의 수립
- 무역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개발
- 무역 관련 운송 프로젝트의 지원
- 환경 기준과 환경 기술의 고안
- 투자 협정 체결과 투자 보호 방법의 개발

2) 무역원조 방법론

미국은 자국이 시행하고 있는 무역원조를 각각의 개별적인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가?

미국 정부는 TCB 활동의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고 있다. 데이터는 활동자금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시행하는 미국 정부기관들 또는 현장 직원에 의해 기록된다. 데이터 기록자는 오직 무역에 관련된 해당 년도의 부분만을 기록하도록 교육받는다. USAID 소속의 무역 단체가 이끄는 기술팀이 정확성과 일관성을 보증하기 위해 정보 기록자들과 함께 일한다.³⁾

3) 무역원조에 대한 약속과 준수(COMMITMENTS)

2005년 홍콩에서의 WTO장관급 회담에서, 미국은 자신들의 국제무역원조 기여 액수를, 2005년 13억 달러를 2010년까지 2배 이상인 27억 달러까지 증가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세계무역시스템에서 이익을 창출할 만한 도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도 변함없이 계속됐다. 미국은 2001년에서 2005년까지 누적 42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소비했다. 미국의 약속을 보충하기 위해, 미국은 개발도상국 협력자들이 자신들의 국가발전계획에서 무역을 우선시하는 것을 고려중에 있다.

미국은 자신들의 무역원조 정의에 따르면 2002~2005년 기간 동안, 그리고 특히 2005년 당시 미국의 공약준수 내용은 다음 <표 10>과 같다.

3) TCB 데이터베이스는 <http://qesdb.usaid.gov/tcb/index.html>에서 열람해 볼 수 있다.

<표 10> 무역 관련 투자 필요액, 2006~2015 (100만 유로 단위)

TCB 항목	2002	2003	2004	2005	2002~2005 합 계
---100만 달러---					
WTO 인식, 가입 & 협정	50	50	35	37	171
사업 서비스, 교육, 전자상 거래 & IT	97	104	118	197	515
관세, 수출 증진 & 기타 무 역촉진	61	91	128	143	424
지역 무역 협정	9	29	33	29	100
재정 분야, 통치, 정책	131	155	158	233	677
인적 자원과 노동기준	100	115	138	88	441
환경 무역 & 환경 기준	19	29	29	29	107
무역 관련 물리적 기반 시 설 개발	19	44	120	346	529
무역 관련 농업	84	104	115	164	468
서비스 무역 개발	45	17	25	26	113
기타 TCB	22	22	22	53	119
총 TCB	638	760	921	1345	3664

4. 무역원조전략의 이행

1) 본부와 현지 활동의 효율적 통합

미국은 무역원조가 전체적 개발전략 내에서 본부와 현지에서 효율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무역원조 TF(the Aid for

Trade Task Force)는 공여국이든 수혜국이든, 모든 국가에서 무역을 발전의 도구로 여기는 인식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특히 원조 수혜국이 무역을 국가발전계획에서 우선시하며, 공여국은 이러한 계획들에 조정력(coordination)과 일관성(coherence)을 향상시키려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다. 미국 정부는 무역 또는 개발을 담당하는 기관들 사이에 일관성을 보장하고, 전체적인 발전 기조의 한 부분으로써의 TCB를 더욱 완전하게 통합하는 데에 더 많은 노력을 쏟았다.

그리고 미국은 무역원조와 나머지 개발지원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새로 신설된 국무부 소속의 대외원조관실(Office of the Director of Foreign Assistance)에서는 원조계획을 조직화하고 발전목표에 따라 재정을 할당하는 더 나은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USAID 청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대외원조관(Director of Foreign Assistance)은 의회에 회부되는 대통령의 연간 예산안을 늘리기 위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기타 무역 및 개발 기관들의 고위 대표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다.

또한 미국정부는 TCB 원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특화조치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5년 발표된 AGCI는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의 무역능력과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AGCI를 통해 미국정부는 경제발전과 무역의 진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해당 지역 국가의 정부, 지역 기관들, 그리고 개인투자자들과 공동으로 활동하였다. AGCI는 수용력을 늘리고 아프리카로의 투자를 자극하기 위해 미국정부의 자원들을 조직화하였다. AGCI는 정보통신 기술의 보급, 다각 경영의 수출, 재정부문 강화, 기반시설투자의 간이화, 그리고 국제품질규정 준수여부 검토 등을 포함하고 있다.

2) 무역원조 경험의 강화 및 이의 활용

개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기관들 사이의 중개 역할을 하는 미국의 실무그룹들(Working Groups)은 미국 TCB 활동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그룹들의 조정활동은 미국 통상대표부(USTR)가 주도한다. TCB 활동은 미국의 많은 기관들⁴⁾의 자원과 기술적 전문지식에 의해 강화된다.

USAID는 경제성장전문가들과 세계 곳곳의 개발도상국에서 가치 있는 자원으로 봉사하는, 워싱턴에 근거를 두고 있는 무역팀을 보유하고 있다. 워싱턴에 근거를 둔 지원팀은 무역에 해박한 무역정책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뿐만 아니라 USAID는 TCB 심화과정을 제공하기도 한다.

상무부의 상거래법발전프로그램(Commercial Law Development Program, CLDP)은 무역자유화와 시장기반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국제상거래법기준에 기반한 법들의 초안을 작성하고 시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들을 도울 수 있는 무역관련 법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3) 주인의식(OWNERSHIP)에 기초한 무역원조

미국 TCB계획의 핵심은 TCB가 개발도상국 파트너 정부와 시민사회가 개발에 있어 무역을 가장 우선시할 때 비로소 최고의 효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특정 국가에서 무역 우선 정책을 필요로 한다면, 미국은 해당 국가들이 그들의 무역 발전 현안을 분석하고 필요 항

4) USAID, MCC, 무역개발청, 농림부, 에너지부, 내무부, 법무부, 노동부, 국무부, 그리고 운송부, 환경보호청, 상거래법발전프로그램, 국제무역청, 특허개발청, 그리고 상무부의 국가기술표준협회, 식약청, 연방무역위원회, 미국수출입은행, 해외민간투자공사 등

목이 무엇인지 가늠해 볼 수 있도록 알맞은 지원 활동을 한다. 개발도상국들이 자신들의 개발정책과 전략에 대하여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리고 그들이 미국의 개발활동에 협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개발도상국의 주인의식을 바탕으로는 무역원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MCA의 지원을 받기에 적당한 국가들이 그들 스스로의 발전에 가장 장애가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판단할 때, 그리고 그들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개인간의 협의 하에 그들만의 MCA 프로그램을 제안하려고 할 때, MCC는 그들의 성장 기여도와 빈곤 해소 정도를 고려하여 그 제안을 평가하고,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그 국가들이 온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해당 국가의 정책 재편성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MCC는 또한 자격 획득에 거의 다가섰지만 한두 가지의 지표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국가들을 위해 “문지방”(threshold)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범위가 작고 목표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국가들이 부정부패와 뇌물을 줄이기 위한 관세제도를 개선하고, 비즈니스 시작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자신들의 무역정책을 개선하고자 하는 동기 부여에 도움을 주는 무역 관련 요소들 또한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개발협력 파트너 국가 내에서 주요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무역원조에 관한 정책대화를 이끌어내고 지원을 하고 있다. USAID는 70개가 넘는 국가에서 분야별, 지역별 현안을 수행중이다. USAID의 지역 현지의 주재는 그들을 지역 기반 관리들과 국가개발과 무역원조의 우선권을 가지는 다른 주요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연계를 가능케 했다. 미국은 IF와 같은 무역원조를 조정하기 위해 다자적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지역 공여 활동까지 참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의 교섭과 관련된 TCB 실무그룹(Working Group)은 무역 상

대국들이 미국과의 협정을 준비하고 교섭, 시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민간부문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는 모든 무역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USAID의 현지 주재는 서로 다른 조직 및 단체들을 접촉시키는 데 특히 유용한 접근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4) 미국의 무역원조 프로그램 지지(ALIGNMENT)의 근거

미국은 자신의 무역원조 프로그램 근거로서 파트너 국가들의 정책 계획과 예산의 기본구조를 이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공여국들이 자신들의 지원을 파트너 국가들의 국가개발 전략, 제도, 절차에 바탕을 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정부는 무역 관련 분야를 포함한 경제적 개선 의지를 보인 파트너 국가들을 그들의 TCB 원조 대상으로 삼았다. 그래서 그 동안 개발도상국들은 자신들의 정책계획이나 예산 선택을 통해 그러한 공약준수의지를 미국 정부에게 보여준 사례가 많다. 예를 들면, MCA 참여는 선택된 국가들로부터 최고 수준의 공약준수를 요구한다. MCC 접근방법에서 파트너 국가들은 자신들의 무역 선호도에 바탕을 둔 MCA Compact 프로그램의 TCB 요소를 결정한다. 지금까지 MCA 참여국가들은 무역에 비교적 높은 우선권을 두었고, 절반이 넘는 MCC 프로그램이 무역 관련 내용이었다.

5) 공여국들간의 조화

미국은 하나의 공여국의 능력을 넘어서는 범위의 무역원조에 대한 분석과 국가적 차원에서 다른 공여국들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공여국들의 활동이 더욱 조화로워지고 투명해지고 총체적으로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정부는 다른 공여국들과 함께 TCB 분석 및 계획을 조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방법을 이용한다. 미국은 말리와 모잠비크에서

의 IF의 공여 촉진자로서 역할을 수행했으며, 세계은행과 무역 통합 연구를 함께 했다. TCB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과잉 지원을 줄이기 위해 다른 공여국들의 지원을 받는 상대들에게 직접적인 현지 업무가 수행되었다.

그리고 미국은 지역적 그리고/또는 다자적 프로그램을 위해 무역 원조규모를 늘려가고 있다. 미국의 TCB 원조는 수혜국과의 관계를 지속한다는 지역적 임무의 확장된 네트워크에 이익이 되는 지역적 그리고 양자적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유연성과 지역적 필요와 책임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할 수 있었다.

6) 성과의 관리

미국은 자신의 무역원조 전략과 프로그램을 위하여 목표와 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며, 또한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미국의 무역원조 활동은 굉장히 다양하고, 해당 목표와 기간들은 각각의 국가와 프로젝트에 따른 특정한 상황을 반영하여 정해진다. 몇몇 활동의 기간은(예를 들면, 무역정책에 관한 문제 교육) 아마 몇 주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활동들(예를 들면, 무역과 운송 기준, 절차, 하부시설의 조화를 위한 지원)은 대개 수년이 소요된다.

미국 정부가 어떻게 TCB의 목적과 기간을 설정하는지 보여주는 예로써, MCC의 파트너 국가들과 맺는 협정을 들 수 있다. 성공의 척도로써 특정된 목표와 기간이 해당 국가와 원조 지역들의 상황에 최적화되어 설정된다.

무역 투자에 관한 기초 협정들(TIFAs) 또는 개발도상국과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기술적 원조가 미국 정부가 어떻게 TCB의 목적

과 기간을 설정하는지 보여주는 다른 예이다. 위의 협정들에서 상거래법발전프로그램(CLDP)은 미국의 파트너 개발도상국들이 무역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돕고 제안된 협정안이 법적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7) 무역원조의 평가방법

USAID는 무역원조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집단평가법(Cluster Evaluation Methodology)의 시행 과정 중에 있다. 이 평가방법은 세계은행 및 다른 거대한 다자간 기관에서 사용되던 방법이다. 집단평가법은 때로 다구역 평가법(multi-site evaluation)의 소분류로 묘사되곤 하지만, 몇몇 목표들과 사용된 방법들이 상이하다. 집단평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집단평가는 교차확인(cross-confirmation)을 함으로써, 더 큰 중요성을 갖는 공동의 맥락(threads)과 주제를 밝히기 위하여 일단의 프로젝트를 교차하여 검토한다. 집단평가는 단순히 일단의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아보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집단평가는 평가의 결과물이 누구에게나 가치 있을 수 있도록 모든 역할자들(프로젝트 구성원들, 공여자들, 그리고 외부 평가자들)이 평가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 작업(collaborative way)이다. 집단평가를 수행하는 개별적인 실행자들과 외부 평가자들과의 관계는 친밀하며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집단 평가자들이 프로젝트의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 문제점, 불만 따위를 직접 경험하여 나누게 함으로써, 쾌적하고 편안한(comfortable) 프로젝트 환경을 보장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평가내용의 유용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집단평가법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 프로젝트의 집합적 집단이 자금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떻게 성공하였는지 판단하는 것(목표 지향적 평가)
- 개별적인 프로젝트의 결과를 자금이 투자된 프로그램/지역에 관하여 폭넓은 권고사항으로 옮기는 것(실용적 평가)
- 어떤 작업(일)을 할 것인가에 관하여 일단의 프로젝트 수행자들과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컨센서스를 발전시키는 것(참여적 평가)

MCA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개발원조의 효율성, 책임성, 그리고 투명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프로그램 고안의 초기 단계에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MCA Compact의 발전은 과정을 평가하기 위하여 명확한 목표와 벤치마크(benchmarks)를 세우고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계획을 포함한다. 모니터링과 평가는 프로그램의 시행과 그 외의 것을 모두 포함하며, MCA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범위로 한다. 무역을 다루는 MCA 프로그램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루어진다.⁵⁾

8) 공동 모니터링과 평가에 있어서 협력

미국은 무역 관련 원조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조 모니터링과 평가 기법을 강화시키는 장치를 개발하는 OECD의 활동에 참여했다. 또한, 평가들을 포함한 국제개발청 발전 간행물이 온라인에서 공개적으로 열람 가능하다.⁶⁾

9) 상호 책임 협정에의 참여

상호 책임(mutual accountability)이란 공여국과 개발도상국이 개발 성과를 공동으로 평가하기 위해 적시(適時)에 투명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5) 이 밖의 MCC의 모니터링과 평가법에 관한 정보는 다음 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http://www.mcc.gov/countrytools/compact/fy07guidance/english/29-guidelinesformande.pdf>

6) <http://dec.usaid.gov/partners/evalweb/>

서로 제공하는 것을 나타낸다. 미국은 무역원조정책과 프로그램 약속의 실현 과정을 되짚어보는 일에 파트너 국가들, 지역 기구들, 기타 공여국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있다. 파리선언(the Paris Declaration)은 원조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나은 개발 성과를 얻자는 관점에서, 더욱 긴밀한 수혜국-공여국 사이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적 개발활동과 조정과정을 장려하고자 한다. 미국은 파리선언 54개 모든 조항상의 공약을 지지했다. 이러한 조항들 중 12개에서, 지표들과 목표들이 원조 효과 발표 과정을 감시하는 약속의 일부로 지정되었다. 미국은 질적 체계를 정의하고 평가하는 합의된 방법을 결의할 때까지 공여자에 관련된 목표를 보류하였다. 이는 미국이 그러한 보류를 없애기 위해 적극적으로 후원한 DAC-다자적 제도-집행 국가 협력관계로 발전되고 있다. 국가 단위 또는 지역 단위에 위와 같은 구조가 존재할 경우, 미국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2006년 파리 선언 평가 조사의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구조를 가진 국가는 조사된 국가의 44%에 불과했다.

제 4 절 미국의 ODA 시행 사례(2)

I. 양자간 원조

1. 지역별 할당

(1) 세계 안보 지원의 우선순위

미국은 140여개 국가에 ODA를 지원하고 있다. 2003년 이후 이라크에 대규모의 원조를 제공하여 중동 지역으로 원조 할당량이 많이 기울었다. 이라크에 대한 원조는 210억 달러가 완전히 지급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no-year funds”를 채무면제와 재건을 위해 2003년에 제공한 바가 있다. 2005년에 이라크에 지급한 금액은 채무 면제 39억 달러

가 포함된 108억 달러이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할당된 기금은 2004-05년에 양자간 ODA의 48%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의 국가 안보에서 이 나라들이 얼마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대조적으로 미주지역에 대한 원조는 규모로나 지급 지분으로나 크게 감소하였다(2001년에 26%에서 2005년 7%). 또한 유럽에 대한 원조도 양자간 ODA의 3%로 감소하였다.

(2) 사하라 사막 남부 아프리카 지역의 원조 증가

2005년 G8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2000년 이후에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제공하는 원조가 3배 정도 증가하였고 2004년을 기준으로 2010년까지 두 배로 더 늘이겠다고 선언한 바가 있다. DAC의 자료에 의하면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총 ODA는 2001년에는 14억 7천 달러이었다가 2005년에는 41억 6천 달러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 지역의 양자간 원조 내역은 긴급식량원조, 난민원조, 재해 대비, HIV/AIDS 통제와 교육에 대한 긴급 원조의 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증가 요소에도 불구하고 2005년에 이 지역의 할당된 총 원조량은 DAC 평균 34%에 못 미치는 19%에 달했다. 2010년까지 이 지역에 대한 원조를 두배로 늘이겠다는 공약은 대부분 이전의 주요 공약들(예를 들면 MCA, AIDS구제를 위한 대통령의 긴급계획(PEPFAR), 대통령의 말라리아 퇴치 발의 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가의 특정 지침, 자금 책정, 대통령의 발의, 인도주의적 필요성 등은 미래에 이 지역에 대한 양자간 원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2. 분야별 원조 할당

(1) 사회적 기반시설과 서비스에 가장 많은 원조 지원

2000년 이후에 미국은 사회 기반시설과 사회 서비스분야에 이전보다 더 많은 원조기금을 할당했다. 이런 추세는 미국 대외 원조가 민주주의를 지지 하는데 중점을 두는 한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기초적인 사회서비스를 목표로 한 대통령 발의와 특별 기금

기초적인 사회 서비스(basic social services)⁷⁾사업을 지지하는 ODA는 DAC 공여국들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은 이 분야에서 2001년에 14억 4천달러에서 2005년에는 31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증가한 양은 PEPFAR로 인한 상승분과 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sation(GAVI)에서 이루어진 특별 기금에 의한 것이다.

기본적인 보건, 인구정책, 출산 보건 분야 액수가 2004년에 DAC에서는 6%인 것에 비해 2004-05년 양자간 원조제공이 10%까지 증가하였다. 이와 반대로 기초적인 교육과 식수 공급/위생분야는 각각 2%와 4%씩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DAC의 평균 수치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3) 경제적 기반시설과 서비스 및 생산 분야에 대한 낮은 수준의 원조

USAID는 DAC 빈곤감소네트워크(POVNET)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빈곤과 경제성장을 연결하는 메시지를 구성하고 특히 농업과 기반시설에 대한 네트워크 작업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기반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할당량은 2004-05년에 미국의 양자간 원조분야의 13%(33억 4천 달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DAC의 17%와 비교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2003년 이후로 더 많은 원조를 하였지만 2004-05년에 7%를 기록하여 DAC 평균인 8% 보다 낮은 수준이다. 미국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농업과 기반시설에 특별 금을 우선적으로 제공하지 않았지만 MCC는 2005년 이후에 이 분야에서 많은 양의 원조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했다. 초기의 9개의 약속(Compacts)을 보면 기금에 사용된 20억 달러 중에 66%가 농업과 기반 시설 분야에 사용되었다.

7) DAC의 기본적 사회서비스의 범주에는 기초적인 교육, 기초적인 보건, 인구정책, 개인의 개발, 기본적인 식수공급, 기초적인 위생 등을 포함한다.

(4) 인도주의적 원조 제공

미국은 인도주의적 원조에 있어서는 유일하게 큰 규모의 공여국이다. 2004-05년에 긴급 원조, 재건, 자연재해 대비에 사용되는 공적개발원조의 13%인 32억 8천달러가 할당되었는데 이것은 DAC의 평균인 7%와 비교된다. 미국 정부는 2004년 인도양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대규모로 공적 원조와 개인적인 원조를 모두 국가적인 차원으로 모아서 3억 5천만 달러를 원조로 사용하였다. 그 이후 추가로 재건 사업에 6억 3천만 달러를 제공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아프리카에 Darfur지역과 수단의 서쪽지역에서는 인도주의적인 원조를 6억 8천만 달러를 받았다.

(5) 식량 원조

미국은 식량원조를 세계에서 가장 대규모로 제공하는 국가이다. 긴급상황에서 식량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USAID는 식량을 보장하고 미래의 긴급상황을 피하기 위한 장기개발프로그램에서 식량을 제공하기도 한다. OECD정보에 의하면 개발식량원조, 구제식량원조를 포함한 전체 식량원조는 2002년에 15억 달러에서 2005년에 23억 달러로 증가한 반면 동시에 2000년 이후에 식량원조국채는 감소하였다.

농업예산 지출조항을 보면 2006년에 식량원조에서 행정부에서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2억 달러를 받았다. 하지만 의회는 국제적인 재해와 기아원조 기금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았다. 이것은 자연재해로 인한 기아현상에 현금으로 신속하게 원조를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6) 여성 개발사업

USAID는 여성개발실(Women in Development Office)에 대한 예산이 지난번 동료검토 이후에도 변화 없이 1천만달러로 유지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총 양자간 ODA와 비교했을 때 여성개발(women in development, WID) 분야의 원조는 2001-02년 0.23%에서 2005년 0.1%로 감소되었다. 이것은 총 양자간 ODA 자체가 전체적으로 크게 증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미국정부는 DAC에 남녀평등에 초점이 맞춰진 ODA를 보고하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성문제가 이끌어내기 힘든 주제이며 보통 현지 활동에 통합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AC는 주요 지역과 분야에서 남녀평등을 위한 지출액에 대하여 미비한 자료라도 있을 경우 굉장히 환영하는 이유는 이 분야에서의 정부 개입의 질과 양을 평가하기 위해서이다.

II. 다자간 원조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이 기간 동안 다자간 기관들에 대하여 미국이 지불한 ODA총량은 균일하지 않았다. 2001년에 26%로 최고점에 도달했다가 2004년에 17%까지 떨어진 수치는 DAC 평균인 28%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 2000년과 2005년의 자료를 비교하면 총 다자간 ODA는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국제기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미국은 다자간 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MDBs)에 가장 큰 규모의 세계에서 유일한 공여국이다. 세계은행그룹에서 미국의 의견, 결정권,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 재무부는 이 기관들을 정부 차원에서 감시하며 개발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MDBs에 대한 미국의 접근방법은 재무부가 의회를 위해 발행한 문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MDBs의 정책은 원조 효율성 원칙과 폭넓은 대외 정책 목표와 같은 많은 내용이 있다. 정부는 이 기관들에 대해 적극적인 개혁안을 추구하여 다음과 같은 예측 가능한 결과에 초점을 맞추었다.

- 1) 최빈국과 채무가 가장 많은 취약국에 대출 대신 무상원조 제공
- 2) 민간주도개발방식정책(pro-growth)의 대한 국가 실행과 약속준수

3) 선치(good governance), 특히 부정부패에 맞서기 위한 폭넓고 심층적인 다자간 노력

미국은 미국 대외 정책 목표와 연관된 MDBs 정책 확립을 위하여 미국 자체의 영향력을 적절하게 사용한다. 정부의 지위와 영향력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재건사업, 분쟁 이후 원조 및 국가 재건, 또는 에이즈에 대한 전쟁과 같은 미국의 우선순위 문제들에 대한 다자간 기관들의 지원에 성공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다른 공여국처럼 미국은 다자간 의제에 양자간의 시각을 적용시켜 결국 좁은 시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되어 다자간 원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관리에 어려움을 겪도록 하는 것을 피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Ⅲ. 빈국의 채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원조조치

2005년에 다른 G8 국가들의 협조로 미국은 무거운 채무를 가지고 있는 빈국에 대하여 다자적인 채무면제를 승인하는 다자간 채무면제 구상⁸⁾(The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이라 불리는 획기적인 합의를 확정한 바가 있다. 미국은 또한 채무 대신에 무상원조를 늘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였다. 이런 노력의 주요 목적은 빈곤하고 취약한 국가에 있어서 개발원조에 대한 불안정한 채무 기간을 끝내기 위해서 이다. 미국은 2005년 회계연도에 이라크의 채무를 포함하여 대략 42억 달러를 면제해주었다. 나이지리아에 대한 양자적 채무 면제는 2006년에 6억 1천9백만 달러로 ODA가 늘어났다.

8) 다자간 채무 면제구상(The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은 빛이 많은 국가들 중에서 자격이 된다면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기금, 국제통화기금에서 빌린 채무를 100% 면제시켜 주는 것이다. 그동안 42개국에서 채무 면제를 6천억 달러를 받아왔다. 추가적인 무상개발원조와 결합되어 유지할 수 없는 채무를 면제해줌으로 새천년개발목표를 이루는데 중요한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 이 구상은 아프리카개발기금과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의 도움으로 자금을 제공 받는다.

IV. 공적 원조 이외 기타 원조

1.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원조

USAID는 역사적으로 개발원조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특히 피 원조국 정부가 까다로운 파트너이거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 미국 및 여러 국가의 NGO, 재단, 영리 기업 등과 협력하여 활동해왔다. 점점 NGO는 세계개발동맹(Global Development Alliance)과 같은 공공부문과 사적부문간의 협력 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USAID와 더불어, 국무부의 인구·난민·이민국(Bureau of Population, Refugees and Migration)에서는 분쟁이 일어난 지역의 희생자들과 난민에 대해 인도 주의적 원조와 보호를 위해 매년 40개가 넘는 NGO에 원조를 제공하였다. 2005년 회계연도에 인구·난민·이민국은 미국 및 기타 국제 NGO에 책정된 예산의 12.9%인 9천7백만3백 달러를 원조하였다.

NGO는 USAID 워싱턴 본부나 현지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는 여러 방법을 통하여 지원을 받는다.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다년간의 ‘협력 협정’(cooperative agreements)과 무상 원조다. 무상원조로는 USAID가 NGO 프로그램의 일부 혹은 전체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해준다. 지속적인 원조가 유지되게 하기 위해 몇몇의 무상 원조 프로그램은 수혜국에 현금으로 원조해주기도 한다. ‘협력 협정’은 무상원조와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되지만 USAID가 실행 단계에서 아주 깊게 관여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관여하는 부분은 주요한 지위를 구체화하고, 주요 인사의 승인, 연간 활동 계획의 승인, 프로그램 목표에 관련된 진보의 검토 등이다.

2. 개인 금융공여(flows)

미국의 전형적인 공적 원조와 더불어 미국은 비공식적인 금융 공여

의 중요한 지점으로 존재한다. 워싱턴 본부의 정책 연구 단체에서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이러한 비공식적인 원조가 2004년에 700억 달러에 달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개발도상국가로부터의 개인 송금액은 이 금융공여의 2/3를 차지한다고 나타냈다. NGO에 의해 동원된 원조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타 개인 금융 공여는 주로 양자간 직접투자와 수출신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 5 절 미국의 ODA 정책 및 시행상에 나타난 문제점

I. ODA에 대한 빈약한 대중의 인식

미국 내에서는 “해외원조가 왜 필요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더 많은 미국 대중들의 여론은 세계 빈곤층의 더 나은 복지를 위한 공적 (정부) 원조와 비정부 원조 모두 지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외원조 정책에 대하여 상당한 비판이 존재한다. 이러한 비판 속에는 다음과 같은 인식이 자립잡고 있다.

- 단지 적은 비율의 원조만이 실질적으로 빈곤층에게 전달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 원조가 주로 미국의 정치적인 동맹국을 지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가장 지배적인 잘못된 인식은 대외원조가 국가예산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1995년의 설문조사에서는 많은 미국인들이 미국 대외원조의 규모와 범위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예를 들면, 원조가 실제 미국 연방예산의 1% 미만일 때에 18%에 이른다고 믿고 있었다). 더 근래의 설문조사는 이러한 의견을 재차 확인시켜주고 있으며 다른 공여국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주고 있다는 인식 때문에 세계 빈곤문제를 다루려는 정부의 노력에 미국인들이 저항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껏 정부는 국내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미국의 개발정책에 대한 여론을 분석해 보면, 원조의 역할과 규모에 대해 많은 오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과 소통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할 과제라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개발 활동과 성과를 대중화하고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USAID의 능력은 의회에 의해 제한되었다. 이러한 제한은 DAC 국가들 중 유일한 사례이며 필히 재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2002년 이후에 9/11사태의 영향과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종교집단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원조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증대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2002년의 설문조사에서는 테러에 맞서는 노력의 일환으로 큰 규모의 대외원조를 제공한 것에 미국 대중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시카고대외관계위원회의 2004년 설문조사에서는 인도주의적 목적, 에이즈, 인구 문제, 여성의 교육 등에 대한 대외원조를 지지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또한 미국 정치적 지도자 사이에서 대외원조에 대한 지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들 중의 64%는 개발도상국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외교 정책 목표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005년 설문조사에서는 GNI의 0.7%에 달하는 UN 공여국의 원조 목표를 미국이 실행하는 것을 지지하였고, 설문조사 대상의 71%는 다른 선진국과 같이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달성하기 위한 원조에 세금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아마도 이런 설문 조사에서 나타난 가장 전도유망한 점은 더 정확한 정보를 통하여 대중들의 지지를 더 많이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세금이 얼마나 원조로 제공되는지, 정부의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나 개발협력 사업에 관련된 사실들이 미국이 국제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두드러지게 하여 미국 대중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한다.

1) 의회의 역할

“견제와 균형”의 3권 분리 체계에서의 의회는 대외원조를 비롯한 미국의 정책실행에서 강력한 입법적 영향을 행사하는 역할을 한다. 의회는 연간예산평성과정을 통하여 행정부서가 실행하는 대외원조 프로그램에 대해 정기적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특히 의회는 개발협력분야에서 아주 상세한 수준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다. 아주 작은 소수에게만 관련된 사안에 대해 원조를 제공하는 것조차도 의회가 너무 깊게 관여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을 정도다. 아무튼 개발협력사업에서 의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은 특별한 관심을 받을 만하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한다. 이 문제에 대한 미국 이외의 외부의 의견은 미국의 의사결정과정 때문 굉장히 복잡하여 갈피를 못 잡고 허둥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의 유용한 역할에 대하여 현재 DAC에서 제안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 권고에 따라 기금 책정을 대체하는 것
- 의회의 위원회와 연락하여 고위급 지위(아마 대외원조관)를 확립하는 것
- 원조에 관한 정규적인 입법절차의 범위를 좀 더 투명하고 단순하게 만드는 것

2) 개발메세지의 공표

개발에 대한 인식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기관인 USAID는 미국의 대외원조가 어떻게 하면 민주적이고 잘 통치된 국가로서 국민의 필요에 반응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국가를 설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을 지원하기 위해서 USAID는 Development Outreach와 Communication Officers로 불리는 전문가 집단을 임명하였다. USAID의 각각의 해외 현장에는 여기에 소

속된 직원들이 적어도 한명씩 발령되어 정보를 공유하고 언론자료와 기타 통신자료를 작성하고 있다. 이 직원들은 실행계획과 영향 평가에 관련된 활동들을 감시하고 보고한다.

지난 2003-2005년 3년 동안 USAID의 홍보국에서는 대중인식의 제고를 위하여 1년에 평균 2백만 달러를 사용했다. 그 중에서 70만 달러는 매년 “공유하는 하나의 세계”(One Shared World) 운동을 관한 연구와 실행을 위해 사용되어 개발교육의 연구 자료와 소통수단으로 역할을 수행한 바가 있다. “공유하는 하나의 세계” 운동은 미국의 일하는 여성을 많은 대중과 연결하고 개발도상국의 빈곤, 기아, 질병, 문맹을 해결하기 위해 돕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개발협력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장 최근의 분석 자료를 토대로 대중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일관성 있고 적절히 확보된 전략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대중의 인식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공적기관과 민간사회단체와의 유대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II. 구속성 원조의 문제

조건부로 원조를 제공하는 데에 미국의회의 요구조건은 원조기금으로 조달된 물건들은 미국에서 생산되고 미국 공급자로부터 공급 받아야 하며 미국 국적회사로부터 서비스도 제공 받아야만 하는 조건이다. 이 관행은 원조프로그램에 사용된 공적 자금이 미국에게 경제적으로 뭔가 다시 되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 대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미국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다.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조건부 원조는 수혜국의 소유권 침해나 경쟁 제한으로 인해 원조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부작용이 크다. 예를 들어, 2003년에 미국 식량원조의 99%는 미국에서 생산되었다. 이로 인해 다른 상업 거

래가격과 비교하여 평균 33%까지 가격을 인상시켰다. 또한 미국 국적의 선박으로 배달된 75%의 식량원조는 추가로 50%에서 200%까지 배달비용을 요구했다. WTO농업협정의 범위 내에서 식량원조가 제공되었지만 식량원조 조항은 도하개발의제에서 논쟁이 되었던 이슈이다. 기술원조의 경우에 국외 현지에서의 미국 서비스가 가장 가격이 싼 선택사항으로 프로그램의 질적인 면에서는 적합한 것은 아니다. 미국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것은 비용이 올라가고 기술적으로도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미국산 제품만을 사용해야하는 조건을 조금 느슨하게 해야만 미국 원조의 효율성과 효과를 모두 올릴 수 있을 것이다.

DAC는 '최저개발국에 대한 비구속성 ODA에 관한 권고사항'(Recommendation on Unty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 the Least-Developed Countries)을 발표한 바 있듯이 국제적 기준은 구속성 원조(tied aid) 보다는 비구속성 원조(untied aid)를 더 요구하고 있다. 구속성 원조는 무역거래에서의 국경을 해제하자는 미국 정부의 평소 모습과 굉장히 모순되는 점이다. 하지만 미국의 주요 재건 원조 사업인 아프가니스탄 재건 사업은 DAC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 비구속성 원조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04년 입법에서는 비구속성인 새천년도전기금(Millennium Challenge Account, MCA)을 만들어 구속성 원조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변화하게 하는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 아직은 초기단계에 있는 MCA는 조달정책에 의존하여 실행되고 있다. 대개 조달과정을 감독하기 위해 수혜국이나 세계은행의 국제적 규칙을 변경해왔다.

Ⅲ. 정책의 일관성 문제

1. 왜 정책의 일관성이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가?

정책 일관성은 모든 OECD 회원국의 정부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가운데 특히 빈국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시 여겨진다. 정책의

일관성 없이는 정부의 비개발 부문의 정책과 활동이 개도국 빈곤층 감소에 대한 노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 국제사회는 아직도 이 주제에 관해 계속 연구하고 있는 중이다.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일관성이 중요시 되는 주요 정책 분야에는 농업, 무역, 투자, 이민, 환경, 분쟁 예방 등이 있다. 공여국들은 현재 원조의 규모를 확대시켜감에 따라 정책이 일관되지 않음에 따라 원조량이 줄어들거나 약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경제시장을 가진 미국의 정책은 개발도상국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 미국의 세계 지도자 역할은 미국의 정책결정이 다른 원조 제공국가에 참고자료의 중심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정책 일관성을 달성하는 일은 굉장히 복잡하고 방향이 확실한 작업을 필요로 한다. 정책의 초점이 세계 빈곤 감소나 다른 개발 목표에 있지 않은 국내 이익 공동체와 정부 기관에서는 특정 문제가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정부가 국제 문제와 항상 씨름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이런 문제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며 국내 내부 정치문제와는 다른 형태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이 과정은 행정부와 입법부인 의회간의 세력 다툼으로 인해 복잡해진다. 행정부와 의회간의 의견 대립의 결과로 의회는 독자적으로 정책을 세워서 어떤 정부기관과 특정 이익 공동체와 따로 협상된 정책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발협력에 관한 정책 일관성에 대해 미국이 혁신적인 접근을 하는 것은 큰 과제로 남아 있으며 고위층의 정치적 지도자의 참여가 이 과정에 필요하다.

2. 미국의 개발 정책 일관성

미국은 현재 국가안보전략(NSS)에 따라 대외원조에 대해 응집력 있는 접근법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국가안보의제는 그 동안 개발협력 사업을 비롯한 미국 외교정책의 토대가 되었다. 이 의제는 현재 비전, 조직, 자

금, 직원을 포함한 미국 개발 협력 사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중요한 점은 안보와 개발간의 관계가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안보를 확보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개발사업에 좌우되며 개발이 안보활동에 부분적으로 좌우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 안보의제를 넘어서면, 미국은 개발에 있어서 정책 일관성에 대한 공식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정책 일관성이라는 용어는 역대 미국정부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정부의 개발협력 기관간의 내부적 조정작업을 일컫는 말이었다. 이렇게 사용된 용어는 정부개발 협력단체가 점점 분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인지하기 시작했으며, USAID와 같은 주요 개발기관의 의견이 지난 십 여년간 권한을 잃고 중심을 잃게 되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정책 일관성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공적개발협력의 현재 체계의 여러 면을 보아, 정책 일관성은 필요한 때에 체제가 가동되는 임기응변 방식으로 실행되었다. 이런 주먹구구식 행동을 지지하는 것은 백악관에서 직접적으로 내려온 지시에 따르는 국가안보위원회(National Security Council)에 의해 조장되었다. 국가안보위원회 웹사이트는 개발협력 사업이 하찮은 주제가 되어버리는 매우 고차원적인 문제에 대해 폭넓게 접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문제는 국가안보위원회의 문제제기에 의해 정책조정위원회(Policy Co-ordination Committees)에서 모습을 드러내어 정부 간의 정책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조기 경보, 인도주의적 대응, 안보 및 정의 등과 같은 재건과 안정화의 문제는 특정한 정책조정위원회에 의해서 조정된다. 국무부 산하 ‘재건과 안정을 위한 조정관실’은 이런 특정 그룹에 있어서 사무국의 역할을 한다.

구조를 조정하는 더 많은 종류의 임시 정책이 있다. USAID는 국제 회의와 G8 정상회담을 위해 기관 내 지위에서 대한 작업을 하였다. 또한 지역적 의제(CAFTA, AGOA 등),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 식량과

농업 문제 등에 대한 기관 내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것은 모두 통합되어 서로 다른 기관의 시점을 연결하는 노력으로 보여 졌다. 하지만 대부분은 반작용을 나타냈고 협력을 이끄는 강력한 개발 시각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다. 가장 중요한 점은 DAC에서 지난 10년간 노력해왔던 좀 더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일관성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개발 분야를 미국 대외 정책의 3개의 대들보 중에 하나로 만들기 위한 정치적인 결정과 동반되는 협력기구는 개발정책의 일관성을 위한 더 체계화된 정부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바람직한 징조 하나는 대외원조관실에서 앞으로의 향후 5년간의 대외 원조의 전략적 계획을 이끌어 나갈 것이며 다른 기관들도 참여하도록 권고할 것이고 개발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회의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3. 개발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 촉진

미국에 있어서 도전과제는 국제적인 지침, 즉 “21세기의 형성: 빈곤층 감소에 관한 DAC의 가이드라인”과 2002년의 “공동의 개발의제를 위한 OECD행동”이라는 각료 선언과 같은 공적 약속을 일관성 있는 적절한 구조, 제도, 의사결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개발 원조 위원회의 회원국에서는 새로운 법률 제정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 과제를 받아들였다. 미국은 개발을 비롯하여 관련된 모든 분야의 정책을 책임지는 각기 다른 정부 기관의 협조를 강화시키는 데에 노력을 기해야겠다. 3D의 출현으로 인해 외교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현재는 개발 정책 일관성의 중요도를 정식으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은 국가적인 접근이 더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부 정책의 영향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한다.

1) 고위층의 참여

OECD의 경험은 국가의 정치적인 지도자의 참여가 개발 정책 일관성의 필수 조건이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을 할당받는데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에서는 개발 분야가 한 단계 발전한 것이 개발에 대한 정책 일관성을 뚜렷하게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이런 의견은 일관성 문제에 있어서 더 우선순위를 갖고 더 투자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 수 있으며 정부와 다른 동업자들이 더 넓은 범위의 작업을 조직화하고 지도자들을 배정하도록 힘을 실을 수 있다. 정치적인 관계자와 대중적인 의견은 이런 종류의 정책 일관성에 정치적인 지지가 동원되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런 점들이 USAID와 대외원조관실의 정책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2) 조직의 리더쉽

명확한 전략 없이는 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에 대한 조직적인 접근은 미 완성적이고 임기응변식으로 밖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대외 원조 사무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부 원조 체제의 서로 다른 부분들을 더 잘 연결시키기 위한 현재의 노력은 정책 일관성을 논리적으로 강조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다. 조직적인 리더쉽은 더 넓은 네트워크에 필요한 연결 고리들과 함께 확실히 정의 내려져야 한다. 미국은 조직화가 잘되어 있는 개발 두뇌조직과 비정부 변호 사업을 가지고 있어 정책 일관성에 관한 대규모의 작업이 변호사업과 함께 외주에서 조달될 수 있다. 이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 역시 정부 이외에서나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작업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국가 안보위원회에 국제개발원조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USAID의 고위층 전문가가 이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끝으로, 국가의 외교 정책 최우선 사항은 내각에서 개발에 대한 의견을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혜국의 소유권의 개발에 대한 노력을 정부에서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과 국내에서 행해지는 USAID와 대사관의 개입은 미국은 차차 정책 일관성 문제에 관한 국가적인 평가에 세계적인 시각을 접목시켜야 하는 필요성과 기회를 가지고 있다.

3) 분석의 촉진과 우선순위 파악

정부는 현재 개발 정책 일관성을 정의하고 분석하는 공식적인 능력이 부족하다. 국제 정책 일관성에 관련된 주요 문제들의 중요성을 미국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했던 정부 체제 이외의 분석적인 단체와 연결되어 이 능력을 갖도록 장려하고 있다. 아마도 언급되었던 5개년 전략적 계획은 이 주제와 관련된 정부의 참여를 분명하게 밝힐 것이다. 대외 원조의 다섯 가지 명시된 목적은 분석을 위한 적절한 초기 체제로 사용될 수 있다. 동시에 정부가 현장에서 더 대중과 가깝고 특정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 주제에 관해 고려하는 것은 수많은 국제적인 동업자들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유럽 공동체는 회원국 안에서 개발 정책 일관성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려고 노력 중이다. 이런 그룹에 관련한 분석적인 동맹은 국제 사회에서의 개발 정책 일관성에 대해 더 보편적인 시각을 갖도록 장려할 것이다.

IV. ODA 시행기관의 파편화 문제

양자간 그리고/또는 다자간 ODA를 제공하는 26개 정부 기관은 느슨하게 관계를 맺고 있으며, 때론 서로 업무가 중복되기도 하고, 가끔은 서로 다른 위임사항을 가질 때도 있다. 개발협력사업에서 통합된 체계가 부재하다는 것은 기관끼리 연결이 잘 되어있지 않거나와 정기적인 소통조차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각 기관의 상대적인 장점에서 각각 이익을 추구하는 체계의 특성을 살린 기관의 다양성으로 인해 이제껏 계속 이런 분열 상태가 정당화 되어왔다. 개발협력사업

의 정치적 우선순위가 더 높아진 이후로 미국 내에서는 조직의 파편화(fragmentation) 문제에 대해 최근 논란이 더 많아졌는데 특히 이런 분열 상태에의 단점인 비효율적인 체계와 예측하기 힘든 결과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다.

개발협력사업은 주로 6개 기관, 즉 USAID, 국무부, MCC, 국방부, 재무부, 농림부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USAID는 1961년 창립된 이후로 개발 체계 조직의 중심 역할을 해오며 미국 정부 개발협력의 전문가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국무부는 외교문제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국무장관이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해 조언을 주는 역할을 한다. 외교, 군사, 경제 등의 폭 넓은 문제에 관한 외교 정책 목표를 실행하고 있다. MCC는 2004년에 의회 양당의 지지로 만들어진 후 미국 개발 협동 작업에 있어서 혁신적이고 새로운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MCC 행정 하부 조직은 30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해외 활동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개발협력사업에 초점이 조금 덜 맞춰진 국방부, 재무부, 농림부 등은 미국 개발협력사업의 추가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 전문적인 ODA 관련 경험을 가진 직원이 많지 않다. 2005년에 국방부에서 큰 규모의 정부 개발원조 관리 역할을 맡은 바가 있는데, 이것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대규모 재건 사업에 미국이 개입하고 있었고 인도양 쓰나미 이후 큰 규모의 인도주의적 구제가 실행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ODA 사업은 비정부 조직, 개인 민간단체 등에 의해서도 시행되고 있다. 비정부단체들은 1961년에 창립된 이후로 USAID 원조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는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의 중요한 협력자이다. 이런 비정부단체는 규모가 크고 기금이 잘 모아지며 가끔은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부처가 개발협력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과의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안정, 안보, 변화, 재

건”(SSSTR)에 관련된 분야에서 협력관계가 필수적이다. 국무부에서 재건과안정관리국(Office of Reconstruction and Stabilization)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이 협력 작업을 촉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개발협력 기관의 주요 그룹을 통한 협력 사업은 필요할 때마다 임기응변적이고 실용적인 형식으로 조직화 되어 왔다. 다만 조직간의 협력 필요성을 공감하여 중요한 개발협력사업에 대해 기관들의 합동작업을 도모하기 위해 주요 감시 단체인 국가안보위원회(National Security Council)나 예산관리실(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이 일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간의 협력을 도와주는 것은 했지만 체계적이고 전략적이지는 못했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방법을 시작한 것은 국무부가 2006년 4월에 대외원조관실(Office of Director of Foreign Assistance)(DFA)을 설립하면서부터이다. 대외원조관실은 대외원조 정책, 계획, 감독을 모두 통합하고 합리화하는 우산 구조로 설명된다. 대외원조관의 지위가 국무부 차관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아 개발사업에 부여된 새로운 정치적인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USAID의 수장인 청장(Administrator)이라는 직함도 가지게 되어 개발사업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제어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대외원조관실을 설립하는 취지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어떤 전문가들은 이렇게 기관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USAID가 사라질지도 모르며 미국의 개발 지도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하기도 했다. 반면에 다른 전문가들은 개발기관이 외교 분야로 통합되는 것이 개발에 대한 문제를 더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국무부 조직에서 대외원조실은 폐지되고 USAID에 대외원조국(Bureau for Foreign Assistance)가 신설되었다.

5 ODA 가

제 1 절 미국의 개발협력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 OECD/DAC의 동료평가(2006)

I. 전반적인 ODA정책체계에 대한 평가

1. 서 언

미국의 전반적인 ODA 정책에 대한 설명은 이미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즉 미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원조국이며, 역사적으로 피원조국의 필요와 자신의 외교정책의 목표에 의하여 자국의 개발원조정책을 정당화해왔다. 20세기 후반에 원조의 정치적 이유는 대부분 냉전과 관련되어 있었다. 1990년대 초, 공산주의의 붕괴로 인해 미국은 ODA의 정책방향을 심도 있게 재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2001년 9·11 사태와 그로 인한 “테러와의 전쟁”은 개발협력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변화시키는 시발점이 되었다. 그 이후 미국정부는 의회와 국민의 개발협력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시키기 위해 국가안보의 논리를 사용했다. 다양한 정책들의 표명은 국가 안보와 관련하여 개발의 역할을 정의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중 두드러진 정책은 2002년과 2006년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ies, NSS)인데, 이는 2002년 DAC 동료 검토 이후 상당히 새로운 방향으로 미국을 변화시켰다.

2. 출발점으로서 빈곤 감소에 대한 미국의 개발전략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개발(development)을 외교(diplomacy) 및 국방(defence)(the 3Ds)과 함께 국가 외교 정책의 세 가지 핵심 중 하나로 인식한다. 국무부는 이러한 전략적 관점에 기반을 두면서, “전세계의

많은 협력국들과 함께 그들 국가의 국민의 필요에 부응하고 국제 사회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정부를 설립하고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환외교(Transformational Diplomacy) 정책을 만들었다. 이 정책이 외교 및 국방과 같은 수준으로 장기적인 개발을 위한 명확한 목표가 될 수 있는지, 또는 개발이 다른 우선 순위 정치 목표를 지원하는 도구 역할만 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변환외교는 활동 기반(operational matrix), 즉 대외원조기본체계(Foreign Assistance Framework)를 구체화했다. 이 체계는 아직 세계적인 빈곤을 감소하기 위한 국제적인 목표를 온전히 지원하지는 않지만, 이를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지구상에 널리 퍼져 있는 빈곤문제는 세계적인 불안감을 야기하는 주요한 요인이며, 빈곤을 감소시키는 것은 미국 국민의 기대에 부합한다. 또 다른 도전은 국방부를 포함한 모든 미국 정부의 개발 관계 기관들에게 대외원조기본체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이 기본체계는 주로 국무부와 USAID의 활동을 지도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취약 국가에서 모범적인 국제개입 위한 DAC원칙초안’(Draft DAC Principles for Good International Engagement in Fragile States)과 일치하게, 정부는 취약 국가의 개발, 국방, 외교 및 인도적 공동체를 가장 잘 결합시킬 수 있는 접근방법을 추구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다양한 공동체 사이의 대립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해야 한다. 또한 공동체 사이에는 상보성(相補性)이 존재하며, 이 민감한 균형은 예를 들어, 인도적인 분야에서의 원조활동이 불필요하게 군사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을 요구한다.

대외원조기본체계가 더 자세히 정의되고 이용됨에 따라, 새천년도전 협회(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와 같은 다양한 미국의 원조제도

및 국제 원조국으로서의 경험에서 배운 운영 교훈에 더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국제 원조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춘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aid effectiveness)의 원조 효율성 의제를 포함한다. 새로운 기본체계는 시스템의 간소화, 다른 원조국과의 협력 확대, 국가 주도 개발에 대한 집중 확대, 능력 개발 및 지방적 절차와 같은 이슈들을 연결하는 목표를 포함할 수 있다.

3. 개발협력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정보의 제공의 필요성

여론조사는 미국 국민이 세계의 빈곤 국가의 복지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원조를 지지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테러와의 전쟁과 관련된 전략은 빈곤 감소를 미국 정책의 1차적 목표로 강조하지 않았음에도, 2001년 9월 11일 사건 이후에 이러한 지지는 더 확대되었다. 국민은 정부 원조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방법에 대해서 냉소적이다. 이것은 빈곤 국가에는 원조 규모 중 적은 비율만이 제공된다는 인식과 미국에 우호적인 정권을 원조하는 것과 같이 이러한 원조가 더 정치적인 목적으로 변질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공적 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의 냉소와 오해는 더 활발하고 전략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의회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자원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론 수렴을 위한 정부활동은 최근에 더 신중해졌다. 개발 원조에 대한 여론의 영향과 미국이 제공하는 원조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고려한다면, 정부와 그 개발협력국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이 우선 순위 과제가 되어야 한다.

4. 권고 사항

- 1) DAC는 3D(Diplomacy, Defence, Development) 대외정책 내에서 개발을 우선순위로 격상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으면서 개발을 외교와 국방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식해야 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빈곤 감소를 중요한 사항으로 더 확실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 2) 대외원조기본체제는 ODA의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될 가능성을 있다고 평가하고,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해 향후에 정부의 모든 개발 협력 기관들을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라고 권고하였다. 이 기본체제는 또한 다양한 국가 환경에서 성과를 달성하려는 미국의 방법을 의회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가 되고 국제원조 효율성과 관련하여 모범 사례(good practice)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3) 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고, 미국에게 다른 공공기관, 개인, 시민사회 조직과의 협력을 추구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더 명확한 목표를 확인시키고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는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II. 원조 규모와 할당에 대한 평가

1. 높은 수준의 ODA 기록

동료평가 직전인 2005년에 276억 달러의 순 ODA를 제공한 미국은 원조 규모에서 DAC 회원 중 1위를 차지했다. 이 ODA는 당시 국민총소득(GNI)의 0.22%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총 ODA 규모는 198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었지만, GNI 통계에서 미국은 DAC 국가 중 끝에서 두 번째로 기록되었다.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이라크에 대한 재건과 부채 탕감, 아프가니스탄의 재건과 마약 근절 활동, 아프리카 특히 수단과 에티오피아에서의 특정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2000년 이후에 미국은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을 ODA로 제공하고 있다(제2장 제2절 미국의 ODA 현황 참조).

새로운 기본체제는 미국에게 더 큰 규모의 원조에 대한 국제적인 약속에 따라 더 장기적인 ODA 계획을 실행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양자간이든, 다자간이든, 여러 나라가 관련된 것이든, 그러한 계획은 동시에 더 전략적으로 원조를 배분할 수 있다. 미국정부는 원조 규모를 증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취약 국가와 분쟁 종료 국가를 포함한 저소득 국가 및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게 원조를 포함하여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2. 주요 할당 경향의 지속

현재 원조액의 할당은 몇 가지 과거의 조직적, 지리적 및 분야별 배당 추세와 일치하며, 때로는 의회의 예산 책정 및 대통령 발의 (Presidential Initiative)와 관련되어 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정부 기관 사이에 있었던 지속적인 자금 분산과 USAID로부터 벗어난 ODA의 지속적인 방향 변경이었다. 2005년에 USAID가 전체 ODA의 38.8%를 관리했다. 이는 2002년 50.2%에서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감소의 중요한 원인은 국방부가 관리하는 ODA 지출이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관리한 ODA규모는 2002년 5.6%에서 2005년에 21.7%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전세계적인, 특히 중동 지역에서 안보 지원을 위한 예산 증가 경향과 일치한다. 그러나 USAID가 가장 경험이 많은 정부의 원조제공자이며 개발협력 전문가 중 대부분이 이 기관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USAID 자금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할 수 있다.

미국정부의 ODA 할당은 거버넌스, 사회봉사, 긴급원조 및 재건 부문에서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정부의 경제성장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과 생산분야에 대한 자금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다자간 ODA 규모가 해마다 오르락 내리락하는 변화가 계속된 반면에, 총 ODA에서 차지하는 다자간 ODA의 비율은 이전 동료 검토 시점인 2002년의 26%에서 2005년 8%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DAC에

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DAC는 오랫동안 개발에 대한 양자간 접근 방법과 다자간 접근 방법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장점을 인정하고 있다. DAC는 또한 다자간 원조의 감소는 미국 정책의 변화가 아닌 다양한 요소에 기인한 결과라고 파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평가위원회는 미국이 다자간 자금 공급 분야에서의 역할을 재검토하도록 권장하였다. 미국은 또한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에 바탕을 두고, 다자간 체도에 ODA를 배당하기 위한 더욱 명확한 실행 위주 기본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런데 현재 미국 내에서는 이러한 기관들에 제공된 원조의 성과 및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한 일관된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

3. 권고 사항

- 1) DAC는 미국의 ODA 규모가 상당히 증가했다는 점과 빈곤 국가의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제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해 기울었던 다양한 노력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미국이 원조규모를 증가시키고 다양한 방법들과 국가들에게 자금을 더 전략적으로 배당할 수 있는 장기적인 ODA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 2) 위기에 직면한 국가들과 긴급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원조의 배당 증가는 현재 미국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미국정부에게 이러한 국가들을 원조하는 것과 장기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증대된 개발 활동이 필요한 국가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다.
- 3) 다자간 체제에서 미국 정부의 자금 운용은 계속 오르락내리락하며 변화해 왔으며 ODA의 다자간 원조의 비율은 최근 몇 년 간 감소해 왔음을 지적하면서 DAC는 미국 정부가 다자간 체제에서 더 강력하게 재정 지원 역할을 수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는 다자적 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일관된 실행 체계에 의해서 유용하게 지지될 수 있을 것이다.

Ⅲ. ODA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평가

1. 정책의 일관성 촉진

개발협력을 위한 미국 정책의 일관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미국 정부의 핵심 쟁점인 빈곤 감소에 대한 미국 정부의 더 명확한 비전이 필요하다. 정부는 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비전에 근거하여, 개발 의제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을 더 잘 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적인 구조, 리더십(대외원조관실) 및 자원 지원이 제자리를 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DAC 파트너들은 그러한 점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이러한 쟁점에 대해 국제적인 관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협력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경제의 규모 및 세계적인 영향력에 비추어 볼 때,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논의는 무역, 투자, 자금 공여(financial flows) 및 환경과 같은 핵심적인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2. 권고 사항

미국 정부에게 개발에 대한 정책 일관성의 역할과 관련하여 더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도록 권고한다. 또한 정책의 일관성을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를 들어, 싱크탱크(think tanks), 대학 및 시민 사회의 자원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Ⅳ. 대외원조의 관리에 대한 평가

1. 미국 시스템의 통합

미국은 26개의 정부 기관들이 ODA 제공에 관여하고 있지만, 2005년에는 5개의 기관(USAID, 국방부, 농림부, 국무부, 재무부)이 자금의 90% 이상을 운용하였다. 이러한 조직 파편화(fragmentation)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 국무부 산하 대외원조관실(Office of the Director of Foreign Assistance)의 설립과 함께 2006년에 발표되었다. 그것은 “모든 대외원조 정책을 계획하고 감독하고 합리화하고 조정하기 위한 우산 리더쉽 구조(umbrella leadership structure)”라고 설명되었다. 개발에 적합한 새로운 정치적 중요성과 일치하고 통제 범위를 강화하기 위해 대외원조관을 국무부의 차관 및 USAID 청장으로 임명하였다.

이 조직의 운영 방식이 더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원조 제공 시스템의 다른 부분들과 관련된 대외원조관실의 역할과 책임을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분산된 해외 자원으로부터 전문가의 의견을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것은 개발과 관련된 관점이 실제 현장의 상황, 효과적인 빈곤 감소에 대한 운영상의 통찰력, 국가의 필요에 근거하여 형성되도록 보장할 것이다. 리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적 개발에서 국무부와 USAID를 넘어서서 또 다른 중요한 ODA수행자로서 대외원조관실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대외원조관실은 또한 정부 기관 이외의 다른 협력자들과 활발하게 협조해야 한다.

특히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조직적인 혁신은 2004년에 “저소득 국가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지원을 통한 빈곤 감소를 위해서” 만들어진 MCC의 출범이다. MCC 현장 활동은 아주 초기적 단계이며 그 실행은 많은 국가에서 단지 시작을 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파리선언의 원조 효율성 원칙에 따라 미국의 원조 시스템을 어떻게 더 광범위하게 적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이것은 협력지역의 주인의식과 성과에 기반을 두고 의회의 배당을 포함하지 않는 자금 조성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가능성들을 정부 시스템의 다른 부분으로, 그리고 더 높은 효율성을 위해 협력 국가를 더 광범위하게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MCC

전략과 자원을 미국의 전반적인 개발 노력으로 통합하는 방법은 아직 완전하게 결정되지는 않았다.

2. 새로운 조직 환경에 적합한 원조 관리체제의 확립

미국의 원조 조직을 재조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구조에 맞는 새로운 관리 방법이 필요하다. 대외원조관실의 창설과 함께 많은 관리 기능(기획, 예산, 감시)이 한 곳으로 표준화되고 집중화되었다. USAID와 국무부를 위한 집중화된 원조 기획 및 예산 편성이 대외원조기본체계 모델을 통해 시작되었다. 그리고 공동프로그램 평가와 책임성 확인 작업이 실행되고 있다. DAC는 이러한 개혁의 대부분을 바람직한 활동으로 간주할 것이다. 미국이 국내 관리시스템을 조화롭게 일치시킨다면, 현장의 다른 국제적 및 지역적 협력자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만약 운영상 단순화와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두 시스템이 전통적으로 기대하는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개발을 위해 국무부와 USAID에 대해 별도의 또는 병렬적 시스템을 공통의 성과 위주 체제로 통합하는 것은 도전이 될 것이다. 대외원조기본체계와 활동가들 사이에서 명확하게 지정된 역할을 통해 우선순위 개발 목표를 확인하는 것은 성과를 감시하고 보고하는 것을 간소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미국정부는 양자 시스템의 성과 위주 관리를 원조 효율성과 동일한 것으로, 또한 “돈의 가치”에 대한 의회의 주장을 설명할 최선책으로 본다. DAC는 원조 효율성을 협력국가와 원조 단체와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국제적인 문제로 본다.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협력 국가 시스템과 절차를 강화하며, 협력을 통한 성과를 추구하는 정부의 더 명확하고 조직적인 활동은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국제적인 파리선언의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이것은 또한 직원과 위임된 협력자들을 공유함으로써 원조국의 화합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의회는 자금 배당과 그 밖의 지시 사항에 광범위하게 관여함으로써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국 원조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한하는 단체로 널리 알려져 있다. 대외원조관실은 이러한 상황이 대외원조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더 나은 방법을 제안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 의회가 상당한 규모로 영향을 주는 또 다른 분야는 미국의 자원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행하는 구속 원조 관행이다. 이것은 경쟁을 제한하고 비용을 증가시키며 현지 지역의 주인의식을 손상시킴으로 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대외원조관실은 또한 구속적 원조로 발생하는 비용과 이러한 활동이 능률 및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DAC의 비구속적 원조 권고와 일치하게, 미국은 비구속적 원조를 위하여 추가적인 활동을 확인하고 실행하는 작업을 지속해야 한다.

3. 권고사항

- 1) 대외원조관실은 그 구조와 실행 절차가 발전함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적인 개발협력 시스템을 위한 전략적 참조(strategic reference)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정부가 개발과 인도적 활동에서 국방부에 더 큰 역할을 부여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원조활동이 긍정적으로 조정되고 1차적으로 개발 성과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군사 조직과 개발 조직 사이에서 각각의 운영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3) MCC의 경험에서 배운 교훈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 4) 미국정부는 주인의식과 관련된 활동을 포함하여 비구속성 원조 및 로컬 시스템을 강화하며, 성과를 추구하는 파리선언의 의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원조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현재 미국의 목표를 지원해야 한다. 새로운 대외원조관실은 원조 효율성에 관한 파리선

언의 원칙과 미국의 대외원조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 5) 원조 효율성과 관련된 파리선언에 근거하여, 공유의 성과 및 공동의 교훈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의 정부기관들이 다른 원조국들과 더 많이 대화하도록 권고하였다.
- 6) 국무부와 USAID를 성과 위주 관리방법(result-based management)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취급비용(transaction costs)을 감소시키고 동시에 미국 정부 내의 일관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현재의 시스템을 통합하며 체계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첫 번째 단계이다. 우선순위 개발목표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정부기관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하였다.

V. 인도적 원조에 대한 평가

공적인 인도적 원조분야에서 양자간 원조의 가장 큰 국가로서 미국의 역할은 다른 다양한 활동에 의해서 보충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에는 중대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우월한 활동력과 기술력, 다자간 기구 및 비정부 기구들과의 밀접한 연대, 민간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활동 등이 포함된다. 다양한 분야에서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고, 그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유지하며, 인도적 대응을 공평하게 유지하는 약속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수준으로 핵심 예산을 유지하여 보조 자급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긴급 식량지원제도의 혁신을 위한 자발적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러한 혁신을 통해 미국은 효율성을 유지하고 상처 입기 쉬운 국민(vulnerable people)에게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USAID와 함께 대외원조관실은 지역 기반 필수품을 위해 의회의 지원을 얻어내도록 노력하고 현금에 기반을 둔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인도적 원조 체계는 원칙과 목표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왔다. 더 광범위한 원조 체계의 혁신은 인도적 원조에 대한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다. 이것은 불안정한 환경에서 인도적 활동가들과 더 광범위한 개발, 안보, 평화 조성 목표와 관련된 당사자들 사이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인도적 원칙과 방법을 재확인하고 정부 전반에 걸쳐 이해해야 한다. 새로운 대외원조기본체계는 인도적 활동을 위한 다양한 기회와 도전을 제공한다. 특히 이것은 인도적 활동에 책임이 있는 정부의 다양한 구성요소들 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중기적으로, 인도적 활동에 책임이 있는 다양한 기관들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행정부가 안보, 안정화, 복구 및 국가 건설과 관련된 더 광범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보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도록 보장하고, 독립적인 인도적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공간이 중요할 것이다. 이 문제는 특히 중동과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불안정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된 복잡한 “회색 지대”(grey zone) 환경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정부의 모든 정책은 인도주의와 장기적인 개발 활동과의 관계를 더 명확하게 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것은 오랫동안 지속된 위기 상황에서 기본적인 공공사업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개발을 위한 범위를 제공하며, 이 분야는 다양한 인도적 활동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국가를 위해 식량 안보를 강조하는 평화를 위한 식량(Food for Peace)과 식량 안보에 대해 덜 제한적이고 더 현금 기반적인 방법을 고려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러한 노력과 그 밖의 단계들은 인도주의적 정부 관료들이 삶과 생활환경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에 대응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도적 분야에서의 많은 업적 중에, 미국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것은 인도적 필요와 인도적 원조의 실행 및 영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개선한 것이다. 특히 프로젝트 사이클의 모든 단계에서 피원조국의 관점을 고려함으로써, 그리고 현장보고를 포함하여 내부보고체계에서 인도적 지원 공여국 협의회(Good Humanitarian Donorship) 지표를 더 많이 사용함으로써 협력 활동의 감시와 평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권고 사항

- 1) 국무부와 USAID는 미국의 인도적 활동을 감독하기 위해 우선 전략 계획(2007 - 2012)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이것은 다양한 미국 기관의 접근 방법을 더욱 통합하고, 인도적 활동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의 노력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한 체계를 제공할 것이다.
- 2) 긴급식량원조 조직의 지속적인 개혁을 계속해서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 3) 정부의 인도적 태도와 개발 범위 사이의 연결을 인도적 원칙에 맞게 강화해야 한다. 취약 국가에서 기본적인 공공사업을 위한 지원을 증가하고 심각한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안전망(safety nets)에 대한 투자를 더 오랜 기간 지속해야 한다.

제 2 절 미국의 ODA 평가체계

I. 개 관

USAID는 원조목표(Assistance Objectives, AO)를 수립하고 이행하는 기관이고, AO는 전세계에 걸쳐서 선택된 국가들과 지역의 개발 상태를 개선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ADS(The Automated Directives

System)⁹⁾ 203장(Chapter)은 USAID 운영 단위 기관들(USAID 사업단들(Missions), 지역 플랫폼(Regional Platforms), 워싱턴의 여러 국(局)과 실(室)(Washington Bureaus and Offices), 이하에서는 **USAID 사업단/부서**들로 표현함)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의 계획된 성과를 잘 달성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이용될 USAID의 실행과 기준에 관해 지침(guidance)을 제공한다.

ADS 203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1) AO팀(Team)은 성과를 관리하고 보고하기 위하여 어떻게 양적 및 질적 이행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
- 2) 계획한 개발 성과를 달성함에 있어서 교육을 장려하고 장래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떻게 이행감시와 평가의 도구를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
- 3) Portfolio Reviews, 미국 정부의 연례 공동 운영계획(OP), 미국정부의 연례 공동 이행보고서 등과 같은 과정들을 USAID 및 그 부서 차원에서 어떻게 AO를 평가하고 이행 분석 및 교육에 기여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

9) ADS는 USAID의 지침 관리 프로그램이다. USAID의 정책지침, 필요 절차, 그리고 유용하고 선택적인 자료들이 ADS를 통하여 만들어지고 명백해지고 발표되었다. 기관의 직원들은 이러한 정책지침 및 필요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ADS는 다음을 포함한다. ① 기관의 정책지침과 필요 절차, ② 관련 법률(laws), 행정명령, 규정(regulations), ③ CFR에 있어서 USAID의 외부 규정, ④ 선택적이고 유용한 정보와 모범 관행의 사례, ⑤ 건본 문서 및 가이드라인 방법, ⑥ 정책 통지(임시 업데이트), ⑦ 유효한 USAID 핸드북

ADS는 기능별로 편제된 6가지 시리즈로 나뉘어져 있다. 시리즈 내에는 ADS 장들(Chapters)과 시리즈와 연결된 임시 중간 업데이트가 있다. ADS 챕터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정책 영역을 다루고 있다.

- 100: USAID의 조직과 법적 문제(Agency Organization & Legal Affairs)
- 200: 정책(Programming Policy)
- 300: 조달과 원조(Acquisition & Assistance)
- 400: 인원(Personnel)
- 500: 관리업무(Management Services)
- 600: 예산과 재정(Budget & Finance)

- 4) 목표한 성과를 달성함에 있어서 나타난 진보(progress)를 제한하는 요소들과 목표한 성과의 달성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의 종류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
- 5) USAID는 어떻게 USAID 내에서 배운 교훈을 미국 정부의 대외문제 다루는 기관들에게 공유하기 쉽도록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

간단히 말하면, ADS 203장의 주요한 내용은 USAID 사업단/부서들이 사전에 AO가 달성하려고 했던 성과를 구체화한 경우에 어떻게 계획된 성과를 달성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성과를 평가할 것인가 등 AO의 효과(impact)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ADS는 강제적 지침(mandatory directives)과 비강제적 지침(non-mandatory directives)으로 나눌 수 있다. 강제적 절차는 ‘must’ ‘required’ 등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강제 절차는 USAID의 정책과 과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명령적이거나 또는 법(law), 규정(regulation), 행정명령, 또는 구속적 합의에 의해서 요구되어 진다. 일부 사례에 있어서는 법, 규정, 행정명령, 또는 구속적 합의가 예외, 면제(waiver)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기도 한다.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절항(paragraph)의 서두에 ‘mandatory’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비강제적 절차는 ‘should’ ‘recommended’ ‘may’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정하고 있다. 비강제적 절차는 운영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강제절차에 대해서는 괄호 안에 (강제)로 표기하고, 비강제적 절차는 (비강제)로 표기한다.

II. 이행관리

1. 의의

이행관리(performance management)란 프로그램 운영의 달성 정도를 모니터링하는 체계적 과정이다. 계획된 성과에 대한 진보를 추적하기 위하여 이행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 AO 의사결정과 자원 할당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이행정보 및 평가를 이용하는 것, 조직적 차원의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달성한(또는 달성하지 못한) 성과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 등을 말한다.¹⁰⁾

1993년 ‘정부의 이행및성과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GPRA)은 모든 미국 정부 기관들에 대한 전략적 계획수립 및 이행평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USAID 사업단/부서들은 ADS 592에 설명된 이행관리에 관한 USAID 정책 준수 여부에 대해 감사를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USAID 사업단/부서들과 AO팀은 대의원조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수립 단계에서 구체화된 성과의 진보(progress)를 평가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이행관리의 개념은 평가, 교육, 공유를 위해서 사용된 도구들을 포함한다. 이행관리는 가능한 한 최고의 개발 결과를 성취하기 위하여 AO를 관리함에 있어서 USAID의 헌신(commitment)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행모니터링(performance monitoring)과 평가(evaluation) 사이의 차이점을 구별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2가지 도구들은 상이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행모니터링은 의도된 결과가 나타났는지 여부 그리고 AO의 결과가 궤도에 올라와 있는지 여부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what)을 이행하는지 다루는 것이다. 그리고 이행 모니터링은 AO의 전과정 동안 지속적으로 모든 단계에서 계획한 성과의 진보를 평가하

10) ADS 200.6

기 위하여 사전에 선택한 지표들을 이용한다. 평가는 도대체 ‘왜’(why) 이행하는지(또는 왜 이행하지 않는지)의 문제에 대해서 답하는 것이다. 평가는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활동의 영향과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평가는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활동의 성공 여부에 대한 이유를 밝히기 위하여 정례적인 주기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다. 평가는 또한 장래의 개입을 위한 교훈을 이끌어내는데도 이용될 수 있다. 평가는 전형적으로 사전에 선택한 지표들 이외에 양적 및 질적 방법 등을 사용한다. 그리고 평가는 이행모니터링과 달리 계획한 성과 뿐만 아니라 계획하지 않았던 성과까지 검토할 수 있다. 평가는 또한 AO의 개발 가설(Development Hypothesis)을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와 새로운 증거에 기초한 조정의 기회를 제공한다.

2. 이행관리과정

이행관리에 있어서 주요한 4가지 주요단계는 다음과 같다.

1) 이행관리를 위한 기본체계의 확립

AO팀은 그 성과기본체계(Results Framework)를 발전시키기 때문에 오랜 기간에 걸쳐서 달성하고자 한 성과의 단계(hierarchy)를 정하여야 한다. 동시에 AO팀은 어떻게 그러한 성과의 진보를 감시하고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 이행지표를 선택하기
- 시간에 따른 진보를 측정하고 진보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 평가 및 특별연구를 계획하기
- 프로그램/프로젝트의 출발점과 변환점을 정하기
-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수집방법, 데이터수집의 빈도 그리고 데이터수집의 책임, 편집, 분석, 데이터 질 평가 등을 구체화하기

- 이행, 자원 할당, USAID 사업단/부서들의 진술(story)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이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2) 이행정보의 수집과 분석

계획한 성과의 진보를 추적하기 위한 이행 정보의 수집과 분석, 이행정보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나올 수 있다. 예를 들면, 협력자의 진보 보고서, 정기평가 또는 초청 정부에 의해 수행된 특별연구, 기타 공여국 또는 USAID 자체로부터 이행정보를 얻을 수 있다. AO팀은 적절한 시기에 프로그램/프로젝트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해석해야 한다.

3) AO 의사결정과 자원 할당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이행정보의 이용

USAID사업단/부서들은 보통 AO의 이행단계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4) 성과에 대한 의견교환(communication)

조직의 교육을 향상시키고, 미국정부의 전체적인 대외원조목표를 달성하는데 USAID의 기여를 드러내기 위하여 달성한 또는 달성하지 못한 성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의사소통(communication)은 USAID사업단/부서들에게 그 자신의 스토리를 초청 정부를 포함한 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파트너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역적 파트너들 및 소비자들과 이행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핵심적인 이해관계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는 것을 도울 수 있고, 성과개선을 위한 방법을 구체화할 수 있다. 의사소통은 프로젝트 평가서, 연례활동계획서, 또는 이행보고서 등과 같은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보고서들은 USAID 및 기타 미국정부의 관련

기관들 내에서 교육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의사소통은 이행관리의 강력한 요소이다.

3. 효과적인 이행관리를 위한 주요 원칙

이행관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USAID사업단/부서들 및 그들의 AO팀은 이행 지향적인 문화(performance-oriented culture)를 키우는 주요 원칙들과 관행들에 대한 광범위한 헌신 내지는 준수약속을 보여주어야 한다. AO팀들이 자신들의 이행관리활동의 정규적인 파트로 다음과 같은 원칙과 관행을 사용할 때 USAID의 신뢰성은 강화된다.

1) 이행관리를 위한 계획의 조기 수립

AO팀들은 새로운 원조계획을 개발하는 동안 이행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원조체계의 다양한 요소들을 모으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찍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예비적인 이행관리계획(PMP)에 관해 작업할 때 일부 USAID 사업단/부서들은 이행을 측정할 데이터가 부적절하거나 또는 이용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그들은 적절하고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게 된다.

2) 기본적인 이행 데이터의 결정

USAID 사업단/부서들은 성과 달성에서의 진보를 평가하고 이행 개선에 관한 관리를 결정하기 위해 이행정보를 이용해야 한다.

3) 참여의 모색

USAID 사업단/부서들 및 AO팀들은 다음과 같은 이행관리단계에서 소비자, 파트너, 이해관계자 그리고 기타 미국정부 기관 등의 관여에 의해 이행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 ① 이행관리계획들(PMPs)의 개발
- ② 이행감시정보 및 경험의 수집, 해석 그리고 공유
- ③ 이행지표의 중요한 세트를 공동으로 결정
- ④ 평가결과의 공동 검토
- ⑤ 평가결과배포 계획의 공동 수립
- ⑥ USAID의 이행관리활동의 파트너의 유사한 과정과의 통합
- ⑦ 파트너들이 그들 자신의 이행관리 및 평가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지원

이 영역에서 피원조국 또는 로컬 조직의 능력 배양에 대한 필요는 프로젝트의 시작단계에서 구체화되어야 하고 적절한 예산이 책정되어야 한다.

4) 과정의 간소화(streamline)

AO팀들은 이행관리에 직접적으로 가장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의 부담 및 수집과 분석에 비용이 현저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5) 투명성

USAID 사업단/부서들은 정보를 폭넓게 공유하고 정직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투명성(transparency)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4. 이행관리를 위한 예산

USAID 사업단/부서들은 이행관리작업을 위한 충분한 기금조성과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경험상 총 프로그램 자원의 5-10%가 이 목적을 위해 할당되어야 한다.

Ⅲ. 이행관리계획(PMP)

AO팀들은 그들에게 책임이 있는 각 원조목표에 대하여 완전한 이행관리계획(performance management plans, PMPs)을 준비하여야 한다. 이 요건의 목적은 초기의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활동 조건에 관한 적합한 기초데이터를 제공할 지표들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행관리계획은 원조목표를 달성한 진보를 감시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보고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관리하는 도구이다.

1. 완전한 이행관리계획의 내용

완전한 원조관리계획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이행지표의 충분한 설정

PMP는 왜 각각의 이행지표가 선택되었는지 간략하게 정당화해야 한다.

- 2) 기준 가치와 목표 가치의 제공
- 3) 어디에서나 적용가능한 성(sex)에 관한 이행 지표의 분해
- 4) 데이터의 출처와 데이터 수집방법의 특정
- 5) 데이터수집 일정의 확정
- 6) 이미 알려진 데이터 제한에 관한 설명
- 7) 데이터의 질 평가절차의 설명
- 8) 비용의 산정
- 9) 가능한 평가활동의 확정
- 10) 이행관리업무의 추진일정

2. 완전한 이행관리계획의 형식

완전한 PMP 형식의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USAID사업단/부서들은 자신들의 관리와 의소소통에 필요한 최상의 형식을 이용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완전한 PMP는 25페이지를 초과하지 않으며 부록 또는 AO팀 파일은 모든 추가적인 정보를 담는데 이용될 수 있다.

IV. 이행관리계획(PMP)를 위한 이행지표의 선택

1. 이행지표의 정의 및 중요성

이행지표란 성과기본체계(Results Framework, RF)에서 확인된 성과(results)에 대한 변화의 척도를 의미한다. 이행지표는 의도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한다. 이행지표를 잘 선택하면 주요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알릴 수 있다. 이행지표는 효과적인 이행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중심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행지표는 프로그램 전략 및 활동에 관한 증거 위주 의사결정을 위한 필수적인 관리 도구이다. 성과는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확인해주는 반면 지표는 성과가 측정될 수 있는 기준(standard)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USAID는, 예를 들면, 비전통 수출의 달러 가치, GDP의 백분율로서 개인투자, 어린이 도덕성 비율, 입법적 개혁지수에 관한 진보 등 그동안 많은 이행지표를 발전시켰다.

USAID사업단/부서들 자신들의 PMP에 이행지표(performance indicators)를 포함해야 한다. 이행지표는 진보를 관찰하고 기대 성과와 비교하여 실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행지표는 왜 그러한 진보가 만들어졌는지(또는 만들어지지 않았는지) 보다는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행지표는 성과기본체계의 모든 단계에서 이행을 측정할 수 있다.

2. 이행지표의 유형

서로 다른 몇 가지 유형의 이행지표가 USAID 평가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다. 관리자가 효과적으로 내부관리를 충족시키고 기관의 보고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이행관리시스템을 고안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행지표의 서로 다른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1) 양적 및 질적 지표

이행지표는 성질상 양적이거나 또는 질적인 것일 수 있다. AO팀은 성과를 측정하는데 가장 적절한 이행지표를 선택해야 한다. 양적 지표는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람의 키 또는 몸무게 등과 같은 지표이다. 또한 “비전통적인 수출의 증가”와 같은 성과는 양적 지표를 사용하여 측정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질적 지표는 주관적 평가를 요구한다. 질적 데이터가 때로는 숫자로 표시된 형식으로 보고될 수 있으나 그런 숫자들이 셈법(arithmetic)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제도적 역량 지수 또는 진보 지수에 관한 스코어이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의 지지의 개선”과 같은 성과는 사전에 합의에 의해 설정된 “지지”(advocacy)를 심사함으로써 이행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문가 패널을 이용하는 것과 같이 질적인 접근방법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질적 성과는 진보를 양적으로 재면서 주관성을 완화하는 방법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측정될 수 있다. 질적 성과를 양적으로 재는 주요한 지표의 유형은 아래에서 설명한다.

- ① 이정표 지표(milestone indicator)
- ② 등급척도(rating scale)
- ③ 지수(index)

2) 정황지표(Contextual indicators)

정황지표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더 넓은 환경을 이해하고 전제(assumption)를 추적하거나 또는 성공, 실패, 진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externalities)를 검토하기 위해 사용된다. 정황지표는 프

로그램 이행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표는 최고 수준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황지수의 예로는 Freedom House의 지수 또는 GDP에 관한 스코어와 같다.

이러한 종류의 지표는 USAID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정황(예를 들어, GDP의 심각한 하락은 경제성장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수 가능성이 있다)을 이해하기 위하여 중요할 수 있다.

3) 기준지표(Standard indicators)와 관습 지표(custom indicators)

관습지표는 각각의 국가 또는 프로그램 맥락 내에서 독특하게 진보를 반영하는 이행지표를 말한다. 관습지표는 현장의 관리자에게 유용하다. 반면에 관습지표는 표준지표와 같이 많은 프로그램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신뢰할 수 있는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개혁과 이행을 반영하는 이정표 척도의 진보가 있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표들을 이용한다.

- NGOs 및 정당들과 협의하여 법률 초안이 개발되었다.
- 공적 인풋(input)이 유도되었다.
- 법률 초안이 피드백에 기초하여 수정되었다.
- 사무국이 의회에 초안을 제출했다.
- 법률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 적절한 정부 기관이 법률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내 정책 또는 규정을 만들었다.

기준지표는 1차적으로 기관의 보고 목적을 위하여 이용된다. 기준지표는 많은 프로그램들에 걸쳐서 모을 수 있는 데이터를 생산한다. 기준지표는 기관 보고와 현장의 관리 필요를 충족시킨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기준지표는 서로 다른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고안되었기 때문에 관습 지표와 대체할 수 없다. 많은 프로그램에 걸쳐 있는 기준을 측정하는 것과 프로그램 성과를 진실하게 최상으로 반영하

고 내부 관리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지표를 선택하는 것 사이에는 종종 긴장이 존재한다. 기준지표의 예를 들면, ‘미국정부의 기술적 지원으로 채택된 신뢰할 수 있는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법 또는 수정법률의 수’와 같다.

위에서 예를 들었던 관습지표와 비교하여 보면 관습지표가 관리 도구로써 더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관습지표가 더 크게 특정성을 갖고 변화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준지표는 아웃풋(output) 단계에서 변화를 측정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기준지표는 더 쉽게 많은 프로그램에 걸쳐서 모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정책 내에서 훈련된 사람의 수’와 같다.

2. 모범적인 이행지표의 특징

- a. 객관적임(objective)
- b. 실용적임(practical)
- c. 관리에 유용함(useful)
- d. 직접적임(direct)
- e. 미국정부/USAID의 활동에 귀속시킬 수 있음(attributable)
- f. 때에 알맞음(適時性을 가짐)(timely)
- g. 적절성(adequate)

V. 데이터의 질

1. 데이터 질의 기준

- a. 유효성(validity)
- b. 정직성(integrity)
- c. 정확성(precision)
- d. 신뢰성(reliability)
- e. 적시성(timeliness)

2. 데이터 질 평가의 목적

3. 데이터 질 평가의 수행

- a. USAID사업단/사무소의 데이터 질평가에 관한 일반적 지침
- b. 이행 협력자가 제공한 데이터의 질 평가와 제2차적 데이터 출처
- c. USAID에 의해 직접적으로 수집된 데이터(제1차 데이터)의 질 평가 수행에 관한 추가적 검토

VI. 평 가

평가(evaluation)란 판단을 내리고 실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리고/또는 현재 및 미래의 프로그램 작성에 관한 결정을 알려주기 위하여 AO, 프로젝트, 활동의 특성과 결과물에 관한 정보 체계적인 수집이다. 평가는 특정프로그램의 관리문제에 대답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분석 활동이다.

1. 평가는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한가?

AO팀들은 진보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삼아 AO의 생애주기 동안 적어도 한 번의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AO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평가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 주요한 관리 결정이 요구되었으나 그것을 행하기 위한 적절한 정보가 없다.
- 이행정보가 남성 또는 여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상지 못한 성과와 같은 설명이 필요한 기대하지 않은 성과(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를 보여주고 있다.
- 커스터머, 파트너 그리고 기타 알려진 피드백이 이행문제, 충족하지 못한 요구 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 또는 영향이 존재한다고 제한하고 있다.

2. 평가계획의 수립

평가의 범위는 이용 가능한 관리정보에 따라 변할 수 있다. 평가는 외부 전문가, AO팀의 멤버, 기타 미국 정부의 운영 단위의 식견이 있는 멤버, 기타 협력자 단체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AO팀은 최종 결과물이 유용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평가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은 평가문제에 우선순위를 두는데 협조하기 위하여 조언을 해야 한다. 평가는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서 최종 커스터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평가의 범위와 관계없이 계획수립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

- 평가목적을 분명히 한다(‘무엇’이 평가될 것이며, ‘누가’ 정보를 원하는가, 그들이 ‘무엇’을 알고자 하는가 그리고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 프로그램에서 강조하는 개발 가설에 대해 설명한다.
- 실험 관찰에 의한 증거를 통해 대답이 가능한 소수의 주요 문제와 특정 이슈들을 구체화한다.
- 평가방법을 선택한다.
-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 평가팀을 구성한다.
- 일정, 업무의 상세한 실시 계획, 보고의 요구, 예산 등을 포함한 절차를 수립한다.

3. 작업 선언

평가가 외부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계약되어 있다면 작업 선언(statement of work)은 평가를 위한 기본 틀의 제공하고 리서치 문제에 대해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잘 만들어진 작업 선언은 다음과 같다.

- 평가될 활동, 프로젝트 또는 방법을 구체화한다.
- 개발 가설과 그 이행에 관한 간단한 배경을 제공한다.
- 모니터링 데이터에 특별히 주의하여 이행정보의 출처를 확인한다.
- 평가의 목적, 평가의 독자층, 그리고 평가의 이용에 대하여 설명한다.
- 평가문제를 분명히 한다.
- 평가방법을 확인한다.
- 배포가능한자와 스케줄을 특정한다.
- 평가팀 구성 및 커스터머와 파트너의 참여에 관하여 논의한다.
- 보고와 배포를 위한 요건을 분명히 한다.
- 예산을 포함한다.

4. 평가방법

USAID 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한 표준화된 방법은 없다. 평가의 유형은 답변되어야 할 문제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평가의 범위, 목적, 평가의 주요 문제에 의존하기 때문에 평가 방법의 유형은 상대적으로 단순하거나 또는 더욱 복잡할 수도 있다. 어떤 특정한 방법을 설정하기 전에 평가자는 데이터 출처의 범위 및 질을 결정하여야 한다. 데이터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 그룹인터뷰
- 중심 그룹
- 조사(survey)
- 주요 자료제공자 인터뷰
- 직접조사법(direct observation techniques)
- 속성사정법(rapid appraisal techniques), 속성사정형 평가는 1주 또는 2주의 짧은 기간 동안 수행될 수 있으며 시간과 비용을 덜 필요로 한다. 속성사정은 그룹인터뷰, 중심그룹의 토의, 비정형적인 조사, 직접 관찰, 핵심 정보 인터뷰, 참여적 사정방법 등과 같은 데이터수집방법을 사용한다.

-참여적 사정방법(participatory appraisal methods), 이것은 최종 커스 터머가 평가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들은 특정한 유형의 데이터분석을 요구하는 질적 그리 고/또는 양적 데이터를 산출할 것이다. USAID사업단/부서들은 평가방 법론에 관계없이 평가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에서 가능한 한 엄격하게 다루어지도록 장려되고 있다. 평가와 관련된 많은 업무들(결과물을 측 정하는 것, 일관성을 보장하는 것, 수집된 데이터의 질을 유지하는 것, 활동과 결과물 사이에 통상적인 관련성을 확립하는 것, 외부요소 들의 영향을 확인하는 것 등)은 해결하기 쉽지 않은 기술적 또는 논 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평가방법을 선택할 때 USAID사 업단/부서들 및 AO팀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고려해야 한다.

- 정보, 분석, 요구되는 피드백의 성격
- 비용의 효율성
- 문화적 고려
- 정보를 필요로 하는 관리의 시간 틀
- 이용가능한 시간과 자원
- 요구되는 정확성의 수준

이러한 주의 깊은 고려는 예상 밖의 기술적 또는 논리적 문제를 최 소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평가의 목적이 AO프로그램의 효과를 확립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자 원(자금, 시간, 기술적 전문지식)이 충분하다면 더 복잡한 평가 기획이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프로젝트가 실시된 이후에 순수한(pure) 통제 그룹을 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평가방법의 무작위 추출은 AO프로 그램의 시작단계에서 확립되는 것이 최상이다. 이러한 유형의 평가에 착수하기 전에 2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1) 커스터머에게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할 할 수 있는 기획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윤리

적인 문제, 2) 평가계획의 완결성(integrity)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높은 기준의 데이터 질의 필요성

5. 평가에의 참여

USAID사업단/부서들은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커스터머와 파트너(이행 파트너, 동맹 파트너, 수원국 정부파트너 등)를 참여시키도록 권장받고 있다. 또한 USAID의 교훈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USAID 직원, 미국 정부 사업단/부서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들을 포함시키도록 권장받고 있다. USAID사업단/부서들은 평가에 더욱 협동적이고 참여적인 방법을 이용하도록 권장받고 있다.

<표 11> 평가의 유형과 평가 수행자

평가 유형	평가 수행자
내부 또는 자체 평가	USAID의 AO 팀, 또는 평가하는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파트너
외부 평가	외부 조직, 또는 AO, 프로젝트,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전문가
공동 평가	하나 이상의 기관 또는 파트너가 공동으로
참여적 평가	복합적(multiple) 이해관계자, 커스터머의 대표자, 파트너, 공여자의 기관, 평가의 모든 단계(평가계획 수립, 데이터 수집, 분석, 보고, 배포 그리고 후속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타 이해관계자

6. 평가문서의 작성

USAID사업단/부서들은 모든 평가의 결론단계에서 적절한 문서작성을 유지해야 한다. 문서작성의 성격은 평가의 형식, 중요성, 범위, 그리고

자원에 따라 변할 것이다. 최소한, 문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하여야 한다.

- 이용된 범위와 방법론
- 중요한 조사결과(평가자에 의해 수집된 실험 관찰의 사실)
- 결론(사실조사결과에 근거한 평가자의 해석과 판단)
- 교훈

평가보고서는 즉시 이해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주요한 포인트를 명백하고(clearly) 뚜렷하게(distinctly) 그리고 간명하게(succinctly) 확인하여야 한다. 모든 보고서는 해당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간략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요약(summary)을 포함하여야 한다.

7. 평가의 사실조사결과에 대한 대응

USAID사업단/부서들 및 AO팀들은 그들의 특정한 활동 및 AO와 관련이 있는 평가의 사실조사결과 및 권고사항을 발표하여야 한다. 제도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AO팀들은 평가의 완성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성과 또는 사실조사결과에 관하여 보고하고 논의하기 위해 평가팀을 만난다.
- 주요 사실조사결과, 결론, 그리고 권고사항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 해당팀이 각각의 사실조사결과, 결론 또는 권고사항을 수락하는지/지지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 모든 관리 또는 프로그램 활동을 확인하고 각 활동의 완성을 위하여 책임과 시간을 할당한다.

8. 기관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평가의 공유

평가보고서는 개발경험정보센터(Development Experience Clearinghouse, DEC)에 제출되어야 한다. 평가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USAID사업단/

부서들은 그들이 수령한 최종 초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적절하고 유용한 경우에 USAID사업단/부서들은 AO팀, USAID사업단/부서들 또는 상대방 기관 등의 반응을 제출할 수 있다.

VII. Portfolio Reviews

USAID사업단/부서들은 자신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다루고 있는 포트폴리오 리뷰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년 최소한 하나의 포트폴리오리뷰를 작성해야 한다. 포트폴리오 리뷰란 USAID사업단/부서들의 AO의 모든 면에 대한 정례적 검토이며, 때로는 연례 공동 운영계획(OP)을 준비하기 전에 수행된다(ADS 200.6). Portfolio Reviews는 전략적이고 운영적인 이슈들을 검토하고 USAID 지원활동이 승인된 성과기본체계 내에서 윤곽이 그려진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6

제 1 절 한국 공적개발원조 법제

I. 개 요

한국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법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법률 제9938호, 2010. 1.25, 제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296호, 2010. 7.21, 제정)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9993호, 2010. 2. 4, 일부개정)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144호, 2010. 5. 4, 일부개정)

한국국제협력단법(법률 제10095호, 2010. 3.17, 일부개정)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276호, 2007.9.17, 일부개정)

대외경제협력기금법(법률 제10303호, 2010.5.17, 일부개정)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일부개정)

II.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

한국의 ODA 운영체계는 크게 양자간 협력과 다자간 협력으로 나뉘며 양자 간 협력은 기본적인 실시체계가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이원화 되어 있다. 양자 간 공적개발원조 업무는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및 KOICA와 수출입은행 등 수탁기관 별로 분산 운영되어 왔다. 무상원조에 해당하는 무상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은 외교통상부의 감독 하에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해외연수생 초청, 전문인력 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등 무상원조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관지원 등의 유상원조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따라 유상원조는 재정경제부 감독 하에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에서 집행하고 있다.

이러한 분리된 공적원조의 이행으로 그리하여 무상·유상 원조 간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아울러 통일된 원조이념과 목표가 결여되어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고 원조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유·무상원조를 포괄하는 원조이념 및 목적, 관련기구 설치 등을 규정하는 ‘대외원조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 2005년 11월에는 “대외원조개선종합대책”을 통해 대외원조법 제정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17대 국회에서는 ODA 기본법 관련 4개 의원발의 법안이 제출되었으며 김부겸 의원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17대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18대 국회에서는 2008년 7월 송민순 의원의 ‘공적개발원조기본법’ 및 진영 의원의 ‘대외원조기본법’, 2008년 10월 배영식 의원의 ‘대외개발협력법’, 2008년 11월 김부겸 의원의 ‘국제개발협력법’이 각각 발의되었었다. 이와 별도로 정부 차원의 법제 마련이 진행되어 2010년 1월 25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10년 7월 26일 시행되었다. 동 법의 시행을 위하여 2010년 7월 21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되었으며,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목적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제1조). 이에 따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를 두어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제7조). 한국 ODA에 관한 기본계획(5년간)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이 주관기관(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 무상협력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수립지침을 정하고 주관기관은 시행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분야별 기본계획안을 제출하여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도록 한다(제8조). 한국 ODA에 관한 시행계획은 각 시행기관이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며, 주관기관은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한다(제11조). 주관기관인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는 5년간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제 한국의 ODA를 주관하며 i) 분야별 기본계획안 및 연간종합시행계획안의 작성, ii) 분야별 연간종합시행계획의 이행 점검, iii)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홍보, iv)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여하는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제10조). 주관기관은 중점협력대상국 선정기준 및 대상국가안을 국제개발협력위원회로 제출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요청 혹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국가를 변경할 수 있다(제12조).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시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한다(제13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러한 사항으로 시행령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까지),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 정보 공개의 대상(시행령 제13조)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한국의 ODA에 관한 분야별 기본계획안의 수립, 이 분야별 기본계획안과 연간 기본계획안을 확정한다. 또한 주관기관의 ODA 대상국가 선정 행위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ODA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주관기관인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는 5년간의 기본계획에 따라 자신의 분야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연간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며 이행을 점검한다. 시행기관은 연간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주관기관은 이에 대하여 협의 조정한다.

Ⅲ.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지구촌의 기상이변, 대형사고 등으로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는 일이 많아졌다. 이에 대규모 재난 시에 인명구조 및 재난구호에 기여하여 인도주의와 인류애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피해국에 긴급구호물품의 수송, 긴급구호대의 파견, 임시 재해복구 등 긴급구호활동을 신속하고도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외긴급구호란 i)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 ii) 구호물품의 지원, iii) 현금지원, iv) 보건의료활동, v) 수송지원, vi) 임시 재해복구, vii) 재해 또는 사고 원인의 조사 분석·해외재난과 관련된 유가족에 대한 현지 상담 등 해외긴급구호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제5조, 시행령 제2조)를 말한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외교통상부장관은 평상시 해외재난에 대비하여 그 종류·규모·특성에 따라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구호물품·장비의 비축·보관·정비, 구호인력·물품의 신속한 소집·수송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 해외긴급구호대책을 수립한다(제6조 제1항). 또한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해외긴급구조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등으로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하고, 해외긴급구호대 또는 해외긴급구조대를 파견할 수 있다(제11조 및 제12조). 또한 필요한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에게 인력·장비·물품 및 수송장비 등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제13조).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구성(시행령 제5조),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업무 분장(시행령 제6조), 해외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시행령 제7조)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구촌의

기상이변, 대형사고 등으로 인한 대규모 해외 재난 발생시를 대비하여 해외긴급구호대책을 수립한다.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해외긴급구호협의회는 정부에 의하여 설치되며 i) 해외긴급구호의 제공 여부에 관한 사항, ii) 해외긴급구호의 내용 및 규모에 관한 사항, iii)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방안에 관한 사항, iv) 정부와 민간 간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이러한 해외 긴급구호협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IV. 한국 국제협력단법 및 시행령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개발도상지역으로부터의 점증하는 협력요청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에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를 총괄적으로 전담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 형태의 한국국제협력단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법」과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은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제7조). i) 개발도상국가를 위한 사업으로서 연수생의 초청, 전문인력의 파견, 해외봉사단의 파견, 개발조사, 재난구호, 물자·자금 및 시설의 지원, ii) 국제협력을 위한 민간단체의 국제협력활동에 대한 지원, 외국의 원조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국제협력에 관한 이념 및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조사·연구, 그 밖에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iii)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iv) 위의 사업에 따른 교육훈련·홍보와 그 밖의 부대사업을 수행한다. 또한 이 법에 따라서 외교통상부장관은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 퇴치를 지원

하기 위하여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에 대하여 1천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제18조의 2). 이러한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 퇴치를 위한 용도로 국제협력단에 의하여 사용된다(제15조).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은 한국국제협력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구성(시행령 제2조에서 제4조), 한국국제협력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에 관한 세부사항(시행령 제6조에서 제10조),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징수업무의 대행, 관리·운영(시행령 제10조의 2에서 제10조의 7)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법」과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은 국제협력단의 설립과 운영 그 출자금의 형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협력단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V.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및 시행령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및 「대외경제협력기금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정부는 대외경제협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그 기금은 i) 정부출연금, ii) 정부투자기관 또는 경제단체의 출연금, iii)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iv)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차입금, v)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vi) 기금의 운용수입금으로 조성된다(제3조, 제4조).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금융기관등이나 외국정부, 외국금융기관, 국제금융기구 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 할 수 도 있다(제5조).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i) 개도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 교류를 증진하는데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협력사업’이라 함)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대출 또는 출자, ii) 협력사업의 준비를 위한 조사 또는 협력사업의 시험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용자, iii) 개도국의 경제안정을 위하여 특히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자를 당해 국가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용자, iv) 기타 개도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v)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vi)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제6조). 이 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맡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제9조). 기획재정부 산하 기금운용위원회기금은 운용·관리에 관한 i)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ii) 기금운용계획, iii) 결산보고사항의 사항을 심의한다(제10조).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에 관한 사항(시행령 제2조),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시행령 제5조에서 제7조), 개도국 정부로부터의 요청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절차(시행령 제11조), 기획재정부장관의 기금운영계획수립(시행령 제12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및 「대외경제협력기금 시행령」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는 경제협력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이렇게 조성된 경제협력기금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운영·관리하며, 기획재정부 산하 기금운용위원회기금은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계획, 결산보고사항을 심의한다.

제 2 절 법제적 차원의 시사점

제 3 절 한국 공적개발원조 정책

I. 수행방식

한국의 ODA 운영체계는 크게 양자간 협력과 다자간 협력으로 나뉘며 양자간 협력은 기본적인 실시체계가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이원화 되어 있다. 무상원조에 해당하는 무상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은 외교통상부 감독 하에 원조집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이 집행하고, 유상원조는 재정경제부 감독 하에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편 무상원조 중 무상자금협력사업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전담하고 있지만, 기술협력사업은 그 외 다른 정부부처 및 기관에서도 일부 분담, 실시하고 있다.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무상협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각각 주관한다. 다자간 개발협력 중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밖의 기구와의 협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주관한다.

II. 수행지역

1. 아시아

한국은 아시아 지역내 경제성장 및 균형발전 지원, 정부 행정역량 및 투명성 강화, 사회개발과 빈곤퇴치 지원,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개발협력사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 원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주요 수원국으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방글라데시가 있다. 아시아 지역은 무상원조사업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2006년 KOICA 협력사업 예산의 36%이상이 지원되고 있다.

2. 아프리카

최빈국이 다수 위치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보건, 교육, 농촌개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고 안정적인 북아프리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 행정제도, 산업에너지 분야를 지원 하는 등 차별화된 지원전략을 갖고 있다. 이외에도 AU, NEPAD 등의 지역협력체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아프리카의 자체적인 개발노력과 빈곤퇴치 및 MDGs 달성을 지원하고 있다.

3. 중동

지원협력 대상지역으로서의 중요성이 크고 플랜트 건설 등 인프라 시장도 매우 활발하여 경제개발경험 전수 위주의 지원이 필요하다. 중동 지역의 평화정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정부 행정역량강화 및 제도개선, 취약률 제고 및 실업률 감소를 위한 기초교육 및 직업 훈련 등 교육분야 기반 구축,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식수개발 및 기초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지식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 기술분야를 중점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별사업으로 이라크 재건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차 이라크 재건지원사업으로 2003~ 2007년간 총 2.6억불 무상 원조를 지원 중에 있으며, 한·미 연합 재건지원팀인 ‘아르빌 지방재건팀(Regional Reconstruction Team)을 출범시켜 활동하고 있다.

4. CIS 지역

공산체제에서 전화한 국가들이 대부분인 이 지역은 부존자원의 양과 개발 정도에 따라 국가별 발전 수준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시장경제체제로의 원만하고 안정적인 이행달성을 위한 행정제도 및 인적자원개발 등을 중심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 중남미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현황을 고려하여 절대 빈곤 및 사회불평등 감소를 통한 중남미 경제사회발전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정부 공공행정역량 및 투명성 강조, 경제성장 촉진을 통한 빈곤완화를 위한 자생력 향상,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원조를 실시하고 있다. 저개발국가 위주로 교육 보건 및 행정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있다.

Ⅲ. 수행주체 및 수행사업

1.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정부는 2005년 11월 15일(화) 국무회의를 열어, 향후 10년간의 우리나라 대외원조(ODA)의 추진방향과 시스템 등을 포함한 ‘대외원조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하였다. 개선대책은 ‘한국형 원조 모델 정립’, ‘추진시스템 개선’, ‘원조의 효율성 제고’, ‘인프라구축’, ‘국민참여 확대’ 등 크게 5개 부문을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2005년 이 전에는 재경부-외교부간 국장급 ODA 실무협의회가 있어 왔으나 대외원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부재했고 더욱이 최근 정부의 거의 모든 부처가 대외

원조사업에 뛰어듬에 따라 그 협의 조정 기능의 필요성이 더해져 2005년 이후 대통령령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규정을 공포 시행하였다.

그 이후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이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가 되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 국무총리실장을 간사위원으로 하고, 기획재정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된다.

2. 한국국제협력단와 그 수행사업

1) 한국국제협력단

무상원조에 해당하는 무상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은 외교통상부 감독하에 원조집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이 집행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빈곤퇴치를 중심으로 개도국의 개발목표 달성과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 지원,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등 국제사회의 개발목표 달성 및 범지구적 과제해결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개도국 우호협력관계 및 국익증진 도모, 국별 전략분야에 대한 효과적 지원으로 대 개도국 우호협력관계 증진, 대외무상원조를 통한 수원국 거버넌스 향상 및 민주주의 확산으로 우리의 국제적 위상제고 및 기여 촉진,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원조 정착, ODA에 대한 국민의 지지 확보 및 참여 확대에 관한 임무를 띠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이 취하는 전략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i) 전략적 협력대상국 선정 및 효율적 배분, 국가별 원조전략 중심의 사업 발굴, 우리 개발경험을 고려한 전략적 중점분야 지원, 프로그램형 사업 수행체계 발전, 민간과의 파트너십 강화, 한국적 개발 프로그램 발전, 평가 및 사후관리 강화,

2) 수행사업

(1) 교육사업

개발도상국의 기초교육에 대한 낮은 접근성과 취약한 기능인력 양성시스템은 사회의 발전동력 형성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산업 발전에 저해를 가져오고 있다. 이에 교육사업은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제도정책, 인력양성, 시설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삼고 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저개발 국가에서는 기초교육기회 확대사업, 남미 중동지역에서는 직업훈련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원을 건립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병원건립, 모자보건 형성, HIV/AIDS 및 여타전염병 퇴치, 안전한 시수 공급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 보건의료사업

보건의료사업은 개발의 잠재력인 인적자원 확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망률 및 질병률 감소를 가져와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각 국가별 지역별 보건의료실태를 고려하여 인적자원개발 및 물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질병예방 중심의 일차보건의료사업 확대를 꾀하고 있다.

(3) 행정제도

개발도상국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근간이 되는 국가의 제도적 역량 부재한 경우가 많다. 개발도상국의 이러한 제도적 역량 부재를 해소해 주기 위하여 우리 개발경험을 전수사업의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각 국가별 중점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정부혁신, 행정역량 강화, 중소기업육성을, 아프리카에서는 인적자원개발,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을, 중남미에서는 중소기업 육성 및 수출진흥,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4) 농촌개발

농촌개발사업이란 개발도상국 농촌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 기반시설구축,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기발 조성과 영농기술지원, 농산물 활용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시설지원 사업을 의미한다. 국가별 발전단계 및 자연환경을 고려 최빈국, 저소득국, 내륙국, 해안에 대한 지원을 구별하여 시행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미곡처리기술 지원 등 농수산물 시장접근성 개선 사업을, 동남아시아 최빈국과 아프리카 국가에 대해서는 농어촌의 생활여건의 향상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5) 정보통신

2000년 이후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은 빈부격차에 따라 수혜 혜택 여부와 그 정도가 달라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 주요 인자로 주목되고 있다. 이에 개발도상국과의 정보화격차가 계속하여 심화되는 경향을 향상시키고자 정보통신에 관한 인프라 지원, 인적자원배출,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하여 대학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IT훈련 센터의 건설, 전자정부의 지원 등을 행하고 있다.

(6) 산업에너지

산업에너지는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교통, 에너지, 수자원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개도국은 그 산업발전을 위한 에너지 인프라마저도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에 국가교통 인프라 개선, 국토관리 기반조성 및 종합개발, 에너지 및 사업 인프라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7) 환경

개도국의 산업환경은 그 다지 발달해 있지 않은 반면, 산업으로 인한 오염에 쉽게 노출되어 있으며, 환경관리 역량마저도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환경파괴로 인한 기후변화로 개발도상국의 빈곤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오염관리능력의 강화, 지구환경 보전역량의 강화를 위한 건조지역 산림녹화, 열대림 보호, 황사공동관측망 구축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8) 기후변화대응

개발도상국은 기후변화를 야기시키는 화학물질 배출에 있어서 기여한 바는 적지만 이로 인한 기후변화에 매우 민감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인구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며, 또 농업 종사자 대부분이 최저소득층인 인구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급격한 농산물 생산성의 변화가 개발도상국의 식량안보와 생계를 위협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및 국제사회 노력 선도하고 국별 수요와 발전단계 고려한 지원 사업을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3. 한국수출입은행과 그 수행사업

유상원조는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정부 기관에서 개도국이나 국제기구로 전달되는 자금인 ODA의 한 종류로서 무상원조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ODA는 크게 개도국에게 원리금의 상환의무가 있는가에 따라 유상원조(loan)와 무상원조(grant)로 구분되는데, 장기간에 걸쳐 개도국에 지원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은 한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상원조이다.

1) 한국수출입은행

정부는 한국의 유상원조를 위하여 대외협력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대외협력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1차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맡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게 위탁하며 한국수출입은행은 실질적으로 대외협력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 지원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외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증진을 목적으로 ODA 중 유상원조를 전담하고 있다.

2) 수행사업

한국은 원조공여를 위한 재원이 빈약한 점을 고려하여 소액으로 많은 국가를 지원하기 보다는 우리나라와 경제교류가 많거나 경험잠재력이 높은 국가를 선별하여 중점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원대상부문에 다양한 원조분야를 골고루 지원 하기 보다는 우리나라가 보다 경쟁력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 국가는 1인당 국민총소득이 연간 약 6500달러이하인 국가 중에서 GDP, 인구규모가 적어 경험 잠재력이 미미한 국가 및 원리금 상환능력이 매우 취약한 국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이다. 또한 이들 국가들을 경험잠재력을 기준으로 중점국가와 일반국가로 분류하여 중점국가 중심으로 지원한다. 지원분야는 개도국의 경제개발에 기여도가 높은 경제·사회 인프라부문과 또한 인간의 기초적 삶의 조건과 관련 있는 보건, 교육, 환경 등의 분야를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분야 중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출효과가 크고 시장 파급효과가 높은 분야를 중점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는 최우선적으로 현지 필요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최우선 지원분야 사업

-기후변화, 식량위기 등 글로벌 이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중점국가 추진 사업

-중점지원국가에서 추진되는 경제 개발 계획상 우선 순위의 사업

협조융자사업

-기금의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시아 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 협조융자하는 사업

혼합신용 공여사업

-수출입은행의 수출자금과 혼합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금의 가용성을 증대하는 사업

중소기업 추진사업

-중소기업이 전문분야에서 원조관련 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등

3) 지원업무의 종류

(1) 지원자금종류

대외경제협력기금이 제공하는 자금의 종류는 차주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개도국 정부 또는 법인에 대한 차관이다. 개도국의 경제협력사업을 직접 지원하는 ODA로서 차관의 형태는 개발사업차관,¹¹⁾ 기자재차관,¹²⁾ 민자사업차관,¹³⁾ 기금전대차관,¹⁴⁾ 물자차관,¹⁵⁾ 사업준비차

11) 댐, 상하수도설비, 도로, 병원, 환경설비, 공장설비 등 개도국의 경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차관

12) 개도국의 특정산업부문, 특정개발계획 또는 특정사업에 필요한 기자재 및 관련 서비스의 조달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차관

13) 민자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개도국 정부 또는 별도로 설립된 법인(민자사업법인)에게 지원하는 차관

14) 개도국의 금융기관을 통하여 특정분야, 특정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육성 또는 자작농 지원과 같이 다수의 최종수익자를 대상으로 하는 차관

15) 개도국의 긴급한 국제수지 지원 및 국내경제 안정을 위하여 물자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차관

관¹⁶⁾으로 나누어진다. 둘째,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대출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대외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개도국에 해외출자 또는 용자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셋째, 대한민국 법인에 대한 출자이다. 이는 대외협력사업이 추진을 위하여 신설되는 대한민국 법인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2) 혼합신용

혼합신용이란 원조자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과 수출입은행의 수출신용자금을 혼합하여 금융조건을 양호하게 지원하는 금융방식을 말한다. 혼합신용은 원조수혜국 입장에서는 수출신용에 비하여 보다 유리한 금융조건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외경제협력기금만으로 추진이 곤란하였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3) 협조용자

협조용자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특정 프로젝트 실시예 필요한 자금을 용자함으로써 참여기관의 자금부담과 자금참여에 따르는 위험을 분산하고자 하는 금융기법이다.

(4) 차관지원비제도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차관은 상황을 전제로 하는 유상원조이나, 차관지원비 지원제도는 차관에 관련된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차관의 부대적 지원제도로 대외경제협력기금 자체 예산으로 행하여지는 무상원조 방식이다. 차관지원비제도에는 지원유망사업에 대한 사업준비와 관련된 사업개발지원비, 기금사업의 실시과정에서 공정의 장기간 지연의 장애요인 발생 등으로 사업의 정상적 진

16) 경제개발사업의 준비를 위한 조사 또는 경제개발사업의 시험적 실시예 필요한 자금을 용자하는 차관

행이 어려울 때 모색되는 사업실시지원비, 지원사업의 완공 이후 유지보수, 관리 등 운영과정에서 관리 인력의 노하우 부족, 부품 및 소모품 부족 등으로 사업이 원활히 가동되지 않는 경우 지원하는 사후 관리지원비가 있다.

(5) 소액차관

소액차관제도는 소규모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의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고 한국 중소기업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사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 차관이다. 차관규모가 2백만 SDR 미만인 소액차관 사업은 사업 참여자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사업신청, 심사, 구매 등 제반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시행될 수 있다.

제 4 절 정책적 차원의 시사점

제 5 절 평가체계의 시사점

4

일본 공적개발원조(ODA)

이 정 교수
(한국외대 법과대학)

(Summery)

최근 다양한 요인에서 국제적인 제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ODA'란,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공적개발원조)의 약자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경제협력'이라고 하지만, 다양한 '경제협력' 가운데, 다음의 세 가지의 용건을 충족시키는 자금의 흐름이 'ODA'에 해당한다.

1. 정부 또는 정부기관에 의해 공여되는 것
2.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이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3. 자금협력에 대해서는, 그 공여조건의 증여비율(grant element) (※)이 25% 이상 일 것

※ 증여비율(grant element)란, 차관조건의 완화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금리가 낮고, 용자기간의 길어질수록, 증여비율은 높아져 차입인(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증여의 경우의 증여비율은 100%가 된다.

위의 일본의 'ODA'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면,

1.에 대해서는 '실시기관'은 JBIC(국제협력은행)과 JICA(국제협력사업단) 등이다.

(유상 자금협력은 JBIC가, 무상 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의 부분은 JICA가 담당한다).

2.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원조 등은 ODA에서 제외된다.

3.에 대해서는 대부의 정도를 표시하는 수치로, G.E.가 낮으면 개발도상국 측의 부담이 무거워지게 된다.

일본의 'ODA'의 역사는 다음과 같다.

1940년대 후반까지는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인하여 일본도 ODA의 수혜를 받는 국가였다.

그 후 급격한 경제적으로 급성장한 일본은, 최초의 ODA 대상으로 된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한국, 몽골, 미크로네시아 등에 대해 제2차 대전의 배상 형태의 무상원조를 실시했다.

1961년에 OECF(해외경제협력기금, 1999년에 일본수출입은행과 통합하여 JBIC가 설립됨), 1974년 JICA가 설립되어 현재의 체제가 정비되었다.

1989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위의 ODA 거출을 실시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일본은 ODA 대강에서 다음의 4가지 이념과 4원칙에 준하여 ODA를 실시하고 있다.

<4가지 이념>

1. 인도적 고려
2. 상호의존성의 인식
3. 환경의 보전
4. 자조노력의 지원

<4원칙>

1. 환경과 개발의 양립
2. 원조의 군사적 용도 및 국제분쟁조장에 대한 사용의 회피
3. 개발도상국의 군사지출, 대량파괴무기·미사일의 개발·제조, 무기의 수출입 등의 동향에 대한 주의
4. 개발도상국의 민주화 촉진, 시장지향형 경제도입의 노력, 기본적인 인권이나 자유의 보장에 대한 주의

(1) ODA와 JICA의 역할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를 비롯하여 국제기관, NGO, 민간기업 등 다양한 조직과 단체가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협력 가운데,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행하는 자금이나 기술의 협력을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라고 하며, 다음에 열거하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춘 정부를 베이스로 하는 원조가, ODA의 정의(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래 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DAC)에 의한 정의)로 여겨지고 있다.

- 정부 또는 정부기관에 의해 공여되는 것
 -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이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 자금협력에 대해서는, 그 공여조건의 증여비율(grant element) (※)이 25%이상일 것
- ※ 증여비율(grant element)란, 차관조건의 완화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금리가 낮고, 융자기간의 길어질수록, 증여비율은 높아져 차입인(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증여의 경우의 증여비율은 100%가 된다.

ODA는 그 형태에서, 양국 간 원조, 국제기관에 대한 출자·거출(다국간 원조)로 구분되며, JICA는 이 중, 양국 간 원조의 형태인 기술협력, 유상 자금협력, 무상 자금협력을 담당하고 있다.

(2) 세 가지 원조방법을 일체적으로 담당하는 신 JICA 탄생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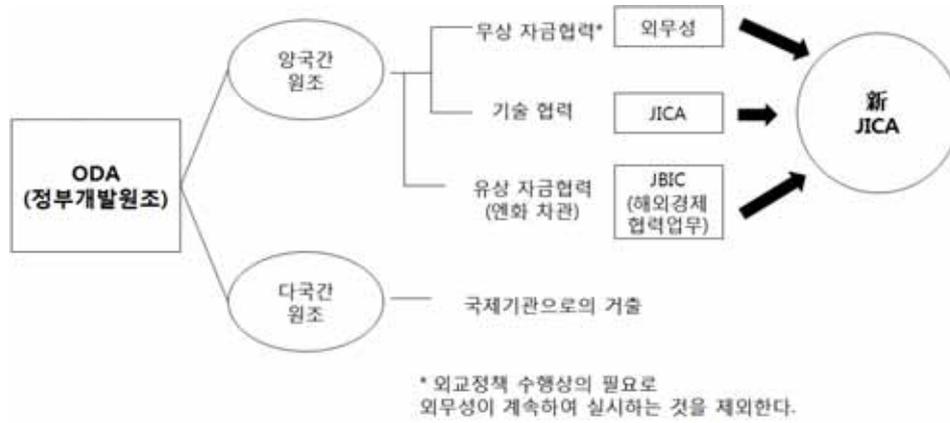
최근 유럽의 선진국이 지구온난화와 빈곤악감 등의 지구규모의 과제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ODA를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 등의 신흥원조국도 등장하는 가운데, 일본은 엄격한 재정사정으로 인해 ODA가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정세와, 국내의 행정개혁의 흐름에 따라, 일본 정부는 ODA의 한층 더 질의 향상을 목표로 하여, ODA 정책의 전략화와 실시체제의 강화 등의 개혁에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서, ODA의 실시기관을 일원화하게 되어, 국제협력은행(JBIC)의 해외경제협력업무와, 외무성의 무상 자금협력 업무(외교정책상, 외무성이 직접 실시하는 것을 제외함)가, JICA에 계승되어, 2008년 10월 1일에 '신 JICA'가 탄생했다.

이러한 통합으로, 원조의 방법을 유기적으로 제휴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원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일본 ODA 조직도>



출처: JICA(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의 HP (<http://www.jica.go.jp/about/jica/oda.html>)

세계의 개발 원조를 둘러싼 환경은 현재 크게 변화하고 있다. 또, 일본의 공적개발원조가 놓여진 상황도 과거와는 크게 다르다. 이러한 국내외의 변화에 대응하여, 일본의 ODA의 제도적인 구조도 변용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ODA는, 크게 「엔화 차관」, 「기술협력」, 「무상」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엔화 차관은 국제협력은행(JBIC), 기술협력은 국제협력기구(JICA), 무상은 외무성 경제협력국과 국제사회협력부(국제기관에 대한 거출분)가 실시기관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가, 2006년 8월의 외무성개혁에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즉, 경제협력국에 대신하여 새롭게 국제협력국이 신설되어, 거기서 경제협력국이 실시해 오던 무상원조와, 국제사회협력부가 주도하고 있었던 국제기관에 대한 개발자금지출부분이 통합되어, 「멀티(multi)」와 「바이(bi)」의 유기적인 제휴를 도모함과 동시에, 상호보완적인 상승효과를 가지는 효율적인 원조의 실시를 목표로 하게 되었다.

또, 2008년에는 「신 JICA법」이 시행되어, JBIC의 엔화 차관부문이 신JICA의 아래로 편성되어, 신JICA 아래에서 엔화 차관, 기술협력, 무상(ODA 실시부분)이 일원적으로 관리·운영되게 된다.

또, 일본의 ODA 정책의 기본적인 기획·입안·조정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각료 차원의 「해외경제협력회의」(내각총리대신 아래에 내각관방장관, 외무대신, 재무대신, 경제산업대신이 참가한다)가 있다. 또, 외무대신의 자문위원회로서는 국제협력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협력에 관한 유식자회의」가 설치되어 있다.

1) 横田洋三「本調査の概要」『主要先進国における海外援助の制度と動向に関する調査』、ODA研究会、2008年3月、12-13頁.

2

2)

일본의 ODA의 특징에 대하여, (1) 지역적 특징, (2) 분야적 특징, (3) 원조조건 특징, (4) 원조형태의 특징 등의 네 가지로 개관하여 살펴볼 수 있다.

제 1 절 지역적 특징

일본의 ODA는, 제1기의 제2차 대전 후 배상기부터 시작되어 거의 일관되게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은 1992년의 「구 ODA 대강」, 2003년의 「신 ODA 대강」에서 아시아 중시가 관철되어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2006년의 실적을 보면, 아시아는 일본의 ODA 총액의 65.7%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양주(0.9%), 중앙아시아(0.6%), 중동(17.1%), 아프리카(11.1%), 중남미(4.1%), 유럽(0.6%)을 크게 앞서고 있다. 아시아는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관계가 있으며, 또 국가의 숫자나 인구도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실은 그만큼 부자연스럽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 일본으로부터 다액의 원조를 받고 있던 한국이나 대만, 싱가포르 등이 개발도상국의 영역에서 벗어나 원조대상국에서 졸업하고, 또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많은 원조를 받고 있던 국가들이 점차 경제성장을 가속화하여 개발도상국 중에서의 우등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일본이 ODA의 대상국으로의 아시아를 중시하는 것은 일본 ODA 정책의 지역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横田洋三 「本調査の概要」『主要先進国における海外援助の制度と動向に関する調査』、ODA研究会、2008年3月、9-12頁.

다만, 최근에 세계적인 경향으로서,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하여 난민이 증가하고 있고, 기근 등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빈곤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지역, 특히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일본은 과거 3차 아프리카 개발회의(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 TICAD)를 주최하고, 2008년 5월에는 제4차 회의(TICAD IV)를 개최하게 되어, ODA에서의 아프리카 중시의 정책을 명확하게 내세우고 있다. 이 점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일본의 ODA의 비율이, 2006년에는 그 전의 5년간의 평균이었던 7.8%에서 11.1%로 비약적으로 증대했던 사실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최근에 들어서는 대양주, 중앙아시아, 중남미 등에 대한 ODA 금액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 최근 우려되는 경향으로서, 일본의 ODA 금액이 대폭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과거에는 일본이 제1위의 원조국이었던 아프리카의 사하라 이남의 국가(에티오피아, 가나, 케냐, 마다가스칼, 모잠비크, 탄자니아)에서, 일본은 1위의 지위를 다른 국가에게 양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제 2 절 분야적 특징

일본의 ODA에 관해서는, 종래 거시 경제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대형개발 프로젝트(댐건설, 도로·철도건설, 철강이나 중화학공업 추진) 중시라는 비판을 많이 들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본은 2번에 걸친 ODA 대강의 방침에 따라, 상하수도, 관개정비, 교육·위생 등의 개발도상국의 시민생활에 밀착된 분야에도 힘을 쏟게 되어 상황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이 시작한「남남(南南)협력」(개발도상국에 의한 다른 개발도상국으로의 지원은 일본이 원조하는 방식)이나「일반시민·인간의

안전보장 무상자금」(현지 베이스에서 비정부조직(NGO)을 통하여 1건 당 원칙적으로 최대 5,000만 엔(예외로 1억 엔)까지의 프로젝트에 무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은, 개발도상국의 주체성을 육성하고, 시민사회와의 제휴 하에 현지의 니즈(needs)에 적합한 원조를 실시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또, 신 ODA 대강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듯이, 거시 경제적 성장 중시에서, 인간의 안전보장의 관점을 도입한 ODA으로의 전환이 도모되고 있는 점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특히, 빈곤퇴치, 인권·민주주의의 촉진, 환경보전, 기아·난민·재해·감염증에 대한 대응, 테러방지나 법정비지원 등, 인간의 안전보장에 대한 위협의 제거를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원조에 힘을 쏟게 되었던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일본의 원조정책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특징으로서 원조에 대한 군사적 용도의 사용금지, 피원조국가의 군사예산이나 대량파괴무기의 개발·제조상황에 대한 유의(주의)가 있다. 이것은 일본의 평화국가의 기본방침으로서 엄격하게 준수해온 시책으로, 군사원조를 ODA의 주요한 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 등과 비교할 때 일본 ODA의 특징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제 3 절 원조 조건의 특징

일본의 원조에 대해서는, 종래 증여비율(grant element)이 낮고, 증여에 비하여 엔화 차관이 많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은 기본적으로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다. 예를 들면, 2001년부터 2005년의 원조총액에 차지하는 증여(무상 + 기술협력)의 비율은 35%였지만, 2006년도의 수치는 25%로, 오히려 증여의 비율은 대폭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엔화 차관은 국제협력은행에 의한 대부가 중심이지만, 이것은 이자를 붙여 변제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정부의

예산에 반드시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금을 회전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에 대하여, 둘째로 증여는 매년 예산을 획득해야 하며, 최근과 같이 긴축재정 시에는 감액을 저지하는 것이 고작이며, 일반적으로는 감액도 각오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 현재 사정은 일본의 원조방침은 ODA 대강에도 나타나 있듯이 원조수용국의 ‘자조노력’이 기본으로, 채산을 베이스로 하는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이익이 상승하도록 계획되고 운영되는 것을 추구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향으로, 일본도 신 ODA 대강에서 명언하고 있는 사회 인프라, 농업, 교육, 위생, 인권, 환경을 중시하는 원조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엔화 차관은 반드시 적절하다고 할 수 없고, 증여나 조건이 완화한 ‘대부(soft loan)’가 가미됨으로써, 유연하고 세밀한 원조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본의 ODA는 이러한 방향을 목표로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제 4 절 원조 형태의 특징

일본의 ODA는, 역사적으로 제2차 대전의 배상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는 경위도 있어, 다국간 원조(multi; 국제기관에 대한 거출)보다 양국간 원조(bi)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현재도 현저하며, 2006년 각국의 ODA 총액에서의 다국간 원조의 비율은 이탈리아 55.4%, 그리스 46.3%, 포르투갈 42.1%, 스페인 38.3%, 덴마크 35.6%, 핀란드 33.8%, 벨기에 33.4%, 스웨덴 32.9% 등 선진 원조국이 대략 3분의 1인 데 비하여, 일본은 20.8%로 5분의 1의 수준이다. 또, 영국(24.2%), 독일(26.1%), 프랑스(27.8%), 네덜란드(28.0%) 등의 원조국도 거의 4분의 1을 충족시키고 있다.

물론 미국의 경우에는 8.5%로 일본보다도 낮은 수준이지만, 일본이 이를 모델로 삼는 것은 적절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다국간 원조의 금액은 각 국제기관에서의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여 자발적으로 거출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원조금액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양국 간 원조가 많아지는 경향에 있기 때문에, 다국간 원조의 비율이 낮아지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ODA에 대하여 오늘날 자주 지적되는 사항 중에 ‘조건부(구속)(tied: 원조자금에 따른 조달처를 일본기업으로 한정하는 것)의 원조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로 1970년까지 일본의 ODA는 원칙적으로 모두 ‘구속차관(tied loan)’이었다. 그 후 특히 엔화 차관의 비구속(untied)화가 진행되어, 1994년에는 98.3%로 선진국 중에서도 최고의 비구속률을 달성했다.

그러나 엔화 차관을 제외한 무상 및 기술협력 부분에는 구속(tied)이 남아 있기 때문에, 원조총액에 차지하는 비구속률은 오늘날에도 100%는 아니다. 2005년의 실적에서 일본의 비구속률은 89.6%로, 100%인 영국과 아일랜드, 99.6%의 노르웨이, 99.1%의 룩셈부르크, 98.3%의 스웨덴, 97.4%의 스위스, 96.2%의 네덜란드, 95.7%의 벨기에, 95.1%의 핀란드, 94.7%의 프랑스, 93.0%의 독일 등에 뒤지고 있다.

3

3)

일본의 공적개발원조(ODA)의 지금까지의 흐름을 역사적으로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3) 横田洋三 「本調査の概要」『主要先進国における海外援助の制度と動向に関する調査』、ODA研究会、2008年3月、2-9頁.

제 1 절 제1기 : 제2차 대전 후 배상기(1954-1963년)
- 일본의 ODA 맹아기 -

일본 ODA의 시작은, 제2차 대전 후 부흥기의 후반에 해당되는 1954년에 서명되었던 일본-버마 배상협정에서 비롯된다. 이 시기는 아직도 일본이 패전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ODA를 실시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서명을 계기로, 전쟁배상을 인접 아시아 국가에 대해 실시하게 되었으며, 그 최초의 국가로서 미얀마(당시 버마)가 협정에 서명했던 것이다. 그 후, 필리핀, 남베트남(당시), 라오스,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협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근거로 하여 일본은 ‘배상’ 혹은 이에 준하는 ‘무상원조’라는 형태로 무상자금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일본의 경제력은 아직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일례로 당시의 일본은 세계은행으로부터는 경제부흥을 위한 다액의 자금을 받아들여, 제강공장이나 고속도로, 도카이도(東海道) 신칸센 등을 건설하였다. 다만, 이 시기에, 일본은 1954년의 「콜롬보 계획(Colombo Plan)」에 참가하여, 가입국간의 협의와 협력을 통하여 개발을 촉진하는 활동을 개시했던 경험도 있고, 전후 부흥과 개발원조가 뒤섞여 배상이 그 연결 역할을 연출했던 시기로서, 일본의 ODA의 제1기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시기는, 외무성의 위탁으로 국제개발센터의 프로젝트 팀이 실시했던 조사보고서 「ODA 40년의 총괄(ODA40年の総括)」(1994년, 이하 간단히 ‘총괄’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은 ‘전후 배상기’라고 하고 있지만, 이것은 동시에 ‘일본 ODA의 맹아기’이기도 했다.

제 2 절 제2기 : 경제협력신장기(1964-1976년)

- 일본 ODA의 본격적 시동기 -

제2기는, 도쿄 올림픽 개최, 도카이도 신칸센의 개통, 수도 고속도로 완성된 1964년부터 제1차 오일쇼크가 진정된 1976년까지의 12년간이다.

이 시기가 시작되는 1964년은, 동시에 일본이 ‘선진국의 클럽’이라고 말해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이 인정되어, 명실공히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했던 때이기도 하다. 이 시기는 국제적으로는 구식민지가 계속하여 독립하여 UN가입을 하고 있었던 시기와 중첩되어, ODA의 필요성이 세계적으로 높아졌던 시기이기도 하다. 일본은 이러한 국제적인 요청에 따라 ODA 자금을 증액하고, 구체적으로는 1964년의 1억 1,600만 달러에서 1976년의 11억 100만 달러로, 약 10배의 신장을 보였다.

이 시기에 일본은 원조체제의 확립을 도모하고, 국제협력사업단(JICA: 현 국제협력기구)의 설립(1974년), 해외경제협력기금(OECF: 현 국제협력은행, 1961년 설립)의 체제정비를 실시하여, 정부주체의 ODA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아시아 지역에 개발자금을 제공하는 아시아 개발은행(ADB)의 설립(1966년)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것도 이 시기이다.

이 시기는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움직임이 있었다. 신흥 독립 국가들의 등장으로 조건이 완화된 개발자금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세계은행의 소프트론(soft loan: credit)의 창구인 국제개발협회(IDA)나, 개발도상국의 기업에 정부보증 없이 직접 대출을 할 수 있는 국제금융공사(IFC)가 창설되었던 것도 이 시기이다(IFC는 1958년, IDA는 1960년에 각각 설립됨).

또한, 이시에는 무역 분야에서도 개발도상국의 요구가 강해져, 자유 무역추진을 지향하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일변도가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무역상의 특별한 배려를 요구하는 UN무역개발회의(UNCTAD)가 1964년에 개최되어, 개발도상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것이 UN총회의 보조기관으로서 상설화되었다. UNCTAD에는 개발도상국의 입장에 이해를 보이는 최대 사무국장 프레비쉬(Prebisch)의 보고서(「프레비쉬 보고」, 1964년)가 제출되고, 또, 세계은행의 위촉아래에, 개발원조의 기본이념과 구체적 지침을 명확히 했던 「피어슨(Pearson)보고」(1969년)가 공표되어, 그 후 세계의 개발원조 활동의 바이블이 되었다.

이러한 ODA를 둘러싼 국제적인 동향에 대하여, 일본은 개발도상국의 입장에 이해를 보이면서, 원조액의 증대를 도모했다. 이 제2기는 일본경제의 고도성장기와 중복되어, 일본기업의 해외진출과 일본의 ODA의 양적인 확대가 어느 정도 상승관계를 보였다. 즉, 일본 ODA 제2기는 국제적인 요청과 일본의 내재적인 요구가 합치하여, ODA의 양적 확대가 도모되었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세계은행 등으로부터의 부흥원조자금의 수용과 병행하는 형태에서의 배상을 주요한 내용으로 삼는 대외원조라는 제1기의 원조형태를 극복하게 되었고, 일본이 순수한 개발원조 공여국으로서 자각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해외로부터도 인정을 받게 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를 「ODA 40년의 총괄」은 ‘경제협력 확대기’라고 하지만, ‘일본의 ODA의 본격적인 시동기’라고 볼 수 있다.

제 3 절 제3기 : 계획적 확대기(1977-1988년)

- 일본 ODA의 주체적 확대기 -

일본 ODA의 역사적인 전개에서의 제3기는 제1차 오일쇼크와 제2차 오일쇼크의 중간시기에 해당하는 1977년부터 냉전구조가 붕괴되기 시

작한 1988년까지의 11년으로, 「ODA 40년 총괄」은 ‘계획적 확대기’라고 하고 있지만, 한편 이는 ‘일본의 ODA의 주체적 확대기’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후자의 주체적 확대기라는 호칭은, 이 시기에 일본이 개발원조에 주체적,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명확히 내세웠던 점에서 채택된 것이다.

1973년에 시작된 제1차 오일쇼크는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의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지만, 일본은 이러한 악조건에서 비교적 빨리 극복하여,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으로부터 원조액의 증대를 강력하게 요청받게 되었다. 또한 1976년에는 전후 배상이 종료되었으며, 1977년에는 국제경제협력회의 각료회의에서 경제협력 목표로서 ‘5개년 간 배증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일본은 다음 해의 ‘3개년 간 배증계획’(ODA 제1차 중기목표)으로 목표의 달성시기를 1년간 단축했다. 이것은 바로 「총괄」이 언급하듯이 ‘지금까지 다른 선진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대외적인 의사표시로, 일본의 개발도상국 원조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었다(5면).’

이 시기는, 개발원조에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새로운 동향이 보이게 되었다. 즉, 1970년대는 1972년의 스톡홀름 인간환경회의 개최나, 1973년에 시작된 제1차 오일쇼크에서 상징적으로 보여 지는 것처럼, 세계적인 환경(공해)문제나 자원고갈문제에 강한 관심이 집중되게 되어, 단순히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부담이 적은 개발자금을 대량으로 제공하면 좋다는 피어슨 보고서의 주장에 대하여, 환경보전이나 자원보호에 배려했던 원조라는 시점이 도입되게 되었다. 또, 아우구스토 피노체토(Augusto Pinochet Ugarte) 정권 하의 칠레나, 마르코스(Ferdinand Edralin Marcos) 정권 하의 필리핀과 같은 군사정권하의 인권 억압국가에 대한 원조를 삼가도록 국제적 여론도 형성되었다.

이렇게, 개발 원조를 경제적인 측면뿐 만이 한정하지 않고, 환경, 자원, 인권 등의 관련 영역에 대해서도 배려를 하면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이 시기부터 점차 싹트기 시작했다.

그러나 2차에 걸친 오일쇼크의 결과, 일본에 대해서는 여전히 ODA의 양적 확대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어, 1980년대 초에 발생했던 개발도상국의 누적 채무문제로, 그러한 동향은 한층 더 강해졌다.

제3기에 싹트던 개발원조시의 환경이나 인권에 대한 배려의 움직임은, 예를 들면 세계은행의 경우, 내부에 환경담당관을 임명(1972년)하는 것부터 시작되어, 환경국 설치(1987년)로 발전시키는 대응을 보였던 것에 비하여, 일본의 경우는 제3기 동안은 기존의 노선에 따라 대체로 양적 확대에 전념했다.

제 4 절 제4기 : 원조내용 충실기(1988-2000년)

- 일본 ODA의 충실기 -

일본 ODA의 제4기는 냉전이 종언을 맞이했던 1988년부터 밀레니엄 세계정상회의가 개최되었던 2000년까지의 12년간이다. 이 시기는 일본 ODA가 액수에서 미국을 제치고 제1위가 되어(1989년), 명실공히 원조대국이 되었던 시기였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동서냉전체제가 해체되면서 지역민족 분쟁이 다발하게 되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이른바 ‘원조 피곤’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여, 톱 도너(donor)로서의 일본의 역할이 한층 더 두드러졌던 시기이기도 하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어 ‘환경을 배려한 개발’을 제창하여 주목을 받은「부룬트란트(Brundtland) 보고서」가 1987년에 공표되어, 이에 따라 스톡홀름 인간환경회의로부터 20년째가 되는 해였던 1992년에는 리우

테자네이로에서 UN 환경개발회의(지구정상회담)가 개최되어, 환경과 개발의 양립을 위한 원칙과 방침(리오 선언문 및 아젠다 21)이 채택되었다.

또, 이 시기에는 1993년의 빈 세계인권회의, 1995년의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담, 같은 해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여성회의 등을 통하여, 개발과 인권의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국가의 거시 경제성장을 중시하는 기존의 개발원조 이념을 전환하여 인간중심의 개발이념인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을 UN 개발계획(UNDP)이 주장하고, 1990년 이후 매년, 인간개발지표를 실은『인간개발보고서』를 발행하게 되었던 것도 이 시기이다.

이러한 개발정책에 관한 국제사회의 큰 변화에 대응하여, 일본도 원조이념을 명확히 하고, 원칙에 따른 원조의 계획·실시를 추진할 필요성을 느껴, 1992년 6월에 일본정부는 각의결정의 형태로『원조(ODA) 대강』을 발표했다. 대강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본이념으로서 다음의 여러 사항을 명시한다.

- (가) 개발도상국에서의 기아와 빈곤의 현 상황은 인도적 견지에서 간과할 수 없다.
- (나) 평화와 번영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실현을 위해서는 자유, 인권, 민주주의가 확보되는 사회의 구축이 불가결하다.
- (다) 환경의 보전을 배려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추진이 전 인류적 과제이다.
- (라) 광범위한 인재양성, 여러 제도를 포함한 경제사회 기반 및 기초생활 분야의 정비, 그리고 ‘좋은 통치’의 확보가 목표이다.

그리고, 다음의 네 가지를 원칙으로 든다.

- (가) 환경과 개발을 양립시킨다.
- (나) 군사적 용도 및 국제적 분쟁조장에 대한 ODA 자금의 사용을 회피한다.
- (다) 개발도상국의 군사지출, 대량파괴무기·미사일의 개발·제조, 무기의 수출입 등의 동향에 충분히 주의를 한다.
- (라) 개발도상국에서의 민주화의 촉진, 시장지향형 경제도입의 노력 및 기본적인 인권 및 자유의 보장상황에 충분히 주의를 한다.

또 중점사항으로서 다음의 여러 사항을 지적한다.

- (가) 대상지역으로서는, 아시아 지역 특히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국가, 아프리카, 중근동, 중남미, 동유럽 및 대양주의 특히 후발발전도상국(LLDC)을 중시.
- (나) 대상문제에 관해서는 지구규모문제, 기초생활분야, 인재양성 및 기술협력지원의 노력
- (다) 경제사회개발의 기초조건인 인프라정비지원 중시
- (라) 구조조정, 누적 채무지원에 노력

이러한 ODA 대강의 발표는, 지금까지 원칙이 없는 원조, 국가이익에 봉사하는 원조 등으로 비판되어 왔던 일본의 ODA의 바람직한 양상에 대하여 평가를 일변시킨 획기적인 사건으로서, 국내외의 원조관계자로부터 환영받았다. 특히, 환경, 인권, 민주화 등의 인류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군사적인 목적에 대한 원조를 회피하고 있는 것은 높이 평가되었다. 이러한 제4기를 '일본의 ODA의 충실기'라고 규정짓는 것에 이론은 없을 것이다.

제 5 절 제5기 : 원조정책의 재검토기 (2000-현재)

일본 ODA의 역사적 전개에 제5기는, 밀레니엄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밀레니엄 선언이 발표되었던 2000년부터 현재까지이다.

국제적으로는 밀레니엄 선언에 근거로 하여 UN이 2001년에 설정했던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 실현을 위하여, UN 관계기관이나 UN 가입국가가 힘을 합쳐 한층 더 효과적인 개발원조의 추진을 도모하는 노력이 가속화되게 되었다.

‘MDGs’란, 구체적으로는 2015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개발목표로, ① 1일 1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의 반감, ② 초등교육의 완전실시, ③ 젠더 평등의 실현, ④ 유아사망률의 삭감, ⑤ 임산부의 건강개선, ⑥ 에이즈, 말라리아 등의 감염증의 예방, ⑦ 지속가능한 환경의 보전, ⑧ 지구규모의 개발 파트너십의 구축, 등의 여덟 가지 항목을 들 수 있다.

또, 제5기의 큰 국제적인 사건은,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했던 이른바 ‘동시다발테러’가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을 중심으로 ‘테러지원 국가’에 대한 경제제재가 적용되어, 공적개발원조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테러방지를 위해서는 테러의 온상인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도 국제사회에서는 강해졌고, 테러의 위협에서 인간의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빈곤박멸에 진지하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점차 국제원조 커뮤니티에 정착되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동향에 대응하여 일본정부는, 일본수출입은행과 해외경제협력기금(OECF)을 통합하여 국제협력은행(JBIC)을 설립(1999년)하고, 2003년에는 국제협력사업단(JICA)을 독립행정법인에 개편하여 명칭을 국제협력기구(약칭 ‘JICA’는 바뀌지 않음)로 하는 등의 기구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채택 후 10년을 경과했던 ODA 대강을 재검토하여,

2003년에 「신 공적개발원조 대강(신 ODA 대강)」이 각의 결정되었다.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먼저, 목적으로서 다음의 여러 사항을 든다.

- (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함으로써 일본의 안전과 번영을 확보한다.
- (나)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세계에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빈부격차의 확대, 민족적 종교적 대립의 격화, 테러의 다발, 자유·인권·민주주의의 억압, 환경의 악화, 감염증의 확대, 남녀의 격차, 빈곤·기아·난민·자연재해의 위협, 등에 ODA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또, 기본방침으로서 다음의 여러 항목을 중시한다.

- (가) 개발도상국의 자조노력지원
- (나) ‘인간의 안전보장’의 시점
- (다) 공평성의 확보
- (라) 일본의 경험과 지견의 활용
- (마) 국제사회에서의 협조와 제휴

그리고 중점과제로서 다음의 4가지를 지적한다.

- (가) 빈곤삭감
- (나) 지속적인 성장
- (다) 지구규모문제에 대한 노력
- (라) 평화의 구축

또, 중점지역으로서 아시아 여러 국가, 특히 아세안 등의 동아시아 지역의 중시, 남아시아의 특히 빈곤인구에 대한 배려, 중앙아시아의 특히 코카서스 지역의 민주화와 시장경제화에 대한 지원, 아프리카의 후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강화, 중동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과 평화의 정착계획의 실시, 중남미나 대양주의 특히 취약한 도서국가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다.

그리고, 원조실시 원칙으로서 다음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가) 환경과 개발의 양립

(나) 군사적 용도나 국제적 분쟁 조장에 대한 사용회피

(다) 테러나 대량파괴무기 확산의 방지, 개발도상국의 군사지출이나 대량 파괴 무기·미사일의 개발·제조, 무기의 수출입의 동향에 대한 주의

(라) 민주화 및 인권이나 시장경제도입의 노력 등에 대한 주의

이렇게, 국제적인 원조환경의 변화에 맞춰 일본 ODA 정책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지만, 일본의 원조금액은 피크였던 1997년 이후, 거품경제 붕괴 후인 경제정체와 긴축재정의 영향으로 점차 감소하여, 2007년에는 피크시의 1조 1,687억 엔에서 38% 감소했던 7,293억 엔까지 떨어졌다.

신 ODA 대강의 의욕과는 반대로, 원조액은 매년 감소되어, 2008년도 ODA 예산액은 7,002억 엔으로 전년에 비하여 4%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적으로는 밀레니엄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원조확대가 요구되고, 주요 선진국가가 ODA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향후에는 국민총소득(GNI)의 0.7% 달성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과거 최대의 ODA 거출국으로 현재도 세계 2위의 경제력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이,

ODA 거출액의 순위를 점차 다른 선진 국가에 양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4

제 1 절 일본 법정비지원제도의 현황

‘법정비지원’은 1990년대 초반부터 체제이행국의 제도구축과 개발도상국의 거버넌스 강화의 문맥에서, 주요한 도너의 중점 지원영역이 되었으며, 예를 들면, 세계은행의 포괄적인 개발 프레임워크(Comprehensive Development Framework: CDF) 구상(1998년 공표)이 입법·사법 개혁을 구조개혁과제의 네 가지 핵심사항의 하나로 들어 주목받았다.⁴⁾

일본의 법정비지원은, 법무성의 법무종합연구소 내에, 법정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2001년 4월에 국제협력부가 설치되었다. 국제협력부가 관여하는 법정비지원활동의 대부분은 ODA의 일환으로서,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JICA)’의 기술협력 시스템에서 실시되는 지원 프로젝트에 협력하는 형태이다. 그 대상국은, 베트남을 시작으로,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⁵⁾

1. 법정비지원의 정의

‘법정비지원’이란, 사회의 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하여, 법의 지배를 침투시켜, 좋은 통치(good governance)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개발도상국이 법제도 및 사법제도의 정비를 위하여 실시하는 여러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다.⁶⁾

4) 金子由芳 『法整備支援における政策判断に資する立案・評価手法の検討』 国際協力総合研究所、2006年8月、1頁.

5) 稲葉一生 『法整備支援事業の今』 『Jurist』 有斐閣、2008年6月15日(No.1358)、2頁.

6) 鳥居香代 『JICAの法整備支援』 JCIA公共政策部.

이렇듯, ‘법정비지원’의 개념은 다의적이다. 그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 떠오르기 쉽지만, 법률이 제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법률의 적용을 담보하는 사법제도의 정비가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법령 및 사법제도를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는 법조실무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제협력부에서는 기본법의 정비, 사법제도의 정비, 법조양성 등의 인재육성의 세 가지를 포함한 내용을 법정비지원 활동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법정비지원’을 법령안 작성에 관한 지원 외, 법령의 운용을 위한 제도·체제정비 및 이러한 것에 종사하는 법률전문가의 인재육성에 관한 지원을 넓게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⁷⁾

2. 정부의 정책에서의 법정비지원의 위치⁸⁾

법정비지원 활동은, 정부의 정책 중에서는 ODA 정책의 한 가지로 규정된다. 즉, ODA 대강(2003년 8월 각의결정)에서 법정비지원의 중요성이 명시되어, ODA 중기정책(2005년 2월 각의결정)에서도 법정비지원을 추진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 사법제도개혁심의회 최종의견에 따른 정부의 사법제도개혁추진계획(2004년 3월 각의결정)에서도, 국제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법정비지원의 추진’이라는 항목을 내세워 개발도상국에 대한 법정비지원을 계속하여 추진하는 것이 결정되어 있다.

또, 자유민주당 정무조사회·사법제도조사회의 제안인 ‘세계에 자랑스러운 일본법제도정비지원의 전략 비전(世界に誇る、わが国法制度整備支援の戦略ビジョン)(2007년 6월)이 내각에 제출되는 등의 움직임도 있어, 내각의 ‘해외경제협력회의’는, 제13차 회의(2008년 1월 30일 개최)에서 법정비지원이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중요한 해외경제협력의

7) 稲葉一生 「法整備支援事業の今」 『Jurist』 有斐閣、2008年6月15日(No.1358)、2頁.

8) 稲葉一生 「法整備支援事業の今」 『Jurist』 有斐閣、2008年6月15日(No.1358)、2-3頁.

한 가지로, 향후 전략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등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법정비지원은 정부의 정책상도 높은 우선순위가 부여되어 있는 상황이다.

제 2 절 JICA가 실시하는 기술협력으로서의 법정비지원⁹⁾

일본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법정비지원은, 개인, 일본변호사연합회 등의 직능단체나 NGO, 대학교, 정부기관, 국제기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양국간 프로젝트로서 실시되는 것의 대부분은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JICA)가 국제약속에 근거로 하여 실시하는 기술협력, 즉 공적개발원조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법정비지원은 1990년대 후반에 지적 지원의 한 분야로서, 체제 이행국에 대한 시장경제 이행지원으로 시작되어 점차 법의 지배의 확립이라는 목표가 의식됨과 동시에, 지원내용·대상지역이 다양화하고 있다. 또, 법정비지원의 지원방법에는 공동형의 접근이나, 공적기관에 의한 조직적 지원 등 일본의 기술협력의 특징이라고 여겨지는 점들이 많이 나타나 있다.

1. JICA의 법정비지원의 시작과 확대

1) 법정비지원의 시작

1990년대에 들어서자, 경제의 급속한 글로벌화에 대한 대응, 또 민주화와 시장경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제·사회제도의 정비를 실시하는 등의 새로운 개발과제가 발생했다. 또, 원조의 비효율이나 실패의 원인으로서는 피원조국가의 나쁜 거버넌스¹⁰⁾가 지적되고, 개

9) 香川孝三·金子由芳, 『法整備支援論 : 制度構築の国際協力入門』、ミネルヴァ書房、2007年、37-46頁.

10) 거버넌스(governance)의 개념은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정치체제

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가기 위해서는 좋은 통치의 추진이 불가결하다는 인식이 국제적으로 원조국가 사이에서 확산되었다. 이러한 국제 정세를 반영하여, 1992년에 일본정부는 ‘공적개발원조대강’에서 인재 양성이나 제도정비 등의 지적지원을 통하여 좋은 통치를 촉진하고, 건전한 경제개발을 실현한다는 기본이념을 내세웠다.

그러한 가운데, 일본정부는 1994년에 도이모이 정책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전환하여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베트남 정부와의 정책협약에서, 지적지원, 특히 시장경제화 지원을 베트남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의 중점 5분야¹¹⁾의 한 가지로 삼기로 합의했다.

JICA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1994년에는 베트남 사법성으로부터의 요청을 받아, 민법기초에 대한 조언 등을 실시하는 단기 전문가를 베트남에 파견하고, 사법성 관계자의 일본연수를 개시했다. JICA에서는 이때부터 법제도정비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되었으며, 후에 법제도정비에 관한 지원을 가리켜 ‘법정비지원’이라는 호칭이 정착되었다.¹²⁾

의 양태’, ‘국가에서의 경제적·사회적 자원의 관리에서 행사되는 권력의 양상’, ‘정책을 계획·책정·시행하기 위한 정부의 운영능력’의 세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JICA의 조사 및 연구에서는 ‘어떤 국가의 안정·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그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형태에서 동원하고, 배분 및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기구제도, 정부·시민사회·민간부문 간의 협동관계나 의사결정의 양상 등, 제도전체의 구축이나 운영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JICA社会開発部, 2004, 3頁).

11) 일본정부는 1994년 10월에 경제협력종합조사단을 파견하여, 베트남 정부와의 사이에서 ① 인재양성·제도만들기(특히 시장경제화지원), ② 전력·운수 등의 인프라 정비, ③ 농업·농촌개발, ④ 교육, 보건의료, ⑤ 환경 등의 5가지 항목을 일본의 베트남에 대한 원조중점분야로서 합의했다. 2000년에 책정되었던 국가별 원조계획에서는, 이러한 5가지 분야를 중점분야로 베트남 원조에 힘쓸 것이 확인되었다. 그 후, 2004년 4월 28일의 국가별 원조계획개정으로, 현재의 중점분야는 ① 성장촉진, ② 생활·사회면에서의 개선, ③ 제도정비의 3가지 분야로 되었다.

외무성 HP: <http://www.mofa.go.jp/mofaj/gaiko/oda/index/kunibetsu/enjyo.html> 참조.

12) 1994년 이전에서의 JICA의 법제도에 관한 지원은 한정되어 있지만, 연수원 수용

1996년 12월에는 ‘중요정책 중추지원’ 계획안의 일환으로서, 베트남의 법제도를 개선·강화하고,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베트남 중요정책 중추지원: 법정비’ 프로젝트를 개시했다(1996~1999년. 1999년부터 단계2, 2003년부터 단계3으로 계속되었다).

1996년에 시작되었던 프로젝트(단계1)에서는 베트남 사법성에 대하여 전문가의 파견, 연수원 수용으로 시장경제화에 관련되는 개별 입법 작업에 대하여 폭넓게 조언 등을 실시했다.

1999년 12월에 시작되었던 단계2에서는, 베트남 사법성에 더불어 새롭게 최고인민재판소 및 최고인민검찰원을 대상으로 하여, 베트남 측의 다양한 니즈에 응하면서 시장경제에 적합한 민상사 분야의 법체계 정비에 중점을 두어 지원이 실시되었다. 단계1에 계속하여 개별 입법 작업에 대한 조언에 더불어, 베트남 민법의 개정 초안을 베트남과 일본 작업위원회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민법개정 공동연구’를 중심에 둔 민상사법 분야의 체계적인 입법지원, 법조양성학교로의 지원이나 일본으로의 유학생 수용 등으로 이루어진 인재육성, 의 세 가지를 협력의 기둥으로 지원이 실시되었다.

2003년 7월부터 시작되었던 단계3에서는 단계2의 세 가지의 기둥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목표를 명확히 하여 두 가지의 서브 프로젝트(A: 민법을 중심으로 한 민상사 분야 입법지원, B: 법조강화 지원)를 형성하여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2007년 3월 종료).

2) 법정비지원의 확대

시장경제에 대한 이행경제의 일환으로서 베트남에서 시작되었던 법정비지원은, 동아시아 국가(중국, 몽골), 인도차이나 국가(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에서, 시장경제에 적합한 법

사업으로서, UN 아시아극동범죄방지연수소와 연계하여 아시아 국가의 형사재판관, 검찰관, 경찰관 등에 대한 형사사법연수를 실시해왔던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제도의 정비를 주요한 협력내용으로 확대했다. 다만, 법정비지원의 목적은 반드시 시장경제화의 촉진만으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국가에서의 법정비지원에서는 시장경제화의 촉진과 함께, 기본법 정비나 인재양성을 통한 법의 지배의 확립도 목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예를 들면, 캄보디아에서는 1991년의 내전 종결 이후, ‘법의 지배’ 확립을 위한 법제도 및 사법개혁을 국가의 가장 중요과제로 규정되어 왔다. 그러나 민법, 민사소송법 등의 기본법을 비롯한 법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고, 또 정부직원 및 사법관계자의 인재가 부족하여 기술수준도 낮고, 자력으로 법령·제도의 정비를 실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JICA는 1999년 3월부터 2003년 3월까지, 민법·민사소송법 등의 기초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법제도 정비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그 후, 2003년 4월부터, 민법·민사소송법의 입법화 촉진을 지원하는 단계2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또, 캄보디아에서는 법조인재의 절대적인 인재부족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2004년부터 왕립재판관·검찰관 양성학교에 대하여 전문가로 파견하여, 2005년 11월부터 ‘재판관·검찰관 양성학교 민사교육개선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또, 캄보디아 왕립 변호사회·변호사 양성학교에 대해서는, 일본변호사연합회의 협력을 얻어 변호사 양성학교의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¹³⁾

또, 라오스는 캄보디아와 마찬가지로, 법의 지배에 근거로 하는 시장경제화를 위하여 법제도정비를 추진하고 있지만, 1980년대 중반까지 법학교육이 정지되었던 적도 있어, 법조인재의 부족이나 관계기관의 능력부족이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캄보디아와 달리, 기본적인 법령 자체는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라오스에 대한 법정비지원은 기초지원이 아니라, 민법·기업법 교과서나 판결기안 매뉴얼 등의 실무

13) JICA 소규모개발 파트너 사업 ‘변호사회 사법지원 프로젝트’(2001-2002년), JICA 개발 파트너 사업 ‘변호사회 사법지원 프로젝트’(2002-2005년).

매뉴얼의 작성지원 및 이러한 것들을 통한 인재육성지원이라는 형태를 취했다(‘라오스 법제도정비 프로젝트’ 2003년 5월~2007년 5월).

또, 시장경제 이행국 이외의 국가,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주민이 접근하기 쉽고, 신뢰할 수 있는 화해조정제도의 정비를 지원하는 것을 통하여 분쟁이 조기에 공정하게 해결되는 제도만들기, 라는 법의 지배의 확립에 불가결한 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지원도 시작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 민상사법 분야 이외에서는 필리핀에서의 보호사(保護司)제도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일본연수(2006년 6월~7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판사를 대상으로, 형사사법을 중심으로 한 사법 분야의 기초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한, 요르단에서의 제3국 연수(2003~2006년도), 아프가니스탄의 헌법기초를 담당하는 헌법위원회에 대하여, 일본헌법의 이념이나 견해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본의 헌법학자의 파견(2003년 5월) 등이 실시되고 있다.

이렇게, 당초 시장경제화의 촉진을 이루고, 민상사법을 주요한 대상분야로서 베트남에서 개시되었던 법정비지원은, 법의 지배의 확립이라는 목표도 의식되게 됨과 동시에, 지원내용 및 대상지역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2. 일본의 기술협력의 특징과 법정비지원

법정비지원은 공적개발원조의 한 형태인 기술협력¹⁴⁾으로서 실시되고 있지만, 법정비지원에는 일본형의 기술협력의 장점으로 여겨지는

14) 기술협력이란,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 발전의 담당자가 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일본의 기술이나 기능, 지식을 개발도상국에 이전하거나, 혹은 그 국가의 실정에 알맞은 적절한 기술 등의 개발이나 개량을 지원함과 동시에, 기술수준의 향상, 제도나 조직의 확립이나 정비 등에 기여하는 원조의 형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경제사회인프라의 정비 등을 목적으로 한 무상 자금협력, 유상 자금협력(엔화 차관)과 대비된다. 기술협력의 협력수단에는, 전문가의 파견, 연수원의 수용, 기재의 공여 및 개발조사가 있지만, 현재에는 개발과제의 해결을 위해서 원조 리소스의 투입을 최적화하고,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실시하기 위해서, 협력수단을 편성하여 하나의 프로젝트로서 일정기간 내에 실시하는 것이 주류이다.

특징이 많이 드러나 있다.

일본의 기술협력의 특징으로서, 다른 원조기관이 실시하는 기술협력과 비교하여 자주 지적되는 점으로서, ① 피원조국가의 자주성(ownership)을 존중하고, 공동으로 합의를 형성하면서 프로젝트의 계획, 실사가 행해지는 것, ② 피원조국가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기반 위에, 카운터파트 기관이 주체적으로 지식을 획득하고, 제도를 변혁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 ③ 피원조국가의 카운터파트 기관에 대응하는 일본 국내의 정부기관이 전문가의 파견, 연수원의 수용 등에서 지원의 주체가 됨으로써, 비슷한 기능을 가진 일본의 조직으로부터 타당한 노하우나 기술을 체계적, 기능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1) 자주성(ownership)의 존중

일본 기술협력의 특징의 한 가지로서 들 수 있는 것은, 일본도 과거 피원조국가였던 경험에서, 피원조국가의 입장에 서서 피원조국가의 자주성을 존중한 프로젝트의 계획, 실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다. 또, 이것은 일본사회의 의사결정의 특징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프로젝트의 계획, 실시에 있어서는 상대국 관계기관과의 조정을 중시하고, 관계자와의 합의형성을 도모하면서 의사결정을 실시한다. 이로써, 상대국 관계자가 결정된 프로젝트가 자신들의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수행에 있어 강한 커미트먼트(commitment)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법정비지원에서는, 일반적인 기술협력 이상으로, 자조노력 지원으로서 원조국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2003년에 개정되었던 「공적개발원조대강」에서는 법제도의 정비를 포함한 지적 지원은, 좋은 통치에 근거로 하는 개발도상국의 자조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이며, 개발도상국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그 개발전략을 중시하기 위하여, 좋은 통치 촉진을 위한 지원이 제도의 강요가 되지 않도록

개발도상국의 주도권(initiative)을 존중한다는 점의 중요성에 유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베트남에서의 법정비지원에서는 단계1 및 단계2에서, 베트남 측 카운터파트 기관의 의사를 존중하고, 베트남 측과 년도마다 협의를 실시하여, 다음 년도의 활동내용(세미나, 연수의 테마 등)을 결정한다는 방법이 취해졌다. 이러한 방법은, 3년의 기간 전체에서 활동을 계획·관리하는데 있어서 용이한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법정비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베트남 측의 신뢰를 획득하고, 지원의 성과가 베트남 국내의 법률·제도의 정비에서 중시·활용되는 것으로 이어졌다.

2) 피원조국가에 의한 주체적인 지식의 획득

또, 일본에는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유럽과 미국의 지식을 수입하여 흡수하고 내부화해온 풍부한 경험이 있다. 이 때문에, 자국의 상황에 따라 외래의 지식을 자국의 개발에 살린다는 견해는 기술협력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넓게 공유되고 있으며, 단순히 지식의 이식이나 모델의 강요가 아닌, 피원조국가에 이미 있는 지식이나 제도의 기반에 유의한 협력이 실시되고 있다.

법정비지원에서는 예를 들면, 베트남의 민법개정공동연구나 캄보디아의 민법·민사소송법 초안공동기초에서, 단순히 일본의 혹은 유럽이나 미국의 민사법을 모델로 하여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 자신들의 유럽과 미국법 수용의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의 사회의 실정에 입각한 초안이 작성되도록, 일본의 전문가와 베트남·캄보디아 측의 법안기초 관계자와의 공동작업 체제가 취해지고 있다.

3) 공적기관에 의한 조직간 협력

마지막으로, 일본의 기술협력은 원조 리소스의 조달에 관하여 중앙관청, 국립연구기관 등, 공적기관의 협력에 크게 의존해왔다는 특징이

있다. 일본의 공적기관은, 비슷한 기능을 가진 상대국의 공적기관을 조직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상대국의 공적기관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폭넓은 노하우를 하나의 패키지로 하여 종합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큰 장점이다.

법정비지원에서는 예를 들면, 베트남의 법정비지원 단계2 및 단계3에서, 일본의 법무성 및 최고재판소로부터 검찰관, 판사가 장기 전문가로서 현지에 파견되어, 각각 조직적인 백업을 얻어 활동했던 것은, 카운터파트 기관인 베트남 사법성,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원의 입장에서, 해당 기관에 필요한 지식·노하우를 장기 전문가의 활동에서 직접·간접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 매우 유효했다고 생각된다.

또, 캄보디아에서는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캄보디아변호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며, 캄보디아변호사회의 조직으로서의 능력향상이 도모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3. 향후의 법정비지원의 전망

법정비지원은 현재, 지원내용이 다양화되고 있지만, 수용내용을 크게 나누면, 법규정의 정비(률의 정비), 운용·집행기관의 정비(조직이나 집행제도의 정비), 법조인재의 육성(인재의 정비), legal empowerment(시민의 법률·사법제도에 대한 접근 향상)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베트남 및 캄보디아에 대한 법정비지원에서는 당초, 법률의 정비(기본법의 기초지원)에 중점을 둔 협력이 이루어져, 기본법의 정비가 진행됨에 따라 법조인재양성에 활동의 대상을 확대해왔다. 베트남에서는 현재 검토되고 있는 차기 프로젝트에서, 법률의 적정한 운용과 집행을 위한 사법관계 기관의 정비에 중점이 옮겨질 전망이다.

한편, 라오스에 대해서는 지원개시의 시점에서 이미 일정 정도의 법률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하여, 당초부터 판결기안 매뉴얼 작성 등의 운용면·집행과정의 개선이나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했던 협력

을 실시하고 있다. legal empowerment에 대해서는, 몽골에서의 법률부조 센터에 대한 지원이나, 캄보디아 변호사 양성학교에서 리걸 클리닉에 대한 지원 등의 사례가 있지만, 아직 프로젝트의 중요한 목적으로 규정 되어 실시된 경우는 없다.

이 네 가지 분야의 지원에 관해서는 각각이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일률적으로 어느 분야에 대한 협력이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대상국의 법체계 정비의 진전도, 법조인재의 양질의 정도, 일본의 법제도와와의 근사성 및 친화성 등에 따라,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고 또 어떻게 네 가지의 분야를 편성하여 법정비지원을 실시하는지가 유효한가, 라는 관점에서 향후의 법정비지원의 계획 및 입안을 검토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 법규정의 정비에 비하면, 다른 세 가지 분야의 협력에서의 협력 방법의 확립은 뒤떨어지고 있다. JICA는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에서의 인재육성이나 조직의 조직향상에 협력해 온 지견의 축적이 있고, 그러한 것들을 살린 법기구의 정비, 법 주체의 육성 등에서의 유효한 협력방법의 확립이 기대된다.

제 3 절 법무성에 의한 법정비지원

1. 법무종합연구소의 국제협력¹⁵⁾

법무종합연구소는 ODA 가운데,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JICA)가 소관하고 있는 기술협력의 일환으로서, 1996년부터 베트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민상사법 분야를 중심으로 법정비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법무종합연구소는 재단법인 국제민상사법센터(재단)과의 공동사업으로, 한국과의 사이에서 1999년부터 민사법무행정에 관한 실무상의 여러 문제에 대

15) 香川孝三·金子由芳, 『法整備支援論 : 制度構築の国際協力入門』、ミネルヴァ書房、2007年、74頁。

하여 양국의 실무가에 의한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중국과는 1996년부터 재단이 중심이 되고 법무종합연구소가 협력하여, 민상사법에 관한 최신의 각종 법률문제에 관한 의견·정보교환을 실시하는 일중(日中)민상사법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법무종합연구소의 국제협력은, 형사사법에 관한 국제연수협력에서 시작되었다. 1961년에 UN과 일본정부 사이에서 체결되었던 협정(1961년 조약 제4호)에 근거로 하여, UN 아시아 극동범죄방지연구소가 일본에 설치되어, 법무종합연구소 국제연합연수협력부가 운영하게 되었다. 법무종합연구소는 이러한 경험과 실적을 살려, 1996년부터 민상사법 분야에서의 법정비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당초는 법무종합연구소 총무기획부가 담당하고 있었지만, 사업량의 증대됨에 따라 2001년에 국제협력부가 설치되어 이러한 업무에 전임하고 있다.

2. 법무종합연구소에 의한 법정비지원의 과제

1) 법정비지원의 이념과 목적

법정비지원을 무엇을 위해 실시하는가, 그 이념과 목적은 관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따라 다양하다. 법무종합연구소는 법무성의 「소장사무에 관계되는 국제협력」(법무성설치법 제4조 제37호)으로서의 입장에서, 법정비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성의 임무는 법질서의 유지와 국민의 권리옹호(동법 제3호)로, 법무성이 법정비지원을 실시하는 목적은 대상국이 법의 지배를 기조로 하는 민주적인 주치국가를 확립하는 것에 공헌하는 바에 있다.¹⁶⁾

법무종합연구소 내의 국제협력부에서는 지금까지 대상국에서 권한을 가진 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지배되는 ‘사람의 지배’에서 탈피하여, 어떠한 권력도 법에 따라야 한다는 ‘법의 지배’가 확립되는 것을 목적

16) 香川孝三·金子由芳, 『法整備支援論 : 制度構築の国際協力入門』、ミネルヴァ書房、2007年、79頁.

으로 하여 법정비지원에 힘써왔다. 법의 지배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법적인 예측가능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법률에 근거로 하여 행정이 운영되고, 분쟁이 되었던 경우는 법률에 따라 재판이 실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가 바로 ‘좋은 통치(good governance)’이다.

법의 지배가 확립되고,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법제도가 완비됨으로써, 그 국가의 정치·사회·경제가 안정됨과 동시에,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외국과의 원활한 거래나 외국으로부터의 투자, 기업진출 등을 촉진하고, 인적·물적 교류를 활발하게 만들고, 지역의 안정·발전을 가져오고 더 나아가서는 일본의 안전과 번영으로도 이어지는 것이다.

특히, 민법이나 민사소송법 등의 기본법의 정비, 인재육성을 포함한 사법제도의 정비는 사회발전의 기초 인프라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다른 ODA 관계부처 등이 노력하고 있는 각종 지원의 기초·기반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¹⁷⁾

2) 법정비지원의 방법

구체적인 법정비지원 활동은, 각 지원 프로젝트마다 JICA의 기술협력의 기법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및 라오스에 대한 활동은 JICA의 프로젝트방식 기술협력의 한 형태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한 것은 ① 국내지원조직의 설치, ② 일본 연수의 실시, ③ 단기 전문가 파견(현지 세미나 등의 실시), ④ 장기 전문가 파견이다.

일본은, 메이지시대에 서유럽의 법체계를 배웠고, 제2차 대전 후에는 미국법을 받아들이면서, 독자적인 법체계를 구축하여 발전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지원 방법의 특징 중 한 가지는, ①의 국내 지원 조직에 의한 지원체제를 들 수 있다. 다른 선진국가의 지원은

17) 稲葉一生「法整備支援事業の今」『Jurist』 有斐閣、2008年6月15日(No.1358)、3頁.

대형 로펌이 수탁하여, 소인수의 법률가에 의해 실시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명칭은 연구회, 작업부회, 자문그룹(advisory group) 등으로 다양하지만, 해당 분야가 전문분야의 학자들, 법조 3자나 법무성의 직원 등을 멤버로 하는 지원조직이 설치되어, 이른바 all Japan 체제로 지원에 임하고 있는 것이 큰 특색이다. 지금까지 지원을 실시할 때, 지원대상국의 주체성·자주성을 존중하고, 중장기적 관점에 서서 자국의 법제도를 강요하지 않고, 상대국의 담당자와 연수 등의 장을 통하여 신뢰관계를 구축하면서 담당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상대국의 니즈를 충분히 바탕으로 한 지원을 실시해왔다. 특히, 민법이나 민사소송법 등의 기본법은, 그 나라의 생활이나 문화 및 습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일본의 법제를 강요해도 상대국의 실정에 맞지 않으면, 결국 뿌리를 내릴 수는 없다. 시간은 걸리지만, 상대국 담당자와의 공동작업 방식을 취함으로써, 상대국 담당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립발전으로 이어지기도 된다.

②의 일본 연수는, 지원대상국의 담당자를 일본으로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국제협력부는 연수의 기획·실시를 담당하고 있으며, 충실한 내용이 되도록 노력한다.

③의 단기 전문가 파견은 1년 미만의 기간,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여 세미나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국제협력부도 교관을 강사로서 파견하거나, 세미나의 기획에 협력하고 있다.

④의 장기 전문가 파견은, 1년 이상의 기간,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여 상대국 기간 등에 상주시켜 그 지원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국제협력부의 교관을 장기 전문가로서 파견하고 있다.¹⁸⁾ 사법성, 검찰청, 재판소 등의 협력 상대방 기관과 항상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매뉴얼이나 교재의 완성 등, 프로젝트에서 예정되어 있는 최종성과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지에서 수시로 상대국

18) 稲葉一生「法整備支援事業の今」『Jurist』 有斐閣、2008年6月15日(No.1358)、3-4頁.

관계자와 워크숍을 개최하여 작업의 촉진을 도모하는 등, 프로젝트 운용의 주요한 부분으로서의 역할을 완수하고 있다.¹⁹⁾

3) 법무종합연구소에 의한 법정비지원의 특질-법률실무가에 의한 법정비 지원²⁰⁾

법무종합연구소 국제협력부의 교관은, 검사, 판사 및 법무성 민사국 직원 중에서 인사이동의 일환으로 배속되어, 2~4년 정도 근무한 뒤 본래의 직장으로 돌아온다. 교관은 배속 시점에서는 지원대상국의 언어에는 능통하지 못하고, 대상국의 법제도나 법률에 관한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통례이지만, 배속 후는 매일의 업무를 통하여, 자신들의 기지나 노력으로 대상국의 법제도와 업무에 필요한 외국어를 습득하고 있다. 지금까지 다행히도 소질과 의욕에 넘치는 교관이 배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로에서 출발한다는 어려움을 극복하여 단기간에 각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어 그 노력은 칭찬할 만하다. 그러나 인사이동의 제도, 경험자의 이임에 따른 국제협력부의 전략저하와, 후임자의 개인적 노력에 의한 극복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부서 전체에 있어서 큰 손실이다.

한편, 국제협력부에 의한 법제도정비의 장점은, 사법연수생으로서 법조 양성교육을 받은 경험과, 법조 등으로서의 직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실무가에 의한 지원으로, 법무종합연구소가 법정비지원에 관여하는 것의 의의는 이러한 점에 있다. 그래서 법무종합연구소에 의한 국제협력은 법조양성기관에서의 법률실무교육의 지원이나, 재판관에 의한 판결기안 실무의 개선 등,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분야의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19) 香川孝三·金子由芳, 『法整備支援論 : 制度構築の国際協力入門』、ミネルヴァ書房、2007年、75頁.

20) 香川孝三·金子由芳, 『法整備支援論 : 制度構築の国際協力入門』、ミネルヴァ書房、2007年、79-80頁.

4) 법정비지원과 국익²¹⁾

ODA의 제도 중에서 기술협력은 무상 자금협력과 더불어 무상원조인 ‘양국 간 증여’의 하나로 규정되고 있다. 무상원조인 이상, 원조 상대국이나 관계자로부터 대가 등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이 실시하고 있는 원조활동은, 현장에서는 어디까지나 상대국의 입장에 서서 상대국과 함께 생각하고 공헌하는 것을 본래의 취지로 하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지원’이어야 하며, 일본의 법정비지원이 대상국에서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원조의 자세에 기인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일본이 특정국가에 대하여 무상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그것은 국민의 세금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있는 이상, 어떠한 의미로 일본 및 국민의 이익, 즉 국익으로 이어져야 한다. 문제는, 그러한 국익을 어떻게 보는가이다. 법정비지원은 사회제도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호흡이 긴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국익도 긴 시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대상국에서 법의 지배에 입각한 좋은 통치의 실현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짐으로써, 해당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도모됨과 동시에, 대상국과 일본 간의 우호관계가 강화되는 것을 통하여, 일본의 안전보장과 국제적인 지위의 향상이 실현되는 것이, 일본이 국제협력을 실시하는 이유이며, 일본의 국익이라고 생각된다. 지원대상국의 선정 시에는, 이러한 관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5) 법정비지원의 실시체제 및 책임체제²²⁾

법정비지원은 주로 JICA의 기술협력의 제도를 이용하여 실시되어지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에 대신하는 현실적인 수단은 찾아내기

21) 香川孝三·金子由芳, 『法整備支援論 : 制度構築の国際協力入門』、ミネルヴァ書房、2007年、80頁.

22) 香川孝三·金子由芳, 『法整備支援論 : 制度構築の国際協力入門』、ミネルヴァ書房、2007年、81-84頁.

어렵고, 앞으로도 이 방법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과연 법정비지원의 방법으로서 정말로 이상적이고 적합한 수단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첫째로, 프로젝트방식 기술협력에서의 JICA와 법무종합연구소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검토한다.

ODA는 외무성 국제협력국이 소관하고, ODA 가운데의 기술협력에 관한 실시기관으로서 JICA가 설치되어 있다. ODA는 넓은 의미에서의 외교의 일환이지만, 외무성의 ODA에 대한 관계 방식은, 이른바 지역국 등이 소관하는 통상의 외교활동과는 다르고, JICA에 대한 감독행정이라고 해도 좋다. 외무성은 기술협력의 기본방침을 책정하는 외, 개개의 기술협력안건의 선택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안건의 형성에서 실시에 이르는 실질적인 작업은 JICA의 주도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개개의 안건에서의 구체적인 지원활동에는 외무성은 관여하지 않고, JICA의 책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²³⁾

법정비지원은 프로젝트방식 기술협력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 제도는 JICA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기관은 JICA로부터 의뢰를 받아 활동을 한다. 예를 들면, 베트남, 캄보디아의 법령기초지원을 위한 법률학자 등에 의한 공동연구회 및 부회는 JICA가 조직하고, 위원도 JICA가 위촉한다. 장기 전문가나 현지 세미나 강사 등을 위한 단기 전문가도 JICA가 위촉하여 파견한다. 일본연수는 JICA가 재단에 실시를 위탁하여, 국제협력부가 재단에 전면적으로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다.

23) 각 기술협력 프로젝트마다, 현지 차원에서 원활한 협력의 실시를 추진하기 위한 협의의 장으로서, 일본과 지원대상국의 양측 관계기관에 의한 조인트 코디네이션 위원회(Joint Coordination Committee)가 설치되었던 적이 있어, 거기에는 JICA 현지 사무소 외, 일본의 재외공관도 참가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이것은 JICA의 기술협력에 대한 재외공관에 의한 측면지원입과 동시에, 외무성의 JICA에 대한 감독행정의 일환으로, 기술협력 그 자체는 JICA가 그 권한과 책임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법무종합연구소 쪽에서 보면, 법무종합연구소는 일본연수에 대해서는 조직으로서 수탁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장기 및 단기 전문가 파견과, 공동연구회 및 부회에 대한 위원 파견은, 형식적으로는 개개의 교관을 인재파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어느 경우에서도 법무종합연구소는 JICA에서 의뢰를 받아 이에 협력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계획안 하에서, 프로젝트 운영의 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완수하는 것은 JICA를 제외하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나 JICA는 개발원조기관으로서 토목건설, 농업, 보건위생, 교육, 산업, 경제, 금융, 세제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협력을 착수하고 있으며, 법정비지원은 지원 분야 가운데 한 가지에 불과하다. 법정비지원은 전문기술성이 매우 높지만, JICA는 사법제도나 법률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경험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JICA가 법정비지원에 관하여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사령탑 기능을 완수하는 것은 짐이 무거운 것처럼 생각된다. 즉, JICA는 최근에 법정비지원을 포함한 법률·사법문제에 관한 어드바이저로서, 변호사를 상근의 국제협력 전문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둘째로, 법정비지원과 국가의 운영책임의 문제에 대하여 검토한다.

법정기초지원에 관련하여, 법정비지원은 본래 국가의 책임에서 실시되어야 하는 국가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로서의 운영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있다. 즉, ODA로서의 기술협력은 국가의 사업으로, 국가에 운영의 책임이 있지만, 국가로부터 JICA에 업무가 위임되어, 거기서 또 법률학자에 의한 국내지원위원회나 법령기초를 위한 공동연구회 또는 부회에 업무가 넘겨져, 그에 따라 국가의 책임이 점차 희석되고 있다. 그 결과, 본래는 국가에 대한 자문기관에 불과한 학자에 의한 국내지원위원회, 공동연구회나 부회가 지원활동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게 되지 않는가, 라는 비판이다.

법정비지원은, 한 국가의 통치의 근간에 관계되는 기본법제나 사법제도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하여, 주권국가에 대하여 입법의 권고, 기

타 정책제언을 실시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책임에서 국가에서 국가에 대하여 실시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주장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ODA의 기술협력 제도가 그러한 역할에 적합한 메커니즘인지의 여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프로젝트방식 기술협력으로 실시되고 있는 법정비지원은 제도의 시스템 자체로서, 정부의 외곽단체, 즉 외무성 소관의 독립행정법인인 JICA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정부에 의한 활동이라는 말하기 어렵다.

또, 상대국에 대한 지원내용이나 제언내용을 결정할 때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보아도, JICA 베이스의 기술협력으로 실시되는 법정비지원에서는, 예를 들면 국제회의의 정부대표 단원에게 부여되는 대처방침이나 훈령²⁴⁾과 같은 형태로 정부견해를 정리하여 제시하는 작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지원이나 제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 견해로서 이해되었던 것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²⁵⁾ 그러한 의미에서 말하면, JICA 베이스의 기술협력은, 제도의 시스템으로서는 ODA의 일환이기 때문에, 확실히 국가(정부)로서의 노력이지만, 구체적인 활동 자체는

24) 국제회의에 출석하는 정부대표단원에 대해서는, 외무성(외무대신)으로부터 대처방침이나 훈령이 제시된다. 예를 들면, 결의안이나 조약안의 심의를 실시하는 경우, 각 조항의 문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수정제안 등, 어느 대응의 취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대표단으로부터 외무성에 대하여 청훈(문안 제안의 취지와 배경, 각국의 대응 등을 설명하고, 일본으로서의 대응안을 제시하여 훈령을 청구하는 것)을 행하여, 훈령을 받은 후, 이에 따라 대처해야한다. 외무성은 대처방침안이나 청훈안의 내용이 다른 관청의 소관사항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관계관청과의 사이에서 합의를 실시하여, 정부전체로서의 합의를 형성한 뒤 대처방침이나 훈령을 내린다. 그러나 JICA 베이스의 법정비지원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정부 견해를 형성하기 위한 메카니즘은 존재하지 않는다.

25) 일례를 들면, 베트남 민사소송법 기초지원 과정에서, 일본 측으로부터 베트남측(법안기초권한을 가지는 최고인민재판소)에 대하여, 베트남 민사소송법 공동연구회의 전문가위원회에 의한 토의와 합의에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 절차에서의 당사자주의의 도입, 감독심제도의 폐지, 검찰관에 의한 민사소송의 제기권한의 폐지 등의 의견을 말했다. 이러한 의견의 내용자체는 합리성 및 타당성이 높다고 생각되지만, 그 의견은 일본의 정부견해로서 공인되었던 것이라고는 하기 어렵다.

정부 차원의 활동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전문가 차원의 활동이라고 생각해야하는 것처럼 여겨진다.²⁶⁾

이렇게 살펴보면, 법정비지원을 JICA의 기술협력의 제도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이상, 엄밀한 의미에서 국가(정부)로서의 책임을 문제시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²⁷⁾

셋째로, 양국의 동업기관 사이의 신뢰관계에 대하여 검토한다.

법무종합연구소가 실시하는 법정비지원에서는, 대상국의 카운터파트 기관은 사법성, 검찰청, 법원, 법조양성기관 등의 사법관계 기관이다. 일본이 평소 지원업무를 통하여 카운터파트 기관과 접촉하는 가운데 실감하는 것은, 이러한 기관은 각각의 소관사항에 관하여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중앙관청이라는 공지와 자부심에서, 일본에서 비슷한 입장에 있는 대응기관, 즉 일본의 법무성, 검찰청 또는 법원 등과 사이에서의 상호교류와, 이러한 기관에 의한 지원을 바라고 있다는 점이다. 즉, 카운터파트 기관이 일본의 법무종합연구소에 의한 지원활동에 협력하는 것도, 일본 정부의 ODA에 의한 기술협력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동업기관 상호간의 신뢰감과 연대감, 즉 법무성에 속하는 법무종합연구소가 조직으로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지원을 신뢰하여 받아들이고 있다는 면이 어느 정도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법정비지원은, 현실적으로는 앞으로도 ODA의 기술협력의 방법을 이용하여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 실시체제나 실시방법

26) 개개 프로젝트에서, 대상국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의 지원을 실시하고, 어떠한 의견·제언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법령의 기초지원 등을 담당하는 공동연구회 또는 부회의 의원, 현지에서 상대국 관계자에게 조언을 제공하는 장기 전문가, 법무종합연구소 국제협력부 교관 등, 지원활동에 관계되는 각 전문가(학식경험자)의 견해와, 이러한 전문가 상호간의 협의에 위임되어 있다.

27) 만약 법정비지원을, 국가(정부)가 내용에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국가로부터 국가에 대한 정책제언으로 행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일미(日美)구조협약의와 같이, 일본과 상대국과의 사이에서의 외교적 대화로서 실시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서는, 이상과 같은 다면적인 요소를 고려한 뒤, 더욱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6) 도너 간 협조의 필요성

민상사법에 관한 법정비지원의 분야에서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가나 국제기관(donor)이, 각각 독자적인 입장에서 많은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정한 국가에 대한 복수의 도너에 의한 지원이 중복되거나 저축되는 경우도 있다. 대상국의 입장에서 일관성 있는 효율적인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도너 사이에서의 협의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할 수 있다.

형사사법의 분야에서는 세계 각국이 공통된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협조적인 노력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인식되어 실천되고 있다. 마약범죄의 심각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1988년에 UN 마약 신조약이 채택되어 마약범죄의 수익에 대한 돈세탁(money laundering)의 범죄화나, 도망범죄인의 인도 및 국제수사공조 등의 강화 등이 의무화되었다. 그 후, 국제조직범죄나 오직부패의 분야에서도 UN조약의 채택을 통하여, 비슷한 국제적 대응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UN 범죄방지형사사법위원회나, 위의 각 조약의 체약국회의 등이, UN 가입국간에서의 정책협회의 장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런, 법정비지원의 분야에서는 이러한 협조적인 대응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운이 높아지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원조대상국의 현지 베이스에서, 도너국이나 도너 기관이 때때로 회의를 개최하여 정보교환을 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실정이다. 향후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보다 본격적이고 항상적인 정보교환이나 정책협회의 장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이치를 탐색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일 것이다.

제 4 절 각국에 대한 법정비지원의 현황²⁸⁾

1. 대상국·대상지역

법무성 법무종합연구소가 기존부터 노력해왔던 지원사업의 대상국은 모두 아시아지역이다.

ODA 대강에서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일본의 안전과 번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시아는 중점지역이다’라고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아시아는 ODA의 중점지역이다. 일본도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시아 여러 국가와는 역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관계가 깊으며 공통된 문화적 기반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계에 있는 아시아 여러 국가를 지원하는 것은, 이러한 여러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일본의 안전과 번영에 기여하게 된다고 생각된다.

2. 베트남

1) 종래의 경위

일본의 법정비지원 가운데 베트남에 대한 것이 가장 역사가 깊고, 법무성이 협력을 실시했던 것은 1994년이다. 그 후, 1996년, JICA의 법정비지원 프로젝트로서 실시되고 나서부터 2007년 3월 동 프로젝트의 단락이 일단 마무리 될 때까지 동안, ① 민사기본법령의 기초·개정, ② 국가사법학원에서의 법조양성, ③ 판결서의 표준화, ④ 베트남 국가대학 법학부 하노이교에서의 일본법 교육 등의 실시가 실시되어 왔다. 이러한 지원의 결과, 2004년에 민사소송법과 파산법이, 2005년에는 개정 민법이, 각각 베트남의 국회에서 가결 성립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28) 稲葉一生「法整備支援事業の今」『Jurist』 有斐閣、2008年6月15日(No.1358)、3頁、4-8頁.

2) 법조 3자에 의한 현지 지원 활동

베트남에 대한 일본의 법정비지원은 베트남의 사법성,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원 등, 사법제도의 핵심기관을 상대로 하고, 당초는 변호사의 장기 전문가의 파견뿐만이었지만, 2000년 이후, 현직의 재판관, 검찰관, 변호사라는 법조 3자가 JICA의 장기 전문가로서 파견되어 상주하고, 일상적, 기동적으로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베트남 측 사법관계기관과 두터운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의 한 가지로 들 수 있다. 검찰관 출신의 장기 전문가에 대해서는 국제협력부 설치 후인 2003년부터는 국제협력부 교관을 파견하고 있다.

3) 현재의 상황과 과제

이러한 경위로, 2007년 4월부터는, 종전 프로젝트의 계속이 아니라, 4년 계획의 신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각각 5대째가 되는 법조 3자의 장기 전문가가 파견되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서는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의 개정이나 행정소송법, 국가배상법, 민사판결집행법 등의 중요한 법률의 기초지원도 예정되어 있지만, 실무개선을 위한 지원에 보다 한층 더 중점이 놓여지게 되었다. 즉, 법의 운용체제 및 법조 등의 능력개선을 위한 지원으로서, 베트남 측이 지정하는 파일럿 지구(박닌성이 지정되었다)에서, 주로 사법기관(재판관, 검찰관, 변호사)을 대상으로 하여, 재판실무의 개선과 실무능력의 향상을 위한 활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다른 지방에서도 사법기관 외 사법보조기관(호적, 부동산등기, 공증, 집행에 관계되는 직원)도 대상으로 하여, 그러한 능력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실시하는 것이 예정되어 폭넓은 지원이 계획되어 있다. 파일럿 지구에서는 장기 전문가를 중심이 되어 베트남 측 워킹그룹(Working Group)과 함께, 현행의 재판절차·재판소에서의 재판활동의 모니터링이나 현행 실무의 검증과 문제점을 찾아내어 문제점의 원인분석과 개선책의 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중앙기관에 환원한 후, 기존의 지원에서 작성했던 실무 매뉴얼의 개정이나 새로운 매뉴얼의 작성, 판례나 기타 법률 정보의 지방으로의 전달 및 지방으로부터의 문의에 관한 응답방법의 개선 등에 반영시키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

중전의 프로젝트에서는 재판관으로서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좌장을 중심으로, 국내지원 조직인 연구회 멤버들에게, 판결서 개선 등을 위해서 많은 협력을 받았다. 신규 프로젝트에서는 앞에서 서술했던 것처럼, 중전에 비하여 실무개선의 지원에 중점이 놓여지게 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젊은 실무자인 현지의 장기 전문가를 충분히 서포트하기 위해서도 앞으로 더욱더 경험이 풍부한 실무가의 협력이 필요하게 된다. 또, 여전히 중요한 법률의 개정이나 신규 입법 지원도 예정되어, 앞으로 프로젝트의 진행에 따라 새로운 국내 지원조직·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나 실무가, 관계기관 등의 협력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3. 캄보디아

1) 종래의 경위

(1) 민법 및 민사소송법 기초지원

일본 측의 국내지원 조직인 민법작업부회 및 민사소송법 작업부회가 많은 노력을 들여, 캄보디아 측과 여러 차례에 걸친 협의를 거듭하면서 완성시킨 민법 초안 및 민사소송법 초안은 2003년 3월까지 캄보디아 측에게 인도되었고, 그 후, 캄보디아 국내의 정치정세에 의해 약간 시간을 필요로 했지만, 민사소송법에 대해서는 2006년 7월, 법률로서 성립· 공포되어 2007년 7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한편, 민법은 적용개시일은 미정이지만, 2007년 12월에 법률로서 성립되었다. 원안을 일본이 작성한다는 방식으로, 민법 및 민사소송법이

라는 민사 분야의 기본법이 법률로 정비되었던 것은, 일본의 법정비 지원에서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 재판관·검찰관 양성지원

재판관·검찰관을 양성하는 왕립재판관·검찰관 양성학교(이하 ‘양성학교’라고 한다)가 2003년 11월에 교육을 시작했지만, 양성학교의 체제는 취약했다. 그래서 국제협력부에서는 JICA와의 협력 아래에서, 정식적인 지원 프로젝트를 형성하기 전에, 조사·준비적인 지원활동을 실시하면서, 양성학교의 체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먼저, 2004년 1월부터 국제협력부 교관을 반년 간 파견하여 조사를 한 후, 양성학교 관계자를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했다. 또, 교관을 단기 전문가로 5개월 정도 파견하는 것을 반복하여, 1기생 커리큘럼의 재검토나 교재의 작성 지원 작업 등을 추진하여 프로젝트화를 위한 준비활동을 실시하고, 1기생에 대한 모의재판을 실시하거나 민사 제1심 절차 매뉴얼 작성지원 등을 실시하면서, 양성학교 측과 협의를 추진하여 2005년 11월, 드디어 정식으로 JICA의 지원 프로젝트를 하기에 이르렀다. 정식적인 프로젝트화에 따라, 2006년 2월부터 교재작성이나 교관양성 등의 지원을 위해, 국제협력부 교관을 비롯하여 장기 전문가로서 양성학교에 파견했다.

2) 현재의 상황과 과제

(1) 기초지원

2008년 4월부터의 4년 계획 프로젝트에서는, 민법 관련의 호적, 등기, 공탁 등의 부속법령의 기초·정비, 민법, 민사소송법의 적절한 운용을 위한 지원 등이 예정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일본 측이 원안을 기초해 왔지만, 앞으로는 캄보디아 측에 기초의 주도권을 옮기게 되었다. 그러나 민법의 부속법령은, 등기나 공탁 등의 업무를 어느 기관

이 취급하게 하는가, 그 설비나 기제는 어떻게 하는가 등 캄보디아의 제도설계나 인프라 정비와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을 것, 일본의 지원 대상 기관인 사법성 이외의 기관이 소관하고 있는 제도와의 조정이 필요할 것, 정비해야 하는 법령이 많은 가운데, 캄보디아 측의 워킹그룹의 주요한 멤버는 사법성 또는 재판소에서 요직을 맡고 있으며 그 본래 업무가 매우 바쁜 등, 과제는 많아 일본 측의 지원에 기대되는 부분은 여전히 크다. 그러한 가운데, 캄보디아 사법성 내에 새롭게 워킹그룹의 멤버가 될 수 있는 젊은 세력에 의한 서브 워킹그룹이 결정되었던 것은 캄보디아 측이 입법을 담당하는 인재양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드러난 것으로, 자립발전성의 관점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요소이다.

한편, 일본 측의 장기 전문가에게 기대되는 활동내용도 다기에 걸쳐 있으며 양적으로도 과중한 상황에 있지만, 새롭게 업무조정 전문의 장기 전문가가 1명 파견될 예정으로, 과중한 부담이 경감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2) 재판관·검찰관 양성지원

2008년 4월부터의 4년 계획의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국제협력부에서 2대째의 장기 전문가를 파견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재판관·검찰관 양성지원에 JICA 프로젝트의 형성과정부터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실무가의 양성지원은, 바로 실무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야 하는 활동으로, 앞으로도 사법연수소 교관을 비롯한 국내 지원 위원 등의 조언을 얻으며 교재작성지원, 커리큘럼 개선지원, 교관양성지원 등, 적극적으로 양성학교에 대한 지원에 힘써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재판관·검찰관의 신규양성 교육에 특화된 지원이었지만, 2008년 4월 이후 지원내용을 캄보디아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양성학교 측의 강한 요청이 있어, 재판관의 계속 교육도 지원 내용에

포함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현지에서의 지원체제로는 계속 교육 지원에 대한 대응은 매우 한정된 것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프로젝트의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교섭과정에서는 서기관 양성학교, 집행관 양성학교에 대한 지원도 요청되고 있었다. 일본이 지원했던 민법 및 민사소송법이 적절하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재판관뿐만 아니라, 서기관 및 집행관의 양성도 중요하다는 것은 확실하며, 앞으로 일본 측 지원체제의 내실화·강화가 기대된다.

4. 라오스

1999년부터 사법관계자의 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일본연수·현지 세미나를 시작하여 법무종합연구소 교관을 JICA 단기 전문가로서 현상조사 등에 파견하는 등을 실시한 결과, 2003년부터 법정비지원 프로젝트가 실시되어, 국제협력부로부터는 전문관을 JICA 장기 전문가로 파견하는 외에, ① 민법과 상법의 교과서 작성지원, ② 민사 제1심 재판의 판결서 매뉴얼 및 검찰관 매뉴얼의 작성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연수와 현지 세미나를 실시했다.

2007년 5월, 이 프로젝트는 종료되고, 현재 다음의 프로젝트까지의 ‘브릿지 기간’으로서, JICA 라오스 사무소에서 위의 각종 성과물의 보급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향후, 인적체제를 포함하여 신규 프로젝트의 실시여부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5.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국가 중기개발계획(2004년~2009년)에서의 세가지 기둥 중 한 가지에 ‘민주적이고 공정한 인도네시아의 창조’가 거론되고 있으며, 그 아래에 ‘사법기관·법집행 기관의 능력향상 프로그램’이 설정되어 있다. 그 활동의 한 가지로서 ‘미제사건의 해결촉진화’를 들

수 있으며, 미제사건의 삭감이 급선무로 여겨지고 있다(인도네시아에서는 최고재판소에서는 미제사건이 많아 화해 및 조정절차는 매우 저조했다).

국제협력부에서는, 인도네시아에 대하여 2004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민사분쟁해결 제도의 운영에 관한 비교연구’를 테마로 하여 ① 화해·조정실무의 개선, ② 소규모 분쟁에서의 간이한 재판절차의 도입, ③ 상소제한의 도입에 중점을 두었던 일본연수를 계속적으로 실시해온 바, 2006년의 연수 성과로서, 인도네시아에서의 화해·조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案)이 연수원들에 의해 작성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JICA 프로젝트로서 2007년 3월부터 2년간의 예정으로, 화해·조정제도 정비를 위한 최고재판소규칙개정 등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국내 지원조직으로서 전 재판관으로 이 분야에 상세한 교수 등으로 구성된 자문그룹이 결성됨과 동시에, 변호사의 장기 전문가가 현지에 파견되었다. 국제협력부는 이러한 그룹멤버의 교수들과 장기 전문가와 제휴하여, 일본 연수, 현지 세미나를 비롯하여 프로젝트의 운영전반에 협력하고 있다.

6.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구소련에서 독립한 후, 시장경제화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국유기업의 민영화 등에 따라, 도산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구소련연방시대는, 국영기업 체제가 취해지고 있었으며, 기업의 도산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산법이 제정되어도 그 제도가 좀처럼 주지되지 않고, 또 도산법에 관한 문헌 등도 없었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과 실무가 다르거나, 실무의 취급도 가지각색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법무종합연구소에서는 JICA와 협력하여 우즈베키스탄에 대하여 시장경제화 촉진을 위한 연수 등의 활동을 실시해온 바, 도산사건을 소

관하는 우즈베키스탄 최고경제재판소로부터의 요청에 부응하여, 2004년부터 우즈베키스탄 도산법 주석서의 작성지원에 협력해 왔다(JICA 프로젝트로서 합의문서가 교환되었던 것은 2005년 11월이지만, 사실상 2004년 10월부터 지원을 시작하고 있다). 그 성과로서 2007년 3월에 도산법 주석서(러시아어), 같은 해 9월에 우즈베키스탄어판 및 일본어판, 2008년 3월에 영어판이 각각 간행되었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히 주석서 발간의 자금을 지원한다는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고, 일본 측의 국내지원조직으로서 일본의 도산법의 전문가에 의한 우즈베키스탄 도산법 주석서 작성지원 위원회가 설치되어, 우즈베키스탄 측 워킹그룹이 집필했던 원안에 대하여 일본 측이 코멘트나 수정안을 제시하여, 보다 좋은 내용이 되도록 협의를 거듭해온 것이다. 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도중에, 영어 외 러시아어도 능통한 변호사의 장기 전문가가 현지에 파견되고, 국제협력부로서도 이러한 전문가와 밀접한 제휴를 맺으며 프로젝트의 운영에 협력해왔다. 이러한 경위를 거쳐, 우즈베키스탄에서 최초의 도산법 주석서가 발간된 의의는 크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2007년 9월에 종료되었지만,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보면, 중앙아시아 국가에는 여전히 법령이 미비하거나 운용이 통일되어 있지 못하는 등의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는 국가도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이러한 국가들은 우라늄 등의 천연광물자원의 공급 국가로서 재화에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일본의 정치적·경제적인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일본에서 중앙아시아 국가에서의 법제도·실무에 대한 정보가 더욱 더 중요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 바이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지원경험을 바탕으로, 2008년도부터는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국가 회사법제 등을 테마로 하는 ‘중앙아시아 비교법 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이다.

7. 중 국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로부터 일본에 대하여 중국의 민사소송법 및 중재법의 전면 개정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어, ‘중각민사소송법·중재법 개선 프로젝트’가 2007년 11월부터 3년 계획으로 시작되었다.

협력내용으로서는 위의 법제공작위원회 민법실의 기초담당자 등에 대하여, 일본의 법 개정의 경위나 그 배경에 있는 실무의 실정 등에 관한 지견 등,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중국의 실정을 바탕으로 한 개선점을 제언해가는 것 등이 예정되어 있다. 국내지원조직으로서 일본의 민사소송법 등의 연구자와 법조실무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회가 설치됨과 동시에, 2007년 11월에 제1회 일본연수, 2008년 3월에는 현지 세미나가 각각 실시되었고, 같은 해 5월에는 제 2회 일본연수가 예정되어 있다. 또, 같은 해 4월부터는 중국으로의 유학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장기 전문가가 파견되었다.

민사분쟁 해결을 위한 중요한 법적기반인 민사소송법 등의 개정은, 일본을 포함하여 중국과 교류가 있는 많은 국가에게 있어 의의가 있는 것으로, 법무성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프로젝트에 전면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있다.

제 5 절 법정비지원을 둘러싼 상황과 과제²⁹⁾

법정비지원 사업은 대상국의 사법제도의 근관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가나 국제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동종의 지원과 적절한 제휴 및 조정을 도모하면서, 대상국 전체의 법체계에 정합성이 있으며 또 해당국의 실정에 적합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일

29) 稲葉一生 「法整備支援事業の今」 『Jurist』 有斐閣、2008年6月15日(No.1358)、8頁。

본의 입장에서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실정을 보면, 대상국으로부터의 개별 요청을 그때마다 개별로 검토하고, 개개의 관계부처 등에 따라 가지각색으로 실시되고 있는 인상이 강하고, 그러한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져 왔는가,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또, 본래 업무에 매우 바쁜 연구자 등의 일부를 보란티어라고도 할 수 있는 만큼의 헌신적인 협력에 의존해왔던 부분도 크다고 생각된다.

법정비지원 사업에서, 법무성, 그 중에서도 국제협력부가 완수해야 하는 역할이 중대한 점은 명확하다. 그러나 법무성만으로 완수할 수 있는 지원에는 저절로 한계가 있으며, 일본 국내의 제휴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휴에는 크게 나누어 두 종류가 있어, 첫째가 국내 법률가간의 제휴이고, 둘째가 관계부처 등의 제휴이다.

법정비지원에서 현지에서의 지원활동에 임하는 전문가로서, 법률가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재차 말할 필요도 없다. 또, 국내의 서포트 체제로서, 법조 3자와 학계가 이른바 All Japan으로서의 지원조직을 정비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법정비지원에 관여하는지의 여부는 법률가 개인의 의사에 따르는바가 크고, 앞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법정비지원 활동에 대한 관심과 의욕을 가지는 법률가가 늘어날 것이 기대되지만, 그러한 법률가가 늘어나듯이, 법률가의 인센티브를 높일 노력이나 연구가 필요하다.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법률가뿐만이 아니라, 지원대상국의 현지어와 일본어의 법률용어에 정통한 통역·번역가의 양성과 확보이다. 법정비지원은 말이라는 도구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 기술지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매우 한정된 사람들에게 통역이나 번역 업무를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원의 인적 체제를 포함하여, 관계부처가 제휴하고, 정부 전체가 법정비지원에 대한 대응전력이나 기본계획의 책정이 내각을 중심으로 진행되려고 하고 있다. 앞에서 서술했던 해외경제협력회의

에 관계부처 등의 국장급 멤버로 구성된 연락회의가 설치되었고, 또 관계부처의 과장급 멤버로 구성된 워킹그룹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향후 법정비지원에 관한 니즈 조사를 재차 실시하고, 중점 국가, 지역, 지원 분야, 인재 확보 등에 관한 정부의 기본계획을 책정하는 것이 예정되고 있다.

지금까지 법정비지원에 종사해온 경험과 지견을 살리면서, 정부전체로서의 노력에 전면적으로 협력해나가야 한다. 향후 그러한 정부전체의 시스템에서 법정비지원이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여기에는 많은 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5 -

우리나라는 ODA수혜국을 졸업하고 어느덧 ODA지원국으로 성장하였다. 우리나라는 과거 역사적 관계 때문에 특히 일본으로부터 ODA 지원을 받은 탓에, 우리나라의 ODA체제가 일본과 매우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하 일본의 ODA법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일본의 경우, 종전의 ODA 관련 업무는 ‘무상자금 협력업무’는 ‘외무성’이 담당하고, ‘기술 협력’은 ‘JICA’가 담당하는 대신 ‘유상자금 협력(엔화 차관) 업무’ ‘JBIC(국제협력은행)’가 담당하는 ‘2원화 체제’로 운영해 왔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무상자금 협력 업무’는 ‘재정부’소관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기술 협력’ 및 ‘유상자금 협력(차관) 업무’는 ‘KOICA’의 소관으로 되어 ‘2원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ODA 업무가 2원화 체제로 운영되다 보니 소관 부처 간에 상호유기적인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결점을 보완하고자 ODA업무 소관기관을 일원화하였다. 다시 말해서 JBIC의 해외경제협력업무와 외무성의 무상 자금협력업무(외교정책상 외무성이 직접

실시하는 것은 제외)가 JICA에 흡수되어 2008. 10. 1.에 ‘신 JICA’가 탄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2원화 체제가 소관부서 간의 원만한 의사소통과 업무협조에 혹시 허들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면밀히 검토한 다음, 만일 그러한 요소가 있다면 일본과 같이 ODA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을 일원화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우리나라는 ODA 후발주자인 탓에 일본의 ODA지원 대상국이상당수 중첩된다. 다시 말해서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선발주자인 일본과 경쟁을 해야 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ODA수혜국에서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ODA지원활동과는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일본은 동남아시아에서 ODA지원활동의 일환으로서 법정비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나, 우리나라에서는 ODA의 사정거리가 아직 법정비지원에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의 경우 아직도 현대적인 법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거나, 법은 정비되어 있더라도 원만하게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국가에 대한 법정비지원은 유형의 물질적인 지원이상으로 효과적인 때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넷째, 일본의 ODA지원활동의 특징을 보면, 수혜국에 대해 일본적 시스템이나 법제도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권장하는 것을 지양하고, 가능한 한 수혜국 스스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수혜국에 대해 자기 나라의 법제도 등을 일방적으로 이식하려 하거나 권장하는 유럽의 국가들과는 매우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관습 및 법제도가 다른 나라에 대해 ODA지원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일본과 같은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 문헌

<논문>

鮎京正訓 「法整備支援活動による法整備の国際発信」 『法律のひろば』 2006年8月(Vol.59 No.8)、37-43頁.

鮎京正訓 「大学による法整備支援—人材育成と比較法学の課題」 『法律時報』 日本評論社、2010年1月(Vol.82 No.1)、17-21頁.

鮎京正訓 「名古屋大学と法整備支援事業・研究」 『Jurist』 有斐閣、2008年6月15日(No.1358)、17-25頁.

磯井美葉 「弁護士会に対する支援の意義と課題—モンゴル弁護士会支援の経験から」 『法律時報』 日本評論社、2010年1月(Vol.82 No.1)、46-49頁.

伊藤文規 「法整備支援の現場から—ベトナムにおける法・司法制度改革支援プロジェクトについて—」 『研修』 2009年7月(No.733)、53-60頁.

稲葉一生 「法整備支援に学ぶ—外から見直した日本の法制度—法整備支援の今後の課題」 『研修』 2007年7月(No.709)、81-86頁.

稲葉一生 「法整備支援の軌跡と今後の課題」 『法の支配』 日本法律家協会、2007年10月(No.147)、84-92頁.

稲葉一生 「法整備支援事業の今」 『Jurist』 有斐閣、2008年6月15日(No.1358)、2-8頁

上原敏夫・竹下守夫・大村雅彦・三木浩一・松下淳一・矢吹公敏・田中嘉寿子 「[座談会]法整備支援の現状と課題」 『Jurist』 有斐閣、2003年4月15日(No.1243)、64-86頁.

上原敏夫 「カンボジア民事訴訟法典の成立」 『Jurist』 有斐閣、2008年6月15日(No.1358)、26-33頁.

上柳敏郎 「法整備支援の制約条件とその克服—特集あと書きにかえて」 『法律時報』 日本評論社、2010年1月(Vol.82 No.1)、54-57頁.

岡村泰孝 「(財)国際民商事センターの法整備支援活動」 『法律のひろば』 2001年10月Vol.54 No.10)、38-43頁.

尾崎道明 「法整備支援の新たな展開—国際協力部の親切」 『法律のひろば』 2001年10月(Vol.54 No.10)、4-11頁.

尾崎道明 「法務総合研究所国際協力部における民商事法を中心とした法整備支援活動について」 『法の支配』 日本法律家協会、2002年7月(No.126)、5-16頁.

大谷美紀子 「国際司法支援活動における国際法曹団体との協同」 『法律時報』 日本評論社、2010年1月(Vol.82 No.1)、50-53頁.

落美都里 「我が国の法整備支援の現状と問題点—法分野からの平和構築—」 『レファレンス』 国立国際図書館調査及び立法考査局、2007年3月号、99-109頁.

香川孝三 「在ベトナム日本大使館公使として触れたベトナムの法と社会(3)—法整備支援事業—」 『法学教室』 2006年12月(No.315)、6-7頁.

金子由芳 『法整備支援における政策判断に資する立案・評価手法の検討』 国際協力総合研究所、2006年8月.

神木篤 「法曹養成支援の課題—カンボジア」 『法律時報』 日本評論社、2010年1月 (Vol.82 No.1)、34-37頁.

川嶋四郎 「日本における法整備支援の課題と展望について」 『法政研究』 九州大学大学院法学研究院、2007年3月(Vol.74 No.4)、685-714頁.

- 亀卦川健一 「法務省法務総合研究所国際協力部の行う法整備支援について」
『慶応法学』2009年3月(No.13)、239-261頁.
- 桑原尚子 「法整備支援における「法の移植(legal transplants)」をめぐる議論の
序論的考察—理論と実践の架橋をめざして—」『国際開発研究
フォーラム』、2007年3月(No.34)、171-184頁.
- 佐々木雄太 「大学における国際協力の一例としてのアジア法整備支援」
『法律のひろば』2001年10月(Vol.54 No.10)、32-37頁.
- 佐藤安信 「法の支配」のジレンマ—カンボジアの法整備支援の課題と展望」
『法律時報』日本評論社、2010年1月(Vol.82 No.1)、11-16頁.
- 佐藤直史 「法整備支援実施機関の近年の取組みと法律家(法整備支援専門
家)の役割」『法律時報』日本評論社、2010年1月(Vol.82 No.1)、
26-29頁.
- 柴田紀子 「法整備支援に学ぶ—外から見直した日本の法制度—プノンペン
から」『研修』2007年3月(No.705)、87-92頁.
- 柴田紀子 「カンボジア裁判官・検察官養成支援」『Jurist』有斐閣、2008年6
月15日(No.1358)、34-41頁.
- 関根澄子 「法整備支援の現場から—カンボジア・ベトナムにおける裁判
実務の改善に向けて—」『慶応法学』2007年10月(No.8)、
305-314頁.
- 竹内努 「最高裁と法整備支援」『法律のひろば』2001年10月(Vol.54 No.10)、
25-31頁.
- 田中嘉寿子 「法整備支援に学ぶ—外から見直した日本の法制度—インド
ネシア和解・調停制度強化支援プロジェクトの開始」『研修』
2007年6月(No.708)、75-82頁.
- 鳥居香代 『JICAの法整備支援』JICA公共政策部.

- 中井憲治 「カンボジアの法整備支援のことなど」『研修』2006年10月(No.70)、23-34頁.
- 平石努 「ADR支援の意義と課題—インドネシア」『法律時報』日本評論社、2010年1月(Vol.82 No.1)、42-45頁.
- 本間佳子 「法律起草後の課題—カンボジア」『法律時報』日本評論社、2010年1月(Vol.82 No.1)、30-33頁.
- 松尾弘 「法整備支援における民法典整備の意義と課題」『慶応法学』、2006年1月(No.4)、31-62頁.
- 松尾弘 「法と開発」(Law and Development)への法科大学院の取組み」『慶応法学』2006年5月(No.5)、329-350頁.
- 松尾弘 「『良い統治』は法整備支援の目標たりうるか?—その内在的ジレンマを解く鍵のあり方」『法律時報』日本評論社、2010年1月(Vol.82 No.1)、4-10頁.
- 松嶋希会 「移行経済国に対する支援—ウズベキスタン・中央アジア諸国」『法律時報』日本評論社、2010年1月(Vol.82 No.1)、38-41頁.
- 丸山毅 「法務省法務総合研究所による法整備支援への取組み」『慶応法学』2006年5月(No.5)、351-363頁.
- 三ヶ月章 「アジア諸国の法整備に対する支援と協力—法学者による若干の感想と展望」『法律のひろば』2001年10月(Vol.54 No.10)、44-52頁.
- 三澤あずみ 「カンボジアにおける法整備支援の概要」『慶応法学』2006年5月(No.5)、365-372頁.
- 宮崎朋紀 「法整備支援の現場から—カンボジアにおける法曹養成、ベトナムにおける裁判実務改善について—」『慶応法学』2009年3月(No.13)、263-274頁.

森島昭夫 「法整備支援の理念とその課題」 『法律のひろば』 2001年10月(Vol.54 No.10)、12-17頁.

安田佳子 「法令の外国語の必要性—法整備支援の体験から」 『Jurist』 有斐閣、2005年2月15日(No.1284)、20-25頁.

山下輝年 「法整備支援がもたらすもの」 『法律時報』 日本評論社、2010年1月(Vol.82 No.1)、22-25頁.

矢吹公敏 「国際司法支援と弁護士」 『自由と正義』 1999年10月号(Vol.50 No.10)、44-55頁.

矢吹公敏 「日弁連における法整備支援」 『法律のひろば』 2001年10月(Vol.54 No.10)、18-24頁.

矢吹公敏 「日弁連における法整備支援」 『慶応法学』 2006年5月(No.5)、373-385頁.

矢吹公敏 「日本弁護士連合会と国際司法支援活動」 『Jurist』 有斐閣、2008年6月15日(No.1358)、9-16頁.

横田洋三 『主要先進国における海外援助の制度と動向に関する調査』、ODA研究会、2008年3月.

Nyo Nyo Thinn 「The legal System in Myanmar and the Foreign Legal Assistance」 『慶応法学』 2006年5月(No.5)、387-403頁.

<단행본>

安田信之 『第三世界開発法学入門』 アジア経済研究所、1992年3月.

安田信之 『開発法学 : アジア・ポスト開発国家の法システム』 名古屋大学出版会、2005年2月.

주요국의 ODA법제

香川孝三・金子由芳『法整備支援論：制度構築の国際協力入門』ミネル
ヴァ書房、2007年4月.

国際協力機構企画・評価部評価監理室 編『プロジェクト評価の実践的
手法：考え方と使い方 JICA事業評価ガイドライン改訂版』国際協
力出版会、2004年3月.

松尾弘『良い統治と法の支配：開発法学の挑戦』日本評論社、2009年8月.

三ヶ月章『司法評論. 3(法整備協力支援)』有斐閣、2005年7月.

法務総合研究所『法整備支援をめぐる国際情勢と開発法学』法務省法務
総合研究所国際協力部、2009年3月.

부록(1)

일본 ODA 법 연구 부록파일 목록

< 번역문 >

파일명:

법제도정비지원에 관한 기본방침 (원문 ①+② 번역)

정부개발원조대강 (원문 ③ 번역)

정부개발원조에 관한 중기정책 (원문 ④ 번역)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법 (원문 ⑤+⑥ 번역)

< 원문 >

파일명:

① 법제도정비지원에 관한 기본방침(2009) (doc파일 : 法整備支援に関する基本方針)

② 법제도정비지원제도실시계획(별표-2009) (pdf파일 : 平成21年度法整備支援実施計画)

③ ODA대강(2003년) (pdf파일 : 政府開発援助大綱(2003年8月29日))

④ ODA중기정책(2005년) (pdf파일 : 政府開発援助に関する中期政策(2005年2月4日))

⑤ JICA법 (doc파일 : 独立行政法人国際協力機構法)

⑥ JICA법시행령 (doc파일 : 独立行政法人国際協力機構法施行令)

부록(2)

법제도정비지원에 관한 기본방침

2009년 4월

법제도정비지원에 관한 국장급 회의

I.

2008년 1월 제13회 해외경제협력회의에서, 법제도정비지원을 경제협력의 중요분야의 한 부분으로서 규정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세계 각지의 개발도상국가에 대하여 입법지원이나 제도정비지원을 행하는 법제도정비지원은, 좋은 통치(Good Governance)에 근거로 하는 개발도상국의 자조노력을 지원하는 것임과 동시에, 일본이 미래에 국가사회에서 명예가 있는 지위를 유지해가기 위한 유효한 루트로, 전략적인 지원을 전개해 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개발원조(ODA)대강, ODA중기정책 등에 근거로 하여, (1) 자유·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관의 공유에 의한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법의 지배의 정착, (2)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환경정비 및 글로벌한 룰의 준수의 확보, (3) 일본의 경험·제도의 공유, 일본과의 경제제휴 강화 등의 관점에서, 기본법 및 경제법의 분야에서 적극적인 법제도정비지원을 실시하기로 한다. 또, 기술협력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얼굴이 보이는 원조의 일익을 담당할 것이 기대된다.

일본의 법제도정비지원은, 현지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상대국의 카운터파트 기관과 대화·조정을 추진하면서, 상대국의 문화나 역사, 발전

단계, 자주성(ownership)을 존중하며, 국가의 실정·니즈에 적합한 법제도지원을 지원하고 있는 점에 특색이 있다. 또, 법의 기초·개정에 그치지 않고, 법이 적절하게 운명 및 집행되기 위한 기반정비, 법조의 인재육성이나 법학교육까지를 시야에 넣어 상대국 자신들에 의한 법의 운용까지를 전망한 지원을 행하고 있다는 특색도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특색을 살리면서 상대국의 니즈·안건에 따라 전문가의 파견, 학자나 법률실무가를 중심으로 한 국내조직으로부터의 서포트, 방일연수,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편성하고, 또 유기적으로 제휴시켜 유연하고 균형이 좋은 효과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파견되는 전문가는 물론, 법제도정비지원에 힘쓰는데 적당한 인재를 보다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인재의 활용과 육성을 위한 기반정비를 도모한다. 또, 구체적인 지원방침의 책정·실시 등에서는 관계부처의 제휴는 물론, 일본변호사연합회, 경제단체등 관계자간의 관민제휴가 불가결하기 때문에, 향후 All Japan에 의한 지원체제를 강화해 간다. 또, 일본의 원조 리소스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다른 도너(donor)와의 역할분담에도 유의하며, 연구기관과도 제휴를 하면서 선택과 집중에 따른 지원을 실시한다.

본 기본방침은, 향후 몇 년간의 정부의 법제도정비지원에 대한 자세를 정리한 것이다. 방침은 본문과 구체적인 대응으로 구성되며, 본문에 대해서는 향후 필요에 따라 재검토하고, 구체적인 대응(별표 및 참고자료)에 대해서는 매년 개정하기로 한다.

II. 가

법제도정비지원의 실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지원 실적, 일본 입장에서 외교면 및 경제면에서의 중요성, 피원조 국가의 니즈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 또, 특히 기본법 분야에 대한 지원은 그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기반정비의 근간 부분으로, 상대국의 역사나 문화, 생활습관에 깊게 뿌리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사항에서 일본과의 공통성·친화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 법체계의 동질성 등도 고려한다.

이상을 바탕으로 한 뒤, 당면한 방침으로서는 중국, 몽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의 7개국을 중심으로 추진해 가는 것으로 한다. 그때, 이러한 7개국에 대해서는 국가별 실시 방침을 정하기로 한다.

또, 향후 민주화의 촉진, 법의 지배의 정착, 평화구축지원 등의 관점에서 7개국 이외의 아시아 여러 국가나 아프리카 여러 국가 등에 대해서도, 상대국의 니즈나 필요에 따라서 지원의 수요를 더욱 이해해 나가기로 한다.

1. 중 국

(1) 일본은, 중국의 시장경제화 가속에 대한 노력을 지원하고, 중국 경제의 국제경제와의 관계를 한층 강화하도록 촉구함과 동시에, 시장경제화의 담당자인 민간의 활동을 활발화시키기 위해서 민법소송법, 중재법 등의 기본법 분야의 지원 및 경제활동을 다루는 법체도의 확립 등 통치(좋은 통치)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일본 기업이 중국에서 원활하게 기업활동을 전개하고, 민간주체로 일중관계가 확대 발전하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것에 크게 공헌하고 있으며, 중국 측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얻고 있다.

(2) 중국에서의 법체도의 집행·운영에서의 개선은, 넓게 중국에서의 법의 지배에 근거로 한 건전한 통치의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것이고, 또 일본 기업진출지원 및 이미 진출한 기업의 원활한 사업활동

지원에도 이바지 하게 된다.

(3) 일본은 향후, 지금까지의 지원이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경쟁법·금융법 등의 경제법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지원, 민사소송법·중재법 프로젝트에서의 효과적인 지원, 세관행정에서의 적정화·신속화에 대한 지원, 지적재산법 분야의 집행지원에 더불어 사법인재육성, 행정감리·감찰이나 공무원의 부패방지에 관계되는 제도정비·인재육성, 환경·에너지절약 관련의 제도정비, 정보통신 등의 니즈에도 대응하는 것을 검토한다.

2. 몽 골

(1) 일본은 몽골정부의 시장경제를 담당하는 제도정비·인재육성에 대한 지원으로서, 몽골의 공적 섹터를 강화하는 관점에서, 조정제도 및 세무 등에 관한 협력이나,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것 등의 인재육성에 의해, 징세제도의 강화, 법·제도의 정비 등의 행재정 관리능력 향상, 경제·사회분야의 정책입안능력과 전문능력의 향상에 관한 지원을 실시하여 높은 평가를 얻고 있다.

(2) 몽골에서는 과거에 제정되었던 법령의 재정비나 법령간의 정합성의 확보가 큰 과제로 여겨지고 있는 이상, 법안기초에 대한 몽골 측의 정책방침이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다. 또, 다양한 분야에서의 법령의 집행·운용면의 체제의 정비 및, 재야법조도 포함한 법운용에 종사하는 인재의 육성이라는 과제가 있어, 외국기업에 불리한 법령해석이나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3) 일본은 향후, 법조인재의 육성이나 법제도가 기능적으로 운용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조정제도의 도입, 법률제정시 기존의 법률과의 정합성을 통일적으로 체크하는 기능·조직의 정비에 대한 협력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검토한다.

3. 캄보디아

(1) 일본은, 캄보디아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개혁의 성공을 위한 지원으로서, 중요정책 중추지원(법정비지원)으로서의 민법·민사소송법의 기초·성립지원이나, 세관, 세제, 세무 등에 관한 협력을 실시함과 동시에, 재판관·검찰관 양성학교에서의 조직적인 학교운영·법교육의 노하우 이전 등의 인재육성을 실시하고 있다. 또, 변호사의 인재육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의 활용을 통하여 협력하고 있다.

(2) 최근 상기의 각 분야에서 협력을 실시하고 있지만, 민사 분야에 관련된 뉴스가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또 각 부처가 기초하는 법령간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내부에서의 조정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3) 일본은 계속하여 민사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캄보디아에서의 민법·민사소송법 관련법령의 기초, 한층 더 발전된 실무교육의 내실화나, 사법관계기관의 조직 강화, 법조의 인재육성에 대한 지원 등을 검토한다.

4. 인도네시아

(1) 인도네시아에서는 통관, 세무, 노동법 등, 민간의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다양한 법제도정비와 투명하고 적절한 운용이 과제라는 인식 아래에서, 일본은 지적재산권법 및 경쟁법에 관하여 적정하고 원활한 집행을 위한 실시 가이드라인의 책정지원, 인재육성 등의 조직 강화 지원을 행하고 있다. 또 사법에 대한 국민 및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음과 동시에, 투자환경 개선에 있어서도 통치개혁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경찰을 민주적인 조직으로 하기 위한 국가경찰지원이나 대법원에 대한 조정제도에 관한 제도정비 등의 지원도 행하고 있다.

(2) 지금까지 실시했던 경제법 정비관계에서는, 지적재산권법이나 경쟁법에 관하여 양호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등, 선거지원이나 경찰 지원 등의 통치지원에서도 일본의 지원이 충분히 효과를 계속 거두고 있다. 앞으로 인도네시아의 경제발전 관점뿐만 아니라, 일본으로부터의 투자촉진·일본기업보호의 관점에서, 관련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인도네시아의 법제도정비 분야는 다른 도너도 많은 협력을 실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의 원조 리소스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다른 도너와의 역할분담에도 유의를 하면서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진실로 필요한 협력에 주력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일본은 향후, 일본기업의 활동 원활화 등의 관점에서 실제규정, 절차규정의 개정이나, 필요한 입법조치나 가이드라인의 정비·확충이 기대되고 있는 경쟁법 분야를 비롯한 경제법정비 관련의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그 때에는 정보통신 등의 제도정비의 니즈에 대응하는 것도 검토한다. 통치지원에서는 계속하여 국가경찰 민주화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건전한 통치의 기초가 되는 사법분야의 포괄적인 법제도 지원에 대해서는 청렴결백성과 실무처리 능력을 겸비했던 법조 등의 법률직에 따른 사법제도 운용을 추진해야 하고,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지원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5. 라오스

(1) 일본은 라오스의 ASEAN 지역 경제통합, WTO 가입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법정비를 위한 기반정비·인재육성, 사법제도의 강화 등, 법제도의 신뢰향상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 최근에는, 라오스 측으로부터의 사법 분야·법교육 분야에서의 인재육성에 대한 니즈가 매우 높기 때문에, 장기연수 등으로 계획적이고 착실하게 인재육성을 실시하고 있다.

(3) 향후, 일본은 법의 분야에서 인도차이나 반도 내에서의 지역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동지역이 불안정화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사법 관계기관 및 대학 등의 한층 더 진행된 법교육·연구기관의 인재육성의 강화나, 라오스에 진출해 있는 일본계 기업으로부터의 니즈가 높은 라오스의 투자환경정비에 관한 법제도정비에 대한 지원을, 라오스 정부의 원조를 받아들이는 태세를 감안하면서 검토한다.

6. 베트남

(1) 일본은 베트남이 경제성장 촉진·국제경쟁력 강화, 사회·생활면의 향상과 격차시정 및 환경보전 등의 각각의 개발과제에 대응해나가기 위한 기반으로, 건전한 통치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에, 민법, 민사소송법 등의 각종 법률의 제정에 대한 지원이나, 금융, 중소기업 등에 관한 정책적인 제언, 경쟁법, 지적재산권, 통관 등의 법령의 집행에 있어 인재육성에 대한 지원 등의 경제법 분야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본법 분야에서는 베트남의 과제의 변천에 아울러, 기초지원에 더불어 법의 적절한 운용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사법제도의 정비 및 지방도 포함한 법조·법률직 등의 인재육성에 대한 지원면을 강화하여 높은 평가를 얻고 있다.

(2) 베트남에서는 법령의 집행·운용에서의 개선이라는 과제가 있다. 이러한 면에서의 개선은, 베트남에서의 법의 지배에 근거로 한 건전한 통치의 확립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일본 기업활동의 원활화를 위해서도 이바지하게 된다.

(3) 향후, 베트남이 규정하고 있는 법제도정비전략 및 사법개혁전략과의 정합성에 유의를 하면서, 법률의 운용면에서의 철저함을 도모하기 위해, 인재육성 등을 통한 입법능력의 강화 및 법률의 실시체제강화 지원(법원, 검찰원, 행정부(지방을 포함)의 능력강화 등)을 계속한

다. 경제법 분야에서는, 세무, 세제, 경쟁법, 금융, 지적재산법 분야에
서, 관계부국의 직원 능력향상에 관한 지원을 행함과 동시에, 최근 시
장경제화의 진전에 따라 니즈가 높아지고 있는 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지원, PPP(관민제휴), 공공조달에서의 품질확보 등의 관련 법제도 정
비, 환경·에너지 절약 관련의 제도정비에 대하여 지원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7. 우즈베키스탄

(1) 일본은 우즈베키스탄이 착실하게 경제·사회개혁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민주화를 달성하도록, 경제구조개혁에 따른 어려움을
완화하는 원조, 지속적 경제성장의 기반조성에 대한 지원에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별 원조계획에서도 ‘시장경제발전과 경제·산업진흥을 위
한 인재육성·제도구축지원’을 원조 중점분야의 하나로 삼고 있다.

(2)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각종 법령의 집행·운영에서의 개선이라는
과제가 있다. 민간 섹터의 발전이나 무역, 외국투자의 원활화 등에 필
요한 비즈니스 환경의 정비를 주요 목적으로 하여, 법제도, 세무, 인
재육성 등의 지원을 실시해 간다.

(3) 향후는, 행정절차법령의 개정, 법령 데이터베이스의 정비, 도산
법 주석서의 작성 등, 지금까지의 일본의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2008년까지 실시했던 기술협력 프로젝트 ‘기업 활동의 발전을 위한
민사법령 및 행정법령의 개선’의 단계 2의 실시를 검토함과 동시에,
계속하여 법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한 인재육성에 대해서도 지원의 가
능성을 검토한다.

(별표 1)

2009년도 법제도정비지원 실시계획

< 중 국 >

분 야	내 용	스케줄	상대기관	실시· 관계기간
중국 민사소송법 · 중재법	기술협력 프 로젝트(개정 민사소송법의 운용지원)	2007-2010년	전국인민대 표대회 상무 위원회법 제 공작위원회	JICA, 법무성, 학식경험자, 대법원, 일본 변호사연합회
경제법· 기업법	기술협력 프 로젝트(회사법, 독점금지법의 운용지원, 시 장유통관련법 의 기초)	2004-2009	국무원법 제 변공실 상무부	JICA, 공정 거래위원회, 학식경험자, 일본 변호사 연합회
정보통신	세미나 개최 등(통신법제정 지원(전기통신 분야의 경쟁 정책관계))	2009년도~	공업·정보 화부	총무성
세관행정의 개선	수용연수(세 관절차의 적정 · 신속화를 위 한 인재육성 지원)	2009년도~	해관총서	재무성

분 야	내 용	스케줄	상대기관	실시·관계기간
세 무	기술협력 프 로젝트(국제과 세제도, 납세 자 서비스 등)	2008-2011년도	국가세무총국	JICA, 국세청
	수용연수(15 명 정도, 지 방재정정책)	2009-2011년도	재정부	JICA
지적재산	수용연수 (30명 정도)	2005년-2010년	과학기술부	JICA, 경제 산업성, 특허 청, (재)비교 법센터
에너지 절약	수용연수 (30명 정도)	2009년도	절 능 관 찰 중 심 등 에 너 지 절약법 집행 기관	경제산업성, (재)에너지절 약센터
건 축	기술협력프로 젝트(내진건 축인재육성)	2009-2012년 (예정)	주 택 · 도 시 농촌건설부	JICA, 국토 교통성
환 경	기술협력프 로젝트(순환 형 경제추진)	2008-2009년도	환 경 보 호 부, 일 중 우 호 환 경보전센터	JICA
	기술협력프 로젝트(주택 에 너 지 절 약 기술향상)	2007-2009년도	주 택 · 도 시 농촌건설부 주택산업화 촉진센터	JICA, 국토 교통성

< 몽 골 >

분 야	내 용	스케줄	상대기관	실시 · 관계기간
조 정	기술협력프로젝트(조정제도의 구축)	2009년도-미정	대법원	JICA
금 융	기술협력프로젝트(기업지배구조(coporate governance) 가이드라인의 정비 및 철저한 주지	2007-2009년도	몽골은행	JICA
세 무	수용연수	2008-2010년도	재무성, 국세청	JICA, 국세청
관민제휴	연구회 개최, 현지조사(인프라 정비)	2007년도~	자연환경 · 관광 · 도로 · 운수 · 건설 · 도시계획성 등	국토교통성

< 캄보디아 >

분 야	내 용	스케줄	상대기관	실시 · 관계기간
법제도정비	기술협력프로젝트(민법 · 민사소송법의 기초, 입법화	2008-2011년도	사법성, 왕립재판관 · 검찰관 양성학교	JICA, 법무성, 학식경험자, 대법원, 일본변호사연합회

분야	내용	스케줄	상대기관	실시·관계기간
	지원, 부속법령의 기초·입법화지원 등)			
재판관·검찰관 양성학교 민사교육	기술협력프로젝트(재판관·검찰관 양성학교에서의 민사교육지원)	2008-2011년도	왕립사법학원	JICA, 법무성, 학시경험자, 대법원, 일본변호사연합회
변호사회 지원	기술협력프로젝트(변호사 양성학교의 운영 능력향상 등)	2007-2009년도	캄보디아국 변호사회, 캄보디아변호사 양성학교	JICA, 일본변호사회 연합회
정보통신	세미나 개최 등(전기통신법 운용지원(전기통신분야의 경쟁정책 관계))	2009년도~	우편·전기통신성	총무성
세관행정의 개선	수용연수(세관절차의 적정·신속화를 위한 인재육성지원)	2009년도	관세소비세국	재무성
세무	기술협력 프로젝트(세무조사능력향상)	2007-2010년도	조세총국	JICA, 국세청

< 인도네시아 >

분야	내용	스케줄	상대기관	실시·관계기간
화해·조정	수용연수(화해·조정 에 관련된 재판관 인재육성)	2009년도	대법원	JICA, 법무성
증권	기술협력프로젝트(자본 시장규제·감독행정의 개선)	2006-2009년도	재무성	JICA, 도쿄증권거래소
경쟁	기술협력프로젝트(경쟁 법 개정 에 대한 지원)	2009년도~	사업경쟁감시위원회	JICA,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통신	전문가 파견 (전기통신행정)	2008-2010년도	통신정보성	JICA, 총무성
세관행정의 개선	수용연수(세관절차의 적정·신속화를 위한 인재육성 지원)	2009년도	세관소비세 총국	재무성
세무	기술협력프로젝트(세무 행정 근대화)	2006-2009년도	국세총국	JICA, 국세청

분 야	내 용	스케줄	상대기관	실시·관계기간
	수용연수(1명/년, 세무행정 및 재무·회계)	2007-2009년도	세무총국	JICA
노 동	정책 어드바이저(노동법 개정 등에 대한 지원)	2009-2011년도	노동이주성	JICA, 후생노동성
지적재산권	기술협력 프로젝트(공업 소유권 행정)	2007-2009년도	법무인권성	JICA, 특허청

< 라오스 >

분 야	내 용	스케줄	상대기관	실시·관계기간
세관행정의 개선	수용연수(세관절차의 적정·신속화를 위한 인재육성지원)	2009년도	관세국	재무성
건축	세미나 개최 등(건축기준 등의 정비에 관계되는 지원)	2009년도	공공사업·운수성	국토교통성

< 베트남 >

분야	내용	스케줄	상대기관	실시·관계기간
전 반	유상자금협력 (빈곤삭감지원 차관을 통한 각종 법규정 정비지원)	2008-2009년도	국가은행, 관계부처	JICA
법·사법 제도 개혁	기술협력프로 젝트(지방사법 기관 및 법조의 재판실무의 능력개선지원, 중앙사법기관 및 통일변호사 회 향상지원 등)	2007-2010년도	사법성, 최고인민 재판소, 최고인민 검찰원	JICA, 법무성, 학식경험자, 대법원, 일본변호사 연합회
금 용	기술협력프로 젝트(중앙은행 기능의 강화)	2008-2011년도	국가은행	JICA, 일본은행
	기술협력프로 젝트(투자·대 부업무의 강화)	2008-2011년도	개발은행	JICA
경쟁법	기술협력프로 젝트(경쟁법시 행 지원)	2008-2011년도	상공성 경쟁관리국	JICA, 공정거래 위원회
세관행정의 개선	수용연수(세관 절차의 적정· 신속화를 위한 인재육성 지원)	2009년도	재정성	재무성

분야	내용	스케줄	상대기관	실시·관계기간
세무	기술협력 프로젝트(세무행정개혁 지원)	2008-2010년도	조세총국	JICA, 국세청
에너지 절약	수용연수	2009년도	상공성, 상공성 지방국 외	경제산업성, (재)에너지 절약 센터
	해외개발계획 조사(마스터플랜 작성)	2008-2009년도	상공성	JICA
	전문가 파견(에너지 절약 정책지원)	2009-2010년도	상공성	JICA
품질확보	전문가 파견, 세미나 개최 등(공공조달)	2008년도~	건설성, 교통성	국토교통성
인프라 품질확보·안전확보	전문가 파견, 수용연수 등	2009년도~	건설성, 교통성	JICA, 국토교통성
인프라 정비·관리·운영	전문가 파견, 세미나 개최 등	2007년도~	교통성	JICA, 국토교통성
관민제휴	연구회, 세미나 개최, 현지조사 등(인프라 정비)	2007년도~	교통성	국토교통성

< 우즈베키스탄 >

분 야	내 용	스케줄	상대기관	실시·관계기관
세 무	기술협력프로젝트	2008-2010년도	국가세무위원회	JICA, 국세청

< 말레이시아 >

분 야	내 용	스케줄	상대기관	실시·관계기간
세관행정의 개선	수용연수(세관절차의 적정·신속화를 위한 인재육성지원)	2009년도	관세청	재무성
세 무	기술협력프로젝트(세무인재능력향상)	2007-2010년도	내국세입청	JICA, 국세청

< 필리핀 >

분 야	내 용	스케줄	상대기관	실시·관계기간
경쟁	기술협력프로젝트(포괄적 국가경쟁정책을 위한 능력향상)	2009-2012년도	무역산업성	JICA, 공정거래위원회

분 야	내 용	스케줄	상대기관	실시·관계기간
정보통신	전문가 파견 (전기통신행정)	2007- 2009년도	운수통신성	JICA, 총무성
세관행정의 개선	수용연수(세 관절차의 적 정·신속화 를 위한 인 재육성 지원)	2009년도	관세국	재무성
세 무	기술협력프 로젝트(내국 세입국 인재 육성개발)	2008- 2010년도	내국세입국	JICA, 국세청

< 태 국 >

분 야	내 용	스케줄	상대기관	실시·관계기간
정보통신	전문가 파견 (ICT 정책개 발계획 어드 바이저)	2009- 2011년도	정보통신기술성	JICA, 총무성
세관행정의 개선	수용연수(세 관절차의 적 정·신속화를 위한 인재육 성 지원)	2009년도	관세국	재무성

주요국의 ODA법제

분 야	내 용	스케줄	상대기관	실시·관계기간
세 무	기술협력프로젝트(세무 컨플 라이 언 스 향상)	2007-2010년도	세입국	JICA, 국세청

< 네 팔 >

분 야	내 용	스케줄	상대기관	실시·관계기간
헌법제정 지원	수용연수·세미나(헌법제정 프로세스 등)	2009-2011년도	제헌의회	JICA, 학식경험자
민법·민법 관련법 지원	수용연수(민법 및 관련법)	2009-2011년도	사법성	JICA, 학식경험자

< 이 란 >

분 야	내 용	스케줄	상대기관	실시·관계기간
법제도정비	수용연수(재판관, 사법성의 인재육성)	2009-2011년도	사법성	JICA, 나고야대학교

(별표 2)

2009년도 법제도정비지원 실시계획

(복수국가에 걸친 계획)

내 용	국 가	상대기관	스케줄	개 요	실시· 관계기관
법령외국어 번역 추진	-	-		일본법령의 번역정비, 공개	법무성
범죄방지 (형사사법)	(미정)	경찰, 검 찰, 재판 등의 형사 사법기관 또는 소관 중앙관청	2005- 2009년도	연수원 수용	JICA, 법 무성, UN 아시아극 동 범죄 방지 연 수소
범죄방지 (상급 세미나)	(미정)	형사사법 기관	2005- 2009년도	연수원 수용	JICA, 법 무성, UN 아시아극 동 범죄 방지 연 수소
범죄방지 (교정보호)	(미정)	경찰, 검 찰, 재판 등의 형사 사법기관 또는 소관 중앙관청	2005- 2009년도	연수원 수용	JICA, 법 무성, UN 아시아극 동 범죄 방지 연 수소

내 용	국 가	상대기관	스케줄	개 요	실시·관계기관
독직방지 형사법 지원	(미정)	법무, 내 무성, 반 독직기관 등 행정기 관을 포함 한 형사사 법에서의 독직대책 관련 기관	2008- 2010년도	연수원 수용	JICA, 법 무성, UN 아시아극 동 범죄 방비 연 수소
중앙 아시아지역 형사사법 연수	(미정)	검찰청, 경 찰, 내무 성, 법원, 대통령부, 법무성 등	2007- 2009년도	연수원 수용	JICA, 법 무성, UN 아시아극 동 범죄 연수소
경쟁법· 정책연수	(미정)	경쟁당국 등	2009- 2011년도	연수원 수용	JICA, 공정 거래위원회
정보통신	아시아 태평양 국가	정보통신 주관청 등	1992년도~	연수원 수 용(10여건, 경쟁정책 에 관한 연수 등)	총무성, 아시아태 평양 전기 통신 공동체
	아시아 태평양 국가	정보통신 주관청 등	2006년도	연수원 수용 (1건, 브로 드밴드 보 급을 위한 환경정비 지원)	총무성, 아시아태 평양 전기 통신 공동체

내 용	국 가	상대기관	스케줄	개 요	실시·관계기관
	아시아 태평양 국가	정 보 통 신 주관청 등	2001년도~	정보통신정책에 대한 공동연구	총무성, 아 시아태평 양 전기통 신 공동체
	개발 도상국	정 보 통 신 주관청 등	매년	연수원 수 용(전기통 신사업법 의 소개)	총무성
비교연구	중앙 아시아 국가	법원/기업, 담보, 채 권자·주 주의 보호 또는 도산 감독의 국 가기관	2008- 2010년도	중앙아시 아국가에 서의 기업 법제의 비 교연구	JICA, 법무성
세 무	도상국	세무당국 등	2009년도	연수원 수용	국세청
	도상국	세무당국 등	2009년도	연수원 수용	JICA, 국세청
방 역	아시아 국가	국제수역 사무국	2008- 2012년도	전문가파견, 연수원 수용	농림 수산성
투자환경법 정비	(미정)	직접투자 관계기관	2008- 2011년도	연수원 수용	JICA, (재) 비교법 연 구센터

내 용	국 가	상대기관	스케줄	개 요	실시·관계기관
국제지적재산권	(미정)	지적 재산 정책의 책 정 · 집 행 기관	2005년-2009년도	연수원 수용	JICA, (재) 비교법 연구 센터
APEC 지적재산권	(미정)	APEC지역 내의 지적 재산청 및 관계관청	2001-2009년도	연수원 수용	JICA, 경제 산업 성, (사) 발 명 협회
보험, 증권, 은행감독	(미정)	각 금융감독 당국	2009년도	연수원 수용	금융청
자동차 기준인증	(미정)	중앙정부 등	2009년도	1958년협정에 대한 가입지원, 가입 후의 국내법령 정비지원	국토 산업성
환경	아시아 국가	(미정)	2009-2013년도	조사, 기술지원 (일본모델 환경대책 기술 등의 국제전개)	환경성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한	환경 담당국	2009-2013년도	수자원 환경 관 리 에 종 사 하는	환경성

내 용	국 가	상대기관	스케줄	개 요	실시· 관계기관
	국, 라오스, 미얀마, 말 레이시아, 필 리 핀, 태국, 베트남			자의 능력 향상 지원	
법조양성	우즈베키 스탄	타 시 켄 트 국 립 법 과 대학교	2006- 2011년도	체제이해 국에서의 법조양성	문부과학성, 나고야대 학교
	몽골	몽 골 국 립 대학교			
	베트남	하 노 이 법 과대학			
	캄보디아	왕 립 법 경 대학			
	베트남	사 법 성 , 국가와 법 연구소	2006- 2010년도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 에 대한 법 정 비 지원 전략연구	문부과학성, 나고야대 학교
	캄보디아	사 법 성 , 왕 립 법 경 대학			
	인도네시 아	가 자 마 다 대학교			
	베트남	하 노 이 법 과대학	2007- 2009년도	공동연구	문 부 과 학 성, 고베

주요국의 ODA법제

내 용	국 가	상대기관	스케줄	개 요	실시· 관계기관
	인도네시아	람 풍 주 립 대학교			대학교
	태국	타 마 사 트 대 학 교 , 출 랄 룡 코 른대학교			
	라오스	국 립 대 학 경 제 경 영 학부			
	중국	북 경 대 학, 중 국 정 법 대 학			
	베트남	하 노 이 법 과 대 학	2008- 2010년도	법 제 도 지 원 의 평 가 방 법 의 탐 구, 현 지 관 계 처 와 의 판 례 연 구 회	문 부 과 학 성, 고 베 대 학 교
	인도네시아	람 풍 주 립 대학교			
	캄보디아	파 나 사 스트 라 대 학 교			
	라오스	국 립 대 학 경 제 경 영 학부			
	중국	중 국 정 법 대 학 교			

내 용	국 가	상대기관	스케줄	개 요	실시· 관계기관
	인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 아, 중국, 베트남, 라오스	ILO, 행정 기관, 연구 기관, 노사 단체, NPO, NGO	2008- 2010년도	노동법제 정비지원 조사	문부과학 성, 아오 야마카쿠 인대학교
장기연수	베트남, 라오스, 중국, 기타 미정	법률분야 연구자	-	연수원 수용	JICA, 큐슈 대학교, 나 고야대학교, 기타 미정
인재육성 지원 무상	우즈베키 스탄,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몽골, 라오스, 중국, 기타 미정	법률분야 연구자를 포함한 행 정관	-	유학생 지원	JICA, 요 코하마국 립대학교, 큐슈대학 교, 고베대 학교, 나고 야대학교, 기타 미정
	우즈베키 스탄,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몽골, 라오스, 중국, 기타 미정	법률분야 연구자를 포함한 행 정관	-	유학생 지원	JICA, 요 코하마국 립대학교, 큐슈대학 교, 고베 대 학 교 , 나고야대 학교, 기 타 미정

(참고자료 1)

2008년도 법제도 정비지원 실적

<중 국>

분야	개요	상대기관	실시·관계기관
중국민사소송법 · 중재법	기술협력 프로젝트(개정민사소송법의 운용지원)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 공작위원회	JICA, 법무성, 학식경험자, 대법원, 일본변호사 연합회
경제법·기업법	기술협력 프로젝트(회사법, 독점금지법의 운용지원, 시장유통관련법의 기초)	국무원법제변공실, 상무부	JICA, 공정거래위원회, 학식경험자, 일본변호사 연합회
세관행정의 개선	수용연수(세관절차의 적정·신속화를 위한 인재육성지원)	해관총서	재무성
세 무	기술협력 프로젝트(국제과세제도, 납세자 서비스)	국가세무총국	JICA, 국세청
지적재산	수용연수(30명 정도)	과학기술부	JICA, 경제산업성, 특허청, (재)비교법센터

분야	개요	상대기관	실시·관계기관
	수용연수(19명)	국가지식산업국, 국가공상행정관 리총국, 기업 등	경제산업성, (사)발명협회
에너지 절약	수용연수(120명)	국가발전개혁위 원회, 에너지절약 발전개혁위원회, 절능관찰중심 외	경제산업성, (재)에너지절약 센터
건축	전문가과견, 세미나 개최 등	주택·도시농촌 건설부	국토교통성
환경	전문가과견(순환형 경제발전의 촉진 · 정책· 전략과 그 실천)	환경보호부, 일 중우호환경보전 센터	JICA
	기술협력 프로젝 트(순환형 경제 추진)	환경보호부, 일 중우호환경보전 센터	JICA
	기술협력 프로젝 트(주택 에너지 절약 기술향상)	주택·도시농촌 건설부 주택산 업화촉진센터	JICA, 국토교통성
	기술협력 프로젝 트(기후변동, CDM에 관한 일 본관련정책연수)	과학기술부	JICA

< 몽 골 >

분 야	개 요	상대기관	실시 · 관계기간
변호사법	기술협력 프로젝트(개정법안 기초)	법무내무성, 몽골 변호사회	JICA, 일본변호사 연합회
금 융	기술협력 프로젝트(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가이드라인의 정비 및 철저한 주지)	몽골은행	JICA
세 무	수용연수	국세청	JICA, 국세청
관민제휴	연구회, 현지조사(인프라 정비)	자연환경 · 관광성, 도로 · 운수 · 건설 · 도시계획성 등	국토교통성

< 캄보디아 >

분 야	개 요	상대기관	실시 · 관계기간
법제도정비	기술협력 프로젝트(민법 · 민사소송법의 기초 · 입법화 지원, 부속법령의 기초 · 입법화지원 등)	사법성	JICA, 법무성, 학식경험자, 대법원, 일본변호사 연합회

분야	개요	상대기관	실시·관계기간
재판관·검찰관 양성학교 민사교육	기술협력 프로젝트(재판관·검찰관 양성학교에서의 민사교육지원)	왕립사법학원, 왕립재판관·검찰관양성 학교	JICA, 법무성, 학식경험자, 대법원, 일본변호사 연합회
변호사회 지원	기술협력 프로젝트(변호사양성학교의 운영능력향상 등)	캄보디아국 변호사회, 캄보디아 변호사양성학교	JICA, 일본변호사 연합회
세관행정의 개선	수용연수(세관절차의 적정·신속화를 위한 인재육성지원)	관세소비세국	재무성
제세·세무	연수(국제조세)	경제재정성	재무성
세무	기술협력 프로젝트(세무행정운영의 개선)	경제재정성	JICA, 국세청
환경	기초조사, 전문가파견, 워크숍 개최 등(수자원 환경 파트너십)	환경성	환경성, UN지역 개발센터, (재) 지구환경전략연구기관

< 인도네시아 >

분야	개요	상대기관	실시·관계기관
화해·조정	기술협력프로젝트 (화해·조정제도의 개선)	대법원	JICA, 법무성, 학식경험자, 일본변호사연합회
금융	기술협력프로젝트 (금융정책책정 능력향상)	중앙은행	JICA, 일본은행
정보통신	전문가파견(전기 통신행정)	통신정보성	JICA, 총무성
세관행정의 개선	수용연수(세관절 차의 적정·신속 화를 위한 인재 육성지원)	세관소비세총국	재무성
세무	기술협력프로젝트 (세무행정운영 의 개선)	국세총국	JICA, 국세청
	수용연수(1명/년, 세무행정 및 재 정·회계)	국세총국	JICA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협력프로젝트 (공업소유권행정)	법무인권성	JICA, 특허청
환경	기초조사, 전문 가파견, 워크샵 개최 등(수자원 환경 파트너십)	환경성	환경성, UN지역 개발센터, (재) 지구환경전략연 구기관

< 라오스 >

분 야	개 요	상대기관	실시 · 관계기간
세관행정의 개선	수용연수(세관절차의 적정 · 신속화를 위한 인재육성지원)	관세국	재무성

< 베트남 >

분 야	개 요	상대기관	실시 · 관계기간
전 반	유상자금협력(빈곤삭감지원 차관을 통한 각종 법규정 정비지원)	국가은행, 관계부처	JICA
법 · 사법제도 개혁	기술협력 프로젝트(지방사법기관 및 법조의 재판 실무 능력개선지원, 중앙사법기관 및 통일변호사회 향상지원 등)	사법성,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원	JICA, 법무성, 학식경험자, 대법원, 일본변호사연합회
금 융	기술협력 프로젝트(중앙은행기능의 강화)	국가은행	JICA, 일본은행
	전문가파견(어드바이저)	국가은행	JICA

주요국의 ODA법제

분야	개요	상대기관	실시·관계기간
	수용연수(4명)	국가은행	JICA, 재무성
	기술협력 프로젝트(투자·대부업무의 강화)	개발은행	JICA
경쟁법	기술협력 프로젝트(경쟁법시행지원)	베트남경쟁당국	JICA, 공정거래위원회
세관행정의 개선	수용연수(세관절차의 적정·신속화를 위한 인재육성지원)	세관총서	재무성
세제·세무	수용연수(국세조세)	재정성	재무성
세무	기술협력 프로젝트(세무행정개혁지원)	세무총국	JICA, 국세청
관민제휴	전문가 파견(6명)	베트남상공회의소	경제산업성, JETRO
지적재산보호	기술협력 프로젝트(지적재산권청의 지적재산정보시스템 관리·운영능력 강화)	지적재산청	JICA, 특허청
에너지절약	수용연수(15명)	상공성, 건설성, 교통성, 법무성 외	경제산업성, (재)에너지절약센터
	수용연수(30명)	상공성, 상공성 지방국 외	경제산업성, (재)에너지절약센터

분 야	개 요	상대기관	실시·관계기간
	수용연수(8명)	상공성, 베트남기준·품질센터 외	경제산업성, (재)에너지절약센터
	전문가파견 1명	상공성	경제산업성, (재)에너지절약센터
	마스터플랜 작성	상공성	JICA
품질확보	전문가 파견(공공조달)	건설성, 교통성	JBIC, 국토교통성
인프라정비·관리·운영	전문가파견, 세미나 개최 등	교통성	국토교통성
관민제휴	연구회, 세미나 개최, 현지조사(인프라정비)	교통성	국토교통성
환 경	기초조사, 전문가파견, 워크숍 개최 등(수자원 환경 파트너십)	천연자원환경성	환경성, UN지역개발센터, (재)지구환경전략연구기관

< 우즈베키스탄 >

분 야	개 요	상대기관	실시·관계기관
민사법령·행정법령	기술협력 프로젝트(행정절차관련법 및 저장법의 기초·운영지원 등)	사법성	JICA, 나고야대학교

주요국의 ODA법제

분야	개요	상대기관	실시·관계기관
도산법	기술협력 프로젝트(해설서 작성)	사법성	JICA
세무	단기전문가 파견	국가세무위원회	JICA

<부르네이>

분야	개요	상대기관	실시·관계기관
에너지절약	수용연수(30명 정도)	수상부, 전력성, 교육성, 부르네이대학교 외	경제산업성, (재)에너지절약센터

<말레이시아>

분야	개요	상대기관	실시·관계기관
세관행정의 개선	수용연수(세관 절차의 적정·신속화를 위한 인재 육성지원)	관세청	재무성
세무	기술협력 프로젝트(세무인재능력 향상)	내국세입청	JICA, 국세청
에너지절약	수용연수(30명 정도)	에너지·수자원·통신성, 에너지센터 외	경제산업성, (재)에너지절약센터

< 필리핀 >

분 야	개 요	상대기관	실시·관계기관
정보통신	전문가 파견(전기통신행정)	운수통신성	JICA, 총무성
세관행정의 개선	수용연수(세관절차의 적정·신속화를 위한 인재육성지원)	관세국	재무성
세무	기술협력 프로젝트(내국세입국인재육성개발)	내국세입국	JICA, 국세청
환경	기초조사, 전문가 파견, 워크샵 개최 등	환경천연자원성	환경성, UN환경계획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및 지구환경전략연구기관

< 태 국 >

분 야	개 요	상대기관	실시·관계기관
세관행정의 개선	수용연수(세관절차의 적정·신속화를 위한 인재육성지원)	관세국	재무성

주요국의 ODA법제

분야	개요	상대기관	실시·관계기관
세무	기술협력 프로젝트(세무 준수(compliance)의 향상)	세입국	JICA, 국세청
특허변리사 육성사업	해외연수(41명)	상무성 지적재산국	경제산업성, (재)해외기술자 연수협회
지적재산권	전문가 파견(2명)	태국공업연맹	경제산업성, JETRO
환경	기초조사, 전문가 파견, 워크숍 개최 등(수자원 환경 파트너십)	천연자원환경성	환경성, UN환경 계획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및 (재)지구환경 전략연구기관

< 방글라데시 >

분야	개요	상대기관	실시·관계기관
환경	기초조사, 전문가 파견, 워크숍 개최 등(폐기물 대책, 3R)	환경삼림성	환경성

<인 도>

분 야	개 요	상대기관	실시·관계기관
에너지절약	수용연수 (40명 정도)	에너지효율국, 각주의 주정부 지정기관 외	산업경제성, (재)에너지절약 센터

<파키스탄>

분 야	개 요	상대기관	실시·관계기관
세관행정의 개선	수용연수(세관절 차의 적정·신속 화를 위한 인재 육성지원)	세입청	재무성

<이 란>

분 야	개 요	상대기관	실시·관계기관
법제도정비	수용연수(10명)	사법성	JICA, 나고야대학교

<케냐>

분 야	개 요	상대기관	실시·관계기관
세관행정의 개선	수용연수(세관절 차의 적정·신속	세입청	재무성

주요국의 ODA법제

분야	개요	상대기관	실시·관계기관
	화를 위한 인재 육성지원)		

< 남아프리카공화국 >

분야	개요	상대기관	실시·관계기관
에너지절약	수용연수(10명)	광물에너지절약성, 기준국, 에너지 효율국 외	경제산업성, (재)에너지절약 센터

(참고자료 2)

2008년도 법제도정비지원 실적

(복수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

분 야	국 가	상대기관	개 요	실시· 관계기관
법령외국어 번역 추진	-	-	일본법령의 번역정비, 공개	내각관방 외 관계부처 등
범죄방지 (형사사법)	브라질, 스리 랑카, 필리핀, 방글라데시, 멕시코, 보츠 와나, 인도네 시아, 요르단, 파키스탄	경찰, 검찰, 재판 등의 형사사법기 관 또는 소 관 중앙부처	연수원 수용	JICA, 법무 성, UN아시 아극동범죄 방지연수소
범죄방지 (상급세미나)	인도네시아, 보츠와나, 브 라질, 스리랑 카, 베트남, 우 르과이, 가이 아나, 필리핀, 페루, 요르단, 파라과이, 자 마이카, 방그 라데시, 파키 스탄, PNG	형사사법 기관	연수원 수용	JICA, 법무 성, UN아시 아극동범죄 방지연구소

분야	국가	상대기관	개요	실시·관계기관
범죄방지 (교정보호)	자마이카, 콜롬비아, 안티구아바부다, 우르과이, 브라질, 필리핀, 요르단, 인도네시아, 콩고민주공화국, 방글라데시, 부탄, 태국, 보츠와나	경찰, 검찰, 재판 등의 형사사법기관 또는 소관 중앙부처	연수원 수용	JICA, 법무성, UN아시아극동범죄방지연수소
독직방지형사사법지원	스리랑카, 캄보디아, 태국, 부탄, 필리핀, 예멘, 방글라데시, 네팔, 이집트, 멕시코, 필리핀, 이라크	법무·내무성, 반독직기관 등 행정기관을 포함한 형사사법에서의 독직대책관련 기관	연수원 수용	JICA, 법무성, UN아시아극동범죄방지연수소
중앙아시아지역형사사법연수	타지키스탄, 키르기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검찰청, 경찰, 내무성, 재판소, 대통령부, 법무성 등	연수원 수용	JICA, 법무성, UN아시아극동범죄방지연수소
보험감독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라오스	보험감독당국	연수원 수용	금융청

분 야	국 가	상대기관	개 요	실시· 관계기관
증권감독	인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태국, 중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네팔	증권거래위원회	연수원 수용	금융청
은행감독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은행감독당국, 중앙은행	연수원 수용	금융청
경쟁법·정책연수	우크라이나, 몽골, 몰도바, 세르비아,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중화인민공화국, 베트남, 알제리아	경쟁당국	연수원 수용	JICA,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통신	아시아태평양 국가	정보통신주관청 등	수용연수(10여건, 경쟁정책에 관한 연수 등)	총무성, 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공동체
	아시아태평양 국가	정보통신주관청 등	수용연수(1건, 브로드밴드 보급을 위한 환경정비지원)	총무성, 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공동체

분야	국가	상대기관	개요	실시·관계기관
	발전도상국	정보통신주 관청 등	수용연수(전기통신사업법의 소개)	총무성
	발전도상국	정보통신주 관청 등	수용연수(전기통신사업법의 소개)	총무성, (재)해외통신·방송건설협회
	아시아태평양 국가	정보통신주 관청 등	정보통신정책에 대한 공동연구	총무성, 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공동체
중앙아시아 비교법제 연구	타지키스탄, 키르기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재판소/기업, 담보, 채권자·주주의 보호 또는 도산감독의 국가기관	중앙아시아 국가에서의 기업법제의 비교연구	JICA, 법무성
세무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네시아, 요르단, 케냐, 말레이시아, 네팔, 필리핀, 탄자니아	세무당국 등	연수원 수용	국세청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중국, 에티오피아, 가나, 인도, 인도	세무당국 등	연수원 수용	JICA, 국세청

분야	국가	상대기관	개요	실시·관계기관
	네시아, 케냐,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시에라리온, 스리랑카, 탄자니아, 태국, 베트남			
방역	아시아국가	국제수역사무국	전문가 파견, 연수원 수용	농림수산성
투자환경법 정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모리타니, 몬테네그로, 잠비아, PNG, 베트남, 방글라데시	직접투자관계기관	연수원 수용	JICA, (재)비교법 연구센터
지적재산	방글라데시, 부탄,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PNG,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아	각국 지적재산관련부처	연수원 수용(7코스)	경제산업성, 세계지적소유권기관

분야	국가	상대기관	개요	실시·관계기관
	프가니스탄, 몰디브, 사모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브라질, 콜롬비아			
	중국,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멕시코, 칠레	각국 지적재산관련 민간기업·법률사무소 등	연수원 수용(4코스)	경제산업성, (사)발명협회
국제지적재산권	세르비아, 베트남, 중화인민공화국, 우크라이나, 튀니지, 인도네시아, 미얀마	지적재산정책의 책정·집행기관	연수원 수용	JICA, (재)비교법연구센터
APEC지적재산권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화인민공화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APEC지역 내의 지적재산청 및 관계부처	연수원 수용	JICA, 경제산업성, (사)발명협회
아프리카지역 지적재산권	케냐,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재판소, 기업감독성청	연수원 수용	JICA

분야	국가	상대기관	개요	실시·관계기관
자동차기준 인증	아시아국가	중앙정부 등	1958년 협정에 대한 가입지원, 가입 후의 국내법령정비 지원	국토교통성, (재)일본자동차운송기술협회
방재	베트남	농업농촌 개발성	현지조사, 세미나	국토교통성
	부탄	내무문화성		
법조양성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국립법과대학	체재이행국에서의 법조양성	문부과학성, 나고야대학교
	몽골	몽골국립대학교		
	베트남	하노이법과대학교		
	캄보디아	왕립법경대학교		
	베트남	사법성, 국가와 법연구소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 대한 법정비지원 전략연구	문부과학성, 나고야대학교
	캄보디아	사법성, 왕립법경대학교		
	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학교		

분야	국가	상대기관	개요	실시·관계기관
	베트남	하노이법과대학교	공동연구	문부과학성, 고베대학
	인도네시아	람풍주립대학교		
	태국	타마사트대학교, 출랄롱고른대학교		
	라오스	국립대학교 경제경영학부		
	중국	베이징대학교, 중국정법대학교		
	인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중국, 베트남, 라오스	ILO, 행정기관, 연구기관, 노사단체, NPO, NGO	노동법제정 비지원조사	문부과학성, 아오야마 카쿠인대학교
장기연수	베트남, 라오스, 중국	ILO, 행정기관, 연구기관, 노사단체, NPO, NGO	연수원 수용	JICA, 큐슈대학교, 나고야대학교
인재육성지원 무상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몽골, 라오스, 중국	법률분야연구자를 포함한 행정관	유학생지원	JICA, 요코하마국립대학교, 큐슈대학교, 고베대학교, 나고야대학교

부록(3)

정부개발원조대강

2003년 8월 29일
외무성 경제협력국

2003년 8월 29일
각의결정

1992년에 각의에서 결정되었던 정부개발원조(ODA)대강은 지금까지 10년 이상에 걸쳐 일본의 원조정책 근간을 이루어 왔다. 그동안, 국제정세는 격변하여 지금은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있어 평화구축을 비롯한 새로운 개발과제에 대한 대응이 급선무가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많은 선진 국가는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 ODA를 통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 정부, 국제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여 상호 관계를 심화하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일본국헌법의 정신에 준하여 국력에 적합한 책임을 완수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도, 새로운 과제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ODA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얻는 것이 중요하며, 국내의 경제재정상황이나 국민의 의견도 충분히 바탕으로 하면서, ODA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ODA의 전략성, 기동성, 투명성, 효율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폭넓은 국민 참가를 촉진하여 일본의 ODA에 대한 국내외의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ODA대강을 개정한다.

I. 이념 - 목적, 방침, 중점

1. 목 적

일본 ODA의 목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공헌하고, 이를 통하여 일본의 안전과 번영의 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은 아시아에서 최초의 선진국이 되었던 경험을 살려, ODA에 의해 경제사회기반정비나 인재육성, 제도 구축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왔다. 그 결과, 동아시아국가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해왔다.

한편, 냉전 후, 글로벌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현재의 국제사회는 빈부의 격차, 민족적·종교적인 대립, 분쟁, 테러, 자유·인권 및 민주주의의 억압, 환경문제, 감염증, 남녀의 격차 등, 수많은 문제가 얽혀 새로운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극도의 빈곤, 기아, 난민, 재해 등의 인도적인 문제, 환경이나 물 등의 지구규모의 문제는, 국제사회전체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경을 초월하여 개개 인간에게 있어서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또 최근에는 다발하고 있는 분쟁이나 테러는 심각한 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고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민주화나 인권의 보장을 촉진하고, 개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것은 국제사회의 안전과 발전에 있어서도 더욱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일본은, 세계 주요 국가의 하나로서, OD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러한 문제에 솔선하여 노력하기로 결의한다. 이러한 노력은 더 나아가서는 각국과의 우호관계나 사람의 교류 증진, 국제무대에 있어서의 일본의 입장 강화 등, 일본 자신에게도 다양한 형태로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다.

또, 상화의존관계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제무역의 은혜를 향수하고 자원·에너지, 음료 등을 해외에 크게 의존하는 일본으로서는, ODA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안정과 발전에 적극적으로 공헌한다. 이것은 일본의 안전과 번영을 확보하고, 국민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에 깊이 결부되어 있다. 특히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아시아국가와의 경제적인 연계, 다양한 교류의 활발화를 도모하는 것은 불가결하다.

평화를 회구하는 일본에 있어서 ODA를 통하여 이러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일본의 자세를 국내외에 제시해가는 것은,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정책으로, ODA는 앞으로도 큰 역할을 담당해야할 것이다.

2. 기본방침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본은 다음의 기본방침을 바탕으로 ODA를 한층 더 전략적으로 실시한다.

(1) 개발도상국의 자조노력지원구축

좋은 통치(Good Governance)에 근거로 하는 개발도상국의 자조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러한 국가들의 발전의 기초가 되는 인재양성,

법·제도구축이나 경제사회기반의 정비에 협력하는 것은, 일본 ODA의 가장 중요한 견해이다. 이를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자주성(ownership)을 존중하고, 이 개발전략을 중시한다.

그때, 평화, 민주화,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이나 경제사회의 구조개혁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이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2) '인권의 안전보장'의 시점

분쟁·재해나 감염증 등, 인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글로벌한 시점이나 지역·국가레벨의 시점과 함께, 개개의 인간에 착안한 '인간의 안전보장'의 시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일본은 인재양성을 통한 지역사회의 능력강화를 위한 ODA를 실시한다. 또, 분쟁시보다 부흥·개발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존엄이 있는 인생을 가능하게 하도록, 개인의 보호와 능력강화를 위한 노력을 실시한다.

(3) 공평성의 확보

ODA 정책의 입안 및 실시에 있어서는 사회적 약자의 상황, 개발도상국내에서의 빈부격차 및 지역격차를 고려함과 동시에, ODA의 실시가 개발도상국의 환경이나 사회면에 미치는 영향 등에 충분히 주의를 하여 공평성 확보를 도모한다.

특히, 남녀공동참여의 시점은 중요하고,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참가 및 개발에서의 수익확보에 대하여 충분히 배려하여, 여성의 지위향상에 한층 더 노력한다.

(4) 일본의 경험과 지견의 활용

개발도상국의 정책이나 원조수요를 바탕으로 하면서, 일본의 경제사회발전이나 경제협력의 경험을 도상국의 개발에 도움이 됨과 동시에,

일본이 가지는 뛰어난 기술, 지건, 인재 및 제도를 활용한다.

또, ODA의 실시에 있어서는 일본의 경제·사회와의 관련에 배려하면서, 일본의 중요한 정책과의 연계를 도모하여 정책전반의 정합성을 확보한다.

(5) 국제사회에서의 협조와 연계

국제사회에서는 국제기관을 중심이 되어 개발목표나 개발전략의 공유화가 진행되어 다양한 주체가 협조하여 원조를 실시하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도 이러한 동향에 참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완수하도록 노력한다. 동시에, UN 여러 기관, 국제개발금융기관, 다른 원조국가, NGO, 민간기업 등과의 연계를 추진한다. 특히 전문적 지견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는 국제기관과 일본의 ODA와의 연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이러한 국제기관의 운영에도 일본의 정책을 적절하게 반영시켜 나가도록 노력한다.

또, 일본은 아시아 등에서의 보다 개발이 진행된 개발도상국과 연계하여 남남(南南)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 지역협력 구조와의 연계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복수국가에 걸친 광역적인 협력을 지원한다.

3. 중점과제

이상의 목적 및 기본방침에 근거로 하여, 일본은 다음의 과제에 중점적으로 노력한다.

(1) 빈곤사감

빈곤사감은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중요한 개발목표이고, 또 국제사회에서의 테러 등의 불안정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교육이나 보건의료·복지, 물과 위생, 농업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

을 중시하고, 개발도상국의 인간개발, 사회개발을 지원한다. 동시에, 빈곤사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고용이 증가함과 동시에 생활의 질도 개선되는 것이 불가결하며, 이를 위한 노력도 중시한다.

(2) 지속적인 성장

개발도상국의 무역, 투자 및 사람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상 중요하게 되는 경제사회기반의 정비와 함께, 정책입안, 제도정비나 인재육성에 대한 협력도 중시한다. 이러한 협력에는 지적재산권의 적절한 보호나 표준화를 포함한 무역·투자분야의 협력, 정보통신기술(ICT)의 분야에서의 협력, 유학생의 수용, 연구협력 등도 포함된다.

또, 일본의 ODA와 개발도상국의 개발에 큰 영향을 가지는 무역이나 투자가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면서 실시되어, 총체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하여, 일본의 ODA와 무역보험이나 수출입 금융 등 ODA 이외의 자금의 흐름과의 연계 강화에도 노력함과 동시에, 민간의 활력이나 자금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민간경제협력의 추진을 도모한다.

(3) 지구적 규모의 문제에 대한 노력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환경문제, 감염증, 인구, 식료, 에너지, 재해, 테러, 마약, 국제조직범죄 등 지구적 규모의 문제는 국제사회가 즉시 협조하여 대응을 강화해야 하는 문제로, 일본도 ODA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에 노력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규범만들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완수한다.

(4) 평화의 구축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쟁의 다양한 요인에 포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서 상기와 같은 빈곤삭감이나 격차의 시정을 위한 ODA를 실시한다. 또, 예방이나 분쟁하의 긴급 인도지원과 함께, 분쟁의 종결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에서 분쟁종결 후의 평화의 정착과 국가만들기를 위한 지원까지, 상황의 추이에 입각하여 평화구축을 위해서 양국간 및 다국원조를 이음매 없이 기동적으로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ODA를 활용하고, 예를 들면 평화 프로세스 촉진을 위한 지원, 난민지원이나 기초생활기반의 복구 등의 인도·복구지원, 전(前) 병사의 무장해제, 동원해제 및 사회복귀(DDR)나 지뢰제거를 포함한 무기의 회수 및 폐기 등의 국내 안정과 치안의 확보를 위한 지원, 또 경제사회개발에 더불어 정부의 행정능력향상도 포함한 부흥지원을 실시한다.

4. 중점지역

상기의 목적에 비추어보면,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일본의 안전과 번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시아는 중점지역이다. 다만, 아시아국가의 경제사회상황의 다양성, 원조수요의 변화에 충분히 유의하면서, 전략적으로 분야나 대상 등의 중점화를 도모한다. 특히, ASEAN 등의 동아시아지역에 대해서는, 최근 경제적 상호의존관계가 확대·심화되는 가운데,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통합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적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으로서 이러한 동아시아지역과의 경제연계의 강화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ODA를 활용하여 동지역과의 관계강화나 지역격차의 시정에 노력한다.

또, 남아시아 지역에서의 큰 빈곤인구의 존재에 충분히 배려함과 동시에, 중앙아시아지역에 대해서는, 코카서스지역도 시야에 넣으면서, 민주화나 시장경제화에 대한 노력을 지원한다.

기타 지역에 대해서도, 이 대강의 목적, 기본방침 및 중점과제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원조수요, 발전상황에 유의하면서 중점화를 도모한다.

구체적으로는 아프리카는 많은 후발개발도상국이 존재하고, 분쟁이나 심각한 개발과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자조노력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중동은 에너지공급의 관점이나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의 관점에서 중요한 지역이지만, 중동 평화문제를 비롯하여 불안정 요인을 안고 있어, 사회적 안정과 평화의 정착을 위한 지원을 실시한다.

중남미는 비교적 개발이 진행된 국가인 한편, 취약한 도서국가를 포함하여, 지역내 및 국내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배려하면서 필요한 협력을 실시한다.

대양주는 취약한 도서국가 많은 점을 바탕으로 하여 협력을 실시한다.

II. 원조시설의 원칙

상기의 이념에 준하여, 국제연합헌장의 여러 원칙(특히, 주권, 평등 및 내정불간섭) 및 이하의 여러 사항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원조 수요, 경제사회 상황, 양국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ODA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1) 환경과 개발을 양립시킨다.
- (2) 군사적 용도 및 국제분쟁 조장에 대한 사용을 회피한다.
- (3) 테러나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등 국제평화와 안정을 유지·강화함과 동시에, 개발도상국은 그 국내자원을 자국의 경제사회개발을 위하여 적정하고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의 군사지출, 대량파괴무기·미사일의 개발·제조, 무기의 수출 등의 동향에 충분히 주의를 한다.
- (4) 개발도상국에서의 민주화의 촉진, 시장경제도입의 노력 및 기본적 인권 및 자유의 보장상황에 충분히 주의를 한다.

Ⅲ. 원조정책의 입안 및 실시

1. 원조정책의 입안 및 실시체제

(1) 일관성있는 원조정책의 입안

이 대강을 바탕으로, 정부전체로서 일체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ODA를 효율적·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본방침에서 서술했던 국제사회에서의 협조와 연계도 시야에 넣으면서, 중기정책이나 국가별 원조계획을 작성하여, 이에 준한 ODA 정책의 입안 및 실시를 도모한다. 특히 국가별 원조계획에 대해서는 주요한 피원조국에 대하여 작성하고, 일본의 원조정책을 바탕으로 피원조국에 있어서 진실로 필요한 원조수요를 반영했던, 중점이 명확한 것이다.

이러한 중기정책과 국가별 원조계획에 따라, 유상·무상의 자금협력 및 기술협력의 각 원조방법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최대한 살려 소프트, 하드 양면의 균형을 유의하면서 이러한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함과 동시에, 적절한 재검토에 노력한다.

(2) 관계부처간의 연계

정부전체로서 일체성과 일관성이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실시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관계 각료회의 하에서 외무성을 조정의 핵심으로서 관계부처의 지견을 활용하면서 관계부처간의 인사교류를 포함한 폭넓은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개발원조 관계부처 연락협의회 등의 협의의 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3) 정부와 실시기관의 연계

정부와 실시기관(국제협력기구,³⁰⁾ 국제협력은행)의 역할, 책임분담을 명확히 하면서, 정책과 실시의 유기적인 관련을 확보해야 하기 위하여,

30) 2003년 10월 1일, 국제협력사업단은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에 개편될 예정이다.

인사고료를 포함한 양자의 연계를 강화한다. 또, 실시기관 상호의 연계를 강화한다.

(4) 정책협회의 강화

ODA 정책의 입안 및 실시에 있어서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요청을 받기 전부터 정책협의를 활발하게 실시함으로써, 그 개발정책과 원조 수요를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동시에, 대화를 통하여 일본의 원조방침을 개발도상국에 제시하여 개발도상국의 개발전략 가운데 일본의 원조가 충분히 살려지도록, 개발도상국의 개발정책과 일본의 원조정책의 조정을 도모한다. 또, 개발도상국 안건의 형성, 실시의 면도 포함하여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원함과 동시에, 그러한 노력이 충분한지의 여부를 일본의 지원에 있어서 고려한다.

(5) 정책의 결정과정·실시에서의 현지기능의 강화

원조정책의 결정과정·실시에서 재외공관 및 실시기관 현지사무소 등이 일체가 되어 주도적인 역할을 완수하도록 그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외부인재의 활용을 포함하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구조의 정비에 노력한다. 또, 현지를 중심으로 하여 개발도상국의 개발정책이나 원조수요를 종합적이고 적확하게 파악하도록 노력한다. 그 때, 현지관계자를 통하여 현지의 경제사회 상황 등을 충분히 파악한다.

(6) 국내외의 원조관계자와의 연계

국내의 NGO, 대학, 지방공공단체, 경제단체, 노동단체 등의 관계자가 ODA에 참가하여 그 기술이나 지견을 살릴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한다. 또, 개발도상국을 비롯하여, 해외에서의 이와 비슷한 관계자에도 연계를 도모한다. 또, ODA의 실시에 있어서는 일본의 민간 기업이 가지는 기술이나 지견을 적절하게 활용해간다.

2. 민간참가의 확대

(1) 국민각층의 광범위한 참가

국민 각층에 의한 원조활동에 대한 참가나 개발도상국과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민으로부터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개발사업에 관한 제안의 모집이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협력 등을 실시한다.

(2) 인재육성과 개발연구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육성함과 동시에, 이러한 인재가 국내외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에 노력한다. 동시에, 해외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지식을 가진 자 등의 질 높은 인재를 폭넓게 요구하여 ODA에 활용한다.

또, 개발도상국에 관한 지역연구, 개발정책연구를 활발하게 하여, 일본의 개발에 관한 지적 자산의 축적을 도모한다.

(3) 개발교육

개발교육은 ODA를 포함한 국제협력에 대한 이해를 촉진함과 동시에, 장래 국제협력의 담당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교육 등의 장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이 안고 있는 문제, 개발도상국과 일본과의 관계, 개발원조가 완수해야하는 역할 등, 개발문제에 관한 교육의 보급을 도모하고, 그 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교재의 제공이나 지도자의 육성 등을 지원한다.

(4) 정보공개와 홍보

ODA의 정책, 실시, 평가에 관한 정보를 폭넓게 신속하게 공개하고, 충분한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알기 쉬운 형태로 정보제공을 실시함과 동시에, 국민이 일본의 ODA 안전에 접할 기회를 만든다.

또, 개발도상국, 다른 원조국가 등 넓게 국제사회에 대하여 일본의 ODA에 관한 정부발신을 강화한다.

3. 효과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평가의 내실화

사전부터 중간, 사후와 일관된 평가 및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했던 평가를 실시한다. 또, ODA의 성과를 측정·분석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지는 제3자에 의한 평가를 내실화시킴과 동시에 정부 자신에 의한 정책평가를 실시한다. 또, 평가결과를 그 후의 ODA 정책의 입안 및 효율적·효과적인 실시에 반영시킨다.

(2) 적정한 절차의 확보

ODA의 실시에 있어서는 환경이나 사회면에 대한 영향에 충분히 배려하는 절차를 취함과 동시에, 질과 가격면에서 적정하고 효율적인 조달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동시에, 이러한 확보를 하면서 절차의 간소화와 신속화를 도모한다.

(3) 부정, 부패의 방지

안건의 선정 및 실시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 부패 및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또, 외부감사의 도입 등 감사의 내실화를 통하여 적정한 집행의 확보에 노력한다.

(4) 원조관계자의 안전 확보

원조관계자의 생명 및 신체 안전의 확보는 ODA 실시의 전제조건으로, 안전관련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에 노력한다.

IV. ODA 대강의 실시상황에 관한 보고

ODA 대강의 실시상황에 대해서는 매년 각의 보고되는 ‘정부개발원조(ODA) 백서’에서 명확히 한다.

2003년 8월 29일

각 의 결 정

부록(4)

정부개발원조에 관한 중기정책

2005년 2월 4일

1. 중기정책의 규정

(1) 2003년 8월에 각의결정으로 개정되었던 정부개발원조대강(이하, ODA대강)은, ‘이 대강을 바탕으로, ODA 중기정책이나 국가별 원조계획을 작성하여, 이에 준한 ODA 정책의 입안 및 실시를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구(舊) ODA중기정책은, 구 ODA대강 아래에서 1999년 8월에 책정되었던 것으로, 책정 후 5년이 경과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이번 ODA 중기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여기에 새로운 중기정책(이하, 신(新) ODA 중기정책)을 책정한다.

(2)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 지구적 규모의 문제를 비롯한 개발과제에 대한 노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다발하는 분쟁이나 테러를 예방하고 평화를 구축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즉시 협조하여 대응을 강화해야하는 문제이다. 또,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개발도상국과의 경제제휴의 추진 등을 통하여, 이러한 여러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국제사회가 직면하는 긴요한 과제에 대한 노력에서, 일본으로서는 ODA 대강이 ODA의 목적을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공헌하고, 이를 통하여 일본의 안전과 번영

의 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바탕으로,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ODA의 활용을 통하여 일본의 지위에 걸맞는 역할을 완수하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에 기초로 하여, 신 ODA 중기정책에서는, ODA 대강 가운데, 견해나 노력 등을 국내외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했던 것으로 하여, ODA 대강의 기본방침의 하나인 '인간의 안전보장의 시점', 중점과제인 '빈곤삭감', '지속적 성장', '지구적 규모의 문제에 대한 노력', '평화의 구축', 그리고 '효율적·효과적인 원조의 실시를 위한 대책'을 거론하여, 일본의 견해나 접근, 구체적인 노력에 대하여 기술하여, ODA 대강에 준한 ODA를 한층 전략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3) 국가별 원조계획의 책정에 있어서는, ODA 대강에 더불어, 대강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했던 신 ODA 중기정책을 함께 바탕으로 삼기로 한다. 또, 신 ODA 중기정책에서의 기재의 유무는, ODA 대강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자체의 중요성이나 필요성 등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신 ODA 중기정책은 앞으로 3~5년을 염두에 두고, 국내외의 정세를 바탕으로 하면서, 그 이전에도 필요에 따라 실시상황을 평가한 뒤 책정하기로 한다.

(4) ODA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도, 일본 ODA에 관하여 충분한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원조 활동에 대한 국민참가를 촉진하기로 한다. 또, 평가를 충실히 하고 효과적인 원조의 실시에 힘쓴다.

2. ‘인간의 안전보장’의 시점에 대하여

(1) ‘인간의 안전보장’의 견해

(가) 최근 글로벌화의 심화에 따라,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없던 긴밀한 상호의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테러나 환경파괴, HIV/에이즈 등의 감염증, 국제조직범죄 등 국경을 초월한 위협, 갑작스런 경제위기나 내전 등에 의한 인도상의 위기가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글로벌한 시점이나 지역 및 국가 차원의 시점과 함께, 개개의 인간에 착안한 ‘인간의 안전보장’의 시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나) ‘인간의 안전보장’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을 중심에 두고, 위협에 노출될 수 있거나 혹은 현재 위협하에 있는 개인 및 지역사회의 보호와 능력강화를 통하여, 각 개인이 존엄있는 생명을 다할 수 있는 사회만들기를 목표로 하는 견해이다. 구체적으로는 분쟁, 테러, 범죄, 인권침해, 난민의 발생, 감염증의 만연, 환경파괴, 경제위기, 재해 등의 ‘공포’나, 빈곤, 기아, 교육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결여 등의 ‘결핍’ 등의 위협에서 개인을 보호하고, 또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 선택·행동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 일본으로서는, 사람들이나 지역사회, 국가가 직면하는 취약성을 경감하기 위해, ‘인간의 안전보장’의 시점을 바탕으로 하면서, ‘빈곤사감’, ‘지속적인 성장’, ‘지구적 규모의 문제에 대한 노력’, ‘평화의 구축’ 등의 네 가지 중점과제에 대한 노력을 하기로 한다.

(2) ‘인간의 안전보장’의 실현을 위한 원조의 접근(approach)

‘인간의 안전보장’은 개발원조 전체에 걸쳐서 바탕으로 해야 하는 시점으로, 다음과 같은 접근이 중요하다.

(가) 사람들을 중심에 두어,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전해지는 원조

지원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주민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ODA의 정책입안, 안건형성, 안건실시, 모니터링·평가에 이르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주민을 포함한 관계자와의 대화를 실시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전해지는 원조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원조관계자나 다른 원조국가, NGO 등과 제휴와 조정을 도모한다.

(나) 지역사회를 강화하는 원조

정부가 충분히 기능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의 행정능력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정부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원조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전해지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이나 주민참가형의 지원을 편성한다. 또, 지역사회의 연대를 강화하여, 가버넌스(governance)개선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결핍’이나 ‘공포’로부터 지역사회 사람들을 보호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다) 사람들의 능력강화를 중시하는 원조

사람들을 원조의 대상으로서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사회의 ‘개발의 담당자’로 보아, 자립을 위한 능력강화를 중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보건, 교육 등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생계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또 사람들의 능력의 발휘에 이바지하는 제도, 정책을 정비하여, 사람들의 ‘자립’을 지원한다.

(라) 위협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익(裨益)을 중시하는 원조

‘인간의 안전보장’의 시점을 바탕으로 한 원조에는, 빈곤을 비롯한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와 분쟁과 같은 ‘공포로부터의 자유’ 두 가지를 시야에 넣어,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에 대하여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대처해갈 필요가 있다.

또, 이때, 생명, 생활 및 존엄이 위기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 혹은 그러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어디에 분포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파악한 뒤, 중점적으로 원조를 실시한다.

(마)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원조

사람들이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차별당하지 않고,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의 형성을 지원한다. 또, 문화의 이름 아래에서 개인의 인권이나 존엄이 위협당하지 않도록 배려한다.

(라) 다양한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한 분야 횡단적인 원조

빈곤이나 분쟁이 발생하는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문제의 구조는 매우 복잡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이나 구조를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견을 활용하여, 분야 횡단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주) ‘인간의 안전보장’의 시점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되는 안건의 사례를, 본문 끝부분에 부록으로 제시한다. 또 ‘인간의 안전보장’의 시점을 바탕으로 한 안건은 이러한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 반영을 위해 노력한다.

3. 중점과제에 대하여

중점과제에 노력하는데 있어서는 ODA 대강의 기본방침인 개발도상국의 자조노력(ownership) 지원, ‘인간의 안전보장’의 시점, 젠더의 시점

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포함한 공평성의 확보, 정책전반의 정합성 확보를 포함한 일본의 경험과 지견의 활용, 남남(南南)협력의 추진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의 협조와 연계를 바탕으로 한다.

(1) 빈곤삭감

(가) 빈곤삭감의 견해

(a) 개발도상지역에서는 아직 약 11억 명이 1일 1달러 미만의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0년 9월에 UN 밀레니엄 정상회담을 거쳐, 빈곤삭감, 젠더격차, 보건, 교육, HIV/에이즈를 포함한 감염증의 확대방지, 환경 등에 대하여 2015년까지 달성해야하는 목표를 담은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가 설정되었다. MDGs는 보다 좋은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하나가 되어 노력해야하는 목표로, 일본의 입장으로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ODA의 활용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공헌한다.

(b) 빈곤은 단순히 소득이나 지출수준이 낮은 등의 경제적인 측면에 더불어, 교육이나 보건 등의 기초사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젠더격차, 의사결정과정에서 대한 참가기회가 없는 등의 사회적, 정치적인 측면도 가진다. MDGs는 대부분이 교육 및 보건 등의 사회 섹터에 관한 목표이다. 동시에, 동아시아에서의 개발경험이 보여주는 것처럼,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빈곤삭감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따라서, 경제·사회의 양측면으로부터 포괄적으로 빈곤삭감의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c) 각 국가의 빈곤을 형성하는 요인은, 그 국가의 경제구조, 정치, 문화, 사회, 역사, 지리 등의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으로, 각

국의 개별상황을 충분히 바탕으로 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발도상국 스스로가 책정하는 빈곤삭감전략에 공헌함과 동시에, 이러한 빈곤삭감전략과 정합성이 있는 지원을 실시한다.

(나) 빈곤삭감을 위한 접근 및 구체적인 노력

(a) 발전단계에 따른 분야 횡단적인 지원

빈곤은 다양한 요인을 배경으로 하고 또 빈곤층이 안고 있는 문제는 다양하기 때문에, 빈곤삭감에 효과적으로 노력하기 위해서는, 분야 횡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안건형성에 앞서, 국가나 지역마다 다른 빈곤사정의 파악과 빈곤인구의 니즈의 분석에 힘쓴다. 빈곤층에 관계되는 다양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정부나 NGO, 대학,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또, 분석에 근거로 하여, 유상 자금협력, 무상 자금협력, 기술협력의 양국간 지원계획안 및 국제기관을 활용한 지원을 국가나 지역마다의 사정이나 상대국의 발전단계에 따라 효과적으로 편성하여 실시한다.

예를 들면, HIV/에이즈 대책은, 보건의료에 그치지 않는 문제로서, 각종 계획안을 활용하면서 섹터 횡단적인 대책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예방 및 자발적 카운슬링과 검사(VCT)의 강화에 중점을 두지만, 이와 동시에 지역보건의료시스템 전체의 강화에도 배려한다. 또, 니즈에 따라 감염자의 고용지원이나, 치료 및 케어, 감염자나 가족, 에이즈로 부모로 잃은 고아 등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도 실시한다. 경제활동의 발전에 따른 사람의 이동 및 집중에 따른 HIV/에이즈 유행의 위험성, 아동이나 여성의 인신매매, 마약문제 등에 따른 HIV/에이즈 감염리스크의 확대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각각의 개발원조 프로그램에 에이즈대책을 첨가하도록 배려한다.

(b)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지원

빈곤삭감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빈곤층에 초점을 맞춘 직접적인 지원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때, 인간의 안전보장의 시점에서, 빈곤층이나 지역사회의 능력을 강화하고, 자신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원조정책의 책정이나 프로젝트의 계획이나 실시단계에서 빈곤층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일반시민 차원에서 다양한 니즈에 따른 대응이 가능한 NGO 등과 협동한다.

(i) 기초사회서비스의 확충

빈곤층의 생활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보건, 안전한 물, 주거장소의 확보, 전화 등의 기초사회서비스의 확충을 해당 국가의 가버넌스 개선도 종용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면, 가난한 지역에 건설된 학교에 우물, 화장실의 설치로 위생상태의 개선 및 의식의 향상을 도모하는 등, 급식을 통하여 아동의 영양개선을 도모한다. 기초사회서비스 공급 강화의 관점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능력강화와 보건의료시스템 등의 강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병원과 학교로의 접근 개선을 목표로 한 운수·통신·전력 인프라의 정비를 실시한다. 또, 서비스 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인재양성·연수, 교재의 보급을 지원한다. 또,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리프로덕티브 헬스(Reproductive Health), 감염증대책, 여성의 능력구축에 이바지하는 지원을 실시한다.

(ii) 생계능력의 강화

빈곤층의 빈곤상태로부터의 탈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빈곤층의 생계능력을 강화하고, 자신들의 생산적 활동을 통한 수입확보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빈곤층이 비익하는 농산물시장이나 어항, 농로,

관개시설 등의 소규모의 경제 인프라를 정비하고, 소규모금융(Microfinance) 지원이나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실업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와 동시에, 빈곤층에 대한 기능훈련 등, 빈곤층의 능력개발을 실시한다.

(iii) 갑작스런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빈곤층은 경제위기, 마약, 범죄 등의 사회문제나 자연재해 등에 대하여 매우 취약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및 대응능력의 강화가 중요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실업대책, 영양개선프로그램이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등의 ‘사회안정망(safety net)’의 구축을 지원한다. 2004년 12월에 발생했던 수마트라섬 대지진 및 인도양 해일 재해를 바탕으로, ‘방재협력계획’에 근거로 하여, 지진, 해일을 비롯한 자연재해에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는 협력을 실시한다. 재해예방을 국가정책, 도시계획, 지역계획에 반영·정착시키는데 있어서 필요한 정책제언이나 제도구축, 인재육성 및 계획의 착실한 실시를 지원한다. 또, 재해발생 후, 재해를 입은 자들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전해지도록 신속한 지원을 실시함과 동시에, 부흥시에 재해와 빈곤의 악순환을 끊음으로써, 빈곤층의 재해에 대한 취약성의 완화에 노력한다.

(c) 성장을 통한 빈곤삭감을 위한 지원

빈곤삭감을 위해서는, 빈곤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동시에, 국가 전체 혹은 빈곤지역을 포함한 지방전체의 경제성장을 촉진하여 빈곤삭감으로 이어지는 접근이 중요하다. 특히, 빈곤층에 비익효과를 가져오는 성장이 되도록 배려한다.

(i) 고용창출

취업을 통한 소득의 향상은, 빈곤층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이를 위해서, 특히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 육성

을 지원한다. 또, 기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경제 인프라 정비, 영세기업의 참가 및 국내외로부터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혁 및 노동환경정비를 지원한다. 문화면의 매력을 활용하여 관광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은 고용의 창출로도 이어진다.

(ii) 균형 잡힌 발전

경제성장을 이루어온 국가에서도, 지역간 격차의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격차는 대부분의 경우, 가난한 농촌지역과 비교적 혜택을 받고 있는 도시부와의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생산성 향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농업관련정책입안지원, 관개나 농로 등의 생산기반의 강화, 아프리카에서의 네리카(NERICA: New Rice for Africa) 쌀 등 생산기술의 보급 및 연구개발, 주민조직의 강화를 지원한다. 이에 더불어, 농촌 지역에서의 농산물 가공, 시장유통이나 식품판매의 진흥 등의 농업이외의 경제활동의 육성을 지원한다.

또, 이러한 지역간 격차가 존재하는 도시부와 촌락지역을 연결시키는 운수, 에너지, 통신 등의 기간 인프라를 정비한다. 이때, 간선도로에 농로를 연결시키는 등의 연구를 하여, 기간 인프라가 빈곤층에 의한 경제·사회활동에 대한 참가에 도움이 되도록 배려를 한다.

도시부에서도, 인구증가나 촌락지역으로부터의 인구유입 등에 의해 매우 가난한 지구가 존재하고 있다. 노동집약적인 중소 및 영세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특히 도시부에서 소규모금융이나 이를 위한 육성에 이바지하도록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또, 빈곤층은 자연자원을 직접 생활의 양식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경우도 있어, 환경 열악화에 의해 특히 심각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성장을 통한 빈곤삭감에서는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의 시점에 충분히 유의한다.

(d) 빈곤삭감을 위한 제도·정책에 관한 지원

(i) 빈곤삭감을 위해서는, 법 아래에서의 평등에 기초로 하여 빈곤층의 권리가 보장되어 정치에 참가하고, 스스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 정책의 구조가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인권의 보장, 법에 의한 통치, 민주화의 촉진에 이바지하는 지원을 실시한다.

(ii) 개발도상국 정부가 적절한 개발전략을 책정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능력향상을 지원한다.

(iii) 경제위기나 인플레이션 등에 의한 빈곤층에 대한 영향을 회피하는 관점에서, 적절한 재정·금융정책을 통한 거시경제의 안정화는 불가결하다. 이를 위하여, 전문가파견 등을 통하여 정부관계자의 능력강화를 지원한다.

(2) 지속적인 성장

(가) 지속적인 성장의 견해

(a) 빈곤을 삼각하고, 또 개발의 성과를 지속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서도, 개발도상국의 지속적 성장이 불가결하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민간 섹터의 주도적인 역할이 열쇠가 되기 때문에, ODA에 의해 무역·투자를 포함한 민간 섹터의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더불어, ODA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다각적인 자유무역체제로의 참가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b) 국제무역의 은혜를 향수하고, 자원·에너지, 식료 등을 해외에 크게 의존하는 일본으로서는, ODA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속적인 성

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헌한다. 이러한 것은 일본의 안전과 번영을 확보하고,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과 깊게 결부되어 있다.

(c) 지속적인 성장의 저해요인을 국가마다 분석하여, 각국의 개별상황 및 발전단계에 따라 경제사회기반의 정비, 정책입안·제도정비, 인재양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것들의 포괄적인 지원을 통하여 각국의 투자환경의 개선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한다.

(d) 최근, 각 국가 사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제휴는, 무역·투자의 자유화에 더불어, 경제제도의 조화를 추진함으로써, 사람, 물자, 돈, 정보의 국경을 넘어선 흐름을 원활히 하고, 관계국 전체의 성장에 이바지한다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일본은 동아시아지역을 비롯하여 각국과의 경제제휴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상대국 가운데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경제제휴를 강화하고, 그 효과를 한층 더 이끌어내기 위한 무역·투자환경이나 경제기반의 정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나) 지속적 성장의 접근 및 구체적인 노력

(a) 경제사회기반의 정비

민간 섹터의 활동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인프라는 근본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일본은 종래 경제성장의 지탱하게 되는 경제·사회 인프라의 정비를 엔화 차관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의 기반정비에 큰 역할을 완수해 왔다. 경제·사회 인프라 정비를 촉진하는데 있어서는 적절한 규모의 중장기 자금이 필요한 점, 또 충분한 자기재원과 민간자금의 유입을 확보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이 아직 일부로 한정되어 있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의 제도정책환경이나 채무관리능력 등에 유의하면서, 도로, 항만 등의 운수 인프라, 발전·송전시설, 석유·천연가스 관련 시설 등의 에너지 관련 인프라, 정보통신 인프라, 생활환경 인프라 등의 무역·투자환경정비 등에 이바지하는 경제사회기반의 정비를 지원한다. 또, 인프라의 유지관리와 지속성의 확보를 위하여, 인프라 정비에 대한 지원과 함께, 분야마다의 과제에 관한 정책 책정 및 대화의 추진, 인재육성 등, 인프라의 소프트면에서의 지원도 실시한다.

인프라 정비가 폭넓은 지역이나 국경을 걸쳐 비익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원을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지역전체의 발전이라는 관점을 고려한다. 또, 국경을 초월한 사람·물자 이동의 원활화를 확보하는 관점에서 보안상의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이나 안전대책을 지원한다.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ODA 이외의 자금의 중요성에 비추어보아, 민간자금 및 ODA 이외의 공적자금(OOF)과의 역할분담과 제휴나, 민간 섹터의 참가 등을 도모하는 관민 파트너십(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의 구축을 중시한다. 인프라의 건설에 있어서는 환경사회배려를 철저히 한다.

(b) 정책입안·제도정비

경제사회기반의 정비에 더불어, 거시경제의 안정화, 무역이나 투자에 관한 정책·제도의 구축, 정보통신사회에 관한 정책·제도정비 등 소프트분야의 지원은, 민간 섹터가 견인하는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

거시경제의 안정화에 관해서는,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재정·금융정책, 공적채무관리, 경제정책의 입안·실시를 위한 지원을 실시함과 동시에, 무역·투자의 확대를 상정한 산업정책,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진흥책 등의 입안을 위한 지원을 중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재무관리, 금융, 세무,

세관분야의 제도구축,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또 지방고유산업이나, 부품산업의 진흥을 지원한다. 특히 시장경제 이행단계의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정책, 제도구축, 법정비, 인재육성을 포함한 시장경제화 지원을 실시한다.

무역·투자촉진을 위한 제도정비에 관해서는, 각국의 경제상황에 배려하면서, 정부조달, 기준·인증제도,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물류망 구축이나 그 운용을 위한 지원을 포함하여, 국제경제 룰에 준한 제도정비를 지원해 간다. 독직의 박멸, 법·제도의 개혁, 행정의 효율화·투명화, 지방정부의 행정능력의 향상은, 민주적이고 공정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도, 또 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버너스 분야에서 정부의 능력향상을 지원한다.

(c) 인재양성 지원

인재양성은, 노동력의 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짐과 동시에, 새로운 기술혁신을 창출하는 힘도 된다. 일본의 경제발전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국가의 경제·사회개발이나 과학기술진흥에 필요한 국민의 인재육성이 경제성장에 완수했던 역할은 크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에서의 기초교육,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의 내실화를 위한 지원에 더불어, 일본의 고등교육기간으로의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것 등을 통한 폭넓은 분야에서의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 전문가의 파견이나 연수제도 등의 활용하고, 일본의 기술, 지견, 인재를 활용하여 일본의 경험을 전달하면서, 중소기업진흥이나 정보통신을 포함한 산업발전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재육성을 지원한다.

(d) 경제제휴강화를 위한 지원

지역 차원의 무역·투자의 촉진은, 각국의 경제성장에 직접 공헌함과 동시에,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동원이나 민간 섹터의 기술수준향

상 등에 기여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나 지역에 걸친 광역의 인프라 정비를 실시하는 등, 무역·투자에 관련되는 여러 제도의 정비나 인재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일본이 경제제휴를 추진하고 있는 각국 및 지역에 대해서는, 지적재산보호나 경쟁정책 등의 분야에서의 국내법제도 구축지원이나, 세관, 입국관리 관련의 집행개선·능력강화 지원, 정보통신기술(ICT), 과학기술, 중소기업, 에너지, 농업, 관광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을 실시한다.

(3) 지구적 규모의 문제에 대한 노력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환경문제, 감염증, 인구, 식료, 에너지, 재해, 테러, 마약, 국제조직범죄 등 지구적 규모의 문제는, 국경을 초월하여 개개 인간의 생존에 관계되는 위협이다. 국제사회의 안전과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본은 ODA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공헌한다. 중기 정책에서는 이러한 지구적 규모의 문제 가운데, 특히 빈곤삭감과 지속적인 성장의 달성에 밀접하고 포괄적으로 관계하는 환경문제 및 2004년 12월에 발생했던 수마트라섬 대지진 및 인도양 해일 재해를 바탕으로, 지진, 해일을 비롯한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을 거론한다.

(가) 환경문제 및 재해에 대한 노력에 관한 견해

(a) 환경과 개발의 양립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세계 공통의 과제이다. 지구온난화의 진행, 개발도상국에서의 경제 성장에 따른 심각한 환경오염, 인구증가나 빈곤을 배경으로 한 자연 환경의 열악화의 급속한 진행 등은,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생활의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광범하게 걸친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 또, 지진이나 해일 등에 의한 재해는, 발생 직후의 피해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인간의 생존이나 사회경제개발을 위협하는 문제로, 그 대응을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자조노력을 지원

함과 동시에 긴급대응, 부흥, 예방의 각 단계에 따른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는 노력이 중요하다.

(b) 일본은, 환경문제에 대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보전계획(EcoISD)’, ‘교토(京都)계획’ 등에 근거로 하고, 또 재해문제에 대하여 ‘방재협력계획’을 바탕으로 ODA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나) 환경문제에 대한 노력에 관한 접근 및 구체적인 대응0

① 재생가능에너지, 에너지절약 등 온실효과가스의 억제·삭감(교토 메카니즘 활용을 위한 지원을 포함한다), 기후변동에 따른 악영향에 대한 적응(기상재해대책을 포함한다) 등의 ‘지구온난화대책’, ② 대기오염 대책, 수질오탁대책, 폐기물처리 등의 ‘환경오염대책’ 및 ③ 자연보호구의 보전관리, 삼림의 보전·관리, 사막화대책, 자연자원관리 등의 ‘자연환경보전’의 세 가지를 중점분야로서, 다음의 접근 및 구체적인 대응에 의해 협력을 추진한다.

(a)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에 관한 능력의 향상

각국의 실정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관계당국이나 연구기관 등의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에 관한 능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재육성지원을 추진함과 동시에, 정확한 환경감시, 정책입안, 제도구축, 기재정비 등에 대한 협력을 실시한다.

(b) 환경요소의 적극적인 대응

일본이 책정하는 개발계획이나 프로그램 등에 환경보전의 요소를 포함함과 동시에, 적절한 환경사회배려가 실시 또는 확인된 개발도상국의 사업에 대하여 협력을 행한다.

(c) 일본의 선도적인 호소

정책대화, 각종 포럼 등의 적절한 협력방법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환경의식의 향상을 도모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노력을 장려한다.

(d) 종합적·포괄적 시스템에 의한 협력

지역 차원이나 지구규모의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편성하여 종합적·포괄적인 시스템에 의한 협력을 실시한다.

(e) 일본이 가진 경험과 과학기술의 활용

일본이 환경문제를 극복해왔던 경험 및 노하우나 복잡화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과학기술을 활용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이러한 경험·노하우나, 관측, 데이터해석, 대책기술 등에 관한 과학기술은 지방자치체, 민간기업, 각종 연구기관, NGO 등 일본 정부기관 이외의 조직에도 폭넓게 축적되고 있으며, 지원에서는 이러한 것들과의 적극적인 제휴를 도모한다. 또, 전문적인 지견이나 실시체제를 가지는 국제기관 등과의 제휴도 도모한다.

(다) 재해에 대한 노력에 관한 접근 및 구체적인 대응

지진이나 해일 등에 의한 재해에 대하여 일본이 국제적으로 높은 비교우의를 가지는 자국의 경험이나 기술(관측 등에 관한 과학기술을 포함한다), 인재를 활용하여, 위의 (나)와 비슷한 접근으로 노력한다.

(4) 평화의 구축

(가) 평화구축의 견해

(a) 냉전 후의 국제사회에서는, 지역·국내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 일단 정전이 성립한 후, 분쟁이 재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분쟁은 난민·국내 피난민의 발생, 경제·사회기반의 파괴, 통치조직의 기능부전 등의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그 결과, 사람들의 생명이나 생활, 존엄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는 등, 그 국가 및 지역 전체의 개발도 방해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평화와 안정은 개발의 전제조건이다.

(b) 평화의 구축은 분쟁의 발생과 재발을 예방하고, 분쟁시와 그 직후에 사람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완화하고, 그리고 그 후 장기에 걸친 안정적인 발전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쟁예방이나 분쟁의 종결단계에서의 지원, 분쟁 후의 긴급인도원조, 그리고 중장기적인 부흥개발지원은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빠질 수 없다. 예를 들면, ODA에 의한 고용창출사업이나 병원, 학교의 복구사업을 통하여, 사람들은 생계를 세워 보건·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사람들은 '평화의 배당'을 실감하고, 사회의 평화와 안정으로 이어진다.

평화의 구축에 관한 지원에 있어서는 대립하는 그룹간의 대화 등, 평화를 위한 정치적 프로세스를 충분히 바탕으로 하여, 이를 촉진하기 위해 배려할 필요가 있다. 또, 정치, 사회, 역사, 문화 등 각국 또는 지역의 개별상황을 충분히 바탕으로 할 필요가 있다.

(c) 일본으로서는, 국제기관이나 다른 도너(donor), 더 나아가서는 국내의 민간부문이나 NGO와 협력하면서 적극적으로 공헌할 생각이다.

(나) 평화의 구축을 위한 접근 및 구체적인 노력

일본의 평화의 구축에 관한 지원에는, 현지의 치안상황이나 정부의 기능부전 등 다양한 어려운 장애가 있을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평화의 구축에 노력하는데 있어서는, 지원관계 요원의 안전에 최대한 배려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착실히 실시한다는 자세로 노력해야 한다.

(a) 분쟁전후의 단계에 따른 지원

분쟁의 예방·재발방지, 분쟁직후의 단계에서 부흥·재건단계, 그리고 중장기적인 개발 등의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원을 실시한다.

(i) 분쟁예방·재발방지를 위한 지원

분쟁의 우려가 있는 국가 및 분쟁 후, 여전히 사회가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 국가에서는 분쟁예방에 충분히 배려하여 개발 원조를 실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원조의 대상지역이나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는, 피원조국에서의 분쟁요인을 역사나 문화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비익대상이 편중되는 등 분쟁을 조장하지 않도록 배려한다. 또, 예를 들면, 환경보전이나 인프라 정비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 지역협력 프로젝트를 실시함으로써, 대립하는 그룹간의 대화와 협력의 촉진을 도모한다. 또, 분쟁예방의 관점에서, 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은 중요하고, 수출입관리의 강화, 부정합 무기의 거래방지, 법제도정비 등에 관한 개발도상국의 능력강화를 지원한다.

(ii) 분쟁 후 즉시 필요하게 되는 긴급인도지원

분쟁직후, 난민이나 국내피난민을 비롯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명,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저한으로 필요한 ‘의식주’에 관계되는 긴급인도지원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난민·피난민의 귀환이나 주거, 식료, 물, 위생, 보건, 교육 등에 관한 긴급인도지원을 실시한다.

(iii) 분쟁 후의 부흥지원

부흥지원에서는, 인재육성을 지원하면서, 분쟁에 의해 파괴되었던 병원, 학교, 도로, 공공교통, 상하수도, 에너지 관련시설 등의 사회 자본을 복구하여, 경제사회활동을 궤도에 올리기 위한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일본은 사회자본의 복구를 지원함과 동시에, 정부의 통치기능의 회복을 위한 선거지원, 법제도정비에 관한 지원, 민주화 촉진을 위한 미디어 지원 등을 실시한다.

(iv) 중장기적인 개발지원

중장기적인 개발지원에서는, 개발을 궤도에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빈곤삭감이나 지속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폭넓은 지원을 실시한다.

(b) 일관성있는 지원

평화 구축의 실시에 있어서는, 분쟁전후의 단계에 따라 필요한 대응을 이음매 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실시하는 것이 불가결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분쟁직후의 단계에서 중장기적인 지원에 이르는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피원조국가에서 정부 및 원조실시기관 등의 관계자와의 사이에서 충분한 의사소통을 도모하며, 구체적인 니즈의 발굴이나 안건의 형성에 임하면서, 일본의 ODA의 견해 등에 대하여 인식의 공유에 힘쓴다. 또, 부흥계획책정과 즉응적인 복구사업의 형성을 동시에 행하는 긴급 개발조사를 활용하면서, 필요한 타이밍에서 조사의 결과 얻을 수 있었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둔다. 그리고 긴급인도지원에서 그 후의 부흥개발 협력으로의 부드러운 이행을 확보하고, 양자 사이에서 발생하기 쉬운 공백(갭)을 온 힘을 다해 해소한다.

(c)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

분쟁은, 다수의 난민·국내피난민의 발생, 인프라의 파괴나 통치조직의 붕괴, 식량부족, 빈곤, 질환의 만연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러한 위기적인 상황 아래에서는 인간의 생명,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게 된다. 국제기관, 지역기관, 국내외의 NGO 등과 제휴하여 보다 효과적인 원조를 실시한다.

또, 일본이 향후 평화의 구축을 적극적·효과적으로 실시해 가기 위해서는, 평화의 구축 지원에 종사하는 인재의 육성이 불가결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JICA직원·전문가, 컨설턴트, NGO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연수를 실시한다. 또, 치안의 상황에 따른 협력형태를 유연하게 활용함과 동시에, 파견된 사람들에 대하여 치안대책 연수를 실시한다. 필요한 때에 신속한 요원 파견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의 정비를 강화한 대사관·JICA의 체제를 정비한다.

(d) 정부에 대한 지원과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의 편성

분쟁 후의 상황에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자주 기능부전에 빠진다. 정부의 기능부전을 긴급하게 보충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일반시민 차원의 지원을 통하여 보건의료, 교육, 음료수, 식료 등의 기초사회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고, 지역 커뮤니티의 재생에 힘쓴다. 동시에,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인재육성과 제도정비를 지원함으로써 정부의 기능회복에 노력하고, 조속히 국가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힘쓴다.

(e) 국내의 안정과 치안의 확보를 위한 지원

분쟁이 종료해도 정부의 치안을 유지하는 능력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고, 이를 위해서 사람들의 안전이 위협당하여 개발활동이 방해받거나, 더 나아가서는 분쟁재발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인도·부흥지원과 평행하여, 치안강화·분쟁재발예방을 위해, ODA 대강과의

정합성에 유의하면서, 경찰지원, 고용창출을 통한 제대병사의 사회복귀, 지뢰나 소형 무기를 포함한 무기의 회수 및 폐기, 사법제도의 개혁 등을 지원한다.

(f)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건강 등을 해친 사람이나 여성, 아동 등 분쟁에 의해 특히 심각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나 분쟁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신속하게 보호한다. 지뢰피해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능력강화에 특단의 배려를 도모한다.

(g) 주변 국가를 시야에 넣은 지원

분쟁국가에 인접하는 국가 중에는, 난민의 유입, 무역이나 투자에 대한 악영향 등 분쟁에 기인하는 문제에 직면하여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또, 이러한 주변국은 분쟁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정치적인 발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개로 분쟁해결에 공헌하는 것이 가능하는 등, 무역이나 사람의 교류를 통해서도 지역의 안정·분쟁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케이스도 적지 않다. 한편, 주변국이 분쟁 당사국내의 특정세력을 지원하여, 세력간의 대립관계에 주변국간의 역학관계가 반영된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분쟁의 해결이나 예방, 지역의 안정도 염두에 두면서 주변국의 지원을 검토한다.

4. 효율적·효과적인 원조 실시를 위한 방책에 대하여

(1) 원조정책의 입안 및 실시체제 강화의 견해

효율적·효과적인 원조실시를 위해서는, 일본의 원조정책의 입안 및 실시의 체제를 강화하고, 정책입안에서 실시까지 일관성을 가지고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은 주요한 피원조국에 대하여, 피원조국가

의 개발계획이나 국제적인 개발목표와도 정합성을 확보하면서, 국가별 원조계획 및 중점과제별·분야별의 원조방침을 책정해왔다. 향후, 일본은 국제기관이나 다른 도너 등과도 제휴를 강화하면서, 이러한 정책입안능력을 한층 더 강화함과 동시에, 정책을 구체적인 안건의 형성·선정·실시에 이어가기 위한 체제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서는, 피원조국과 일본의 양국간 관계, 피원조국의 정치·경제·사회정세를 바탕으로 한 개발 니즈나 원조의 실태를 가장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재외공관이나 원조실시기관 현지 사무소 등, 현지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중기정책에서는 현지 기능강화에 대하여 구체적인 노력 및 체제정비를 거론한다.

(2) 현지 기능강화의 구체적인 노력

일본은,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JICA, JBIC 등, 원조실시기관의 현지 사무소를 주요한 멤버로 구성되는 현지 ODA 데스크포스(이하, 현지 TF)를 중심으로 한 현지의 기능강화에 힘쓰고 있지만, 이를 더욱 추진하기 위하여, 현지 TF 및 도쿄(東京)에서는 다음의 구체적인 노력을 강화한다. 또, 이때 원조정책의 결정과정·실시에서 현지 TF가 주도적인 역할을 완수하도록, 현지 TF는 다음의 구체적인 노력에서 적극적인 참가·제언을 하고, 도쿄는 이에 관한 현지 TF의 제언을 존중한다.

또, 현지 TF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피원조국에서도, 재외공관이 IT 등을 활용하여 원조실시기관의 겸할 사무소 등의 협력을 얻으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비슷한 노력을 실시하고, 도쿄도 이를 존중한다.

(가) 개발니즈 등의 조사·분석

현지 TF는, 피원조국가의 정치·경제·사회정세를 바탕으로 한 개발 니즈나 피원조국 자신의 개발 노력에 대한 조사·분석기능을 강화한다. 이때, 현지 관계자를 통하여, 현지의 경제사회정세 등을 충분히

파악한다. 또, 현지 TF는 필요에 따라 외부인재를 활용함과 동시에, 현지 원조 커뮤니티(주요 도너 여러 국가·국제기관, NGO, 학술기관 등을 포함한다)와의 정보교환 등도 실시한다.

도쿄는, 정책지원형의 개발조사나 정책 어드바이저의 파견 등을 보다 기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통하여, 이를 지원한다.

(나) 원조정책의 입안·검토

(a) 국가별 원조계획의 책정에 대한 참가

국가별 원조계획은, 위의 (2) (가)의 피원조국가가 안고 있는 개발니즈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외교적 시점도 시야에 넣으며 향후 5년간 정도의 일본 원조의 방향성이나 중점분야·항목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계획의 책정이나 개정에 있어, 현지 TF는 원조계획이 피원조국가의 개발계획이나 개발목표,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개발목표와 정합적인 내용이 되도록, 현지 원조 커뮤니티(주요 도너 여러 국가·국제기관, NGO, 학술기관 등을 포함한다)와의 제휴의 바람직한 모습도 시야에 넣으면서 현지 특유의 지건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참가한다.

(b) 중점과제별·분야별 원조방침의 책정에 대한 참가

현지 TF는, 위의 (2) (나) (a)의 국가별원조계획 및 다음의 (2) (나) (c)의 정책협의를 통하여 명확히 된 중점 분야·항목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중점과제별, 분야별의 원조방침책정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제언을 하고, 이에 따라 개발니즈를 제대로 반영한 안건의 형성·실시로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쿄는 현지 TF의 제언을 존중한다.

(c) 정책협의를 실시

현지 TF는, 국가별 원조계획 및 중점과제별·분야별 원조방침에서 제시된 중기적인 노력의 방침이 실제의 안건형성·요청·실시에 반영

되도록, 중기적 시점에서 살펴본 중점분야나 정책·제도상의 과제에 대하여 피원조국가와 인식을 공유하고, 또 의견조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도쿄로부터 참가자도 참가하게 하여, 정책협의를 실시한다.

또, 국가별 원조계획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ODA 대강 및 중기정책을 바탕으로, 정책협의를 통하여 현지 TF가 주도적으로 일본 원조의 방향성과 중점분야·항목을 명확하게 한다.

(다) 원조대상후보안건의 형성·선정

(a) 현지 TF의 주도적인 역할

현지 TF는, 원조안건의 형성·선정을 위한 사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완수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지 TF는, 피원조국가의 요청(요망조사결과)을 도쿄에 보고할 때에, 원조후보안건의 우선도에 대하여 도쿄에 제언한다. 도쿄는, 안건을 선정할 때에 이러한 현지 TF의 제언을 존중한다.

(b) 원조방법의 제휴와 재검토에 대한 제언

일본의 원조가 전체적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각 원조방법의 유기적인 제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현지 TF는 특히 무상자금협력, 엔화 차관, 기술협력 각각의 원조방법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면서, 이러한 세 가지 방법이 상당 정도 실시되고 있는 피원조국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휴모델 안건의 형성에 힘쓴다. 또, 현지 TF는 국제기관이나 다른 도너와의 원조협조 등의 국제적인 동향을 바탕으로 하면서, 해당국가에서의 원조방법 재검토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언을 한다. 도쿄는 현지 TF로부터의 이러한 제언을 바탕으로, 원조방법의 제휴와 재검토에 대하여 검토한다.

(라) 현지원조 커뮤니티와의 제휴강화

개발원조를 둘러싼 국제적인 노력으로서, 원조 커뮤니티에서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를 비롯한 공통된 개발목표나 개발전략의 설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동향을 바탕으로, 현지 TF는, 일본원조의 효과를 향상시키는 관점에서, 국제기관이나 다른 도너를 비롯한 현지 원조 커뮤니티와 긴밀한 제휴를 도모하면서, 일본의 원조정책에 따른 형태로 적극적으로 원조협조에 참가한다. 이러한 노력은 현지에서 일본의 존재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일본의 원조의 중점분야에서 원조협조가 추진되고 있는 경우에는,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완수하는 것도 포함하여, 피원조국가 정부의 자조노력을 촉구하면서 해당국가의 개발정책의 책정·실시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마) 피원조국가에서의 일본 관계자와의 제휴강화

일본이 가지는 뛰어난 기술, 지견, 인재,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현지 TF는 피원조국에서 활동하는 일본의 NGO나 학술기관, 경제단체(현지에 진출하고 있는 민간기업을 포함한다) 등과의 제휴강화를 위해, 이러한 관계자와의 의견교환을 활발히 실시한다.

(바) 일본 ODA 리뷰

현지 TF는, 피원조국가에 대한 정책 차원 및 프로그램 차원에서의 ODA 평가의 결과 등도 참고로 하면서, 피원조국가에 대한 지금까지의 일본 원조가 소기의 목적·의의를 달성했는지, 목표로 해야 하는 방향성은 적절했는지, 중점분야·중점항목의 설정방법이 유효했는지, 원조실시상의 유의점에는 유효하게 대처했는지 등에 대하여 리뷰를 실시한다.

또, 현지 TF는 이러한 리뷰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별 원조계획이나 중점과제별·분야별 원조방침의 책정·개정 등에 대한 참가시, 적절한 개선을 도모한다.

(사) 정보공개와 홍보

ODA에 관한 투명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지 TF는 도쿄로부터의 지원도 얻으며, 테스크포스의 활동, 국가별 원조계획이나 정책협약 등의 내용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에 힘쓴다.

(3) 현지 기능강화를 위한 체제정비

위의 (2)에 열거했던 현지의 기능강화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현지 TF 뿐만 아니라, 도쿄도 포함한 체제의 강화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다음을 비롯한 구체적인 시책을 가능한 범위에서 실시한다.

(가) 적절한 인원배치와 인재육성(외부인재의 적극적인 활용을 포함한다)

현지 TF 및 도쿄의 양쪽에서, 원조업무에 관한 경험이 높은 실무능력을 겸비한 인재 및 현지의 정치·경제·사회 정세에 정통한 인재 등, 정부내 및 외부로부터의 유능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적절한 인원배치를 실시한다. 또, 원조에서는 긴급히 대응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동적이고 유연한 인원배치도 함께 실시한다.

현지 기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원조협조 등의 국제적인 조류와 일본 원조의 정책이나 실시의 전반에 대하여 넓은 경험과 지견을 가진 인원의 확보는 필수이기 때문에, 현지 TF 및 도쿄 양쪽에서 IT 등도 활용하여 연수를 충실히 시키는 것도 포함하여, 원조에 종사하는 인재육성을 통하여 일본 원조의 저변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 IT 등을 활용한 정보·지건의 공유 촉진

도쿄는, 현지 TF가 특히 (2) (나) (b)의 중점과제별·분야별 원조방침 등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관련 정보나 지견을, IT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현지 TF에게 소개하고 공유한다.

부 록

‘인간의 안정보장’의 시점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되는 안전 사례 (2004년 현재 실시중인 것)

● 세네갈에서의 주민참가형의 급수정비

세네갈의 촌락지역에는, 우물 등의 적절한 급수시설이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여성이나 어린이들은 일과로 멀리까지 물을 길으러 가야 하고, 또 안전한 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위생상태가 나쁜 지역이 많이 존재한다.

일본은 물의 ‘결핍’이라는 위협에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상자금협력으로 급수시설의 정비를 실시했다. 급수시설의 정비에 더불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보다 좋은 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술협력에 의해 주민의 능력강화로 이어지는 지원을 실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은 촌락 차원에서 급수시설의 운영·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조직을 형성하여 보수·점검방법이나, 요금징수방법을 연수하거나, 여성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생활개선을 위하여 물의 위생과 관련하여 보건위생교육을 실시했다. 또, 이와 관련하여, 급수시설관리의 잉여금으로 주민 자신들이 양계사업을 시작하는 등 세대수입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사람들의 능력강화,

촌락의 개발 그 자체를 지원하는 것이고, 또, 여성이나 어린이 등의 취약층에 대한 지원, 보건·위생·교육분야 등의 분야 횡단적인 지원이나, 타국의 원조기관이 보급에 힘쓰고 있는 주민조직모델을 활용하는 것에 의한 다른 기관과의 제휴 등을 편성했다.

이러한 일본의 원조로, 촌락지역의 많은 여성이나 어린이들이 물을 길는 노동에서 해방되고, 주민은 보다 위생적인 생활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 캄보디아에서의 HIV/에이즈로부터의 보호

캄보디아에서는 HIV/에이즈의 감염률이 높고, 경제활동의 활성화에 따른 사람의 이동·집중에 따라, HIV/에이즈 감염이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어, 그 결과 주민이나 근로자가 HIV/에이즈의 위협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유상 자금협력으로 지원했던 캄보디아의 시아누크빌(Sihanoukville)항 개수사업에서 사람들을 HIV/에이즈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자신들을 보호할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사업에 포함하는 등, ‘인간의 안전보장’의 시점을 반영시키도록 연구했다.

구체적으로는 HIV/에이즈라는 위협에서 주변 주민을 포함한 사업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자에게 검진을 의무화하고, 또 콘돔 배포를 교육활동과 함께 편성하여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 조치를 취하거나, 근로자 중에서 리더를 육성하여 동료들끼리의 회합의 장에서 보건위생에 대한 지식을 심화시키는 활동을 실시하는 등, HIV/에이즈에 대한 문제제기와 홍보활동을 넓게 실시했다. 또, 이러한 활동이 관계자에게 확실히 침투되도록 현지의 NGO와 제휴하여 실시했다.

이러한 시도의 결과, HIV/에이즈 및 성감염증에 관한 감염경로나 예방수단 등이 인식되어, 근로자 및 주민들 스스로가 HIV/에이즈 감염의 위협에서 몸을 지킬 능력이 강화되었다.

부록(5)

독립행정법인국제협력기구법

2002년 12월 6일 법률 제136호

최종개정: 2007년 6월 13일 법률 제85호

제 1 장 총칙 (제1조~제6조)

제 2 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제12조)

제 3 장 업무 (제13조~제16조)

제 4 장 재무 및 회계 (제17조~제37조)

제 5 장 잡칙 (제38조~제44조)

제 6 장 벌칙 (제45조~제48조)

부칙

제 1 장 총 칙

(목적)

제 1 조 이 법률은,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의 명칭, 목적,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

제 2 조 이 법률 및 독립행정법인통칙법 (1999년 법률 제103호. 이하 ‘통칙법’이라고 한다.)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된 통칙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독립행정법인의 명칭은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

구라고 한다.

(구조의 목적)

제 3 조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 (이하 ‘기구’라고 한다.)는 개발도상국에 있는 해외의 지역 (이하, ‘개발도상지역’이라고 한다.)에 대한 기술협력의 실시, 유상 및 무상의 자금공여에 의한 협력의 실시 및 개발도상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 등의 협력활동의 촉진에 필요한 업무를 실시하고, 중남미지역 등에 대한 이주자의 정착에 필요한 업무를 실시하고, 개발도상지역 등에서의 대규모 재해에 대한 긴급원조의 실시에 필요한 업무를 실시하여, 이러한 지역의 경제 및 사회의 개발 혹은 부흥 또는 경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통하여, 국제협력의 촉진 및 일본 및 국제경제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무소)

제 4 조 기구는 주요 사무소를 도쿄도에 둔다.

(자본금)

제 5 조 기구의 자본금은 부칙 제2조 제6항 및 독립행정법인국제협력기구법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2006년 법률 제100호. 이하 ‘개정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출자가 있었던 것이라고 간주되는 합계금액으로 한다.

2 정부는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범위 내에서 기구에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3 기구는 앞의 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자가 있었던 때에는 그 출자액에 의해 자본금을 증가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자본금은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리의 구분에 따라, 동항

각 호의 업무에 관계되는 감정(勘定)마다 정리해야 한다.

(명칭의 사용제한)

제 6 조 기구가 아닌 것은 국제협력기구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임원 및 직원

(임원)

제 7 조 기구에 임원으로서 그 장인 이사장 및 감사 3명을 둔다.

2 기구에 임원으로서 부이사장 1명 및 이사 8명 이내를 둘 수 있다.

(부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및 권한 등)

제 8 조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를 대표하고, 이 사장을 보좌하여 기구의 업무를 관리한다.

2 이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 (부이사장이 마련되어 있을 때에는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보좌하여 기구의 업무를 관리 한다.

3 통칙법 제19조 제2항의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임원은 부이사장으로 한다. 다만, 부이사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이사가 마련되어 있을 때에는 이사, 부이사장 및 이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감사로 한다.

4 앞의 항 단서의 경우에, 통칙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표하거나 그 직무를 행하는 감사는, 그 동안 감사의 직무를 행해서는 안 된다.

(임원의 임기)

제 9 조 이사장 및 부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원의 결격조항의 특례)

제10조 통칙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一 물품의 제조 혹은 판매 혹은 공사의 도급을 업으로 하는 자로 기구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또는 이러한 자가 법인일 때에는 그 임원 (어떠한 명칭에 따르는가를 불문하고, 이와 동등 이상의 직권 또는 지배력을 가지는 자를 포함한다.)
 - 二 앞의 호에서 열거하는 사업자 단체의 임원 (어떠한 명칭에 따르는가를 불문하고, 이와 동등 이상의 직권 또는 지배력을 가지는 자를 포함한다.)
- 2 기구의 임원의 해임에 관한 통칙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 적용에 대해서는, 동항 중 ‘앞의 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앞의 조 및 독립행정법인국제협력기구법 제10조 제1항’으로 한다.

(임원 및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제11조 기구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상 알 수 있었던 비밀을 누설하거나 또는 도용해서는 안 된다. 그 직을 물러난 후에도 마찬가지이다.

(임원 및 직원의 지위)

제12조 기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1907년 법률 제45호) 기타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간주한다.

제 3 장 업 무

(업무의 범위)

제13조 기구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실시한다.

- 一 조약, 기타 국제약속에 근거로 하는 기술협력의 실시에 필요한 다음의 업무를 실시할 것.
 - 가. 개발도상지역으로부터의 기술연수원에게 기술의 연수를 실시하고, 또 이러한 기술연수원을 위한 연수시설 및 숙박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것.
 - 나. 개발도상지역에 대한 기술협력을 위한 인원을 파견할 것.
 - 다. 나.에서 열거하는 업무에 관계되는 기술협력, 기타 개발도상지역에 대한 기술협력을 위한 기재를 공여할 것.
 - 라. 개발도상지역에 설치되는 기술협력센터에 필요한 인원의 파견, 기계설비의 조달 등 기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실시할 것.
 - 마. 개발도상지역에서의 공공적인 개발계획에 관하여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
- 二 유상의 자금공여에 의한 협력 (자금의 공여조건이 개발도상지역에 있어 무거운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금리, 상환기간 등에 대하여 완화된 조건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유상 자금협력’이라고 한다.)에 관한 다음의 업무를 실시할 것.
 - 가. 조약, 기타 국제약속에 근거로 하는 유상 자금협력으로서, 개발도상지역의 정부, 정부기관 혹은 지방공공단체 (이하 ‘정부등’이라고 한다.) 또는 국제기관, 기타 외부대신이 지정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행하는 개발도상지역의 경제 및 사회의 개발에 기여하고 동시에 일본과의 경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러한 사업의 준비를 위한 조사 또는 시험적인 실시를 포함한다. 이하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 또는 해당 개발도상지역의 경제의 안정에 관한 계획의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할 것.
 - 나. 일본 또는 개발도상지역의 법인, 기타 단체, 기타 외부대신이 지정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행하는 개발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고 또는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해 특히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자를 할 것.

三 개발도상지역의 정부 등 혹은 국제기관 또는 법인, 기타 단체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무상의 자금공여에 의한 협력 (정부의 결정에 근거로 하여, 자금을 증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협력을 말하고, 이하 ‘무상 자금협력’이라고 한다.)에 관한 다음의 업무를 실시할 것.

가. 조약, 기타 국제약속에 근거로 하는 무상 자금협력 (기동적인 실시의 확보, 기타 외교정책의 수행상의 필요에 근거로 하여 의무대신이 그 실시를 위해 필요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실시하는 것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실시를 위해서 필요한 업무를 행할 것.

나. 가.에서 규정하는 무상 자금협력 이외의 무상 자금협력 가운데, 그 적정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구의 관여가 필요한 것으로서 의무대신이 지정하는 것에 관계되는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조사, 알선, 연락, 기타 필요한 업무를 행함과 동시에, 해당 계약의 이행상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것.

四 국민, 일반 사단법인, 일반 재단법인,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1998년 법률 제7호) 제2조 제2항의 특정비영리활동법인, 기타 민간의 단체 등의 봉사활동 또는 지방공공단체 혹은 대학의 활동으로, 개발도상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개발도상지역의 경제 및 사회의 개발 또는 부흥에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이하 이 호 및 제42조 제2항 제3호에서 ‘국민 등의 협력활동’이라고 한다.)을 촉진하고 조장하기 때문에, 다음의 업무를 실시할 것.

가. 개발도상지역의 주민과 하나가 되어 실시하는 국민 등의 협력활동을 지망하는 개인의 모집, 선고 및 훈련을 실시하고, 그 훈련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것.

나. 조약, 기타 국제약속에 근거로 하여, 가.의 신고 및 훈련을 받은 자를 개발도상지역에 파견할 것.

다. 개발도상지역에 대한 기술협력을 위해, 국민 등의 협력활동을 지망하는 자로부터의 제안에 관계되는 다음의 사업으로 외무대신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해당 국민 등의 협력활동을 지망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것.

(1) 해당 개발도상지역으로부터의 기술연수원에 대한 기술의 연수

(2) 해당 개발도상지역에 대한 기술협력을 위한 인원의 파견

(3) 해당 개발도상지역에 대한 기술협력을 위한 기재의 공여

라. 국민 등의 협력활동에 관하여, 지식을 보급하고 국민의 이해를 증진할 것.

五 이주자에 대한 원조 및 지도 등을 국내외를 통하여 일관하여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실시할 것.

가. 해외이주에 관하여 조사 및 지식의 보급을 실시할 것.

나. 해외에서 이주자의 사업, 직업, 기타 이주자의 생활일반에 대하여 상담에 응하고 지도를 할 것.

다. 해외에서 이주자의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복지시설의 정비 기타 원조를 실시할 것.

六 개발도상지역 등에서의 대규모의 재해에 대한 국제긴급원조활동(국제긴급원조대의파견에관한법률 (1987년 법률 제93호) 제2조에서 규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기타 긴급원조를 위한 기재, 기타 물자를 비축하거나 공여할 것.

七 제1호, 제4호 다 및 앞의 호 및 다음 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원의 양성 및 확보를 실시할 것.

八 앞의 각 호에 열거하는 업무에 관련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행할 것.

九 앞의 각 호에 열거하는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를 행할 것.

2 기구는 앞의 항의 업무 외, 다음의 업무를 실시할 것.

一 국제긴급원조의파견에관한법률에 근거로 하여, 국제긴급원조대를 파견할 것.

二 국제긴급원조의파견에관한법률에 근거로 하여, 국제긴급원조활동에 필요한 기재, 기타의 물자의 조달, 운송의 준비 등을 행할 것.

3 기구는 앞의 2항의 업무 외, 외무대신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국 또는 외국에서 정부 등 혹은 국제기관 또는 법인, 기타 단체의 위탁을 받아, 앞의 2항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발도상지역의 경제 및 사회의 개발 혹은 부흥 또는 경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제14조 기구는 앞의 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일반 금융기관이 행하는 자금의 대부 또는 출자를 보완하거나 또는 장려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이러한 것들과 경쟁해서는 안 된다.

2 기구는 일반 금융기관이 통상적인 조건으로 자금의 대부 또는 출자를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앞의 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3 기구는 개발 사업에 관계되는 사업계획 또는 앞의 조 제1항 제2호가.의 경제의 안정에 관한 계획의 내용이 적절하고, 달성의 전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호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위탁 및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은행 등의 임원 및 직원의 지위)

제15조 기구는 은행법 (1981년 법률 제59호)에서 규정하는 은행, 장기 신용은행법 (1952년 법률 제187호)에서 규정하는 장기신용은행 기타 정령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 (이하 이 조에서 ‘은행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유상 자금협력에 관한 업무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업무 및 동항 제8호 및 제9호 및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업무 가운데, 유상 자금협력에 관계되는 것을 말하고, 이하 ‘유상 자금협력업무’라고 한다.)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2 앞의 항의 규정에 따라 기구의 업무 위탁을 받은 은행 등 (이하 ‘수탁자’라고 한다.)의 임원 및 직원으로 위탁을 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기타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간주한다.

(중기계획의 기재사항)

제16조 기구의 통칙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기계획에 관한 동조 제2항의 규정 적용에 대해서는, 동항 중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 (유상 자금협력업무에 대해서는 제3호 및 제6호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이라고 한다.

제 4 장 재무 및 회계

(구분경리)

제17조 기구는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마다 경리를 구분하여 각각 감정을 마련하여 정리해야 한다.

- 一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업무 (유상 자금협력업무를 제외한다.)
- 二 유상 자금협력업무

2 다음의 각 호에 열거하는 금액에 관계되는 경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하는 감정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一 부칙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기구에 출자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금액 앞의 항 제1호에서 열거하는 업무에 관계되는 감정 (이하 ‘일반감정’이라고 한다.)

二 개정법 부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구에 출자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금액 유상 자금협력 업무에 관계되는 감정 (이하 ‘유상 자금협력감정’이라고 한다.)

(유상 자금협력 업무에 관계되는 예산)

제18조 기구는 매 사업년도, 유상 자금협력 업무에 관계되는 수입 및 지출의 예산을 작성하고, 주무대신을 경유하여, 이를 재무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앞의 항의 수입은, 대부금의 이자, 출자에 대한 배당금, 기타 자산의 운용에 관계되는 수입 및 부속 잡수입으로 하고, 동항의 지출은 사무거래비, 업무위탁비, 통칙법 제45조 제1항 및 이 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이자, 동항 또는 동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기구채권의 이자 및 부속제비로 한다.

3 재무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상 자금협력 업무에 관계되는 예산 제출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정을 실시하고, 각의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4 내각은 유상 자금협력 업무에 관계되는 예산에 대하여, 앞의 항의 규정에 의한 각의의 결정이 있었던 때에는 그 예산을 국가의 예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5 유상 자금협력 업무에 관계되는 예산의 형식 및 내용에 대해서는 재무대신이 주무대신과 협의하여 정한다.

6 유상 자금협력 업무에 관계되는 예산의 작성 및 제출의 절차에 대해서는 재무대신이 정한다.

제19조 앞의 조의 유상 자금협력 업무에 관한 예산은 다음에서 열거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一 해당 사업년도의 유상 자금협력 업무에 관계되는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서류

- 二 전전년도의 유상 자금협력 업무에 관계되는 손익계산서, 임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 三 전년도 및 해당 사업년도의 유상 자금협력 업무에 관계되는 예정 손익계산서 및 예정 임차대조표
- 四 기타 해당 예산의 참고가 되는 서류

(유상 자금협력 업무에 관계되는 예비비용)

제20조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에 의한 지출의 예산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유상 자금협력 업무에 관계되는 예산에 예비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

(유상 자금협력 업무에 관계되는 예산의 결의)

제21조 유상 자금협력 업무에 관계되는 예산의 국회 결의에 관해서는 국가의 예산 결의의 사례에 따른다.

(유상 자금협력 업무에 관계되는 예산의 통지)

제22조 내각은 유상 자금협력 업무에 관계되는 예산이 국회의 결의를 거쳤을 때에는, 주무대신을 경유하여 즉시 그 취지를 기구에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2 기구는 앞의 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3 재무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었던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회계감사원에 통지해야 한다.

(유상 자금협력 업무에 관계되는 보정예산)

제23조 기구는 유상 자금협력 업무에 관계되는 예산의 작성 등에 발생한 사유에 근거로 하여 해당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

우에는, 유상 자금협력 업무에 관계되는 보정예산을 작성하고, 이에 해당 보정예산의 작성으로 변경된 제19조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열거하는 서류 (전년도의 유상 자금협력 업무에 관계되는 예정 수익계산서 및 예정 임차대조표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주무대신을 경유하여 재무대신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의 추가에 관계되는 보정예산은 해당 예산의 작성 후에 발생했던 사유에 근거로 하여 특히 긴급하게 되었던 경우에 한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제18조 제2항에서 제6항까지 및 앞의 제2조의 규정은, 앞의 항의 규정에 의한 유상 자금협력 업무에 관계되는 보정예산에 대하여 준용한다.

(유상 자금협력 업무에 관계되는 잠정예산)

제24조 기구는 필요에 따라 한 사업년도 가운데 일정기간에 대한 유상 자금협력 업무에 관계되는 잠정예산을 작성하고, 이에 유상 자금협력 업무에 관계되는 해당 기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기타 해당 잠정예산의 참고가 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대신을 경유하여 재무대신에게 제출할 수 있다.

2 제18조 제2항에서 제6항까지,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앞의 항의 규정에 의한 유상 자금협력 업무에 관계되는 잠정예산에 대하여 준용한다.

3 유상 자금협력 업무에 관계되는 잠정예산은, 그 사업년도의 유상 자금협력 업무에 관계되는 예산이 성립했을 때에는 실효한 것으로 하고, 유상 자금협력 업무에 관계되는 잠정예산에 근거로 하는 지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그 사업년도의 유상 자금협력 업무에 관계되는 예산에 근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유상 자금협력 업무에 관계되는 예산의 집행)

제25조 기구는 유상 자금협력 업무에 관계되는 지출의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예산에서 규정하는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26조 기구는 유상 자금협력 업무에 관계되는 예산에서 지정한 경비의 금액에 대해서는 재무대신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유용할 수 없다.

2 기구는 앞의 항의 규정에 의해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주무대신을 경유해야 한다.

3 재무대신은 앞의 항의 승인을 했을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회계감사원에 통지해야 한다.

4 재무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주무대신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7조 기구는 유상 자금협력 업무에 관계되는 예산비용을 사용했을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주무대신을 경유하여 재무대신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재무대신은 앞의 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회계감사원에 통지해야 한다.

(유상 자금협력 업무에 관계되는 재무제표 등)

제28조 기구는 유상 자금협력 업무에 관계되는 재산목록 및 임차대조표(이러한 서류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기록했던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기타 타인의 지각으로는 인지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록으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제공된 것으로서 재무대신이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0조 제1항에서 동일.)을 포함한다.)를 4월부터 9월까지 및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의 반년 마다, 유상 자금협력 업무에 관계되는

수익계산서(해당 손익계산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기록했던 전자적 기록을 포함한다.)를 이러한 반년 및 사업년도마다 작성하여, 이러한 서류(이하, '재무제표'라고 한다.)에 관한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해당 반년 경과 후 2개월 이내 또는 해당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재무대신을 경유하여 재무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기구는 앞의 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의 제출을 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무제표를 관보에 공고하고, 동시에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및 동항의 감사의 의견을 기재했던 서면을 각 사무소에 비치하여, 재무성령에서 규정하는 기간, 일반이 열람토록 한다.

3 기구는 유상 자금협력 업무에 관계되는 결산을 완결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업년도의 유상 자금협력 업무에 관계되는 업무보고서를, 각 사무소에 비치하고 재무성령에서 규정하는 기간, 일반이 열람토록 한다.

4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속명세서 및 앞의 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보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재무성령으로 규정한다.

5 유상 자금협력 업무에 관계되는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통칙법 제 38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유상 자금협력 업무에 관계되는 결산)

제29조 기구는 매사업년도의 유상 자금협력 업무에 관계되는 결산을 다음 사업년도의 5월 31일까지 완결해야 한다.

제30조 기구는 유상 자금협력 업무에 관계되는 결산완결 후, 유상 자금협력 업무에 관계되는 예산의 구분에 따라, 매사업년도의 유상 자금협력 업무에 관계되는 결산보고서 (해당 결산보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기록했던 전자적 기록을 포함한다.)를 작성하고, 해당 결산보고서에 관한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고 동시에 제28조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재무대신에게 제출했던 유상 자금협력 업무에 관계되는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재무대신을 경유하여 재무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재무대신은 앞의 항의 규정에 따라 유상 자금협력 업무에 관계되는 결산보고서 및 재무제표의 제출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내각에 송부해야 한다.

3 내각은 앞의 항의 규정에 따라 유상 자금협력 업무에 관계되는 결산보고서 및 재무제표의 송부를 받았던 때에는, 다음 사업년도의 11월 30일까지 이를 회계감사원에 송부하여 그 감사를 거쳐, 국가의 세입세 출의 결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4 기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상 자금협력 업무에 관계되는 결산보고서의 제출을 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동항의 결산보고서 및 감사의 의견을 기재했던 서면을 각 사무소에 비치하여,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기간, 일반이 열람토록 한다.

5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상 자금협력 업무에 관계되는 결산보고서의 형식 및 내용에 대해서는 재무대신이 정한다.

6 제28조 제5항의 규정은, 유상 자금협력 업무에 관계되는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익 및 손실의 처리 특례 등)

제31조 기구는 일반감정에 대하여, 통칙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중기목표의 기간 (이하 이 항에서 ‘중기목표의 기간’이라고 한다.)의 마지막의 사업년도에 관계되는 통칙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리를 한 후,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이 있을 때에는, 그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 가운데 외무대신의 승인을 받은 금액을, 해당 중기목표 기간의 다음의 중기목표의 기간에 관계되는 통칙법 제30조 제1항의 인가를 받은 중기계획 (동

- 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의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변경 후의 것)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다음의 중기목표의 기간에서의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열거하는 업무의 재원에 충당할 수 있다.
- 2 외무대신은 앞의 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외무성의 독립행정법인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3 기구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적립금의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동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금액을 공제하여 여전히 잔여가 있을 때에는, 그 잔여 금액을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 4 앞의 3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일반감정에 관계되는 납부금의 납부절차 기타 적립금의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규정한다.
 - 5 기구는 유상 자금협력 감정에 대하여, 매사업년도, 그 손익계산에서 이익을 발생했을 때에는 전사업년도에서 이월한 손실을 보충하고, 여전히 잔여가 있을 때에는, 그 잔여 금액을 준비금으로서, 유상 자금협력 감정에 정리된 자본금의 액수와 동일한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적립해야 한다.
 - 6 기구는 유상 자금협력 감정에 대하여, 매사업년도, 그 손익계산에서 손실을 발생했을 때에는, 앞의 항의 규정에 따른 준비금을 감액하여 정리하고 여전히 부족할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은 이월결손금으로서 정리해야 한다.
 - 7 제5항의 준비금은, 유상 자금협력 감정에서 발생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8 기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 금액에서 동항의 규정에 따른 준비금으로서 적립된 액수를 공제했던 잔여 금액을, 다음 사업년도의 5월 31일까지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 9 정부는 앞의 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금의 일부를, 정령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사업년도 중에 개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10 앞의 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유상 자금협력 감정에 관계되는 납부금의 납부절차, 기타 납부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규정한다.

11 유상 자금협력 감정에 대해서는 통칙법 제44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유상 자금협력 감정에서의 장기차입금 및 국제협력기구채권)

제32조 기구는 유상 자금협력 업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장기차입금을 하거나, 또는 국제협력기구채권 (이하 ‘기구채권’이라고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2 앞의 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차입금 또는 기구채권의 발행에 의해 조달했던 자금은, 유상 자금협력 감정에 귀속되어야 한다.

3 기구는 매사업년도,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구채권의 발행에 관계되는 기본방침을 작성하여 주무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4 기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구채권을 발행했을 때에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취지를 주무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기구는 기구채권을 상실한 자에게 교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6 제1항 또는 앞의 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기구채권의 채권자는, 기구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앞서 자신의 채권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앞의 항의 선취특권의 순위는, 민법 (1896년 법률 제89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의 선취특권에 이은 것이다.

- 8 기구는 기구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 신탁업자 또는 금융상품거래업 (금융상품거래법 (1948년 법률 제25호) 제2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금융상품거래업을 말한다. 다음 항에서 동일.)을 행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9 회사법(2005년 법률 제86호) 제705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709조의 규정은, 앞의 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은행, 신탁업자 또는 금융상품거래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 10 앞의 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기구채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규정한다.

제33조 유상 자금협력 감정에서의 통칙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차입금의 현재 금액, 앞의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차입금의 현재 금액 및 동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하는 기구채권의 원본에 관계되는 채무의 현재 금액의 합계액은, 제5조에서 규정하는 자본금 가운데 유상 자금협력 감정에 구분되는 금액 및 제31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준비금 금액의 합계액의 3배에 상당하는 액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2 앞의 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기구채권에 대하여 발행이 끝난 것의 차환을 위해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일시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기구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정부보증)

제34조 정부는 법인에대한정부의재정원조의제한에관한법률(1946년 법률 제24호) 제3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제32조 제1항의 규정으로 발행하는 기구채권에 관계되는 채무 (국제부흥개발은행등으로부터의외자의수용에관한특별조치에관한법률 (1953년 법률 제51호. 이하 이 조에서 ‘외자수용법’이라고

한다.) 제2조의 규정으로 정부가 보증계약을 할 수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제3항에서 동일.)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할 수 있다.

2 앞의 항의 예산으로 규정하는 금액 가운데, 외국을 발행지로 하는 본국통화로 표시하는 기구채권에 관계되는 채무에 대한 금액은 외자수용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과 구별하여 정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해당 금액과 합산하여 정할 수 있다.

3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에, 기구가 제32조 제5항의 규정으로 발행하는 기구채권에 관계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할 수 있다.

(자금의 교부)

제35조 정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구에 대하여, 기구가 제13조 제1항 제3호 가.에서 규정하는 무상 자금협력에서의 증여(이하, 이 조에서 ‘증여’라고 한다.)에 충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해당 무상자금 협력의 계획마다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2 기구는 앞의 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를 받은 자금을, 증여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서 관리해야 한다.

3 기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의 교부를 받은 무상 자금협력의 계획 완료 후에 여전히 해당 자금이 잔여가 있을 때에는, 그 잔여 금액을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외무대신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잔여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계획이 완료한 날을 포함하는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의 증여에 충당할 수 있다.

(여유금의 운용 특례)

제36조 기구는 통칙법 제47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의 방법으로 유상 자금협력 감정에 속하는 업무상의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

- 一 재정용자자금으로의 예탁
- 二 일본은행으로의 예금
- 三 양도성 예금증서의 보유
- 四 기타 안전하고 효율적인 것으로서 주무대신이 지정하는 방법

(보조금등에관한예산집행의적정화에관한법률의 준용)

제37조 보조금등에관한예산집행의적정화에관한법률 (1955년 법률 제179호의 규정(별칙을 포함한다.))은, 제13조 제1항 제5호 다.의 규정에 따라 기구가 교부하는 조성금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법 (제2조 제7항을 제외한다.) 중 ‘각 관계부처’라고 되어 있는 것은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로, ‘각 관계부처 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의 이사장’으로, 동법 제2조 제1항 및 제4항, 제7조 제2항,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제24조와 제33조 중 ‘국가’라고 되어 있는 것은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로, ‘동법 제14조 중 ‘국가의 회계연도’라고 되어 있는 것은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의 사업연도’로 대체해야 한다.

제 5 장 잡 칙

(보고 및 검사)

제38조 주무대신은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가 위탁을 받은 업무의 범위 내에서, 해당 수탁자에 대하여 보고를 시키거나 또는 그 직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에 입회하여, 업무의 상황 혹은 장부, 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시킬 수 있다.

2 앞의 항의 규정에 따라 직원이 입회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신분 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해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회검사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해서 인정된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권한의 위임)

제39조 주무대신은 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통칙법 제64조 제1항 및 앞의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회검사 권한의 일부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유상 자금협력업무의 범위 내에 한정된다.

2 내각총리대신은, 앞의 항의 위임에 근거로 하여, 통칙법 제64조 제1항 또는 앞의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회검사를 했을 때에는 신속하게 그 결과에 대하여 주무대신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3 내각총리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권한 및 앞의 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금융청 장관에게 위임한다.

4 금융청 장관은 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앞의 항의 규정으로 위임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국 또는 재무지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의 외무대신 등의 요구)

제40조 외무대신은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의하거나 또는 외국정부 혹은 국제기관 (국제회의, 기타 국제협조의 시스템을 포함한다.)의 요청 등을 받아 외교정책의 수행상의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요청을 받아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구에 대하여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업무 또는 기구의 외국에 있는 사무소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주무대신은 유상 자금협력 업무에 관계되는 재무의 상황을 현저하게 악화시키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구에 대하여 제43조 제1항 제2호에서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3 기구는 외무대신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었을 때, 또는 주무대신으로부터 앞의 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

(연락 등)

제41조 기구는 제13조 제1항 제1호, 제4호 가. 및 나., 제5호, 제6호 및 동조 제2항의 업무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공단체와 밀접하게 연락하는 것으로 한다.

- 2 지방공공단체는 기구에 대하여 앞의 항에서 규정하는 업무의 운영에 대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협의)

제42조 외무대신은 다음의 경우에는 재무대신에게 협의해야 한다.

- 一 통칙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감사를 임명하고자 할 때.
 - 二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열거하는 업무에 관하여,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
 - 三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
- 2 외무대신은 다음의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무대신을 제외한다.)에게 협의해야 한다.
- 一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서 제7호까지에 열거하는 업무에 관하여, 통칙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중기목표를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 二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열거하는 업무에 관하여, 통칙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할 때.
 - 三 제13조 제1항 제4호 다.의 업무에 관하여, 기구가 국민 등의 협력활동을 지망하는 것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업무로서 적당한 것을 인정하고자 할 때.

3 외무대신은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무대신 및 경제산업대신에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경제산업대신에게 협의해야 한다.

一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대부 또는 출자를 받은 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

二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자 할 때.

三 통칙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할 때.

四 통칙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외무성령을 규정하고자 할 때.

五 통칙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중기목표를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六 통칙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할 때.

4 외무대신은 제13조 제1항 제2호 가.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의 각 호에서 열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 (임원 및 직원과 재무 및 회계, 기타 관리업무 (다음 조 제1항에서 ‘관리업무’라고 한다.)에 관계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一 통칙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기목표를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동조 제2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서 열거하는 사항.

二 통칙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할 때, 동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7호에서 열거하는 사항.

(주무대신 등)

제43조 이 법률 및 기구에 관계되는 통칙법에서의 주무대신은 다음과 같다.

一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다음 호에서 열거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외무대신.

- 二 관리업무 가운데 유상 자금협력업무에 관계되는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외무대신 및 재무대신
- 三 관리업무 이외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외무대신
- 2 기구에 관계되는 통칙법에서의 주무성은 외무성으로 한다.
- 3 기구에 관계되는 통칙법에서의 주무성령은, 외무대신이 내리는 명령으로 한다.

(국가공무원속사법의 적용제외)

제44조 국가공무원속사법 (1949년 법률 제117호)의 규정은, 기구의 임원 및 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 6 장 별 칙

제45조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또는 남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의 보고를 하고,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하고 방해하거나 혹은 기피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했던 수탁자의 임원 또는 직원은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기구의 임원 또는 직원에 관한 통칙법 제70조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20만엔’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30만엔’으로 한다.

제47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기구의 임원 또는 직원은 20만엔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 一 제13조에 규정하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했을 때.
- 二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외무대신 또는 재무대신의 승인을 받아

야 하는 경우에, 그 승인을 받지 않았을 때.

ㄷ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주무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인가를 받지 않았을 때.

ㄹ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주무대신 또는 주무대신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그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했을 때.

ㅅ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금의 차입 또는 채권의 발행을 했을 때.

ㅇ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상의 여유금을 운용했을 때.

제48조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엔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부 칙 초

(시행기일)

제 1 조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서 제7조까지 및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의 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제협력사업단의 해산 등)

제 2 조 국제협력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고 한다.)은 기구의 성립시에 해산하는 것으로 하고, 일체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 항의 규정에 의해 국가가 승계하는 자산을 제외하고, 그 때에 기구가 승계한다.

2 기구의 성립시 현재 사업단이 가지는 권리 가운데, 기구가 그 업무를 확실히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산 이외의 자산은, 기구의 성립시에 국가가 승계한다.

3 앞의 항의 규정에 의해 국가가 승계하는 자산의 범위 기타 해당 자산의 국가에 대한 승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 4 사업단의 2003년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사업년도는, 사업단의 해산일의 전날에 끝나는 것으로 한다.
- 5 사업단의 2003년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사업년도에 관계되는 결산 및 재산목록, 임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사례에 의한다.
- 6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구가 사업단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했을 때에는, 승계시, 기구가 승계하는 자산의 가치에서 부채의 금액을 뺀 금액은, 정부로부터 기구에 대하여 출자된 것으로 한다.
- 7 앞의 항의 자산의 가격은 기구의 성립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위원이 평가했던 가격으로 한다.
- 8 앞의 항의 평가위원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 9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단이 해산했을 경우의 해산의 등기에 대해서는 정령에서 정한다.

(업무의 특례)

제 3 조 기구는 제13조에 규정하는 업무 외, 다음에서 열거하는 업무(이에 부대하는 업무를 포함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一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지 전의 국제협력사업단법 (1974년 법률 제62호. 이하 이 항과 다음 조 및 부칙 제6조에서 ‘구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 제3호 가. 또는 나.의 규정에 의해 대부된 자금이 관계되는 채권의 회수가 종료할 때까지 동안, 해당 채권의 관리 및 회수를 할 것.
- 二 당분간, 구법 제21조 제1항 제3호 가. 또는 나.에 규정하는 자금으로 사업단이 그 대부의 결정을 했던 것에 관계되는 대부를 실시할 것.
- 三 당분간, 구법 제21조 제1항 제3호 가. 또는 나.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출자의 대상이 되었던 사업 및 앞의 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의 대상이 되었던 사업에 필요한 조사 및 기술의 지도를 실시할 것.

四 구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마.의 규정에 의해 실시되었던 토지의 양도에 관계되는 채권의 회수가 종료할 때까지 동안, 해당 채권의 관리 및 회수를 실시할 것.

五 당분간, 구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마.의 규정에 의해 취득된 토지의 관리 및 양도를 실시할 것.

六 구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바. 또는 사.의 규정에 의해 대부된 자금에 관계되는 채권의 회수가 종료될 때까지의 동안, 해당 채권의 관리 및 회수를 실시할 것.

七 2006년 3월 31일까지 동안, 이주자 또는 그 단체로 해외에서 농업, 어업, 공업, 기타 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와 해외에서 농업, 어업, 공업, 기타의 사업으로 이주자의 정착 및 안정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것을 실시하는 자(이주자 및 그 단체를 제외한다.)에 대한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를 실시할 것.

2 앞의 항의 규정에 의해 기구가 동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규정하는 업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기구에 관계되는 통칙법에서의 주무대신 및 주무성령은, 이러한 업무 가운데 농임업의 개발에 관계되는 것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 외무대신 및 농림수산대신과 외무성령·농림수산성령으로 하고, 이러한 업무 가운데 광공업의 개발에 관계되는 것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 외무대신 및 경제산업대신과 외무성령·경제산업성령으로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구가 동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47조 제1호 중 ‘제13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제13조 및 부칙 제3조 제1항’으로 한다.

(자본금의 감소)

제 4 조 기구는 다음에서 열거하는 채권 또는 자금의 회수로 취득했던 자산의 총액에서, 정령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뺀 액수를,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 一 앞의 조 제1항 제1호, 제4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채권
 - 二 앞의 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해 이루어진 대부에 관계되는 채권
 - 三 앞의 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이루어진 토지의 양도에 관계되는 채권
 - 四 구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나.의 규정으로 출자된 자금
- 2 기구는, 앞의 항의 규정으로 국고납부금을 납부했을 때에는, 그 납부액에 의해 자본금을 감소한 것으로 한다.

(국제협력사업단법의 폐지)

제 5 조 국제협력사업단법은 폐지한다.

(국제협력사업단법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 6 조 앞의 조의 규정의 시행 전에 구법 (제10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했던 처분, 절차, 기타 행위는, 통칙법 또는 이 법률이 상당하는 규정에 의해 했던 처분, 절차, 기타 행위라고 간주한다.

제 7 조 부칙 제5조의 규정의 시행 전에 했던 행위 및 부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여전히 종전의 사례에 의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사항에 관계되는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했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사례에 의한다.

(명칭의 사용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 8 조 이 법률의 시행시 현재 국제협력기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6조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후 6개월간은 적용하지 않는다.

(정령으로의 위임)

제 9 조 부칙 제2조에서 제4조까지 및 제3조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기구의 설립에 따라 필요한 경과조치, 기타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에서 정한다.

부 칙 (2004년 6월 23일 법률 제130호) 초

(시행기일)

제 1 조 이 법률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서 열거하는 규정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二 제2조, 제7조, 제10조, 제13조 및 제18조와 부칙 제9조에서 제15조까지, 제28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부터 제76조의 2까지, 제79조 및 제81조의 규정 2005년 4월 1일

부 칙 (2006년 6월 2일 법률 제50호) 초

(시행기일)

- 1 이 법률은 일반사단·재단법인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 2 범죄의국제화및조직화와정보처리的高도화에대처하기위한형법등의일부를개정하는 법률 (2006년 법률 제 호)의 시행일이 시행일 후가 되는 경우에는, 시행일에서 동법의 시행일의 전날까지 동안의 조직적인범죄의처벌및범죄수입의규제등에관한법률 (1999년 법률 제136호.

다음 항에서 ‘조직적범죄처벌법’이라고 한다.) 별표 제62호의 규정 적용에 대해서는, 동호 가운데 ‘중간법인법 (2001년 법률 제49호) 제 157조 (이사 등의 특별배임)의 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일반사단법인및일반재단법인에관한법률 (2006년 법률 제48호) 제334조 (이사 등의 특별배임)의 죄’라고 한다.

3 앞의 항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 동항의 경우에 범죄의국제화및조직화와정보처리의고도화에대처하기위한형법등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의 시행일의 전날까지 동안의 조직적범죄처벌법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제457조의 규정에 의해 여전히 종전의 사례에 의하는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경우의 구중간법인법 제157조 (이사 등의 특별배임)의 죄는, 조직적범죄처벌법 별표 제62호에서 열거하는 죄로 간주한다.

부 칙 (2006년 11월 15일 법률 제100호) 초

(시행기일)

제 1 조 이 법률은, 2008년 10월 1일 (이하 ‘시행일’이라고 한다.)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 규정 및 동조를 제43조로 하는 개정 규정과 다음 조 및 부칙 제8조의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부칙 제14조의 규정은 일반사단법인및일반재단법인에관한법률 및 공익사단법인 및공익재단법인의인정등에관한법률의시행에따른관계법률의정비등에 관한법률 (2006년 법률 제50호)의 시행일 또는 시행일의 어느 경우 든 늦은 날부터 시행한다.

(권리 및 의무의 승계)

제 2 조 이 법률의 시행 시에 현재 국제협력은행이 가지는 권리 및 의무로 다음에 열거하는 것은, 다음 항의 규정에 의해 국가가 승계하

는 자산을 제외하고, 권리 및 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승계계획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그 때에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 (이하, ‘기구’라고 한다)가 승계한다.

一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국제협력은행법 (1999년 법률 제35호. 이하 이 조부터 부칙 제4조까지 및 부칙 제6조에서 ‘개정전국제협력은행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해외경제협력업무에 관계되는 권리 및 의무

二 개정전국제협력은행법 제56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임원 및 직원, 기타 관리업무에 관계되는 업무 및 의무 가운데 기구가 승계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

2 앞의 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업무에 관계되는 권리 가운데, 기구가 이러한 업무를 확실하게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산 이외의 자산은, 이 법률의 시행시부터 국가가 승계한다.

3 앞의 항의 규정에 의해 국가가 승계하는 자산의 범위, 기타 해당 자산의 국가에 대한 승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에서 정한다.

4 제1항의 승계계획서는, 국제협력은행이 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외무대신 및 재무대신의 인가를 받는 것이어야 한다.

5 국제협력은행의 2008년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사업년도의 결산과 재산목록, 임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작성 등에 대해서는, 개정전국제협력은행법 제40조 제1항 (감사의 의견에 관계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43조 제1항 (감사의 의견에 관계되는 부분에 한정한다.)에 관계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기구 및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가 종전의 사례로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개정전국제협력은행법 제40조 제1항 가운데 ‘을 4월부터 9월까지 및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의 반년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와’로, ‘이러한 반년 및 사업년도마다 작성’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작성’으로, ‘해당 반년 경과 후 2개월 이내 또는 해당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라고 되어 있는 것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전국제협력은행법 제42조 가운데 '매사업년도의 결산을 다음 사업년도의 5월 31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2008년 4월 1일에 시작되는 사업년도에 관계되는 결산을 2008년 11월 30일'로, 개정전국제협력은행법 제43조 제3항 중 '다음 사업년도의 11월 30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2009년 11월 30일'로 한다.

6 국제협력은행의 2008년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사업년도의 개정전국제협력은행법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해외경제협력업무에 관계되는 개정전국제협력은행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 및 손실의 처리와 국고로의 납부에 대해서는, 기구가 종전의 사례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동조 제5항 가운데 '매사업년도'라고 되어 있는 것은 '2008년 4월 1일에 시작되는 사업년도'로, '다음 사업년도의 5월 31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2008년 11월 30일'로 한다.

7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구가 국제협력은행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했을 때에는, 그 승계시, 기구가 승계하는 자산의 가격 (개정전국제협력은행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적립금으로서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이월결손금으로서 정리되어 있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에서 부채의 금액을 뺀 액수는, 정부로부터 기구에 대하여 추가하여 출자한 것으로 한다.

8 앞의 항의 자산의 가격은, 시행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위원이 평가했던 가격으로 한다.

9 앞의 항의 평가위원,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10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구가 국제협력은행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했을 때에는, 승계시 개정전국제협력은행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적립금으로서 적립되어 있는 금액 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으로 이월결손금으로서 정리되어 있는 금액은, 이 법률에 의한 개정후의 독립행정법인국제협력기구법 (이하, 이 조, 다음 조 및 부칙 제6조에서 ‘신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유상 자금협력감정에서, 각각 신법 제31조 제5항의 준비금 또는 동조 제6항의 이월결손금으로서 정리해야 한다.

11 국제협력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구가 국제협력은행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했을 때에는, 승계시 개정전국제협력은행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서 열거하는 업무에 관계되는 감정에 속하는 자본금의 금액에 의해 자본금을 감소하는 것으로 한다.

(권리 및 의무의 승계에 따른 경과조치)

제 3 조 앞의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구가 승계하는 다음의 각 호에서 열거하는 차입금 또는 채권에 관계되는 채무에 대하여 정부가 했던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보증계약은 그 승계 후에도, 해당 차입금 또는 채권에 관계되는 채무에 대하여 종전의 조건에 의해 존속되는 것으로 한다.

- 一 개정전국제협력은행법 제45조 제1항의 국제협력은행채권 개정전국제협력은행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계약
 - 二 개정전국제협력은행법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지전의 해외경제협력기금법 (1960년 법률 제173호. 이하 이 호 및 다음 조에서 ‘구기금법’이라고 한다.) 제29조의 2 제1항의 장기차입금 및 해외경제기금채권 구기금법 제29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규정계약
- 2 앞의 항의 은행채권 및 해외경제협력기금채권은, 신법 제32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구채권으로 간주한다.

제 4 조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구가 국제협력은행의 의무를 승계했을 때에는, 해당 승계시에 발행되고 있는 모든 개정전국제협력은행법 제45조 제1항의 국제협력은행채권과 개정전국제협력은행법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지 전의 일본수출입은행법 (1950년 법률 제268호) 제39조의 2 제1항의 외화채권 등 및 구기금법 제29조의 2 제1항의 해외경제협력기금채권에 관계되는 채무에 대해서는, 기구 및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가 연대하여 변제의 책임을 진다.

2 앞의 항의 국제협력은행채권, 외화채권 등 또는 해외경제협력기금채권의 채권자는, 기구 또는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앞서 자신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앞의 항의 선취특권의 순위는, 민법 (1896년 법률 제89호)의 규정에 따른 일정한 선취특권에 뒤따르는 것으로 한다.

(비과세)

제 5 조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구가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의 해당 승계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구가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의 해당 승계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자동차의 취득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세 또는 자동차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처분 등의 효력)

제 6 조 시행일 전에 개정전국제협력은행법 (제11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했던 처분, 절차, 기타 행위는 독립행정법인통칙법 (1999년

법률 제103호) 또는 신법중의 상당하는 규정에 의해 했던 처분, 절차, 기타 행위로 간주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 7 조 시행일 전에 했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사례에 의한다.

(정령으로의 위임)

제 8 조 부칙 제2조에서 앞의 조까지 규정하는 것 이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 칙 (2007년 5월 25일 법률 제58호) 초

(시행기일)

제 1 조 이 법률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서 열거하는 규정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52조 (독립행정법인국제협력기구법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 부칙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을 제외한다.)의 규칙 공포일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 8 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했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사례에 의한다.

(정령으로의 위임)

제 9 조 부칙 제2조에서 앞의 조까지 규정하는 것 이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조정규정)

제10조 이 법률 및 주식회사상공조합중앙금고법 (2007년 법률 제74호), 주식회사일본정책투자은행법 (2007년 법률 제85호) 또는 지방공영기업등금융기구법 (2007년 법률 제64호)에 동일한 법률의 규정에 대한 개정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개정 규정이 동일한 날부터 시행될 때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은 주식회사상공조합중앙금고법, 주식회사일본정책투자은행법 또는 지방공영기업등금융기구법에 의해 먼저 개정되고, 이어서 이 법률에 의해 개정되는 것으로 한다.

부 칙(2007년 6월 13일 법률 제85호) 초

(시행기일)

제 1 조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서 열거하는 규정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三 부칙 제26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
2008년 10월 1일

(검토)

제66조 정부는 부칙 제1조 제3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전기사업회사의 일본정책투자은행으로부터의차입금의담보에관한법률, 석유의비축의 확보등에관한법률, 석유대체에너지의개발및도입의촉진에관한법률, 민간도시개발의추진에관한특별조치법, 에너지등의사용의합리화및자원의유효한이용에관한사업활동의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민간자금등의활용에의한공공시설등의정비등의촉진에관한법률, 기타 법률 (법률에 근거로 하는 명령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해 정책투자은행의 투융자기능이 활용되어 있는 제도에 대하여, 해당 제도 이용자의

이용에도 배려하면서, 다른 사업자와의 대등한 경쟁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고, 그 검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소요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회사의 장기 사업자금에 관계되는 투융자기능의 활용)

제67조 정부는, 회사의 장기 사업자금에 관계되는 투융자기능을 부칙 제1조 제3호에서 정하는 날 이후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와의 사이의 적정한 경쟁관계에 유의하면서, 대등한 경쟁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기타 해당 투융자 기능의 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독립행정법인국제협력기구법 시행령

(2008년 8월 27일 정령 제258호)

최종개정 : 2008년 7월 4일 정령 제219호

내각은, 독립행정법인국제협력기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2006년 법률 제100호)의 시행에 따라, 독립행정법인국제협력기구법 (2002년 법률 136호) 제15조 제1항, 제31조 제9항 및 제10항, 제32조 제3항에서 제5항까지 및 제10항과 제39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근거로 하여 이 정령을 제정한다.

(유상 자금협력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제 1 조 독립행정법인국제협력기구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령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은, 신용금고, 전국을 지구로 하는 신용금고연합회, 농림중앙금고, 보험회사, 농업협동조합법 (1947년 법률 제132호) 제10조 제1항 제10호의 업무를 행하는 전국의 구역을 지구로 하는 농업협동조합연합회,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 및 주식회사 상공조합중앙금고로 한다.

(유상 자금협력 감정 국고납부금의 귀속하는 회계)

제 2 조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 (이하 ‘기구’라고 한다.)의 법 제3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유상 자금협력 감정에 관계되는 국고납부금 (이하, ‘유상 자금협력 감정 국고납부금’이라고 한다.)은 일반 회계에 귀속된다.

(개산납부)

제 3 조 기구는, 매 사업년도 9월 30일 및 3월 31일까지, 재무대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년도에 관계되는 유상 자금협력 감정 국고납부금의 일부를 개산으로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정산납부)

제 4 조 기구는 매 사업년도에 관계되는 유상 자금협력 감정 국고납부금의 일부를 앞 조의 규정으로 개산으로 납부했던 경우에, 해당 사업년도에 관계되는 유상 자금협력 감정 국고납부금의 금액에서 그 개산으로 납부했던 금액을 공제해서 여전히 잔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잔액을 다음 사업년도의 5월 31일까지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유상 자금협력 감정 국고납부금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의 특례)

제 5 조 기구의 매 사업년도에 관계되는 유상 자금협력 감정 국고납부금은, 예산결산 및 회계령 (1947년 칙령 제165호) 제1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년도에 대응하는 국가의 회계연도 소속의 세입금으로 한다. 이 경우에, 기구의 매 사업년도에 관계되는 유상 자금협력 감정 국고납부금으로 다음 사업년도 5월 1일 이후 국고에 납부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일본은행은 동령 제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관계없이, 이를 해당 사업년도에 대응하는 국가의 회계연도 소속의 세입금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한다.

(납세의 절차)

제 6 조 기구는, 매 사업년도, 법 제31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잔액이 있을 때에는, 유상 자금협력 감정 국고납부금의 계산서에, 해당 사업년도 말의 임차대조표, 해당 사업년도의 손익계산서, 기타 해당 유상 자금협력 감정 국고납부금 계산의 기초를 명확히 한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사업년도의 5월 20일까지 이를 재무대신에게 제출
해야 한다.

(기구채권의 발행에 관계되는 기본방침의 인가)

제 7 조 기구는, 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
에는, 매 사업년도, 재무대신이 정하는 날까지, 해당 사업년도의 기
구채권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구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음.)의
발행에 관계되는 기본방침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기본방침을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음.)을 작성하여 재무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기본방침에는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야 한다.

- 一 기구채권의 발행금액
- 二 기구채권의 표시통화
- 三 기구채권의 발행시장
- 四 기구채권의 이율
- 五 기타 재무대신이 정하는 사항

(기구채권의 종별)

제 8 조 기구채권 (본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행하는 기구채권 (이하 ‘국
외채권’이라고 한다.)을 제외한다.)는 무기명식으로 한다.

2 국외채권은 무기명식 및 기명식으로 한다.

(기구채권의 발행 방법)

제 9 조 기구채권의 발행은, 모집의 방법에 따른다.

(모집기구채권에 관한 사항의 결정)

제10조 기구는 그 발행하는 기구채권을 인수하는 자의 모집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때, 모집기구채권 (해당 모집에 따라 해당 기구채권

의 인수 신청을 했던 자에 대하여 할당하는 기구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음.)에 대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 一 모집기구채권의 총액
- 二 각 모집기구채권의 금액
- 三 모집기구채권의 이율
- 四 모집기구채권의 상환방법 및 기한
- 五 이자지불의 방법 및 기한
- 六 기구채권의 채권을 발행했을 때에는, 그 취지
- 七 각 모집기구채권과 상환으로 납부하는 금전 액수
- 八 모집기구채권과 상환으로 하는 금전 납부의 기일
- 九 일정한 날까지 모집기구채권의 총액에 대하여 할당을 받은 자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모집기구채권의 전부를 발행하지 않기로 할 때에는, 그 취지 및 그 일정한 날
- 十 사권,주식등의대체에관한법률 (2001년 법률 제75호. 이하 ‘사채등 대체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의 적용을 받기로 할 때에는, 그 취지
- 十一 앞의 각 호에서 열거하는 것 이외에,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모집기구채권의 신청)

제11조 기구는 앞의 조의 모집에 따라 모집기구채권의 인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동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기타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2 앞의 조의 모집에 따라 모집기구채권의 인수 신청을 한 자는,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기구에 교부해야 한다.

- 一 신청을 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二 인수하고자 하는 모집기구채권의 금액 및 금액마다의 수
- 三 사채등대체법의 규정 적용을 받는 것으로 여겨진 기구채권 (이

- 하 ‘대체채권’이라고 한다.)의 인수 신청을 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자기를 위해 개설된 해당 기구채권의 대체를 행하기 위한 구좌
- 四 앞의 제3호에서 열거하는 것 이외에,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사항
- 3 앞의 항의 신청을 한 자는, 동항의 서면교부에 대신하여,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의 승낙을 얻어 동항의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전자적 방법 (전자정보처리 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기타 정보통신의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에 의해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신청을 한 자는, 동항의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 4 기구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있었던 때에는, 즉시 그 취지 및 해당 변경이 있었던 사항을 제2항의 신청을 한 자 (이하 ‘신청자’라고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 5 기구는 신청자에게 하는 통지 또는 최고는, 제2항 제1호의 주소 (해당 신청자가 별도로 통지 또는 최고를 받는 장소 또는 연락처를 기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장소 또는 연락처)로 보내면 충분하다.
- 6 앞의 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그 통지 또는 최고가 통상 도달해야 하는 때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모집기구채권의 할당)

- 제12조** 기구는, 신청자 가운데 모집기구채권의 할당을 받은 자를 정하고 동시에 그 자에게 할당하는 모집기구채권의 금액 및 금액마다의 수를 정해야 한다. 이 경우에, 기구는 해당 신청자에게 할당한 모집기구채권의 금액마다의 수를, 앞의 조 제2항 제2호의 수보다도 감소할 수 있다.
- 2 기구는, 제10조 제8호의 기일 전날까지, 신청자에 대하여 해당 신청자에게 할당하난 모집기구채권의 금액 및 금액마다의 수를 통지해야 한다.

(모집기구채권의 신청 및 할당에 관한 특칙)

제13조 제2조의 규정은 정부 혹은 지방공공단체가 모집기구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혹은 모집기구채권의 모집의 위탁을 받은 자가 스스로 모집기구채권을 인수하는 경우의 그 인수하는 부분 또는 모집기구채권을 인수하고자 하는 자가 그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앞의 항의 경우에서, 대체채권을 인수하는 정부 혹은 지방공공단체, 대체채권의 모집 위탁을 받은 자로 스스로 대체채권을 인수하는 자 또는 대체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자는, 인수할 때에, 제11조 제2항 제3호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기구에 제시해야 한다.

(모집기구채권의 채권자)

제14조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는 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모집기구채권의 채권자가 된다.

- 一 신청자 기구가 할당한 모집기구채권
- 二 모집기구채권을 인수받은 정부 혹은 지방공공단체, 모집기구채권의 모집의 위탁을 받은 자로 스스로 모집기구채권을 인수한 자 또는 모집기구채권의 총액을 인수한 자 이러한 자가 인수한 모집기구채권

(기구채권 원부)

제15조 기구는, 기구채권을 발행한 날 이후 지체없이, 기구채권 원부를 작성하고, 여기에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하거나 또는 기록해야 한다.

- 一 제10조 제3호에서 제6호까지 열거하는 사항, 기타 기구채권의 내용을 특정하는 것으로서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이하 ‘종류’라고 한다.)

- 二 종류마다 기구채권의 총액 및 각 기구채권의 금액
- 三 각 기구채권과 상환으로 납부된 금액의 액수 및 납부일
- 四 기구채권의 채권을 발행했을 때에는, 기구채권의 채권번호, 발행일, 기구채권의 채권이 무기명식별 또는 기명식별 및 무기명식의 기구채권의 채권 수
- 五 대체채권에 대한 기구채권 원부에는, 해당 기구채권에 대하여 사채등대체법의 규정 적용이 있는 취지를 기재하거나 기록해야 한다.

(기구채권 원부의 비치 또는 열람 등)

제16조 기구는 기구채권 원부를 주요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 2 기구채권의 채권자, 기타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자는, 기구의 업무 시간 내에는 언제라도 다음에서 열거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청구의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
 - 一 기구채권 원부가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서면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
 - 二 기구채권 원부가 전자적 기록 (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기타 타인의 지각에 의해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록으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으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한 것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
- 3 기구는 앞의 항의 청구가 있었던 때에는,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一 해당 청구를 하는 자가 그 권리의 확보 또는 행사에 관한 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청구를 했을 때.
 - 二 해당 청구를 하는 자가 기구채권 원부의 열람 또는 등사로 알 수 있는 사실을 이익을 얻어 제3자에게 통보하기 위한 청구를 했을 때.

三 해당 청구를 하는 자가, 과거 2년 이내에 기구채권 원부의 열람 또는 등사로 알 수 있는 사실을 이익을 얻어 제3자에게 통보한 적이 있는 경우일 때.

(기구채권의 채권의 발행)

제17조 기구는 기구채권의 채권을 발행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기구채권을 발행했던 날 이후 지체없이, 해당 기구채권에 관계되는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

(기구채권의 채권의 기재사항)

제18조 기구채권의 채권에는,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기구의 이사장이 이에 서명하거나 기명 날인해야 한다.

- 一 기구의 명칭
 - 二 해당 채권의 번호
 - 三 해당 채권에 관계되는 기구채권의 금액
 - 四 해당 채권에 관계되는 기구채권의 종류
- 2 기구채권의 채권에는, 이권을 첨부할 수 있다.

(기구채권의 채권의 상실)

제19조 기구채권의 채권은, 비송사건절차법 (1898년 법률 제14호) 제142조에 규정하는 공시최고절차에 의해 무효로 할 수 있다.

2 기구채권의 채권을 상실했던 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4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제권결정을 얻은 후가 아니면, 재발행을 청구할 수 없다.

(이권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의 기구채권의 상환)

제20조 기구는 채권이 발행되어 있는 기구채권을 그 상황의 기한 전에 상환하는 경우에, 이에 첨부된 이권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권에 표시된 기구채권 이자의 청구권의 액수를 상환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청구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는, 그 대상이 아니다.

2 앞의 항의 이권의 소지자는 언제라도 기구에 대하여, 이와 상환으로 동항의 규정으로 공제해야 하는 액수의 지불을 청구할 수 있다.

(기구채권발행의 신고)

제21조 기구는, 기구채권 (국외채권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동일하다.)의 발행에 대하여 법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했던 서면을 주무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

- 一 기구채권의 발행년월일
- 二 기구채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의 용도
- 三 제10조 제1호에서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10호에서 열거하는 사항
- 四 기구채권의 모집 방법
- 五 기구채권의 이율
- 六 제3호에서 열거하는 것 이외에, 기구채권의 채권에 기재한 사항
- 七 기타 주무대신이 정하는 사항

2 기구는 국외채권의 발행에 대하여 법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했던 서면을 주무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

- 一 국외채권의 발행년월일
- 二 국외채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의 용도
- 三 제10조 제1호에서 제5호까지 및 제7호에서 열거하는 사항
- 四 국외채권의 발행 방법
- 五 국외채권의 표시통화
- 六 국외채권의 발행시장

七 국외채권의 이율

八 제3호에서 열거하는 것 이외에, 국외채권의 채권에 기재한 사항

九 기타 재무대신이 정하는 사항

(기구채권의 채권을 상실했던 경우의 대체채권의 발행)

제22조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구채권의 발행은, 제19조 제2항의 청구가 있었던 때에 한하여 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회사법의 준용)

제23조 회사법 (2003년 법률 제86호) 제687조, 제689조, 제692조 및 제701조의 규정은, 기구채권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법 제687조, 제689조 및 제692조 중 ‘사채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채권’으로 대체하기로 한다.

(국외채권의 특례)

제24조 국외채권의 발행, 국외채권에 관한 장부, 기타 국외채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앞의 제2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해당 국외채권의 준거법 또는 발행시장의 습관에 의할 수 있다.

(국외채권에 관계되는 정부의 보증에 관한 사무의 취급)

제25조 국제부흥개발은행등으로부터의외자의인수에관한특별조치에관한법률 (1953년 법률 제51호) 제2조 제2항 혹은 제3항 또는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정부가 국외채권에 관계되는 채권의 보증을 하는 경우의 보증에 관한 인증, 기타 사무는, 재무대신이 지정하는 은행, 신탁업자 또는 금융상품거래업 (금융상품거래법 (1948년 법률 제25호) 제2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금융상품거래업을 말한다.)을 행하는 자를 재무대신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주무성령으로의 위임)

제26조 제7조부터 앞의 조까지 규정한 것 이외에, 기구채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성령에서 규정한다.

(내각총리대신에 대한 권한의 위임)

제27조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대신의 입회검사의 권한 중, 기구의 업무에 관계되는 손실의 위험 관리에 관계되는 것은, 내각총리대신에게 위임한다. 다만, 주무대신이 그 권한을 스스로 행사해도 무방하다.

(재무국장 등에 대한 권한의 위임)

제28조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금융청장관에게 위임된 권한은, 간토(關東)재무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금융청 장관이 그 권한을 스스로 행사해도 무방하다.

2 앞의 항의 권한에서 법 제38조 제1항의 수탁자의 사무소 (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 사무소’라고 한다.)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간토 재무국장 외에, 해당 수탁자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재무국장 (해당 소재지가 후쿠오카(福岡) 재무지국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후쿠오카 재무지국장)도 행사할 수 있다.

3 앞의 항의 규정에 의해 수탁자 사무소에 대하여 입회검사를 실시했던 재무국장 또는 후쿠오카 재무지국장은, 기구의 사무소 또는 해당 수탁자 사무소 이외의 수탁자 사무소에 대하여 입회검사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는, 기구의 사무소 또는 해당 수탁자사무소 이외의 수탁자사무소에 대하여, 입회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초

(시행기일)

제 1 조 이 정령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년 7월 4일 정령 제219호) 초

(시행기일)

제 1 조 이 정령은, 주식등의거래에관계되는결제의합리화를도모하기위한사채등의대체에관한법률등을일부개정하는법률 (이하, ‘개정법’이라고 한다.)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